08 – 정책개발 – 016

#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 |
|---|---|
| **연구책임자** | 장 명 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 옥 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촉연구원) |

# contents


## Ⅰ. 서론 ● 0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필요성 ····· 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7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9

제4절 연구방법 ····· 11
1. 기초통계 수집 및 문헌연구 ····· 12
2. 설문조사 ····· 12
3. 그룹심층면접조사 ····· 13
4. 자문회의 ····· 13
5. 정책토론회 ····· 13

제5절 기대효과 ····· 14

## Ⅱ.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5

제1절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전개와 쟁점 ····· 17
1. 초-국가적 이주의 전개 ····· 17
2.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변화 ····· 17
3. 한국의 다민족·다문화사회 전개 ····· 19

제2절 한국의 다문화정책 패러다임 동향 ····· 21
1.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관련 논의 ····· 21
2. 한국의 다문화정책 동향과 특징 ····· 23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분석 ····· 29
4. 소결 ····· 39

Ⅲ. 다문화가족 실태 및 다문화관련 법·제도 동향 ● 41

제1절 다문화가족 실태 현황 ····· 43
1. 전국 ····· 43
2. 서울시 ····· 47

제2절 다문화가족 관련법제 ····· 51
1. 국제법규 ····· 51
2. 국내법규 ····· 53
3. 소결 ····· 76

제3절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 78
1. 중앙부처 ····· 78
2. 서울시 ····· 81
3. 소결 ····· 87

## Ⅳ.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욕구도 ● 89


제1절 조사개요 ····· 91
1.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91
2. 결혼이민자 그룹심층면접조사 ····· 94

제2절 일반 현황 ····· 96
1. 일반적 특성 ····· 96
2. 국제결혼과정 ····· 120
3. 배우자 특성 ····· 128
4. 경제활동 ····· 135

제3절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 149
1. 부부관계 ····· 149
2. 자녀와의 관계 ····· 169

제4절 모국가족과의 관계 ····· 194
1. 한국에 살고 있는 모국가족 ····· 194
2.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 ····· 195
3. 모국가족 방문 ····· 197
4. 모국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 198
5. 모국가족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 200

제5절 한국문화적응 및 사회통합 ····· 202
1.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 ····· 202
2. 문화적응 스트레스 ····· 204
3. 성별의식과 한국에서의 차별경험 ····· 211

4. 사회통합을 위한 주변인의 노력과 역할 ····· 219

제6절 복지 욕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 230
1.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 230
2.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이용실태 ····· 232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235
4. 국가기관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252
5.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 ····· 265
6.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 268
7. 삶의 만족도 ····· 304

제7절 권역별 조사분석 ····· 307
1. 도심권 조사분석 ····· 307
2. 동북권 조사분석 ····· 313
3. 서북권 조사결과 ····· 320
4. 서남권 조사분석 ····· 327
5. 동남권 조사결과 ····· 334

V.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식 ● 343

제1절 조사개요 ····· 345
1. 조사개요 ····· 345
2. 주요 조사내용 ····· 345

제2절 응답자의 특성 ····· 347
1. 모집단 특성과 표본 특성 ····· 347
2. 성별 ····· 347

3. 연령별 ····· 347
4. 거주 권역별 ····· 348
5. 학력별 ····· 348
6. 개인소득별 ····· 349
7. 직업별 ····· 349
8. 주거형태별 ····· 350
9. 결혼 상태와 가족구성원 ····· 350

제3절 다문화가족에 대한 느낌 ····· 351
1. 국제결혼이민자 수요 ····· 351
2.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느낌 ····· 353

제4절 다문화가족 수용도 ····· 356
1.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 356
2.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 ····· 358
3. 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 361

제5절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지원 수용도 ····· 365
1.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 ····· 365
2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배우자 모국어 언어능력 습득 ····· 366
3.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 ····· 369
4. 정책수립시 의견 반영 ····· 370
5.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 개입 ····· 373
6.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투입과 지원 ····· 374
7. 위장결혼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 강화 ····· 375
8. 다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 376
9.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 378

제6절 다문화 가족증가로 인한 향후 문제 ····· 381
1. 결혼이민자 가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 381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 ····· 384
3. 주변에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 387
4.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389

제7절 소 결 ····· 392

VI. 결 론 ● 395

제1절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으로의 전환 ····· 397
1. 패러다임의 전환 : '지원'에서 '공생'을 넘어 '통합'으로 ····· 397
2. 가족생애 주기와 가족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필요 ····· 398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체계화, 다양화 ····· 399
4. 다문화가족정책의 충분한 예산확보 ····· 400
5. 서울시 다문화관련 조례 제·개정 ····· 401
6. 다문화교육 실시 ····· 402
7. 다문화가족정책을 위한 기반구축 ····· 402
8.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정비율 다문화가족 사업에 할당 ····· 403

제2절 주요 다문화가족 정책 제언 ····· 404
1. 한국어교육 ····· 404
2. One-Stop Service 지원 체계 구축 ····· 406
3. 결혼이민자 모니터링단, 자원봉사단 구성 및 지원 ····· 407
4. 생활정보 제공 및 보급 방안 개선 ····· 407
5. 의료·건강 지원 ····· 408
6.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서비스 ····· 408

7. 결혼이민자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 410

제3절 다문화 관련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 410
1. 중앙-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간, 부서간 및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410
2. 다문화담당관 등 전문인력 배치 및 다문화위원회, 다문화협의회 설치 ····· 411
3. 맞춤형 서비스 내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 411

참고문헌 ● 413

부 록 ● 427

1.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지(외국인 배우자용) ····· 429
2.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지(한국인 배우자용) ····· 444
3. 다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식조사 설문지 ····· 453

## ● 표 목차

▌표 II-1▐ 다문화관련 정책 분류 ····· 24
▌표 II-2▐ 다문화가족정책계획의 현황 ····· 26
▌표 II-3▐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 관련 지원사업 예산 현황 ····· 32
▌표 II-4▐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내용 ····· 35
▌표 II-5▐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운영방법 ····· 36

▌표 Ⅱ-6▐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대상 ····· 38
▌표 Ⅲ-1▐ 결혼이민자 중 체류자 연도별 증감추이(2008.7) ····· 43
▌표 Ⅲ-2▐ 지역별 외국인 체류 분포 ····· 44
▌표 Ⅲ-3▐ 성별, 국적취득여부로 본 국제결혼이민자 ····· 45
▌표 Ⅲ-4▐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 ····· 45
▌표 Ⅲ-5▐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현황 ····· 46
▌표 Ⅲ-6▐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이혼 현황 ····· 46
▌표 Ⅲ-7▐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율 ····· 47
▌표 Ⅲ-8▐ 주요 국가별 외국인 현황 ····· 48
▌표 Ⅲ-9▐ 국제결혼의 처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 ····· 49
▌표 Ⅲ-10▐ 국제결혼의 부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 ····· 50
▌표 Ⅲ-11▐ 국제결혼에 서울시민 의식 ····· 50
▌표 Ⅲ-12▐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 57
▌표 Ⅲ-1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 60
▌표 Ⅲ-14▐ 법령 위반시 제재사항 ····· 62
▌표 Ⅲ-15▐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현황 (2008.9.16) ····· 64
▌표 Ⅲ-16▐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주요 내용 ····· 65
▌표 Ⅲ-17▐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 69
▌표 Ⅲ-18▐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주요 내용 ····· 71
▌표 Ⅲ-19▐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현황 ····· 73
▌표 Ⅲ-20▐ 각 부처의 다문화정책 추진내용 ····· 81
▌표 Ⅲ-21▐ 2008 서울시 및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 ····· 83
▌표 Ⅳ-1▐ 조사개요 ····· 91
▌표 Ⅳ-2▐ 설문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 92
▌표 Ⅳ-3▐ 설문조사 협조기관 현황 ····· 93
▌표 Ⅳ-4▐ 조사개요 ····· 94
▌표 Ⅳ-5▐ 결혼이민자그룹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95
▌표 Ⅳ-6▐ 응답자의 성별 특성 ····· 97

▌표 Ⅳ-7▐ 출신국적별 분포 ····· 97
▌표 Ⅳ-8▐ 연령별 분포 ····· 98
▌표 Ⅳ-9▐ 출신국적별 연령 분포 ····· 99
▌표 Ⅳ-10▐ 출신국적별 거주 지역(권역)별 분포 ····· 100
▌표 Ⅳ-11▐ 출신국적별 한국 입국시기 ····· 101
▌표 Ⅳ-12▐ 출신국적별 한국 방문 목적 ····· 102
▌표 Ⅳ-13▐ 출신국적별 한국 거주기간 ····· 103
▌표 Ⅳ-14▐ 한국어 실력 ····· 104
▌표 Ⅳ-15▐ 출신국적별 한국어 실력 ····· 104
▌표 Ⅳ-16▐ 출신국적별 교육수준 ····· 105
▌표 Ⅳ-17▐ 한국국적 취득 여부 ····· 106
▌표 Ⅳ-18▐ 한국국적 미취득 사유 ····· 108
▌표 Ⅳ-19▐ 출신국적별 주거형태 ····· 108
▌표 Ⅳ-20▐ 가족구성 ····· 109
▌표 Ⅳ-21▐ 출신국적별 가족구성 ····· 110
▌표 Ⅳ-22▐ 출신국적별 월평균 가구소득 ····· 111
▌표 Ⅳ-23▐ 건강상태 ····· 112
▌표 Ⅳ-24▐ 연령 ····· 114
▌표 Ⅳ-25▐ 서울시 거주기간 ····· 114
▌표 Ⅳ-26▐ 주거형태 ····· 115
▌표 Ⅳ-27▐ 교육수준 ····· 115
▌표 Ⅳ-28▐ 직업 ····· 116
▌표 Ⅳ-29▐ 1주일 평균 근로시간 ····· 116
▌표 Ⅳ-30▐ 월평균 개인소득 ····· 117
▌표 Ⅳ-31▐ 월평균 가구소득 ····· 117
▌표 Ⅳ-32▐ 건강상태 ····· 118
▌표 Ⅳ-33▐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기간 ····· 119
▌표 Ⅳ-34▐ 결혼상태 ····· 119

▌표 Ⅳ-35▐ 자녀유무 ····· 119
▌표 Ⅳ-36▐ 출신국적별 결혼기간 ····· 120
▌표 Ⅳ-37▐ 출신국적별 배우자 소개경로 ····· 121
▌표 Ⅳ-38▐ 출신국적별 소개비 지불 여부 ····· 123
▌표 Ⅳ-39▐ 국제결혼 당시 어려움(복수응답) ····· 124
▌표 Ⅳ-40▐ 출신국적별 국제결혼 당시 어려움(복수응답) ····· 124
▌표 Ⅳ-41▐ 국제결혼 당시 어려움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복수응답) ····· 125
▌표 Ⅳ-42▐ 출신국적별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동기(복수응답) ····· 126
▌표 Ⅳ-43▐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동기(한국인 배우자, 복수응답) ····· 127
▌표 Ⅳ-44▐ 출신국적별 결혼상태 ····· 128
▌표 Ⅳ-45▐ 출신국적별 배우자 연령 ····· 129
▌표 Ⅳ-46▐ 출신국적별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 ····· 130
▌표 Ⅳ-47▐ 출신국적별 배우자 결혼상태 ····· 130
▌표 Ⅳ-48▐ 출신국적별 배우자간 결혼상태 ····· 131
▌표 Ⅳ-49▐ 출신국적별 배우자 최종 학력 ····· 132
▌표 Ⅳ-50▐ 배우자 직업 ····· 133
▌표 Ⅳ-51▐ 출신국적별 배우자 직업 ····· 133
▌표 Ⅳ-52▐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어 실력 ····· 134
▌표 Ⅳ-53▐ 출신국적별 직업 유무 ····· 136
▌표 Ⅳ-54▐ 출신국적별 직업유형 ····· 137
▌표 Ⅳ-55▐ 구직경로 ····· 138
▌표 Ⅳ-56▐ 출신국적별 1주일 평균 근로시간 ····· 139
▌표 Ⅳ-57▐ 직업유형별 1주일 평균 근로시간 ····· 139
▌표 Ⅳ-58▐ 출신국적별 월평균 개인소득 ····· 140
▌표 Ⅳ-59▐ 출신국적별 개인소득 관리주체 ····· 141
▌표 Ⅳ-60▐ 출신국적별 취업동기 ····· 143
▌표 Ⅳ-61▐ 출신국적별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1순위) ····· 145

▌표 Ⅳ-62▐ 취업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태도 ····· 146
▌표 Ⅳ-63▐ 출신국적별 향후 취업의사 ····· 146
▌표 Ⅳ-64▐ 현재 한국어 실력별 향후 취업의사 ····· 147
▌표 Ⅳ-65▐ 출신국적별 희망직종 ····· 148
▌표 Ⅳ-66▐ 출신국적별 배우자와의 여가시간 공유 여부 ····· 149
▌표 Ⅳ-67▐ 출신국적별 부부 여가활동(복수응답) ····· 150
▌표 Ⅳ-68▐ 출신국적별 의사결정주체-자녀교육문제 ····· 152
▌표 Ⅳ-69▐ 결혼기간별 의사결정주체-자녀교육문제 ····· 152
▌표 Ⅳ-70▐ 출신국적별 의사결정주체-경제문제 ····· 153
▌표 Ⅳ-71▐ 출신국적별 의사결정주체-본인 직장문제 ····· 154
▌표 Ⅳ-72▐ 출신국적별 의사결정주체-배우자 직장문제 ····· 154
▌표 Ⅳ-73▐ 출신국적별 의사결정주체-일상적인 가정생활 문제 ····· 155
▌표 Ⅳ-74▐ 출신국적별 한국인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 ····· 156
▌표 Ⅳ-75▐ 출신국적별 배우자의 문화적 차이(1순위) ····· 157
▌표 Ⅳ-76▐ 출신국적별 부부관계 만족도 ····· 159
▌표 Ⅳ-77▐ 출신국적별 갈등요인(복수응답) ····· 161
▌표 Ⅳ-78▐ 출신국적별 폭력 및 통제경험 유형(복수응답) ····· 162
▌표 Ⅳ-79▐ 출신국적별 부부싸움의 원인(복수응답) ····· 164
▌표 Ⅳ-81▐ 출신국적별 부부싸움 빈도 ····· 165
▌표 Ⅳ-82▐ 이혼고려 여부(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 166
▌표 Ⅳ-83▐ 결혼기간별 이혼고려 여부 ····· 166
▌표 Ⅳ-84▐ 이혼하지 않는 이유 ····· 167
▌표 Ⅳ-85▐ 출신국적별 한국인과의 결혼권장도 ····· 168
▌표 Ⅳ-86▐ 외국인 배우자 결혼기간별 한국인과의 결혼권장도 ····· 169
▌표 Ⅳ-87▐ 출신국적별 한국에서의 출산경험 ····· 170
▌표 Ⅳ-88▐ 결혼기간별 한국에서의 출산경험 ····· 171
▌표 Ⅳ-89▐ 결혼상태별 한국에서의 출산경험 ····· 171
▌표 Ⅳ-90▐ 출신국적별 출산자녀 수 ····· 172

▌표 Ⅳ-91▐ 결혼기간별 출산자녀 수 ····· 173
▌표 Ⅳ-92▐ 거주 지역(권역)별 출산자녀 수 ····· 173
▌표 Ⅳ-93▐ 출신국적별 출산 시 어려움 ····· 174
▌표 Ⅳ-94▐ 출신국적별 동거 자녀수 ····· 175
▌표 Ⅳ-95▐ 출신국적별 동거 자녀의 취학상태 ····· 176
▌표 Ⅳ-96▐ 거주 지역(권역)별 동거 자녀의 취학상태 ····· 177
▌표 Ⅳ-97▐ 출신국적별 자녀와의 사용언어 ····· 178
▌표 Ⅳ-98▐ 출신국적별 미취학 자녀와의 사용언어 ····· 179
▌표 Ⅳ-99▐ 자녀의 한국어능력 우려 ····· 179
▌표 Ⅳ-100▐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에 대한 자녀의 언어능력 기대 ····· 180
▌표 Ⅳ-101▐ 출신국적별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 ····· 181
▌표 Ⅳ-102▐ 거주 지역(권역)별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 ····· 181
▌표 Ⅳ-103▐ 출신국적별 집단 따돌림의 이유 ····· 184
▌표 Ⅳ-104▐ 자녀 양육 시 어려움(복수응답) ····· 185
▌표 Ⅳ-105▐ 출신국적별 자녀양육 시 필요한 지원 ····· 186
▌표 Ⅳ-106▐ 출신국적별 향후 자녀 출산계획 ····· 187
▌표 Ⅳ-107▐ 출신국적별 향후 출산 자녀수 ····· 188
▌표 Ⅳ-108▐ 자녀유무별 향후 출산 자녀수 ····· 189
▌표 Ⅳ-109▐ 출신국적별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 190
▌표 Ⅳ-110▐ 출신국적별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유무 ····· 191
▌표 Ⅳ-111▐ 출신국적별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의 원인(복수응답) ····· 192
▌표 Ⅳ-112▐ 결혼기간별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의 원인(복수응답) ····· 192
▌표 Ⅳ-113▐ 출신국적별 관계가 어려운 가족구성원 ····· 193
▌표 Ⅳ-114▐ 출신국적별 한국에 살고 있는 모국가족 유무 ····· 194
▌표 Ⅳ-115▐ 출신국적별 한국에 살고 있는 모국가족 현황(복수응답) ····· 195
▌표 Ⅳ-116▐ 출신국적별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 ····· 196
▌표 Ⅳ-117▐ 결혼기간별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 ····· 197
▌표 Ⅳ-118▐ 출신국적별 모국가족 방문 여부 ····· 197

▌표 Ⅳ-119▐ 출신국적별 모국가족 방문현황 ····· 198
▌표 Ⅳ-120▐ 출신국적별 모국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 199
▌표 Ⅳ-121▐ 출신국적별 모국가족 경제적 지원 빈도 ····· 200
▌표 Ⅳ-122▐ 출신국적별 모국가족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외국인 배우자) ····· 201
▌표 Ⅳ-123▐ 출신국적별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복수응답) ····· 203
▌표 Ⅳ-124▐ 거주 지역(권역)별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복수응답) ·· 204
▌표 Ⅳ-125▐ 출신국적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 207
▌표 Ⅳ-126▐ 결혼기간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도 ····· 207
▌표 Ⅳ-127▐ 한국 거주기간별 '불공평한 대우'의 정도 ····· 208
▌표 Ⅳ-128▐ 한국 거주기간별 '의사소통 시의 긴장감' 정도 ····· 208
▌표 Ⅳ-129▐ 한국 거주기간별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 정도 ····· 209
▌표 Ⅳ-130▐ 한국 거주기간별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 정도 ····· 210
▌표 Ⅳ-131▐ 결혼기간별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 정도 ····· 210
▌표 Ⅳ-132▐ 결혼기간별 '안전하지 못한 느낌'의 정도 ····· 210
▌표 Ⅳ-133▐ 결혼기간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정도 ····· 211
▌표 Ⅳ-134▐ 결혼기간별 '사회적 소속감 결여'의 정도 ····· 211
▌표 Ⅳ-135▐ 성역할 분리에 대한 가치관 ····· 212
▌표 Ⅳ-136▐ 출신국적별 성역할 분리에 대한 가치관 ····· 212
▌표 Ⅳ-137▐ 가부장적 가치관 ····· 213
▌표 Ⅳ-138▐ 출신국적별 가부장적 가치관 ····· 213
▌표 Ⅳ-139▐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가치관 ····· 214
▌표 Ⅳ-140▐ 출신국적별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가치관 ····· 215
▌표 Ⅳ-141▐ 성평등 교육관 ····· 215
▌표 Ⅳ-142▐ 출신국적별 성평등 교육관 ····· 216
▌표 Ⅳ-143▐ 출신국적별 취업 시의 불이익 경험 ····· 217
▌표 Ⅳ-144▐ 출신국적별 직장이나 모임에서의 불이익한 대우 ····· 217
▌표 Ⅳ-145▐ 취업여부별 직장이나 모임에서의 불이익한 대우 ····· 218

▌표 Ⅳ-146▐ 출신국적별 성폭력 또는 성희롱 경험 ····· 219
▌표 Ⅳ-147▐ 취업여부별 성폭력 또는 성희롱 경험 ····· 219
▌표 Ⅳ-148▐ 배우자의 외국어 습득 노력 및 문화적 차이 이해 ····· 221
▌표 Ⅳ-149▐ 출신국적별 배우자의 외국어 습득 노력 및 문화적 차이 이해 ···· 222
▌표 Ⅳ-150▐ 결혼기간별 배우자의 외국어 습득 노력 및 문화적 차이 이해 ···· 222
▌표 Ⅳ-151▐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의 동반참석 ····· 223
▌표 Ⅳ-152▐ 출신국적별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의 동반참석 ····· 224
▌표 Ⅳ-153▐ 결혼기간별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의 동반참석 ····· 224
▌표 Ⅳ-154▐ 결혼이민자 모임에의 동반참석 ····· 225
▌표 Ⅳ-155▐ 출신국적별 결혼이민자 모임에의 동반참석 ····· 226
▌표 Ⅳ-156▐ 결혼기간별 결혼이민자 모임에의 동반참석 ····· 226
▌표 Ⅳ-157▐ 시댁가족의 모국어 습득 노력 및 모국문화 이해 ····· 227
▌표 Ⅳ-158▐ 출신국적별 시댁가족의 모국어 습득 노력 및 모국문화 이해 ····· 228
▌표 Ⅳ-159▐ 지역사회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문화 관심과 이해 ····· 229
▌표 Ⅳ-160▐ 출신국적별 지역사회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문화 관심과 이해 ····· 229
▌표 Ⅳ-161▐ 거주 지역(권역)별 지역사회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문화
관심과 이해 ····· 230
▌표 Ⅳ-162▐ 출신국적별 한국생활의 어려움(1순위) ····· 231
▌표 Ⅳ-163▐ 한국 거주기간별 한국생활의 어려움(1순위) ····· 232
▌표 Ⅳ-164▐ 출신국적별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 234
▌표 Ⅳ-165▐ 한국 거주기간별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 234
▌표 Ⅳ-16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복수응답) ····· 235
▌표 Ⅳ-167▐ 출신국적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복수응답) ····· 236
▌표 Ⅳ-168▐ 한국 거주기간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복수응답) ····· 237
▌표 Ⅳ-169▐ 결혼기간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복수응답) ····· 237
▌표 Ⅳ-170▐ 출신국적별 사회보험의 도움 정도 ····· 238
▌표 Ⅳ-171▐ 결혼기간별 사회보험 도움 정도 ····· 239
▌표 Ⅳ-172▐ 출신국적별 한국어교실의 도움 정도 ····· 240

▌표 Ⅳ-173▐ 출신국적별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의 도움 정도 ····· 241
▌표 Ⅳ-174▐ 출신국적별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242
▌표 Ⅳ-175▐ 결혼기간별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242
▌표 Ⅳ-176▐ 출신국적별 법률상담 및 지원의 도움 정도 ····· 243
▌표 Ⅳ-177▐ 출신국적별 의료상담 및 지원의 도움 정도 ····· 244
▌표 Ⅳ-178▐ 출신국적별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의 도움 정도 ····· 245
▌표 Ⅳ-179▐ 출신국적별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의 도움 정도 ····· 246
▌표 Ⅳ-180▐ 한국 거주기간별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의 도움 정도 ····· 246
▌표 Ⅳ-181▐ 출신국적별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의 도움 정도 ····· 247
▌표 Ⅳ-182▐ 한국 거주기간별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도움 정도 ····· 248
▌표 Ⅳ-183▐ 출신국적별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의 도움 정도 ····· 249
▌표 Ⅳ-184▐ 한국 거주기간별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의
도움 정도 ····· 249
▌표 Ⅳ-185▐ 사회복지서비스 미 이용 이유(복수응답) ····· 250
▌표 Ⅳ-186▐ 출신국적별 사회복지서비스 미 이용 이유(복수응답) ····· 251
▌표 Ⅳ-187▐ 한국 거주기간별 사회복지서비스 미 이용 이유(복수응답) ····· 251
▌표 Ⅳ-188▐ 일자리 알선 제도에 대한 인지도 ····· 253
▌표 Ⅳ-189▐ 출신국적별 일자리 알선 인지도 ····· 254
▌표 Ⅳ-190▐ 한국어 무료 교육에 대한 인지도 ····· 254
▌표 Ⅳ-191▐ 출신국적별 한국어 무료 교육에 대한 인지도 ····· 255
▌표 Ⅳ-192▐ 생계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에 대한 인지도 ····· 255
▌표 Ⅳ-193▐ 출신국적별 생계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에 대한 인지도 ····· 256
▌표 Ⅳ-19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 257
▌표 Ⅳ-195▐ 출신국적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 257
▌표 Ⅳ-196▐ 여성긴급전화에서 위기상황 여성 지원 인지도 ····· 258
▌표 Ⅳ-197▐ 출신국적별 여성긴급전화(1366)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258
▌표 Ⅳ-198▐ 보건소의 임신·출산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259
▌표 Ⅳ-199▐ 출신국적별 보건소의 임신·출산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259

▌표 Ⅳ-200▐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 260
▌표 Ⅳ-201▐ 출신국적별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 260
▌표 Ⅳ-202▐ 전화 통역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261
▌표 Ⅳ-203▐ 출신국적별 전화 통역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261
▌표 Ⅳ-204▐ 방문교육지도사업에 대한 인지도 ····· 262
▌표 Ⅳ-205▐ 출신국적별 방문교육지도사업에 대한 인지도 ····· 262
▌표 Ⅳ-206▐ 국적취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1) ····· 263
▌표 Ⅳ-207▐ 출신국적별 국적취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1) ····· 263
▌표 Ⅳ-208▐ 국적취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2) ····· 264
▌표 Ⅳ-209▐ 출신국적별 국적취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2) ····· 264
▌표 Ⅳ-210▐ 한국 거주기간별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 인지도 ····· 265
▌표 Ⅳ-211▐ 출신국적별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참여 의사 ····· 265
▌표 Ⅳ-21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미 참여 이유(복수응답) ····· 266
▌표 Ⅳ-213▐ 출신국적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미 참여 이유(복수응답) ····· 267
▌표 Ⅳ-214▐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71
▌표 Ⅳ-215▐ 출신국적별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71
▌표 Ⅳ-216▐ 한국 거주기간별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72
▌표 Ⅳ-217▐ 결혼기간별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72
▌표 Ⅳ-218▐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 273
▌표 Ⅳ-219▐ 출신국적별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 274
▌표 Ⅳ-220▐ 한국 거주기간별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 274
▌표 Ⅳ-221▐ 결혼기간별 주택지원 필요도 ····· 275
▌표 Ⅳ-222▐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75
▌표 Ⅳ-223▐ 출신국적별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76
▌표 Ⅳ-224▐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 277
▌표 Ⅳ-225▐ 출신국적별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 277

▌표 Ⅳ-226▐ 결혼기간별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 278
▌표 Ⅳ-227▐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79
▌표 Ⅳ-228▐ 출신국적별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79
▌표 Ⅳ-229▐ 한국 거주기간별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80
▌표 Ⅳ-230▐ 결혼기간별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80
▌표 Ⅳ-231▐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81
▌표 Ⅳ-232▐ 출신국적별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82
▌표 Ⅳ-233▐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82
▌표 Ⅳ-234▐ 출신국적별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83
▌표 Ⅳ-235▐ 결혼기간별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84
▌표 Ⅳ-236▐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84
▌표 Ⅳ-237▐ 출신국적별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85
▌표 Ⅳ-238▐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86
▌표 Ⅳ-239▐ 출신국적별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86
▌표 Ⅳ-240▐ 한국 거주기간별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87
▌표 Ⅳ-241▐ 결혼기간별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87
▌표 Ⅳ-242▐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288
▌표 Ⅳ-243▐ 출신국적별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289
▌표 Ⅳ-244▐ 결혼기간별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289
▌표 Ⅳ-245▐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필요도 …… 290
▌표 Ⅳ-246▐ 출신국적별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필요도 …… 291
▌표 Ⅳ-247▐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92
▌표 Ⅳ-248▐ 출신국적별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92
▌표 Ⅳ-249▐ 한국 거주기간별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93

▌표 Ⅳ-250▐ 결혼기간별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293
▌표 Ⅳ-251▐ 한국문화체험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94
▌표 Ⅳ-252▐ 출신국적별 한국문화체험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95
▌표 Ⅳ-253▐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295
▌표 Ⅳ-254▐ 출신국적별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296
▌표 Ⅳ-255▐ 결혼기간별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296
▌표 Ⅳ-256▐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97
▌표 Ⅳ-257▐ 출신국적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98
▌표 Ⅳ-258▐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98
▌표 Ⅳ-259▐ 출신국적별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필요도 ····· 299
▌표 Ⅳ-260▐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 300
▌표 Ⅳ-261▐ 출신국적별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 300
▌표 Ⅳ-262▐ 한국 거주기간별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 301
▌표 Ⅳ-263▐ 결혼기간별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 301
▌표 Ⅳ-264▐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 ····· 302
▌표 Ⅳ-265▐ 출신국적별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 ····· 303
▌표 Ⅳ-266▐ 한국 거주기간별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 ····· 303
▌표 Ⅳ-267▐ 삶의 만족도 ····· 305
▌표 Ⅳ-268▐ 출신국적별 삶의 만족도 ····· 305
▌표 Ⅳ-269▐ 한국 거주기간별 삶의 만족도 ····· 306
▌표 Ⅳ-270▐ 결혼기간별 삶의 만족도 ····· 306
▌표 Ⅴ-1▐ 조사개요 ····· 345
▌표 Ⅴ-2▐ 주요 조사내용 ····· 346
▌표 Ⅴ-3▐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 비교 ····· 347
▌표 Ⅴ-4▐ 성별 ····· 347
▌표 Ⅴ-5▐ 연령별 ····· 348

▌표 Ⅴ-6▐ 거주 권역별 ····· 348
▌표 Ⅴ-7▐ 학력별 ····· 349
▌표 Ⅴ-8▐ 개인소득별 ····· 349
▌표 Ⅴ-9▐ 직업별 ····· 350
▌표 Ⅴ-10▐ 주거형태별 ····· 350
▌표 Ⅴ-11▐ 결혼 상태와 가족구성원 ····· 351
▌표 Ⅴ-12▐ 국제결혼이민자 수요 ····· 351
▌표 Ⅴ-13▐ 소득수준별 국제결혼이민자 수요 ····· 352
▌표 Ⅴ-14▐ 직업별 국제결혼이민자의 수요 ····· 352
▌표 Ⅴ-15▐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느낌 ····· 353
▌표 Ⅴ-16▐ 연령별 국제결혼이민자 인상 ····· 354
▌표 Ⅴ-17▐ 거주권역별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상 ····· 354
▌표 Ⅴ-18▐ 학력별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상 ····· 355
▌표 Ⅴ-19▐ 국제결혼이민자에대한인상 ····· 355
▌표 Ⅴ-20▐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56
▌표 Ⅴ-21▐ 연령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57
▌표 Ⅴ-22▐ 학력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57
▌표 Ⅴ-23▐ 직업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58
▌표 Ⅴ-24▐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58
▌표 Ⅴ-25▐ 연령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59
▌표 Ⅴ-26▐ 거주 권역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359
▌표 Ⅴ-27▐ 학력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60
▌표 Ⅴ-28▐ 소득수준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60
▌표 Ⅴ-29▐ 직업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 ····· 361
▌표 Ⅴ-30▐ 결혼상태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61
▌표 Ⅴ-31▐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62
▌표 Ⅴ-32▐ 연령별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62
▌표 Ⅴ-33▐ 학력별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63
▌표 Ⅴ-34▐ 직업별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63
▌표 Ⅴ-35▐ 결혼상태별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364
▌표 Ⅴ-36▐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 ····· 365
▌표 Ⅴ-37▐ 연령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에 대한 반응 ····· 366
▌표 Ⅴ-38▐ 결혼상태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에 대한 반응 ····· 366
▌표 Ⅴ-39▐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언어 능력 ····· 367
▌표 Ⅴ-40▐ 연령별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언어 능력에 대한 반응 ·· 367
▌표 Ⅴ-41▐ 학력별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언어 능력에 대한 반응 ·· 368
▌표 Ⅴ-42▐ 소득수준별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언어 능력에 대한 반응 · 368
▌표 Ⅴ-43▐ 직업별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언어 능력에 대한 반응 ·· 369
▌표 Ⅴ-44▐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 ····· 369
▌표 Ⅴ-45▐ 연령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에 대한 반응 ····· 370
▌표 Ⅴ-46▐ 학력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 ····· 370
▌표 Ⅴ-47▐ 정책수립시 의견 반영 ····· 371
▌표 Ⅴ-48▐ 연령별 정책수립시 의견 반영 ····· 371
▌표 Ⅴ-49▐ 학력별 정책수립시 의견 반영 ····· 372
▌표 Ⅴ-50▐ 소득수준별 정책수립시 의견 반영 ····· 372
▌표 Ⅴ-51▐ 직업별 정책수립시 의견 반영 ····· 373
▌표 Ⅴ-52▐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 개입 ····· 373
▌표 Ⅴ-53▐ 연령별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 개입 ···· 374
▌표 Ⅴ-54▐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투입과 지원 ····· 374

▌표 Ⅴ-55▐ 연령별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투입과 지원 ····· 375
▌표 Ⅴ-56▐ 학력별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투입과 지원 ····· 375
▌표 Ⅴ-57▐ 위장결혼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 강화 ····· 376
▌표 Ⅴ-58▐ 결혼상태별 위장결혼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 강화 ····· 376
▌표 Ⅴ-59▐ 다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 377
▌표 Ⅴ-60▐ 연령별 다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 377
▌표 Ⅴ-61▐ 거주 권역별 다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 378
▌표 Ⅴ-62▐ 학력별 다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 378
▌표 Ⅴ-6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 379
▌표 Ⅴ-6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 379
▌표 Ⅴ-65▐ 주 권역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 380
▌표 Ⅴ-66▐ 학력별 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 380
▌표 Ⅴ-67▐ 직업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 381
▌표 Ⅴ-68▐ 결혼이민자 가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 382
▌표 Ⅴ-69▐ 결혼이민자 가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 382
▌표 Ⅴ-70▐ 연령별 결혼이민자 가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 383
▌표 Ⅴ-71▐ 학력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 ····· 383
▌표 Ⅴ-72▐ 직업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 ····· 384
▌표 Ⅴ-73▐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 ····· 385
▌표 Ⅴ-74▐ 연령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 ····· 385
▌표 Ⅴ-75▐ 직업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 ····· 386
▌표 Ⅴ-76▐ 다문화가족 유무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 ····· 386
▌표 Ⅴ-77▐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국제결혼이민자 수용도 연관성 ·· 387
▌표 Ⅴ-78▐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국제결혼이민자 이미지 연관성 ·· 387
▌표 Ⅴ-79▐ 주변에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 388
▌표 Ⅴ-80▐ 연령별 주변에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 388
▌표 Ⅴ-81▐ 직업별 주변에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 389
▌표 Ⅴ-82▐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389

▌표 Ⅴ-83▐ 연령별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390
▌표 Ⅴ-84▐ 학력별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390
▌표 Ⅴ-85▐ 소득수준별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391
▌표 Ⅴ-86▐ 직업별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391
▌표 Ⅴ-87▐ 다문화가족 유무별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392

## ● 그림 목차

〈그림 Ⅱ-1〉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수 ····· 29
〈그림 Ⅱ-2〉 광역시도별 지원사업 수 ····· 30
〈그림 Ⅱ-3〉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수 대비 지원사업 수 ····· 31
〈그림 Ⅱ-4〉 결혼이민자 관련 지원사업 예산 현황 ····· 31
〈그림 Ⅱ-5〉 결혼이민자 수 대비 관련 지원사업 예산액(천원) ····· 33
〈그림 Ⅱ-6〉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내용 ····· 34
〈그림 Ⅱ-7〉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운영방법 ····· 36
〈그림 Ⅱ-8〉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대상 ····· 37
〈그림 Ⅲ-1〉 주요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 48
〈그림 Ⅲ-2〉 자치구별 외국인 분포 ····· 49
〈그림 Ⅳ-1〉 거주 지역(권역)별 분포 ····· 100
〈그림 Ⅳ-2〉 출신국적별 한국국적 취득 여부 ····· 106
〈그림 Ⅳ-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 113
〈그림 Ⅳ-4〉 입국시기별 배우자 소개경로(국제결혼) ····· 122
〈그림 Ⅳ-5〉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어 습득 의향 ····· 135
〈그림 Ⅳ-6〉 근로만족도 ····· 142
〈그림 Ⅳ-7〉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1순위, 2순위) ····· 144

〈그림 Ⅳ-7〉 미취업 사유 ····· 148
〈그림 Ⅳ-8〉 영역별 의사결정주체(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 151
〈그림 Ⅳ-8〉 부부관계 만족도(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 158
〈그림 Ⅳ-9〉 사전정보 차이로 인한 갈등요인(복수응답) ····· 160
〈그림 Ⅳ-10〉 배우자의 폭력 및 통제경험 유형(복수응답) ····· 161
〈그림 Ⅳ-11〉 부부싸움의 원인(복수응답) ····· 163
〈그림 Ⅳ-12〉 부부싸움 빈도 ····· 164
〈그림 Ⅳ-13〉 국제결혼 권장도(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 168
〈그림 Ⅳ-14〉 한국에서의 출산자녀 수 ····· 172
〈그림 Ⅳ-15〉 출산 시 어려움 ····· 174
〈그림 Ⅳ-16〉 자녀와의 언어사용 ····· 178
〈그림 Ⅳ-17〉 보육시설 미사용 사유 ····· 182
〈그림 Ⅳ-18〉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 ····· 183
〈그림 Ⅳ-19〉 자녀양육 시 필요한 지원 ····· 186
〈그림 Ⅳ-20〉 향후 출산 자녀수 ····· 188
〈그림 Ⅳ-21〉 향후 출산 계획 없는 이유 ····· 190
〈그림 Ⅳ-22〉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 196
〈그림 Ⅳ-23〉 모국가족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 201
〈그림 Ⅳ-24〉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복수응답) ····· 202
〈그림 Ⅳ-25〉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 205
〈그림 Ⅳ-26〉 주변인의 노력과 역할 정도 ····· 220
〈그림 Ⅳ-27〉 한국생활의 어려움(1순위) ····· 231
〈그림 Ⅳ-28〉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 233
〈그림 Ⅳ-29〉 국가기관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253
〈그림 Ⅳ-30〉 한국인 배우자의 참여 가능성 ····· 267
〈그림 Ⅳ-31〉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 270
〈그림 Ⅳ-32〉 사회복지서비스 포트폴리오분석 ····· 304
〈그림 Ⅳ-33〉 출신국적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307

〈그림 Ⅳ-34〉 가구소득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308
〈그림 Ⅳ-35〉 취업 의사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309
〈그림 Ⅳ-36〉 취업을 못하는 이유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309
〈그림 Ⅳ-37〉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310
〈그림 Ⅳ-38〉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311
〈그림 Ⅳ-39〉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312
〈그림 Ⅳ-40〉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313
〈그림 Ⅳ-41〉 출신국적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314
〈그림 Ⅳ-42〉 가구소득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315
〈그림 Ⅳ-43〉 취업 의사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316
〈그림 Ⅳ-44〉 취업을 못하는 이유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316
〈그림 Ⅳ-45〉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317
〈그림 Ⅳ-46〉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318
〈그림 Ⅳ-47〉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319
〈그림 Ⅳ-48〉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320
〈그림 Ⅳ-49〉 출신국적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321
〈그림 Ⅳ-50〉 가구소득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322
〈그림 Ⅳ-51〉 취업 의사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323
〈그림 Ⅳ-52〉 취업을 못하는 이유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323
〈그림 Ⅳ-53〉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324
〈그림 Ⅳ-54〉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325
〈그림 Ⅳ-55〉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326
〈그림 Ⅳ-56〉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327
〈그림 Ⅳ-57〉 출신국적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328
〈그림 Ⅳ-58〉 가구소득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329
〈그림 Ⅳ-59〉 취업 의사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330
〈그림 Ⅳ-60〉 취업을 못하는 이유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330
〈그림 Ⅳ-61〉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331

〈그림 Ⅳ-62〉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332
〈그림 Ⅳ-63〉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333
〈그림 Ⅳ-64〉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334
〈그림 Ⅳ-65〉 출신국적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335
〈그림 Ⅳ-66〉 가구소득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336
〈그림 Ⅳ-67〉 취업 의사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337
〈그림 Ⅳ-68〉 취업을 못하는 이유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337
〈그림 Ⅳ-69〉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338
〈그림 Ⅳ-70〉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339
〈그림 Ⅳ-71〉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340
〈그림 Ⅳ-72〉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341
〈그림 Ⅴ-1〉 수용도 종합 ····· 364

## ▣ 연구요약

# Ⅰ 서론

□ 최근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의 증가로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 다민족사회로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한국생활에 원활히 정착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은 단지 결혼이민자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임.

□ 정부도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음. 다문화관련 법제도 마련과 결혼이민자의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부처가 확대되고 투입예산이 늘어나는 등 정책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차원에서도 다양한 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족의 거주비율이 높으며,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 다문화가족정책은 전형적인 휴먼서비스이므로 가족원의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통해서만 실효성이 확보되며 이는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기관을 포괄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가 무엇보다 요구되므로, 서울시의 다문화가족의 구체적인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서울시민의 다양성에 관한 수용능력 증진이 요구되는 상호 발전의 과정이므로 서울시민을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자로 포함하는 통합주의적인 관점의 연구도 필요함.

□ 본 연구는 서울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욕구와 수요를 조사·분석 및 서울시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정착을 돕는 보다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다문화정책마련 및 지원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다문화사회로의 사회현상과 다문화이론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지향점 연구
- ○ 다문화가족 현황분석 및 다문화관련법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구
- ○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일반현황,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한국문화적응 및 사회생활, 복지욕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등 분석
- ○ 서울시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도, 정책요구도, 사회통합참여도 등을 분석
- ○ 중장기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정책방안과 추진체계 제언

□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기초 통계자료 수집, 관련 문헌연구,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서울시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식조사, 결혼이민자 그룹심층면접 등을 실시하고 제2차에 걸친 자문회의와 정책토론회 실시

○ 기초통계 수집 및 문헌연구

-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 다문화사회 관련 문헌 검토
- 전국 및 서울시 다문화가족 통계 및 정책, 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집 및 현황 분석

○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외국인 배우자 842명, 한국인 배우자 177명 등
- 조사방법 : 다문화가족관련 기관의 협조 하에 일대일 면접설문방법
- 표집방법 :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자의 지역별, 국적별 분포를 고려한 비례확률 표집
- 설문지 :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련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 작성. 이를 5개 다국어로 번역(중국어, 일본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 조사내용 : 국제결혼과정,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 가족가치관, 가족 갈등, 결혼이민자 가족과의 관계, 자녀양육 현황과 정책수요,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사회문화적 적응 및 스트레스, 사회복지실태와 수요 및 만족도, 건강문제, 정책수요 등
- 조사기간 : 2008. 7. - 10.

○ 서울시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식조사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15-69세 이하 시민 1,0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을 고려하여 서울 전 지역을 포괄한 임의할당
- 조사내용 : 국제결혼이민자 수요와 느낌, 국제결혼이민자 수용도, 국제결혼이미지, 다문화 관련 정책 욕구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의향 등
- 조사기간 : 2008. 10.

○ 그룹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여성 24명
- 조사방법 : 4 - 5명씩 그룹심층면접
- 표집방법 : 1차 설문에 참여한 기관의 협조를 얻어 국적별, 거주지별을 고려하여 선정
- 조사내용 : 다문화 사회통합 지원사업 현황,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현황 및 특성, 중앙정부와 NGO 등과의 연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통합 정책 및 추진체계에 대한 입장, 관련 정책의 수요도 등 조사
- 조사기간 : 2008. 10.

○ 자문회의
○ 정책토론회

□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정책욕구 파악
○ 서울시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도 파악
○ 서울시의 중장기적 다문화가족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적극적인 동역자로서의 역할에 기여

# II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론적 배경

□ 특정한 사회 단위를 넘어선 초-국가적 이주는 인구 구성과 사회의 단위, 사회 성원들간의 관계 등에 걸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와 거주자-민족-시민'을 전제로 한 근대 민족국가의 질서와 이를 가능하게 했던 동질성에 대한 상상과 신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을 낳음.

□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단기간 내에 외국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자체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관련된 정책적 경험 역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 다문화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다문화정책의 부재라는 한계와 혈통주의와 '단일민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유지해 한국사회가 민족적, 문화적으로 상이한 이주민을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정부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다문화관련 정책들을 수립하려 함.

□ 다문화관련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제3차 종합지원대책인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②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적 용해의 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③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였고, ④ 사회비전 2030에서는 세계와 교류하는 다문화사회, 차별과 배제가 없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고, ⑤ 여성부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결혼이주여성과 새터민 여성들을 정책대상에 포함시켰으며, ⑥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다문화가족정책을 제시하였고, ⑦ 법무부는 중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외국인 인권옹호를 위해 제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다문화정책의 특징은 ①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사회적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될 뿐이며, ② 다문화가족정책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편중되어 있으며, ③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라

기보다는 별도의 교육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온정적 수혜자의 존재로 설정되는 경향이 짙으며, ④ 현재 다문화가족사업은 혈연주의, 가부장적 사회유지에 기반하면서 한국어 교실, 한국문화체험 등 한국사회로의 동화주의적 성향이 강함.

□ 따라서 진정한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부처별 단기별 필요성에 따른 개별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수립과 정책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자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역할을 정립하여 정책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

## III 다문화가족 실태 및 다문화관련법·정책 동향

□ 2008년 7월 현재 행정안전부의 보고에 의하면, 외국인 주민은 891,341명이며 이중 외국인 근로자는 437,727명(49.1%),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체류 중인 자는 102,713명(11.5%)이고 혼인귀화자는 41,672(4.7%)명이며 국제결혼 가정자녀도 58,007명(6.5%)이다.

□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 31.2%, 서울 29.2%, 인천 5.5%로 수도권지역에 거의 65.9%가 체류하고 있음.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에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도 매년 전년도에 비해 평균 30% 정도 증가하다고 2006부터 증가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나타냄.

□ 서울 서베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 거주 외국인은 2007년 현재 229천명으로 서울 인구의 2.2%를 차지하며 10년 전에 비해 4.3배 증가했으며 이중 12.3%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로 3년 전에 비해 91.1%가 증가했음.

□ 다문화관련 국제법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이 있으며, 국내법규로는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재외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거주외국인지원조례 등이 있음.

□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책이나 서비스는 교육, 문화, 복지,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지원은 여성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의 다문화가족 정책이나 서비스는 2008년 총 110건이나 인구수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 ① 정책 대상이 결혼이민자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가정의 자녀 및 배우자, 기관종사자,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며, ② 초기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체험 등 일부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별 출신국별 다양한 욕구 반영이 부족하고, ③ 다문화관련 사업들이 중복 시행되고 단편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사업 연계가 미흡하며, ④ 자치구에 다문화가족 전담조직 미설치,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추진체계가 미성숙단계에 있으며, ⑤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직 분산적이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며, 자치구 재정자립도, 민간단체, 기업지원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여건에 따른 격차가 있음.

□ 다문화정책은 각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특색이나 환경에 따른 특수성을 살려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므로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은 ①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글로벌 빌리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행정정보서비스와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②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서울시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지원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③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주기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시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④ 다문화인재를 공공분야에 적극 유치하는 조치를 취하여 다문화인재의 활용으로 서울 글로벌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IV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욕구

□ 다문화가족 절반 이상이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반정도가 가구수입이

100-300만원 사이에 있으며 평균연령차는 11세 정도로 연령차가 한국인부부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남.

□ 국제결혼당시 어려움으로 외국인 배우자는 '의사소통',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한국인 배우자는 '의사소통', '짧은 결정기간'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국제결혼의 이유로는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와의 행복한 결혼생활', '경제적 안정', '모국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등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배우자와의 행복한 결혼생활', '순종적이고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부상담 등 이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분석됨.

□ 결혼이민여성 중 18.5%만 경제활동을 하며 월평균수입은 50-100만원이 41.7%로 가장 높았음. 취업동기는 생활비 보충, 가족생계유지, 자녀양육비 충당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분석되며, 향후 취업의사는 77.7%가 있으나, 취업의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자녀와 집안 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한국어가 서툴러서',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로 나타나 자녀양육지원과 더불어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고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됨.

□ 다문화가족의 의사결정주체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부부가 함께 하나 자녀교육문제, 직장문제 등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결혼기간, 국적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다만 경제적 문제는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가 결정주체가 되는 것으로 분석됨.

□ 부부관계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을 나타났으나 항목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가장 커다란 차이는 가사노동부담으로 나타났음. 부부싸움은 70%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이혼고려는 20% 정도가 고려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녀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어서'가 높게 나타남.

□ 결혼이민여성중 배우자로부터 21.4%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며, 그 행태로는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모국에 송금을 못하게 하거나',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함.

□ 결혼이민여성 50% 정도가 출산경험이 있는데 출산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문제가 가

장 커다란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시 필요한 지원으로는 한국어교육 및 자녀양육관련정보 제공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보육은 보육시설 이용보다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사용하는 언어로는 한국어와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결혼이민자 67% 정도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정도는 모국가족과 일주일에 1-2회 정도 연락을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도움 매체로는 행정기관이나 다문화관련기관들보다 배우자를 비롯한 모국인 친구 등 사람이 85.3%로 나타나 기관의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됨. 한국문화 적응시 겪는 스트레스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한국어로 의사소통', '사회생활참여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배우자보다 한국인배우자가 상대적으로 가부장적 사고가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결혼이민자 93.8%가 한국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어려움의 정도는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움', '한국문화이해', '자녀양육문제' 순을 나타나 이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요청됨.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이용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행정기관, 보건소, 병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미이용 사유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해 정보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개선이 요구됨.

□ 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도를 조사해 본 결과 한국어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 한국문화체험교육, 건강상담/의료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순으로 나타나 한국어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 삶의 만족도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51.9%가 만족한다고 한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62.2%가 만족한다고 나타나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한국인 배우자보다 떨어지므로 이 원인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V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식

□ 서울 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보면 서울시민들이 다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직업종류별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관대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 다만 항목별 내용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직 다문화사회에 대한 경험 부족과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민들 사이에서 심도깊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서울 시민들은 다른 어느 국가의 시민들보다도 다문화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다만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의 변화에 긍정적이긴 하나 가치관이나 정서적인 차원까지 수반되지는 않아 문화지체현상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야기되기는 하나 이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느냐에 따라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

□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79.6%,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68.9%, 배우자가 되는 것에 52.7%가 찬성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용도가 긍정적이나 자신과 가까운 관계가 됨에 따라 수용도가 감소함.

□ 결혼이민자 자녀의 양육지원에 76%, 위장결혼 처벌강화에 96.9%, 다문화정책수립에 그들의 의견반영 91.4%, 다문화가 경쟁력 강화기여에 77.6%,가 찬성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인상에는 33.2%만이 찬성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의향에는 44.3%만이 찬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서울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은 우선 연령별로 차이는 있으나 20대, 30대, 40대가 다문화가족에 대해 개방적인데 비해 10대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지 못한 경향을 보임. 10대의 다문화 개방성은 서구문화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며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 필요함.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경향을 보이며 판매

·영업직이나 기술·생산직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가족들이 더 증가하고 그들의 자녀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강화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들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의식개선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다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학교교육, 사회교육과정에 다문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즉 향후 갈등을 예방하고 다문화정책이 올바른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다문화를 필수적으로 교육하고, 공적기관과 민간기관, NGO와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활성화하며, 인권교육, 성평등교육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함.

□ 서울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의식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서울 통계조사에 다문화에 대한 의식조사를 지표화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다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함.

# VI 결론

□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정책으로의 전환
- ○ 패러다임의 전환: '지원'에서 '공생'을 넘어 '통합'으로
- ○ 가족생애 주기와 가족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 필요
-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체계화, 다양화
  -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대상의 다양화
  -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내용의 다양화
- ○ 다문화가족정책의 충분한 예산확보
- ○ 서울시 다문화관련 조례 제·개정
  - - 여성발전기본조례 등 개정
  - - 다문화가족관련 조례 제정
- ○ 다문화교육 실시
  - - 학교교과과정에 다문화교육 포함
  - - 시민교육으로 다문화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정책을 위한 기반구축
- 다문화가족 통계 구축 및 DB화 작업
- 다문화사회 지수 개발
○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정비율 다문화가족 사업에 할당

□ 주요 정책제언
○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육의 다각화, 전문화, 체계화
- 한국어교육교사의 전문성 확보
- 맞춤형 한국어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환경개선
○ One-Stop Service 지원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 모니터링단, 자원봉사단 구성 및 지원
○ 생활정보 제공 및 보급 확대
○ 의료·건강지원
- 임·출산지원 서비스
- 통·번역 요원 선발, 양성 파견
○ 자녀양육을 위한 서비스 지원
- 다문화영유아 보육교사 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사업 중 일정비율 다문화가족에게 할당
- 다국어로 된 보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 다문화관련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중앙-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간, 부서간 및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다문화담당관 등 전문인력배치 및 다문화위원회, 다문화협의회 설치
○ 맞춤형 서비스 내지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구축

# I

# 서 론

# Ⅰ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연구의 배경

외국인 체류자가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 증가추세는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한국은 197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동력 송출국이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1987년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자수가 외국으로 나가는 이민자 수를 초과하는 이주변천을 경험했다. 1988년 올림픽경기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외국인의 국내유입에 대한 각종규제를 제거해 나갔으며 1991년 산업기술연수제도가 도입되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송출비리, 인권침해, 불법체류라는 치명적 문제를 양산하여 2004년 고용허가제가 대안으로 실시되어 2006.12.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가 병행으로 실시되다가 2007.1.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제결혼의 일반화는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예측되지 못했던 것으로, 당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 경우에도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현저히 증가하여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일반적인 결혼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주로 한국계 중국인, 중국한족,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태국, 러시아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성별로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의 이주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는 특징과 국가간 지역간의 불균등한 경제적 발전에 기인하기는 하나 그 안에는 인종, 계급, 젠더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편, 국제결혼,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주목되는 것은 그 자녀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를 비롯하여 사회 공적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국제결혼 급증세를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이들의 취학은 앞으로 더욱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라는 흐름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가는 한국사회가 이제 단일 언어와 단일 문화로 이루어진 민족국가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변하면서 이제 결혼이민자들은 장기간 내지 영구적으로 한국사회에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생활에 원활히 적응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은 단지 결혼이민자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위해 국경을 넘은 이동, 언어문제, 국적을 기초로 한 시민권 제도, 경제적 어려움, 낯선 생활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 상황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의 중심적인 인적자원으로 성장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의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결혼, 입국, 체류자격, 복지혜택 등과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에 있어서도 관련 부처가 확대되고 투입예산이 늘어나는 등 정책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관을 통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다문화사회 형성의 한 축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여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는 개인적 사정이나 가족들의 협조 부족 등으로 서비스 참여가 제약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며, 가족관계 교육, 사회문화통합 서비스 등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을 서비스 단위로 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참여보다는 여성 개인의 참여가 대부분으로 자칫 한국사회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일방적인 적응과 동화만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문화사회를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고 경험부족으로 인해 정책패러다임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여전히 이주민의 주류사회로의 동화를 내용으로 하는 동화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듯하다. 다문화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들도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한국생활적응 및 이해 등 일부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다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의 지향을 위한 패러다임이나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 추진체계의 효율성 면에서도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수요자의 요구와 동원 가능한 자원의 조정 및 통합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즉 전형적인 휴먼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는 결혼이민자와 가족원의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통해서만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기관을 포괄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 2. 연구의 필요성

다문화사회 형성의 주축을 이루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연구는 지방화 추세와 함께 지역사회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등에서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표명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민자의 거주비율이 높은 서울에서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지역별로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견해들도 일부 있으나, 지역에 따라 생활환경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실태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생활문제에도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역시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별로 다문화가족의 구체적인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비중이 높고,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일례로, 한국여성개발원(2006)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서울에 소재해 있는 총 127개의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자치단체,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포함)에서 2006년 7월 당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자치단체 3곳 뿐이었다(김이선 외 2006). 이후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의 연구에 의하면 단 5개월 만에 13개(동사무소 4곳,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 사회복지관 7곳)로 늘어났고, 정부가 결혼이민자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던 1990년대부터 활동하고 있었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까지 포함한다면 17개(시민사회단체 10곳, 종교단체 7곳)로 증가하였다(양옥경 2007). 최근에 그 수는 더욱 증가하여 공공기관 25개, 종교단체 3곳, 민간단체 12곳 등 40개로 늘어났다(행정안전부자료).

그러나 외국인 지원기구의 수는 인구수에 비례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결혼이민자 밀집지역 대비 결혼이미자 지원서비스기관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추진체계 상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서울시의 활동기관수의 저조는 자칫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 중 하나로 인정하고 이들이 서울에서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전제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결혼생활 및 가족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결혼생활 및 삶의 질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문화·법제도적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원서비스를 점검하는 연구 역시 필요하다.

더불어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수용능력 증진이 요구되는 상호 발전의 과정이므로 국민인 서울시민 역시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자로 포함하는 통합주의적인 관점의 연구도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가 여러 중앙부처에 연관되어 시행되며 지역차원에서도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다원적인 채널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 조정과 협력을 통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가 무엇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지원서비스 수행주체들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이주 및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 가운데 이주민 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이주의 동기와 과정, 이주를 둘러싼 구조, 이주사회에서 겪는 갈등과 적응전략, 이들의 경험세계, 출신사회와의 관계 등에 주목한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다양한 이주민 집단 가운데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주민 집단 가운데 제일 처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국제적 인구이동과 노동력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한국의 사회문제를 접근하는데 초점을 두었다(설동훈 1998; 이혜경 1994).

2000년대 이후에는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갈등, 특히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로 연구의 초점이 전환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의 이주민 가운데 가장 집중적인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결혼이민여성들로 이들의 생활실태와 적응의 어려움, 정책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의 구조와 그 안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위치, 한국사회에서의 가족관계와 경험세계, 적응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이혜경 2005; 윤형숙 2005; 김민정 외 2006; 김이선 외 2006)도 이루어졌다.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국제결혼의 급증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결혼의 증가를 전지구화가 수반하는 '이주'의 형태로 다루기도 하고,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와 출생성비의 상승,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에 따른 결과로서 보기도 하고 단일민족문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편, 남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최근의 연구들은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성별화된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이라는 새로운 흐름은 국제결혼의 증가는 물론, 가사노동 등 돌봄 노동의 영역이 급속하게 상품화되고 있으며, 이주영역에서 젠더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윤정숙·임유경, 2004; 이혜경 2004; 이혜경 외 2006). 또한 외국인 남성의 국내이주는 일반적으로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외국인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경향이 강해 이주에서의 성별 구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은 인종, 국적 계급의 위계가 젠더의 위계와 상호작용 함으로써 하나의 논리로 단일화 할 수 없는 복잡한 층위

를 구성함으로서 젠더와 지구화 및 이주현상으로부터 복합적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침해와 상품화된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제기(이금연 2003; 김상임 2004; 한국염 2004)로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 지원단체는 이주여성들이 겪는 폭력과 차별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법적·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에 주목한 연구들(설동훈 외 2005; 김민정 외 2006; 한건수 2006)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뿐 아니라 부계 중심의 혈통주의와 가부장적 가족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드러내는 데 있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을 매매혼으로 규정하고 외국 여성을 국제결혼의 희생자로 고착화함으로써 외국 여성의 행위자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김은실 2004; 김정선 2004; 윤형숙 2005)은 여성들이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국제결혼을 '선택'하거나 국가의 경계를 넘으며,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행위자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결혼을 통한 이주를 여성들의 삶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삶을 개척해가는 행위주체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이주여성을 수동적이고 무력한 피해자로 '피해자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이민자와 함께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많은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집단은 '다문화가족 자녀'이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해서는 주로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설동훈 2003)과 제도상의 한계로 인한 교육적 소외문제(김정원 외 2005) 등이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국제결혼 자녀의 학습과정 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차별경험, 이와 관련된 자아정체성 문제(오성배 2005; 조영달 2006; 금명자 외 2006) 등으로 연구대상과 주제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 여성의 국내이주가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데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목하며 그들의 노동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몇몇 연구들(석현호 외 2003; 신기동 외 2005)도 있으나,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의 가족생활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외국 남성의 국제결혼가족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국제결혼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충청남도(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김영주 2006), 전라북도(이윤애

2004; 박재규 2005), 전라남도(한영현 2006), 강원도(김은숙 외 2006), 경상북도(정일선 외 2004), 경기도(정기선 외 2007) 등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국제결혼가족의 현황과 관련 정책, 그리고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이선 외 2007)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다문화사회에서의 갈등극복과정,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방향의 다각화를 통한 총체적 접근 강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 체계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성 증진 및 쌍방향 소통 기반 조성,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 부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분포비율이 높은 반면,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2007년 보고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양옥경 2007)의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안정성을 높이고 가족 및 지역사회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사회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학, 인류학, 교육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결국 다문화가족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정책욕구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서울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욕구와 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이들의 안정된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정착을 돕는 보다 실

효성 있는 지원체계구축과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하여 전국과 시·도별, 자치구별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살펴보고,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가족이 갖는 복지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결혼이민자가족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살고 있는 모든 국적 출신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가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문화관련 기관의 협조하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므로 이로 인한 제한이 있어, 다문화가족 중에서 결혼이민자가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본 연구가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여 갖는 차별성은

첫째, 결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의 결혼생활과 가족관계가 드러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가족지원정책을 논의하고자 하며,

둘째,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했던 임의표집 방식이 아닌 서울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지역별을 고려하여 표집 틀을 구성하고 다문화 관련 서비스지원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셋째,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실태조사 방식이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다문화관련 지원서비스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서울지역 내 총 35개 다문화가족 관련기관과 그 종사자 및 활동가들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서울시 전 지역을 아우르는 조사를 행하였고,

넷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와 가정에서 겪는 차별과 부조리를 드러내고 성별 고정관념 및 성평등 의식을 조사하여 평등한 사회와 가족문화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다섯째, 다문화관련기관의 협조하에 국적별, 거주지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결혼이민여성들의 그룹심층면접을 통해 현 다문화정책에 대한 견해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다 발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점,

여섯째, 서울시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도, 이미지 등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 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통합적인 다문화가족정책을 수립하고자 한 점 등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살펴보고 다문화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론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지향점을 연구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초 실태현황 및 현재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국제결혼과정과 결혼생활 및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법제도적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넷째,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생활 및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본다.

다섯째, 현재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관련 각종 시책에 대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이들의 결혼생활 및 가족생활, 지역사회의 안정된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현 시책에 대한 견해와 문제점을 점검한다.

여섯째, 서울시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식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들과 서울시민들과의 접점을 통하여 바람직한 다문화정책을 알아본다.

여섯째, 서울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서울시 다문화가족통합정책의 지향점과 이를 근거로 한 다문화가족정책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 제4절 연구방법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기초 통계자료 수집, 관련 문헌연구,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서울시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식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한 정책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지역 내 다문화가족 여성들에 대한 그룹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정책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조사 분석한 내용을 보완, 발전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1. 기초통계 수집 및 문헌연구

○ 전국 및 서울지역 내 국제결혼 기초통계 수집 및 현황 분석
○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 다문화사회 관련 문헌 검토
○ 정부 및 서울시, 서울시내 25개 기초자치단체 다문화가족정책 행정자료 수집 및 분석
○ 서울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서비스 현황 수집 및 분석

## 2. 설문조사

○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외국인 배우자 842명, 한국인 배우자 177명 등
- 조사방법 : 다문화관련기관의 협조 하에 일대일 면접설문방법
- 표집방법 :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자의 지역별, 국적별 분포를 고려한 비례확률 표집
- 설 문 지 :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련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5개 다국어로 번역(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 조사내용 : 국제결혼과정,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 가족가치관, 가족 갈등, 결혼이민자 가족과의 관계, 자녀양육 현황과 정책수요,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사회문화적 적응 및 스트레스, 사회복지실태와 수요 및 만족도, 건강문제, 정책수요 등 포함
- 조사기간 : 2008. 8. - 10.

○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식조사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15-69세 이하의 시민 1,0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을 고려하여 서울 전 지역을 포괄한 임의할당
- 조사내용 : 국제결혼이민자 수요와 느낌, 국제결혼이민자 수용도, 국제결혼이미지, 다문화 관련 정책.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의향 등
- 조사기간 : 2008. 10.

## 3. 그룹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여성 24명
○ 조사방법 : 4 - 5명씩 그룹심층면접
○ 표집방법 : 1차 설문에 참여한 기관의 협조를 얻어 국적별, 거주지별을 고려하여 선정
○ 조사내용 :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그룹심층면접조사(F.G.I) 실시, 다문화 사회통합 지원사업 현황,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현황 및 특성, 중앙정부와 NGO 등과의 연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통합 정책 및 추진체계에 대한 입장, 관련 정책의 수요도 등 조사
○ 조사기간 : 2008. 10.

## 4. 자문회의

○ 제1차 자문회의
- 일 시 : 2008. 5. 2, 14:00 - 17:00
- 장 소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세미나실 3
- 참석자 : 양민석(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교수)
양혜우(이주노동자인권센터)
김민정(이주여성인권센터)

○ 제2차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
- 일 시 : 2008. 12. 23, 15:00 - 18:00
- 장 소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세미나실 1
- 참석자 : 양민석(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교수)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5. 정책토론회

○ 일 시 : 2008. 12. 17, 14:00-17:00

○ 장　소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시청각실
○ 참석자 : 한승준(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소라미(공익변호사 그룹 공감변호사)
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영돈(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민석(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교수)
박근수(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과장)
진잉란(결혼이민자, 다문화강사)

## 제5절 기대효과

○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현황파악
○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정책욕구 파악
○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의 바람직한 지향점 모색
○ 서울시의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적극적인 동역자로서의 역할에 기여

# II

#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 II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 제1절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전개와 쟁점

### 1. 초-국가적 이주의 전개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국제적 인구이동은 1970년대 중반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양대 진영간의 긴장완화와 석유자원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의 형성으로 인해 초국가적 인구이동과 자본, 상품, 문화의 흐름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교통인프라의 발전으로 이주의 규모나 속도 면에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었으며, 더불어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이동을 위해 이주의 문호를 개방하는 등 국제적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경을 넘는 이주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들어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의 단계로 접어들어 국가간 인구이동이 특정 단위들 간에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부수적인 현상을 넘어서 그 자체가 일상이 되었고,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구현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초-국가적 세계'가 형성되어 일개 민족국가의 주권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이 일상적으로 전개되어 무역과 통신은 물론 문화와 금융, 환경과 테러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인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이주 역시 일상으로 자리잡아 가는 바야흐로 '이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중에서도 여성들의 이주화는 눈에 띠는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 2.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변화

특정한 사회 단위를 넘어선 초-국가적 이주는 인구 구성과 사회의 단위, 사회 성원들간의 관계 등에 걸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특정한 영토 내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일정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형성, 발전해왔던 근대 민족국가의 존재 기반과 모순되는 움직임이 일상화되면서 국가 단위를 전제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질서의 변화는 불가

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초-국가적 이주의 본격화는 '거주자-민족-시민'을 전제로 한 근대 민족국가의 질서와 이를 가능하게 했던 동질성에 대한 상상과 신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왔다. 즉, 이주의 일반화로 인해 민족적 공유와 동질성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집단이 국가 영토 내에 상시 거주하게 됨은 물론 특정 집단의 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면서 절대시 되어왔던 공유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경우까지 등장하고 있다. 결국, 국민요건은 불분명해지고, 국민과 국민이 아닌 자의 경계도 모호해졌으며 국가의 틀 속에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국민'의 범위도 불명확해졌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국가 내부의 혈통적,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해 왔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이주민을 포섭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즉, 직접적으로 이주를 제한하기도 하고, 이주민 가운데 민족적 동질성 내지 그 가능성, 실제적 기여 정도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에게만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제한된 수준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토착시민권(autochthonous citizenship)'과는 구분된 '이류 시민권(second-class citizenship)'을 제도화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혹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토착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서로를 적대시하고 나아가 폭력사태를 조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초-국가적 이주로 인해 민족국가의 틀이 결정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 다양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양성 안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나타나고 이러한 움직임은 다양성의 인정 범위나 사회 통합에 있어서의 다양성의 가치, 사회통합의 구체적인 대안 등에 있어 하나의 범주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비교되는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몇 가지로 보면 우선 프랑스로 대표되는 공화주의적 모델에서는 사적 생활영역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학교나 직장 등과 같은 공적영역에서는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며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다양성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사실상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공적 영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나타냄으로서 사회 각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한편, 공화주의적 모델과는 달리 공적 영역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경향 역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소수민족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만큼, 이들의 정치 참여나 공공부문에서의 대표성 확보, 교육, 취업, 거주, 문화 향유와 재생산 등에 있어서 별도의 특별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인 평등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를 위시한 이민국가에서는 나아가 다양성을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의 기본적 질서로 받아들여 이를 국가 경쟁력의 주요 동력으로 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다문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대응한 이러한 이상적인 접근방식도 국경을 넘어 민족적 단일성과 동질성을 고수하는 민족주의자를 양성하는 기반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조치로 인해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민족간, 계층간의 갈등이 깊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 한국의 다민족·다문화사회 전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이주 추이와 비교할 때, 한국사회로의 이주 증가는 다소 지연된데 반해 그 전개는 매우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1990년대 초까지도 외국인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할 정도였는데, 그 주된 요인은 한반도의 냉전이었으며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경제적인 위상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주민 유입의 기반이 형성되는 가운데에서도 냉전 구조의 잔존은 한국사회로의 이주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냉전 구조는 단순한 정치적 틀을 넘어서 한국인들을 동일화하고 단일화 시키는데 기여했을 뿐만 사람들의 의식을 경직화시킴으로써 제한적인 차원의 국내 이주와 한국인의 해외이민만을 허용하였으며 이때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강력한 통제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구조 위에서 한국사회로의 외국인 이주는 세계적인 탈냉전 기류에 편승하는 정치적 목적 외에 경제적으로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던 한국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 소련 등 동유럽 국가와 관계정상화를 꾀하고, 1992년 한-중 수교를 맺음으로써 형식적으로나마 냉전 구조가 해체된 것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는 1990년대 초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 이후로 단기간 내에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 변화를 겪었는데, 10~15년 동안 일어난 이러한 압축적인 이주의 전개는 세계적으로 매우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서구 국가의 이주의 역사는 근대화와 더불어 시작되어 150여년이 넘는 이주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주요한 전환기마다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

어지고 정책의 명암을 달리하며 그 방향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 이주가 최근에서야 시작된 새로운 현상이고, 다민족·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 자체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며, 관련된 정책적 경험 역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한국사회의 특수한 이주의 역사와 구조가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과 논의의 출발을 상당기간 지연시키는데 기여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한편, 1990년대 말까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은 외국인이라기보다는 '한민족'으로 접근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고려인', '조선족'으로 살던 한국계 외국인들에 새터민의 유입이 더해지면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주민을 바라보는 양상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주민의 사회통합문제는 민족공동체 차원에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사회의 다소 이질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한국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정부의 정책은 이들을 일반적인 외국인과 구분하여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출입국과 국내 거주 등에 있어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화 진전에 따라 이미 한국사회에 유입되었던 '한민족' 이외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연히 존재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이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민족' 이주민에 비해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므로 민족주의적 담론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가시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외국인 이주민의 존재와 이들과 관련된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이 부상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증가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되어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었던 국제결혼,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전체 결혼의 10%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결혼 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세는 1998년 개정 국적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계 중국인이 대세를 이루던 국제결혼 대상자가 점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출신으로 전환되면서 '한민족'을 전제로 한 사회 구성의 일대 변화가 가시화되었다.

이들은 일시적인 체류자로 간주되던 기존의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한국사회에 상당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거주하면서 한국사회와 전면적인 관계맺음이 기대되는 '최초의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들의 등장은 이주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본격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이주민 자녀들이 학교 등 공적인 영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한국사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으로 당연시 되어 오던 '혈통'에 대한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침해와 생활 적응상의 어려움, 불안정한 가족관계 등의 문제, 자녀의 발달상의 문제 가능성 등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부, 언론의 대응이 급진전되면서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단일민족에 기초한 사회 구성의 전제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민족'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과 정부의 정책, 이주민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 제2절 한국의 다문화정책 패러다임 동향

### 1.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관련 논의

'다문화'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폭넓고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기술적인 개념인 동시에 특정한 사회 구성을 목표로 한 이념적 지향을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기술적 개념인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어느 사회에서든 문화적 다양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 모든 사회가 다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의미에서는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관심을 둘 만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비로소 '다문화'가 의미를 얻게 되며 그러한 사회만이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계기는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에 대해 의문과 문제 제기를 하는 집단이 나타나고, 이들의 권리와 사회통합문제가 대두되는데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단일민족성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던 사회가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것은 국가 외부로부터의 이주민의 증가가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한편, '다문화'는 이념적 지향으로서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상당정도 자리매김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공공 정책의 이념으로 채택한 국가를 보통 '다문화국가' 또는 '다문화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회를 이루는 기본원리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증진해 가는 것이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며, 나아가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이를 기초로 한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가려는 움직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특징이 있다. 물론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의 이상과 실제를 단일한 틀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국가를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집단의 구성원을 주류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거나 배제하려는 국민형성정책이 아닌 집단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정해 가려는 흐름은 공통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양한 민족 집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사회적,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모든 다문화사회가 다문화주의의 이념적 지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각기 다른 지향을 토대로 다양성에 접근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국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뿐, 그 자체가 다양성에 대한 완성된 접근방법이나 정답은 아니며 오히려 다분히 논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문화주의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단일문화주의와 정면으로 대치될 뿐 아니라, 국가의 사회구성이나 발전 단계에 따라 사회 통합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다문화주의를 둘러싸고 국가와 국민 간에, 계층 간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된 것은 20세기 말부터 급격히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이주자가 가시화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별 다른 논쟁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열린 다문화사회'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그것이 피상적인 모토 수준에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가 폭넓은 참여와 이해, 논의과정을 거쳐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가 급격한 전환을 이룬 데에는 한국사회가 예견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이주의 증가세와 이주민의 사회적 가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도 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주나 이주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 그 대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상적인 차원에서 진단되고 해결책이 모색되어지고 있다는데 보다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다문화 담론 중 상당수는 '다문화', 또는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문화'나 '다문화사회'의 성격 내지는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다인종·다민족사회로서 한국사회가 도입해야 하는 공공정책이나 이주민에 대한 사회일반의 수용 자세에 대한 가치로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다문화정책의 부재와 다문화주의의 남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이민 전통국가이자 혈통주의와 '단일민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유지해오면서 제도적으로도 혈통과 민족적 단일성을 근거한 패러다

임에 젖어있는 한국사회가 민족적, 문화적으로 상이한 이주민을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 2. 한국의 다문화정책 동향과 특징

### 1)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동향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사회통합은 다양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구성되고 변화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정부의 정책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관심 형성의 계기 자체가 정부 정책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일종의 열려 있는 텍스트이며 이를 현실화시킨 국가의 정책과 목표 또한 다양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다문화주의와 멀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정치적 개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다문화정책을 보면, 이미 '다문화사회'가 공식적 정책의제로 통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책 목표로까지 채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4월 정부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정책계획에서 '다문화사회'를 비전이나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주자를 오직 일시적 체류자로만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은 출입국 관리에만 한정시켜 왔던 정부가 국제결혼의 급증과 함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사회적응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자 '다문화사회'의 기치를 내걸고 이주자 관련 정책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2006년을 계기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급진전되고 있으나, 그 목표로 표방되고 있는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불분명하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특정한 이념적 지향을 내포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같이 몇몇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제도나 사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일례로, 민족중심주의 반대 개념으로 한 국가(사회)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이념을 표방하면서 '문화적 용해의 장(Cultural Melting Pot)'이라는 특정한 다문화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의 경우, 그 구체

적인 내용은 다문화주의 이념과 별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제시된 '다문화주의'의 기본 방향과는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향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념과 정책이 급조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책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특정한 이념과는 무관한, 어떤 면에서는 모순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관련정책을 크게 구분해 보면 4가지로 구분가능하다.
첫째, 외국인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둘째,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원 및 경제적 자립지원, 셋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넷째,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이다

▌표 Ⅱ-1▐ 다문화관련 정책 분류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외국인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 – 인권침해 및 차별방지를 위한 법령정비: 적극적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차별적 제도 관행의 개선<br>–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차별적 관행방지를 위한 사회통합 모니터반 운영<br>–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br>–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활성화 및 기능 확대<br>– 상담 법률구제 등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성 제고<br>–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 이민자 사회적응지원 및 경제적 자립지원 | –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우리사회이해 등 기본소양교육의 표준화와 교육운영기관 인증<br>–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증진<br>– 이민자를 위한 지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강화<br>– 결혼이민자 등 이민자 네트워크 지원, 정부합동 고충상담실시<br>– 문화예술교육 정보화교육/ 소비자 교육/ 부부 가족 교육 실시<br>– 이민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이민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결혼이민자를 위한 출산 보육 등<br>– 이민자의경제적 자립지원: 취업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강화/ 공공부문에 결혼이민자 적극 활용<br>–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영농정착지원 강화<br>–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강화/ 결혼전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증진/ 위장결혼 방지 및 단속강화 |
|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 –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지원/ 학교생활 지원<br>–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립능력배양: 다문화교육 분야 등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강화 |
|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 – 다문화이해 교육 및 홍보강화: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증진/ 다문화포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br>– 참여 및 소통강화: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및 참여확대/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장 활성화 |

다문화관련 정책의 경과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제3차 종합지원 대책인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은 1, 2차 대책에서 다룬 '체류지원 및 생활안정대책' 중 미흡한 부분과 정보제공·취업·보건의료서비스 지원내용을 보강하였으며,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체계 및 국가적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방안을 포함하여 7대 주요 과제 및 2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한국을 문화적 용해의 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셋째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였는데,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민자·외국인 여성과 자녀, 외국인근로자 등 6대 정책목표 대상을 설정하여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넷째, 사회비전 2030에서는 세계와 교류하는 다문화사회, 차별과 배제가 없는 다문화사회를 주장하면서 정부내 다문화전담기구 설치 및 결혼이민자의 생활보장 등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다섯째, 여성부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결혼이주여성과 새터민 여성들을 정책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초기적응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브릿지 프로그램 개발, 지역여성문화자원의 생산적 가치 증진, 성인지적 문화정책 추진기반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정하였다.

여섯째,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다문화가족정책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가족해체시 등으로 나누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체계화, 확대 다양화여 7대 정책과제에 21개 세부추진과제, 66개 세부사업내용을 구성하였다.

일곱째, 외국인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강화, 사회통합, 이민행정구현, 외국인 인권옹호를 위해 13개의 중점과제,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다.

▌표 Ⅱ-2▌ 다문화가족정책계획의 현황

|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사회비전 2030 | 여성정책 기본계획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 강화대책 | 제1차외국인 정책기본계획 |
|---|---|---|---|---|---|---|---|
| 발표 시기 | 2006. 4 | 2006. 5 | 2006. 5 | 2006. 8 | 2007 | 2008.10.30 | 2008 |
| 관련 부처 | 14개 부처 및 위원회 | 교육인적 자원부 | 외국인정책 위원회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 위원회 | 여성부 | 보건복지가족부 | 외국인정책 위원회 |
| 비전과 목표 | -여성결혼 이민자의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 사회 실현<br>-차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문화 민주적 통합 (Cultural Democratic Integration)으로 한국을 문화적 용해의 장 (Cultural Melting Pot)으로 전환 |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 구현<br>-외국인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br>-우수 외국 인력 유치 지원 | -세계와 교류하는 다문화 사회<br>-차별과 배제가 없는 다문화 사회 | -여성의 역량 강화<br>-일과생활의 조화<br>- 다양성과 차이 존중 |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 사회<br>-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자립 역량강화<br>-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유지<br>-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육성<br>-국민의 다문화 사회이해증진 |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일류 국가<br>-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br>-질높은 사회통합<br>-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br>-외국인 인권 옹호 |
| 주요 내용 | -탈법적 국제결혼 중개 방지 및 결혼당사자 보호<br>-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체류지원<br>-한국사회 조기 정착 지원<br>-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br>-생활안정 지원 강화<br>-사회적 인식 개선<br>-추진체계 구축 | -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우리 국민의 다문화주의 의식 제고<br>-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지원<br>-'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br>-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br>-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br>-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 | -외국국적 동포 포용<br>- 결혼이민자, 외국인여성, 외국인의 자녀 권익 향상<br>-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br>-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br>-불법체류 외국인 인권보호<br>- 다문화사회로의 통합 기반 구축 |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배제집단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 정부 내 전담기구 설치<br>-국제 결혼 이주여성 기초생활 보장, 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 설치, 언어교실 운영 등 지원책 마련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br>-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 통합 지원<br>-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 -결혼중개 탈법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br>-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안정적 생활지원<br>-다문화가족 자녀 임신 출산 양육 지원<br>-다문화아동 청소년 학습 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br>-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강화<br>-해체 다문화 가족 자녀 및 한부모 가족 보호지원<br>-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 |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br>-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도입<br>-외국인 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br>-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br>-결혼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br>-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br>-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조성<br>-외국인 체류질서 확립<br>-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 정보 관리 |

|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사회비전 2030 | 여성정책 기본계획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 강화대책 | 제1차외국인 정책기본계획 |
|---|---|---|---|---|---|---|---|
| | | 녀에게 확대<br>–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학습 지원, 불법체류자 자녀의 신분안정을 위한 부처 협의 추진 | | | | |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국적 업무수행<br>–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 보호<br>–보호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강화<br>–선진적 난민 인정 지원시스템 구축 |

### 2) 다문화 정책의 특징

현재 추진 중인 다문화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다문화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사회적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사회적 부담보다는 수익이 더 크므로 사회적 위험과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둘째, 정책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여성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는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반면, 이주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다문화정책의 핵심에서 배제되어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에서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인과의 혼인관계, 혈연관계에 따라 이주민을 구분하고 정책의 포괄범위를 조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특정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국민에 준하는 공식적 권한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외의 이주민은 일시적 체류자격만을 부여한 채 사회통합 범위에서 배제하는 전형적인 차별/배재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김이선 외 2007). 다양한 이주민 중 특정한 기준에 따라 정책 대상을 선별하는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현실적 추진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정책의 핵심적 대상으로 설정되는 '결혼이민자'나 '국제결혼 자녀', '이주노동자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등의 개념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제도적으로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특정 범주의 이주민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집단적 구분을 전제로 한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을 공인하고 이들을 낙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에서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자들은 국가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라기보다는 별도의 교육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온정적 수혜자의 존재로 설정하는 경향이 짙다. 다문화사회의 핵심은 사회 내에 국가 외부에서 온 이주민을 비롯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체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한다는 데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세계 각국은 이주민들을 요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정책의 파트너이자 나아가 시민으로 인정하여 정책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다문화정책에서는 정책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이주민의 모습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 이들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는 기제 역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심지어 이주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참여는 더욱 제한되어 있어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넷째, 현재의 다문화정책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서비스에 집중됨으로써 한국사회로의 동화 지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어 교육과 한국요리 강습, 생활예절교육 등으로 주로 한국문화를 강조하고 문화적 적응과 동화를 지향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그 기회도 적을 뿐 아니라 다문화 축제나 문화교류 등 일회성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이주민 집단의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결과적으로 동화를 촉진하는데 일방적인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주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이주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요구에 충실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과 관련된 몇몇 현안만을 다루고 있을 뿐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정책으로서의 면모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사회와 본격적인 관련성을 지니는 사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관련 정책계획에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우리 국민의 다문화주의 의식 제고', '다문화사회로의 통합기반 강화' 등을 과제로 도출하고 정책 추진을 계획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며,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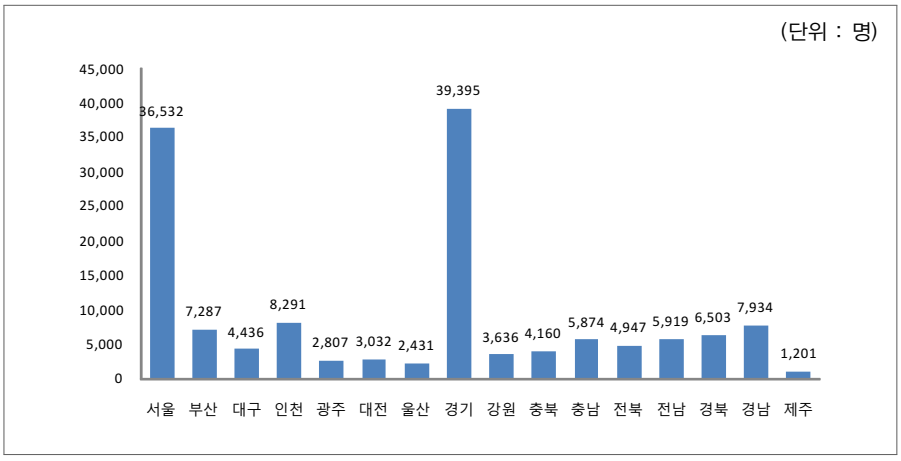
다문화 프로그램의 경우도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 다문화시범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일반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나 서비스 제공자, 교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이나 워크숍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정도로 다문화정책과 한국사회의 관련성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다문화'라는 기치만 내걸고 있을 뿐 그 내용은 지극히 '동화주의'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결혼이민자는 물론 외국인에게 우리의 말과 문화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동화주의' 정책인 것이므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분석

### 1) 16개 시도별 다문화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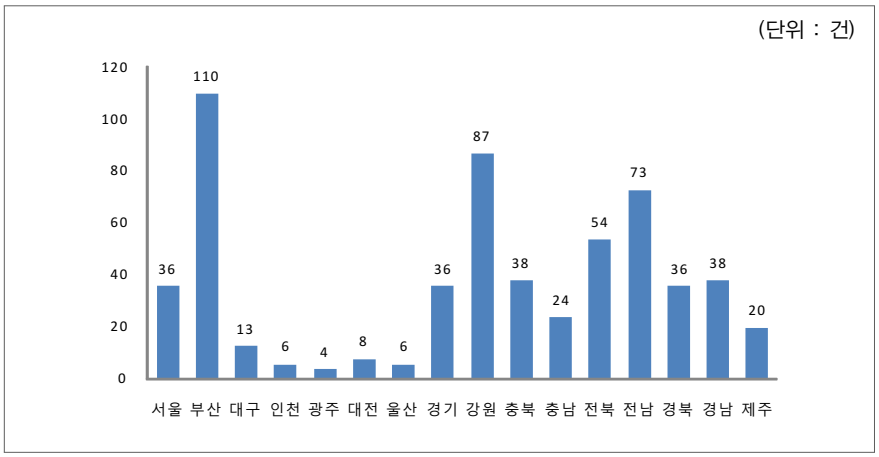
16개 광역시도별로 결혼이민자수를 분석해 보면, 전국에 144,385명의 결혼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에 39,3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36,535명), 인천(8,291명)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결혼이민자의 58.3%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Ⅱ－1〉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수

### 2) 16개 시도별 지원사업(프로그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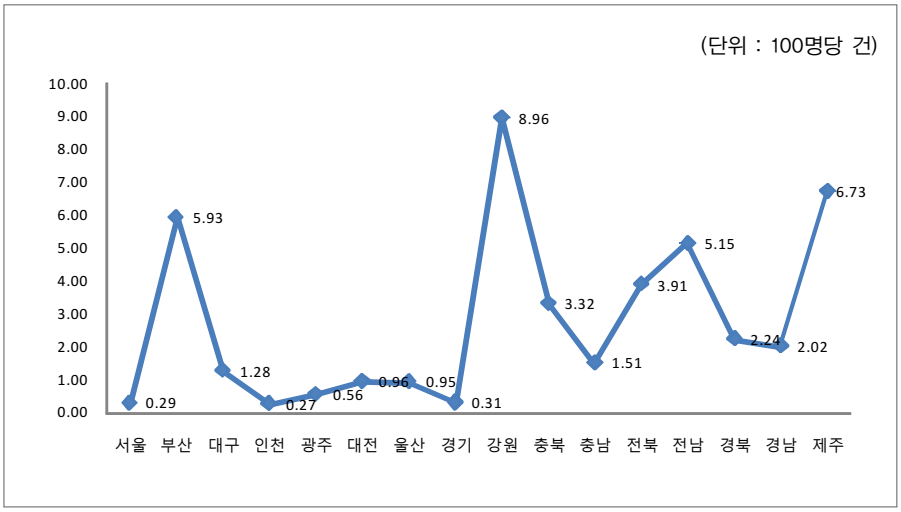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16개 광역시도별로 결혼이민자 및 관련 지원사업 수를 분석해 보면, 총 589개 사업이 진행되어, 광역시도별 평균 36.8개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에서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원(87건), 전남(73건), 전북(54건), 충북(38건), 경남(38건)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많은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광주에서는 4건이 진행되어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2〉 광역시도별 지원사업 수

### 3) 16개 시도별 결혼이민자 수 대비 지원사업(프로그램) 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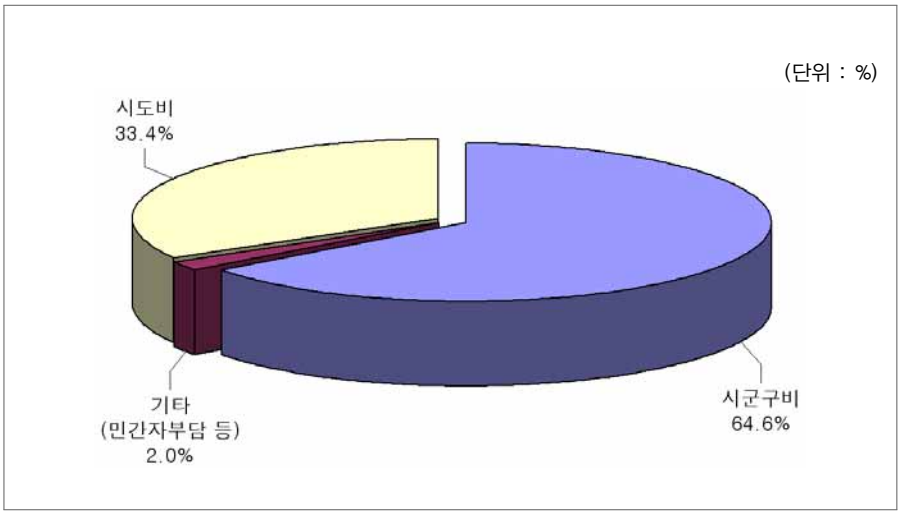
결혼이민자 수(100명당) 대비 지원사업 수를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은 결혼이민자 100명 당 1.41건의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6개 광역시도별로는 강원이 100명당 8.96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6.73건), 부산(5.93건), 전남(5.1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이 0.27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이민자 100명당 지원사업이 1건 미만인 지역은 서울(0.29건), 인천(0.27건), 광주(0.56건), 대전(0.96건), 울산(0.95건), 경기(0.31건)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사업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은데 비해 인구수는 많으므로 당연히 낮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Ⅱ－3〉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수 대비 지원사업 수

### 4) 16개 시도별 지원사업(프로그램) 예산현황 분석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예산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15,459,741천원의 예산이 있었으며, 이 중 33.4%(5,157,557천원)는 시도비인 것으로 64.6%(9,987,516천원)는 시군구비, 2.0%(314,668천원)는 민간자부담 등 기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Ⅱ－4〉 결혼이민자 관련 지원사업 예산 현황

▌표 Ⅱ-3▐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 관련 지원사업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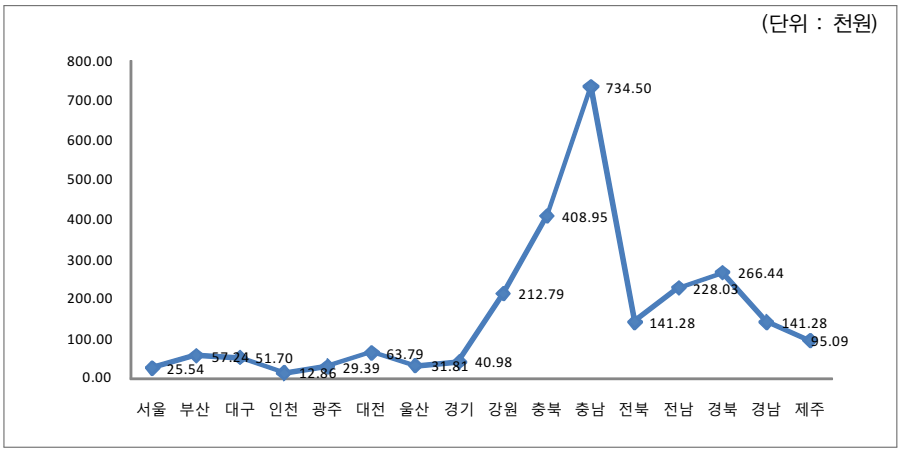
| 구분 | 예산액 (천원) | 예산 구성비(%) | | |
|---|---|---|---|---|
| |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민간자부담 등) |
| 전국 | 15,459,741 | 33.4 | 64.6 | 2.0 |
| 서울 | 933,165 | 16.0 | 83.7 | 0.3 |
| 부산 | 417,084 | 64.7 | 23.3 | 12.0 |
| 대구 | 229,350 | 69.9 | 30.1 | 0.0 |
| 인천 | 106,600 | 28.1 | 71.9 | 0.0 |
| 광주 | 82,500 | 97.0 | 3.0 | 0.0 |
| 대전 | 193,410 | 65.7 | 34.3 | 0.0 |
| 울산 | 77,337 | 25.9 | 68.1 | 6.1 |
| 경기 | 1,614,496 | 47.1 | 52.8 | 0.1 |
| 강원 | 773,689 | 3.9 | 92.4 | 3.7 |
| 충북 | 1,701,213 | 46.5 | 53.4 | 0.0 |
| 충남 | 4,314,456 | 25.4 | 74.6 | 0.0 |
| 전북 | 698,932 | 25.3 | 71.9 | 2.9 |
| 전남 | 1,349,739 | 16.6 | 73.4 | 9.9 |
| 경북 | 1,732,634 | 45.0 | 52.0 | 2.9 |
| 경남 | 1,120,936 | 36.7 | 63.1 | 0.3 |
| 제주 | 114,200 | 44.1 | 40.6 | 15.2 |

16개 광역시도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로 전체 예산의 97.0%가 시도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69.9%), 대전(65.7%), 부산(64.7%) 등에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시도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시군구비는 강원에서 9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83.7%), 충남(74.6%), 전남(73.4%), 인천(71.9%), 전북(71.9%) 등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시군구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자부담 등 기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로 전체 예산의 15.2%가 민간자부담 등 기타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의 경우도 12.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이민자 수 대비 예산을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 1인당 107.07천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개 광역시도별로 분석해 보면, 결혼이민자 1인당 예산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으로 734.50천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충북(408.95천원), 경북(255.44천원), 전남(228.03천원), 강원(212.79천원) 등에서 결혼이민자

1인당 20만원 이상의 지원 사업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이민자 1인당 지원 사업 예산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으로 12.8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결혼이민자가 두 번째로 많은데 비해 예산은 적게 확보되어 있다. 경기도가 1,614,496천원인데 반해 서울은 933,165천원으로 매우 적은 편이며 이는 결혼이민자 1인당 25.54천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충남의 결혼이민자 1인당 예산 734.50천원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액수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를 사업지원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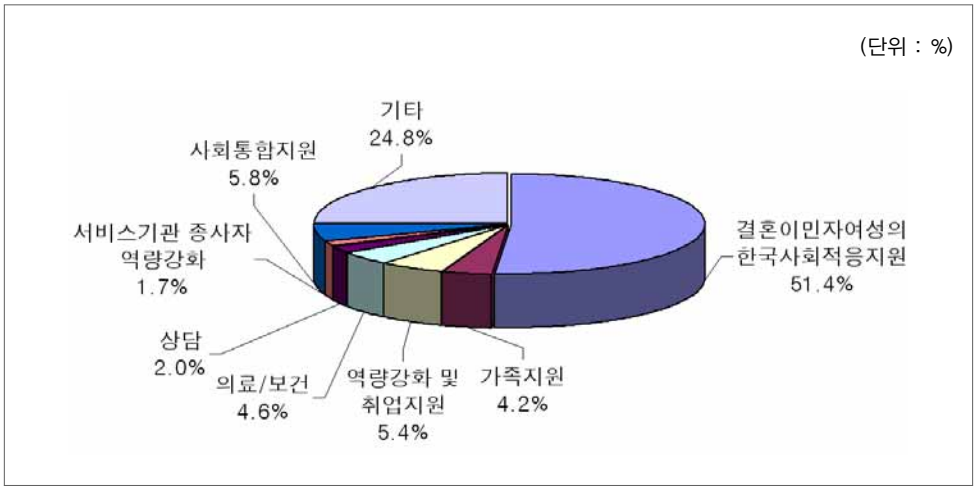



〈그림 Ⅱ－5〉 결혼이민자 수 대비 관련 지원사업 예산액(천원)

### 5) 16개 시도별 지원사업(프로그램) 세부 분석

#### (1) 지원사업 내용 분석

전국의 589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통합 지원사업(5.8%), 역량강화 및 취업 지원사업(5.4%), 의료/보건 지원사업(4.6%), 가족 지원사업(4.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6〉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내용

16개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에서는 8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북에서는 30.6%로 그 비중이 가장 적었다.

서울은 사회적응지원 66.7%,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2.8%, 의료보건 8.3%, 상담 5.6%, 서비스종사자역량강화 1.7%, 사회통합지원 2.8%, 기타 13.9%로 나타났다. 사업내용으로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사회적응지원은 경기도, 가족지원 경북,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경남, 의료보건 대전, 상담 광주, 서비스 종사자역량강화 울산, 사회통합지원 광주 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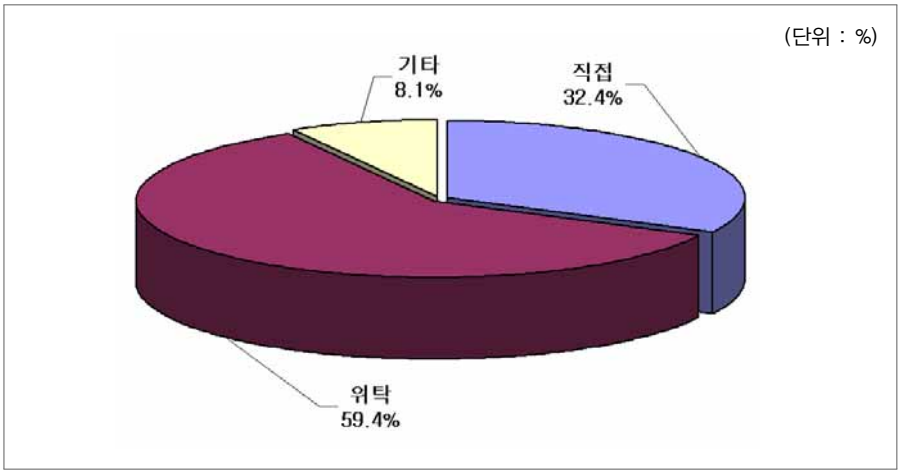
대부분 사업내용이 사회적응지원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사업내용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즉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등의 사회적응지원사업만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의 생애주기별에 따라 가족의 현 상황에 따라 서비스욕구가 다르므로 사업내용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의료보건이나 상담 등 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들의 취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등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사업내용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Ⅱ-4▌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내용

| 구분 | 지원 사업수 | 지원사업 내용(%) | | | | | | | |
|---|---|---|---|---|---|---|---|---|---|
| | | 결혼 이민자여 성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 | 가족 지원 |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 의료/보건 | 상담 | 서비스기 관 종사자 역량 강화 | 사회 통합 지원 | 기타 |
| 전국 | 589 | 51.4 | 4.2 | 5.4 | 4.6 | 2.0 | 1.7 | 5.8 | 24.8 |
| 서울 | 36 | 66.7 | 0.0 | 2.8 | 8.3 | 5.6 | 0.0 | 2.8 | 13.9 |
| 부산 | 110 | 61.8 | 3.6 | 7.3 | 4.5 | 3.6 | 1.8 | 8.2 | 9.1 |
| 대구 | 13 | 84.6 | 0.0 | 0.0 | 0.0 | 0.0 | 0.0 | 7.7 | 7.7 |
| 인천 | 6 | 50.0 | 33.3 | 0.0 | 0.0 | 16.7 | 0.0 | 0.0 | 0.0 |
| 광주 | 4 | 25.0 | 0.0 | 0.0 | 0.0 | 25.0 | 0.0 | 25.0 | 25.0 |
| 대전 | 8 | 50.0 | 0.0 | 0.0 | 12.5 | 0.0 | 12.5 | 12.5 | 12.5 |
| 울산 | 6 | 50.0 | 0.0 | 16.7 | 0.0 | 0.0 | 16.7 | 0.0 | 16.7 |
| 경기 | 36 | 72.2 | 2.8 | 5.6 | 2.8 | 0.0 | 2.8 | 8.3 | 5.6 |
| 강원 | 87 | 46.0 | 4.6 | 2.3 | 3.4 | 1.1 | 2.3 | 9.2 | 31.0 |
| 충북 | 38 | 50.0 | 2.6 | 2.6 | 2.6 | 2.6 | 0.0 | 0.0 | 39.5 |
| 충남 | 24 | 33.3 | 4.2 | 4.2 | 8.3 | 4.2 | 4.2 | 4.2 | 37.5 |
| 전북 | 54 | 57.4 | 1.9 | 9.3 | 0.0 | 0.0 | 1.9 | 0.0 | 29.6 |
| 전남 | 73 | 39.7 | 5.5 | 5.5 | 8.2 | 0.0 | 1.4 | 4.1 | 35.6 |
| 경북 | 36 | 30.6 | 8.3 | 0.0 | 8.3 | 2.8 | 0.0 | 5.6 | 44.4 |
| 경남 | 38 | 36.8 | 7.9 | 18.4 | 5.3 | 0.0 | 0.0 | 5.3 | 26.3 |
| 제주 | 20 | 55.0 | 5.0 | 0.0 | 0.0 | 0.0 | 0.0 | 10.0 | 30.0 |

### (2) 지원사업 운영방법 분석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운영방법을 분석해 보면,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59.4%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32.4%, 협력 등 기타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8.1%로 나타났다.




〈그림 Ⅱ－7〉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운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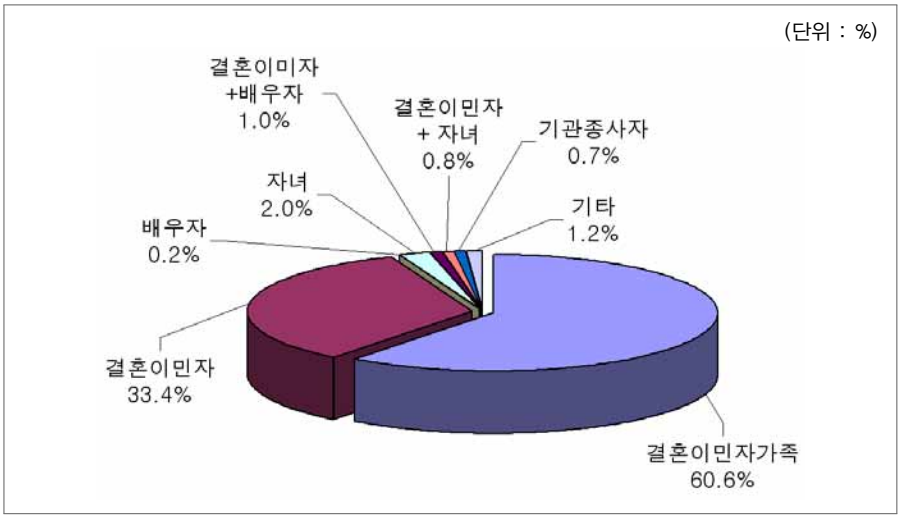
▌표 Ⅱ－5▐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운영방법

| 구분 | 지원 사업수 | 운영방법(%) | | |
|---|---|---|---|---|
| | | 직접 | 위탁 | 기타(협력 등) |
| 전국 | 589 | 32.4 | 59.4 | 8.1 |
| 서울 | 36 | 41.7 | 38.9 | 19.4 |
| 부산 | 110 | 97.3 | 0.9 | 1.8 |
| 대구 | 13 | 0.0 | 7.7 | 92.3 |
| 인천 | 6 | 50.0 | 50.0 | 0.0 |
| 광주 | 4 | 0.0 | 0.0 | 100.0 |
| 대전 | 8 | 75.0 | 25.0 | 0.0 |
| 울산 | 6 | 33.3 | 50.0 | 16.7 |
| 경기 | 36 | 25.0 | 66.7 | 8.3 |
| 강원 | 87 | 35.6 | 46.0 | 18.4 |
| 충북 | 38 | 21.1 | 71.1 | 7.9 |
| 충남 | 24 | 37.5 | 62.5 | 0.0 |
| 전북 | 54 | 1.9 | 98.1 | 0.0 |
| 전남 | 73 | 0.0 | 100.0 | 0.0 |
| 경북 | 36 | 0.0 | 100.0 | 0.0 |
| 경남 | 38 | 0.0 | 100.0 | 0.0 |
| 제주 | 20 | 0.0 | 100.0 | 0.0 |

16개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 관련 지원사업의 운영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면, 직접운영하는 경우는 부산의 경우 97.3%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75.0%), 인천(50.0%) 등에서도 50% 이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는 모든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에서도 98.1%로 위탁 운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지원사업 지원대상 분석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대상을 분석해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이 대상인 경우가 6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33.4%), 결혼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2.0%),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1.0%), 결혼이민자와 자녀대상(0.8%), 기관종사자(0.7%), 기타(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8〉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대상

16개 광역시도별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대상을 분석해 보면,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 모든 사업이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87.0%)과 대구(84.6%)에서도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8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울산에서 66.7%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광주(25.0%), 충남(5.7%), 강원(5.7%), 부산(3.6%) 등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결혼이민자 가족 41.7%, 결혼이민자 55.6%, 결혼이민자 배우자 2.8% 등으로 나

타났으며 충남은 결혼이민자 가족 33.3%, 결혼이민자 37.5%, 자녀 8.3%,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8.3%, 결혼이민자와 자녀 8.3%로 가장 사업대상이 다양화되어 있으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100% 이며,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광주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25%, 충북은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7.9%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 결혼이민자 자녀와 그 배우자,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지원사업 등 사업대상의 다양화, 사업내용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

▌표 Ⅱ－6▐ 광역시도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대상

| 구분 | 지원 사업수 | 지원대상(%) | | | | | | | |
|---|---|---|---|---|---|---|---|---|---|
| | | 결혼 이민자 가족 | 결혼 이민자 | 배우자 | 자녀 | 결혼 이민자 + 배우자 | 결혼 이민자+ 자녀 | 기관 종사자 | 기타 |
| 전국 | 589 | 60.6 | 33.4 | 0.2 | 2.0 | 1.0 | 0.8 | 0.7 | 1.2 |
| 서울 | 36 | 41.7 | 55.6 | 0.0 | 0.0 | 2.8 | 0.0 | 0.0 | 0.0 |
| 부산 | 110 | 39.1 | 55.5 | 0.0 | 3.6 | 0.0 | 0.0 | 0.0 | 1.8 |
| 대구 | 13 | 84.6 | 15.4 | 0.0 | 0.0 | 0.0 | 0.0 | 0.0 | 0.0 |
| 인천 | 6 | 33.3 | 50.0 | 0.0 | 0.0 | 0.0 | 0.0 | 0.0 | 16.7 |
| 광주 | 4 | 75.0 | 0.0 | 0.0 | 25.0 | 0.0 | 0.0 | 0.0 | 0.0 |
| 대전 | 8 | 12.5 | 75.0 | 0.0 | 0.0 | 0.0 | 0.0 | 0.0 | 12.5 |
| 울산 | 6 | 33.3 | 66.7 | 0.0 | 0.0 | 0.0 | 0.0 | 0.0 | 0.0 |
| 경기 | 36 | 50.0 | 5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강원 | 87 | 31.0 | 57.5 | 0.0 | 5.7 | 1.1 | 3.4 | 0.0 | 1.1 |
| 충북 | 38 | 34.2 | 50.0 | 0.0 | 0.0 | 5.3 | 0.0 | 7.9 | 2.6 |
| 충남 | 24 | 33.3 | 37.5 | 0.0 | 8.3 | 8.3 | 8.3 | 0.0 | 4.2 |
| 전북 | 54 | 87.0 | 9.3 | 1.9 | 0.0 | 0.0 | 0.0 | 1.9 | 0.0 |
| 전남 | 73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경북 | 36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경남 | 38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제주 | 20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4. 소결

다문화 관련 정책은 중앙과 광역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정책개념 목표 방향 등 설정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 개념 목표 방향에 대한 합의와 부처간 정책이 조율되고 다양한 이민자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부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둘째, 정책 대상자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다문화관련 정책은 대부분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집행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므로 여성결혼이민자 외의 정책대상자를 다양화하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 증진도 필요함으로 국민도 정책대상자에 포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시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책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부처별 지원시책에 대한 다문화가족들의 접근성, 정책대상자의 만족도 및 이들의 사회적응도를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정책 대상자의 투입비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성과평가시스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부처별 단기별 필요성에 따른 개별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가족에 대한 온정주의적 접근경향 및 임시방편적 대응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중앙과 지자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역할을 정립하여 정책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Ⅲ

# 다문화가족 실태 및 다문화관련 법·제도 동향

# Ⅲ 다문화가족 실태 및 다문화관련 법·제도 동향

## 제1절 다문화가족 실태 현황

### 1. 전국

2008년 7월 현재 행정안전부의 보고에 의하면, 외국인 주민은 891,341명이며 이중 외국인 근로자는 437,727명(49.1%),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체류 중인 자는 102,713명(11.5%)이고 혼인귀화자는 41,672(4.7%)명이며 국제결혼 가정자녀도 58.007명(6.5%)이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31.2%, 서울 29.2%, 인천 5.5%로 수도권지역에 거의 65.9%가 체류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에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도 매년 전년도에 비해 평균 30% 정도 증가하다고 2006부터 증가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과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을 아우르는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3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인(한족, 23.3%)으로 중국 출신자가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만, 일본, 몽골 출신자까지 합하면 동북아 4개국의 결혼이민자가 전체 결혼이민자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 국가 출신자들도 20.8%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베트남 출신자들이 12.8%, 필리핀 출신자들이 5.5%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자의 성별로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127,683명(88.0%), 남성 결혼이민자는 16,702명(12.0%)으로 나타나 여성 결혼이민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 결혼이민자 중 체류자 연도별 증감추이(2008.7)

(단위 : 명)

| 연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5 |
|---|---|---|---|---|---|---|---|---|
| 인원 | 25,182 | 34,710 | 44,416 | 57,069 | 75,011 | 93,786 | 110,362 | 119,341 |
| 증감률 (전년대비,%) | - | 37.8 | 27.9 | 28.5 | 31.4 | 25.0 | 17.7 | 13.9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표 Ⅲ－2▐ 지역별 외국인 체류 분포

(단위: 명, %)

| 구분 | 계 |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 | | | | | | |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 | | | | 국제결혼 가정 자녀 | |
|---|---|---|---|---|---|---|---|---|---|---|---|---|---|---|---|---|---|---|---|---|
| | | | 소계 | | 외국인근로자 | | 국제결혼 이주자 | | 유학생 | | 기타 외국인 | | 소계 | | 혼인 귀화자 | | 기타 사유로 국적 취득자 | | | |
| 합계 | 891,341 | 100.0% | 767,823 | 86.1% | 437,727 | 49.1% | 102,713 | 11.5% | 56,279 | 6.3% | 171,104 | 19.2% | 65,511 | 7.4% | 41,672 | 4.7% | 23,839 | 2.7% | 58,007 | 6.5% |
| 서울 | 260,019 | 29.2% | 227,087 | 25.5% | 108,140 | 12.1% | 24,048 | 2.7% | 10,832 | 1.2% | 84,067 | 9.4% | 25,432 | 2.9% | 12,484 | 1.4% | 12,948 | 1.5% | 7,500 | 0.8% |
| 부산 | 33,192 | 3.7% | 27,912 | 3.1% | 10,613 | 1.2% | 5,431 | 0.6% | 4,546 | 0.5% | 7,322 | 0.8% | 2,223 | 0.2% | 1,856 | 0.2% | 367 | 0.04% | 3,057 | 0.3% |
| 대구 | 22,822 | 2.6% | 19,326 | 2.2% | 8,955 | 1.0% | 3,424 | 0.4% | 2,699 | 0.3% | 4,248 | 0.5% | 1,242 | 0.1% | 1,012 | 0.1% | 230 | 0.03% | 2,254 | 0.3% |
| 인천 | 49,253 | 5.5% | 42,608 | 4.8% | 30,407 | 3.4% | 6,068 | 0.7% | 1,069 | 0.1% | 5,064 | 0.6% | 3,591 | 0.4% | 2,223 | 0.2% | 1,368 | 0.2% | 3,054 | 0.3% |
| 광주 | 13,077 | 1.5% | 10,654 | 1.2% | 3,557 | 0.4% | 2,094 | 0.2% | 2,574 | 0.3% | 2,429 | 0.3% | 815 | 0.1% | 713 | 0.1% | 102 | 0.01% | 1,608 | 0.2% |
| 대전 | 14,682 | 1.6% | 12,718 | 1.4% | 3,044 | 0.3% | 2,196 | 0.2% | 4,287 | 0.5% | 3,191 | 0.4% | 979 | 0.1% | 836 | 0.1% | 143 | 0.01% | 985 | 0.1% |
| 울산 | 14,667 | 1.6% | 12,792 | 1.4% | 8,996 | 1.0% | 1,797 | 0.2% | 300 | 0.0% | 1,699 | 0.2% | 807 | 0.1% | 634 | 0.1% | 173 | 0.02% | 1,068 | 0.1% |
| 경기 | 277,991 | 31.2% | 247,793 | 27.8% | 173,230 | 19.4% | 27,770 | 3.1% | 5,721 | 0.6% | 41,072 | 4.6% | 19,067 | 2.1% | 11,625 | 1.3% | 7,442 | 0.8% | 11,131 | 1.2% |
| 강원 | 15,236 | 1.7% | 11,547 | 1.3% | 4,461 | 0.5% | 2,665 | 0.3% | 2,404 | 0.3% | 2,017 | 0.2% | 1,099 | 0.1% | 971 | 0.1% | 128 | 0.01% | 2,590 | 0.3% |
| 충북 | 22,669 | 2.5% | 18,793 | 2.1% | 11,023 | 1.2% | 3,015 | 0.3% | 3,013 | 0.3% | 1,742 | 0.2% | 1,292 | 0.1% | 1,145 | 0.1% | 147 | 0.02% | 2,584 | 0.3% |
| 충남 | 36,591 | 4.1% | 31,484 | 3.5% | 20,135 | 2.3% | 4,284 | 0.5% | 4,563 | 0.5% | 2,502 | 0.3% | 1,686 | 0.2% | 1,590 | 0.2% | 96 | 0.01% | 3,421 | 0.4% |
| 전북 | 18,423 | 2.1% | 12,663 | 1.4% | 4,392 | 0.5% | 3,565 | 0.4% | 3,319 | 0.4% | 1,387 | 0.2% | 1,477 | 0.2% | 1,382 | 0.2% | 95 | 0.01% | 4,283 | 0.5% |
| 전남 | 20,551 | 2.3% | 14,168 | 1.6% | 5,468 | 0.6% | 4,501 | 0.5% | 2,296 | 0.3% | 1,903 | 0.2% | 1,481 | 0.2% | 1,418 | 0.2% | 63 | 0.01% | 4,902 | 0.5% |
| 경북 | 36,685 | 4.1% | 30,625 | 3.4% | 17,445 | 2.0% | 4,894 | 0.5% | 6,076 | 0.7% | 2,210 | 0.2% | 1,825 | 0.2% | 1,609 | 0.2% | 216 | 0.02% | 4,235 | 0.5% |
| 경남 | 50,431 | 5.7% | 43,671 | 4.9% | 26,151 | 2.9% | 6,057 | 0.7% | 2,048 | 0.2% | 9,415 | 1.1% | 2,159 | 0.2% | 1,877 | 0.2% | 282 | 0.03% | 4,601 | 0.5% |
| 제주 | 5,052 | 0.6% | 3,982 | 0.4% | 1,710 | 0.2% | 904 | 0.1% | 532 | 0.1% | 836 | 0.1% | 336 | 0.0% | 297 | 0.03% | 39 | 0.0% | 734 | 0.1% |

출처: 행정안전부,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2008.7)

국제결혼 국적취득현황은 현재 결혼이민자 144,385명 중 국적취득자는 41,671명, 국적미취득자는 102,713명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국적미취득자는 제한적 권리만을 누리게 되므로 이에 대한 원인이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Ⅲ－3▐ 성별, 국적취득여부로 본 국제결혼이민자

| 구분 | 여성 | 남성 |
|---|---|---|
| 국적미취득자 | 89,002 | 13,711 |
| 국적 취득자 | 38,681 | 2,991 |
| 합계 | 127,683 | 16,702 |

출처: 행정안전부,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2008.7)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황을 보면 만6세미만이 57.2%, 만7-12세가 32.2%, 만13-15세 6.3%, 만16-18세가 4.3%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의 자녀수 44,258명과 비교시 1년 사이에 30%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므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표 Ⅲ－4▐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

| 구 분 | 계 | 만6세미만 | 만7~12세 | 만13~15세 | 만16–18세 |
|---|---|---|---|---|---|
| 학생수 | 58,007명 | 33,140명 | 18,691명 | 3,672명 | 2,504명 |
| 비 율 | 100% | 57.2% | 32.2% | 6.3% | 4.3% |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재혼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배우자의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들의 동반 입국시 체류자격, 교육문제, 경제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이혼율은 감소하는데 비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총 이혼현황은 2006년 현재 6,280건으로 2005년보다 46.8% 증가하였으며, 외국인과의 이혼 중 4년 이하 동거부부는 79.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과 이혼한 외국인 처의 국적은 중국이 63.6%,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일본이 67.2%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외국인 처가 39.6%를 차지하고, 20세 미만 미성년자녀를 두고 이혼한 외국인 처는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현황

(단위 : 건, %)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총 이혼(A) | 145,324 | 167,096 | 139,365 | 128,468 | 125,032 |
| ■ 외국인과의 총 이혼(B=C+D) | 1,866 | 2,164 | 3,400 | 4,278 | 6,280 |
| 총 이혼 대비 구성비(B/A) | 1.3 | 1.3 | 2.4 | 3.3 | 5.0 |
| 증 감 | – | 298 | 1,236 | 878 | 2,002 |
| 증 감 률 | – | 16.0 | 57.1 | 25.8 | 46.8 |
| ·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C) | 401 | 583 | 1,611 | 2,444 | 4,010 |
| 총 이혼 대비 구성비(C/A) | 0.3 | 0.3 | 1.2 | 1.9 | 3.2 |
| 증 감 률 | – | 45.4 | 176.3 | 51.7 | 64.1 |
| ·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D) | 1,465 | 1,581 | 1,789 | 1,834 | 2,270 |
| 총 이혼 대비 구성비(D/A) | 1.0 | 0.9 | 1.3 | 1.4 | 1.8 |
| 증 감 률 | – | 7.9 | 13.2 | 2.5 | 23.8 |

출처: e-서울통계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이혼현황을 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1.247건인데 이중 중국이 75.3%, 베트남 9.1%, 순으로 나타나고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857건으로 일본이 46.9%, 중국 27.2%, 미국 10.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6▐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이혼 현황

(단위 : 건)

| 처의 국적별 이혼 | 계 | 중국 (중화인민 공화국) | 베트남 | 일본 | 미국 (미합중국) | 필리핀 | 몽고 (몽골) | 러시아 | 태국 (타이) | 기타 |
|---|---|---|---|---|---|---|---|---|---|---|
| 2004 | 348 | 201 | 24 | 30 | 31 | 9 | 13 | 13 | 3 | 24 |
| 2005 | 536 | 338 | 30 | 43 | 28 | 18 | 20 | 15 | 4 | 40 |
| 2006 | 791 | 581 | 49 | 35 | 25 | 22 | 27 | 11 | * | 39 |
| 2007 | 1,247 | 939 | 85 | 39 | 27 | 23 | 23 | 15 | 9 | 87 |

| 남편의 국적별 이혼 | 계 | 일본 | 중국 (중화인민 공화국) | 미국 (미합중국) | 파키스탄 | 캐나다 | 독일 | 프랑스 |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 기타 |
|---|---|---|---|---|---|---|---|---|---|---|
| 2004 | 486 | 364 | 15 | 64 | 3 | 5 | 6 | * | 5 | 23 |
| 2005 | 522 | 350 | 49 | 78 | 6 | 11 | 3 | * | * | 21 |
| 2006 | 630 | 379 | 115 | 70 | 12 | 11 | * | 6 | 4 | 33 |
| 2007 | 857 | 402 | 233 | 90 | 11 | 11 | 4 | 3 | * | 103 |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통계

* 셀 안의 *는 이혼건수가 2건 이하인 경우 수치대신 '*'로 표시하였음.

여성부의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정의 가정폭력발생율은 43.2%로 한국전체 가정폭력발생율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학대 등의 폭력은 한국 전체보다는 낮았으나 경제적 폭력은 한국전체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므로 가정폭력발생시 결혼이민자들이 불안정한 신분관계를 넘어서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표 Ⅲ－7▐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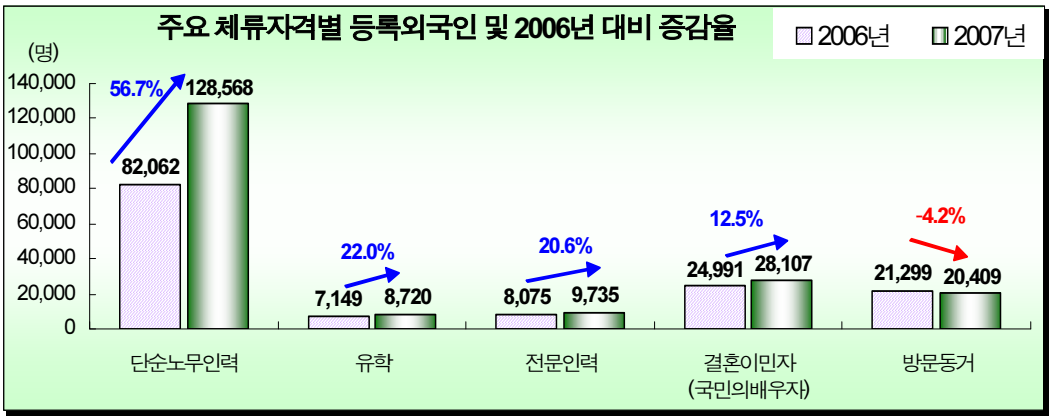
| 구분 | 가정폭력발생율 | 폭력유형별 가정폭력 발생율 | | | | |
|---|---|---|---|---|---|---|
| | | 정서적 폭력 | 신체적폭력 | 경제적폭력 | 방임 | 성학대 |
| 다문화가정 | 43.2% | 39.9 | 21.3 | 7.7 | 13.4 | 9.1 |
| 한국전체 | 50.4% | 46.2 | 30.7 | 3.5 | 16.0 | 9.6 |

## 2. 서울시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서울 거주 외국인은 2008년 현재 260천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서울에 29.2%가 거주하고 이 수치는 서울 인구의 약 2.2%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전에 비해 4.3배 증가했으며 이중 12.3%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로 3년 전에 비해 91.1%가 증가했다.

서울거주 외국인 중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227,087명으로 25.5%인데 이중 외국인근로자 108,140명 12.1%, 결혼이민자 24,048명 2.7%, 유학생 10,832명 1.2%, 기타 외국인 84,067명 9.4%이다. 국적을 취득한 자는 25,432명 2.9%인데 이중 결혼이민자 12,484명 1.4%, 기타사유로 국적취득자 12,948명 1.5%이며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는 7,500명으로 0.8%에 해당한다.

서울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변화를 2006년과 비교하면 단순노무인력은 56.7%로 증가했으며 유학은 22%, 전문인력은 20.6%, 결혼이민자는 12.5% 증가하고 방문동거는 4.2% 감소했다.




〈그림 Ⅲ－1〉 주요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 전문인력 : 교수+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특정직업

* 단순노무인력 : 비전문취업+산업연수+자진출국특정활동+연수취업+내항선원+방문취업+취업관리제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꾸준히 증가하여 74%로 가장 많고, 미국, 타이완, 일본은 감소하여 5.4%, 3.9%, 3.0%에 이르고 있다.

▌표 Ⅲ－8▐ 주요 국가별 외국인 현황

| 서울 등록인구 | | 외국인 | 중국 | 미국 | 타이완 | 일본 | 필리핀 | 베트남 | 몽골 | 캐나다 | 기타 |
|---|---|---|---|---|---|---|---|---|---|---|---|
| 2004 년 | | 114,685 | 64,762 | 10,959 | 8,899 | 6,271 | 3,740 | 2,216 | 2,128 | 1,893 | 13,817 |
| | 구성비 | 100.0 | 56.5 | 9.6 | 7.8 | 5.5 | 3.3 | 1.9 | 1.9 | 1.7 | 12.0 |
| 2005 년 | | 129,660 | 77,881 | 11,487 | 8,923 | 6,710 | 3,646 | 2,385 | 2,139 | 2,084 | 14,405 |
| | 구성비 | 100.0 | 60.1 | 8.9 | 6.9 | 5.2 | 2.8 | 1.8 | 1.6 | 1.6 | 11.1 |
| 2006 년 | | 175,036 | 119,300 | 11,890 | 8,974 | 6,864 | 4,038 | 3,011 | 2,711 | 2,300 | 15,948 |
| | 구성비 | 100.0 | 68.2 | 6.8 | 5.1 | 3.9 | 2.3 | 1.7 | 1.5 | 1.3 | 9.1 |
| 2007 년 | | 229,072 | 169,414 | 12,376 | 8,914 | 6,904 | 3,921 | 3,782 | 3,234 | 2,447 | 18,080 |
| | 구성비 | 100.0 | 74.0 | 5.4 | 3.9 | 3.0 | 1.7 | 1.7 | 1.4 | 1.1 | 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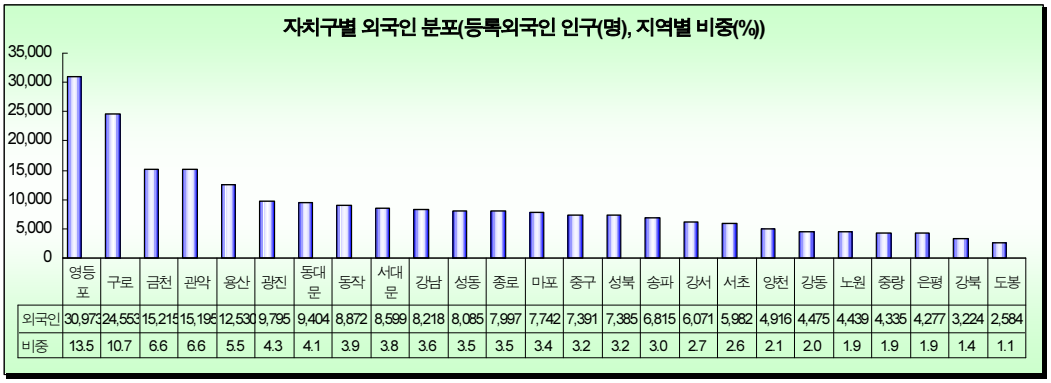
* 중국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수치임

*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갓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e-서울통계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대비 5%이상인 지자체는 영등포, 금천, 구로, 종로, 용산구 등이며, 외국인이 가장 많은 순으로는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용산, 광진, 동대문, 동작, 성동, 서대문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림 Ⅲ－2〉 자치구별 외국인 분포




출처: e - 서울통계

국제결혼은 200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하여 2005년에 가장 많았으며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배우자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과의 혼인은 중국이 64.7%고 가장 많고 베트남 12.5%, 일본 5.1%, 필리핀 3.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Ⅲ－9▐ 국제결혼의 처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

(단위 : 건, %)

| 처의 국적 | 계 | 일본 | 중국 | | 미국 | 필리핀 | 베트남 | 태국 | 러시아 | 몽고 | 기타 |
|---|---|---|---|---|---|---|---|---|---|---|---|
| 2002 | 2,649 | 231 (8.7) | 1,731 | (65.3) | 108 (4.1) | 115 (4.3) | 85 (3.2) | 57 (2.2) | 76 (2.9) | 65 (2.5) | 181 (6.8) |
| 2003 | 4,744 | 260 (5.5) | 3,643 | (76.8) | 137 (2.9) | 101 (2.1) | 176 (3.7) | 52 (1.1) | 77 (1.6) | 84 (1.8) | 214 (4.5) |
| 2004 | 6,565 | 221 (3.4) | 5,356 | (81.6) | 129 (2.0) | 125 (1.9) | 279 (4.2) | 49 (0.7) | 73 (1.1) | 112 (1.7) | 221 (3.4) |
| 2005 | 7,637 | 242 (3.2) | 6,177 | (80.9) | 125 (1.6) | 114 (1.5) | 478 (6.3) | 36 (0.5) | 62 (0.8) | 129 (1.7) | 274 (3.6) |
| 2006 | 6,168 | 268 (4.3) | 4,214 | (68.3) | 123 (2.0) | 159 (2.6) | 880 (14.3) | 48 (0.8) | 50 (0.8) | 100 (1.6) | 326 (5.3) |
| 2007 | 6,004 | 304 (5.1) | 3,883 | (64.7) | 156 (2.6) | 221 (3.7) | 748 (12.5) | 103 (1.7) | 35 (0.6) | 77 (1.3) | 477 (7.9) |

*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갓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통계

한국여성과 혼인한 외국남성의 국적은 2002년에는 일본과 미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중국이 36.7%, 일본이 24.7%, 미국이 16.6%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0▐ 국제결혼의 부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

(단위 : 건, %)

| 남편의 국적 | 계 | 일본 | | 중국 | | 미국 | | 독일 | | 캐나다 | | 프랑스 | | 호주 | | 파키스탄 | | 기타 | |
|---|---|---|---|---|---|---|---|---|---|---|---|---|---|---|---|---|---|---|---|
| 2002 | 1,473 | 594 | (40.3) | 90 | (6.1) | 443 | (30.1) | 20 | (1.4) | 70 | (4.8) | 22 | (1.5) | 28 | (1.9) | 37 | (2.5) | 169 | (11.5) |
| 2003 | 1,920 | 637 | (33.2) | 441 | (23.0) | 433 | (22.6) | 16 | (0.8) | 86 | (4.5) | 22 | (1.1) | 42 | (2.2) | 40 | (2.1) | 203 | (10.6) |
| 2004 | 2,920 | 759 | (26.0) | 1,252 | (42.9) | 476 | (16.3) | 15 | (0.5) | 89 | (3.0) | 20 | (0.7) | 50 | (1.7) | 24 | (0.8) | 235 | (8.0) |
| 2005 | 3,870 | 804 | (20.8) | 1,973 | (51.0) | 507 | (13.1) | 22 | (0.6) | 112 | (2.9) | 20 | (0.5) | 36 | (0.9) | 70 | (1.8) | 326 | (8.4) |
| 2006 | 2,959 | 773 | (26.1) | 1,182 | (39.9) | 483 | (16.3) | 22 | (0.7) | 118 | (4.0) | 34 | (1.1) | 57 | (1.9) | 42 | (1.4) | 248 | (8.4) |
| 2007 | 2,835 | 701 | (24.7) | 1,041 | (36.7) | 470 | (16.6) | 24 | (0.8) | 147 | (5.2) | 47 | (1.7) | 60 | (2.1) | 35 | (1.2) | 310 | (10.9) |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통계

*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갓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와 같이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은 25-34세 미혼인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 서베이 2007에 의하면, 25-34세 미혼 53.4%가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기혼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11▐ 국제결혼에 서울시민 의식

(단위 : %)

| | | 거부감 있다 | | | 거부감 없다 | | |
|---|---|---|---|---|---|---|---|
| | | | 아주 거부감이 든다 | 다소 거부감이 든다 | | 별로 거부감이 없다 | 전혀 거부감이 없다 |
| 15세 이상 | 서울시민 전체 | 62.8 | 12.0 | 50.8 | 37.2 | 29.2 | 8.0 |
| 성 별 | 남성 | 63.1 | 12.4 | 50.7 | 36.9 | 28.7 | 8.2 |
| | 여성 | 62.5 | 11.6 | 50.9 | 37.5 | 29.8 | 7.7 |
| 연령별 | 10대 | 41.7 | 5.4 | 36.3 | 58.3 | 42.7 | 15.7 |
| | 20대 | 45.9 | 5.7 | 40.2 | 54.1 | 41.4 | 12.7 |
| | 30대 | 58.7 | 8.0 | 50.7 | 41.3 | 32.8 | 8.5 |
| | 40대 | 69.2 | 11.6 | 57.6 | 30.8 | 24.6 | 6.2 |
| | 50대 | 73.7 | 16.1 | 57.6 | 26.3 | 21.8 | 4.5 |
| | 60세 이상 | 74.4 | 23.0 | 51.4 | 25.6 | 20.4 | 5.2 |
| 혼인상태 | 미혼 | 44.7 | 5.5 | 39.2 | 55.3 | 41.7 | 13.6 |
| | 기혼 | 69.6 | 14.0 | 55.6 | 30.4 | 24.5 | 5.9 |
| 25~34세 미혼 | | 46.6 | 5.3 | 41.3 | 53.4 | 41.0 | 12.4 |

출처: e - 서울통계

이와 같이 서울의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이혼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입양가족 등과 함께 다문화가족도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 제2절 다문화가족 관련법제

현재 우리 사회는 체류외국인의 급속한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형태가 최근의 다문화가족 형성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제법규와 국내법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 1. 국제법규

국제사회는 성별, 국경, 인종들을 초월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인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다.

이 선언은 모든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열거하고 국제인권규범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인 만큼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은 아니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국제관습법의 일부로서 이해된다.[1)]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헌법 및 국내법에 열거된 기본권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실제 헌법에서 규정한 성평등권, 교육권, 모성권 등 많은 내용들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천의무를 의미한다.

국제인권은 인간존엄의 확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를 이끌고 변화를 요구하며 향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관행, 판결 결정들을 포함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계속적 회의와 교정 등을 통해 제도변화를 꾀

1)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는 ①국제연합은 국제연합헌장의 인권조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② 1968년 국제연합이 주최한 세계인권대회에서의 결의로 세계인권선언이 국제사회의 회원을 구속한다고 인정되었다. ③ 7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세계인권선언을 헌법이나 주요 법률에 편입되었다. ④각국 법원이 세계인권선언이 국제관습법의 일부라고 판시하였으며, ⑤선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후속조약들로 인해 대부분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들을 가지고 있다. 홍성필, 국제인권과 결혼이주, 저스티스 96호 29면

하고 개인의 인권보호와 아울러 미래 갈등을 예방하는 사회적 기능을 행사한다.

국제인권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확대된다. 규약들에 대한 국제위원회의 해석 결정들과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결정,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등의 판례 각국 국내법 국내 판례 결정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문화관련 국제법규를 살펴보면 우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Political and Civil Rights)',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ant on Economic Cultural and Civil Rights)' 등에서 다문화가족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제인권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향유자가 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으며 그 자녀들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피부색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도 관련이 있으며,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에 관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s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하에서는 이주노동자협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2)]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 협약을 제외한 상기 인권협약들의 비준국으로서 국제법상 준수

2) 이주노동자협약(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2003년 7월 1일 발효)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나 경제적 실체 이상의 사회적 실제로 인식하고 가족재회를 포함한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에서 비국적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보호를 취업국이나 출신국에서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엔과 같은 국제적 기구를 통한 보호수단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이 협약은 최초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개념과 이주노동자의 범주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국제적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특정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밝히고 있음 이러한 기준은 다른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기본인권개념을 등록노동자는 물론 미등록노동자에게까지 확장시켰다. 등록노동자와 가족구성원의 기본인권으로 인식되는 부가적인 권리 특히 고용국에서 그 곳 시민들과 같이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동등대우를 주장할 수 있다.
다섯째, 동 협약은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불법 및 은밀한 이동과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포함한 착취방지와 근절을 위한 역할을 하며
여섯째, 동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 이 기준은 국내법상 이러한 기준이 없는 국가들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의무를 부담한다.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협약이라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협약의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의 일부로서 준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러한 내용들은 헌법 및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국내적 실천의무를 갖고 있다.

## 2. 국내법규

### 1) 헌법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이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되는지는 학설 및 판례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해 통설은 외국인도 기본권의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특정되는 것에 한해 그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보며 다만 그 밖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의하는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도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가 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며 참정권 등의 기본권은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이라고 판시하고 있다(헌재결 2001.11.29. 99헌마 494).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3]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현실에서는 차별금지기준으로 '국적'이나 '인종', '피부색' 등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2)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2001.5.24.제정)은 제4조에서 법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거주 외국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 제4호[4]에서 규정하고 있는 19개의 평등

3)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기준에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

권침해의 차별행위의 기준에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금지영역으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재화 · 용역 · 교통수단 · 상업시설 · 토지 ·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 훈련 등의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의하면 차별금지기준에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포함시켰으며,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8.16.제정 : 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서는 제22조에서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절차, 고용관리, 이주노동자의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5)]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보호 중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6)] 외국인의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산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7)]

헌법재판소도 이주노동자에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였는데 산업연수생 도입기준 완화

---

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 미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5) 이 법은 제6장 제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법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동 법 제2조). 이 법의 주요 규정내용을 보면 외국인력고용위원회(제4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제5조)과 고용절차를 위해 내국인 구인노력(제6조), 외국인고용허가(제8조), 근로계약(제9조), 외국인취업교육(제11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제12조)를 규정하고, 고용관리를 위해 출국만기보험, 신탁(제13조), 건강보험(제14조), 귀국비용보험,신탁(제16조), 취업제한의 제한(제18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해 차별금지(제22조), 사업 또는 사업장변경의 허용(제25조), 벌칙(제29조-제32조)을 규정하고 있다.

6) NAP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에는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 난민, 여성, 아동 · 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전 · 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7) 외국인정책위원회 규정(2006.5.22.제정)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외국이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 조정이 필요한 사항, 외국인정책의 추진상황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동 규정 제2조)

결정[8]에서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일부사항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2.23. 노동부예규 369호)"은 헌법의 평등조항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9]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내포하며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 성격이 강하므로 외국인에게 전면적으로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3)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 (1) 주요 내용

대한민국의 국적은 귀화허가를 받아 취득가능하다.

일반귀화 요건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민법상 성년이고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이다(국적법 제5조).

간이귀화요건으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며 귀화가 가능하다(동법 제6조).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원만하게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보장 가구는 13.7%정도 밖에 안되므로 위의 조건을 만족시켜 귀화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였다.

8) 헌재결 2007.8.30. 2004 헌마 670

9)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해 노동부는 이 지침을 폐지하였다(2007.9.10.폐지).

즉 ①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③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자인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즉 국적법은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 제6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거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인 경우에도 국적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005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전에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F-2비자) 소지자는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전면적으로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제23조).[10]

이외에도 ① 귀화 신청 시 경제적 능력 입증 요건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직 증명서'로도 가능하도록 한 점, ② 이혼 소송 진행시에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F-2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점, ③ 이혼하면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면접권 보장을 위해 국민배우자 비자(F-2)[11]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이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사유소멸시까지 1년씩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취업허가는 가능하지 않다.

---

10) 시행령 제2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 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 F-2의 라목,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자

11) 거주(F-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난민인정을 받은 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신원보증이 철회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관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신원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준비기간을 제공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실제연락처를 체류지 사항란에 입력하여 외국인배우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혼인파탄 귀책사유 증빙자료로 공인된 여성단체관련확인서를 활용하고 있다.

▌표 Ⅲ－12▐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 구 분 | 요 건 | 비 고 |
|---|---|---|
| 거주(F-2) 체류자격 | – 국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자긴 자의 배우자 및 그 의 미성년 자녀<br>–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 – 자유로운 취업활동 보장<br>– 영주체류자격자와 달리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 허가, 강제퇴거에 있어 혜택이 제한됨 |
| 영주(F-5) 체류자격 | – 국민 또는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자유로운 취업활동 보장 |
| 국적 취득 | – 혼인동거자: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br>– 혼인동거자: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br>– 무과실 혼인파탄자: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위 잔여기간을 충족한 자<br>– 자녀양육자: 배우자와의혼인에 의해 출생한 미성년이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기간을 충족한 자 | – 간이귀화요건:<br>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 (2) 문제점과 개선과제

○ 불안정한 신분관계 개선 필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취득 전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므로,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해 있다. 또한 국적취득절차가 여전히 경제적 능력요건과 배우자의 신분보증요건, 이혼시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책임 확인 등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극복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또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거주가 불가피한 경우 방문동거자격으로 체류는 가능하나 취업을 할 수 없어 불안정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이 처한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안정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간이귀화요건으로의 국내거주 2년을 재검토하여 단축시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신분보장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입증책임의 전환

한국의 언어와 제도에 미숙하고,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2004년에 개정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조항에 따라 스스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한 후 국적신청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일 것이다. 또한 내국인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여성에게 아이의 양육권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외국인이고 국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신설된 국적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법률지원시스템 정비 필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누리기 위해서는 법률 지원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다. 현재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내국인의 가정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력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내국인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여성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기금 등을 형성하여 보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1) 추진 배경

종래 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신고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98.2.8. 건강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하였다.

그 후 결혼중개업은 양적으로 증가 특히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 국제결혼중개업체도 증가

결혼중개업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로 결혼당사자에게 제공한다

는 장점이 있으나, 최근에는 국제결혼에서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등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지로 지칭되는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어 결혼중개업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건전한 결혼문화형성에 기여하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7.12.에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08.6.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12)]

### (2) 주요 내용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동법의 목적,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제3조),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관할 지자체가 지도·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제4조),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① 신고필증 게시 의무(제8조) ② 명의 대여 금지 의무(제9조) ③ 계약 내용 설명의무 및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제10조) ④ 외국 현지법령 준수 의무(제11조) ⑤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 정보제공의 금지(제12조) ⑥ 개인 정보 보호 의무(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12) 제정경위
- 2005.2.2. 김춘진의원 대표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회부
- 2005.4.20. 제253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2007.9.11. 제269회 국회 제1차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
- 2007.11.22. 제269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 2007.12.14. 법률 8688호로 공포
- 2008.6. 시행

▌표 Ⅲ－1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 조 항 | 내 용 |
|---|---|
| 목적(제1조)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용어의 정의 (제2조) | 1. “결혼중개” 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br>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 · 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br>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br>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br>5. "결혼중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3조) |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br>③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br>신고서류 : 동법 시행규칙 제2조<br>변경신고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4조) |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br>② 시 · 도지사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br>③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br>신청서류 : 동법 시행규칙 제4조<br>변경등록 :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 결격사유 · 겸업금지 (제6조, 제7조) | 제6조 : 결격사유<br>제7조 : 겸업금지 |
| 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8조) |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 ·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는 등록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br>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br>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호 |
| 명의 대여의 금지 (제9조) |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 상호, 신고필증, 등록증을 빌려주면 안 된다. |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 | ① 수수료 ·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br>② 계약서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관을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br>③ 계약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br>(3년: 동법 시행규칙 제9조)<br>④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
|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1조) |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br>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조 항 | 내 용 |
|---|---|
| 허위 · 과장된 표시 · 광고의 금지 등 (제12조) | ① 거짓 · 과장되거나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br>별표 1[13]<br>②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br>③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개인정보의 보호 (제13조) |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장부 등의 비치 (제14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 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br>– 장부대장은 3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 보고 및 검사 등 (제15조)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여야 하며, 권한 표시 증표를 내보이는 소속 공무원의 해당 중개사무소 출입, 운영상황 조사, 장부 · 대장과 그 밖의 서류 검사 등에 응해야 한다. |
| 시정명령, 영업정지,폐쇄조치 (제17조, 18조, 19조) | 제17조 : 시정명령<br>제18조 : 영업정지<br>제19조 : 폐쇄조치 |
| 교육(제24조) |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또는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손해배상(제25조) | ①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용자에 손해를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br>② 손해배상책임 보장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br>국내결혼중개업자 :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추가<br>국제결혼중개업자 : 5천만원 이상 /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추가 |
| 벌칙(제26조) | ① 각 호 해당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br>–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br>–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br>– 제19조 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br>② 각 호 해당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br>–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자 |

13) 별표 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 인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지 광고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 광고
   마 저속하고 음란 선정적은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 광고

▌표 Ⅲ－14▐ 법령 위반시 제재사항

| 구 분 | 영업정지 / 등록취소 | | | 과태료 | 형사처벌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 • 미신고 영업 (국내중개) | (폐쇄조치) | – | – | |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 미등록 영업 (국제중개) | (폐쇄조치) | – | – |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
| • 거짓·부정 신고 (국내중개)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년 | |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 거짓·부정 등록 (국제중개) | 등록취소 | – | – |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
| • 변경사항 미신고 (국내중개) | | | | 300만원 | |
| • 변경사항 미등록 (국제중개) | | | | 300만원 | |
| • 미신고 휴업·폐업 ·영업 재개 | | | | 100만원 | |
| • 결격사유 해당 | (국내)영업정지1년 /(국제)등록취소 | | | | |
| • 겸업금지 위반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6월 | (국내)영업정지1년 /(국제)등록취소 | 200만원 | |
| • 신고필증 등 미게시 | | | | 100만원 | |
| • 명의상호 및 신고필증·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 (국내)영업정지1월 /(국제)등록취소 | (국내)영업정지2월 | (국내)영업정지3월 | |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 서면 계약서 미작성 | 영업정지 1월 | (국내)영업정지2월 /(국제)등록취소 | (국내)영업정지3월 | | |
| •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계약서 미교부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 • 계약서 보존 위반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 • 계약서 거짓 기재 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 작성 | 영업정지 3월 |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 (국내)영업정지1년 | | |
| • 외국 형사법령 위반 통보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 |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구 분 | 영업정지 / 등록취소 | | | 과태료 | 형사처벌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 • 거짓된 정보 제공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 |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 개인정보 보호 위반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 |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 장부·대장 비치 위반 | | | | 100만원 | |
| •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예치금 미예치 | (국내)영업정지3월 (국제)등록취소 | (국내)영업정지6월 | (국내)영업정지1년 | | |
| • 자료 제출·보고 거부 또는 거짓 보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200만원 | |
| • 조사검사 기파방해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200만원 | |
| • 시정명령 위반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국내)영업정지6월 /(국제)등록취소 | | |
| • 폐쇄조치 영업지속 | | | |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

※ 위반단계별 조치사항 : 시정명령 ⇒ 영업정지(등록취소) ⇒ 폐쇄조치 ⇒ 형사처벌

###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사전에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화 필요

동 법은 거짓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사후적인 규제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과연 사후적으로 부가되는 영업 등록 취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은 결혼중개 행위가 합법적인 상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그 문제를 보완하고자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취소의 사유에 관련된 사항 등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신상정보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나 기재하여야 할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의무조항이 아닌 점, 사전에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의무가 없는 점은  입법적 미비라 할 수 있다.

○ 입증책임 전환규정 필요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이주여성은 입증자료를 준비·제출해야 하

는데, 국제결혼중개라는 위계적 사슬 아래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처한 이주여성이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결혼중개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이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에 대한 규정 필요

나아가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 행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입법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어 법 시행 초기부터 그 실질적 효력이 미미하다.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뿌리 뽑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인신매매방지 관련 국제협약[14]을 국내 비준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어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규정과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표 Ⅲ－15▐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현황 (2008.9.16)

| 구분 | 신고·등록 | 반려 | 발급 | 진행중 | 비고 |
|---|---|---|---|---|---|
| 계 | 1,254 | 10 | 305 | 939 | |
| 국내결혼중개업(신고) | 491 | 2 | 102 | 387 | |
| 국제결혼중개업(등록) | 763 | 8 | 203 | 552 | |

### 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1) 추진 배경

최근 체류외국인의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와 우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문제가 시급해졌다.

따라서 재한외국인과 한국민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14)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인신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ion,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11.

조성함으로서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2007.5.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었다.[15)]

### (2) 주요 내용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제2조에서 ① “재한외국인”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② “처우”를 국가 및 지자체의 재한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따른 적정한 대우로, ③ “결혼이민자”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제3장(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를, 제4장(제18조와 제19조)에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Ⅲ－16▐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주요 내용

| 조 항 | 내 용 |
|---|---|
| 목적(제1조) |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용어정의(제2조) | ‘재한외국인’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br>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br>‘결혼이민자’ 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제5조) |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1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과 자녀에 대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5) 제정경과
- 2006.12.5. 정부가 제출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12.8)
- 2007.2.22 제265회 국회 제3차 회의에 상정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2007.4.26.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
- 2007.4.27. 제267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 2007. 5.17. 법률 8442호 공포

| 조 항 | 내 용 |
|---|---|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제12조 제1항,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사실혼 포함)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 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 영주권자의 처우 (제13조 제1항,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권자에 대하여 국내 체류와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고, 제12조 제1항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 난민의 처우 (제14조 제1항, 제2항) |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의 거주 혹은 출국을 지원할 수 있다. |
|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5조)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재한외국인은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 시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제1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제1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그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국내 체류와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1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세계인의 날 (제19조 제1항, 제2항) |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

###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기본적 시각의 부재

동 법 제1조는 이 법의 제정목적을 재한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 혹은 다문화주의의 주지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내용상 이러한 부분은 미미한다. 제11조에 의거하면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동화가 이 법의 주된 시각으로 보여지는데 이 시각은 개선되어야 한다. 즉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국민으로 동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공생할 수 있는 인권적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중요하며 이를 담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호대상의 한계

기본법 제2조는 지원대상인 재한외국인의 정의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 가운데 합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주노동자협약이 제70조에서 체류자격의 합불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들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은 적절성 안정성 위생적 기준과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며 우리 정부가 보여준 정책에도 합치되지 않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사무소 진정과 국내 사법절차를 통한 법적구제가 가능토록 한 조치, 미등록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 구제를 가능토록 한 조치 등과 같이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배제는 부모가 미등록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태어나자마자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아이들을 원천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점까지 갖고 있다.

미등록이주자를 법의 보호범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국가정책의 문제이다.

미등록이주자들이 한국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를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미등록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명확하게 변환되기 전까지는 법의 공백을 허용하여 미등록이주자들에 대한 보호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 주무부처 부적절

현재 법무부가 재한외국인 관련 업무를 거의 총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수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주자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주 업무로 삼아왔던 '출입국'이 '이민청'으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단속'과 '통제'에 머물렀던 과거와 결별하고 '인권'적 관점에 기반을 둔 '지원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믿기엔, 그동안 보여준 출입국과 보호소의 행태가 너무나도 반인권적이었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한계가 존재한다.

○ 조직체계의 문제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보면 법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작성지침을 미리 통보하고 이 통보를 기초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을 작성해서 올리면 이를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집행기구가 없다면 내실 있는 정책의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가정기본법도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도에 시도건강가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이주민 가족외의 외국인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위원회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이주민가족에 대한 정책에 관해 두 위원회가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 실효성 부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는 추상적인 '노력 의무' 외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특별한 의무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느 만큼의' 지원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 법이 기본법인 관계로 기본적인 권리의무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나, 구체적인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현재의 법으로써 재한외국인들의 처우가 얼마만큼 개선될 것인지는 단기적으로 현재와 장래의 시행 태양에 달려 있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적 보충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지원기간의 제한

제12조와 제15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지원은 국적취득 날로부터 3년이다. 이와 같이 보육의 문제를 국적취득 후 3년까지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편협한 제한이라 생각된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서 결혼이민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려 하거나 혹은 아이를 늦게 얻게 되는 경우 법을 이유로 교육지원을 거부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 6) 다문화가족지원법

#### (1) 추진배경

국제결혼의 증가와 국가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뿌리깊은 단일민족의식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전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시켜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2008.3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2008.9.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16]

16) 제정 경위
- 2007.3.8 고경화 의원이 발의한 이주민 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 주요 내용

제1조에서 동법의 목적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서는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유지), 제8조(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9조(산전산후건강관리지원), 제10조(아동교육보육지원),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지원)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표 Ⅲ－17▐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 조 항 | 내 용 |
|---|---|
| 정의규정 (제2조) | 제1호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그리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br>제2호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 실태조사 등 (제4조 제1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6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노력,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확대 노력을 하여야 하며, 혼인관계 종료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 -2007.5.2. 장향숙 의원이 다문화가족지원법 발의
- -2007.5.3. 두 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
- -2007.11.14 여성가족위원회는 제26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을 제안
- -2007.11.19. 제269회 국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는 대안 채택의결
- -2008.2.19. 제271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 -2008.3. 21. 법률 8937호로 공포-- 6개월 경과 후 발효

| 조 항 | 내 용 |
|---|---|
|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시 필요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 아동 보육·교육 (제10조)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해 ①국가와 지자체의 차별 없는 보육·교육 실시 ②국가와 지자체의 신속한 적응을 돕는 교육지원대책 마련과 사도 교육감의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③국가와 지자체의 취학전 교육과 언어능력 제고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
|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 제1항, 제2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원센터는 교육·상담·정보제공·홍보·서비스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4조) |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체계상 혼란

재한외국인기본법은 전체 외국인정책을 규율하는 법인데 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법명과는 달리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법이라 보여져 문제가 야기되며, 내용으로 들어가면 두 법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각 소관부처에서 동일한 업무를 중복수행하게 되어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보호대상의 한계

기본법과는 달리 지원대상을 기본법과는 달리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모두 일방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한국인과 '가정'을 구성한 이들에게만 정착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국적과 혈통에 기반한 차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법 역시 '합법적' 체류 자격의 외국인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하여 한국사회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괄하여야 한다.

○ 다른 법상의 실태조사와의 관계

동법 제4조에 의하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9

조에 의하면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귀화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주민가족을 따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7) 거주외국인지원조례

#### (1) 추진배경

행정안전부는 2007년 2월 국내입국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한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을 발표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을 이주민에게도 인정한 획기적인 조치이다

#### (2)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 등에 대한 용어 정의(제2조), 거주외국인의 지위(제3조), 지원대상(제5조), 지원범위(제6조), 자문위원회(제7조,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Ⅲ－18▐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주요 내용

| 조 항 | 내 용 |
|---|---|
| 목적(제1조) |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용어의 정의 (제2조) |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br>거주외국인–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br>외국인가정–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br>외국인지원단체–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 거주외국인의 지위(제3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지방정부의 재산 공공시설 행정 혜택 등에서 거주외국인을 주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지원대상 (제5조) | 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지원범위 (제6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이다. |
| 자문위원회 (제7조, 제8조) | 자문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17]으로 구성하되 하며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2년으로 연임가능하다<br>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

###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용어문제

동 조례는 국적자가 아닌 자를 주민으로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원의 소지를 내포하므로 용어측면에서 외국인이기보다는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의 독특한 현실 미반영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의 의도했던 바는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각 지방정부의 실정에 적합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지역의 현실에 관한 고려와 고민이 전혀 없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거주외국인의 개념확대라든가 지방참정권을 포함한 거주외국인의 인권보호 조항등이 추가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기술 미비

제1조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행정적 지원범위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충돌

조례 제2조에서는 보호하는 거주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보고 있으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서는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돌이 문제된다.

그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규정도 없으며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문제점도 발견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

거주외국인을 정의하면서 거주기간이 90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아야 할 외국인을 방치하는

---

17) 당연직 위원:부시장,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민간위원: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한다

결과를 낳는다. 또한 이 기간을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입법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도록 90일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국인을 단순히 보호대상으로 인식

제7조에서는 외국인 지원시책의 수립에 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하고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외국인을 단순히 보호대상으로 보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표 Ⅲ－19▐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현황**

| 지 역 | 제정연월일 |
|---|---|
| 인천광역시 | 2008-02-25 조례 제 4156호 |
| 광주광역시 | 2007-10-02 조례 제 3530호 |
| 대전광역시 | 2008-01-04 조례 제 3616호 |
| 울산광역시 | 2007-11-08 조례 제 914호 |
| 강원도 | 2007-11-09 조례 제 3213호 |
| 충청북도 | 2007-04-13 조례 제 2994호 |
| 충청남도 | 2007-07-30 조례 제 3266호 |
| 전라북도 | 2007-03-02 조례 제 3259호 |
| 전라남도 | 2008-01-09 조례 제 3163호 |
| 경상북도 | 2007-06-14 조례 제 2983호 |
| 경상남도 | 2007-11-08 조례 제 3258호 |
| 제주특별자치도 | 2007-05-09 조례 제 237호 |
| 대구광역시 | 2007-06-11 조례 제 3850호 |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 2008-4-2. 조례 제356호로 제정

** 서울과 경기도, 부산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규정 없음

*** 경상남도는 2006.6.1.조례 제3169호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조례 제정

### 8) 기타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적용을 두어 있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있는 외국인과 국내거주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결혼이민여성은 취업을 통해 소득을 가지고 있고 이 여성모국이 한국과 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체류자격에 있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동반, 기타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들은 국민연금법의 당연적용에서 제외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제93조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는 이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체류자격별로 구비서류 즉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과 같은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입원비 및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무료진료사업을 통해 국적 취득 전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보건센터의 상담 및 재활서비스, 지역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등 공공의료체계의 몇몇 서비스에 대해 국적 취득 전 외국인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법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 예외조항을 두어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등은 고용보험이 적용된다.[18)]

---

18)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체류자격자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단기취업, 교수 내지 특정활동, 비전문취업, 내항선원 및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단기취업, 교수 내지 특정 활동, 비전문취업, 내항성원 및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
- 체류자격 거주 중에 국민 또는 영주의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및 난민인정을 받은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
- 거주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2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일부 혹은 전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즉 이에 해당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는 지원을 받는다. 즉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은 지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임신 중에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후 이혼하였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생계 및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외국인 남성도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은 외국인 여성지원시설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피해자로 수사시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제기 할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중 기업투자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와 외교, 협정자격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재외동포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공공이익이나 국내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해 일정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에서 외국인보호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가능하다.

## 3.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규와 국내법규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다문화가족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복지서비스, 폭력으로부터 보호, 법적 구제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관련 법규는 다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부재하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지 못한 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다문화 논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식으로의 동화 또는 침묵 외에는 선택할 것이 주어지지 않은 채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적 입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며 결혼이민자여성들은 여성자체가 아닌 아내, 어머니로서 사회전반의 부계부권의 가족관계에 순응하여 가부장적 가족을 유지시킬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갈 우리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온정적, 시혜적인 대상으로 타자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신분보장 및 인권보호의 논의 가운데 중심이 있는 문제들이 사회통합교육의무화, 이중국적문제,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필기시험을 통과하거나 사회통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회통합이수제를 발표했다.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과 국민에게 적용되는 글로벌 다양성 이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가 2009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장기체류하거나 장기체류를 예정하는 귀화 신청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기본소양 사전평가+언어 및 다문화사회 이해과정+참여도 사후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언어 및 글로벌 다양성 이해 등을 함양하도록 하고, 귀화필기시험 면제 및 귀화면접 반영, 국적취득 소요기간 단축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결혼이주자의 사회로의 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한 조치와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국적필기시험부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적 취득 및 체류 연장에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이 필수적인 현 국적 체계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주여성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는 결국 이주여성을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취약하도록 내몰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회통합교육을 국적취득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결혼 가정 내 기존하는 불평등한 위계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대책 없이 일방적인 사회통합 교육만을 강요한다면 수많은 이주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더욱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결혼이주자 일방에게만 부가된 한국사회로의 정착과 통합의 짐을 어떻게 한국인 가족과 한국사회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사회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은 국적과 연계한 “의무화” 방식이 아니라 이주자에 대한 “정착지원서비스”로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장기체류 입국자 국제결혼 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인종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적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국적법의 태도는 후천적 이중국적은 원칙적으로 불허이며 선천적 이중국적은 일정기간 허용되는데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이 된 자는 일정기간 이중국적이 허용되며 국적법 제12조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현행 국적제도의 문제점은 국민배제정책으로 국적법은 경직된 단일국적주의를 유지함으로 국민의 확보 유치나 이탈억제가 아닌 적극적 배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제대 후 2년 내에 국적선택신고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미성년 수반취득, 입양, 국제결혼, 인지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6개월 내 국적 보유신고를 하면 한국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국적보유신고제도는 당사자가 대부분 영유아기 미성년자 관계로 신고 절차 이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이중국적자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미비하므로 이중국적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의 신분보장과 직결된 문제로 세계화, 노동시장의 경향 등의 여러 가지 사회현상과 연결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문제도 심각한데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어장벽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많기 때문이며, 실제 경찰에 신고했을 때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경우 이혼을 생각해야 하고, 이혼할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국적취득 여부나 자녀의 문제 등에 있어서 불안정한 신분상태에 처하므로 대부분 가정폭력을 참게 된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들의 가정폭력방지를 위해서는 정보의 부재 및 통역 서비스 불충분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 사건 담당자들의 인식 및 관련 법률정보의 미약함 등에 대한 총괄적인 통합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사회보장관련법은 제한된 범위지만 결혼이민여성들을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대상으로 보며, 국민배우자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여성자신이 아닌 배우자 또는 모성에 근거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이혼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의 신분 불안정과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양육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제3절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 1. 중앙부처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급증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과 혼혈인, 외국인 노동자 등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련법 제정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공식적인 움직임의 시작은 2004년 전국단위 조사로 이루어진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이며, 이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과정,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욕구, 생활실태 등을 보여주었다.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책이나 서비스는 교육, 문화, 복지,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여성가족부(현 여성부)를 비롯하여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2007년까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주관부서였던 여성가족부는 200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위해 한국어 초급 교재를 발간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가족교육 통합 프로그램 개발, 여성결혼이민자 1366센터 설치 및 운영, 한국어 교재개발 관련 관련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는 외국인 이주민 한국어 보급 운영기관으로 한국어세계화재단을 선정하고 민간단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한국어교실을 지원하였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관련 사업체(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한무리 나눔의 집 등)를 선정하고, 우리글 배우기와 우리글 꾸미기, 인터넷과 동무하기 등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 및 워크넷을 통해 취업연계 및 구직신청, 일자리 정보 탐색, 사이버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의 경우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통역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 서비스로는 정보화 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이 있으며,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자녀의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펼치고 있으며, 이밖에도 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자신들의 출신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사업도 전개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 중 특정한 조건에 놓인 집단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경우 결혼이민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을 해지하면 불법체류자로 되는 일이 빈번하였으나, 이제는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 등의 피해로 상담소나 쉼터에 지원요청을 할 경우, 쉼터에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철회 신청만으로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이 없게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으로 긴급구조 내지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돕기 위해 2006년 11월부터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시·도 1366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의료, 법률, 경찰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족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당시 여성가족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모성보호가이드'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4개 언어로 발간한 바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저소득 임산부 및 6세 미만 영유아를 지원하는 보충영양사업 및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결혼이민자 자녀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결혼가족도 영유아 보육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이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거나 이중국적자로 적용대상 기준에 포함되면 국내 아동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 5월에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기능 강화, 집단따돌림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후속으로 2007년 6월 5일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결혼이민자, 동포 등 이민자의 각종 인권침해사례를 신고 접수한 후 유관기관에 이첩하거나 체류실태조사와 연계하고 있는데, 이때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17개 외국어로 차별 등 인권침해 접수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민자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법규 무지로 야기된 법규 위반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 피해상담과 법률지원을 위해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형사법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시행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2006년 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주관부처였던 여성부는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민자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문화적응을 종합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21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최초로 설치·운영하였으며 2007년에는 38개 지역으로 확대·설치하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방문화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활동을 추진해온 NGO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과 가족통합교육, 가족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문

화이해·정서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자녀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크사업 등을 수행하였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그리고 2008년부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의 주관부처로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80개소로 확충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즉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도 서비스 등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와 가족통합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Ⅲ－20▐ 각 부처의 다문화정책 추진내용

| 정부부처 | 주 요 내 용 |
|---|---|
| 법무부 | – 정주외국인 및 그 자녀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전국적 국가별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br>– 인권옹호, 고충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br>– 국적과 연계된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 이수제 도입<br>– 부처간 역할 조정 등을 통한 사회통합 역량강화<br>–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관한협력 등 협력체계 구축 |
| 여성부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
| 문화체육관광부 |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지원<br>–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br>– 이민자와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개최 지원 |
| 보건복지가족부 | – 여성결혼이민자 불법체류외국인자녀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br>–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상담, 지원서비스 제공<br>–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br>– 결혼이민자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
| 농림수산식품부 | – 출산농가도우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 교육과학기술부 |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br>– 교과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 노동부 |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취업 등 정보제공 및 훈련 |
| 행정안전부 | – 거주외국인 지원표준조례안 제정<br>– 지자체의 외국인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

## 2. 서울시

여성부(2007)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2007년도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총 515개소로, 7대 광역시도에 120개, 도 권역에 총 395개소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경상남도, 경기도, 전라북도의 순으로, 이들 지역의 경우 결혼이민

자 관련 기관은 대략 60여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자체 자체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이 있다. 대표적인 기관 유형으로는 기초 시군구의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서울시는 저출산대책담당관,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는 다문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정책은 저출산대책담당관에서 담당하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치구, 민간기관 등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글로벌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각종 정보 제공, 생활지원, 국제교류,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상담, 다문화가정자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빌리지센터를 5개소(연남, 역삼, 서래마을, 한남, 이촌)에 두고 있다.

고용창업담당관실에서는 외국인근로자센터 4개소(성동, 금천, 녹번복지관, 성내복지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정책담당관에서는 거주외국인 건강검진 실시, 전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입원 및 수술비 지원 등을 한다. 문화정책과에서는 서울방문 및 거주외국인 한국문화체험 등을 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개소(동대문, 성북, 영등포, 동작, 용산, 송파)에서는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정서지원, 방문교육을 통해 한국어와 아동양육지원 등을 행하고 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서울지역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법률·노동임금·체류 등의 인권상담, 가족역량강화·사회통합·부부관계프로그램 등의 가족지원, 한국문화, 폭력/쉼터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서울시의 다문화관련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한국사회적응 지원사업 다음으로 많이 제공된 서비스의 순위로는 의료보건, 가족지원상담,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인데 반해 전국단위에서는 한국사회적응지원사업, 사회통합지원사업,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사업, 의료보건 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과 어려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으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과 전통문화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두고 한국사회로의 동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서울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이 가족의 한 유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에 상당부분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구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농촌의 신부난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가 국제결혼을 주도하였고 현재까지 이 부분의 관여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서울은 지자체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이며, 그 수도 월등히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가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 정책관여,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현재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 2008년도 거주외국인 대상 지원사업은 총 110여건으로 25개 기초자치단체 전체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역시 한국어 교육사업이며, 가족지원 및 상담, 다문화 체험은 물론 의료 지원에 대한 사업도 눈에 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21▐ 2008 서울시 및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

| 구분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 서울시 | 글로벌센터 운영 | 서울시 글로벌존 내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운영 지원 |
| | 글로벌 존 조성사업 | 무교동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 차이나타운 조성 |
| | 외국인 벼룩시장 개최 | 거주외국인이 참여하는 물물교환, 알뜰거래장터 마련 |
| |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 거주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비용 지원 |
| | 서울타운미팅 | 거주외국인의 의견수렴, 시정 반영 |
|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지원 |
| |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지원 |
| | 외국인근로자센터 확대 운영 | 외국인근로자센터 2개소 신규 개설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
| |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교육) | 결혼이민자가족 방문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 지구촌한마당 축제 | 외국공연단 공연, 세계음식풍물전, 외국어린이 그림전시, 세계의상 및 타악기 전시 등 |
| | 명예시민증 수여 |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과 시 방문 외빈에게 명예시민증 수여 |
| | 서울거주 외국인유학생 시정연수 | 시정 소개, 주요시설 견학, 문화 체험 등 |

| 구분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 |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실시 | 외국인 다수 지역에 출장 건강검진 실시, 무료건강검진 실시기관 내원 시 건강검진 실시 |
| | 전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 건강건진시 결핵, 간염 등 전염성질환으로 판정시무료진료비 지원 |
|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게 의료비 지원 |
| | 외국인 전담진료소 지정 운영 | 외국인 전담진료소 지정 운영 |
| | 외국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민간위탁, 외국인 병원안내 및 응급처지 등을 외국어로 상담, 안내 |
| | U-안심폰 시스템 등록 | 거주외국인의 병력 등을 미리 등록하여 119신고접수 시 활용하는 시스템(Help me! 119서비스) |
| | 서울방문 및 거주외국인 문화체험 | 서울 주요 명소와 시설 방문, 서울의 대표축제 및 공연관람 등 서울 문화체험을 통해 서울의 이미지 제고 |
| |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 거주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
| 종로구 | 거주외국인과 함께하는 북촌한옥마을 투어 | 종로의 명소인 북촌한옥마을 투어 실시,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
| | 한국어 교실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어 교실 운영 |
| | 1인 1촌 맺기 | 거주외국인과 주민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정착에 기여 |
| | 거주외국인 기초생활 실태조사 | 거주외국인의 생활, 직업 등 거주실태 및 지원욕구 조사 |
| 중구 |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관리사업 | 다문화가족 한국어 완전정복 |
| |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포함)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태권도교실, 한국문화체험, 국제결혼가정부모 자녀탁아, 상담 등 |
| | 여성결혼이민자대상 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등록, 영유아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
|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여성결혼이민자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 암검진, 보건복지 애로사항 연계 |
| 용산구 | 한국어교실 | 주민자치센터 2개소 운영 |
| | 결혼이민자사업 | 결혼이민자가족 및 부부 이해하기, 생활요리교실,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 |
| |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 | 결혼이민자가정 아이돌보미 파견 |
| 성동구 | 거주외국인 멘토링 운영 | 내국인과 외국인 간 멘토링 운영 |
| |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지원 |
| |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 | 근로자의 날 행사 실시 |
| | 외국인 근로자 송년위안잔치 | 연말 외국인초청 위로행사 |
| 광진구 | 외국인학교 지원 | 몽골외국인학교 교육환경 개선 |
| | 인국인학교 급식 지원 | 몽골외국인학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 |
| | 국토문화탐방 | 지구촌한가족 외국인 국토문화탐방 |

| 구분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 | 나담축제 | 한국 나담축제(몽골 전통축제) |
| | 몽골문화 한마당 | 광진구민과 함께하는 몽골문화 한마당 |
| | 한국어강좌 |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강좌 |
| |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
| | 몽골학교 건강검진 | 몽골학교 건강검진 실시 |
| 동대문구 | 한국어교육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
| | 사회통합교육 | 한국어, 한국문화, 가족교육, 전문인력양성교육 등 |
| | 상담사업 | 가족, 개인, 고민상담 및 자조집단 활동 실시 |
| | 다문화 인식사업 | 한국인가족과 결혼이민자가족의 만남을 통한 다문화 이해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한국어교실 등 교육 및 상담, 생활편의 정보제공 |
| | 전입 외국인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타 지역에서 전입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상담 지원 |
| 중랑구 | 다문화와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한국어 및 문화강좌 추가 개설 |
| | 건강가정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교육 및 상담 |
| 성북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결혼이민자 대상 방문교육사업, 문화체험활동 등 |
| | 다문화 음식축제 | 세계 전통놀이와 전통음식 만들기 등의 축제를 통한 다문화 이해 |
| 강북구 | 외국인문화체험한마당 | 관내 전통문화시설 탐방 |
| 도봉구 | 결혼이민자사업 | 한국어교육,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문화체험, 멘토사업 |
| 노원구 | 어울림한마당축제 | 거주 외국인과 함께하는 한마당축제 개최 |
| | 거주외국인 멘토링제 운영 | 결혼이민자에 대한 멘토/멘티 결연식 및 문화체험행사 |
|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 거주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등운영 |
| 은평구 | 거주외국인 자원봉사단 | 이국인 봉사단을 통한 무료급식 봉사 |
| | 외국인문화체험 | 한국의 전통놀이와 전통음식 만들기를 통한 한국문화 이해 |
|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 거주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한국어 강좌, 세시풍속 및 생활예절, 서울시 문화유적 답사 등 다양한 문화체험 |
| 서대문구 | 결혼이민자가족과 함께 하는 다문화 나눔의 장 | 결혼이민자가정 문화체험 |
| 마포구 |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 운영 | 교양프로그램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지원, 종합생활안내책자 제작, 외국인지원상담데스크 운영 등 |
| | 건강가정지원사업 | 결혼이민자교육, 결혼이민자 집단상담, 결혼이민자 문화체험활동 등 |
| |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문화 익히기 | 한국어교실 운영,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한글 및 우리문화 교육 |
| | 외국인 건강검진 | 외국인 근로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과 진료 등 건강검진 |

| 구분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 강서구 |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 | 한국어교실, 전통문화 체험강좌, 박물관 등 전통시설 견학, 세계전통음식축제 실시 |
| 구로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한국어교실 등 교육 및 상담, 문화체험활동 |
| | 결혼이민자가정 한국적응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
| 금천구 | 주민자치센터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 한글교실 운영 지원 |
| | 외국인 멘토링 문화체험 | 한국문화 1일 체험 |
| | 결혼이민자 체험수기 공모 | 한국생활체험수기 공모, 책자 제작 |
| | 결혼이민자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교실 등 교육 및 상담, 문화체험활동 등 |
| | 결혼이민자가족 주부(아동) 교육 실시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음식 강좌 등 요리교육 지원, 양재 및 미용강좌 등 기술교육 지원, 아동 특기교육 지원 |
| | 기타 행사 | 강좌의 종강식 행사 등 지원 |
| 영등포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실 등 교육 및 상담, 문화체험활동 |
| | 결혼이민자 문화네트워크 장 설치 | 거주 결혼이민자 대상 문화네트워크 활동 |
| | 결혼이민자 여성교실 운영 | 요리 및 기술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등 |
| | 이주여성 한국문화 체험 |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강좌, 박물관 등 전통시설 견학 |
| 동작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교육, 상담 및 생활편의 정보제공 |
| | 국제결혼이주자 멘토링 사업 | 거주 결혼이민자에 대한 멘토/멘티 활동 전개 |
| | 다문화가정 지원 우리말·우리글 배움교실 운영 | 한국어배우기, 한국문화체험 |
| | 다문화가정 보육수요실태조사 | 거주 다문화가정의 보육현황 및 수요 실태조사 |
| | 외국인 건강검진 | 총 50여 항목의 건강검진 실시 |
| 관악구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 거주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서비스 제공 |
| | 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 및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생활실태 및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조사 실시 |
| | 이주민 자격증반 생활요리 무료강습 시행 | 거주 이주민 대상 요리 및 기술교육 무료 실시 |
| 서초구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 및 운영 |
| | 명예구민증 수여 |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 수여 |
| |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실시 | 거주외국인들에게 25항목 무료 건강검진 |
| | 외국인 실명인증 서비스 | 홈페이지 게시판에 외국인 실명인증 서비스 실시 |
| | 세계언어 홈페이지 구축 | 8개 언어 홈페이지 개통 |
| | 서래마을 문화행사 개최 | 추석맞이 송편 빚기, 민속놀이 개최 |

| 구분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 강남구 | 한국고유문화 탐방 | 한국전통고유문화 유적지 탐방 |
| |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지원 |
| |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 운영 |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예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 |
| | 여성결혼이민자 임산부 특별관리 | 영양제 제공, 모유수유상담, 건강상담 |
| | 전문가상담실 운영 | 외국통역서비스지원을 통한 체류지 등록 및 변경, 민원상담 |
| | 한국어강좌 운영 | 국립국제교육원과 서울대학교 협약에 따른 한국어강의 운영 |
| | 구청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 구청 홈페이지 다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서비스 운영 |
| 송파구 |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 다국어 홈페이지(영어, 일어, 중국어)를 통한 각종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 |
| | 다문화가정 지원 |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7종 22개의 프로그램 운영(교육, 문화, 상담, 여성주간, 유적기 탐방 등) |
| | 외국인 여성을 위한 다정한 이웃 자원봉사활동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
| | 외국인여성을 위한 노래로 배우는 우리말 교실 운영 | 여성결혼이민자의 우리말 습득을 위한 노래교실 운영 |
| 강동구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행복한 가족만들기」 | 한국문화 이해하기, 음식만들기 등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운영 |
| | 주민자치센터 한국어교실 | 3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어교육 |
| |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 거주 다문화가족의 부부 및 부모 대상 교육 실시 |

출처: 서울시 「2008년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예산현황」, 「2008년 여행프로젝트 연동계획」 참조

## 3. 소결

국제적 이주가 세계화의 중요한 현상이고 국제적 차원의 경제, 사회 및 맥락에서 이주문제를 이해하고 다뤄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이루어지고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정책 대상이 결혼이민자정책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가정의 자녀나 배우자 전체, 더 나아가 사회전반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최근 일부 학교나 시민단체 기관 등에서 정책담당자나 교사 일반시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으나 그 목표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은 공백상태로 남아 있다.

둘째, 초기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체험 등 일부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별 출신국별 다양한 욕구 반영이 부족하고

셋째, 다문화관련 사업들이 중앙부처 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여전히 중복 시행되고 단편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관련부처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다. 지자체의 경우 전담조직이 미설치되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추진체계가 미성숙단계에 있다.

넷째,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직 분산적이어 효율적이지 못하며, 지자체 재정자립도, 민간단체, 기업지원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여건에 따른 격차가 심해 지역별, 서비스별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부처간, 민관학간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효과성을 담보하고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다문화정책은 각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특색이나 환경에 따라 특수성을 살려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므로 서울시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우선,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글로벌 빌리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행정정보서비스와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둘째,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문화적응을 위해 통합지원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즉 가족공동문화행사 등을 통해 서울시민과 다문화가족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셋째,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이 주기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져 한다. 다문화가족구성원의 다양한 국가출신 배경에 맞는 지원정책을 펴나가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적시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인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사회문화통합을 이룬다. 이를 위해 다문화인재를 공공분야에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 글로벌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 Ⅳ

#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욕구도

# Ⅳ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욕구도

## 제1절 조사개요

### 1.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1) 조사개요

서울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5개 국어로 번역하여 다문화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2개월간 일대일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Ⅳ - 1▌ 조사개요

| 구 분 | 내 용 |
|---|---|
| 조사대상 |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
| 조사규모 | - 외국인 배우자 842명, 한국인 배우자 177명 |
| 조사방법 | -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자의 지역별, 국적별 분포를 고려한 비례확률 표집 |
| 조사일자 | - 2008. 8. - 10. |
| 설문지 형식 | -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련담당자의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5개 다국어로 번역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
| 표본오차 | - 95% ± 3.1%p |
| 분석도구 | - SPSS 12.OK |

#### 2) 주요 조사내용

서울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총 2종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는 외국인 배우자용과 한국인 배우자용으로 개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크게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한국문화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4개 영역으로 나누고 총 143개의 조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설문지는 다문화가족의 일반적인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

비스 및 복지욕구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는 본 연구진이 개발하고 다문화관련 전문가와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자문과 감수를 거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시 소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든 설문지는 한국어로 개발하였으며 모국어에 익숙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였다.

▌표 Ⅳ - 2▌ 설문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 조사영역 | | 조사내용 |
|---|---|---|
| 일반 현황 (37문항) | 응답자 특성 (15문항) | 성별(○), 연령, 거주지, 출신국, 입국시기, 입국목적, 한국 및 서울시 거주기간(○), 입국 당시 및 현재의 한국어 실력, 교육수준, 국적취득여부 및 미취득사유, 주거형태(○), 가족구성, 가구소득(○), 건강상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등 |
| | 국제결혼과정 (6문항) | 결혼기간(○), 배우자 소개경로 및 소개비 지출여부, 결혼동기(○), 국제결혼 당시의 어려움(○), 현재 결혼상태 등 |
| | 배우자 특성 (5문항) |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어 실력, (한국인 배우자가 응답한 모국어 실력, 외국인 배우자 모국어를 배울 의향) 등 |
| | 경제활동 (11문항) | 직업(○), 구직경로, 근로시간(○), 월평균 개인소득(○) 및 관리주체, 근로만족도, 취업동기,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 취업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에 대한 생각), 향후 취업의사 및 희망직종, 미취업사유 등 |
|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39문항) | 부부관계 (20문항) | 배우자와의 여가시간공유 여부 및 활용내용, 가정내 의사결정(○), 문화적 차이(○), 부부관계 만족도(○), 배우자 사전정보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경험(○), 배우자의 폭력 및 통제경험, 부부싸움의 원인 및 빈도(○), 이혼고려 및 이혼하지 않는 이유(○), 한국인과의 결혼권장도(○) 등 |
| | 자녀양육 및 자녀 등 가구원과의 관계 (14문항) | 한국에서의 출산경험, 출산 시 어려움, 동거자녀수 및 취학상태, 자녀와의 언어사용(○), (자녀의 한국어능력 우려도), (외국인 배우자 모국어에 대한 자녀의 언어능력 기대도), 미취학자녀 보육실태 및 보육시설 미이용 사유, 자녀의 따돌림 경험(○) 및 그 사유,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양육 시 필요한 지원, 향후 출산계획 및 계획이 없는 사유(○), 시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및 그 원인, (외국인 배우자와 부모님과의 갈등 및 원인), 관계가 어려운 가족구성원, (외국인 배우자와 가구원과의 갈등), 외국어(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 실력(○),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울 의사유무) 등 |
| | 모국가족과의 관계 (5문항) | 한국거주 모국가족 유무,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 및 방문빈도, 모국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배우자의 태도,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가족 송금에 대한 생각) 등 |
| 한국문화 적응 및 사회통합(21문항) | |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 문화적응 스트레스, 성별의식 및 한국에서의 (성)차별경험(○), 사회통합을 위한 주변인의 노력과 역할(○), (외국인 배우자와 모국인과의 만남에 대한 생각) 등 |
|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46문항) | |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에서 겪는 어려움), 사회복지서비스시설 이용실태, 사회복지제도와 지원서비스의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 사회복지서비스 미이용 사유, 국가기관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부부동반 교육 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 및 참여하지 않는 사유(○),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삶 만족도(○) 등 |

※ (○) 또는 괄호( ) 안에 있는 항목은 한국인 배우자용 설문지에 포함된 조사내용임

### 3) 설문조사협조기관

설문지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통해 제공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지원기관 명단과 본 연구진이 파악한 지원서비스기관 명단을 취합한 후 해당기관의 협조와 지원에 의해 한국어교실 등 관련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와그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지원한 관련기관은 총 35개 기관으로 이를 유형별로 나누면 주민자치센터와 구청 등 지자체 5개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정부지원서비스기관 15개 기관, 사회복지관 및 학교 등 사회단체 15개 기관이다

▌표 Ⅳ - 3▌ 설문조사 협조기관 현황

| 지 역 구 | | 기 관 명 | 소 재 지 | 비 고 |
|---|---|---|---|---|
| 서울시(35) | 종로구 | 미리암이주여성상담소 |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회관 2층 | 사회단체 |
| | |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종로구 창신2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 | 정부지원기관 |
| | 중구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 중구 신당동 160-2 | 사회단체 |
| |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학림관 3층 | 정부지원기관 |
| | 용산구 | 용산구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 용산구 한남2동 728-10 용산여성문화회관 1층 | 정부지원기관 |
| | 성동구 |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성동구 행당동 15-1 한양대 동문회관 101호 | 정부지원기관 |
| | 광진구 | (사)나섬공동체 재한몽골학교 | 광진구 광장동 388-8 | 사회단체 |
| | 동대문구 | 동대문구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223호 | 정부지원기관 |
| | 중랑구 | 망우본동 주민자치센터 | 중랑구 망우동 146-41 | 지자체 |
| | | 면목5동 주민자치센터 | 중랑구 면목5동 175-18 | 지자체 |
| | 성북구 |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 성북구 보문동5가 14번지 노동사목회관 5층 | 정부지원기관 |
| | 강북구 | 강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강북구 번2동 318 강북웰빙스포츠센터 3층 | 정부지원기관 |
| | 도봉구 |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도봉구 방학동 720번지 도봉구청 3층 | 정부지원기관 |
| | 노원구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 노원구 상계1동 1257 | 사회단체 |
| | | 성민다문화가정지원센터 | 노원구 상계2동 322-14번지 순복음비전센타 5층 | 사회단체 |
| | 은평구 | 녹번종합사회복지관 | 은평구 다솔길 20-9 | 사회단체 |
| |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은평구 수색동 8-15 | 사회단체 |
| | 서대문구 |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서대문구 연희동 79-31 예림빌딩 4층 | 정부지원기관 |
| | 마포구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마포구 합정동 388-19 | 정부지원기관 |

| 지 역 구 | 기 관 명 | 소 재 지 | 비 고 |
|---|---|---|---|
| 양천구 | (사)나눔과보람복지회 | 양천구 신정5동 883-205 | 사회단체 |
| | 양천강서적십자봉사관 | 양천구 신월2동 472-1 | 사회단체 |
| 강서구 | 강서구청 | 강서구 화곡로 153 | 지자체 |
| 구로구 |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구로구 구로3동 777-22 | 정부지원기관 |
| | 이주민여성상담소 | 구로구 구로3동 1132-57 | 사회단체 |
| |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 구로구 구로3동 188-25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B/D 4층 | 사회단체 |
| |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구로구 구로본동 476-134 | 사회단체 |
| 금천구 | 가산종합사회복지관 | 금천구 가산동 144-3 | 사회단체 |
| 영등포구 | 영등포구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 영등포구 신길1동 465-2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 정부지원기관 |
| 동작구 | 동작구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 동작구 사당3동 324-14 유창빌딩 304호 | 정부지원기관 |
| 관악구 |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관악구 봉천4동 157-1 | 정부지원기관 |
| | 남부교육센터 | 관악구 신림13동 638-2 | 사회단체 |
| | 서울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 | 관악구 봉천3동 37번지 | 사회단체 |
| 서초구 | 서초구청 | 서초구 서초2동 1376-3 | 지자체 |
| 송파구 | 신명실업고등학교 부설 신명주부학교 | 송파구 마천1동 277-15 | 사회단체 |
| 강동구 | 강동구청 | 강동구 성내동길 27 | 지자체 |

## 2. 결혼이민자 그룹심층면접조사

### 1) 조사개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지역별, 국적별을 고려하여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24명에 대한 심층면접도 실시했다.

▌표 Ⅳ - 4▐ 조사개요

| 구 분 | 내 용 |
|---|---|
| 조사대상 | - 서울시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여성 |
| 조사규모 | - 결혼이민자여성 22명, 결혼이민남성 2명 등 24명 |
| 조사방법 | -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자의 지역별, 국적별 분포를 고려하여 관련기관이 추천한 결혼이민자들의 그룹심층면접 |
| 조사내용 | -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그룹심층면접조사(F.G.I) 실시, 다문화 사회통합 지원사업 현황,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현황 및 특성, 중앙정부와 NGO 등과의 연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통합정책 및 추진체계에 대한 입장, 관련 정책의 수요도 등 조사 |
| 조사일자 | - 2008. 10. |

### 2) 그룹심층면접자 특성

설문조사에 협조한 기관들의 추천에 의해 지역별 그룹심층면접을 실시한 면접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Ⅳ - 5▐ 결혼이민자그룹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대상자 (성별) | 출신국적지 | 거주지 | 입국년도 (국적취득) | 결혼 기간 (유형) | 나이 (배우자) | 학력 (배우자) | 취업여부 (경험) | 동거가족 | |
|---|---|---|---|---|---|---|---|---|---|
| | | | | | | | | 자녀 (수) | 시부모 |
| A(여) | 중국 조선족 | 송파구 | 2005년 (미취득) | 6개월 (초혼) | 27 (39) | 고졸 (고졸) | 비취업 (○) | 0 | × |
| B(여) | 러시아 | 송파구 | 2004년 (미취득) | 4년 (초혼) | 37 (49) | 대졸 (대학원졸) | 비취업 (○) | 1 | × |
| C(여) | 필리핀 | 송파구 | 1999년 (취득) | 9년 (초혼) | 41 (51) | 중졸 (중졸) | 취업 (○) | 1 | × |
| D(여) | 러시아 | 송파구 | 2002년 (미취득) | 6년 (재혼) | 42 (53) | 대졸 (고졸) | 취업 (○) | 1 | ○ |
| E(여) | 태국 | 금천구 | 2008년 (미취득) | 5개월 (초혼) | 28 (28) | 대졸 (대졸) | 비취업 (×) | 0 | ○ |
| F(여) | 베트남 | 금천구 | 2006년 (미취득) | 2년 (초혼) | 23 (38) | 초졸 (고졸) | 비취업 (○) | 1 | ○ |
| G(여) | 몽골 | 금천구 | 2008년 (미취득) | 8개월 (재혼) | 31 (36) | – (고졸) | 비취업 (×) | 1 | × |
| H(여) | 캄보디아 | 금천구 | 2005년 (취득) | 3년 (초혼) | 30 (57) | 초졸 (대졸) | 비취업 (○) | 1 | × |
| I(여) | 캄보디아 | 관악구 | 2007년 (미취득) | 1년 (초혼) | 21 (41) | 초졸 (고졸) | 비취업 (×) | 0 | × |
| J(여) | 중국 조선족 | 도봉구 | 2005년 (미취득) | 4년 (초혼) | 32 ( – ) | 대졸 (고졸) | 비취업 (○) | 1 | × |
| K(여) | 중국 한족 | 도봉구 | 2007년 (미취득) | 1년 (초혼) | 22 ( – ) | 고졸 (대학원졸) | 비취업 (×) | 1 | ○ |
| L(여) | 중국 한족 | 도봉구 | 2007년 (미취득) | 1년 (초혼) | 27 ( – ) | 대졸 (대졸) | 비취업 (×) | 0 | × |
| M(여) | 우즈베키스탄 | 도봉구 | 2006년 (미취득) | 2년 (초혼) | 28 ( – ) | 고졸 (대졸) | 비취업 (×) | 1 | × |
| N(여) | 베트남 | 도봉구 | 2007년 (미취득) | 1년 (초혼) | 30 ( – ) | 대졸 (대졸) | 비취업 (×) | 0 | ○ |
| O(여) | 인도네시아 | 성동구 | 2002년 (미취득) | 6년 (초혼) | 42 (38) | 대졸 (고졸) | 비취업 (○) | 2 | ○ |
| P(여) | 캄보디아 | 서대문구 | 2006년 (미취득) | 2년 (초혼) | 21 (50) | 고졸 (고졸) | 비취업 (○) | 0 | ○ |

| 대상자 (성별) | 출신국적지 | 거주지 | 입국년도 (국적취득) | 결혼 기간 (유형) | 나이 (배우자) | 학력 (배우자) | 취업여부 (경험) | 동거가족 | |
|---|---|---|---|---|---|---|---|---|---|
| | | | | | | | | 자녀 (수) | 시부모 |
| Q(여) | 중국 조선족 | 성동구 | 2003년 (취득) | 4년 (초혼) | 34 (42) | 고졸 (고졸) | 비취업 (○) | 2 | × |
| R(여) | 베트남 | 은평구 | 2004년 (미취득) | 3년 (초혼) | 31 (47) | 중졸 ( – ) | 비취업 (×) | 1 | × |
| S(여) | 베트남 | 은평구 | 2005년 (미취득) | 3년 (초혼) | 23 (47) | 중졸 ( – ) | 비취업 (○) | 1 | ○ |
| T(여) | 몽골 | 중랑구 | 2005년 (미취득) | 3년 (초혼) | 32 (48) | 고졸 ( – ) | 비취업 (○) | 1 | ○ |
| U(남) | 이란 | 광진구 | 1993년 (미취득) | 4년 (초혼) | 43 (38) | 고졸 (고졸) | 취업 (○) | 2 | × |
| V(여) | 필리핀 | 광진구 | 2000 (취득) | 8년 (초혼) | 40 (52) | 고졸 (초졸) | 취업 (○) | 1 | × |
| W(남) | 인도 | 광진구 | 2000년 (미취득) | 3년 (초혼) | 28 (30) | 고졸 (대졸) | 취업 (○) | 0 | × |
| X(여) | 몽골 | 중랑구 | 2006년 (미취득) | 2년 (재혼) | 38 (44) | 대졸 ( – ) | 비취업 (○) | 2 | × |

# 제2절 일반 현황

## 1. 일반적 특성

### 1) 외국인 배우자의 특성

#### (1) 성별

서울지역 결혼이민자 및 그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비확률표집방법인 유의표집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온전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이는 모집단인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수와 출신국적별 분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실태조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의 성별 분포가 한쪽 성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모집단인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이하 '외국인 배우자'라고 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은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이를 제외하였으며, 후술하는 내용은 외국인 배우자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다문화가족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사안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의 조사결과를 함께 기술하였다.

▌표 Ⅳ - 6▌ 응답자의 성별 특성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남 | 16 | 1.9 | 174 | 98.3 |
| 여 | 826 | 98.1 | 3 | 1.7 |

### (2) 출신국적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배우자를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 한족(22.6%), 필리핀(14.1%), 일본(9.7%), 중국 조선족(8.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10.2%로 우즈베키스탄(1.4%), 러시아(0.5%), 대만(0.4%) 등이 포함되었다.

▌표 Ⅳ - 7▌ 출신국적별 분포

| 구분 | 사례수[19] | 비율(%)[20] |
|---|---|---|
| 합계 | 842 | 100.0 |
| 중국조선족 | 72 | 8.6 |
| 중국한족 | 190 | 22.6 |
| 일본 | 82 | 9.7 |
| 베트남 | 252 | 29.9 |
| 필리핀 | 119 | 14.1 |
| 캄보디아 | 41 | 4.9 |
| 기타 | 86 | 10.2 |

### (3) 연령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1~30세 이하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1~40세 이하가 31.6%, 41~50세 이하는 10.6% 순으로 나타났다. 20세 이하의 경우는 3.2%로 10대 후반의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예가 일부 있었으며, 50대 이상인 경우도 1.4%로 소수 포함되었다. 전체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최연소자는 19세, 최고령자는 62세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0.59세였다.

**▌표 Ⅳ - 8▐ 연령별 분포**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842 | 100.0 |
| 20세 이하 | 27 | 3.2 |
| 21~30세 이하 | 447 | 53.1 |
| 31~40세 이하 | 266 | 31.6 |
| 41~50세 이하 | 89 | 10.6 |
| 51세 이상 | 12 | 1.4 |
| 무응답 | 1 | 0.1 |
| 평균연령: 30.59세 | 최소연령: 19세 | 최고연령: 62세 |

출신국적별로 연령을 분석해 보면, 중국 조선족과 일본, 필리핀 출신의 경우는 31~40세 이하가 각각 50.0%, 48.8%, 39.5%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은 21~30세 이하가 각각 85.4%, 81.7%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20세 미만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는 집단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이었으며,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41세 이상의 응답자는 한 명도 없어 대체로 다른 출신국에 비해 나이가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19) 본 보고서에서 사례수는 빈도를 의미하며, 각종 분석 시 사례수가 30 미만인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0) 본 보고서에서 비율은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것으로 그 합이 100.0이 아닐 수 있다.

▌표 Ⅳ - 9▌ 출신국적별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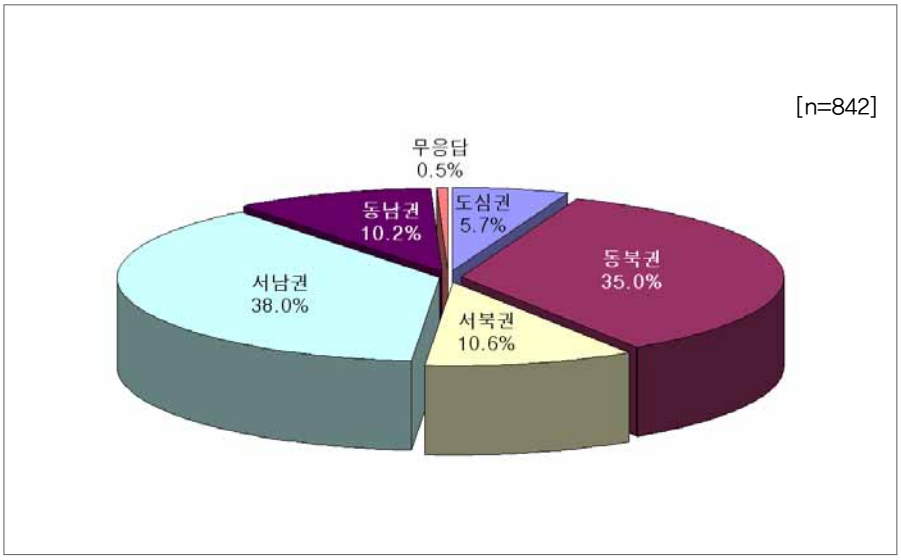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연령(%) | | | | | |
|---|---|---|---|---|---|---|---|
| | | 20세 이하 | 21~30세 이하 | 31~40세 이하 | 41~50세 이하 | 51세 이상 | 무응답 |
| 합계 | 842 | 3.2 | 53.1 | 31.6 | 10.6 | 1.4 | 0.1 |
| 중국조선족 | 72 | 1.4 | 26.4 | 50.0 | 16.7 | 5.6 | 0.0 |
| 중국한족 | 190 | 0.5 | 53.2 | 38.9 | 6.8 | 0.5 | 0.0 |
| 일본 | 82 | 0.0 | 11.0 | 48.8 | 34.1 | 6.1 | 0.0 |
| 베트남 | 252 | 8.3 | 81.7 | 7.9 | 1.6 | 0.0 | 0.4 |
| 필리핀 | 119 | 0.0 | 40.3 | 39.5 | 20.2 | 0.0 | 0.0 |
| 캄보디아 | 41 | 7.3 | 85.4 | 7.3 | 0.0 | 0.0 | 0.0 |
| 기타 | 86 | 1.2 | 33.7 | 53.5 | 9.3 | 2.3 | 0.0 |
| $\chi$ 2-검정 | $\chi$ 2=328.711, p-value[21)]=.000 | | | | | | |

### (4) 거주 지역(권역)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5개 권역[22)]으로 구분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서남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3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북권(35.0%), 서북권(10.6%), 동남권(10.2%), 도심권(5.7%) 순으로 나타나 서남권과 동북권에 70%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악구(8.2%), 구로구(8.0%) 순으로 나타났다.

21) 유의확률은 실시한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0.05보다 작으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0.01보다 작으면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22) 서울특별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분류한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관련 각종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3개 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8개 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3개 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7개 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구




〈그림 Ⅳ - 1〉 거주 지역(권역)별 분포

이를 출신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중국 조선족 출신은 서남권에 50.0%, 중국 한족 출신은 서남권과 동북권에 각각 43.7%와 30.0%가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도 서남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61.0%로 많았다. 한편,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의 경우는 동북권에 각각 37.3%와 42.0%가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권역)별로 외국인배우자 중 특정 출신국의 여성들이 많은 경우가 다르므로 정책수립시 이를 근거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Ⅳ - 10▐ 출신국적별 거주 지역(권역)별 분포

| 구분 | 사례수 | 거주 권역(%) | | | | | |
|---|---|---|---|---|---|---|---|
| | | 도심권 | 동북권 | 서북권 | 서남권 | 동남권 | 무응답 |
| 합계 | 842 | 5.7 | 35.0 | 10.6 | 38.0 | 10.2 | 0.5 |
| 중국조선족 | 72 | 4.2 | 18.1 | 5.6 | 50.0 | 22.2 | 0.0 |
| 중국한족 | 190 | 2.6 | 30.0 | 12.6 | 43.7 | 9.5 | 1.6 |
| 일본 | 82 | 8.5 | 34.1 | 7.3 | 40.2 | 9.8 | 0.0 |
| 베트남 | 252 | 7.9 | 37.3 | 15.1 | 32.9 | 6.3 | 0.4 |
| 필리핀 | 119 | 4.2 | 42.0 | 10.1 | 34.5 | 9.2 | 0.0 |
| 캄보디아 | 41 | 2.4 | 31.7 | 0.0 | 61.0 | 4.9 | 0.0 |
| 기타 | 86 | 8.1 | 46.5 | 5.8 | 22.1 | 17.4 | 0.0 |
| $x$ 2-검정 | $x$ 2=80.380, p-value=.000 | | | | | | |

### (5) 입국시기 및 입국목적

#### 가. 한국 입국시기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시기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7.7%는 2000년 이후에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로 이 가운데 2007년 입국한 경우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6년(17.6%), 2008년(17.2%) 순으로 나타나, 특히 2006년 이후에 절반 이상인 59.5%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신국적별로 한국 입국시기를 살펴보면, 중국 한족 출신은 2007년(36.3%)과 2008년(35.3%)에 집중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필리핀 출신은 종교단체 활동의 영향에 따라 2000년 이전에 입국한 경우가 각각 50.0%, 18.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한국 입국시기가 오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는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최근에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본 조사에서도 이들 출신의 대다수인 75.5%(베트남), 87.8%(캄보디아)가 2006년 이후에 상대적으로 많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1▌ 출신국적별 한국 입국시기

| 구분 | 사례수 | 한국 입국시기(%) | | | | | | | | | | |
|---|---|---|---|---|---|---|---|---|---|---|---|---|
| | | '00 이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무응답 |
| 합계 | 842 | 11.0 | 3.7 | 3.1 | 2.4 | 5.6 | 5.3 | 8.1 | 17.6 | 24.7 | 17.2 | 1.3 |
| 중국조선족 | 72 | 9.7 | 1.4 | 4.2 | 4.2 | 13.9 | 13.9 | 9.7 | 13.9 | 20.8 | 5.6 | 2.8 |
| 중국한족 | 190 | 1.6 | 1.1 | 1.1 | 1.1 | 2.6 | 2.6 | 4.2 | 14.2 | 36.3 | 35.3 | 0.0 |
| 일본 | 82 | 50.0 | 8.5 | 7.3 | 2.4 | 11.0 | 3.7 | 7.3 | 3.7 | 2.4 | 1.2 | 2.4 |
| 베트남 | 252 | 1.2 | 0.4 | 0.8 | 0.8 | 1.6 | 6.3 | 11.5 | 27.4 | 29.8 | 18.3 | 2.0 |
| 필리핀 | 119 | 18.5 | 14.3 | 5.9 | 8.4 | 5.0 | 3.4 | 7.6 | 11.8 | 14.3 | 10.9 | 0.0 |
| 캄보디아 | 41 | 0.0 | 0.0 | 0.0 | 0.0 | 4.9 | 4.9 | 2.4 | 22.0 | 46.3 | 19.5 | 0.0 |
| 기타 | 86 | 19.8 | 3.5 | 7.0 | 1.2 | 12.8 | 5.8 | 9.3 | 18.6 | 12.8 | 7.0 | 2.3 |
| $x$ 2-검정 | $x$ 2=467.385, p-value=.000 | | | | | | | | | | | |

#### 나. 한국 입국목적

외국인 배우자의 81.9%가 결혼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8명 이상은 국제결혼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관광(6.5%), 취업(3.1%), 친척방문(2.9%)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족 출신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가 12.5%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일본 출신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39.0%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국적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한 입국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비슷했으며,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입국이 각각 98.0%, 95.1%를 차지해 대다수의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의 국제결혼 붐은 결혼중개업소의 인권침해적이고 탈법적인 사례들을 낳았으며 많이 이것이 사회문제화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표 Ⅳ - 12▌ 출신국적별 한국 방문 목적

| 구분 | 사례수 | 한국 방문 목적(%) | | | | | | | |
|---|---|---|---|---|---|---|---|---|---|
| | | 국제결혼 | 취업 | 유학 | 직장업무 | 관광 | 친척방문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842 | 81.9 | 3.1 | 1.4 | 1.8 | 6.5 | 2.9 | 1.9 | 0.5 |
| 중국조선족 | 72 | 76.4 | 12.5 | 0.0 | 1.4 | 1.4 | 8.3 | 0.0 | 0.0 |
| 중국한족 | 190 | 87.4 | 2.6 | 1.1 | 2.1 | 2.1 | 3.2 | 1.1 | 0.5 |
| 일본 | 82 | 51.2 | 0.0 | 3.7 | 0.0 | 39.0 | 1.2 | 3.7 | 1.2 |
| 베트남 | 252 | 98.0 | 0.8 | 0.0 | 0.4 | 0.0 | 0.4 | 0.4 | 0.0 |
| 필리핀 | 119 | 81.5 | 4.2 | 0.0 | 0.8 | 4.2 | 5.0 | 3.4 | 0.8 |
| 캄보디아 | 41 | 95.1 | 2.4 | 2.4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86 | 51.2 | 4.7 | 7.0 | 9.3 | 15.1 | 4.7 | 7.0 | 1.2 |
| $x$ 2-검정 | $x$ 2=332.185, p-value=.000 | | | | | | | | |

### (6) 한국 거주기간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1년~3년 거주한 경우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년 미만 거주가 30.6%로 나타나 한국에 3년 미만 거주한 경우가 2/3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현재 동거가족과 서울에 거주한 기간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10년인 경우는 14.7%, 3년~5년인 경우는 12.9%, 10년 이상인 경우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중국 한족 출신은 1년 미만인 경우가 54.7%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일본 출신은 한국 거주기간이 5년~10년(32.9%)인 경우와 10년 이상

(23.2%)인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다른 국적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한족과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각각 91.5%, 77.3%, 90.3%로 이들 국적 출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3▐ 출신국적별 한국 거주기간

| 구분 | 사례수 | 한국 거주기간(%) | | | | | |
|---|---|---|---|---|---|---|---|
| |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무응답 |
| 합계 | 842 | 30.6 | 35.3 | 12.9 | 14.7 | 5.8 | 0.6 |
| 중국조선족 | 72 | 9.7 | 40.3 | 26.4 | 13.9 | 6.9 | 2.8 |
| 중국한족 | 190 | 54.7 | 36.8 | 5.3 | 2.6 | 0.5 | 0.0 |
| 일본 | 82 | 13.4 | 14.6 | 14.6 | 32.9 | 23.2 | 1.2 |
| 베트남 | 252 | 32.1 | 45.2 | 15.5 | 4.0 | 2.4 | 0.8 |
| 필리핀 | 119 | 17.6 | 23.5 | 10.9 | 37.8 | 10.1 | 0.0 |
| 캄보디아 | 41 | 41.5 | 48.8 | 7.3 | 2.4 | 0.0 | 0.0 |
| 기타 | 86 | 19.8 | 27.9 | 15.1 | 30.2 | 7.0 | 0.0 |
| $x$ 2-검정 | $x$ 2=304.133, p-value=.000 | | | | | | |

### (7) 한국어 실력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실력을 한국에 입국할 당시와 현재로 나누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입국 당시의 한국어 실력은 75.3%가 못한다('전혀 못한다' 41.8% + '못하는 편이다' 33.5%)고 응답하였으며, 척도치 평균 역시 보통수준인 3점보다 크게 낮은 1.92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입국 당시 한국어를 습득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현재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5%가 못한다('전혀 못한다' 4.4% + '못하는 편이다' 26.1%)고 응답하였으며, 척도치 평균도 2.89점으로 나타나 입국 후 한국어 실력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국 당시의 한국어 실력과 현재 한국어 실력을 점수(5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해 보면, 입국 당시의 한국어 실력은 1.92점인데 비해 현재의 한국어 실력은 2.89점으로 나타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보통수준인 3점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14▐ 한국어 실력

| 구분 | 입국 당시 | | 현재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842 | 100.0 |
| 매우 잘한다 | 15 | 1.8 | 32 | 3.8 |
| 잘하는 편이다 | 50 | 5.9 | 143 | 17.0 |
| 보통이다 | 137 | 16.3 | 378 | 44.9 |
| 못하는 편이다 | 282 | 33.5 | 220 | 26.1 |
| 전혀 못한다 | 352 | 41.8 | 37 | 4.4 |
| 무응답 | 6 | 0.7 | 32 | 3.8 |
| 5점 척도 평균 | 1.92점 | | 2.89점 | |

주 : 전혀 못한다 1점, 못하는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잘하는 편이다 4점, 매우 잘한다 5점

한국어 실력을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중국 조선족 출신의 한국어 실력이 입국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른 출신국적 외국인 배우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국 당시 한국어 실력이 가장 낮은 집단은 일본 출신으로 척도치 평균이 1.30점('못한다' 97.6%)이었으며, 현재 한국어 실력이 가장 저조한 집단은 중국 한족과 캄보디아 출신으로 척도치 평균이 각각 2.54점('못한다' 45.3%)과 2.55점('못한다' 48.8%)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한국어 실력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입국 전후로 어느 정도 한국어가 가능한 중국 조선족 출신을 제외하고 일본과 필리핀 출신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긴만큼 한국어 실력도 좋은 것('잘한다' 25.6%, 29.4%)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국 한족과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는 '잘한다'가 각각 8.4%, 14.6%로 매우 낮게 나왔다.

▌표 Ⅳ - 15▐ 출신국적별 한국어 실력

| 구분 | 사례수 | 입국 당시 한국어 실력(%) | | | | 현재 한국어 실력(%) | | | |
|---|---|---|---|---|---|---|---|---|---|
| | | 잘한다 | 보통 | 못한다 | 5점 만점 | 잘한다 | 보통 | 못한다 | 5점 만점 |
| 합계 | 842 | 7.7 | 16.3 | 75.3 | 1.92 | 20.8 | 44.9 | 30.5 | 2.89 |
| 중국조선족 | 72 | 22.2 | 36.1 | 40.3 | 2.72 | 41.7 | 43.1 | 11.1 | 3.38 |
| 중국한족 | 190 | 1.6 | 10.0 | 87.9 | 1.49 | 8.4 | 44.2 | 45.3 | 2.54 |
| 일본 | 82 | 0.0 | 2.4 | 97.6 | 1.30 | 25.6 | 34.1 | 39.0 | 2.89 |
| 베트남 | 252 | 7.9 | 25.8 | 65.9 | 2.18 | 17.1 | 52.8 | 26.2 | 2.89 |
| 필리핀 | 119 | 12.6 | 10.1 | 75.6 | 2.13 | 29.4 | 42.0 | 23.5 | 3.12 |
| 캄보디아 | 41 | 4.9 | 0.0 | 95.1 | 1.51 | 14.6 | 34.1 | 48.8 | 2.55 |
| 기타 | 86 | 10.5 | 15.1 | 73.3 | 1.91 | 27.9 | 44.2 | 19.8 | 3.15 |
| $x$ 2-검정 | $x$ 2=204.646, p-value=.000 | | | | | $x$ 2=107.203, p-value=.000 | | | |

주 : 전혀 못한다 1점, 못하는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잘하는 편이다 4점, 매우 잘한다 5점

### (8) 교육수준

외국인 배우자의 교육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모국에서의 공교육 수학기간을 조사한 결과, 10년~12년인 경우가 3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7년~9년(22.6%), 13년 이상(20.1%), 6년 이하(13.3%) 순이었으며 공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10.1%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로 공교육 수학기간을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과 필리핀 출신은 공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각각 19.4%, 19.3%로 다른 국적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에 비해 중국 한족과 일본 출신은 10년 이상 공교육을 받은 경우가 각각 64.7%, 84.1%로 나타나 공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캄보디아 출신은 9년 미만 공교육을 받은 경우가 89.8%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6▌ 출신국적별 교육수준

| 구분 | 사례수 | 공교육 수학기간(%) | | | | | |
|---|---|---|---|---|---|---|---|
| | | 없다 | 6년 이하 | 7년 ~9년 | 10년 ~12년 | 13년 이상 | 무응답 |
| 합계 | 842 | 10.1 | 13.3 | 22.6 | 31.9 | 20.1 | 2.0 |
| 중국조선족 | 72 | 19.4 | 6.9 | 23.6 | 34.7 | 12.5 | 2.8 |
| 중국한족 | 190 | 3.7 | 6.3 | 24.7 | 45.8 | 18.9 | 0.5 |
| 일본 | 82 | 8.5 | 2.4 | 2.4 | 32.9 | 51.2 | 2.4 |
| 베트남 | 252 | 9.1 | 19.8 | 32.9 | 30.6 | 5.6 | 2.0 |
| 필리핀 | 119 | 19.3 | 16.8 | 9.2 | 25.2 | 25.2 | 4.2 |
| 캄보디아 | 41 | 7.3 | 29.3 | 51.2 | 9.8 | 2.4 | 0.0 |
| 기타 | 86 | 9.3 | 12.8 | 10.5 | 22.1 | 43.0 | 2.3 |
| $x$ 2-검정 | $x$ 2=242.524, p-value=.000 | | | | | | |

### (9) 한국국적 취득 여부 및 미취득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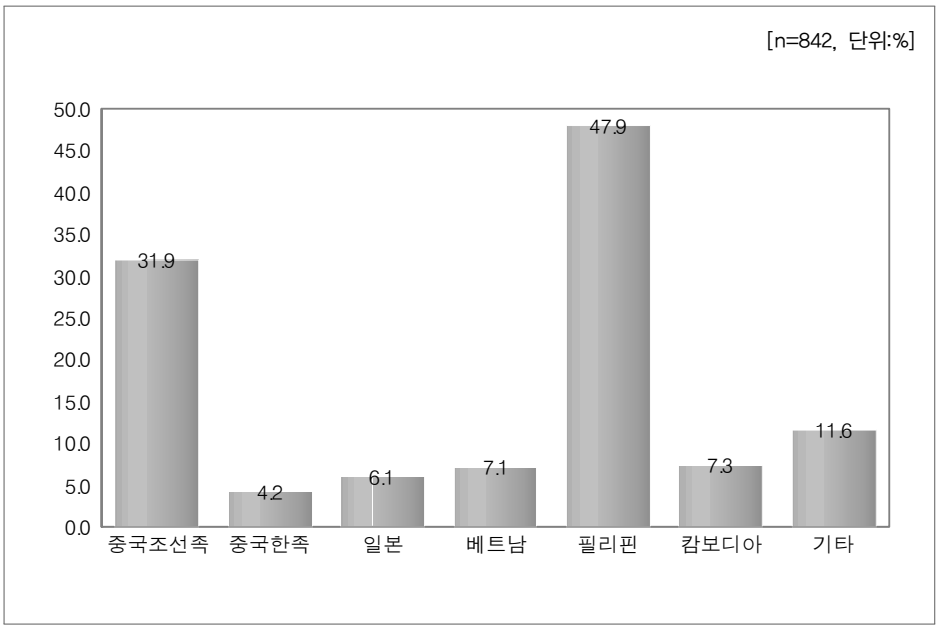
#### 가. 한국국적 취득 여부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7%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외국인 배우자(84.1%)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한국 거주기간과 결혼기간이 비교적 짧은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응답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과도 무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Ⅳ - 17▐ 한국국적 취득 여부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842 | 100.0 |
| 취득했다 | 124 | 14.7 |
| 취득하지 못했다 | 708 | 84.1 |
| 무응답 | 10 | 1.2 |

한국국적 취득 여부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필리핀 출신의 국적 취득률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국적 취득률이 31.9%로 나타나 타 출신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한국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국 한족과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는 국적 취득률이 각각 4.2%, 7.1%, 7.3%로 낮았으며, 일본 출신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응답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국적 취득률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2〉 출신국적별 한국국적 취득 여부

### 나. 한국국적 미취득 사유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 708명을 대상으로 그 미취득 사유를 조사한 결과, '귀화허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적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2.3%)', '국적취득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허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은 이유는 응답자 가운데 한국 거주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1년 미만으로 거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서 이 같은 응답이 82.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출신국적별로는 1년 미만 거주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한족 출신의 경우에서 76.9%로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국적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을 분석해보면,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 같은 응답률이 많았으며, 출신국적별로는 일본 출신의 경우가 67.5%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적 취득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서류준비와 절차가 복잡해서' 등은 국적 취득에 대한 정보제공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나 정보제공에 있어 적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되며,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도망갈까봐 걱정되어 한국인 배우자가 협조를 안해주는 사례도 있으므로 국적취득시 배우자의 협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국적취득시 어려운 점은 심층면접에서도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국적취득해 빨리 돈벌고 싶은데 국적취득하면 남편이 도망갈거라는 의심이 있어 그래서 국적 안 취득하게 할려 그러고 돈벌면 나갈꺼다라고 의심받아요(결혼이민여성 B)'

'외국인등록증 날짜 갱신하지 못해 벌금냈어요. 원래 가난한데 내가 잘못해서 낸 것이긴 하지만 일주일 지났다고 20만원 냈어요. 내가 한국법을 몰라서 그러면 선생님이 저희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하실 때 날짜되면 메신저라도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했죠. 그러니까 당신 인터넷 있고 출입국 관리국치면 다 뜨는데 인터넷? 한국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우리 인터넷 안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돼---.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당신들 벌금 받아먹고 사는 거 아니예요 하니까 그분이 기분이 나빠서 그럼 벌금내지 말고 중국에 가세요. 그래서 제가 움츠려든거요.(결혼이민여성 J)'

▌표 Ⅳ - 18▐ 한국국적 미취득 사유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708 | 100.0 |
| 귀화허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 430 | 60.7 |
| 국적취득 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 40 | 5.6 |
| 서류준비와 절차가 복잡해서 | 34 | 4.8 |
|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서 | 14 | 2.0 |
| 배우자와 가족의 도움이 없어서 | 16 | 2.3 |
| 국적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87 | 12.3 |
| 기타 | 58 | 8.2 |
| 무응답 | 29 | 4.1 |

### (10) 주거형태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전세인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가(30.9%), 월세(23.4%), 공공임대아파트(4.8%), 친척집(2.0%)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주거형태를 분석해 보면, 중국 조선족 출신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전세인 경우가 51.4%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일본 출신은 전세와 월세인 경우가 각각 31.7%로, 베트남 출신은 자가인 경우가 37.7%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중국 조선족과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기숙사나 친척집, 공공임대아파트, 복지시설 등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각각 12.5%, 14.3%, 12.1%로 나타나 10명 중 1명 정도는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19▐ 출신국적별 주거형태

| 구분 | 사례수 | 주거형태(%) | | | | | | | | |
|---|---|---|---|---|---|---|---|---|---|---|
| | | 자가 | 전세 | 월세 | 기숙사 | 친척집 | 공공임대 APT | 복지시설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842 | 30.9 | 34.4 | 23.4 | 0.1 | 2.0 | 4.8 | 0.2 | 2.4 | 1.8 |
| 중국조선족 | 72 | 16.7 | 51.4 | 19.4 | 0.0 | 2.8 | 6.9 | 1.4 | 1.4 | 0.0 |
| 중국한족 | 190 | 36.8 | 35.3 | 22.6 | 0.0 | 2.6 | 1.6 | 0.5 | 0.5 | 0.0 |
| 일본 | 82 | 25.6 | 31.7 | 31.7 | 0.0 | 1.2 | 6.1 | 0.0 | 3.7 | 0.0 |
| 베트남 | 252 | 37.7 | 32.1 | 17.5 | 0.0 | 1.2 | 4.8 | 0.0 | 2.8 | 4.0 |
| 필리핀 | 119 | 21.0 | 35.3 | 26.9 | 0.8 | 3.4 | 6.7 | 0.0 | 3.4 | 2.5 |
| 캄보디아 | 41 | 31.7 | 29.3 | 24.4 | 0.0 | 2.4 | 7.3 | 0.0 | 2.4 | 2.4 |
| 기타 | 86 | 27.9 | 29.1 | 32.6 | 0.0 | 1.2 | 4.7 | 0.0 | 3.5 | 1.2 |
| $x$ 2-검정 | $x$ 2=73.661, p-value=.010 | | | | | | | | | |

### (11) 가족구성

가족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8.5%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높은 빈도를 차지한 가족유형은 부부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35.7%)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부만 사는 경우가 24.6%, 부부와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는 13.2%, 부부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 및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는 9.1%, 본인의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전배우자와의 사이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2.8%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에 사는 결혼이민자들의 특색으로 농촌지역보다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한편,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양육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 부모나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총 3사례로 전체의 0.4%에 불과하였다

▌표 Ⅳ - 20▐ 가족구성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842 | 100.0 |
| 부부 | 207 | 24.6 |
| 부부+배우자와 나 사이의 자녀 | 301 | 35.7 |
| 부부+배우자의 이전 결혼 자녀 | 22 | 2.6 |
| 부부+나의 이전 결혼 자녀 | 2 | 0.2 |
| 부부+배우자의 부모 | 111 | 13.2 |
| 부부+배우자와 나 사이의 자녀+배우자의 부모 | 77 | 9.1 |
| 부부+배우자의 부모+배우자의 형제자매 | 15 | 1.8 |
| 부부+배우자와 나 사이의 자녀+배우자의 형제자매 | 7 | 0.8 |
| 부부+배우자와 나 사이의 자녀+배우자의 부모+배우자의 형제자매 | 12 | 1.4 |
| 부부+나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 3 | 0.4 |
| 기타 | 85 | 10.1 |

출신국적별로 가족구성을 분석해 보면, 일본과 필리핀 출신의 경우 부부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구성된 가족유형이 각각 64.6%, 50.4%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중국 한족 출신은 부부만 사는 경우가 44.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한편,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는 부부와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가 각각 20.6%, 19.5%로 상대적으로 높아 출신국별로도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Ⅳ - 21▌ 출신국적별 가족구성

| 구분 | 사례수 | 가족구성(%) | | | | | | | | | | |
|---|---|---|---|---|---|---|---|---|---|---|---|---|
| | | 부부 | 부부+배우자와 나 사이의 자녀 | 부부+배우자의 이전 결혼 자녀 | 부부+나의 이전 결혼 자녀 | 부부+배우자의 부모 | 부부+배우자와 나 사이의 자녀+배우자의 부모 | 부부+배우자의 부모+배우자의 형제자매 | 부부+배우자와 나 사이의 자녀+배우자의 형제자매 | 부부+배우자와 나 사이의 자녀+배우자의 부모+배우자의 형제자매 | 부부+나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 기타 |
| 합계 | 842 | 24.6 | 35.7 | 2.6 | 0.2 | 13.2 | 9.1 | 1.8 | 0.8 | 1.4 | 0.4 | 10.1 |
| 중국조선족 | 72 | 15.3 | 45.8 | 4.2 | 0.0 | 11.1 | 6.9 | 1.4 | 0.0 | 1.4 | 2.8 | 11.1 |
| 중국한족 | 190 | 44.2 | 20.0 | 3.7 | 0.0 | 12.6 | 6.3 | 1.6 | 0.0 | 3.7 | 0.5 | 7.4 |
| 일본 | 82 | 18.3 | 64.6 | 2.4 | 0.0 | 3.7 | 1.2 | 0.0 | 0.0 | 0.0 | 0.0 | 9.8 |
| 베트남 | 252 | 18.3 | 31.0 | 1.6 | 0.0 | 20.6 | 15.5 | 0.8 | 0.8 | 1.2 | 0.0 | 10.3 |
| 필리핀 | 119 | 14.3 | 50.4 | 1.7 | 0.0 | 9.2 | 10.1 | 1.7 | 2.5 | 0.0 | 0.0 | 10.1 |
| 캄보디아 | 41 | 31.7 | 12.2 | 4.9 | 0.0 | 19.5 | 7.3 | 9.8 | 0.0 | 0.0 | 0.0 | 14.6 |
| 기타 | 86 | 24.4 | 39.5 | 2.3 | 2.3 | 5.8 | 5.8 | 3.5 | 2.3 | 1.2 | 0.0 | 12.8 |
| $x$ 2-검정 | $x$ 2=213.678, p-value=.000 | | | | | | | | | | | |

### (12) 월평균 가구소득

외국인 배우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1.6%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전체의 월수입이 50만원~100만원 미만이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각각 7.4%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열악한 경우는 총 14.4%를 차지하였으며, 결국 월 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보이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5.5%인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도 2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들 가운데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즉 중국 조선족 출신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족은 23.7%인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의 경우는 각각 5.2%, 3.3%에 불과해 출신국별로도 특색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필리핀 출신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15.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을 '잘 모른다'는 응답은 중국 한족과 베트

남 출신의 경우에서 각각 30.0%, 32.8%로 상대적으로 많아 결혼결정 당시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혼을 생활하면서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심층면접에서도 드러났다.

현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정보 제공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이 미비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심층면접에서도 결혼이민자가 경제생활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배제되어 있는 안타까움이 드러났다.

'남편 얼마버는지 몰라요. 안가르쳐 줘요. 사업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 남편이 맘에 들면 돈 주고 맘에 안 들면 돈 안줘요(결혼이민여성 S)'

'남편이 뭐하는지 몰라요. 결혼당시 사진관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 사진관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예요.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줘요. 한국은 잘 사니까 당연히 남편이 집이 있는지 알았어요. 굴런데 아니구요(결혼이민여성 H)'

**▌표 Ⅳ - 22▐ 출신국적별 월평균 가구소득**

| 구분 | 사례수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 | 소득 없다 | 50 만원 미만 | 50~ 100 만원 미만 | 100~ 200 만원 미만 | 200~ 300 만원 미만 | 300~ 400 만원 미만 | 400~ 500 만원 미만 | 500 만원 이상 | 잘 모르겠다 |
| 합계 | 842 | 7.0 | 1.2 | 7.4 | 29.9 | 21.6 | 4.8 | 3.3 | 1.1 | 23.8 |
| 중국조선족 | 72 | 6.9 | 1.4 | 5.6 | 38.9 | 20.8 | 18.1 | 5.6 | 0.0 | 2.8 |
| 중국한족 | 190 | 7.4 | 0.5 | 3.2 | 25.3 | 25.8 | 5.3 | 1.6 | 1.1 | 30.0 |
| 일본 | 82 | 4.9 | 0.0 | 9.8 | 34.1 | 24.4 | 6.1 | 7.3 | 0.0 | 13.4 |
| 베트남 | 252 | 4.4 | 0.8 | 7.5 | 31.0 | 23.8 | 1.6 | 3.2 | 0.4 | 27.4 |
| 필리핀 | 119 | 15.1 | 5.0 | 14.3 | 22.7 | 6.7 | 0.8 | 2.5 | 0.0 | 32.8 |
| 캄보디아 | 41 | 4.9 | 0.0 | 0.0 | 41.5 | 24.4 | 12.2 | 0.0 | 0.0 | 17.1 |
| 기타 | 86 | 5.8 | 0.0 | 9.3 | 30.2 | 23.3 | 2.3 | 4.7 | 7.0 | 17.4 |
| $x$ 2-검정 | $x$ 2=183.918, p-value=.000 | | | | | | | | | |

### (13) 건강상태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매우 좋다' 25.7%, '약간 좋다' 23.9%, '약간 나쁘다' 5.6%, '매우 나쁘다' 0.8% 순으로 나타났다. 좋다는 응답이 49.5%로 나쁘다는 응답 6.4%보다 43.1%p 높고, 건강상태가 보통이상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93.7%를 차지해 응답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척도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3.68점으로 나타났다.

▌표 Ⅳ - 23▌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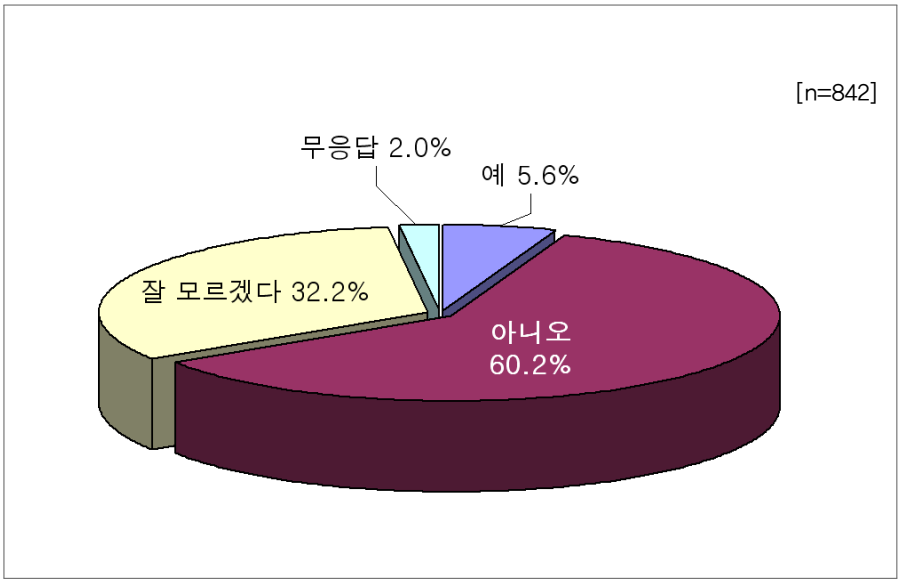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842 | 100.0 |
| 매우 좋다 | 216 | 25.7 |
| 약간 좋다 | 201 | 23.9 |
| 보통이다 | 371 | 44.1 |
| 약간 나쁘다 | 47 | 5.6 |
| 매우 나쁘다 | 7 | 0.8 |
| 무응답 | - | - |
| 5점 척도 평균 | 3.68점 | |

주 : 매우 나쁘다 1점, 약간 나쁘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좋다 4점, 매우 좋다 5점

### (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외국인 배우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5.6%에 불과하며 전체 응답자 가운데 47명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12월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2%보다 높을 뿐 아니라 서울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2.1%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아예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정이 전체 응답자의 15.6%이고,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도 2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다문화가정 가운데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받는 비율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자 47명을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다문화가정이 42.6%(2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과 일본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다문화가정이 각각 19.1%(9가구), 17.0%(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잘 모르겠다'는 경우는 32.2%, 무응답은 2.0%로 조사되었다.




〈그림 Ⅳ -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 2) 한국인 배우자 응답자 특성

#### (1) 연령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31~40세 이하가 46.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41~50세 이하 42.9%, 51~60세 이하 6.8%, 21~30세 이하 2.8% 순으로 나타났으며, 61세 이상은 0.3%로 단 1명이 있었다. 전체 한국인 배우자 가운데 최연소자는 27세, 최고령자는 73세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1.67세였다.

▌표 Ⅳ - 24▐ 연령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77 | 100.0 |
| 21~30세 이하 | 5 | 2.8 |
| 31~40세 이하 | 83 | 46.9 |
| 41~50세 이하 | 76 | 42.9 |
| 51~60세 이하 | 12 | 6.8 |
| 61세 이상 | 1 | 0.6 |
| 평균연령 41.67세 | 최소연령 27세 | 최고연령 73세 |

### (2) 서울시 거주기간

한국인 배우자의 서울시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서울시에 거주한지 10년 이상 된 경우가 2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년~10년 22.0%, 1년~3년21.5%, 1년 미만 19.2%, 3년~5년 1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 - 25▐ 서울시 거주기간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77 | 100.0 |
| 1년 미만 | 34 | 19.2 |
| 1년~3년 | 38 | 21.5 |
| 3년~5년 | 25 | 14.1 |
| 5년~10년 | 39 | 22.0 |
| 10년 이상 | 40 | 22.6 |
| 무응답 | 1 | 0.6 |

### (3) 주거형태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전세인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가 32.8%, 월세 24.3%, 기타 6.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에는 기숙사, 친척집 등이 포함되었다.

▌표 Ⅳ - 26▐ 주거형태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77 | 100.0 |
| 자가 | 58 | 32.8 |
| 전세 | 65 | 36.7 |
| 월세 | 43 | 24.3 |
| 기타 | 11 | 6.2 |

### (4) 교육수준

한국인 배우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5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 이상 22.6%, 중학교 졸업 16.4%, 초등학교 졸업 4.5% 순으로 나타났고, 무학인 경우도 1.1%로 조사되었다.

▌표 Ⅳ - 27▐ 교육수준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77 | 100.0 |
| 무학 | 2 | 1.1 |
| 초등학교 졸업 | 8 | 4.5 |
| 중학교 졸업 | 29 | 16.4 |
| 고등학교 졸업 | 98 | 55.4 |
| 대학교 졸업 이상 | 40 | 22.6 |

### (5) 직업 및 근로시간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기술/생산직인 경우가 2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설/노무직 15.8%, 배송/운전직 13.0%, 관리/사무직 1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 - 28▐ 직업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77 | 100.0 |
| 관리/사무직 | 22 | 12.4 |
| 판매/영업직 | 11 | 6.2 |
| 서비스직 | 17 | 9.6 |
| 기술/생산직 | 50 | 28.2 |
| 배송/운전직 | 23 | 13.0 |
| 강사/교사직 | 3 | 1.7 |
| 건설/노무직 | 28 | 15.8 |
| 학생 | 1 | 0.6 |
| 전업주부 | 2 | 1.1 |
| 무직 | 4 | 2.3 |
| 기타 | 10 | 5.6 |
| 무응답 | 6 | 3.4 |

직업이 있는 한국인 배우자 170(학생, 전업주부, 무직 제외)을 대상으로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이 54시간 이상인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5~53시간 28.8%, 36~44시간 13.5%, 1~17시간 11.2%, 18~35시간 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 - 29▐ 1주일 평균 근로시간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70 | 100.0 |
| 1~17시간 | 19 | 11.2 |
| 18~35시간 | 14 | 8.2 |
| 36~44시간 | 23 | 13.5 |
| 45~53시간 | 49 | 28.8 |
| 54시간 이상 | 62 | 36.5 |
| 무응답 | 3 | 1.8 |

### (6)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직업이 있는 한국인 배우자 170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개인소득을 조사해 본 결과, 150~200만원인 경우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00~150만원 24.7%, 200~250만원 19.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개인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0.6%로 나타났으며, 250만원 이상인 경우도 11.2%로 19명이 포함되었다.

▌표 Ⅳ - 30▐ 월평균 개인소득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70 | 100.0 |
| 50만원 미만 | 1 | 0.6 |
| 50~100만원 미만 | 17 | 10.0 |
| 100~150만원 미만 | 42 | 24.7 |
| 150~200만원 미만 | 57 | 33.5 |
| 200~250만원 미만 | 33 | 19.4 |
| 250~300만원 미만 | 9 | 5.3 |
| 300만원 이상 | 10 | 5.9 |
| 무응답 | 1 | 0.6 |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인 경우가 4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300만원 22.6%, 50~100만원 9.0%, 300~400만원7.3% 순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배우자가 알고 있는 가구소득보다 한국인 배우자의 설문에서 나타난 소득이 적게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 배우자들이 가구소득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31▐ 월평균 가구소득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77 | 100.0 |
| 소득이 없다 | 9 | 5.1 |
| 50~100만원 미만 | 16 | 9.0 |
| 100~200만원 미만 | 86 | 48.6 |
| 200~300만원 미만 | 40 | 22.6 |
| 300~400만원 미만 | 13 | 7.3 |
| 400~500만원 미만 | 3 | 1.7 |
| 500만원 이상 | 2 | 1.1 |
| 잘 모르겠다 | 4 | 2.3 |
| 무응답 | 4 | 2.3 |

### (7) 건강상태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좋다는 응답이 40.2%('매우 좋다' 26.6% + '약간 좋다' 13.6%)로 나타난 반면, 나쁘다는 응답은 10.7%('매우 나쁘다' 1.1% + '약간 나쁘다' 9.6%)로 나타나 좋다는 응답이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상태를 점수로 환산하면 5점 척도에서 평균 3.5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평균 3.68점임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이는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평균 11살 정도가 많은 것에서 오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표 Ⅳ - 32▐ 건강상태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77 | 100.0 |
| 매우 좋다 | 47 | 26.6 |
| 약간 좋다 | 24 | 13.6 |
| 보통이다 | 86 | 48.6 |
| 약간 나쁘다 | 17 | 9.6 |
| 매우 나쁘다 | 2 | 1.1 |
| 무응답 | 1 | 0.6 |
| 5점 척도 평균 | 3.55점 | |

주 : 매우 나쁘다 1점, 약간 나쁘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좋다 4점, 매우 좋다 5점

### (8) 결혼기간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3년인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인 경우가 22.0%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지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약 2/3가량(57.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지 5년 이상인 경우도 28.2%나 있었으며, 3년~5년인 경우는 14.1%로 나타났다.

▌표 Ⅳ - 33▐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기간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77 | 100.0 |
| 1년 미만 | 39 | 22.0 |
| 1년~3년 미만 | 63 | 35.6 |
| 3년~5년 미만 | 25 | 14.1 |
| 5년~10년 미만 | 39 | 22.0 |
| 10년 이상 | 11 | 6.2 |

### (9) 결혼상태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혼인 경우가 88.1%, 재혼인 경우가 11.3%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초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체 국제결혼 현황을 나타내는 정부통계를 살펴보면 재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 - 34▐ 결혼상태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77 | 100.0 |
| 초혼 | 156 | 88.1 |
| 재혼 | 20 | 11.3 |
| 무응답 | 1 | 0.6 |

### (10) 자녀유무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있는 경우가 57.6%로 자녀가 없는 경우(42.4%)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35▐ 자녀유무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77 | 100.0 |
| 자녀 있음 | 102 | 57.6 |
| 자녀 없음 | 75 | 42.4 |

## 2. 국제결혼과정

### 1) 결혼기간

본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년~3년 미만인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년 미만 22.6%, 5년 이상 21.4%, 3년~5년 미만 14.4% 순으로 나타나 결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3가량(63.3%)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배우자의 평균 결혼기간은 3년 5개월이었으며, 가장 짧은 경우는 1개월부터 가장 길게는 33년 5개월까지 있었다. 결혼기간이 짧게 나타난 것은 본 조사가 다문화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졌고, 이때 기관에 오는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결혼기간에 대해 분석해 보면, 결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중국 한족 출신(40.0%)과 캄보디아 출신(34.1%)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1년~3년 미만인 경우는 베트남 출신(55.6%)과 역시 캄보디아 출신(61.0%)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이 3년~5년 미만인 경우는 중국 조선족 출신(26.4%)에서, 5년 이상인 경우는 일본 출신(65.9%)과 필리핀 출신(48.7%)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에 종교단체의 소개로 들어온 경우가 해당된다.

▌표 Ⅳ - 36▐ 출신국적별 결혼기간

| 구분 | 사례수 | 결혼기간(%) | | | | |
|---|---|---|---|---|---|---|
| |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 이상 | 무응답 |
| 합계 | 842 | 22.6 | 40.7 | 14.4 | 21.4 | 1.0 |
| 중국조선족 | 72 | 6.9 | 40.3 | 26.4 | 22.2 | 4.2 |
| 중국한족 | 190 | 40.0 | 44.2 | 8.4 | 6.3 | 1.1 |
| 일본 | 82 | 9.8 | 13.4 | 11.0 | 65.9 | 0.0 |
| 베트남 | 252 | 24.2 | 55.6 | 14.7 | 4.4 | 1.2 |
| 필리핀 | 119 | 11.8 | 24.4 | 15.1 | 48.7 | 0.0 |
| 캄보디아 | 41 | 34.1 | 61.0 | 4.9 | 0.0 | 0.0 |
| 기타 | 86 | 14.0 | 29.1 | 23.3 | 33.7 | 0.0 |
| $x$ 2-검정 | $x$ 2=312.872, p-value=.000 | | | | | |

### 2) 배우자 소개경로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29.8%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현재의 한국인 배우자와 만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 아는 사람의 소개(28.4%)', '종교단체의 소개(13.4%)', '소개 없이 직접 만남(12.4%)', '부모, 형제, 친척의 소개(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 가량은 친척, 친구, 아는 사람 등의 소개로 한국인 배우자와 만난 경우이지만, 지인의 소개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한 경우도 있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배우자와의 만남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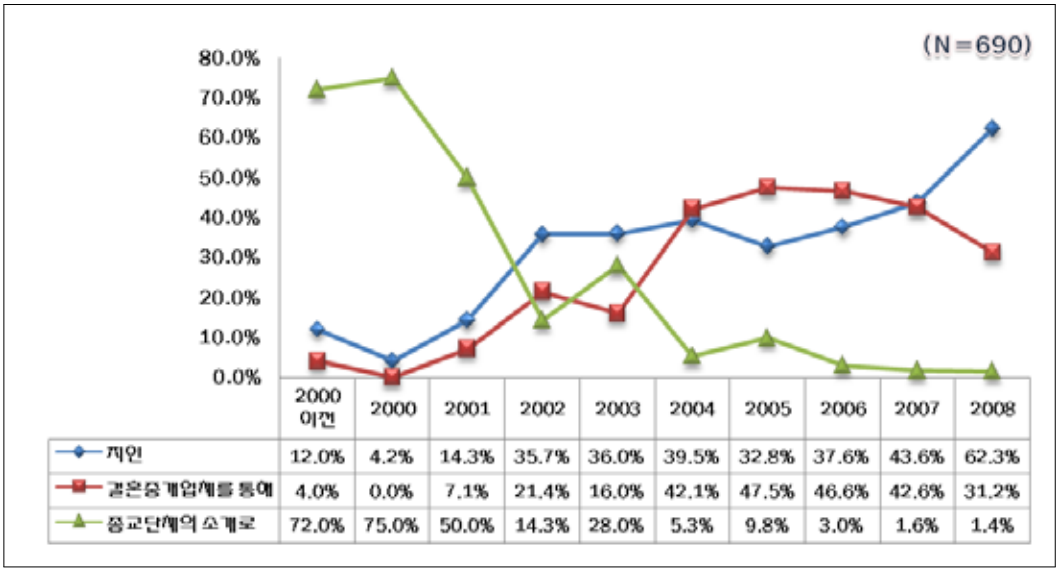
출신국적별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소개경로를 분석해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는 베트남 출신(47.2%)과 캄보디아 출신(73.2%)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친구, 아는 사람을 통해 만나게 된 경우는 중국 한족 출신이 43.7%로 많았다. 한편, 종교단체의 소개로 만나게 된 경우는 일본 출신(63.4%)과 필리핀 출신(41.2%)에서 많았으며, 부모, 형제, 친척의 소개로 만나게 된 경우는 중국 조선족 출신이 25.0%로 많았다.

▌표 Ⅳ - 37▐ 출신국적별 배우자 소개경로

| 구분 | 사례수 | 배우자 소개경로(%) | | | | | | | |
|---|---|---|---|---|---|---|---|---|---|
| | | 부모, 형제, 친척소개 | 친구, 아는 사람소개 | 결혼 중개업체 | 종교단체 소개 | 행정기관 | 소개 없이 직접 만남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842 | 10.9 | 28.4 | 29.8 | 13.4 | 0.4 | 12.4 | 3.2 | 1.5 |
| 중국조선족 | 72 | 25.0 | 27.8 | 22.2 | 1.4 | 0.0 | 18.1 | 4.2 | 1.4 |
| 중국한족 | 190 | 9.5 | 43.7 | 26.3 | 1.1 | 0.5 | 12.6 | 5.3 | 1.1 |
| 일본 | 82 | 0.0 | 14.6 | 1.2 | 63.4 | 0.0 | 14.6 | 2.4 | 3.7 |
| 베트남 | 252 | 13.1 | 29.8 | 47.2 | 0.4 | 0.8 | 6.0 | 0.4 | 2.4 |
| 필리핀 | 119 | 9.2 | 17.6 | 13.4 | 41.2 | 0.0 | 10.9 | 6.7 | 0.8 |
| 캄보디아 | 41 | 4.9 | 22.0 | 73.2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86 | 11.6 | 22.1 | 22.1 | 9.3 | 0.0 | 31.4 | 3.5 | 0.0 |
| $x$ 2-검정 | $x$ 2=495.776, p-value=.000 | | | | | | | | |

한편, 입국목적이 국제결혼인 외국인 배우자 690명만을 대상으로 입국시기별로 배우자 소개경로를 분석한 결과, 종교단체의 소개로 만나는 경우는 2000년 이후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 지인의 소개로 만나는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

나는 경우는 2001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최근인 2006년부터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의 이런 추세는 최근 위법성 국제결혼에 대한 처벌 강화와 결혼중개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 | 2000 이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자인 | 12.0% | 4.2% | 14.3% | 35.7% | 36.0% | 39.5% | 32.8% | 37.6% | 43.6% | 62.3% |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 4.0% | 0.0% | 7.1% | 21.4% | 16.0% | 42.1% | 47.5% | 46.6% | 42.6% | 31.2% |
| 종교단체의 소개로 | 72.0% | 75.0% | 50.0% | 14.3% | 28.0% | 5.3% | 9.8% | 3.0% | 1.6% | 1.4% |

〈그림 Ⅳ - 4〉 입국시기별 배우자 소개경로(국제결혼)

### 3) 소개비 지불여부

한국인 배우자를 소개받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용을 지불했다는 응답이 41.7%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응답(29.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9.1%는 소개비 지불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용을 지불한 주체에 대해서는 '배우자만 지불했다'는 경우가 24.2%, '나와 배우자 모두 지불했다'는 경우는 15.6%이었으며, 외국인 배우자만 지불한 경우도 1.9% 있었다.

출신국적별로 소개비 지불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어느 누구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 출신(41.7%)과 일본 출신(69.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배우자만 지불했다'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36.9%)과 캄보디아 출신(46.3%)에서, '나와 배우자 모두 지불했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24.4%)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 출신국적별로 특색을 나타냈다.

▌표 Ⅳ - 38▌ 출신국적별 소개비 지불 여부

| 구분 | 사례수 | 소개비 지불 여부(%) | | | | |
|---|---|---|---|---|---|---|
| | | 어느 누구도 지불하지 않았다 | 나만 지불했다 | 배우자만 지불했다 | 나와 배우자 모두 지불했다 | 모르겠다 |
| 합계 | 842 | 29.2 | 1.9 | 24.2 | 15.6 | 29.1 |
| 중국조선족 | 72 | 41.7 | 1.4 | 23.6 | 12.5 | 20.8 |
| 중국한족 | 190 | 18.4 | 4.2 | 11.6 | 22.1 | 43.7 |
| 일본 | 82 | 69.5 | 1.2 | 0.0 | 15.9 | 13.4 |
| 베트남 | 252 | 19.8 | 1.6 | 36.9 | 18.3 | 23.4 |
| 필리핀 | 119 | 21.0 | 0.0 | 31.1 | 2.5 | 45.4 |
| 캄보디아 | 41 | 9.8 | 0.0 | 46.3 | 24.4 | 19.5 |
| 기타 | 86 | 52.3 | 2.3 | 18.6 | 9.3 | 17.4 |
| $x$ 2-검정 | $x$ 2=223.604, p-value=.000 | | | | | |

### 4) 국제결혼 당시의 어려움

#### (1) 외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당시 어려움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제결혼을 할 당시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8%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은 20.2%에 불과해 외국인 배우자 10명 중 8명 정도는 국제결혼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당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638명을 대상으로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1%가 국제결혼 당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소통의 문제'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35.4%, '가족의 반대' 16.8%,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절차' 13.3%, '짧은 결혼결정기간' 1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 - 39▐ 국제결혼 당시 어려움(복수응답)

| 구분(n=638) | 사례수 | 비율(%) |
|---|---|---|
| 가족의 반대 | 107 | 16.8 |
|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 226 | 35.4 |
| 언어소통의 문제 | 498 | 78.1 |
| 국제결혼비용 | 58 | 9.1 |
| 제한된 배우자선택의 자유 | 33 | 5.2 |
| 짧은 결혼결정기간 | 74 | 11.6 |
| 배우자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 | 47 | 7.4 |
|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절차 | 85 | 13.3 |
| 기타 | 38 | 6.0 |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국제결혼 당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분석해 보면, 중국 조선족 출신의 경우 '언어소통의 문제'가 43.1%로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필리핀 출신의 경우는 이것이 92.6%로 나타나 대부분의 필리핀 출신 외국인 배우자들이 언어소통의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 출신의 경우는 '가족의 반대로 인한 어려움(34.7%)'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어려움(61.1%)'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베트남 출신의 경우는 '가족의 반대로 인한 어려움'이 4.6%로 매우 적었다.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는 '제한된 배우자선택으로 인한 어려움(20.7%)'과 '까다로운 입국심사 및 절차로 인한 어려움(27.6%)'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결국 출신국적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출신국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차이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본출신의 경우 가족의 반대가 심한 반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는 가족의 반대로 인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40▐ 출신국적별 국제결혼 당시 어려움(복수응답)

| 구분 (n=638) | 전체 | 중국 조선족 | 중국 한족 | 일본 | 베트남 | 필리핀 | 캄보디아 | 기타 |
|---|---|---|---|---|---|---|---|---|
| 가족의 반대 | 16.8 | 15.7 | 15.0 | 34.7 | 4.6 | 20.4 | 17.2 | 24.2 |
|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 35.4 | 33.3 | 23.8 | 61.1 | 34.9 | 37.0 | 27.6 | 39.4 |
| 언어소통의 문제 | 78.1 | 43.1 | 87.5 | 83.3 | 71.1 | 92.6 | 79.3 | 68.2 |
| 국제결혼비용 | 9.1 | 15.7 | 10.0 | 4.2 | 10.5 | 8.3 | 6.9 | 6.1 |
| 제한된 배우자선택의 자유 | 5.2 | 3.9 | 0.0 | 0.0 | 7.2 | 10.2 | 20.7 | 4.5 |
| 짧은 결혼결정기간 | 11.6 | 9.8 | 5.0 | 4.2 | 17.1 | 18.5 | 17.2 | 10.6 |
| 배우자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 | 7.4 | 3.9 | 2.5 | 4.2 | 9.2 | 13.0 | 13.8 | 9.1 |
|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절차 | 13.3 | 17.6 | 16.9 | 6.9 | 10.5 | 12.0 | 27.6 | 10.6 |
| 기타 | 6.0 | 7.8 | 8.1 | 5.6 | 3.9 | 5.6 | 3.4 | 6.1 |

### (2)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당시 어려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 177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당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81.9%로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당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한국인 배우자 145명을 대상으로 다시 그 어려움의 내용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0%가 국제결혼 당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소통의 문제'를 꼽아 이 문제가 결혼 당사자 모두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당시 겪었던 어려움은 '짧은 결혼결정기간(27.6%)'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24.8%)', '배우자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22.1%)', '가족의 반대(11.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응답한 국제결혼 당시의 어려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언어소통의 문제'는 양자 모두에서 1순위를 차지한 반면, 2순위부터는 결혼 당사자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35.4%, '가족의 반대' 16.8%,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절차' 13.3%, '짧은 결혼결정기간' 11.6% 순으로 나타난데 반해,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짧은 결혼결정기간'이 27.6%,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24.8%, '배우자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 22.1%, '가족의 반대' 11.7% 순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 - 41▐ 국제결혼 당시 어려움(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복수응답)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n=638) | | 한국인 배우자 (n=145)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가족의 반대 | 107 | 16.8 | 17 | 11.7 |
|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 226 | 35.4 | 36 | 24.8 |
| 언어소통의 문제 | 498 | 78.1 | 103 | 71.0 |
| 국제결혼비용 | 58 | 9.1 | 15 | 10.3 |
| 제한된 배우자선택의 자유 | 33 | 5.2 | 9 | 6.2 |
| 짧은 결혼결정기간 | 74 | 11.6 | 40 | 27.6 |
| 배우자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 | 47 | 7.4 | 32 | 22.1 |
|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절차 | 85 | 13.3 | 15 | 10.3 |
| 기타 | 38 | 6.0 | 5 | 3.5 |

### 5) 결혼동기

#### (1)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동기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5%는 배우자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결혼했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모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15.7%, '경제적 안정을 위해'라는 응답 12.2%, '한국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라는 응답 7.1%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가 35%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동기를 분석해 보면, 베트남 출신의 경우 모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결혼했다는 응답이 32.9%로 타 출신국적의 응답에 비해 많았다. 또한 일본 출신의 경우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결혼했다는 응답이 1.2%로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결혼했다는 응답이 41.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는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결혼했다는 응답이 19.5%로 타 출신국적의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배우자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결혼했다는 응답은 70.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결혼동기가 출신국적별로 유의미하게 달리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한 정책은 이들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욕구조사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표 Ⅳ - 42▌ 출신국적별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동기(복수응답)

| 구분 (n=842) | 전체 | 중국 조선족 | 중국 한족 | 일본 | 베트남 | 필리핀 | 캄보디아 | 기타 |
|---|---|---|---|---|---|---|---|---|
| 배우자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 80.5 | 75.0 | 81.1 | 86.6 | 76.6 | 87.4 | 70.7 | 84.9 |
| 모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 15.7 | 8.3 | 7.9 | 0.0 | 32.9 | 10.1 | 19.5 | 9.3 |
| 경제적 안정을 위해 | 12.2 | 12.5 | 11.6 | 1.2 | 10.3 | 13.4 | 41.5 | 14.0 |
| 한국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 | 7.1 | 8.3 | 7.9 | 0.0 | 6.3 | 11.8 | 12.2 | 4.7 |
|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 5.7 | 6.9 | 6.3 | 0.0 | 7.5 | 2.5 | 19.5 | 1.2 |
| 기타 | 4.4 | 5.6 | 7.4 | 8.5 | 1.6 | 4.2 | 0.0 | 3.5 |

#### (2)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동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

유를 알아보았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87.6%)고 응답한 15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출신국가의 사람과 결혼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권유로'가 30.3%, '배우자의 출신국가 사람들이 순종적이고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 24.5%, '배우자 출신국가 사람들의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해서' 16.8%, '종교적인 이유로' 14.8%, '결혼중개업체의 권유로' 1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제결혼이 현재 한국사회의 가부장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안정이나 모국가정의 경제적 지원 내지 취직을 위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결혼동기가 다른 데서 오는 부부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부부갈등이나 가족상담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과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Ⅳ - 43▐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동기(한국인 배우자, 복수응답)

| 구분(n=155) | 사례수 | 비율(%) |
|---|---|---|
|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 59 | 38.1 |
| 배우자 출신국가 사람들의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해서 | 26 | 16.8 |
| 배우자의 출신국가 사람들이 순종적이고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 | 38 | 24.5 |
| 배우자 출신국가의 국제결혼절차가 수월해서 | 5 | 3.2 |
| 배우자 출신국가의 국제결혼비용이 적게 들어서 | 8 | 5.2 |
| 결혼중개업체의 권유로 | 16 | 10.3 |
| 배우자 출신국가의 사람과 결혼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권유로 | 47 | 30.3 |
| 종교적인 이유로 | 23 | 14.8 |
| 기타 | 7 | 4.5 |

### 6) 결혼상태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재 결혼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혼인 경우가 90.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혼인 경우는 7.2%에 불과했다.

출신국적별로 결혼상태를 분석해 보면, 초혼인 경우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가 100.0%로 가장 많았으며, 재혼인 경우에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 출신의 경우가 각각

18.1%, 13.2%로 상대적으로 많아 출신국적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Ⅳ - 44▐ 출신국적별 결혼상태

| 구분 | 사례수 | 결혼상태(%) | | | | | | |
|---|---|---|---|---|---|---|---|---|
| | | 초혼 | 재혼 | 별거 | 이혼 | 사별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842 | 90.1 | 7.2 | 0.7 | 0.7 | 0.4 | 0.2 | 0.6 |
| 중국조선족 | 72 | 76.4 | 18.1 | 0.0 | 2.8 | 1.4 | 0.0 | 1.4 |
| 중국한족 | 190 | 85.8 | 13.2 | 0.5 | 0.0 | 0.0 | 0.0 | 0.5 |
| 일본 | 82 | 93.9 | 6.1 | 0.0 | 0.0 | 0.0 | 0.0 | 0.0 |
| 베트남 | 252 | 95.2 | 2.0 | 0.4 | 1.2 | 0.4 | 0.4 | 0.4 |
| 필리핀 | 119 | 95.0 | 0.8 | 1.7 | 0.8 | 0.8 | 0.0 | 0.8 |
| 캄보디아 | 4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86 | 81.4 | 14.0 | 2.3 | 0.0 | 0.0 | 1.2 | 1.2 |
| $x$ 2-검정 | $x$ 2=75.584, p-value=.000 | | | | | | | |

## 3. 배우자 특성

### 1) 배우자 연령

외국인 배우자가 응답한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에 대해 분석한 결과, 31세~40세 이하인 경우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1세~50세 이하 43.6%, 51세~60세 이하 7.0%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1.58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배우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1세~50세 이하인 경우는 필리핀 출신에서 52.1%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31~40세 이하인 경우는 중국 한족 출신에서 48.4%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61세 이상인 경우는 일본과 캄보디아 출신에서만 각각 1.2%, 2.4%로 조사되었으며, 한국인 배우자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은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로 42.51세였고, 가장 낮은 집단은 중국 한족 출신의 경우로 평균 41.14세였다.

▌표 Ⅳ - 45▐ 출신국적별 배우자 연령

| 구분 | 사례수 | 배우자 연령(%) | | | | | | 평균 연령 (세) |
|---|---|---|---|---|---|---|---|---|
| | | 30세 이하 | 31~40세 이하 | 41~50세 이하 | 51~60세 이하 | 61세 이상 | 무응답 | |
| 합계 | 842 | 1.7 | 44.9 | 43.6 | 7.0 | 0.2 | 2.6 | 41.58 |
| 중국조선족 | 72 | 0.0 | 36.1 | 48.6 | 9.7 | 0.0 | 5.6 | 42.25 |
| 중국한족 | 190 | 2.6 | 48.4 | 39.5 | 7.9 | 0.0 | 1.6 | 41.14 |
| 일본 | 82 | 1.2 | 40.2 | 47.6 | 8.5 | 1.2 | 1.2 | 42.48 |
| 베트남 | 252 | 1.2 | 48.0 | 41.7 | 4.8 | 0.0 | 4.4 | 41.34 |
| 필리핀 | 119 | 0.0 | 39.5 | 52.1 | 5.9 | 0.0 | 2.5 | 42.19 |
| 캄보디아 | 41 | 0.0 | 46.3 | 43.9 | 7.3 | 2.4 | 0.0 | 42.51 |
| 기타 | 86 | 5.8 | 46.5 | 38.4 | 9.3 | 0.0 | 0.0 | 40.56 |
| $x$ 2-검정 | $x$ 2=49.391, p-value=.014 | | | | | | | |

한편, 외국인 배우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11세의 연령 차이를 보였는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 차이는 11~20세로 전체의 41.1%에 해당하였으며, 6~10세 차이는 24.6%, 1~5세 차이는 15.1%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21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8.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갑이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연하인 경우도 8.0%로 일부 포함되었다.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평균 17.10세의 차이를 보여 부부간의 연령차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1세 이상 차이가 전체의 87.9%로 대다수의 캄보디아 여성들이 자신보다 10세 이상 나이가 많은 한국 남성들과 결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가 가장 적은 집단은 일본 출신의 경우로 평균 2.90세의 연령 차이를 보였으며, 동갑 및 연하와 결혼한 경우가 29.3%, 1~5세 차이가 52.4%로 나타나 대다수의 일본 여성들은 자신과의 연령 차이가 5세 이하인 한국 남성들과 결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장 연령 차이가 심한 경우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외국인 여성 배우자는 27세, 한국인 남자 배우자는 68세로 41세 연상이었다.

배우자간의 연령차가 너무 커 부부간의 세대차를 느끼게 하고 이것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부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나이가 많은 한국인 배우자 대신 외국인 배우자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표 Ⅳ - 46▐ 출신국적별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23)]

| 구분 | 사례수 |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 | | | | | | 연령 차이 (세) |
|---|---|---|---|---|---|---|---|---|
| | | 동갑 및 연하 | 1~5세 연상 | 6~10세 연상 | 11~20세 연상 | 21세(+) 연상 | 무응답 | |
| 합계 | 842 | 8.0 | 15.1 | 24.6 | 41.1 | 8.6 | 2.7 | 11.00 |
| 중국조선족 | 72 | 13.9 | 18.1 | 41.7 | 19.4 | 1.4 | 5.6 | 7.29 |
| 중국한족 | 190 | 3.7 | 13.2 | 35.3 | 44.7 | 1.6 | 1.6 | 10.20 |
| 일본 | 82 | 29.3 | 52.4 | 13.4 | 3.7 | 0.0 | 1.2 | 2.90 |
| 베트남 | 252 | 1.6 | 2.0 | 9.9 | 61.5 | 20.2 | 4.8 | 16.36 |
| 필리핀 | 119 | 5.9 | 15.1 | 37.0 | 36.1 | 3.4 | 2.5 | 9.67 |
| 캄보디아 | 41 | 2.4 | 0.0 | 9.8 | 65.9 | 22.0 | 0.0 | 17.10 |
| 기타 | 86 | 16.3 | 26.7 | 30.2 | 22.1 | 4.7 | 0.0 | 7.26 |
| $x$ 2-검정 | $x$ 2=416.034, p-value=.000 | | | | | | | |

### 2) 배우자 결혼상태

외국인 배우자가 응답한 배우자의 결혼상태에 대해 분석해 보면, 초혼인 경우가 81.6%로 가장 많았으며, 재혼인 경우는 16.0%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이 초혼인 경우는 일본 출신의 경우에서 93.9%로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에서는 68.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재혼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에서 31.7%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경우 23.6%, 중국 한족 출신의 경우 1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 - 47▐ 출신국적별 배우자 결혼상태

| 구분 | 사례수 | 배우자 결혼상태(%) | | | |
|---|---|---|---|---|---|
| | | 초혼 | 재혼 | 잘 모르겠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81.6 | 16.0 | 1.3 | 1.1 |
| 중국조선족 | 72 | 72.2 | 23.6 | 0.0 | 4.2 |
| 중국한족 | 190 | 80.0 | 17.9 | 2.1 | 0.0 |
| 일본 | 82 | 93.9 | 6.1 | 0.0 | 0.0 |
| 베트남 | 252 | 83.3 | 13.5 | 1.6 | 1.6 |
| 필리핀 | 119 | 85.7 | 10.9 | 1.7 | 1.7 |
| 캄보디아 | 41 | 68.3 | 31.7 | 0.0 | 0.0 |
| 기타 | 86 | 76.7 | 22.1 | 1.2 | 0.0 |
| $x$ 2-검정 | $x$ 2=38.625, p-value=.003 | | | | |

23) 연령 차이는 외국인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초혼인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초혼(외국인)-재혼(한국인)인 경우 10.1%, 재혼(외국인)-초혼(한국인)인 경우 5.3%, 재혼(외국인)-재혼(한국인)인 경우 1.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신국적별로 배우자간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 모두 초혼인 경우는 일본 출신의 경우에서 92.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초혼(외국인)-재혼(한국인)인 경우는 캄보디아 출신에서 31.7%로 나타나 해당 전체 비율(10.1%)에 비해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48▐ 출신국적별 배우자간 결혼상태

| 구분 | 사례수 | 배우자간 결혼상태(%) | | | | | |
|---|---|---|---|---|---|---|---|
| | | 초혼(외국인)-초혼(한국인) | 초혼(외국인)-재혼(한국인) | 재혼(외국인)-재혼(한국인) | 재혼(외국인)-초혼(한국인) | 잘 모르겠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78.9 | 10.1 | 1.9 | 5.3 | 2.7 | 1.1 |
| 중국조선족 | 72 | 66.7 | 9.7 | 5.6 | 12.5 | 1.4 | 4.2 |
| 중국한족 | 190 | 77.4 | 6.3 | 2.1 | 11.1 | 3.2 | 0.0 |
| 일본 | 82 | 92.7 | 1.2 | 1.2 | 4.9 | 0.0 | 0.0 |
| 베트남 | 252 | 81.7 | 12.3 | 0.8 | 1.2 | 2.4 | 1.6 |
| 필리핀 | 119 | 83.2 | 10.1 | 0.8 | 0.0 | 4.2 | 1.7 |
| 캄보디아 | 41 | 68.3 | 31.7 | 0.0 | 0.0 | 0.0 | 0.0 |
| 기타 | 86 | 69.8 | 10.5 | 4.7 | 9.3 | 5.8 | 0.0 |
| $x$ 2-검정 | $x$ 2=104.070, p-value=.000 | | | | | | |

### 3) 배우자의 교육수준

외국인 배우자가 응답한 한국인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 이상 28.7%, 중학교 졸업 14.0%, 초등학교 졸업 4.9%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배우자의 교육수준을 분석해 보면, 한국인 배우자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는 중국 조선족과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에서 각각 61.1%, 58.5%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는 일본 출신의 경우에서 45.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초등학교 이하의 경우는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의 경우에서 각각 10.3%, 13.5%로 많았다.

▌표 Ⅳ - 49▌ 출신국적별 배우자 최종 학력

| 구분 | 사례수 | 배우자 최종 학력(%) | | | | | |
|---|---|---|---|---|---|---|---|
| | | 없다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이상 | 무응답 |
| 합계 | 842 | 1.9 | 4.9 | 14.0 | 46.7 | 28.7 | 3.8 |
| 중국조선족 | 72 | 1.4 | 1.4 | 15.3 | 61.1 | 16.7 | 4.2 |
| 중국한족 | 190 | 1.6 | 1.1 | 11.1 | 46.8 | 36.3 | 3.2 |
| 일본 | 82 | 0.0 | 0.0 | 11.0 | 42.7 | 45.1 | 1.2 |
| 베트남 | 252 | 3.2 | 7.1 | 15.5 | 50.4 | 18.3 | 5.6 |
| 필리핀 | 119 | 1.7 | 11.8 | 16.0 | 40.3 | 26.1 | 4.2 |
| 캄보디아 | 41 | 2.4 | 2.4 | 14.6 | 58.5 | 17.1 | 4.9 |
| 기타 | 86 | 1.2 | 5.8 | 15.1 | 30.2 | 46.5 | 1.2 |
| $x$ 2-검정 | $x$ 2=86.658, p-value=.000 | | | | | | |

### 4) 배우자 직업

외국인 배우자의 응답에 근거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 유무를 알아본 결과, 직업이 있는 경우는 90%로 한국인 배우자의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만 응답자의 6.8%(학생, 전업주부, 무직 포함)만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가 응답한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술/생산직이 1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설/노무직 16.3%, 관리/사무직 15.6%, 배송/운전직 1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 - 50▐ 배우자 직업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842 | 100.0 |
| 관리/사무직 | 131 | 15.6 |
| 판매/영업직 | 61 | 7.2 |
| 서비스직 | 52 | 6.2 |
| 기술/생산직 | 161 | 19.1 |
| 배송/운전직 | 90 | 10.7 |
| 간호/의료직 | 4 | 0.5 |
| 강사/교사직 | 21 | 2.5 |
| 건설/노무직 | 137 | 16.3 |
| 학생 | 4 | 0.5 |
| 전업주부 | 19 | 2.3 |
| 무직 | 34 | 4.0 |
| 기타 | 100 | 11.9 |
| 무응답 | 28 | 3.3 |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기술/생산직과 배송/운전직의 경우는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에서 각각 29.3%, 22.0%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건설/노무직의 경우는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의 경우에서 각각 21.8%, 19.3%로 많이 나타났다. 관리/사무직의 경우는 중국 한족 출신의 경우에서 22.1%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일본(6.1%)과 , 캄보디아(7.3%) 출신의 경우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51▐ 출신국적별 배우자 직업

| 구분 | 사례수 | 배우자 직업(%) | | | | | | | | | | | | |
|---|---|---|---|---|---|---|---|---|---|---|---|---|---|---|
| | | 관리/사무직 | 판매/영업직 | 서비스직 | 기술/생산직 | 배송/운전직 | 간호/의료직 | 강사/교사직 | 건설/노무직 | 학생 | 전업주부 | 무직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842 | 15.6 | 7.2 | 6.2 | 19.1 | 10.7 | 0.5 | 2.5 | 16.3 | 0.5 | 2.3 | 4.0 | 11.9 | 3.3 |
| 중국조선족 | 72 | 8.3 | 11.1 | 12.5 | 20.8 | 9.7 | 2.8 | 0.0 | 13.9 | 0.0 | 2.8 | 2.8 | 8.3 | 6.9 |
| 중국한족 | 190 | 22.1 | 7.4 | 7.4 | 20.5 | 6.3 | 0.0 | 2.6 | 13.2 | 1.1 | 0.5 | 3.7 | 12.1 | 3.2 |
| 일본 | 82 | 18.3 | 9.8 | 7.3 | 24.4 | 9.8 | 0.0 | 3.7 | 9.8 | 1.2 | 0.0 | 6.1 | 9.8 | 0.0 |
| 베트남 | 252 | 10.7 | 9.1 | 2.0 | 15.9 | 13.5 | 0.4 | 2.0 | 21.8 | 0.0 | 5.6 | 2.4 | 14.3 | 2.4 |
| 필리핀 | 119 | 17.6 | 2.5 | 6.7 | 15.1 | 10.1 | 0.0 | 1.7 | 19.3 | 0.8 | 0.0 | 5.0 | 13.4 | 7.6 |
| 캄보디아 | 41 | 9.8 | 2.4 | 7.3 | 29.3 | 22.0 | 0.0 | 0.0 | 14.6 | 0.0 | 0.0 | 7.3 | 7.3 | 0.0 |
| 기타 | 86 | 18.6 | 4.7 | 8.1 | 19.8 | 9.3 | 1.2 | 7.0 | 11.6 | 0.0 | 2.3 | 5.8 | 9.3 | 2.3 |
| $x$ 2-검정 | $x$ 2=132.440, p-value=.000 | | | | | | | | | | | | | |

### 5)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어 실력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생활 적응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에게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언어 실력을 알아보았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가 평가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언어(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 실력은 못한다는 응답이 63.6%('전혀 못한다' 31.4% + '못하는 편이다' 32.2%)로 잘한다는 응답 17.0%('매우 잘한다' 8.3% + '잘하는 편이다' 8.7%)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가 스스로 평가한 경우도 못한다는 응답이 67.8%('전혀 못한다' 22.6% + '못하는 편이다' 45.2%)로 잘한다는 응답 13%('매우 잘한다' 4.0% + '잘하는 편이다' 9.0%)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상호간의 평가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점수(5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해 보면 외국인 배우자 응답의 경우는 평균 2.29점, 한국인 배우자 응답의 경우는 평균 2.26점으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언어 실력이 보통수준(3점)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앞서 분석한 바 있는 결혼 당시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언어소통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Ⅳ - 52▐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어 실력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응답 | | 한국인 배우자 응답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매우 잘한다 | 70 | 8.3 | 7 | 4.0 |
| 잘하는 편이다 | 73 | 8.7 | 16 | 9.0 |
| 보통이다 | 144 | 17.1 | 32 | 18.1 |
| 못하는 편이다 | 271 | 32.2 | 80 | 45.2 |
| 전혀 못한다 | 264 | 31.4 | 40 | 22.6 |
| 무응답 | 20 | 2.4 | 2 | 1.1 |
| 5점 척도 평균 | 2.29점 | | 2.26점 | |

주 : 전혀 못한다 1점, 못하는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잘하는 편이다 4점, 매우 잘한다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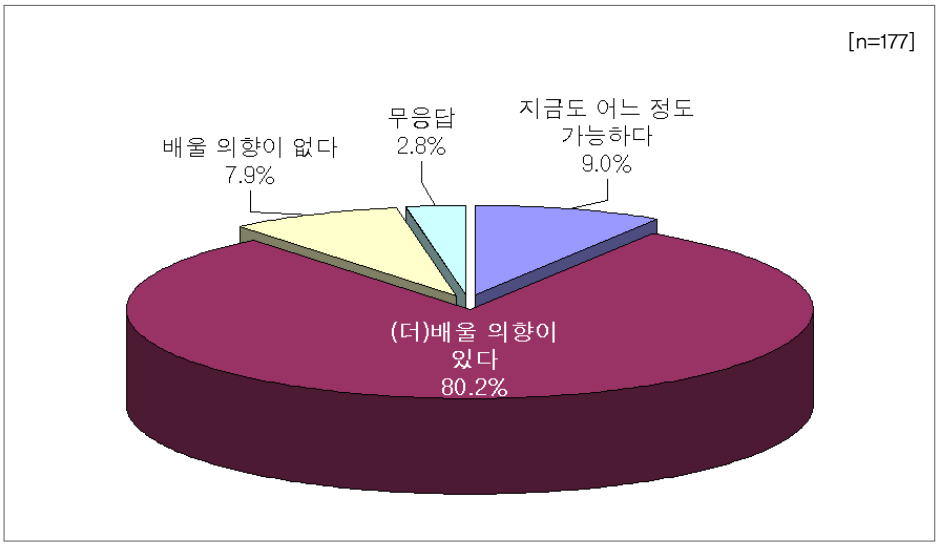
한편,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더) 배울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0.2%로 나타나 한국인 배우자 10명 중 8명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와 '배울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각각 9.0%, 7.9%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심층면접시 한국인 배우자도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적극적이기 보다는 외국인 배우자의 요구에 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배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하더니 너무 어려워서 안 배운다고. 아기만 가르치라고... 그냥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방법을 알면 더 좋겠어요'

'신랑은 배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 한국말 열심히 배우니까 자기도 배워야지... '




〈그림 Ⅳ - 5〉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어 습득 의향

## 4. 경제활동

### 1) 직업유무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는 18.5%에 불과한 반면, 직업이 없는 경우는 81.2%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 10명 중 8명은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24] 이는 2007년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여성취업률 48.9%와 서울시 여성 취업률 49.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25]

응답자의 직업유무가 출신국적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출신국은 중국 조선족으로 응답자의 27.8%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직업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은 출신국은 중국 한족이 88.9%이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85.7%, 캄보디아 85.4%, 필리핀 8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동기에서 나타났듯이 모국의 경제적 지원 내지 경제적 안정, 취업 등이 주된 결혼이유이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이므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한데 비해 취업률은 대단히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취업욕구에 따라 그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창업프로그램이나 관련정보제공등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여진다.

▌표 Ⅳ - 53▌ 출신국적별 직업 유무

| 구분 | 사례수 | 직업 유무(%) | | |
|---|---|---|---|---|
| | | 직업 있음 | 직업 없음 | 무응답 |
| 합계 | 842 | 18.5 | 81.2 | 0.2 |
| 중국조선족 | 72 | 27.8 | 72.2 | 0.0 |
| 중국한족 | 190 | 11.1 | 88.9 | 0.0 |
| 일본 | 82 | 25.6 | 74.4 | 0.0 |
| 베트남 | 252 | 14.3 | 85.7 | 0.0 |
| 필리핀 | 119 | 19.3 | 80.7 | 0.0 |
| 캄보디아 | 41 | 14.6 | 85.4 | 0.0 |
| 기타 | 86 | 33.7 | 64.0 | 2.3 |
| $\chi$ 2-검정 | $\chi$ 2=48.845, p-value=.000 | | | |

### 2) 직업유형

외국인 배우자의 직업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업주부(64.1%)와 무직인 경우(16.0%)를 제외하고는 기술/생산직(3.9%)과 강사/교사직(3.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신국적별로는 기술/생산직의 경우 캄보디아 출신(7.3%)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강사/교사

24) 본 실태조사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학생(1.1%)과 전업주부(64.1%), 무직자(16.0%)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8)

직의 경우는 일본 출신(12.2%)과 필리핀 출신(9.2%)이 높으며, 서비스직의 경우는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중국 조선족 출신의 비율(12.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전업주부의 경우는 베트남 출신(77.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 외국인 배우자들은 강사/ 교사직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직활동을 할 경우 나이차별, 국적 차별, 자녀양육이나 가사일로 인한 구직난 등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위해 노동센터에 갔는데 저희들은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외국인 상대가 아니라 한국인창구에 가서 등록이 되더라구요 근데 한국인창구에 등록이 되니까 그쪽에는 한국사람만 쓰지 아직까지 저희는 외국인으로 취급을 받아요... 나이가 30살이 넘다보니 직장일은 힘들고 공장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중국에서는 공부를 좀 했는데 공장에서 일한다니 좀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돈 벌어야지 하고 한다고 했으나 애기 유치원 끝나는 시간 맞춰서 데리고면 와야 하니깐 그 시간을 맞추다 보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결혼이민자여성 J)'

'식당 같은 거 밖에 못해요. 나이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나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나봐요(결혼이민여성 D).'

'제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제가 교사에요 이런거를 자랑스럽게 여길수 있어요(결혼이민남성 W).'

**▌표 Ⅳ - 54▐ 출신국적별 직업유형**

| 구분 | 사례수 | 직업(%) | | | | | | | | | | | | | |
|---|---|---|---|---|---|---|---|---|---|---|---|---|---|---|---|
| | | 관리/사무직 | 판매/영업직 | 서비스직 | 기술/생산직 | 배송/운전직 | 간호/의료직 | 강사/교사직 | 건설/노무직 | 학생 | 전업주부 | 무직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842 | 0.7 | 1.0 | 3.0 | 3.9 | 0.7 | 0.1 | 3.9 | 1.5 | 1.1 | 64.1 | 16.0 | 3.7 | 0.2 |
| 중국조선족 | 72 | 0.0 | 4.2 | 12.5 | 2.8 | 0.0 | 0.0 | 0.0 | 2.8 | 0.0 | 62.5 | 9.7 | 5.6 | 0.0 |
| 중국한족 | 190 | 0.5 | 0.0 | 4.2 | 2.1 | 0.0 | 0.0 | 2.1 | 0.0 | 1.6 | 54.2 | 33.2 | 2.1 | 0.0 |
| 일본 | 82 | 3.7 | 0.0 | 1.2 | 0.0 | 1.2 | 0.0 | 12.2 | 0.0 | 1.2 | 58.5 | 14.6 | 7.3 | 0.0 |
| 베트남 | 252 | 0.0 | 2.0 | 0.8 | 5.2 | 1.6 | 0.4 | 0.4 | 2.0 | 0.4 | 77.4 | 7.9 | 2.0 | 0.0 |
| 필리핀 | 119 | 0.0 | 0.0 | 0.8 | 1.7 | 0.0 | 0.0 | 9.2 | 1.7 | 0.8 | 66.4 | 13.4 | 5.9 | 0.0 |
| 캄보디아 | 41 | 0.0 | 0.0 | 2.4 | 7.3 | 2.4 | 0.0 | 2.4 | 0.0 | 0.0 | 73.2 | 12.2 | 0.0 | 0.0 |
| 기타 | 86 | 2.3 | 0.0 | 3.5 | 10.5 | 0.0 | 0.0 | 7.0 | 4.7 | 3.5 | 46.5 | 14.0 | 5.8 | 2.3 |
| $x$ 2-검정 | $x$ 2=238.690, p-value=.000 | | | | | | | | | | | | | |

### 3) 구직경로

직업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 156명을 대상으로 현 직장의 구직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국인 친구·이웃의 소개로 구직하게 된 경우가 2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인 친구·이웃의 소개(13.5%)'와 '가족 및 친척의 소개(13.5%)', '인터넷, 신문, 지역 정보지 등(11.5%)', '민간 직업알선기관(8.3%)'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사적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공공 행정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3.8%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공공행정기관이 구직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정보제공이나 인터넷, 미디어매체 등을 이용한 정보제공 내지 홍보서비스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표 Ⅳ - 55▌ 구직경로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56 | 100.0 |
| 한국인 친구이웃의 소개로 | 21 | 13.5 |
| 모국인 친구이웃의 소개로 | 34 | 21.8 |
| 가족 및 친척의 소개로 | 21 | 13.5 |
| 외국인 상담소를 통해 | 4 | 2.6 |
| 공공 행정기관의 소개를 통해 | 6 | 3.8 |
| 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 13 | 8.3 |
| 인터넷, 신문, 지역 정보지 등을 통해 | 18 | 11.5 |
| 기타 | 24 | 15.4 |
| 무응답 | 15 | 9.6 |

### 4) 근로시간

직업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156명)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근로시간이 1~17시간인 경우가 3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6~44시간(16.0%), 45~53시간(16.0%), 54시간(16.0%), 18~35시간(14.7%)의 순으로 나타나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2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가 전체의 3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정규직이기보다는 임시직,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신국적별로 외국인 배우자의 근로시간을 분석해 보면,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4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가 50%로 타 국적출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조선족 출신 40.0%, 중국 한족 출신 38.1%, 베트남 출신

36.1% 순으로 많았다. 반면, 일본과 필리핀 출신의 경우는 1~17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각각 47.6%, 47.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단시간 근로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출신국적별 근로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표 Ⅳ - 56▐ 출신국적별 1주일 평균 근로시간

| 구분 | 사례수 | 평균 근로시간(%) | | | | | |
|---|---|---|---|---|---|---|---|
| | | 1~17시간 | 18~35 시간 | 36~44 시간 | 45~53 시간 | 54시간 이상 | 무응답 |
| 합계 | 156 | 30.1 | 14.7 | 16.0 | 16.0 | 16.0 | 7.1 |
| 중국조선족 | 20 | 30.0 | 10.0 | 15.0 | 25.0 | 15.0 | 5.0 |
| 중국한족 | 21 | 33.3 | 9.5 | 9.5 | 14.3 | 23.8 | 9.5 |
| 일본 | 21 | 47.6 | 23.8 | 4.8 | 14.3 | 4.8 | 4.8 |
| 베트남 | 36 | 22.2 | 16.7 | 11.1 | 16.7 | 19.4 | 13.9 |
| 필리핀 | 23 | 47.8 | 17.4 | 17.4 | 0.0 | 17.4 | 0.0 |
| 캄보디아 | 6 | 0.0 | 16.7 | 33.3 | 16.7 | 33.3 | 0.0 |
| 기타 | 29 | 17.2 | 10.3 | 31.0 | 24.1 | 10.3 | 6.9 |
| $x$ 2-검정 | $x$ 2=34.531, p-value=.260 | | | | | | |

한편, 외국인 배우자의 직업유형별로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분석해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비교적 많이 종사하는 기술/생산직의 경우는 54시간 이상의 근로 비율이 33.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면 강사/교사직의 경우는 그 직업의 특성상 1~17시간의 근로비율이 57.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57▐ 직업유형별 1주일 평균 근로시간

| 구분 | 사례수 | 1주일 평균 근로시간(%) | | | | | |
|---|---|---|---|---|---|---|---|
| | | 1~17시간 | 18~35 시간 | 36~44 시간 | 45~53 시간 | 54시간 이상 | 무응답 |
| 합계 | 156 | 30.1 | 14.7 | 16.0 | 16.0 | 16.0 | 7.1 |
| 관리/사무직 | 6 | 0.0 | 16.7 | 33.3 | 33.3 | 16.7 | 0.0 |
| 판매/영업직 | 8 | 25.0 | 25.0 | 0.0 | 37.5 | 12.5 | 0.0 |
| 서비스직 | 25 | 24.0 | 12.0 | 16.0 | 28.0 | 20.0 | 0.0 |
| 기술/생산직 | 33 | 9.1 | 6.1 | 24.2 | 18.2 | 33.3 | 9.1 |
| 배송/운전직 | 6 | 0.0 | 33.3 | 0.0 | 33.3 | 16.7 | 16.7 |
| 간호/의료직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 강사/교사직 | 33 | 57.6 | 21.2 | 15.2 | 0.0 | 3.0 | 3.0 |
| 건설/노무직 | 13 | 15.4 | 23.1 | 15.4 | 7.7 | 23.1 | 15.4 |
| 기타 | 31 | 48.4 | 6.5 | 12.9 | 12.9 | 6.5 | 12.9 |
| $x$ 2-검정 | $x$ 2=71.338, p-value=.002 | | | | | | |

### 5) 월평균 개인소득

직업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월평균 개인소득을 알아본 결과, 50~100만원 미만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00~150만원 미만(21.8%), 50만원 미만(14.1%), 150~200만원 미만(5.8%) 순으로 많았다. 또한 '소득이 없다'고 한 응답도 5.8%나 있었으며, 개인소득이 250~300만원 미만과 200~25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각각 2.6%, 1.3%, 0.6%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다수(83.4%)가 150만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신국적별로 보면, 캄보디아(66.7%)와 중국 조선족(50.0%) 출신은 50~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필리핀 출신은 100~150만원 미만의 비율이 타 국적출신에 비해 높았다. 한편, 베트남 출신의 경우는 '소득이 없다'고 한 응답비율이 13.9%로 타 국적출신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250~3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출신(16.7%)만이 소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출신국적별 개인소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표 Ⅳ - 58▐ 출신국적별 월평균 개인소득

| 구분 | 사례수 | 월평균 개인소득(%) | | | | | | | | |
|---|---|---|---|---|---|---|---|---|---|---|
| | | 소득없음 | 50 만원미만 | 50~ 100 만원미만 | 100~ 150 만원미만 | 150~ 200 만원미만 | 200~ 250 만원미만 | 250~ 300 만원미만 | 300 만원이상 | 무응답 |
| 합계 | 156 | 5.8 | 14.1 | 41.7 | 21.8 | 5.8 | 1.3 | 2.6 | 0.6 | 6.4 |
| 중국조선족 | 20 | 5.0 | 5.0 | 50.0 | 30.0 | 5.0 | 0.0 | 0.0 | 0.0 | 5.0 |
| 중국한족 | 21 | 4.8 | 9.5 | 47.6 | 19.0 | 9.5 | 0.0 | 0.0 | 0.0 | 9.5 |
| 일본 | 21 | 0.0 | 33.3 | 42.9 | 19.0 | 4.8 | 0.0 | 0.0 | 0.0 | 0.0 |
| 베트남 | 36 | 13.9 | 8.3 | 41.7 | 19.4 | 5.6 | 5.6 | 0.0 | 0.0 | 5.6 |
| 필리핀 | 23 | 8.7 | 13.0 | 26.1 | 34.8 | 8.7 | 0.0 | 0.0 | 0.0 | 8.7 |
| 캄보디아 | 6 | 0.0 | 0.0 | 66.7 | 16.7 | 0.0 | 0.0 | 16.7 | 0.0 | 0.0 |
| 기타 | 29 | 0.0 | 20.7 | 37.9 | 13.8 | 3.4 | 0.0 | 10.3 | 3.4 | 10.3 |
| $x$ 2-검정 | $x$ 2=48.793, p-value=.219 | | | | | | | | | |

### 6) 개인소득 관리주체

현재 직업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월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내가 관리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와

배우자가 함께 관리한다'는 응답이 17.9%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는 14.1%이었으며, '배우자의 부모님이 관리한다'는 경우도 3.8%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가 스스로 얻은 수입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17.9%)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경우 인권 및 노동력 착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제가 3년동안 시어머니랑 같이 젓갈공장, 신랑 돈벌은 돈 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 시어미니가 다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랑 싸웠어요. 그래서 신랑 돈 버는 거 다 어디다 쓰냐고 하니까 집 빚 갚아야지 뭐 이런거 갚아야지 이런거 해야지 그래서 알았어요 했어요. 그때부터 니가 번돈 니가 저금해라 해서 신협가서 신랑앞으로 했어요(결혼이민여성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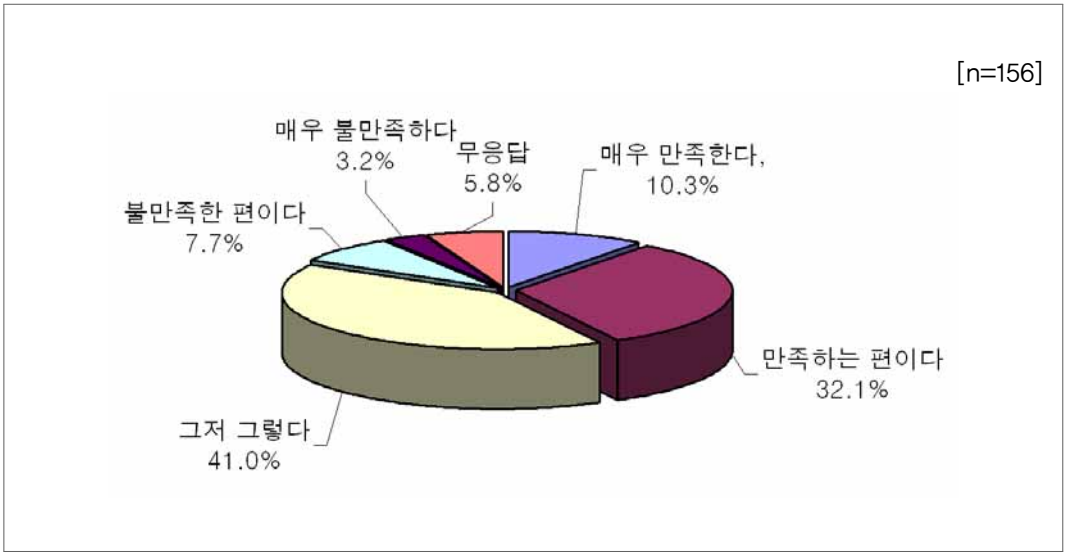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한족과 일본 출신의 경우는 스스로 관리한다고 한 응답이 각각 81.0%, 85.7%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부부가 함께 관리한다고 한 응답도 각각 19.0%와 9.5%로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월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트남 출신의 경우는 '배우자가 관리한다'고 한 응답과 '배우자의 부모님이 관리한다'고 한 응답이 각각 25.0%와 11.1%로 타 국적 출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는 부부가 함께 관리한다고 한 응답비율이 66.7%로 월등히 높았다.

▌표 Ⅳ - 59▐ 출신국적별 개인소득 관리주체

| 구분 | 사례수 | 개인소득 관리주체(%) | | | | | |
|---|---|---|---|---|---|---|---|
| | | 내가 관리한다 | 배우자가 관리한다 | 나와 배우자가 함께 관리한다 | 배우자의 부모님이 관리한다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156 | 57.7 | 14.1 | 17.9 | 3.8 | 1.9 | 4.5 |
| 중국조선족 | 20 | 75.0 | 20.0 | 5.0 | 0.0 | 0.0 | 0.0 |
| 중국한족 | 21 | 81.0 | 0.0 | 19.0 | 0.0 | 0.0 | 0.0 |
| 일본 | 21 | 85.7 | 0.0 | 9.5 | 0.0 | 0.0 | 4.8 |
| 베트남 | 36 | 38.9 | 25.0 | 13.9 | 11.1 | 2.8 | 8.3 |
| 필리핀 | 23 | 60.9 | 13.0 | 13.0 | 0.0 | 8.7 | 4.3 |
| 캄보디아 | 6 | 16.7 | 16.7 | 66.7 | 0.0 | 0.0 | 0.0 |
| 기타 | 29 | 37.9 | 17.2 | 31.0 | 6.9 | 0.0 | 6.9 |
| $x$ 2-검정 | $x$ 2=55.880, p-value=.003 | | | | | | |

### 7) 근로만족도

현재 직업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근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2.4%('매우 만족한다' 10.3% + '만족하는 편이다' 32.1%)로 불만족하다 10.9%('매우 불만족하다' 3.2% + '불만족한 편이다' 7.7%)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는 응답비율 역시 4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결국 근로만족도는 척도치 점수로 환산할 때 평균 3.41점(5점 척도)인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주 : 매우 불만족하다 1점, 불만족하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만족하는 편이다 4점, 매우 만족한다 5점

〈그림 Ⅳ - 6〉 근로만족도

### 8) 취업동기

직업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 156명을 대상으로 직장에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생활비 보충'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의 생계유지' 20.5%, '자녀의 양육비 충당' 16.0%, '자기발전을 위해' 11.5%, '모국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9.0%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10명 중 1명은 '장래 노후 준비(7.7%)'과 '여가시간 활용(3.8%)'을 직장에 다니는 이유로 꼽기도 하였다.

외국인 배우자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 등의 이유이지만 결혼후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취업활동도 언어 등의 어려움으로 쉽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도 심층면접시 대부분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취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서비스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기술같은 것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든가 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등도 배우고 싶어요(결혼이민여성 F).'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중국 조선족(40.0%)과 일본(38.1%), 필리핀 출신(34.8%)이 '생활비 충당'을 위해 직장에 다닌다고 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캄보디아 출신의 절반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다닌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국 한족 출신은 '자기발전을 위해' 직장에 다닌다고 한 경우가 33.3%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베트남 출신의 경우는 '모국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30.6%로 나타나 타 국적출신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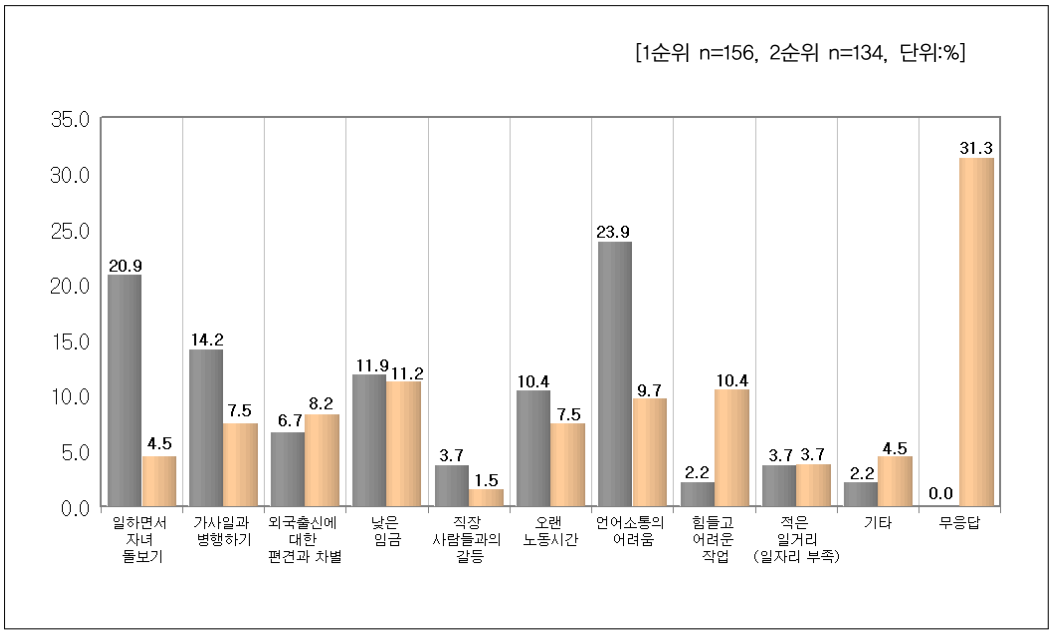
▌표 Ⅳ - 60▐ 출신국적별 취업동기

| 구분 | 사례수 | 취업동기(%) | | | | | | | | |
|---|---|---|---|---|---|---|---|---|---|---|
| | | 자녀의 양육비 충당 | 가족의 생계유지 | 장래 노후 대비 | 생활비 보충 | 자기발전을 위해 | 모국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 여가시간 활용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156 | 16.0 | 20.5 | 7.7 | 26.3 | 11.5 | 9.0 | 3.8 | 1.3 | 3.8 |
| 중국조선족 | 20 | 5.0 | 25.0 | 10.0 | 40.0 | 5.0 | 5.0 | 5.0 | 0.0 | 5.0 |
| 중국한족 | 21 | 19.0 | 9.5 | 4.8 | 14.3 | 33.3 | 0.0 | 9.5 | 4.8 | 4.8 |
| 일본 | 21 | 33.3 | 9.5 | 0.0 | 38.1 | 14.3 | 0.0 | 4.8 | 0.0 | 0.0 |
| 베트남 | 36 | 11.1 | 27.8 | 8.3 | 11.1 | 5.6 | 30.6 | 0.0 | 0.0 | 5.6 |
| 필리핀 | 23 | 21.7 | 8.7 | 13.0 | 34.8 | 8.7 | 0.0 | 8.7 | 4.3 | 0.0 |
| 캄보디아 | 6 | 0.0 | 50.0 | 0.0 | 16.7 | 16.7 | 16.7 | 0.0 | 0.0 | 0.0 |
| 기타 | 29 | 13.8 | 27.6 | 10.3 | 31.0 | 6.9 | 3.4 | 0.0 | 0.0 | 6.9 |
| $x$ 2-검정 | $x$ 2=79.431, p-value=.003 | | | | | | | | | |

### 9)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

직업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156명)에게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한 응답은 6.4%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85.9%는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한 134명을 대상으로 그 어려움의 종류를 우선순위대로 선택하게 한 결과, 1순위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23.9%로 가장 많았으며, '일하면서 자녀돌보기(20.9%)', '가사일과 병행하기(14.2%)', '낮은 임금(11.9%)', '오랜 노동시간(10.4%)'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2순위로 꼽은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이 1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 10.4%, '언어소통의 어려움' 9.7%,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외국인 배우자의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은 주로 일-가정 양립과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Ⅳ - 7〉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1순위, 2순위)

한편,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어려움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한족 출신(68.4)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으며, 필리핀 출신(59.1%)과 캄보디아 출신(60.0%)의 절반 이상은 '일하면서 자녀돌보기'와 '가사일과 병행하기'와 같은 일-가정 양립 문제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 및 도우미 지원등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표 Ⅳ - 61▌ 출신국적별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1순위)

| 구분 | 사례수 |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1순위)(%) | | | | | | | | | |
|---|---|---|---|---|---|---|---|---|---|---|---|
| | | 일하면서 자녀 돌보기 | 가사일과 병행하기 |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 낮은 임금 | 직장 사람들과의 갈등 | 오랜 노동 시간 | 언어 소통의 어려움 | 힘들고 어려운 작업 | 적은 일거리 (일자리 부족) | 기타 |
| 합계 | 134 | 20.9 | 14.2 | 6.7 | 11.9 | 3.7 | 10.4 | 23.9 | 2.2 | 3.7 | 2.2 |
| 중국조선족 | 16 | 25.0 | 6.3 | 18.8 | 12.5 | 0.0 | 12.5 | 12.5 | 6.3 | 6.3 | 0.0 |
| 중국한족 | 19 | 10.5 | 0.0 | 0.0 | 10.5 | 0.0 | 10.5 | 68.4 | 0.0 | 0.0 | 0.0 |
| 일본 | 20 | 25.0 | 20.0 | 0.0 | 10.0 | 15.0 | 10.0 | 10.0 | 0.0 | 10.0 | 0.0 |
| 베트남 | 29 | 10.3 | 17.2 | 3.4 | 17.2 | 0.0 | 13.8 | 20.7 | 3.4 | 3.4 | 10.3 |
| 필리핀 | 22 | 36.4 | 22.7 | 9.1 | 9.1 | 0.0 | 4.5 | 18.2 | 0.0 | 0.0 | 0.0 |
| 캄보디아 | 5 | 40.0 | 20.0 | 0.0 | 4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 23 | 17.4 | 13.0 | 13.0 | 4.3 | 8.7 | 13.0 | 21.7 | 4.3 | 4.3 | 0.0 |
| $x$ 2-검정 | $x$ 2=77.139, p-value=.021 | | | | | | | | | | |

### 10) 취업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태도

외국인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에 대해 한국인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현재 직업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 156명을 대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직장생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3%(적극 찬성 21.8% + 대체로 찬성 38.5%)로 반대한다는 응답 7.0%(적극 반대 0.6% + 대체로 반대 6.4%)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배우자 177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조사한 결과, 역시 찬성한다는 응답이 54.2%(적극 찬성 15.8% + 대체로 찬성 38.4%)로 반대한다는 응답 15.3%(적극 반대 4.0% + 대체로 반대 11.3%)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를 척도치 점수로 환산하면 외국인 배우자 응답의 경우 평균 3.79점, 한국인 배우자 응답의 경우 평균 3.52점으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에 대해 한국인 배우자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나 시집가족이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하거나 반찬값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은근히 압박을 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심층면접시 드러났다

▌표 Ⅳ - 62▐ 취업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태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응답 | | 한국인 배우자 응답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156 | 100.0 | 177 | 100.0 |
|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 34 | 21.8 | 28 | 15.8 |
| 대체로 찬성한다 | 60 | 38.5 | 68 | 38.4 |
| 찬성도, 반대도 안한다 | 40 | 25.6 | 50 | 28.2 |
| 대체로 반대한다 | 10 | 6.4 | 20 | 11.3 |
|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 1 | 0.6 | 7 | 4.0 |
| 무응답 | 11 | 7.1 | 4 | 2.3 |
| 5점 척도 평균 | 3.79점 | | 3.52점 | |

주 :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1점, 대체로 반대한다 2점, 찬성도 반대도 안한다 3점, 대체로 찬성한다 4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5점

### 11) 향후 취업의사 및 희망직종

#### (1) 향후 취업의사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 686명을 대상으로 향후 취업의사에 대해 알아본 결과, 취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6.0%에 불과한 반면,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는 77.7%로 월등히 많았다.

이를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베트남 출신(85.6%)과 필리핀 출신(80.2%)의 향후 취업의사 비율이 타 국적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는 일본과 캄보디아 출신의 응답이 각각 11.5%, 14.3%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Ⅳ - 63▐ 출신국적별 향후 취업의사

| 구분 | 사례수 | 향후 취업의사(%) | | |
|---|---|---|---|---|
| | | 있다 | 없다 | 무응답 |
| 합계 | 686 | 77.7 | 6.0 | 16.3 |
| 중국조선족 | 52 | 73.1 | 7.7 | 19.2 |
| 중국한족 | 169 | 68.6 | 7.1 | 24.3 |
| 일본 | 61 | 78.7 | 11.5 | 9.8 |
| 베트남 | 216 | 85.6 | 2.8 | 11.6 |
| 필리핀 | 96 | 80.2 | 2.1 | 17.7 |
| 캄보디아 | 35 | 71.4 | 14.3 | 14.3 |
| 기타 | 57 | 77.2 | 8.8 | 14.0 |
| $x$ 2-검정 | $x$ 2=15.550, p-value=.016 | | | |

한편,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거주기간과 결혼기간별로 분석해보면, 모두 3~5년 미만인 경우(87.6%, 85.1%)에서 취업할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후 취업의사를 현재의 한국어 실력별로 분석해보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경우가 88.2%, 잘하는 편이 84.9%, 매우 잘하는 경우와 보통인 경우가 각각 81.8%와 81.0%, 못하는 편이 69.8% 순으로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실력과는 무관하게 취업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실력별 향후 취업의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표 Ⅳ - 64▌ 현재 한국어 실력별 향후 취업의사

| 구분 | 사례수 | 향후 취업의사(%) | | |
|---|---|---|---|---|
| | | 있다 | 없다 | 무응답 |
| 합계 | 686 | 77.7 | 6.0 | 16.3 |
| 매우 잘한다 | 22 | 81.8 | 4.5 | 13.6 |
| 잘하는 편이다 | 106 | 84.9 | 4.7 | 10.4 |
| 보통이다 | 311 | 81.0 | 4.8 | 14.1 |
| 못하는 편이다 | 189 | 69.8 | 10.1 | 20.1 |
| 전혀 못한다 | 34 | 88.2 | 0.0 | 11.8 |
| 무응답 | 24 | 45.8 | 4.2 | 50.0 |
| $x$ 2-검정 | $x$ 2=9.005, p-value=.109 | | | |

### (2) 희망직종

직업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향후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533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종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강사/교사직 희망이 1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판매/영업직(17.8%), 기술/생산직(13.5%), 서비스직(11.6%), 관리/사무직(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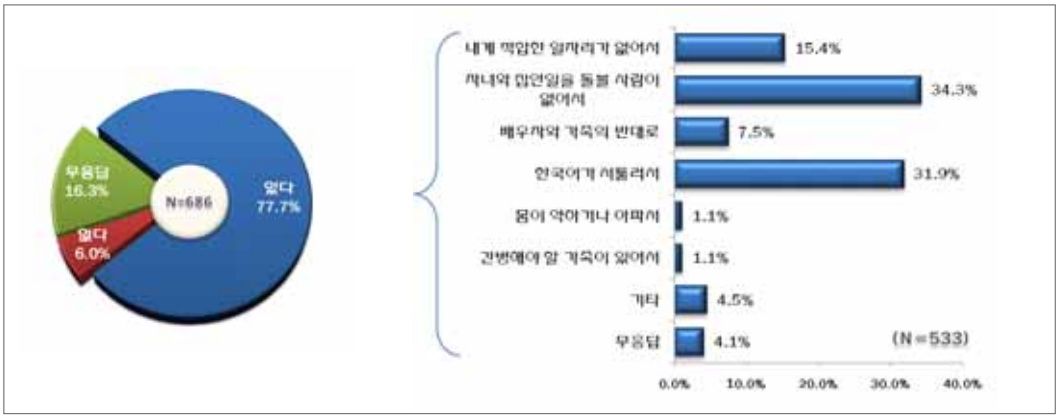
출신국적별로 희망직종을 분석해 보면, 일본 출신(35.4%)과 필리핀 출신(42.9%)은 강사/교사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베트남 출신은 판매/영업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27.6%로 가장 높았다. 또한 캄보디아 출신은 기술/생산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36.0%로 가장 많았고, 중국 한족 출신(20.7%)은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타 국적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Ⅳ - 65▌ 출신국적별 희망직종

| 구분 | 사례수 | 희망직종(%) | | | | | | | | |
|---|---|---|---|---|---|---|---|---|---|---|
| | | 관리/사무직 | 판매/영업직 | 서비스직 | 기술/생산직 | 배송/운전직 | 간호/의료직 | 강사/교사직 | 건설/노무직 | 기타 |
| 합계 | 533 | 9.2 | 17.8 | 11.6 | 13.5 | 0.2 | 3.9 | 18.4 | 3.6 | 21.8 |
| 중국조선족 | 38 | 13.2 | 15.8 | 18.4 | 13.2 | 0.0 | 5.3 | 21.1 | 0.0 | 13.2 |
| 중국한족 | 116 | 10.3 | 15.5 | 20.7 | 15.5 | 0.0 | 5.2 | 18.1 | 0.0 | 14.7 |
| 일본 | 48 | 14.6 | 12.5 | 8.3 | 2.1 | 0.0 | 8.3 | 35.4 | 0.0 | 18.8 |
| 베트남 | 185 | 5.9 | 27.6 | 7.0 | 15.7 | 0.5 | 0.5 | 3.8 | 8.1 | 30.8 |
| 필리핀 | 77 | 2.6 | 7.8 | 3.9 | 7.8 | 0.0 | 9.1 | 42.9 | 3.9 | 22.1 |
| 캄보디아 | 25 | 16.0 | 8.0 | 20.0 | 36.0 | 0.0 | 0.0 | 0.0 | 4.0 | 16.0 |
| 기타 | 44 | 18.2 | 13.6 | 13.6 | 9.1 | 0.0 | 2.3 | 27.3 | 0.0 | 15.9 |
| $x$ 2-검정 | $x$ 2=210.693, p-value=.000 | | | | | | | | | |

### 12) 미취업 사유

직업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 686명 가운데 향후 취업의사가 있는 533명을 대상으로 직장에 다닐 의향이 있으면서도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녀와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어가 서툴러서(31.9%)', '내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15.4%)', '배우자와 가족의 반대로(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7〉 미취업 사유

# 제3절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 1. 부부관계

### 1)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한국인 배우자와 여가시간 또는 휴가를 함께 보내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6.9%가 배우자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시간을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12.0%에 불과했다. 이를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와 여가시간을 함께 하는 경우는 베트남 출신(92.1%)의 응답비율이 타 국적출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가시간을 함께 하지 않은 경우는 캄보디아 출신(29.3%)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Ⅳ - 66▌ 출신국적별 배우자와의 여가시간 공유 여부

| 구분 | 사례수 | 배우자와의 여가시간 공유 여부(%) | | |
|---|---|---|---|---|
| | | 예 | 아니오 | 무응답 |
| 합계 | 842 | 86.9 | 12.0 | 1.1 |
| 중국조선족 | 72 | 77.8 | 18.1 | 4.2 |
| 중국한족 | 190 | 87.4 | 12.6 | 0.0 |
| 일본 | 82 | 86.6 | 13.4 | 0.0 |
| 베트남 | 252 | 92.1 | 6.3 | 1.6 |
| 필리핀 | 119 | 84.9 | 13.4 | 1.7 |
| 캄보디아 | 41 | 70.7 | 29.3 | 0.0 |
| 기타 | 86 | 89.5 | 10.5 | 0.0 |
| $x$ 2-검정 | $x$ 2=34.282, p-value=.001 | | | |

배우자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732명을 대상으로 그 여가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복수응답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TV시청(51.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책이나 운동(49.9%)', '외식(45.4%)', '배우자의 친척이나 친구집 방문(39.6%)', '여행이나 관광(3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친척이나 친구집을 방문한다는 응답(13.9%)과 문화예술을 관람한다는 응답(16.8%)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여가활동 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고려되지 못하고 이들의 문화생활 향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극장, 미술관, 전시회장 등과 같은 곳에서의 문화예술 관람 응답비율이 낮은

것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배우자 및 그 가정의 경제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출신국적별로 여가활동 내용을 분석해 보면, 중국 조선족 출신(62.5%)은 TV시청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국 한족 출신(57.8%)은 산책이나 운동을 한다는 비율이 타 국적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본 출신(67.6%)과 필리핀 출신(53.5%)은 외식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캄보디아 출신은 여행이나 관광(48.3%), 산책이나 운동(48.3%)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모국친척이나 친구집 방문의 경우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집단은 일본 출신(7.0%)이었으며, 문화예술 관람의 경우는 베트남 출신(6.0%)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Ⅳ - 67▌ 출신국적별 부부 여가활동(복수응답)

[단위 : %]

| 구분(n=732) | 합계 | 중국 조선족 | 중국 한족 | 일본 | 베트남 | 필리핀 | 캄보디아 | 기타 |
|---|---|---|---|---|---|---|---|---|
| 배우자의 친척이나 친구집 방문 | 39.6 | 46.4 | 47.0 | 53.5 | 31.9 | 42.6 | 27.6 | 29.9 |
| 나의 모국친척이나 친구집 방문 | 13.9 | 26.8 | 13.3 | 7.0 | 11.6 | 16.8 | 10.3 | 16.9 |
| TV시청 | 51.9 | 62.5 | 50.6 | 67.6 | 46.1 | 49.5 | 44.8 | 55.8 |
| 극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관람 | 16.8 | 21.4 | 22.3 | 28.2 | 6.0 | 21.8 | 13.8 | 18.2 |
| 여행이나 관광 | 30.7 | 39.3 | 42.8 | 28.2 | 16.4 | 34.7 | 48.3 | 32.5 |
| 외식 | 45.4 | 50.0 | 50.0 | 67.6 | 30.6 | 53.5 | 34.5 | 49.4 |
| 산책이나 운동 | 49.9 | 53.6 | 57.8 | 60.6 | 40.5 | 44.6 | 48.3 | 55.8 |
| 기타 | 3.7 | 1.8 | 1.2 | 9.9 | 3.9 | 5.0 | 3.4 | 2.6 |

### 2) 가정 내 의사결정

#### (1) 영역별 의사결정주체

가족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제반문제들에 대해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교육 및 경제문제, 취업 또는 직장 이전 문제, 일상적인 가정생활 문제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눠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녀교육문제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의사결정을 '부부가 함께 한다'는 응답이 각각 47.1%,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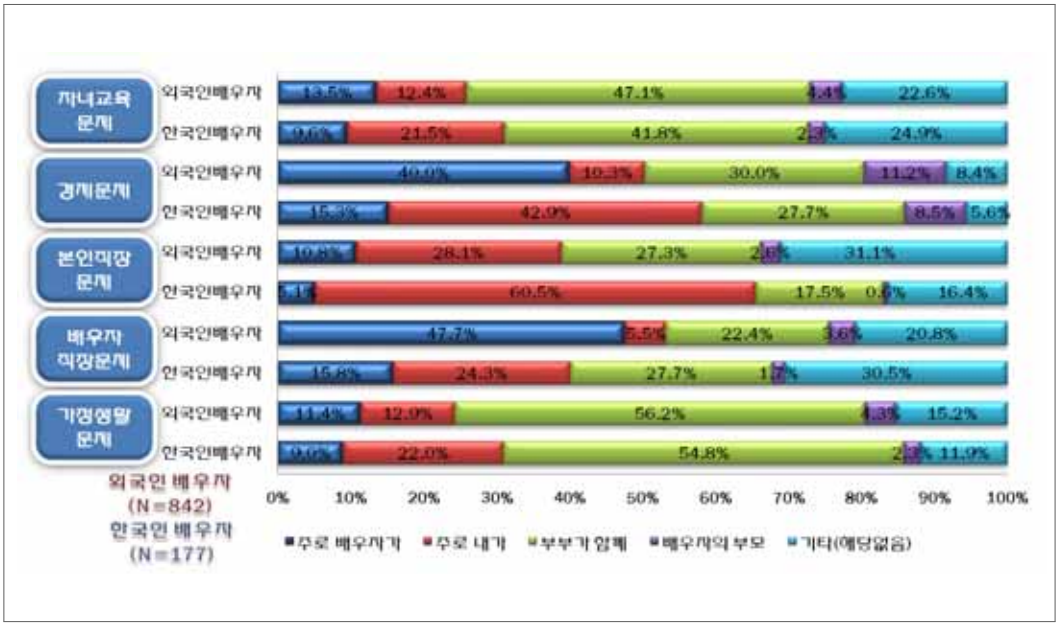
또한, 재산관리 및 생활비 지출 등 가정 내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로 배우자가 한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인 배우자는 ‘주로 내가 한다’는 응답이 42.9%로 높게 나타나 다문화가정 10가구 중 4가구 정도는 경제문제를 주로 한국인 배우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되는데, 외국인 배우자의 상당수가 경제부문에서 관련정보를 알지 못하고, 가정경제 문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취업이나 직장 이전 문제의 의사결정에 있어 본인의 직장 문제를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 주로 한다(주로 내가)’고 한 응답은 28.1%, ‘부부가 함께 한다’고 한 응답은 27.3%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본인의 직장문제를 ‘주로 내가 한다(60.5%)’고 응답해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상대 배우자의 직장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주로 배우자가 결정한다’고 한 응답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부부가 함께한다’고 한 응답이 27.7%, ‘주로 내가 한다’고 한 응답이 24.3%로 높게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의 직장문제에 대해 한국인 배우자의 개입에 의한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상적인 가정생활문제의 의사결정주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의사결정을 ‘부부가 함께 한다’고 한 응답이 각각 56.2%, 54.8%로 절반 이상 높게 나타나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 - 8〉 영역별 의사결정주체(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 (2) 출신국적별 의사결정주체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주체를 분석한 결과, '부부가 함께(47.1%)' 한다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이 55.6%로 가장 많았던 반면, '주로 배우자가(13.5%)' 한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이 36.6%, '주로 내가(12.4%)' 한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이 39.0%로 많았다.

한편, 결혼기간별로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주체를 살펴보면, '부부가 함께(47.1%)' 한다는 응답은 3~5년 미만에서 56.2%로 높게 나타난 반면, '주로 내가(12.4%)' 한다는 응답은 5년 이상에서 32.8%로 높게 나타나 결혼기간이 길어지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배우자 단독으로 자녀교육문제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68▐ 출신국적별 의사결정주체-자녀교육문제**

| 구분 | 사례수 | 의사결정주체-자녀교육문제(%) | | | | |
|---|---|---|---|---|---|---|
| | | 주로 배우자가 | 주로 내가 | 부부가 함께 | 배우자의 부모 | 기타 (해당없음) |
| 합계 | 842 | 13.5 | 12.4 | 47.1 | 4.4 | 22.6 |
| 중국조선족 | 72 | 20.8 | 18.1 | 47.2 | 1.4 | 12.5 |
| 중국한족 | 190 | 8.4 | 11.6 | 40.0 | 1.6 | 38.4 |
| 일본 | 82 | 3.7 | 39.0 | 39.0 | 0.0 | 18.3 |
| 베트남 | 252 | 13.5 | 2.4 | 55.6 | 7.9 | 20.6 |
| 필리핀 | 119 | 16.8 | 12.6 | 50.4 | 5.0 | 15.1 |
| 캄보디아 | 41 | 36.6 | 7.3 | 22.0 | 7.3 | 26.8 |
| 기타 | 86 | 12.8 | 15.1 | 53.5 | 4.7 | 14.0 |
| $x$ 2-검정 | $x$ 2=162.053, p-value=.000 | | | | | |

**▌표 Ⅳ - 69▐ 결혼기간별 의사결정주체-자녀교육문제**

| 구분 | 사례수 | 의사결정주체-자녀교육문제(%) | | | | |
|---|---|---|---|---|---|---|
| | | 주로 배우자가 | 주로 내가 | 부부가 함께 | 배우자의 부모 | 기타 (해당없음) |
| 합계 | 842 | 13.5 | 12.4 | 47.1 | 4.4 | 22.6 |
| 1년 미만 | 190 | 13.2 | 1.6 | 35.8 | 4.2 | 45.3 |
| 1~3년 미만 | 343 | 14.3 | 9.0 | 51.0 | 5.5 | 20.1 |
| 3~5년 미만 | 121 | 17.4 | 9.1 | 56.2 | 5.8 | 11.6 |
| 5년 이상 | 180 | 10.6 | 32.8 | 46.1 | 1.1 | 9.4 |
| 무응답 | 8 | 0.0 | 0.0 | 37.5 | 12.5 | 50.0 |
| $x$ 2-검정 | $x$ 2=170.411, p-value=.000 | | | | | |

다음은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재산관리, 생활비 지출 등과 같은 경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주체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주로 배우자가(40.0%)' 한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이 5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국 한족 출신(43.7%), 일본 출신(42.7%), 중국 조선족 출신(38.9%), 필리핀 출신(38.7%), 베트남 출신(3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 - 70▐ 출신국적별 의사결정주체-경제문제

| 구분 | 사례수 | 의사결정주체-경제문제(%) | | | | |
|---|---|---|---|---|---|---|
| | | 주로 배우자가 | 주로 내가 | 부부가 함께 | 배우자의 부모 | 기타 (해당없음) |
| 합계 | 842 | 40.0 | 10.3 | 30.0 | 11.2 | 8.4 |
| 중국조선족 | 72 | 38.9 | 27.8 | 27.8 | 1.4 | 4.2 |
| 중국한족 | 190 | 43.7 | 8.4 | 30.0 | 8.9 | 8.9 |
| 일본 | 82 | 42.7 | 19.5 | 35.4 | 2.4 | 0.0 |
| 베트남 | 252 | 35.3 | 6.3 | 25.4 | 19.4 | 13.5 |
| 필리핀 | 119 | 38.7 | 6.7 | 35.3 | 11.8 | 7.6 |
| 캄보디아 | 41 | 56.1 | 9.8 | 14.6 | 12.2 | 7.3 |
| 기타 | 86 | 38.4 | 8.1 | 40.7 | 7.0 | 5.8 |
| $x$ 2-검정 | $x$ 2=96.138, p-value=.000 | | | | | |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이나 직장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의사결정주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주로 내가(28.1%)' 한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이 51.2%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가 함께(27.3%)' 한다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26.6%)과 캄보디아 출신(37.2%)이 타 국적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이를 결혼기간별로 분석해보면, '주로 내가(28.1%)' 한다는 응답이 결혼기간 5년 이상에서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의 직장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 - 71▐ 출신국적별 의사결정주체-본인 직장문제

| 구분 | 사례수 | 의사결정주체-본인 직장문제(%) | | | | |
|---|---|---|---|---|---|---|
| | | 주로 배우자가 | 주로 내가 | 부부가 함께 | 배우자의 부모 | 기타 (해당없음) |
| 합계 | 842 | 10.8 | 28.1 | 27.3 | 2.6 | 31.1 |
| 중국조선족 | 72 | 15.3 | 43.1 | 22.2 | 1.4 | 18.1 |
| 중국한족 | 190 | 8.4 | 25.8 | 24.2 | 1.1 | 40.5 |
| 일본 | 82 | 4.9 | 51.2 | 32.9 | 0.0 | 11.0 |
| 베트남 | 252 | 13.5 | 17.9 | 26.6 | 4.4 | 37.7 |
| 필리핀 | 119 | 9.2 | 30.3 | 26.9 | 3.4 | 30.3 |
| 캄보디아 | 41 | 22.0 | 22.0 | 24.4 | 4.9 | 26.8 |
| 기타 | 86 | 7.0 | 29.1 | 37.2 | 2.3 | 24.4 |
| $x$ 2-검정 | $x$ 2=83.653, p-value=.000 | | | | | |

한국인 배우자의 취업이나 직장 이전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주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주로 배우자가(47.7%)' 한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 출신은 '주로 배우자가(47.7%)' 한다는 응답과 '부부가 함께(22.4%)' 한다는 응답이 각각 33.3%와 24.2%로 나타났다.

▌표 Ⅳ - 72▐ 출신국적별 의사결정주체-배우자 직장문제

| 구분 | 사례수 | 의사결정주체-배우자 직장문제(%) | | | | |
|---|---|---|---|---|---|---|
| | | 주로 배우자가 | 주로 내가 | 부부가 함께 | 배우자의 부모 | 기타 (해당없음) |
| 합계 | 842 | 47.7 | 5.5 | 22.4 | 3.6 | 20.8 |
| 중국조선족 | 72 | 50.0 | 5.6 | 26.4 | 1.4 | 16.7 |
| 중국한족 | 190 | 46.3 | 9.5 | 20.5 | 1.6 | 22.1 |
| 일본 | 82 | 80.5 | 1.2 | 15.9 | 1.2 | 1.2 |
| 베트남 | 252 | 33.3 | 4.0 | 24.2 | 5.2 | 33.3 |
| 필리핀 | 119 | 51.3 | 3.4 | 25.2 | 5.0 | 15.1 |
| 캄보디아 | 41 | 65.9 | 2.4 | 14.6 | 7.3 | 9.8 |
| 기타 | 86 | 46.5 | 9.3 | 24.4 | 3.5 | 16.3 |
| $x$ 2-검정 | $x$ 2=98.886, p-value=.000 | | | | | |

여가시간 활용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주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부부가 함께(56.2%)' 한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이

65.9%로 가장 많았으며, 캄보디아 출신은 '주로 배우자가(26.8%)' 한다는 응답에서 26.8%로 나타나 타 국적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Ⅳ - 73▐ 출신국적별 의사결정주체-일상적인 가정생활 문제

| 구분 | 사례수 | 의사결정주체-일상적인 가정생활 문제(%) | | | | |
|---|---|---|---|---|---|---|
| | | 주로 배우자가 | 주로 내가 | 부부가 함께 | 배우자의 부모 | 기타 (해당없음) |
| 합계 | 842 | 11.4 | 12.9 | 56.2 | 4.3 | 15.2 |
| 중국조선족 | 72 | 12.5 | 22.2 | 54.2 | 0.0 | 11.1 |
| 중국한족 | 190 | 8.4 | 13.7 | 58.9 | 3.7 | 15.3 |
| 일본 | 82 | 9.8 | 22.0 | 65.9 | 0.0 | 2.4 |
| 베트남 | 252 | 11.1 | 9.1 | 50.0 | 6.3 | 23.4 |
| 필리핀 | 119 | 11.8 | 6.7 | 63.9 | 4.2 | 13.4 |
| 캄보디아 | 41 | 26.8 | 9.8 | 48.8 | 7.3 | 7.3 |
| 기타 | 86 | 11.6 | 16.3 | 53.5 | 5.8 | 12.8 |
| $x$ 2-검정 | $x$ 2=66.602, p-value=.000 | | | | | |

### 3) 문화적 차이

먼저, 외국인 배우자(842명)에게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문화적 차이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10.6%에 불과한 반면, 문화적 차이를 느낀다는 응답은 86.3%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의 응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즉 한국인 배우자(177명)에게 외국인 배우자와 살면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한 응답은 13.6%인 반면, 문화적 차이를 느낀다고 한 응답은 85.3%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결혼생활에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신국적별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분석해 보면, 문화적 차이를 느낀다(86.3%)고 한 응답은 필리핀 출신이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 출신(92.7%), 베트남 출신(8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적 차이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10.6%)고 한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22.0%)과 중국 조선족 출신(18.1%), 중국 한족 출신(13.2%)에서 타 국적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74▐ 출신국적별 한국인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

| 구분 | 사례수 | 한국인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 | | |
|---|---|---|---|---|
| | | 거의 느끼지 않는다 | 느낀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10.6 | 86.3 | 3.1 |
| 중국조선족 | 72 | 18.1 | 77.8 | 4.2 |
| 중국한족 | 190 | 13.2 | 84.2 | 2.6 |
| 일본 | 82 | 6.1 | 92.7 | 1.2 |
| 베트남 | 252 | 7.9 | 88.1 | 4.0 |
| 필리핀 | 119 | 4.2 | 93.3 | 2.5 |
| 캄보디아 | 41 | 22.0 | 78.0 | 0.0 |
| 기타 | 86 | 14.0 | 81.4 | 4.7 |
| $x$ 2-검정 | $x$ 2=25.193, p-value=.014 | | | |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문화적 차이를 느낀다고 대답한 727명을 대상으로 그 문화적 차이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식습관(55.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21.3%)', '자녀양육 방식(8.0%)', '부모부양 방식(6.2%)' 순으로 많았으며, 그밖에도 '가사분담 방식' 2.8%, '종교생활에 대한 이해' 2.1% 등이 일부 있었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의 응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즉 문화적 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한 한국인 배우자 153명 가운데 '식습관' 차이를 꼽은 응답은 6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20.9%)', '자녀양육 방식'과 '부모부양 방식' 각각 6.5%, '종교생활에 대한 이해' 2.6%, '가사분담 방식' 1.3%로 순이었다. 심층면접시에도 식습관을 비롯해 존대말쓰기, 대접하는 것 등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한국사람들이 우리 나라 문화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음료수 같은거 마실 때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냥 먹어라 해요... 식습관이 많이 달라서 어려워요. 우리도 한국사람들 문화 이해할테니 우리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결혼이민여성 G).'

출신국적별로 문화적 차이의 내용(1순위)을 분석해 보면, '식습관(55.3%)'의 경우 중국한족 출신(71.3%)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출신이 63.5%로 많았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21.3%)'의 경우는 필리핀 출신이 43.2%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를 결혼기간별로 살펴보면, '식습관(55.3%)'의 경우 결혼기간이 1년 미만에서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식습관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21.3%)'의 경우는 3~5년 미만과 5년 이상에서 각각 31.1%와 27.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75▌ 출신국적별 배우자의 문화적 차이(1순위)

| 구분 | 사례수 | 문화적 차이의 내용-1순위(%) | | | | | | |
|---|---|---|---|---|---|---|---|---|
| | | 식습관 |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 | 부모 부양 방식 | 자녀 양육 방식 | 가사 분담 방식 | 종교 생활에 대한 이해 | 기타 |
| 합계 | 727 | 55.3 | 21.3 | 6.2 | 8.0 | 2.8 | 2.1 | 4.4 |
| 중국조선족 | 56 | 39.3 | 35.7 | 3.6 | 5.4 | 10.7 | 1.8 | 3.6 |
| 중국한족 | 160 | 71.3 | 11.3 | 4.4 | 2.5 | 1.9 | 1.3 | 7.5 |
| 일본 | 76 | 48.7 | 10.5 | 10.5 | 18.4 | 1.3 | 2.6 | 7.9 |
| 베트남 | 222 | 63.5 | 16.7 | 5.9 | 5.4 | 3.2 | 3.6 | 1.8 |
| 필리핀 | 111 | 31.5 | 43.2 | 9.0 | 11.7 | 1.8 | 1.8 | 0.9 |
| 캄보디아 | 32 | 59.4 | 21.9 | 6.3 | 3.1 | 0.0 | 0.0 | 9.4 |
| 기타 | 70 | 48.6 | 24.3 | 4.3 | 15.7 | 1.4 | 0.0 | 5.7 |
| $x$ 2-검정 | $x$ 2=137.923, p-value=.000 | | | | | | | |

### 4) 부부관계 만족도

#### (1) 부부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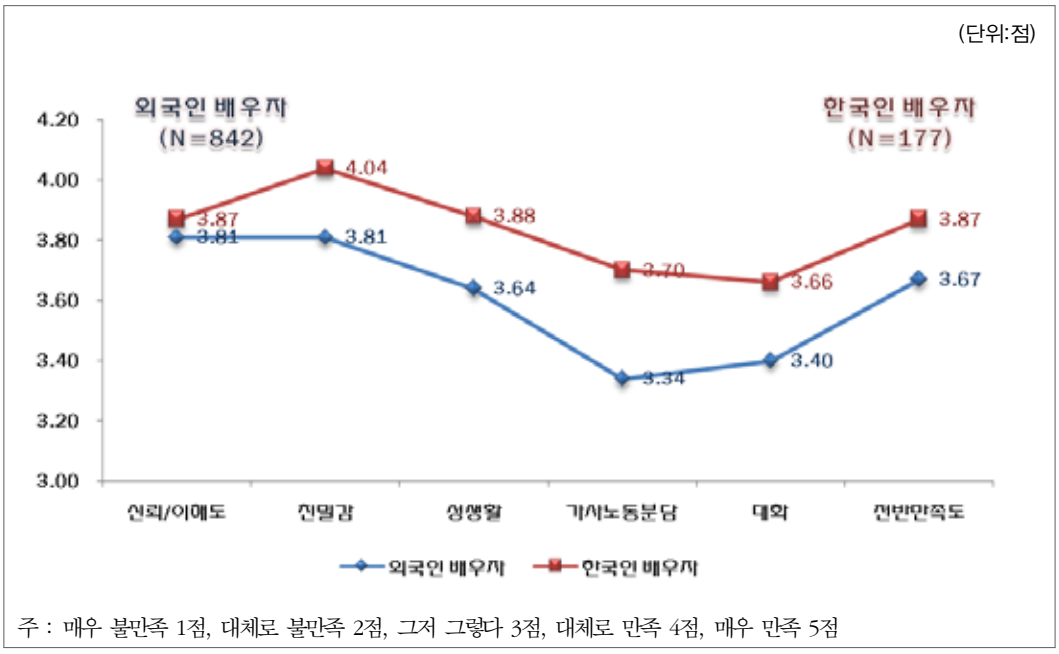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에게 5점 척도 기준으로 부부관계 만족도(배우자의 신뢰 및 이해도, 친밀감, 성생활, 가사노동분담, 부부간 대화,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 6개 영역)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의 신뢰 및 이해도 측면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만족도가 평균 3.81점인데 비해, 한국인 배우자의 만족도는 평균 3.87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부사이의 친밀감에서도 외국인 배우자의 만족도는 평균 3.81점인데 비해, 한국인 배우자의 만족도는 평균 4.04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성생활 역시 외국인 배우자의 만족도는 평균 3.64점인데 비해 한국인 배우자의 만족도는 평균 3.88점으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사노동분담 및 부부간 대화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만족도가 평균 3.34점인데 비해 한국인 배우자의 만족도는 평균 3.70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간 대화에 있어서도 외국인 배우자의 만족도가 평균 3.40점인데 비해 한국인 배우자의 만족도는 평균 3.66점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보통수준(3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나, 한국인 배우자의 만족도가 평균 3.87점인데 비해 외국인 배우자의 만족도는 그 보다 낮은 평균 3.67점으로 조사되어 외국인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한국인 배우자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특히 가정 내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 그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 : 매우 불만족 1점, 대체로 불만족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그림 Ⅳ - 8〉 부부관계 만족도(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 (2) 출신국적별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관계 만족도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신뢰/이해도 측면에서는 중국 한족 출신(3.96점)과 중국 조선족 출신(3.84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본 출신(3.68점)과 캄보디아 출신(3.68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부사이의 친밀감 측면에서도 중국 한족 출신의 만족도는 평균 3.99점으로 타 국적출신보다 높은 반면, 일본 출신(3.66점)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중국 한족 출신은 성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평균 3.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캄보디아 출신(평균 3.28점)은 타 국적출신에 비해 불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관계 만족도에서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사노동 분담의 경우(3.34점)는 베트남 출신(3.42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불만족도는 캄보디아 출신(2.93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간 대화의 측면에서는 필리핀 출신의 만족도가 평균 3.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캄보디아 출신(3.24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 한족 출신이 평균 3.8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필리핀 출신(3.50점)은 타 국적출신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표 Ⅳ - 76▐ 출신국적별 부부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 사례수 | 신뢰/이해도 | 친밀감 | 성생활 | 가사노동분담 | 부부간 대화 | 부부관계전반 |
|---|---|---|---|---|---|---|---|
| 전체 | 842 | 3.81 | 3.81 | 3.64 | 3.34 | 3.40 | 3.67 |
| 중국조선족 | 72 | 3.84 | 3.74 | 3.72 | 3.29 | 3.39 | 3.67 |
| 중국한족 | 190 | 3.96 | 3.99 | 3.85 | 3.40 | 3.41 | 3.87 |
| 일본 | 82 | 3.68 | 3.66 | 3.44 | 3.27 | 3.27 | 3.60 |
| 베트남 | 252 | 3.75 | 3.71 | 3.53 | 3.42 | 3.33 | 3.57 |
| 필리핀 | 119 | 3.75 | 3.79 | 3.65 | 3.35 | 3.51 | 3.50 |
| 캄보디아 | 41 | 3.68 | 3.75 | 3.28 | 2.93 | 3.24 | 3.76 |
| 기타 | 86 | 3.89 | 3.96 | 3.77 | 3.31 | 3.61 | 3.76 |
| $x^2$-검정 | | $x^2$=54.523, p-value=.004 | $x^2$=84.245, p-value=.000 | $x^2$=102.633, p-value=.000 | $x^2$=100.200, p-value=.000 | $x^2$=99.153, p-value=.000 | $x^2$=105.789, p-value=.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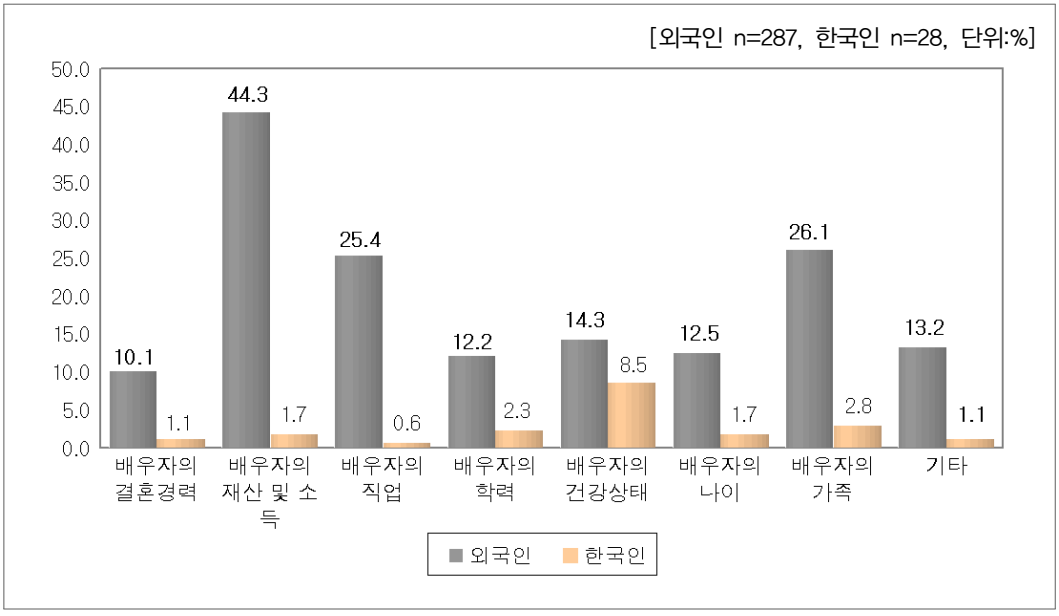
주 : 매우 불만족 1점, 대체로 불만족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 5) 사전정보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경험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에게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와 실제 사실이 달라서 결혼 후 부부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없다는 응답(외국인 배우자 56.7%, 한국인 배우자 78.0%)이 있다는 응답(외국인 배우자 34.1%, 한국인 배우자 15.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전정보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경험 여부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경험이 있다(34.1%)는 응답의 경우 필리핀 출신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캄보디아(41.5%), 일본(36.6%), 중국조선족(36.1%), 중국 한족(29.5%), 베트남(2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험이 없

다(56.7%)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64.7%)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 경험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 287명(34.1%)과 한국인 배우자 28명(15.8%)을 대상으로 갈등을 야기했던 사전정보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가족' 26.1%, '배우자의 직업' 25.4%, '배우자의 건강상태'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제관련 정보가 69.7%(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 44.3% + 배우자의 직업 25.4%)을 차지하고 있어 응답자의 상당수가 경제관련 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가족(2.8%)', '배우자의 학력(2.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Ⅳ - 9〉 사전정보 차이로 인한 갈등요인(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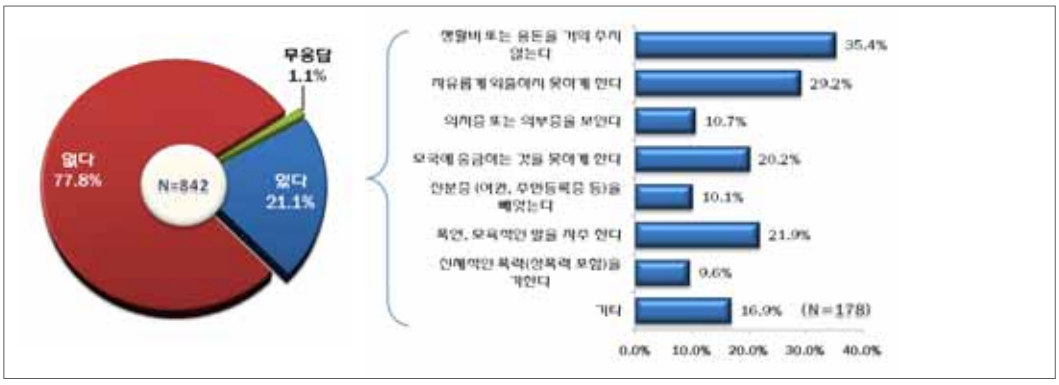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사전정보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44.3%)'으로 인한 경우는 중국 한족 출신이 64.3%로 타 국적출신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배우자의 가족(26.1%)'로 인한 경우는 필리핀 출신이 33.8%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배우자의 직업'으로 인한 경우는 필리핀 출신(30.8%)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77▐ 출신국적별 갈등요인(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사전정보 차이로 인한 갈등요인(%) | | | | | | | |
|---|---|---|---|---|---|---|---|---|---|
| | | 배우자의 결혼경력 |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 | 배우자의 직업 | 배우자의 학력 | 배우자의 건강상태 | 배우자의 나이 | 배우자의 가족 | 기타 |
| 합계 | 287 | 10.1 | 44.3 | 25.4 | 12.2 | 14.3 | 12.5 | 26.1 | 13.2 |
| 중국조선족 | 26 | 15.4 | 42.3 | 23.1 | 7.7 | 23.1 | 11.5 | 19.2 | 15.4 |
| 중국한족 | 56 | 5.4 | 64.3 | 21.4 | 7.1 | 8.9 | 8.9 | 21.4 | 12.5 |
| 일본 | 30 | 3.3 | 46.7 | 23.3 | 6.7 | 13.3 | 6.7 | 26.7 | 20.0 |
| 베트남 | 62 | 16.1 | 30.6 | 30.6 | 9.7 | 9.7 | 19.4 | 27.4 | 9.7 |
| 필리핀 | 65 | 12.3 | 41.5 | 30.8 | 21.5 | 16.9 | 12.3 | 33.8 | 9.2 |
| 캄보디아 | 17 | 11.8 | 41.2 | 17.6 | 5.9 | 17.6 | 17.6 | 17.6 | 17.6 |
| 기타 | 31 | 3.2 | 41.9 | 19.4 | 19.4 | 19.4 | 9.7 | 25.8 | 19.4 |

### 6) 배우자의 폭력 및 통제경험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폭력이나 통제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 842명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8명(21.1%)에 이르러 높은 편이었으나, 응답자의 상당수(77.8%)는 폭력이나 통제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이나 통제경험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 178명을 대상으로 그 유형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생활비 또는 용돈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유형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하게 한다' 29.2%, '폭언,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한다' 21.9%, '모국에 송금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2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의처증을 보인다' 10.7%,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는다' 10.1%, 신체적인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한다' 9.6% 등이 있었다.




〈그림 Ⅳ - 10〉 배우자의 폭력 및 통제경험 유형(복수응답)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폭력 및 통제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경우 캄보디아 출신(29.3%)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본(26.8%), 필리핀(25.2%), 중국 조선족(22.2%), 베트남(19.4%), 중국 한족(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폭력 및 통제경험 유형별로는 필리핀 출신(53.3%)이 생활비나 용돈에 대한 통제를 가장 많이 받았고, 캄보디아 출신(75.0%)은 타 국적출신에 비해 외출 통제 경험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출신의 경우는 '폭언,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한다'고 한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신체적인 폭력 경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타 국적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22.7%)를 보였다. 한편, 중국 한족 출신은 모국 송금에 대한 통제 경험률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 출신은 '의처증을 보인다'와 '신분증을 빼앗는다'는 경우에서 각각 14.3%, 18.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78▐ 출신국적별 폭력 및 통제경험 유형(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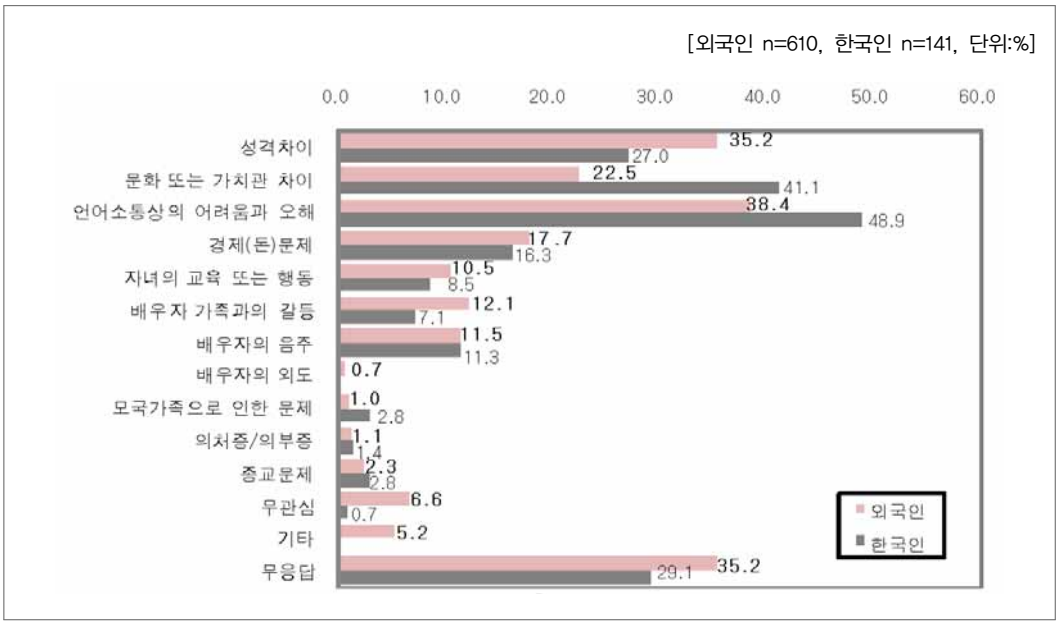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폭력 및 통제경험 유형(%) | | | | | | | |
|---|---|---|---|---|---|---|---|---|---|
| | | 생활비 또는 용돈을 거의 주지 않는다 |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하게 한다 |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보인다 | 모국에 송금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는다 | 폭언,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한다 | 신체적인 폭력 (성폭력 포함)을 가한다 | 기타 |
| 합계 | 178 | 35.4 | 29.2 | 10.7 | 20.2 | 10.1 | 21.9 | 9.6 | 16.9 |
| 중국조선족 | 16 | 25.0 | 18.8 | 6.3 | 12.5 | 18.8 | 18.8 | 12.5 | 25.0 |
| 중국한족 | 27 | 29.6 | 14.8 | 3.7 | 33.3 | 14.8 | 7.4 | 0.0 | 33.3 |
| 일본 | 22 | 36.4 | 13.6 | 13.6 | 0.0 | 0.0 | 59.1 | 22.7 | 9.1 |
| 베트남 | 49 | 26.5 | 32.7 | 14.3 | 20.4 | 18.4 | 26.5 | 4.1 | 10.2 |
| 필리핀 | 30 | 53.3 | 33.3 | 6.7 | 13.3 | 6.7 | 20.0 | 16.7 | 16.7 |
| 캄보디아 | 12 | 16.7 | 75.0 | 0.0 | 25.0 | 0.0 | 0.0 | 8.3 | 0.0 |
| 기타 | 22 | 54.5 | 31.8 | 22.7 | 36.4 | 0.0 | 9.1 | 9.1 | 22.7 |

### 7) 부부싸움

#### (1) 부부싸움의 원인

먼저, 외국인 배우자 842명과 한국인 배우자 177명을 대상으로 부부싸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외국인 배우자 610명(72.4%)과 한국인 배우자 141명(79.7%)이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부부싸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꼽은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복수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즉,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610명)는 '언어소통

상의 어려움과 오해'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성격차이(35.2%)', '문화 또는 가치관 차이(22.5%)', '경제(돈)문제(17.7%)',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배우자(141명)의 경우는 '언어소통상의 어려움과 오해'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 다음으로 '문화 또는 가치관의 차이'가 41.1%로 높게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부싸움의 원인을 외국인 배우자는 '성격차이'로 보는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문화 또는 가치관의 차이'로 보는 이런 인식의 차이는 부부간의 이해와 소통을 저해하고 갈등과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 Ⅳ - 11〉 부부싸움의 원인(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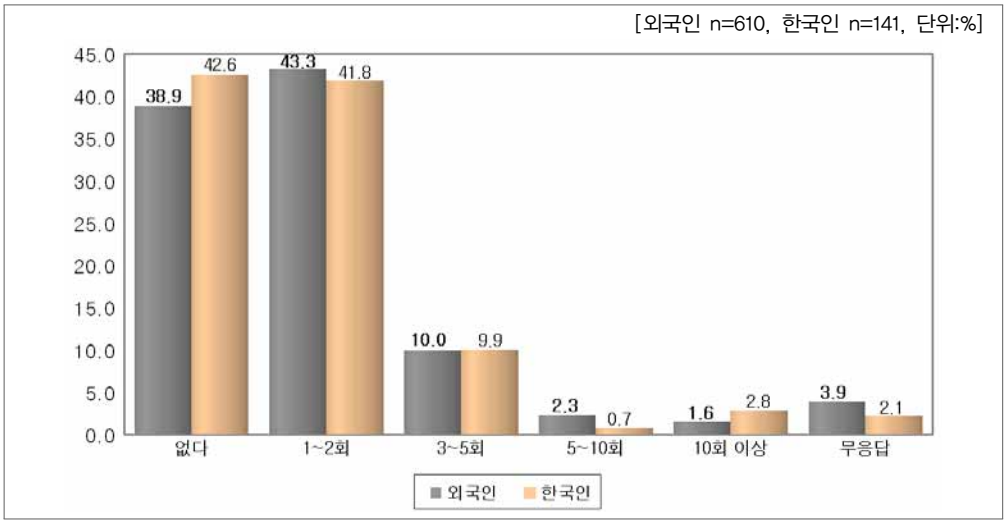
한편,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부부싸움의 유무와 그 원인을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일본 출신의 부부싸움 경험률이 8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필리핀 81.5%, 중국 조선족 73.6%, 베트남 73.0%, 중국 한족 60.0%, 캄보디아 5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싸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 610명을 대상으로 그 출신국적별로 부부싸움의 원인을 알아본 결과는 '언어소통상의 어려움과 오해(38.4%)'의 경우 베트남 출신이 50.0%로 높게 나타났다. '성격차이(35.2%)'의 경우는 중국 조선족 출신이 49.1%, '문화 또는 가치관 차이(22.5%)'는 일본 출신이 43.7%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79▐ 출신국적별 부부싸움의 원인(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부부싸움의 원인(%) | | | | | | | | | | | | | |
|---|---|---|---|---|---|---|---|---|---|---|---|---|---|---|---|
| | | 성격 차이 | 문화 또는 가치관 차이 | 언어 소통 상의 어려움과 오해 | 경제 (돈) 문제 |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 |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 배우자의 음주 | 배우자의 외도 | 모국 가족으로 인한 문제 | 의처증 | 종교 문제 | 무관심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610 | 35.2 | 22.5 | 38.4 | 17.7 | 10.5 | 12.1 | 11.5 | 0.7 | 1.0 | 1.1 | 2.3 | 6.6 | 5.2 | 35.2 |
| 중국조선족 | 53 | 49.1 | 30.2 | 15.1 | 26.4 | 11.3 | 15.1 | 17.0 | 0.0 | 0.0 | 5.7 | 1.9 | 3.8 | 3.8 | 20.8 |
| 중국한족 | 114 | 36.8 | 14.0 | 37.7 | 16.7 | 5.3 | 18.4 | 8.8 | 1.8 | 0.0 | 0.0 | 0.9 | 5.3 | 9.6 | 44.7 |
| 일본 | 71 | 28.2 | 43.7 | 32.4 | 19.7 | 19.7 | 14.1 | 1.4 | 0.0 | 0.0 | 2.8 | 5.6 | 7.0 | 2.8 | 22.5 |
| 베트남 | 184 | 34.8 | 12.0 | 50.0 | 13.0 | 9.8 | 6.0 | 13.0 | 0.0 | 1.1 | 0.0 | 2.7 | 10.3 | 4.9 | 42.4 |
| 필리핀 | 97 | 28.9 | 29.9 | 43.3 | 18.6 | 10.3 | 9.3 | 19.6 | 0.0 | 3.1 | 0.0 | 1.0 | 3.1 | 2.1 | 30.9 |
| 캄보디아 | 21 | 28.6 | 19.0 | 47.6 | 19.0 | 9.5 | 33.3 | 9.5 | 0.0 | 4.8 | 0.0 | 9.5 | 4.8 | 4.8 | 9.5 |
| 기타 | 70 | 41.4 | 27.1 | 22.9 | 21.4 | 11.4 | 11.4 | 7.1 | 2.9 | 0.0 | 2.9 | 0.0 | 5.7 | 7.1 | 38.6 |

### (2) 부부싸움 빈도

부부싸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의 부부싸움 횟수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1~2회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8.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1~2회라는 응답은 41.8%로 외국인 배우자의 응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그림 Ⅳ - 12〉 부부싸움 빈도

부부싸움의 빈도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 출신(58.5%)은 1~2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국 한족 출신(50.9%)은 지난 한달 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별로는 5년 이상(46.7%)에서 1~2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경우는 1년 미만(46.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일정한 결혼기간이 지나면 부부 싸움 빈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Ⅳ - 81▌ 출신국적별 부부싸움 빈도

| 구분 | 사례수 | 부부싸움 빈도(%) | | | | | |
|---|---|---|---|---|---|---|---|
| | | 없다 | 1~2회 | 3~5회 | 5~10회 | 10회이상 | 무응답 |
| 합계 | 610 | 38.9 | 43.3 | 10.0 | 2.3 | 1.6 | 3.9 |
| 중국조선족 | 53 | 24.5 | 58.5 | 13.2 | 0.0 | 0.0 | 3.8 |
| 중국한족 | 114 | 50.9 | 36.0 | 5.3 | 0.0 | 0.9 | 7.0 |
| 일본 | 71 | 46.5 | 42.3 | 5.6 | 0.0 | 2.8 | 2.8 |
| 베트남 | 184 | 43.5 | 39.7 | 9.2 | 3.3 | 0.5 | 3.8 |
| 필리핀 | 97 | 14.4 | 55.7 | 16.5 | 6.2 | 4.1 | 3.1 |
| 캄보디아 | 21 | 47.6 | 38.1 | 14.3 | 0.0 | 0.0 | 0.0 |
| 기타 | 70 | 41.4 | 38.6 | 11.4 | 2.9 | 2.9 | 2.9 |
| $x$ 2-검정 | $x$ 2=67.701, p-value=.000 | | | | | | |

### 8) 이혼고려 및 이혼하지 않는 이유

#### (1) 이혼고려 여부

결혼생활에서 이혼 또는 별거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에게 물어보았다. 이혼고려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외국인 배우자가 21.1%인데 반해, 한국인 배우자는 18.1%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려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외국인 배우자가 71.5%인데 반해 한국인 배우자는 75.1%로 높게 나타나 한국인 배우자보다는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고려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82▐ 이혼고려 여부(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602 | 71.5 | 133 | 75.1 |
|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178 | 21.1 | 32 | 18.1 |
| 무응답 | 62 | 7.4 | 12 | 6.8 |

출신국적별로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고려율(21.1%)을 살펴보면, 필리핀 출신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 조선족(27.8%), 일본(25.6%), 캄보디아(22.0%), 베트남(16.3%), 중국 한족(1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별로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이혼고려율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고려율(21.1%)은 3~5년 미만에서 3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5년 이상(34.4%)에서 높게 나타나 결혼기간이 길수록 이혼고려율이 높았다. 한국인 배우자의 이혼고려율(18.1%) 역시 5년 이상(23.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고려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1년 미만(17.9%)에서도 이혼고려율이 높게 나타나 결혼초기와 5년 이상 된 부부에 대한 갈등해소 상담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 - 83▐ 결혼기간별 이혼고려 여부

| 구분 | 이혼고려 여부(%) | | | | | | | |
|---|---|---|---|---|---|---|---|---|
| | 사례수 | 외국인 | | | 사례수 | 한국인 | | |
| | | 있다 | 없다 | 무응답 | | 있다 | 없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21.1 | 71.5 | 7.4 | 177 | 18.1 | 75.1 | 6.8 |
| 1년 미만 | 190 | 9.5 | 85.8 | 4.7 | 39 | 17.9 | 74.4 | 7.7 |
| 1~3년 미만 | 343 | 15.7 | 77.8 | 6.4 | 63 | 15.9 | 74.6 | 9.5 |
| 3~5년 미만 | 121 | 35.5 | 60.3 | 4.1 | 25 | 16.0 | 80.0 | 4.0 |
| 5년 이상 | 180 | 34.4 | 53.3 | 12.2 | 39 | 23.1 | 71.8 | 5.1 |
| 무응답 | 8 | 12.5 | 37.5 | 50.0 | 11 | 18.2 | 81.8 | 0.0 |
| $x$ 2-검정 | $x$ 2=92.683, p-value=.000 | | | | $x$ 2=2.911, p-value=.940 | | | |

### (2) 이혼하지 않는 이유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 178명을 대상으로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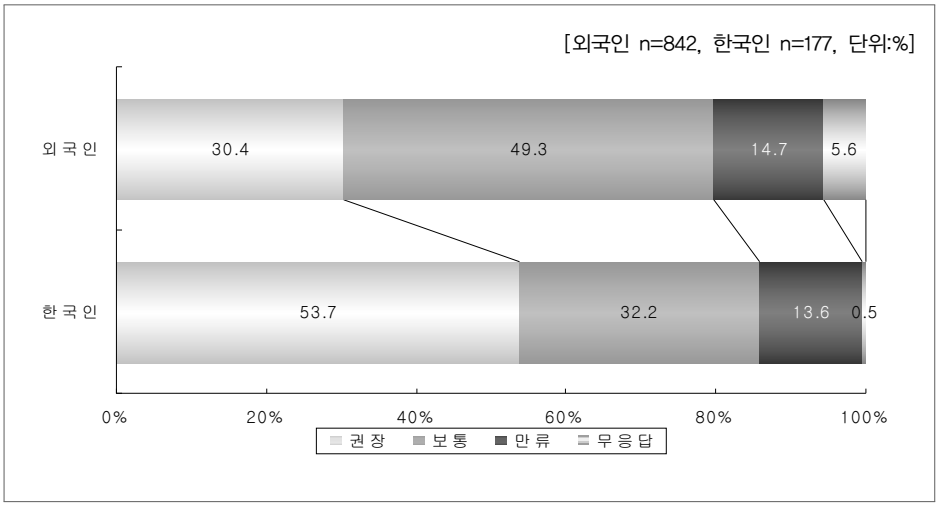
를 알아본 결과, '자녀 때문에(88명)'라는 이유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어서(23명)'라는 이유가 12.9%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32명)의 경우 역시 '자녀 때문에(19명)' 이혼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5명)'라는 응답이 15.6%로 많았다.

▌표 Ⅳ - 84▐ 이혼하지 않는 이유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178 | 100.0 |
| 자녀 때문에 | 88 | 49.4 |
| 부모와 가족의 반대로 | 8 | 4.5 |
|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어서 | 23 | 12.9 |
|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상실할 것 같아서 | 13 | 7.3 |
| 모국의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서 | 6 | 3.4 |
| 이혼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 5 | 2.8 |
|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리할 것 같아서 | 6 | 3.4 |
|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 9 | 5.1 |
|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서 | 4 | 2.2 |
| 기타 | 16 | 9.0 |

### 9) 한국인과의 결혼 권장도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알기 위한 또 다른 질문으로 국제결혼 권장도를 조사해보았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국인과의 결혼을 주변 사람들에게 권장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극적으로 권장(11.2%)'하거나 '대체로 권장하는 편(19.2%)'이라는 응답은 30.4%로 '적극적으로 만류(5.7%)'하거나 '대체로 만류하는 편(9.0%)'이라는 응답 14.7%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권장도는 '적극적으로 권장(14.7%)'하거나 '대체로 권장하는 편(39.0%)'이라는 응답이 53.7%로 '적극적으로 만류(3.4%)'하거나 '대체로 만류하는 편(10.2%)'이라는 응답 13.6%보다 4배가량 많아 외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권장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점수(5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해 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권장도는 평균 3.22점인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평균 3.52점이었다.




〈그림 Ⅳ - 13〉 국제결혼 권장도(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권장도를 살펴보면, 일본 출신(3.66점)의 결혼권장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조선족 출신(3.32점)이 높았다. 반면,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권장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베트남 출신(3.11점)이어서 이에 대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원인연구가 필요하다.

▌표 Ⅳ - 85▐ 출신국적별 한국인과의 결혼권장도

| 구분 | 사례수 | 한국인과의 결혼권장도(%)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권장 | | | 보통 | 만류 | | | 무응답 | |
| | | 적극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적극 | 소계 | | |
| 합계 | 842 | 11.2 | 19.2 | 30.4 | 49.3 | 9.0 | 5.7 | 14.7 | 5.6 | 3.22 |
| 중국조선족 | 72 | 12.5 | 30.6 | 43.1 | 37.5 | 15.3 | 4.2 | 19.5 | 0.0 | 3.32 |
| 중국한족 | 190 | 11.1 | 16.8 | 27.9 | 51.6 | 10.0 | 5.8 | 15.8 | 4.7 | 3.18 |
| 일본 | 82 | 24.4 | 28.0 | 52.4 | 35.4 | 7.3 | 2.4 | 9.7 | 2.4 | 3.66 |
| 베트남 | 252 | 6.0 | 14.7 | 20.7 | 60.7 | 8.7 | 3.6 | 12.3 | 6.3 | 3.11 |
| 필리핀 | 119 | 13.4 | 21.0 | 34.4 | 37.0 | 5.0 | 10.9 | 15.9 | 12.6 | 3.24 |
| 캄보디아 | 41 | 17.1 | 12.2 | 29.3 | 46.3 | 14.6 | 4.9 | 19.5 | 4.9 | 3.23 |
| 기타 | 86 | 7.0 | 20.9 | 27.9 | 52.3 | 7.0 | 9.3 | 16.3 | 3.5 | 3.10 |
| $x$ 2-검정 | $x$ 2=87.347, p-value=.000 | | | | | | | | | |

주 : 적극적으로 만류한다 1점, 대체로 만류하는 편이다 2점, 권장도 만류도 안한다 3점, 대체로 권장하는 편이다 4점,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5점

한편,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로 분석해 보면, 결혼기간이 5년 이상(36.7%)인 경우에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권장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5년 미만(24.8%)의 경우에서는 만류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권장한다는 응답이 10년 이상에서 63.7%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만류한다는 응답은 1년 미만에서 17.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국 결혼초기이거나 결혼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부부에 대한 상담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86▐ 외국인 배우자 결혼기간별 한국인과의 결혼권장도

| 구분 | 사례수 | 한국인과의 결혼권장도(%) | | | | | | | | 5점척도 평균 |
|---|---|---|---|---|---|---|---|---|---|---|
| | | 권장 | | | 보통 | 만류 | | | 무응답 | |
| | | 적극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적극 | 소계 | | |
| 합계 | 842 | 11.2 | 19.2 | 30.4 | 49.3 | 9.0 | 5.7 | 14.7 | 5.6 | 3.22 |
| 1년 미만 | 190 | 8.4 | 17.9 | 26.3 | 54.2 | 6.3 | 5.3 | 11.6 | 7.9 | 3.19 |
| 1~3년 미만 | 343 | 10.2 | 19.5 | 29.7 | 55.1 | 7.3 | 4.1 | 11.4 | 3.8 | 3.25 |
| 3~5년 미만 | 121 | 11.6 | 17.4 | 29.0 | 42.1 | 16.5 | 8.3 | 24.8 | 4.1 | 3.08 |
| 5년 이상 | 180 | 15.0 | 21.7 | 36.7 | 38.3 | 10.6 | 7.2 | 17.8 | 7.2 | 3.29 |
| 무응답 | 8 | 25.0 | 12.5 | 37.5 | 37.5 | 0.0 | 12.5 | 12.5 | 12.5 | 3.43 |
| $x$ 2-검정 | $x$ 2=37.276, p-value=.011 | | | | | | | | | |

주 : 적극적으로 만류한다 1점, 대체로 만류하는 편이다 2점, 권장도 만류도 안한다 3점, 대체로 권장하는 편이다 4점,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5점

## 2. 자녀와의 관계

외국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낮음으로 인해 자녀들과의 언어소통과 상호작용에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역시 한국어 사용능력 저하와 또래집단 및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자녀구성, 자녀의 양육실태와 양육에 따른 어려움,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 1) 한국에서의 출산 경험 및 자녀수

#### (1) 한국에서의 출산경험

외국인 배우자 842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출산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18명(49.6%)이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신국적별로는 필리핀 출신(70.6%)의 출산경험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본 출신(63.4%), 중국 조선족 출신(58.3%), 베트남 출신(52.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국 한족(29.5%)과 캄보디아(22.0%) 출신의 출산경험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이는 결혼기간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일본과 필리핀 출신은 타 국적출신에 비해 결혼으로 인한 이주역사가 길어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한족과 캄보디아 출신은 결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데, 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들의 출산율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Ⅳ - 87▐ 출신국적별 한국에서의 출산경험

| 구분 | 사례수 | 한국에서의 출산경험(%) | |
|---|---|---|---|
| | | 예 | 아니오 |
| 합계 | 842 | 49.6 | 50.4 |
| 중국조선족 | 72 | 58.3 | 41.7 |
| 중국한족 | 190 | 29.5 | 70.5 |
| 일본 | 82 | 63.4 | 36.6 |
| 베트남 | 252 | 52.8 | 47.2 |
| 필리핀 | 119 | 70.6 | 29.4 |
| 캄보디아 | 41 | 22.0 | 78.0 |
| 기타 | 86 | 48.8 | 51.2 |
| $x$ 2-검정 | $x$ 2=73.788, p-value=.000 | | |

결혼기간별로는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서 7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5년 미만(71.9%), 1~3년 미만(50.7%), 1년 미만(7.4%)의 순으로 나타나 결혼기간이 길수록 출산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88▐ 결혼기간별 한국에서의 출산경험

| 구분 | 사례수 | 한국에서의 출산경험(%) | |
|---|---|---|---|
| | | 예 | 아니오 |
| 합계 | 842 | 49.6 | 50.4 |
| 1년 미만 | 190 | 7.4 | 92.6 |
| 1~3년 미만 | 343 | 50.7 | 49.3 |
| 3~5년 미만 | 121 | 71.9 | 28.1 |
| 5년 이상 | 180 | 77.8 | 22.2 |
| 무응답 | 8 | 37.5 | 62.5 |
| $x$ 2-검정 | $x$ 2=217.438, p-value=.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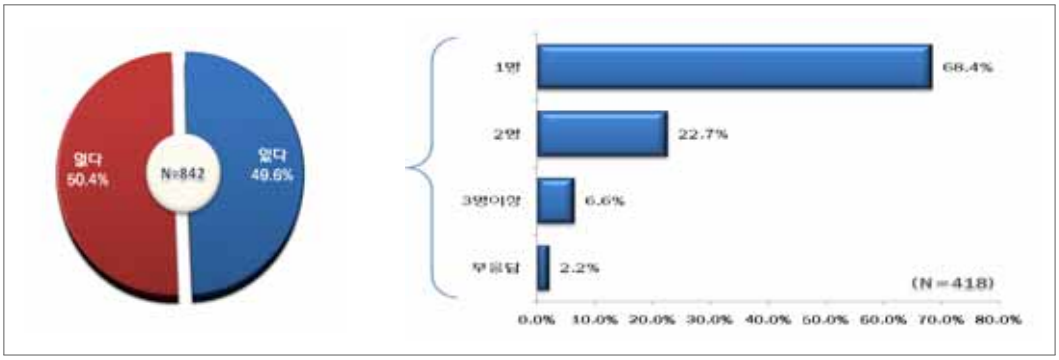
또한, 이를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상태별로 분석해 보면, 재혼보다는 초혼일 때,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초혼일 때 출산경험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혼(외국인)-초혼(한국인)인 경우(53.6%)와 초혼(외국인)-재혼(한국인)인 경우(40.0%)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재혼(외국인)-재혼(한국인)인 경우(31.3%)와 재혼(외국인)-초혼(한국인)인 경우(17.8%)는 낮게 나타났다.

▌표 Ⅳ - 89▐ 결혼상태별 한국에서의 출산경험

| 구분 | 사례수 | 한국에서의 출산경험(%) | |
|---|---|---|---|
| | | 예 | 아니오 |
| 합계 | 842 | 49.6 | 50.4 |
| 초혼(외국인)-초혼(한국인) | 664 | 53.6 | 46.4 |
| 초혼(외국인)-재혼(한국인) | 85 | 40.0 | 60.0 |
| 재혼(외국인)-재혼(한국인) | 16 | 31.3 | 68.8 |
| 재혼(외국인)-초혼(한국인) | 45 | 17.8 | 82.2 |
| 잘 모르겠다 | 32 | 46.9 | 53.1 |
| $x$ 2-검정 | $x$ 2=28.270, p-value=.000 | | |

### 2) 한국에서의 출산자녀 수

출산경험이 있는 418명(49.6%)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2명 미만(1.55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명을 출산하였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2명(22.7%), 3명(5.0%), 4명(1.4%), 5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14〉 한국에서의 출산자녀 수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중국 한족(89.3%)과 베트남(88.0%) 출신에서는 1명을 출산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일본(34.6%)과 필리핀(40.5%) 출신에서는 2명을 출산한 경우가 다소 많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과 필리핀 출신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다는 응답도 각각 32.6%, 10.7%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기간이 오래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Ⅳ - 90▐ 출신국적별 출산자녀 수

| 구분 | 사례수 | 출산자녀 수(%) | | | | | | 평균 (명) |
|---|---|---|---|---|---|---|---|---|
|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무응답 | |
| 합계 | 418 | 68.4 | 22.7 | 5.0 | 1.4 | 0.2 | 2.2 | 1.55 |
| 중국조선족 | 42 | 69.0 | 28.6 | 0.0 | 0.0 | 0.0 | 2.4 | 1.48 |
| 중국한족 | 56 | 89.3 | 10.7 | 0.0 | 0.0 | 0.0 | 0.0 | 1.11 |
| 일본 | 52 | 32.7 | 34.6 | 19.2 | 11.5 | 1.9 | 0.0 | 2.15 |
| 베트남 | 133 | 88.0 | 6.0 | 0.8 | 0.0 | 0.0 | 5.3 | 1.50 |
| 필리핀 | 84 | 48.8 | 40.5 | 10.7 | 0.0 | 0.0 | 0.0 | 1.62 |
| 캄보디아 | 9 | 100.0 | 0.0 | 0.0 | 0.0 | 0.0 | 0.0 | 1.00 |
| 기타 | 42 | 54.8 | 40.5 | 2.4 | 0.0 | 0.0 | 2.4 | 1.64 |
| $x$ 2-검정 | $x$ 2=167.838, p-value=.000 | | | | | | | |

결혼기간별로는 출산자녀가 1명(68.4%)인 경우 1~3년 미만(93.7%), 1년 미만(85.7%), 3~5년 미만(72.4%), 5년 이상(3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자녀가 2명(22.7%)인 경우에는 5년 이상에서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3~5년 미만(26.4%), 1년 미만(7.1%), 1~3년 미만(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자녀가 3명 이상(6.6%)인 경우는 5년 이상(20.0%)에서만 나타났다.

▌표 Ⅳ - 91▌ 결혼기간별 출산자녀 수

| 구분 | 사례수 | 출산자녀 수(%) | | | | | | 평균(명) |
|---|---|---|---|---|---|---|---|---|
|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무응답 | |
| 합계 | 418 | 68.4 | 22.7 | 5.0 | 1.4 | 0.2 | 2.2 | 1.55 |
| 1년 미만 | 14 | 85.7 | 7.1 | 0.0 | 0.0 | 0.0 | 7.1 | 1.64 |
| 1~3년 미만 | 174 | 93.7 | 2.9 | 0.0 | 0.0 | 0.0 | 3.4 | 1.30 |
| 3~5년 미만 | 87 | 72.4 | 26.4 | 0.0 | 0.0 | 0.0 | 1.1 | 1.36 |
| 5년 이상 | 140 | 33.6 | 46.4 | 15.0 | 4.3 | 0.7 | 0.0 | 1.92 |
| 무응답 | 3 | 33.3 | 33.3 | 0.0 | 0.0 | 0.0 | 33.3 | 4.00 |
| $x$ 2-검정 | $x$ 2=184.923, p-value=.000 | | | | | | | |

거주 지역(권역)별로는 출산 자녀수가 1명(68.4%)인 경우 서북권(75.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명(22.7%)인 경우는 동남권에서 3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3명 이상의 경우는 동남권에서 12.9%로 높게 나타나 동남권에서 2~3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 지역(권역)별 출산 자녀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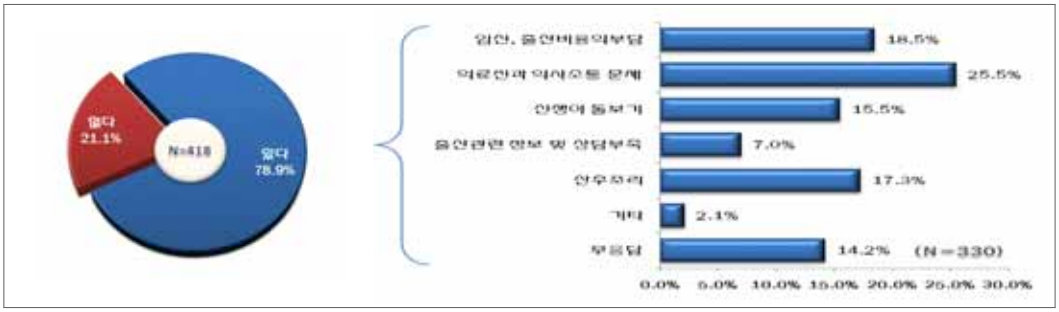
▌표 Ⅳ - 92▌ 거주 지역(권역)별 출산자녀 수

| 구분 | 사례수 | 출산자녀 수(%) | | | | | | 평균(명) |
|---|---|---|---|---|---|---|---|---|
|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무응답 | |
| 합계 | 418 | 68.4 | 22.7 | 5.0 | 1.4 | 0.2 | 2.2 | 1.55 |
| 도심권 | 27 | 70.4 | 25.9 | 3.7 | 0.0 | 0.0 | 0.0 | 1.33 |
| 동북권 | 153 | 70.6 | 24.8 | 2.6 | 0.0 | 0.0 | 2.0 | 1.46 |
| 서북권 | 49 | 75.5 | 20.4 | 2.0 | 2.0 | 0.0 | 0.0 | 1.31 |
| 서남권 | 149 | 67.1 | 18.1 | 7.4 | 2.7 | 0.7 | 4.0 | 1.76 |
| 동남권 | 39 | 56.4 | 30.8 | 10.3 | 2.6 | 0.0 | 0.0 | 1.59 |
| 무응답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2.00 |
| $x$ 2-검정 | $x$ 2=25.692, p-value=.424 | | | | | | | |

### 2) 출산 시 어려움

한국에서의 출산경험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 418명을 대상으로 출산 시 경험했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출산 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은 78.9%로 높은 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은 2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시 어려움(330명)의 내용

으로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2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임신, 출산비용의 부담(18.5%)', '산후조리(17.3%)', '신생아 돌보기(1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 - 15〉 출산 시 어려움

이를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25.5%)'의 경우 캄보디아 출신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한족 출신이 32.7%, 베트남 30.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임신, 출산비용의 부담(18.5%)'의 경우는 필리핀(33.3%)과 중국 조선족(27.3%) 출신이 높게 나타났으며, '산후조리(17.3%)'은 일본출신에게서 34.8%로 높게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도 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에게 아픈 곳을 설명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하는 방법과 결혼이민자들을 병원에서 고용해서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Ⅳ - 93▐ 출신국적별 출산 시 어려움

| 구분 | 사례수 | 출산 시 어려움(%) | | | | | | |
|---|---|---|---|---|---|---|---|---|
| | | 임신, 출산비용 부담 | 의료진과 의사소통 문제 | 신생아 돌보기 | 출산관련 정보 및 상담부족 | 산후조리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330 | 18.5 | 25.5 | 15.5 | 7.0 | 17.3 | 2.1 | 14.2 |
| 중국조선족 | 33 | 27.3 | 12.1 | 24.2 | 12.1 | 21.2 | 0.0 | 3.0 |
| 중국한족 | 49 | 10.2 | 32.7 | 16.3 | 4.1 | 24.5 | 0.0 | 12.2 |
| 일본 | 46 | 6.5 | 23.9 | 10.9 | 8.7 | 34.8 | 4.3 | 10.9 |
| 베트남 | 91 | 14.3 | 30.8 | 19.8 | 5.5 | 13.2 | 0.0 | 16.5 |
| 필리핀 | 72 | 33.3 | 26.4 | 8.3 | 8.3 | 4.2 | 2.8 | 16.7 |
| 캄보디아 | 6 | 0.0 | 50.0 | 0.0 | 0.0 | 16.7 | 16.7 | 16.7 |
| 기타 | 33 | 21.2 | 9.1 | 18.2 | 6.1 | 18.2 | 6.1 | 21.2 |
| $x$ 2-검정 | $x$ 2=91.806, p-value=.000 | | | | | | | |

### 3) 동거 자녀수 및 취학상태

#### (1) 동거 자녀수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총 470가구로 전체의 55.8%에 해당했다.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1명인 경우는 276가구(58.7%), 2명인 경우는 89가구(18.9%), 3명 이상인 경우는 22가구(4.7%)였다.

이를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는 베트남 출신에서 8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한족(74.3%), 캄보디아(60.0%) 순으로 높았다. 동거 자녀가 2명인 경우는 필리핀(35.3%)과 일본(26.7%) 출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동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서도 타 국적출신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3명 이상인 경우 일본 출신은 20%, 필리핀 출신은 7.1% 로 나타났다.

▌표 Ⅳ - 94▐ 출신국적별 동거 자녀수

| 구분 | 사례수 | 동거 자녀수(%) | | | | | | 평균(명) |
|---|---|---|---|---|---|---|---|---|
|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무응답 | |
| 합계 | 470 | 58.7 | 18.9 | 3.4 | 0.9 | 0.4 | 17.7 | 1.36 |
| 중국조선족 | 47 | 59.6 | 23.4 | 0 | 0 | 0 | 17.0 | 1.28 |
| 중국한족 | 70 | 74.3 | 10.0 | 0 | 0 | 0 | 15.7 | 1.12 |
| 일본 | 60 | 25.0 | 26.7 | 10.0 | 6.7 | 3.3 | 28.3 | 2.12 |
| 베트남 | 140 | 86.4 | 6.4 | 0.7 | 0 | 0 | 6.4 | 1.08 |
| 필리핀 | 85 | 34.1 | 35.3 | 7.1 | 0 | 0 | 23.5 | 1.65 |
| 캄보디아 | 15 | 60.0 | 0 | 6.7 | 0 | 0 | 33.3 | 1.20 |
| 기타 | 53 | 41.5 | 30.2 | 3.8 | 0 | 0 | 24.5 | 1.50 |
| $x$ 2-검정 | $x$ 2=142.348, p-value=.000 | | | | | | | |

#### (2) 취학상태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470가구 가운데 동거 자녀의 취학상태에 대해 응답한 46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취학상태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미취학생이 8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초등학생(20.6%), 중학생(4.9%), 고등학생(3.2%), 성인(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취학자녀가 많지 않은 것은 본 조사에 응한 외국인 배우자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서비스나 프

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미취학생(83.2%)의 경우는 베트남(95.6%)과 중국 한족(85.5%), 중국 조선족(83.0%) 출신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20.6%)의 경우에는 일본(50.0%)과 필리핀(41.2%) 출신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취학생 자녀를 둔 외국인 배우자와 학력기 자녀를 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분포를 비교해 보면 이들의 결혼 이주역사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베트남과 중국 한족 및 조선족 출신의 경우는 2006년 이후 결혼 이주가 급격히 증가했고, 일본과 필리핀 출신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결혼이주가 타 국적출신에 비해 일찍 시작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Ⅳ - 95▐ 출신국적별 동거 자녀의 취학상태[26)]**

| 구분 | 사례수 | 동거 자녀의 취학상태(%) | | | | |
|---|---|---|---|---|---|---|
| | | 미취학생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성인 |
| 합계 | 465 | 83.2 | 20.6 | 4.9 | 3.2 | 2.6 |
| 중국조선족 | 47 | 83.0 | 12.8 | 0.0 | 6.4 | 4.3 |
| 중국한족 | 69 | 85.5 | 7.2 | 1.4 | 2.9 | 5.8 |
| 일본 | 60 | 71.7 | 50.0 | 8.3 | 10.0 | 3.3 |
| 베트남 | 137 | 95.6 | 4.4 | 1.5 | 0.7 | 0.7 |
| 필리핀 | 85 | 76.5 | 41.2 | 4.7 | 1.2 | 0.0 |
| 캄보디아 | 15 | 66.7 | 20.0 | 13.3 | 6.7 | 6.7 |
| 기타 | 52 | 76.9 | 21.2 | 17.3 | 1.9 | 3.8 |
| $x$ 2-검정 | $x$ 2=125.480, p-value=.000 | | | | | |

한편, 거주 지역(권역)별로 동거 자녀의 취학상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미취학생(83.2%)의 경우는 서북권(86.8%)과 동북권(86.2%), 서남권(84.9%)에서 많았으며, 초등학생(20.6%)의 경우는 동남권(27.5%)과 도심권(23.5%)에서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 지역(권역)별 취학상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26) 복수응답 문항의 경우 복수응답으로 조사되어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응답하는 것으로 각 사항에 해당되는 사례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므로 각 비율의 합이 100.0%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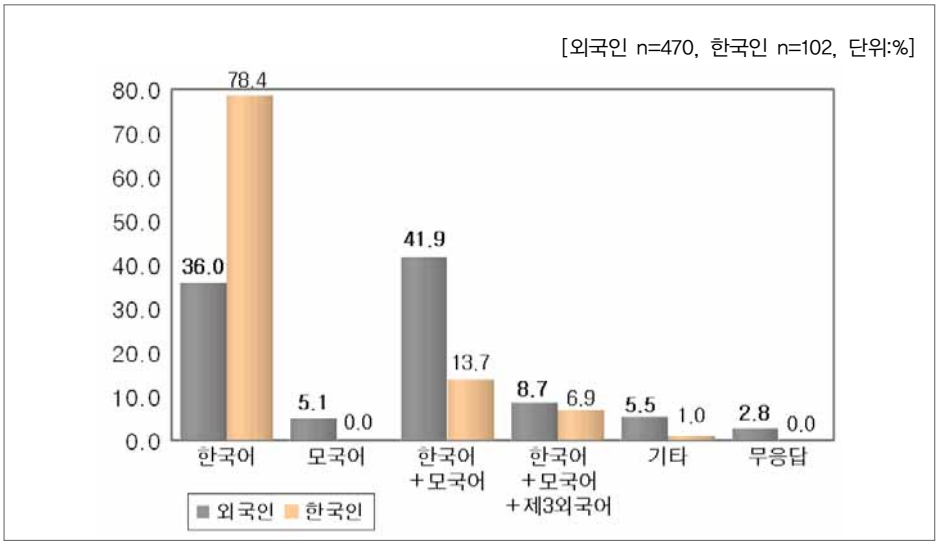
▌표 Ⅳ - 96▌ 거주 지역(권역)별 동거 자녀의 취학상태

| 구분 | 사례수 | 동거 자녀의 취학상태(%) | | | | |
|---|---|---|---|---|---|---|
| | | 미취학생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성인 |
| 합계 | 465 | 83.2 | 20.6 | 4.9 | 3.2 | 2.6 |
| 도심권 | 34 | 79.4 | 23.5 | 2.9 | 5.9 | 2.9 |
| 동북권 | 167 | 86.2 | 17.4 | 3.6 | 1.2 | 1.8 |
| 서북권 | 53 | 86.8 | 17.0 | 5.7 | 1.9 | 0.0 |
| 서남권 | 159 | 84.9 | 22.0 | 3.8 | 3.1 | 1.9 |
| 동남권 | 51 | 68.6 | 27.5 | 13.7 | 9.8 | 9.8 |
| 무응답 | 1 | 0.0 | 100.0 | 0.0 | 0.0 | 0.0 |
| $x$ 2-검정 | $x$ 2=36.265, p-value=.068 | | | | | |

### 4) 자녀와의 언어사용

#### (1) 자녀와의 언어사용

동거 자녀가 있는 외국인 배우자(470명)를 대상으로 자녀와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모국어'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어(36.0%)', '한국어+모국어+제3외국어(8.7%)' 순으로 나타났다. '모국어'만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5.1%로 매우 낮았다. 이를 좀 더 분석해보면, '한국어+모국어'의 경우처럼 자녀와의 사용언어가 2개 이상인 경우가 56.1%로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41.1%('한국어' 36.0% + '모국어' 5.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비율이 92.1%나 되어 자녀와 대화 시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자녀가 있는 한국인 배우자(102명)를 대상으로도 자녀와의 사용언어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78.4%)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어+배우자의 모국어(13.7%)', '한국어+배우자의 모국어+제3외국어(6.9%)'의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에서의 언어사용이 단일 언어인 한국어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Ⅳ - 16〉 자녀와의 언어사용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자녀와의 사용언어를 살펴보면, '한국어+모국어(41.9%)'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베트남(51.4%)과 중국 한족(50.0%) 출신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어(36.0%)'만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63.8%)과 캄보디아(60.0%) 출신에게서 높게 나타난 반면 타 국적출신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어+모국어+제3외국어(8.7%)'의 경우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필리핀 출신(27.1%)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5.1%)'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중국 한족과 일본 출신에게서 각각 10.0%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캄보디아 출신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97▐ 출신국적별 자녀와의 사용언어

| 구분 | 사례수 | 자녀와의 사용 언어(%) | | | | | |
|---|---|---|---|---|---|---|---|
| | | 한국어 | 모국어 | 한국어+모국어 | 한국어+모국어+제3외국어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470 | 36.0 | 5.1 | 41.9 | 8.7 | 5.5 | 2.8 |
| 중국조선족 | 47 | 63.8 | 2.1 | 31.9 | 2.1 | 0.0 | 0.0 |
| 중국한족 | 70 | 34.3 | 10.0 | 50.0 | 2.9 | 1.4 | 1.4 |
| 일본 | 60 | 40.0 | 10.0 | 46.7 | 1.7 | 0.0 | 1.7 |
| 베트남 | 140 | 37.9 | 0.7 | 51.4 | 4.3 | 0.7 | 5.0 |
| 필리핀 | 85 | 17.6 | 1.2 | 25.9 | 27.1 | 25.9 | 2.4 |
| 캄보디아 | 15 | 60.0 | 0.0 | 33.3 | 0.0 | 0.0 | 6.7 |
| 기타 | 53 | 26.4 | 15.1 | 37.7 | 15.1 | 3.8 | 1.9 |
| $x$ 2-검정 | $x$ 2=191.924, p-value=.000 | | | | | | |

한편, 동거 자녀 가운데 언어발달시기에 있는 미취학자녀를 둔 외국인 배우자 387명을 대상으로 그 출신국적별로 자녀와의 사용언어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모국어(45.0%)'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일본(58.1%)과 중국 한족(54.2%), 베트남(53.4%) 출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한국어(35.1%)'의 경우는 캄보디아(60.0%)와 중국 조선족(59.0%)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98▐ 출신국적별 미취학 자녀와의 사용언어

| 구분 | 사례수 | 미취학 자녀와의 사용 언어(%) | | | | | |
|---|---|---|---|---|---|---|---|
| | | 한국어 | 모국어 | 한국어+모국어 | 한국어+모국어+제3외국어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387 | 35.1 | 4.9 | 45.0 | 8.8 | 5.4 | 0.8 |
| 중국조선족 | 39 | 59.0 | 2.6 | 35.9 | 2.6 | 0.0 | 0.0 |
| 중국한족 | 59 | 35.6 | 6.8 | 54.2 | 1.7 | 1.7 | 0.0 |
| 일본 | 43 | 27.9 | 14.0 | 58.1 | 0.0 | 0.0 | 0.0 |
| 베트남 | 131 | 38.9 | 0.8 | 53.4 | 4.6 | 0.8 | 1.5 |
| 필리핀 | 65 | 16.9 | 1.5 | 24.6 | 29.2 | 26.2 | 1.5 |
| 캄보디아 | 10 | 60.0 | 0.0 | 40.0 | 0.0 | 0.0 | 0.0 |
| 기타 | 40 | 30.0 | 15.0 | 32.5 | 17.5 | 5.0 | 0.0 |
| $x$ 2-검정 | $x$ 2=129.109, p-value=.000 | | | | | | |

### (2)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우려 및 기대

자녀가 있는 한국인 배우자(102명)를 대상으로 자녀가 한국어를 제대로 못할까봐 어느 정도 걱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9%로 걱정된다는 응답 45.1%('매우 걱정한다' 5.9% + '약간 걱정된다' 39.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3점 척도에서 평균 1.51점으로 나타났다.

▌표 Ⅳ - 99▐ 자녀의 한국어능력 우려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2 | 100.0 |
|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 56 | 54.9 |
| 약간 걱정된다 | 40 | 39.2 |
| 매우 걱정한다 | 6 | 5.9 |
| 3점 척도 평균 | 1.51점 | |

주 : 매우 걱정된다 1점, 약간 걱정된다 2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3점

한편, 자녀가 있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자녀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잘 하길 원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9.2%(91명)는 자녀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잘 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8%(10명)에 불과했다.

▌표 Ⅳ - 100▐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에 대한 자녀의 언어능력 기대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2 | 100.0 |
| 예(잘 하길 원한다) | 91 | 89.2 |
| 아니오(원하지 않는다) | 10 | 9.8 |
| 무응답 | 1 | 1.0 |

### 5)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

#### (1)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

미취학 자녀를 둔 외국인 배우자(387명)에게 그 미취학 자녀를 낮에 주로 돌보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돌본다고 한 응답비율이 5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보육시설(17.1%)', '유치원(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이 혼자 지낸다'는 응답도 1.8%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일부 자녀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일반가정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므로 이것에 대한 원인연구가 필요하며, 보육시설 확충으로 외국인 배우자들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출신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나, 배우자 또는 가족(58.4%)'이 돌본다는 응답은 캄보디아(90.0%) 출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한족(76.3%), 베트남(68.7%)출신이 뒤를 이었다. '보육시설(17.1%)'을 이용하는 경우는 일본(41.9%)과 필리핀(32.3%) 출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치원(16.3%)'을 이용하는 경우는 필리핀(27.7%) 출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01▐ 출신국적별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

| 구분 | 사례수 |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 | | | | | | | |
|---|---|---|---|---|---|---|---|---|---|
| | | 아이 혼자 지낸다 | 나, 배우자 또는 가족 | 개인 탁아모 | 보육 시설 | 유치원 | 사설 학원 | 기타 | 무 응답 |
| 합계 | 387 | 1.8 | 58.4 | 0.8 | 17.1 | 16.3 | 0.3 | 2.1 | 3.4 |
| 중국조선족 | 39 | 0.0 | 61.5 | 2.6 | 12.8 | 17.9 | 0.0 | 2.6 | 2.6 |
| 중국한족 | 59 | 3.4 | 76.3 | 0.0 | 3.4 | 15.3 | 0.0 | 1.7 | 0.0 |
| 일본 | 43 | 4.7 | 44.2 | 0.0 | 41.9 | 9.3 | 0.0 | 0.0 | 0.0 |
| 베트남 | 131 | 2.3 | 68.7 | 0.8 | 6.1 | 14.5 | 0.0 | 1.5 | 6.1 |
| 필리핀 | 65 | 0.0 | 27.7 | 1.5 | 32.3 | 27.7 | 1.5 | 3.1 | 6.2 |
| 캄보디아 | 10 | 0.0 | 90.0 | 0.0 | 0.0 | 0.0 | 0.0 | 10.0 | 0.0 |
| 기타 | 40 | 0.0 | 52.5 | 0.0 | 30.0 | 15.0 | 0.0 | 2.5 | 0.0 |
| $x$ 2-검정 | $x$ 2=102.329, p-value=.000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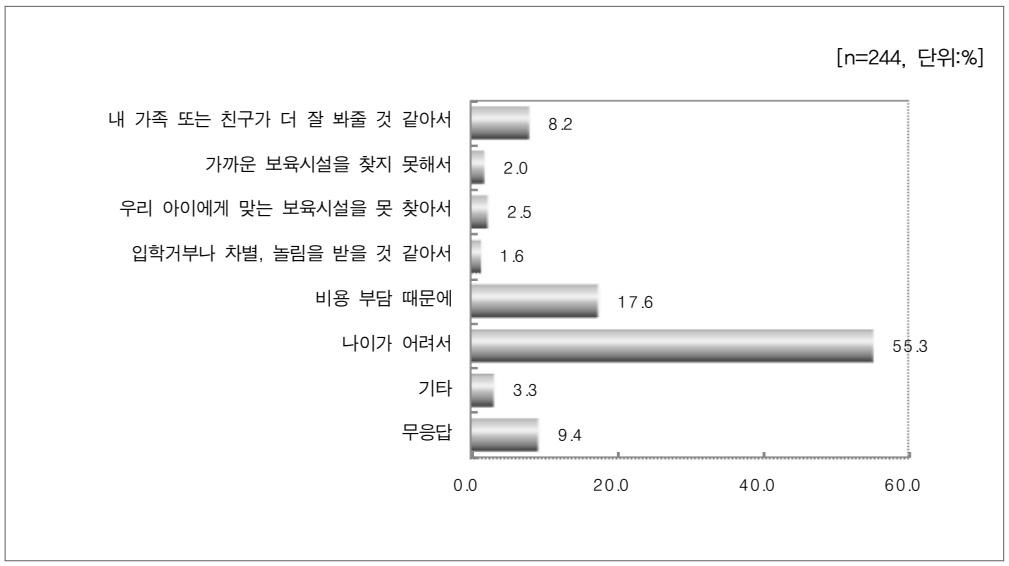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 지역(권역)별로도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나, 배우자 또는 가족(58.4%)'이 돌본다는 응답은 도심권에서 66.7%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시설(17.1%)'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동남권(3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16.3%)'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동북권(19.4%)과 서남권(17.0%)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권역)별로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보육시스템이 구축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표 Ⅳ - 102▐ 거주 지역(권역)별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

| 구분 | 사례수 | 미취학 자녀 보육형태(%) | | | | | | | |
|---|---|---|---|---|---|---|---|---|---|
| | | 아이 혼자 지낸다 | 나, 배우자 또는 가족 | 개인 탁아모 | 보육시설 | 유치원 | 사설 학원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387 | 1.8 | 58.4 | 0.8 | 17.1 | 16.3 | 0.3 | 2.1 | 3.4 |
| 도심권 | 27 | 0.0 | 66.7 | 0.0 | 14.8 | 11.1 | 0.0 | 3.7 | 3.7 |
| 동북권 | 144 | 2.8 | 59.7 | 0.7 | 13.9 | 19.4 | 0.0 | 0.7 | 2.8 |
| 서북권 | 46 | 2.2 | 60.9 | 2.2 | 15.2 | 13.0 | 2.2 | 2.2 | 2.2 |
| 서남권 | 135 | 0.7 | 56.3 | 0.7 | 16.3 | 17.0 | 0.0 | 3.7 | 5.2 |
| 동남권 | 35 | 2.9 | 51.4 | 0.0 | 37.1 | 8.6 | 0.0 | 0.0 | 0.0 |
| $x$ 2-검정 | $x$ 2=123.527, p-value=.010 | | | | | | | | |

(2) 보육시설 미이용 사유

미취학 자녀가 있는 외국인 배우자 387명 가운데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사설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244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 나이가 어려서'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비용부담 때문에(17.6%)', '내 가족 또는 친구가 더 잘 봐줄 것 같아서(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이 대체로 짧고 그 자녀의 연령대가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비록 현재는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지만 향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수요와 실제 이용률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비용부담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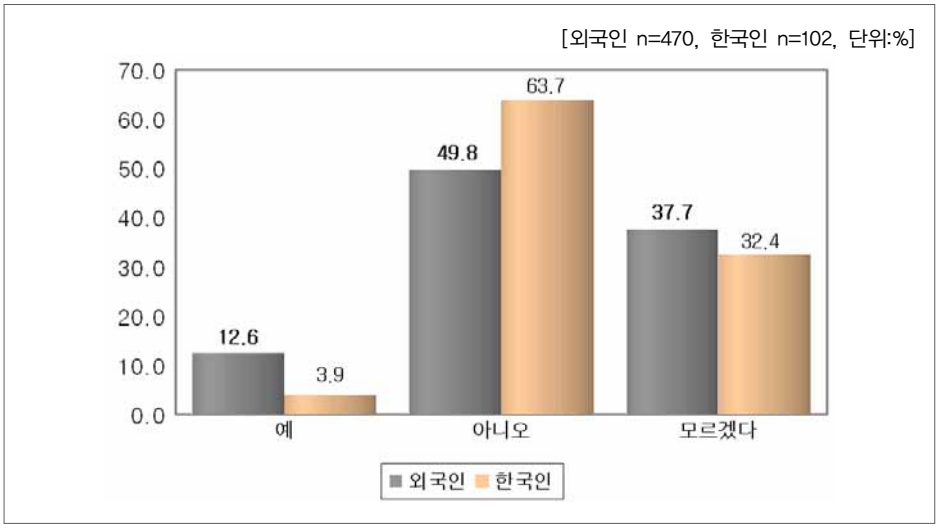



〈그림 Ⅳ - 17〉 보육시설 미사용 사유

### 6) 자녀의 따돌림 경험

자녀가 있는 외국인 배우자(470명)와 한국인 배우자(102명)를 대상으로 자녀가 학교나 학원, 또래집단 등에서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인지한 자녀의 집단 따돌림 경험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인지한 자녀의 따돌림 경험은 '없다(아니오)'는 응답이 49.8%인 반면, '있다(예)'라는 응답은 12.6%에 불과했

다. 그에 비해 한국인 배우자(102명)가 인지한 자녀의 따돌림 경험은 '없다(아니오)'는 응답이 63.7%로 나타난 반면, '있다(예)'라는 응답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가 인지하고 있는 자녀의 집단 따돌림 경험 비율이 한국인 배우자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Ⅳ - 18〉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

자녀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 배우자(59명)를 대상으로 따돌림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부모가 외국출신이어서'라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와 '특별한 이유 없이'라는 응답이 각각 20.3%로 높게 나왔다. 그밖에도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11.9%)', '외모가 달라서(10.2%)'라는 응답이 일부 있었다.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중국 조선족(50.0%)과 베트남(38.1%) 출신에서 '부모가 외국출신이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 출신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이'라는 응답에서도 38.1%로 높았다. 일본 출신(50.0%)은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 출신은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103▐ 출신국적별 집단 따돌림의 이유

| 구분 | 사례수 | 집단 따돌림의 이유(%) | | | | | | |
|---|---|---|---|---|---|---|---|---|
| | | 외모가 달라서 |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 의사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 부모가 외국출신 이어서 | 특별한 이유 없이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59 | 10.2 | 11.9 | 20.3 | 30.5 | 20.3 | 1.7 | 5.1 |
| 중국조선족 | 6 | 0.0 | 0.0 | 33.3 | 50.0 | 0.0 | 0.0 | 16.7 |
| 중국한족 | 7 | 14.3 | 14.3 | 14.3 | 14.3 | 14.3 | 0.0 | 28.6 |
| 일본 | 4 | 0.0 | 0.0 | 50.0 | 25.0 | 25.0 | 0.0 | 0.0 |
| 베트남 | 21 | 0.0 | 4.8 | 14.3 | 38.1 | 38.1 | 4.8 | 0.0 |
| 필리핀 | 15 | 13.3 | 33.3 | 13.3 | 26.7 | 13.3 | 0.0 | 0.0 |
| 기타 | 6 | 50.0 | 0.0 | 33.3 | 16.7 | 0.0 | 0.0 | 0.0 |
| $x$ 2-검정 | $x$ 2=46.811, p-value=.026 | | | | | | | |

### 7) 자녀양육 시 어려움

자녀가 있는 외국인 배우자(470명)와 한국인 배우자(102명)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시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먼저 어려움이 있다고 한 외국인 배우자의 응답은 77.2%로 역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 배우자(75.5%)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대다수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각각 13.8%, 22.5%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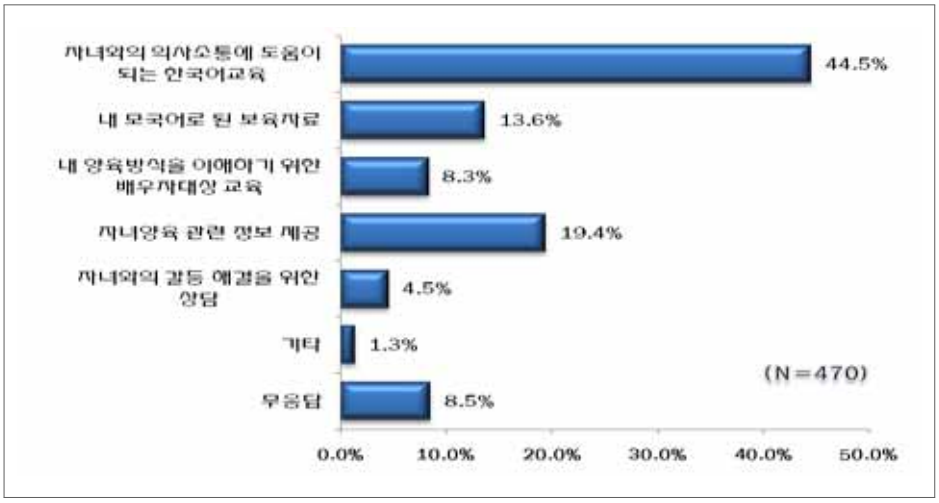
자녀양육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 배우자(363명)와 한국인 배우자(77명)에게 그 어려움의 내용을 복수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자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사교육비나 양육비가 부담된다(18.5%)', '배우자와 양육방식이 다르다(16.8%)', '자녀양육과 교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13.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사교육비나 양육비가 부담된다(41.6%)'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양육과 교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23.4%), '배우자와 양육방식이 다르다(15.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언어 문제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배우자와 같은 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체감의 정도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04▌ 자녀 양육 시 어려움(복수응답)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n=363) | | 한국인 배우자 (n=77)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자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 145 | 39.9 | 6 | 7.8 |
| 배우자와 양육방식이 다르다 | 61 | 16.8 | 12 | 15.6 |
| 자녀가 나를 부모로서 존중하지 않는다 | 3 | 0.8 | 0 | 0.0 |
| 자녀양육과 교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 49 | 13.5 | 18 | 23.4 |
| 사교육비나 양육비가 부담된다 | 67 | 18.5 | 32 | 41.6 |
| 자녀와 사고방식 및 가치관이 다르다 | 7 | 1.9 | 0 | 0.0 |
|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 | 10 | 2.8 | 1 | 1.3 |
| 자녀를 맡길 적합한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 5 | 1.4 | 3 | 3.9 |
|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 1 | 0.3 | 0 | 0.0 |
|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 | 3 | 0.8 | 0 | 0.0 |
| 기타 | 10 | 2.8 | 1 | 1.3 |
| 무응답 | 2 | 0.6 | 4 | 5.2 |

### 8) 자녀양육 시 필요한 지원

자녀가 있는 외국인 배우자 47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한국어교육'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 제공(19.4%)', '내 모국어로 된 보육자료(13.6%)', '내 양육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배우자 대상 교육(8.3%)', '자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들이 자녀양육 시 한국어교육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 외에, 자녀양육 관련 정보와 모국어로 된 자료, 한국인 배우자의 양육지원 역시 상당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 – 19〉 자녀양육 시 필요한 지원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한국어 교육(44.5%)'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은 캄보디아(53.3%)와 베트남(52.9%), 필리핀(52.9%) 출신으로 이는 현재의 한국어 실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 관련 정보 제공(19.4%)'을 가장 필요로 한 집단은 일본 출신(43.3%)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내 양육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배우자대상 교육'도 16.7%로 상당히 필요로 했다. '내 모국어로 된 보육자료'의 경우는 베트남(17.9%)과 중국 조선족(17.0%) 출신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105▐ 출신국적별 자녀양육 시 필요한 지원

| 구분 | 사례수 | 자녀양육 시 필요한 지원(%) | | | | | | |
|---|---|---|---|---|---|---|---|---|
| | |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한국어교육 | 내 모국어로 된 보육자료 | 내 양육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배우자대상 교육 | 자녀 양육 관련 정보 제공 | 자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470 | 44.5 | 13.6 | 8.3 | 19.4 | 4.5 | 1.3 | 8.5 |
| 중국조선족 | 47 | 31.9 | 17.0 | 6.4 | 23.4 | 4.3 | 2.1 | 14.9 |
| 중국한족 | 70 | 44.3 | 11.4 | 8.6 | 22.9 | 0.0 | 1.4 | 11.4 |
| 일본 | 60 | 21.7 | 6.7 | 16.7 | 43.3 | 6.7 | 1.7 | 3.3 |
| 베트남 | 140 | 52.9 | 17.9 | 9.3 | 10.0 | 2.1 | 0.0 | 7.9 |
| 필리핀 | 85 | 52.9 | 9.4 | 3.5 | 16.5 | 7.1 | 2.4 | 8.2 |
| 캄보디아 | 15 | 53.3 | 13.3 | 0.0 | 13.3 | 6.7 | 0.0 | 13.3 |
| 기타 | 53 | 43.4 | 17.0 | 7.5 | 15.1 | 9.4 | 1.9 | 5.7 |
| $x$ 2-검정 | $x$ 2=72.828, p-value=.000 | | | | | | | |

### 9) 향후 출산계획

#### (1) 향후 출산계획 여부

현재 자녀유무와 무관하게 향후 자녀 출산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 842명 중 367명(43.6%)이 향후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도 177명 중 76명(42.9%)이 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각각 46.1%(388명), 44.1%(78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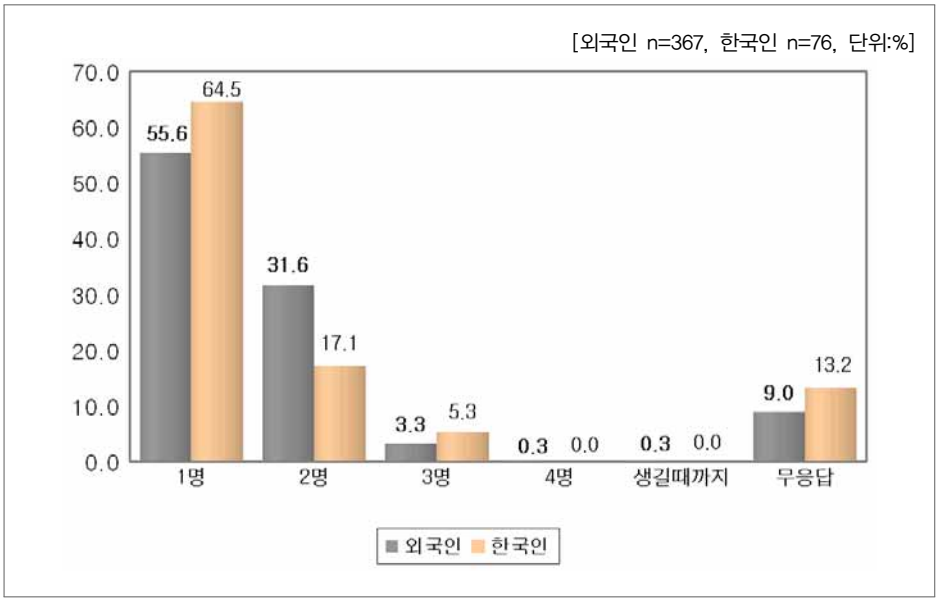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향후 자녀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중국 한족(55.3%)과 캄보디아(51.2%) 출신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63.9%)과 필리핀(62.2%), 일본(59.8%) 출신에게서 높았다.

▌표 Ⅳ - 106▐ 출신국적별 향후 자녀 출산계획

| 구분 | 사례수 | 향후 자녀 출산계획(%) | | |
|---|---|---|---|---|
| | | 있다 | 없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43.6 | 46.1 | 10.3 |
| 중국조선족 | 72 | 30.6 | 63.9 | 5.6 |
| 중국한족 | 190 | 55.3 | 28.9 | 15.8 |
| 일본 | 82 | 35.4 | 59.8 | 4.9 |
| 베트남 | 252 | 46.0 | 37.7 | 16.3 |
| 필리핀 | 119 | 32.8 | 62.2 | 5.0 |
| 캄보디아 | 41 | 51.2 | 48.8 | 0.0 |
| 기타 | 86 | 40.7 | 57.0 | 2.3 |
| $x$ 2-검정 | $x$ 2=78.298, p-value=.000 | | | |

#### (2) 향후 출산 자녀수

향후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 367명과 한국인 배우자 76명을 대상으로 향후 출산 자녀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55.6%)와 한국인 배우자(64.5%) 모두 1명 정도의 자녀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의 자녀에 대한 계획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31.6%,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17.1%로 나타났다.




〈그림 Ⅳ - 20〉 향후 출산 자녀수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평균 2명 미만의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향후 1명과 2명의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다는 응답 모두에서 각각 61.9%, 38.1%로 높게 나타났다. 3명 이상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는 중국 한족(5.7%)과 필리핀(5.1%) 출신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출신국적별 향후 출산 자녀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표 Ⅳ - 107▐ 출신국적별 향후 출산 자녀수

| 구분 | 사례수 | 향후 출산 자녀수(%) | | | | | | 평균 예정 자녀수 |
|---|---|---|---|---|---|---|---|---|
| | | 1명 | 2명 | 3명 | 4명 | 생길때까지 | 무응답 | |
| 합계 | 367 | 55.6 | 31.6 | 3.3 | 0.3 | 0.3 | 9.0 | 1.43 |
| 중국조선족 | 22 | 59.1 | 27.3 | 4.5 | 0.0 | 0.0 | 9.1 | 1.40 |
| 중국한족 | 105 | 56.2 | 27.6 | 5.7 | 0.0 | 0.0 | 10.5 | 1.44 |
| 일본 | 29 | 44.8 | 34.5 | 3.4 | 0.0 | 3.4 | 13.8 | 1.50 |
| 베트남 | 116 | 55.2 | 32.8 | 0.9 | 0.0 | 0.0 | 11.2 | 1.39 |
| 필리핀 | 39 | 59.0 | 33.3 | 5.1 | 0.0 | 0.0 | 2.6 | 1.45 |
| 캄보디아 | 21 | 61.9 | 38.1 | 0.0 | 0.0 | 0.0 | 0.0 | 1.38 |
| 기타 | 35 | 54.3 | 34.3 | 2.9 | 2.9 | 0.0 | 5.7 | 1.52 |
| $x$ 2-검정 | $x$ 2=34.162, p-value=.274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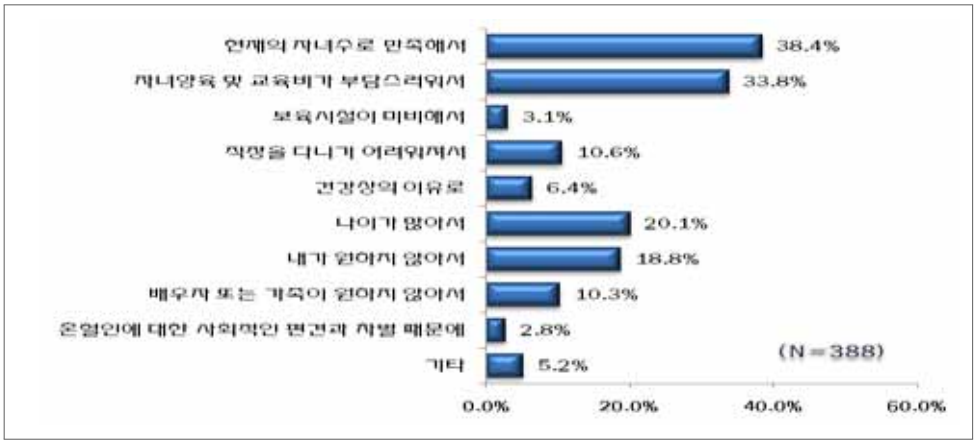
한편, 자녀가 있는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자녀수에 응답한 355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자녀수에 따른 향후 출산계획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는 향후 2명을 낳을 계획이라는 응답이 44.4%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1명을 낳을 계획이라는 응답은 현재 자녀가 1명인 경우 81.5%로 가장 많았고, 현재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71.4%로 나타났다. 평균 출산예정 자녀수를 살펴보면 평균 1.44명을 낳을 계획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자녀수가 적을수록 그 출산예정 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108▐ 자녀유무별 향후 출산 자녀수

| 구분 | | 사례수 | 향후 출산 자녀수(%) | | | | | | 평균 예정 자녀수 |
|---|---|---|---|---|---|---|---|---|---|
| | | | 1명 | 2명 | 3명 | 4명 | 생길때까지 | 무응답 | |
| 합계 | | 355 | 54.9 | 32.1 | 3.4 | 0.3 | 0.3 | 9.0 | 1.44 |
| 무자녀 | | 216 | 38.4 | 44.4 | 4.6 | 0.5 | 0.5 | 11.6 | 1.63 |
| 유자녀 | 1명 | 124 | 81.5 | 12.9 | 1.6 | 0.0 | 0.0 | 4.0 | 1.17 |
| | 2명 | 14 | 71.4 | 14.3 | 0.0 | 0.0 | 0.0 | 14.3 | 1.17 |
| | 3명 이상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1.00 |
| $x$ 2-검정 | | $x$ 2=63.281, p-value=.000 | | | | | | | |

### (3)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향후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388명)는 '현재의 자녀수로 만족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33.8%)', '나이가 많아서(20.1%)', '내가 원하지 않아서(1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배우자(78명)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42.6%)'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현재의 자녀수로 만족해서(30.7%)', '나이가 많아서(24.8%)', '가정형편이 어려워서(19.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 - 21〉 향후 출산 계획 없는 이유

향후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본 출신은 '현재의 자녀수로 만족해서(38.4%)'라는 응답과 '나이가 많아서(20.1%)'라는 응답에서 각각 49.0%, 53.1%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한족 출신(41.8%)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33.8%)'라는 응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심층면접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자녀양육비나 현재의 나이가 출산계획이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남편이 기냥 하나만 낳자. 힘들고 나이도 있으니까... 애기도 키우기 힘들고 애기 혼자 많이 외로우니까... 기냥 그래도 나중에 애기 하나 더 낳으면 좋겠어요(결혼이민여성 P).'

▌표 Ⅳ - 109▐ 출신국적별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 구분 | 사례수 | 출산계획 없는 이유(%) | | | | | | | | | |
|---|---|---|---|---|---|---|---|---|---|---|---|
| | | 현재의 자녀수로 만족해서 |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 보육 시설이 미비해서 | 직장을 다니기 어려워져서 | 건강상의 이유로 | 나이가 많아서 | 내가 원하지 않아서 | 배우자 또는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때문에 | 기타 |
| 합계 | 388 | 38.4 | 33.8 | 3.1 | 10.6 | 6.4 | 20.1 | 18.8 | 10.3 | 2.8 | 5.2 |
| 중국조선족 | 46 | 43.5 | 34.8 | 2.2 | 8.7 | 2.2 | 15.2 | 17.4 | 8.7 | 2.2 | 4.3 |
| 중국한족 | 55 | 29.1 | 41.8 | 5.5 | 3.6 | 3.6 | 18.2 | 29.1 | 7.3 | 5.5 | 5.5 |
| 일본 | 49 | 49.0 | 32.7 | 0.0 | 4.1 | 12.2 | 53.1 | 4.1 | 12.2 | 0.0 | 6.1 |
| 베트남 | 95 | 33.7 | 32.6 | 3.2 | 12.6 | 7.4 | 7.4 | 18.9 | 7.4 | 4.2 | 5.3 |
| 필리핀 | 74 | 47.3 | 36.5 | 5.4 | 16.2 | 5.4 | 12.2 | 10.8 | 6.8 | 2.7 | 8.1 |
| 캄보디아 | 20 | 25.0 | 10.0 | 0.0 | 20.0 | 5.0 | 20.0 | 45.0 | 40.0 | 0.0 | 0.0 |
| 기타 | 49 | 34.7 | 32.7 | 2.0 | 10.2 | 8.2 | 30.6 | 24.5 | 12.2 | 2.0 | 2.0 |

### 10)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1)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외국인 배우자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계상의 어려움 유무와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유무를 외국인 배우자(842명)와 한국인 배우자(177명) 모두에게 물어보았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 응답은 전체의 67.1%(565명)로 어려움이 없다고 한 응답 26.4%(222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의 응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응답자의 62.1%(110명)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한 한국인 배우자의 응답은 35.0%(62명)이었다.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은 필리핀 출신이 77.3%로 가장 높았으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41.5%)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110 ▌ 출신국적별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유무

| 구분 | 사례수 |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유무(%) | | |
|---|---|---|---|---|
| | | 없다 | 있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26.4 | 67.1 | 6.5 |
| 중국조선족 | 72 | 38.9 | 55.6 | 5.6 |
| 중국한족 | 190 | 21.1 | 69.5 | 9.5 |
| 일본 | 82 | 31.7 | 67.1 | 1.2 |
| 베트남 | 252 | 25.8 | 67.1 | 7.1 |
| 필리핀 | 119 | 16.8 | 77.3 | 5.9 |
| 캄보디아 | 41 | 41.5 | 56.1 | 2.4 |
| 기타 | 86 | 30.2 | 62.8 | 7.0 |
| $x$ 2-검정 | $x$ 2=27.272, p-value=.007 | | | |

#### (2) 어려움의 원인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 배우자 565명을 대상으로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6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습관과 방식의 차이(33.5%)',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23.9%)', '나에 대한 인격적 무시와 비난(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의사소통의 어려움(69.7%)'은 중국한족 출신에서 8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습관과 방식의 차이(33.5%)'에서는 일본 출신이 47.3%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111▐ 출신국적별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의 원인(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의 원인(%) | | | | | | | |
|---|---|---|---|---|---|---|---|---|---|
| | | 나에 대한 인격적 무시와 비난 | 의사 소통의 어려움 | 사고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 생활 습관과 방식의 차이 |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 배우자 부모님의 부양과 수발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565 | 9.6 | 69.7 | 23.9 | 33.5 | 6.4 | 4.4 | 4.2 | 48.3 |
| 중국조선족 | 40 | 22.5 | 45.0 | 37.5 | 25.0 | 10.0 | 0.0 | 5.0 | 55.0 |
| 중국한족 | 132 | 6.1 | 84.8 | 18.9 | 32.6 | 5.3 | 1.5 | 1.5 | 49.2 |
| 일본 | 55 | 1.8 | 45.5 | 41.8 | 47.3 | 12.7 | 5.5 | 5.5 | 40.0 |
| 베트남 | 169 | 8.9 | 71.0 | 16.6 | 29.0 | 4.7 | 4.7 | 7.1 | 58.0 |
| 필리핀 | 92 | 13.0 | 73.9 | 29.3 | 38.0 | 8.7 | 4.3 | 1.1 | 31.5 |
| 캄보디아 | 23 | 17.4 | 78.3 | 13.0 | 30.4 | 0.0 | 13.0 | 4.3 | 43.5 |
| 기타 | 54 | 9.3 | 61.1 | 25.9 | 35.2 | 3.7 | 9.3 | 5.6 | 50.0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로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1년 미만(82.4%)의 경우는 '의사소통의 어려움(69.7%)'을 많이 꼽고 있는 반면, '생활습관과 방식의 차이(33.5%)'와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23.9%)'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줄어드는 반면, '생활습관과 방식의 차이'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초기에 일어나는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한국어를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다가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언어 문제가 해결되면서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의 차이 등과 같은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표 Ⅳ - 112▐ 결혼기간별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의 원인(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의 원인(%) | | | | | | | |
|---|---|---|---|---|---|---|---|---|---|
| | | 나에 대한 인격적 무시와 비난 | 의사 소통의 어려움 | 사고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 생활 습관과 방식의 차이 |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 배우자 부모님의 부양과 수발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565 | 9.6 | 69.7 | 23.9 | 33.5 | 6.4 | 4.4 | 4.2 | 48.3 |
| 1년 미만 | 136 | 5.1 | 82.4 | 16.2 | 31.6 | 0.0 | 1.5 | 4.4 | 58.8 |
| 1~3년 미만 | 228 | 12.3 | 72.8 | 22.4 | 35.1 | 5.3 | 3.1 | 2.6 | 46.5 |
| 3~5년 미만 | 77 | 13.0 | 59.7 | 31.2 | 26.0 | 9.1 | 7.8 | 6.5 | 46.8 |
| 5년 이상 | 118 | 7.6 | 55.1 | 31.4 | 37.3 | 14.4 | 8.5 | 5.9 | 39.8 |
| 무응답 | 6 | 0.0 | 83.3 | 16.7 | 33.3 | 0.0 | 0.0 | 0.0 | 66.7 |

### 11) 관계가 어려운 가족구성원

외국인 배우자와 관계가 어려운 가족구성원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없다'는 응답이 각각 59.4%(500명), 56.5%(100명)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있다'는 응답은 각각 35.5%(299명), 40.7%(72명)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가장 관계가 어렵다고 느낀 가족구성원으로는 '시부모(11.8%, 20.3%)'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8.3%)'라는 응답이,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나의 형제·자매(10.2%)'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결혼기간별로는 1년 미만에서 관계가 어려운 가족구성원이 없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3년 미만에서는 관계가 어려운 구성원으로 '시부모(배우자의 부모)'를 꼽은 응답이 15.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는 중국 한족 출신(72.6%)의 경우 관계가 어려운 가족구성원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17.6%)과 캄보디아(17.1%) 출신은 관계가 어려운 가족구성원으로 시부모(배우자의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관계가 어려운 가족구성원으로 '배우자'를 꼽은 경우는 일본(14.6%)과 중국 조선족(11.1%) 출신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113▐ 출신국적별 관계가 어려운 가족구성원

| 구분 | 사례수 | 관계가 어려운 가족구성원(%) | | | | | | | |
|---|---|---|---|---|---|---|---|---|---|
| | | 없다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배우자의 친척 | 기타 | 무응답 |
| 합계 | 842 | 59.4 | 8.3 | 11.8 | 2.7 | 1.4 | 0.1 | 11.2 | 5.1 |
| 중국조선족 | 72 | 54.2 | 11.1 | 13.9 | 4.2 | 0.0 | 0.0 | 12.5 | 4.2 |
| 중국한족 | 190 | 72.6 | 5.8 | 5.3 | 1.6 | 0.0 | 0.5 | 5.8 | 8.4 |
| 일본 | 82 | 64.6 | 14.6 | 4.9 | 4.9 | 0.0 | 0.0 | 11.0 | 0.0 |
| 베트남 | 252 | 54.4 | 8.7 | 15.1 | 2.4 | 1.2 | 0.0 | 13.5 | 4.8 |
| 필리핀 | 119 | 47.1 | 8.4 | 17.6 | 0.8 | 3.4 | 0.0 | 16.0 | 6.7 |
| 캄보디아 | 41 | 53.7 | 2.4 | 17.1 | 12.2 | 4.9 | 0.0 | 7.3 | 2.4 |
| 기타 | 86 | 64.0 | 7.0 | 10.5 | 1.2 | 3.5 | 0.0 | 10.5 | 3.5 |
| $x$ 2-검정 | $x$ 2=92.034, p-value=.000 | | | | | | | | |

# 제4절 모국가족과의 관계

## 1. 한국에 살고 있는 모국가족

외국인 배우자 842명을 대상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국출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있다'는 응답이 절반이상(53.6%)으로 외국인 배우자 2명 중 1명은 한국에 모국가족이나 친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로 한국 내 모국가족이나 친구의 거주 유무에 대해 분석해 보면, '있다(53.6%)'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 출신이 73.6%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 내 모국가족이나 친구가 '없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이 56.1%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114▐ 출신국적별 한국에 살고 있는 모국가족 유무

| 구분 | 사례수 | 한국에 살고 있는 모국가족 유무(%) | | |
|---|---|---|---|---|
| | | 있다 | 없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53.6 | 44.2 | 2.3 |
| 중국조선족 | 72 | 73.6 | 25.0 | 1.4 |
| 중국한족 | 190 | 47.9 | 48.4 | 3.7 |
| 일본 | 82 | 67.1 | 31.7 | 1.2 |
| 베트남 | 252 | 52.0 | 46.4 | 1.6 |
| 필리핀 | 119 | 46.2 | 50.4 | 3.4 |
| 캄보디아 | 41 | 43.9 | 56.1 | 0.0 |
| 기타 | 86 | 55.8 | 41.9 | 2.3 |
| $x$ 2-검정 | $x$ 2=28.282, p-value=.005 | | | |

한국에 거주하는 모국가족의 현황을 살펴보면, '모국출신의 친구나 이웃(61.4%)'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친척(23.9%)', '형제·자매(21.1%)', '부모(9.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모국출신의 친구나 이웃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일본(87.3%)과 캄보디아(83.3%) 출신에서 '친구 또는 이웃'이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중국 조선족 출신은 '형제·자매(49.1%)'가 살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거주기간별로는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서 모국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친구 또는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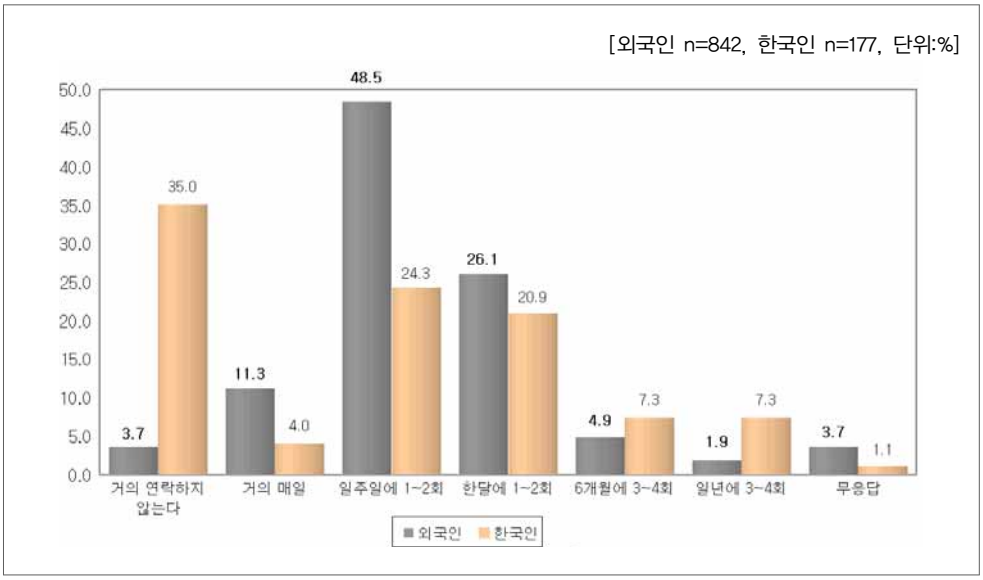
(66.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형제, 자매(25.6%)', '친척(17.9%)' 순으로 많이 살고 있었다.

▌표 Ⅳ - 115▐ 출신국적별 한국에 살고 있는 모국가족 현황(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한국에 살고 있는 모국가족 현황(%) | | | | | |
|---|---|---|---|---|---|---|---|
| | | 부모 | 형제, 자매 | 전 배우자와의 자녀 | 친척 | 친구 또는 이웃 | 기타 |
| 합계 | 451 | 9.3 | 21.1 | 0.4 | 23.9 | 61.4 | 2.2 |
| 중국조선족 | 53 | 37.7 | 49.1 | 1.9 | 39.6 | 37.7 | 0.0 |
| 중국한족 | 91 | 13.2 | 7.7 | 0.0 | 16.5 | 68.1 | 4.4 |
| 일본 | 55 | 1.8 | 7.3 | 0.0 | 1.8 | 87.3 | 1.8 |
| 베트남 | 131 | 3.1 | 18.3 | 0.0 | 37.4 | 57.3 | 0.8 |
| 필리핀 | 55 | 1.8 | 23.6 | 0.0 | 29.1 | 52.7 | 1.8 |
| 캄보디아 | 18 | 11.1 | 16.7 | 0.0 | 5.6 | 83.3 | 0.0 |
| 기타 | 48 | 4.2 | 37.5 | 2.1 | 10.4 | 58.3 | 6.3 |

## 2.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

다음은 모국에 있는 가족과의 교류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에게 얼마나 자주 모국가족과 전화나 편지 혹은 E-Mail 교환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배우자(842명)의 경우는 '일주일에 1~2회' 연락을 한다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한 달에 1~2회(26.1%)', '거의 매일(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는 응답 3.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가족과 연락하는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0%로 가장 높았고, 연락을 하는 경우도 '일주일에 1~2회' 한다는 응답이 24.3%로 외국인 배우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한, '6개월에 3~4회'이나 '일 년에 3~4번' 연락한다는 응답도 14.6%나 되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가족간의 교류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Ⅳ - 22〉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출신국적별 모국가족 연락빈도는 중국 한족 출신의 경우 '일주일에 1~2회(48.5%)' 연락한다는 응답이 71.1%로 타 국적출신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일본(37.8%)과 캄보디아(36.6%) 출신은 '한 달에 1~2회(26.1%)' 정도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별로는 1년 미만인 경우에서 '일주일에 1~2회' 정도 한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높았으며, '한 달에 1~2회' 정도 한다는 응답은 5년 이상에서 37.2%로 높게 나타나 결혼기간이 길수록 연락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Ⅳ - 116▐ 출신국적별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

| 구분 | 사례수 |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 | | | | | | |
|---|---|---|---|---|---|---|---|---|
| | | 거의 연락 하지 않는다 | 거의 매일 | 일주일에 1~2회 | 한달에 1~2회 | 6개월에 3~4회 | 일년에 3~4회 | 무응답 |
| 합계 | 842 | 3.7 | 11.3 | 48.5 | 26.1 | 4.9 | 1.9 | 3.7 |
| 중국조선족 | 72 | 6.9 | 20.8 | 34.7 | 26.4 | 5.6 | 1.4 | 4.2 |
| 중국한족 | 190 | 0.5 | 11.6 | 71.1 | 11.1 | 1.6 | 0.0 | 4.2 |
| 일본 | 82 | 7.3 | 2.4 | 34.1 | 37.8 | 9.8 | 7.3 | 1.2 |
| 베트남 | 252 | 2.8 | 10.7 | 52.8 | 25.4 | 4.4 | 0.8 | 3.2 |
| 필리핀 | 119 | 4.2 | 10.1 | 36.1 | 34.5 | 6.7 | 3.4 | 5.0 |
| 캄보디아 | 41 | 4.9 | 17.1 | 31.7 | 36.6 | 4.9 | 2.4 | 2.4 |
| 기타 | 86 | 5.8 | 11.6 | 36.0 | 33.7 | 5.8 | 2.3 | 4.7 |
| $x$ 2-검정 | $x$ 2=120.355, p-value=.000 | | | | | | | |

▌표 Ⅳ - 117▐ 결혼기간별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

| 구분 | 사례수 | 모국가족과의 연락빈도(%) | | | | | | |
|---|---|---|---|---|---|---|---|---|
| | | 거의 연락 하지 않는다 | 거의 매일 | 일주일에 1~2회 | 한달에 1~2회 | 6개월에 3~4회 | 일년에 3~4회 | 무응답 |
| 합계 | 842 | 3.7 | 11.3 | 48.5 | 26.1 | 4.9 | 1.9 | 3.7 |
| 1년 미만 | 190 | 1.6 | 12.1 | 66.3 | 14.7 | 0.5 | 0.5 | 4.2 |
| 1~3년 미만 | 343 | 3.2 | 15.2 | 50.7 | 22.4 | 3.8 | 1.2 | 3.5 |
| 3~5년 미만 | 121 | 4.1 | 9.1 | 39.7 | 35.5 | 8.3 | 1.7 | 1.7 |
| 5년 이상 | 180 | 6.7 | 4.4 | 32.8 | 37.2 | 9.4 | 5.0 | 4.4 |
| 무응답 | 8 | 0.0 | 12.5 | 12.5 | 62.5 | 0.0 | 0.0 | 12.5 |
| $x$ 2-검정 | $x$ 2=108.615, p-value=.000 | | | | | | | |

## 3. 모국가족 방문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결혼 후 현재까지 모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거나, 혹은 모국가족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60.5%가 결혼 후 모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출신이 9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조선족(68.1%), 필리핀(63.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 후 모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도 35.7%로 나타났는데, 특히 캄보디아 출신에서 이러한 응답이 70.7%로 타 국적출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18▐ 출신국적별 모국가족 방문 여부

| 구분 | 사례수 | 모국가족 방문 여부(%) | | |
|---|---|---|---|---|
| | | 있다 | 없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60.5 | 35.7 | 3.8 |
| 중국조선족 | 72 | 68.1 | 26.4 | 5.6 |
| 중국한족 | 190 | 57.4 | 37.4 | 5.3 |
| 일본 | 82 | 91.5 | 8.5 | 0.0 |
| 베트남 | 252 | 51.6 | 44.8 | 3.6 |
| 필리핀 | 119 | 63.9 | 31.9 | 4.2 |
| 캄보디아 | 41 | 29.3 | 70.7 | 0.0 |
| 기타 | 86 | 67.4 | 27.9 | 4.7 |
| $x$ 2-검정 | $x$ 2=72.123, p-value=.000 | | | |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가족 방문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모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한 경우는 51.4%인 비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가족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응답은 24.6%로 외국인 배우자가 모국가족을 방문한 경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빈도를 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후 모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한 횟수는 평균 2.46회인데 비해 모국가족의 한국방문 빈도는 평균 2.05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모국가족 방문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가 모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51.4%)한 경우는 역시 일본 출신이 87.8%(평균 5.06회)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모국가족이 한국을 방문(24.6%)한 경우에서도 47.6%(평균 4.05회)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집단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으로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는 모국가족을 방문한 비율이 26.8%(평균 1.09회)로 가장 낮았으며, 베트남 출신의 경우는 모국가족이 한국을 방문한 비율이 11.5%(평균 1.11회)로 낮게 나타났다. 모국방문은 경제적인 문제와 일견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Ⅳ - 119▌ 출신국적별 모국가족 방문현황

| 구분 | 사례수 | 모국가족 방문현황 | | | |
|---|---|---|---|---|---|
| | | 내가 모국의 가족을 방문함(%) | 모국가족을 방문한 횟수(회) | 모국가족이 한국의 가족을 방문함(%) | 모국가족이 방문한 횟수(회) |
| 합계 | 842 | 51.4 | 2.46 | 24.6 | 2.05 |
| 중국조선족 | 72 | 52.8 | 2.03 | 34.7 | 1.32 |
| 중국한족 | 190 | 43.2 | 1.74 | 26.3 | 1.43 |
| 일본 | 82 | 87.8 | 5.06 | 47.6 | 4.05 |
| 베트남 | 252 | 46.4 | 1.62 | 11.5 | 1.11 |
| 필리핀 | 119 | 57.1 | 2.02 | 18.5 | 1.64 |
| 캄보디아 | 41 | 26.8 | 1.09 | 12.2 | 1.00 |
| 기타 | 86 | 52.3 | 3.07 | 43.0 | 2.31 |
| $x$ 2-검정, F-검정 | | $x$ 2=62.730, p-value=.000 | F=17.273, p-value=.000 | $x$ 2=72.439, p-value=.000 | F=3.677, p-value=.002 |

## 4. 모국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 1) 모국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외국인 배우자가 모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45.3%(381명)는 모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7.0%(396명)는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지원한 적이 있다(45.2%)는 응답의 경우 필리핀 출신이 6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베트남(59.1%), 캄보디아(56.1%) 순으로 높았다. 반면, 지원한 적이 없다(47.0%)는 응답의 경우는 일본 출신이 93.9%로 타 국적출신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120▐ 출신국적별 모국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 구분 | 사례수 | 모국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 | |
|---|---|---|---|---|
| | | 있다 | 없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45.3 | 47.0 | 7.7 |
| 중국조선족 | 72 | 37.5 | 56.9 | 5.6 |
| 중국한족 | 190 | 30.0 | 62.6 | 7.4 |
| 일본 | 82 | 3.7 | 93.9 | 2.4 |
| 베트남 | 252 | 59.1 | 32.5 | 8.3 |
| 필리핀 | 119 | 68.9 | 20.2 | 10.9 |
| 캄보디아 | 41 | 56.1 | 39.0 | 4.9 |
| 기타 | 86 | 46.5 | 43.0 | 10.5 |
| $x$ 2-검정 | $x$ 2=155.017, p-value=.000 | | | |

한편, 모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 381명(45.3%)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경제적 지원을 하는지 그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일 년에 3~4회' 정도가 4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한 달에 1~2회(26.8%)', '6개월에 3~4회(18.4%)', '일 년에 1회(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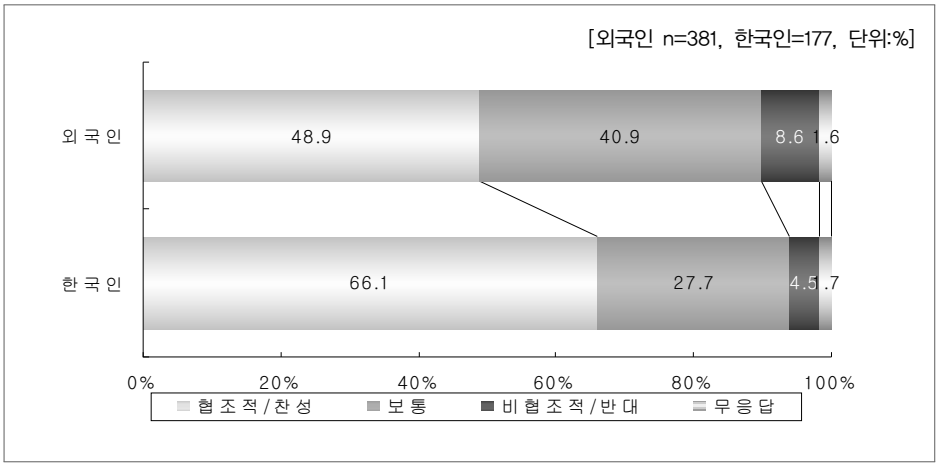
이를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일 년에 3~4회(47.0%)' 정도 한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에게서 6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 달에 1~2회(26.8%)' 정도 한다는 응답은 필리핀 출신에게서 40.2%로 타 국적출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121▐ 출신국적별 모국가족 경제적 지원 빈도

| 구분 | 사례수 | 모국가족 경제적 지원 여부(%) | | | |
|---|---|---|---|---|---|
| | | 한 달에 1~2회 | 6개월에 3~4회 | 일 년에 3~4회 | 일 년에 1회 |
| 합계 | 381 | 26.8 | 18.4 | 47.0 | 7.9 |
| 중국조선족 | 27 | 29.6 | 22.2 | 44.4 | 3.7 |
| 중국한족 | 57 | 24.6 | 14.0 | 52.6 | 8.8 |
| 일본 | 3 | 0.0 | 33.3 | 66.7 | 0.0 |
| 베트남 | 149 | 16.1 | 20.1 | 51.7 | 12.1 |
| 필리핀 | 82 | 40.2 | 15.9 | 41.5 | 2.4 |
| 캄보디아 | 23 | 21.7 | 26.1 | 43.5 | 8.7 |
| 기타 | 40 | 45.0 | 15.0 | 35.0 | 5.0 |
| $x$ 2-검정 | $x$ 2=193.293, p-value=.000 | | | | |

## 5. 모국가족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모국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381명)를 대상으로 모국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태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협조적이라는 응답은 48.9%인 반면, 비협조적이라는 응답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177명)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6.1%로 나타나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배우자의 협조적이라는 응답이 48.9%인 반면, 한국인 배우자의 찬성한다는 응답은 66.1%로 나타난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모국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한국인 배우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체감하는 정도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협조나 지지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국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의 협조(찬성) 정도를 점수(5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응답한 협조 정도는 평균 3.58점이었고, 한국인 배우자가 응답한 찬성 정도는 평균 3.87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23〉 모국가족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인 배우자의 협조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일본 출신으로 5점 척도에서 평균 4.00점으로 나타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국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협조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의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의 협조 정도가 각각 3.46점, 3.50점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 배우자의 협조 정도를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표 Ⅳ - 122 ▌ 출신국적별 모국가족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외국인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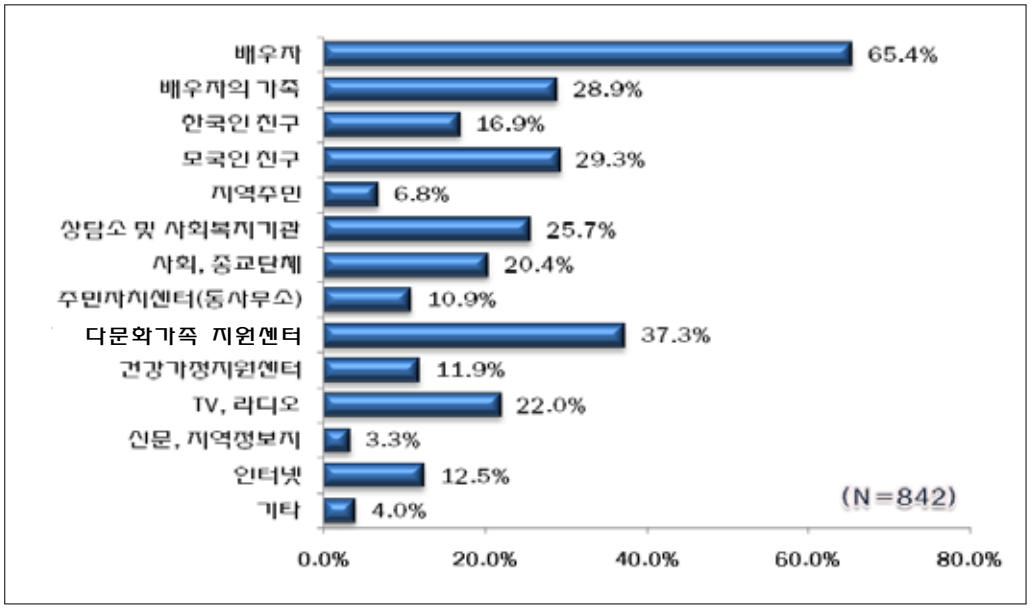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모국가족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협조적 | | | 보통 | 비협조적 | | | 무응답 | |
| | | 매우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381 | 19.2 | 29.7 | 48.9 | 40.9 | 6.8 | 1.8 | 8.6 | 1.6 | 3.58 |
| 중국조선족 | 27 | 29.6 | 25.9 | 55.5 | 33.3 | 7.4 | 0.0 | 7.4 | 3.7 | 3.81 |
| 중국한족 | 57 | 33.3 | 35.1 | 68.4 | 22.8 | 3.5 | 3.5 | 7.0 | 1.8 | 3.93 |
| 일본 | 3 | 0.0 | 10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4.00 |
| 베트남 | 149 | 14.1 | 29.5 | 43.6 | 49.0 | 5.4 | 1.3 | 6.7 | 0.7 | 3.50 |
| 필리핀 | 82 | 17.1 | 20.7 | 37.8 | 51.2 | 7.3 | 1.2 | 8.5 | 2.4 | 3.46 |
| 캄보디아 | 23 | 30.4 | 30.4 | 60.8 | 26.1 | 8.7 | 4.3 | 13.0 | 0.0 | 3.74 |
| 기타 | 40 | 10.0 | 37.5 | 47.5 | 32.5 | 15.0 | 2.5 | 17.5 | 2.5 | 3.38 |
| $x$ 2-검정 | $x$ 2=45.803, p-value=.032 | | | | | | | | | |

주 : 매우 비협조적이다 1점, 대체로 비협조적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협조적이다 4점, 매우 협조적이다 5점

## 제5절 한국문화적응 및 사회통합

### 1.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

외국인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람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경우가 8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관이나 단체(74.8%), 대중매체(2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는 '배우자(65.4%)'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모국인 친구(29.3%)', '배우자의 가족(28.9%)', '한국인 친구(16.9%)'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주민(6.8%)'이라는 응답은 일부에 불과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사회적 지지와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37.3%로 가장 높았으며, '상담소 및 사회복지기관(25.7%)'과 '사회, 종교단체(20.4%)'도 상당수 있었다. '주민자치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0.9%와 11.9%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가 결혼이민자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도 보여진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대중매체로는 'TV, 라디오'가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인터넷(12.5%)'과 '신문, 지역정보지(3.3%)'의 도움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Ⅳ - 24〉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복수응답)

출신국적별로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 유형에 대해 분석해 보면, 일본 출신은 배우자(76.8%)나 모국 친구(61.0%), 배우자의 가족(47.6%) 등과 같이 주변 사람을 통해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는다고 한 응답이 92.7%로 가장 높았다. 캄보디아 출신은 상대적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92.7%)고 한 응답이 높았는데, '상담소 및 사회복지기관(61.0%)'과 '주민자치센터(17.1%)', '건강가정지원센터(17.1%)' 등이 그것이었다. 필리핀 출신은 대중매체에서 도움을 받는다(42.9%)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TV, 라디오(31.1%)'와 '인터넷(26.1%)'에서 도움을 얻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일본 출신은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국 한족 출신의 경우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한국생활 적응매체가 대부분 배우자나 모국친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이나 복지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추진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정보 접근성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Ⅳ - 123▐ 출신국적별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 | | | |
|---|---|---|---|---|---|
| | | 사람 | 기관/단체 | 대중매체 | 기타 |
| 합계 | 842 | 85.3 | 74.8 | 29.1 | 4.0 |
| 중국조선족 | 72 | 79.2 | 63.9 | 33.3 | 4.2 |
| 중국한족 | 190 | 80.5 | 67.9 | 21.6 | 4.7 |
| 일본 | 82 | 92.7 | 89.0 | 42.7 | 3.7 |
| 베트남 | 252 | 88.1 | 71.0 | 20.2 | 3.6 |
| 필리핀 | 119 | 87.4 | 84.0 | 42.9 | 4.2 |
| 캄보디아 | 41 | 82.9 | 92.7 | 24.4 | 0.0 |
| 기타 | 86 | 83.7 | 75.6 | 38.4 | 5.8 |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 지역(권역)별[27]로 분석해 보면, 주변 사람을 통해 도움을

27) 서울특별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분류한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관련 각종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3개 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8개 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3개 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7개 구

받는 경우는 도심권에서 89.6%로 가장 높았고,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는다는 경우는 동북권에서 86.4%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중매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동남권에서 38.4%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남권과 서북권의 경우는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 따른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보제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Ⅳ - 124▐ 거주 지역(권역)별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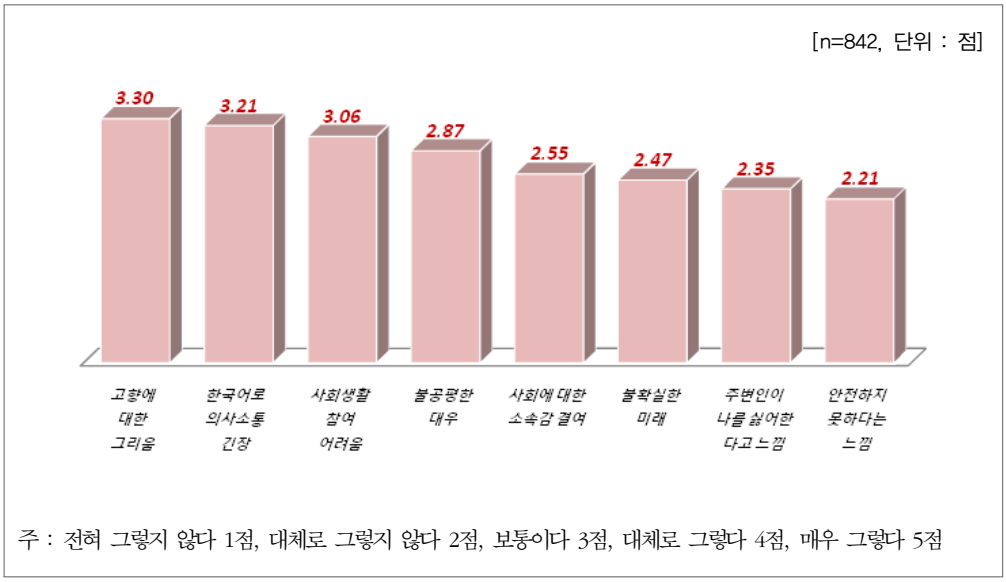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 | | | |
|---|---|---|---|---|---|
| | | 사람 | 기관/단체 | 대중매체 | 기타 |
| 합계 | 842 | 85.3 | 74.8 | 29.1 | 4.0 |
| 도심권 | 48 | 89.6 | 79.2 | 31.3 | 6.3 |
| 동북권 | 295 | 85.4 | 86.4 | 31.2 | 3.1 |
| 서북권 | 89 | 84.3 | 68.5 | 18.0 | 4.5 |
| 서남권 | 320 | 84.4 | 68.1 | 26.6 | 4.7 |
| 동남권 | 86 | 86.0 | 64.0 | 38.4 | 3.5 |
| 무응답 | 4 | 100.0 | 75.0 | 100.0 | 0.0 |

## 2. 문화적응 스트레스

### 1)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5점 척도에서 2.75점으로 중간보다 낮게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가 인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항목별 평균점수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3.30점, '불공평한 대우' 2.87점, '의사소통 시 긴장감' 3.21점,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 3.06점,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 2.35점, '안전하지 못한 느낌' 2.21점, '미래에 대한 불안감' 2.47점, '사회적 소속감 결여' 2.55점으로 나타났다.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구




〈그림 Ⅳ - 25〉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하위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항목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으로 중간 점수인 3점을 넘는 3.30점으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들이 모국과 모국가족을 그리워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높은 것은 '의사소통 시 긴장감("나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항목이었는데, 외국인 배우자의 현재 한국어 실력이 낮고 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낯선 사회적·문화적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느끼는 긴장감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나는 한국에서의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다")'의 경우도 중간이상의 점수로 외국인 배우자들이 가정 밖에서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공평한 대우("나는 한국 사람들보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를 느낀다는 항목과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나는 때때로 이 곳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느낀다")'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2.87점과 2.3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와는 달리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고 가족을 구성하면서 평생의 터전으로 한국을 인식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차별감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결국 이 같은 이유로 '안전하지 못한 느낌("나는 이 곳에서 안전하지 모하다고 느낀다")'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나는 이 곳에 남아야 할지 모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몰라 나의 미래가 걱정된다")'의 정도 역시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 2) 출신국적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경우는 베트남(3.68점)과 중국 조선족 (3.41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 출신은 모두 평균 2.85점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는 중국 조선족 출신(3.39점)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2.55점)과 캄보디아(2.59점) 출신은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다.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있어 그 스트레스 정도가 두 번째로 높았던 '의사소통 시 긴장감'을 느끼는 정도는 베트남 출신(3.36점)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캄보디아(2.70점) 출신은 이 같은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의 경우는 중국 한족(3.32점)과 베트남(3.24점) 출신이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필리핀(2.42점) 출신은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의 경우는 다른 항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스트레스 정도(2.35점)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중국계 출신(중국 조선족 2.80점, 중국 한족 2.62점)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이는 '안전하지 못한 느낌'에 대한 항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즉 역시 중국계 출신(중국 한족 2.60점, 중국 조선족 2.51점)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중국계 출신의 이러한 경향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도 이어져 타 국적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정도(2.59점)를 보였으며, 결국 '사회적 소속감 결여'의 경우에서도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125▐ 출신국적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단위 : 명,점]

| 구분 | 사례수 | 고향에 대한 그리움 | 불공평한 대우 | 의사 소통시 긴장감 | 사회 활동 참여의 어려움 |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 | 안전하지 못한 느낌 |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사회적 소속감 결여 |
|---|---|---|---|---|---|---|---|---|---|
| 전체 | 842 | 3.30 | 2.87 | 3.21 | 3.06 | 2.35 | 2.21 | 2.47 | 2.55 |
| 중국조선족 | 72 | 3.41 | 3.39 | 3.00 | 2.88 | 2.80 | 2.51 | 2.59 | 2.94 |
| 중국한족 | 190 | 3.38 | 2.92 | 3.34 | 3.32 | 2.62 | 2.60 | 2.59 | 2.74 |
| 일본 | 82 | 3.00 | 2.55 | 3.32 | 3.09 | 2.10 | 2.16 | 2.15 | 2.61 |
| 베트남 | 252 | 3.68 | 2.83 | 3.36 | 3.24 | 2.40 | 2.03 | 2.52 | 2.39 |
| 필리핀 | 119 | 2.85 | 2.75 | 2.99 | 2.42 | 1.92 | 1.95 | 2.49 | 2.24 |
| 캄보디아 | 41 | 2.85 | 2.59 | 2.70 | 2.90 | 2.08 | 2.08 | 2.13 | 2.44 |
| 기타 | 86 | 3.07 | 3.03 | 3.10 | 3.09 | 2.26 | 2.18 | 2.44 | 2.71 |
| $x$ 2-검정 | | $x$ 2= 153.154 p-value=.000 | $x$ 2= 93.094, p-value =.000 | $x$ 2= 101.572p -value=.000 | $x$ 2= 142.044p -value=.000 | $x$ 2= 104.716p -value=.000 | $x$ 2= 106.374p -value=.000 | $x$ 2= 85.251, p-value=.000 | $x$ 2= 98.648, p-value=.000 |

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 3) 기간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경우를 살펴보면, 1~3년(3.43점)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그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Ⅳ - 126▐ 결혼기간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7.0 | 12.1 | 19.1 | 36.7 | 24.0 | 15.3 | 39.3 | 4.9 | 3.30 |
| 1년 미만 | 190 | 7.9 | 7.9 | 15.8 | 35.3 | 25.8 | 16.3 | 42.1 | 6.8 | 3.37 |
| 1년~3년 | 343 | 6.7 | 11.7 | 18.4 | 30.3 | 26.5 | 19.8 | 46.3 | 5.0 | 3.43 |
| 3년~5년 | 121 | 8.3 | 11.6 | 19.9 | 33.1 | 28.9 | 14.9 | 43.8 | 3.3 | 3.32 |
| 5년 이상 | 180 | 6.1 | 17.8 | 23.9 | 52.2 | 14.4 | 6.1 | 20.5 | 3.3 | 2.97 |
| 무응답 | 8 | 0.0 | 12.5 | 12.5 | 50.0 | 12.5 | 12.5 | 25.0 | 12.5 | 3.29 |
| $x$ 2-검정 | $x$ 2=53.828, p-value=.000 | | | | | | | | | |

한편, 거주기간별로 외국인 배우자가 느끼는 '불공평한 대우'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이 3~5년(3.21점)인 경우에서 한국 사람들보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년 미만(2.62점)인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Ⅳ - 127▐ 한국 거주기간별 '불공평한 대우'의 정도

| 구분 | 사례수 | '불공평한 대우' 의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15.2 | 17.2 | 32.4 | 33.0 | 19.2 | 8.0 | 27.2 | 7.4 | 2.87 |
| 1년 미만 | 258 | 22.9 | 15.5 | 38.4 | 30.6 | 15.9 | 5.4 | 21.3 | 9.7 | 2.62 |
| 1년~3년 | 297 | 12.8 | 17.2 | 30.0 | 32.3 | 20.5 | 8.1 | 28.6 | 9.1 | 2.93 |
| 3년~5년 | 109 | 11.9 | 12.8 | 24.7 | 32.1 | 25.7 | 15.6 | 41.3 | 1.8 | 3.21 |
| 5년~10년 | 124 | 8.1 | 22.6 | 30.7 | 37.1 | 19.4 | 8.1 | 27.5 | 4.8 | 2.97 |
| 10년 이상 | 49 | 14.3 | 22.4 | 36.7 | 40.8 | 16.3 | 4.1 | 20.4 | 2.0 | 2.73 |
| 무응답 | 5 | 20.0 | 20.0 | 40.0 | 40.0 | 0.0 | 0.0 | 0.0 | 20.0 | 2.25 |
| $x$ 2-검정 | $x$ 2=51.145, p-value=.002 | | | | | | | | | |

거주기간별로 '의사소통 시의 긴장감' 정도를 살펴보았다. 1년 미만(3.34점)인 경우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긴장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는 했으나, 이는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표 Ⅳ - 128▐ 한국 거주기간별 '의사소통 시의 긴장감' 정도

| 구분 | 사례수 | '의사소통 시의 긴장감' 정도(%)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10.2 | 13.5 | 23.7 | 30.0 | 27.8 | 12.8 | 40.6 | 5.6 | 3.21 |
| 1년 미만 | 258 | 8.5 | 11.6 | 20.1 | 27.9 | 29.8 | 15.1 | 44.9 | 7.0 | 3.34 |
| 1년~3년 | 297 | 9.1 | 12.5 | 21.6 | 26.3 | 31.3 | 14.1 | 45.4 | 6.7 | 3.31 |
| 3년~5년 | 109 | 11.9 | 10.1 | 22.0 | 41.3 | 21.1 | 12.8 | 33.9 | 2.8 | 3.13 |
| 5년~10년 | 124 | 12.1 | 18.5 | 30.6 | 33.9 | 23.4 | 7.3 | 30.7 | 4.8 | 2.95 |
| 10년 이상 | 49 | 16.3 | 24.5 | 40.8 | 32.7 | 20.4 | 6.1 | 26.5 | 0.0 | 2.76 |
| 무응답 | 5 | 20.0 | 20.0 | 40.0 | 0.0 | 40.0 | 20.0 | 60.0 | 0.0 | 3.20 |
| $x$ 2-검정 | $x$ 2=39.641, p-value=.032 | | | | | | | | | |

거주기간별로 외국인 배우자의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사회활동의 참여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 - 129▐ 한국 거주기간별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14.1 | 12.6 | 26.7 | 27.9 | 25.3 | 10.5 | 35.8 | 9.6 | 3.06 |
| 1년 미만 | 258 | 13.6 | 8.5 | 22.1 | 26.0 | 24.4 | 14.7 | 39.1 | 12.8 | 3.21 |
| 1년~3년 | 297 | 12.5 | 10.1 | 22.6 | 31.6 | 25.9 | 9.8 | 35.7 | 10.1 | 3.12 |
| 3년~5년 | 109 | 13.8 | 18.3 | 32.1 | 28.4 | 26.6 | 9.2 | 35.8 | 3.7 | 2.99 |
| 5년~10년 | 124 | 17.7 | 19.4 | 37.1 | 26.6 | 22.6 | 5.6 | 28.2 | 8.1 | 2.77 |
| 10년 이상 | 49 | 18.4 | 20.4 | 38.8 | 18.4 | 30.6 | 8.2 | 38.8 | 4.1 | 2.89 |
| 무응답 | 5 | 20.0 | 0.0 | 20.0 | 20.0 | 20.0 | 0.0 | 20.0 | 40.0 | 2.67 |
| $x$ 2-검정 | $x$ 2=44.353, p-value=.010 | | | | | | | | | |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의 정도를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기간별로 살펴본 결과, 거주기간이 3~5년(2.62점)인 경우에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느낀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결혼기간이 3~5년(2.57점)인 경우 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기간이 3~5년인 경우의 이러한 경향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소속감의 결여' 등의 항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항목들의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2점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각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한국 거주기간과 결혼기간이 3~5년인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결혼초기에서 중장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여러 어려움과 혼란, 불안과 두려움 등을 복합적으로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상담과 지속적인 관심,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Ⅳ - 130▐ 한국 거주기간별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 정도

| 구분 | 사례수 |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 정도(%)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5.9 | 26.5 | 52.4 | 25.4 | 9.4 | 4.6 | 14.0 | 8.2 | 2.35 |
| 1년 미만 | 258 | 27.1 | 24.4 | 51.5 | 23.3 | 7.0 | 5.8 | 12.8 | 12.4 | 2.31 |
| 1년~3년 | 297 | 24.9 | 23.2 | 48.1 | 26.3 | 11.4 | 5.7 | 17.1 | 8.4 | 2.45 |
| 3년~5년 | 109 | 20.2 | 23.9 | 44.1 | 31.2 | 16.5 | 5.5 | 22 | 2.8 | 2.62 |
| 5년~10년 | 124 | 29.0 | 40.3 | 69.3 | 21.8 | 2.4 | 0.8 | 3.2 | 5.6 | 2.00 |
| 10년 이상 | 49 | 28.6 | 30.6 | 59.2 | 30.6 | 8.2 | 0.0 | 8.2 | 2.0 | 2.19 |
| 무응답 | 5 | 40.0 | 0.0 | 40.0 | 0.0 | 40.0 | 0.0 | 40.0 | 20.0 | 2.50 |
| $x$ 2-검정 | $x$ 2=61.650, p-value=.000 | | | | | | | | | |

▌표 Ⅳ - 131▐ 결혼기간별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 정도

| 구분 | 사례수 |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5.9 | 26.5 | 52.4 | 25.4 | 9.4 | 4.6 | 14.0 | 8.2 | 2.35 |
| 1년 미만 | 190 | 25.8 | 24.7 | 50.5 | 25.8 | 6.3 | 5.8 | 12.1 | 11.6 | 2.34 |
| 1년~3년 | 343 | 25.1 | 23.9 | 49.0 | 23.9 | 11.7 | 5.5 | 17.2 | 9.9 | 2.43 |
| 3년~5년 | 121 | 21.5 | 24.0 | 45.5 | 29.8 | 15.7 | 5.0 | 20.7 | 4.1 | 2.57 |
| 5년 이상 | 180 | 31.1 | 35.0 | 66.1 | 25.6 | 3.9 | 1.1 | 5.0 | 3.3 | 2.06 |
| 무응답 | 8 | 12.5 | 25.0 | 37.5 | 12.5 | 12.5 | 12.5 | 25.0 | 25.0 | 2.83 |
| $x$ 2-검정 | $x$ 2=47.665, p-value=.000 | | | | | | | | | |

▌표 Ⅳ - 132▐ 결혼기간별 '안전하지 못한 느낌'의 정도

| 구분 | 사례수 | '안전하지 못한 느낌' 의 정도(%)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32.7 | 21.7 | 54.4 | 24.6 | 8.2 | 3.7 | 11.9 | 9.1 | 2.21 |
| 1년 미만 | 190 | 33.2 | 23.2 | 56.4 | 22.1 | 3.7 | 3.2 | 6.9 | 14.7 | 2.07 |
| 1년~3년 | 343 | 31.5 | 21.3 | 52.8 | 21.3 | 10.8 | 5.5 | 16.3 | 9.6 | 2.31 |
| 3년~5년 | 121 | 27.3 | 19.8 | 47.1 | 33.9 | 9.1 | 3.3 | 12.4 | 6.6 | 2.37 |
| 5년 이상 | 180 | 37.8 | 22.8 | 60.6 | 27.2 | 7.2 | 1.1 | 8.3 | 3.9 | 2.08 |
| 무응답 | 8 | 37.5 | 12.5 | 50.0 | 25.0 | 12.5 | 0.0 | 12.5 | 12.5 | 2.14 |
| $x$ 2-검정 | $x$ 2=38.245, p-value=.008 | | | | | | | | | |

▌표 Ⅳ - 133▐ 결혼기간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정도

| 구분 | 사례수 |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의 정도(%)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6.6 | 20.9 | 47.5 | 26.8 | 12.0 | 6.4 | 18.4 | 7.2 | 2.47 |
| 1년 미만 | 190 | 28.9 | 24.2 | 53.1 | 23.7 | 6.3 | 5.8 | 12.1 | 11.1 | 2.28 |
| 1년~3년 | 343 | 24.2 | 18.7 | 42.9 | 27.1 | 13.7 | 7.9 | 21.6 | 8.5 | 2.59 |
| 3년~5년 | 121 | 21.5 | 22.3 | 43.8 | 26.4 | 18.2 | 7.4 | 25.6 | 4.1 | 2.66 |
| 5년 이상 | 180 | 32.8 | 20.6 | 53.4 | 29.4 | 11.1 | 3.3 | 14.4 | 2.8 | 2.30 |
| 무응답 | 8 | 12.5 | 25.0 | 37.5 | 37.5 | 0.0 | 12.5 | 12.5 | 12.5 | 2.71 |
| $x$ 2-검정 | $x$ 2=35.865, p-value=.016 | | | | | | | | | |

▌표 Ⅳ - 134▐ 결혼기간별 '사회적 소속감 결여' 의 정도

| 구분 | 사례수 | '사회적 소속감 결여' (%)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4.0 | 18.9 | 42.9 | 30.0 | 12.1 | 6.8 | 18.9 | 8.2 | 2.55 |
| 1년 미만 | 190 | 31.1 | 15.3 | 46.4 | 26.8 | 8.9 | 6.3 | 15.2 | 11.6 | 2.37 |
| 1년~3년 | 343 | 23.0 | 17.8 | 40.8 | 30.3 | 13.1 | 6.7 | 19.8 | 9.0 | 2.59 |
| 3년~5년 | 121 | 20.7 | 20.7 | 41.4 | 31.4 | 15.7 | 7.4 | 23.1 | 4.1 | 2.67 |
| 5년 이상 | 180 | 21.7 | 23.9 | 45.6 | 31.7 | 11.1 | 6.7 | 17.8 | 5.0 | 2.55 |
| 무응답 | 8 | 0.0 | 12.5 | 12.5 | 37.5 | 12.5 | 12.5 | 25.0 | 25.0 | 3.33 |
| $x$ 2-검정 | $x$ 2=26.519, p-value=.149 | | | | | | | | | |

## 3. 성별의식과 한국에서의 차별경험

### 1) 성별의식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성별의식을 성역할 분리에 대한 가치관과 가부장적 가치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가치관, 성평등 교육관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 (1) 성역할 분리에 대한 가치관

먼저, 성역할 분리에 대한 가치관을 알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에게 전통적인 부부역할 분담 가치관인 "가정에서의 남편역할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의 역할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9%로 나타나 찬성하지 않는 응답이 3.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그렇다'는 응답이 50.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7.3%)보다 13.5%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응답을 비교분석해 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40.6%가 전통적인 부부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찬성하는데 비해 한국인 배우자는 50.8%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분담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간의 가치관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Ⅳ - 135▐ 성역할 분리에 대한 가치관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있다/그렇다 | 342 | 40.6 | 90 | 50.8 |
| 없다/아니다 | 370 | 43.9 | 66 | 37.3 |
| 모르겠다 | 130 | 15.4 | 21 | 11.9 |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보다 평등적인 부부역할 분담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 면에서는 출신국적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필리핀 출신(56.3%)과 베트남 출신(53.2%)에서는 이를 긍정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일본 출신(61.0%)과 중국 조선족 출신(59.7%), 중국 한족 출신(55.3%), 캄보디아 출신(53.7%) 등은 부정하는 응답이 많아 이들 출신이 부부역할 분담에서 평등지향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136▐ 출신국적별 성역할 분리에 대한 가치관

| 구분 | 사례수 | 성역할 분리에 대한 가치관(%) | | |
|---|---|---|---|---|
| | | 그렇다 | 아니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40.6 | 43.9 | 15.5 |
| 중국조선족 | 72 | 29.2 | 59.7 | 11.1 |
| 중국한족 | 190 | 26.8 | 55.3 | 17.9 |
| 일본 | 82 | 28.0 | 61.0 | 11.0 |
| 베트남 | 252 | 53.2 | 30.6 | 16.2 |
| 필리핀 | 119 | 56.3 | 30.3 | 13.4 |
| 캄보디아 | 41 | 29.3 | 53.7 | 17.5 |
| 기타 | 86 | 39.5 | 43.0 | 17.5 |
| $x$ 2-검정 | $x$ 2=67.378, p-value=.000 | | | |

### (2) 가부장적 가치관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알기 위해 “집안의 큰일은 남자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은 35.3%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8.1%로 나타나 부정하는 응답이 12.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그렇다’는 응답이 48.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4.1%)보다 4.5%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결국 가정에서의 질서가 남편 중심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치 지향이 한국인 배우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 - 137▐ 가부장적 가치관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있다/그렇다 | 297 | 35.3 | 86 | 48.6 |
| 없다/아니다 | 405 | 48.1 | 78 | 44.1 |
| 모르겠다 | 140 | 16.6 | 13 | 7.3 |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필리핀 출신(58.8%)과 캄보디아 출신(43.9%)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아 이들 출신이 가부장적 사고를 많이 하는 편이며, 일본 출신(72.0%), 중국 조선족 출신(62.5%), 중국 한족 출신(57.9%) 등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가부장적 사고를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38▐ 출신국적별 가부장적 가치관

| 구분 | 사례수 | 가부장적 가치관(%) | | |
|---|---|---|---|---|
| | | 그렇다 | 아니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35.3 | 48.1 | 16.6 |
| 중국조선족 | 72 | 30.6 | 62.5 | 6.9 |
| 중국한족 | 190 | 27.4 | 57.9 | 14.7 |
| 일본 | 82 | 19.5 | 72.0 | 8.5 |
| 베트남 | 252 | 31.7 | 41.3 | 27.0 |
| 필리핀 | 119 | 58.8 | 27.7 | 13.5 |
| 캄보디아 | 41 | 43.9 | 39.0 | 17.1 |
| 기타 | 86 | 45.3 | 44.2 | 10.5 |
| $x$ 2-검정 | $x$ 2=89.459, p-value=.000 | | | |

### (3)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가치관

가정 내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에서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그렇다’는 응답은 75.2%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도 ‘그렇다’는 응답이 78.0%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11.9%)보다 66.1%P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대체로평등적인 부부역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사노동이 거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가치관과 실제생활과의 괴리를 엿볼 수 있다.

▌표 Ⅳ - 139▌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가치관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있다/그렇다 | 633 | 75.2 | 138 | 78.0 |
| 없다/아니다 | 95 | 11.3 | 21 | 11.9 |
| 모르겠다 | 114 | 13.5 | 18 | 10.2 |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가치관을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 출신(90.2%)과 필리핀 출신(84.0%)에서 긍정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평등한 가사노동의 분담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조선족 출신(26.4%)은 부정하는 응답이 많아 전통적인 부부역할 분담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같은 중국 출신이면서도 중국 조선족과 중국 한족 출신이 그 민족성에 따라 부부역할 분담에 대한 가치 지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조선족은 아니다가 26.4%로 한족 10%에 비해 두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140▐ 출신국적별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가치관

| 구분 | 사례수 |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가치관(%) | | |
|---|---|---|---|---|
| | | 그렇다 | 아니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75.2 | 11.3 | 13.5 |
| 중국조선족 | 72 | 69.4 | 26.4 | 4.2 |
| 중국한족 | 190 | 71.1 | 10.0 | 18.9 |
| 일본 | 82 | 90.2 | 4.9 | 4.9 |
| 베트남 | 252 | 71.8 | 11.1 | 17.1 |
| 필리핀 | 119 | 84.0 | 6.7 | 9.3 |
| 캄보디아 | 41 | 70.7 | 14.6 | 14.7 |
| 기타 | 86 | 74.4 | 12.8 | 12.8 |
| $x$ 2-검정 | $x$ 2=42.880, p-value=.000 | | | |

### (4) 성평등 교육관

가정 내에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성평등 교육과 평등한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가정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으며,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르친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도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67.1%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1.2%로 나타나 긍정하는 응답이 55.9%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즉 ‘그렇다’는 응답이 77.4%로 월등히 많아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가정 내에서 평등한 양육태도와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41▐ 성평등 교육관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있다/그렇다 | 656 | 67.1 | 137 | 77.4 |
| 없다/아니다 | 94 | 11.2 | 14 | 7.9 |
| 모르겠다 | 183 | 21.7 | 26 | 14.7 |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한족(74.2%)과 일본(73.2%) 출신에서 ‘그렇다’는 긍정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중국 조선족(22.2%) 출신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의 가정 내 성평등 교육과 평등한 양육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조선족 출신의 경우는 같은 중국 출신인

중국 한족의 응답과 현저히 다른 양상을 띠어 민족에 따라 성별의식의 정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표 Ⅳ - 142▐ 출신국적별 성평등 교육관

| 구분 | 사례수 | 성평등한 교육관(%) | | |
|---|---|---|---|---|
| | | 그렇다 | 아니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67.1 | 11.2 | 21.7 |
| 중국조선족 | 72 | 63.9 | 22.2 | 13.9 |
| 중국한족 | 190 | 74.2 | 9.5 | 16.3 |
| 일본 | 82 | 73.2 | 4.9 | 21.9 |
| 베트남 | 252 | 61.5 | 11.5 | 27.0 |
| 필리핀 | 119 | 63.9 | 10.9 | 25.2 |
| 캄보디아 | 41 | 68.3 | 9.8 | 21.9 |
| 기타 | 86 | 68.6 | 11.6 | 19.8 |
| $x$ 2-검정 | $x$ 2=23.406, p-value=.024 | | | |

### 2) 한국에서의 차별경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직접차별의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 (1) 취업 시의 불이익 경험

외국인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못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1.7%로 나타난 반면, 그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40.5%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 5명 중 1명 정도는 외국인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취업 시 불이익 경험을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 출신의 경우 38.9%가 불이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한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의 경우는 필리핀(58.0%)과 일본(50.0%) 출신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아 출신국적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모르겠다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언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성차별에 대해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성희롱 등 성차별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Ⅳ - 143▐ 출신국적별 취업 시의 불이익 경험

| 구분 | 사례수 | 취업 시의 불이익 경험(%) | | |
|---|---|---|---|---|
| | | 있다 | 없다 | 모르겠다 |
| 합계 | 842 | 21.7 | 40.5 | 37.8 |
| 중국조선족 | 72 | 38.9 | 34.7 | 26.4 |
| 중국한족 | 190 | 27.4 | 35.3 | 37.4 |
| 일본 | 82 | 8.5 | 50.0 | 41.5 |
| 베트남 | 252 | 15.1 | 34.5 | 50.4 |
| 필리핀 | 119 | 21.0 | 58.0 | 21.0 |
| 캄보디아 | 41 | 19.5 | 46.3 | 34.1 |
| 기타 | 86 | 29.1 | 38.4 | 32.6 |
| $x$ 2-검정 | $x$ 2=64.860, p-value=.000 | | | |

### (2) 직장이나 모임에서의 불이익한 대우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이나 모임에서 불이익한 대우(임금, 승급, 교육기회, 퇴직 등)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1.8%로 나타난 반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42.2%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 10명 중 1명 정도는 직장이나 모임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중국 조선족 출신의 경우 응답자의 23.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캄보디아 출신이 19.5%로 불이익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에서 67.1%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출신국적별로 그 경험의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144▐ 출신국적별 직장이나 모임에서의 불이익한 대우

| 구분 | 사례수 | 직장이나 모임에서의 불이익한 대우(%) | | |
|---|---|---|---|---|
| | | 있다 | 없다 | 모르겠다 |
| 합계 | 842 | 11.8 | 42.2 | 46.1 |
| 중국조선족 | 72 | 23.6 | 45.8 | 30.6 |
| 중국한족 | 190 | 7.9 | 37.9 | 54.2 |
| 일본 | 82 | 4.9 | 67.1 | 28.0 |
| 베트남 | 252 | 9.5 | 36.1 | 54.4 |
| 필리핀 | 119 | 13.4 | 43.7 | 42.9 |
| 캄보디아 | 41 | 19.5 | 43.9 | 36.6 |
| 기타 | 86 | 17.4 | 39.5 | 43.0 |
| $x$ 2-검정 | $x$ 2=52.955, p-value=.000 | | | |

한편, 외국인 배우자의 현재 취업 여부별로 이를 분석해 보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불이익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5.0%로 4명 중 1명은 임금, 승급, 교육기회, 퇴직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업자의 경험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이고, 전체 경험율(11.8%)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한 처우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Ⅳ - 145▐ 취업여부별 직장이나 모임에서의 불이익한 대우

| 구분 | 사례수 | 직장이나 모임에서의 불이익한 대우(%) | | |
|---|---|---|---|---|
| | | 있다 | 없다 | 모르겠다 |
| 합계 | 842 | 11.8 | 42.2 | 46.1 |
| 취업 | 156 | 25.0 | 44.2 | 30.8 |
| 미취업 | 684 | 8.8 | 41.7 | 49.6 |
| 무응답 | 2 | 0.0 | 50.0 | 50.0 |
| $x$ 2-검정 | $x$ 2=38.657, p-value=.000 | | | |

### (3) 성폭력 또는 성희롱 경험

가정이나 직장, 모임에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에 불과한 반면, 대다수(66.9%)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중국 조선족 출신의 경우 12.5%가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직장, 모임에서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결국, 중국 조선족 출신의 경우 성차별 관련 3개 항목에서 모두 높은 경험율을 나타내어 이들 출신 외국인 배우자의 차별 실태 파악과 정책적 관심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146▐ 출신국적별 성폭력 또는 성희롱 경험

| 구분 | 사례수 | 성폭력 또는 성희롱 경험(%) | | |
|---|---|---|---|---|
| | | 있다 | 없다 | 모르겠다 |
| 합계 | 842 | 4.2 | 66.9 | 29.0 |
| 중국조선족 | 72 | 12.5 | 56.9 | 30.6 |
| 중국한족 | 190 | 2.1 | 60.0 | 37.9 |
| 일본 | 82 | 3.7 | 82.9 | 13.4 |
| 베트남 | 252 | 2.4 | 60.7 | 36.9 |
| 필리핀 | 119 | 2.5 | 82.4 | 15.1 |
| 캄보디아 | 41 | 7.3 | 65.9 | 26.8 |
| 기타 | 86 | 8.1 | 72.1 | 19.8 |
| $x$ 2-검정 | $x$ 2=60.645, p-value=.000 | | | |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여부별로 성폭력 또는 성희롱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현재 직장에 다니는 경우 성폭력 또는 성희롱 경험률이 9.6%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업자의 경험률(2.9%)보다 4배 가량 높고, 또한 전체 성폭력 또는 성희롱 경험률(4.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직장 내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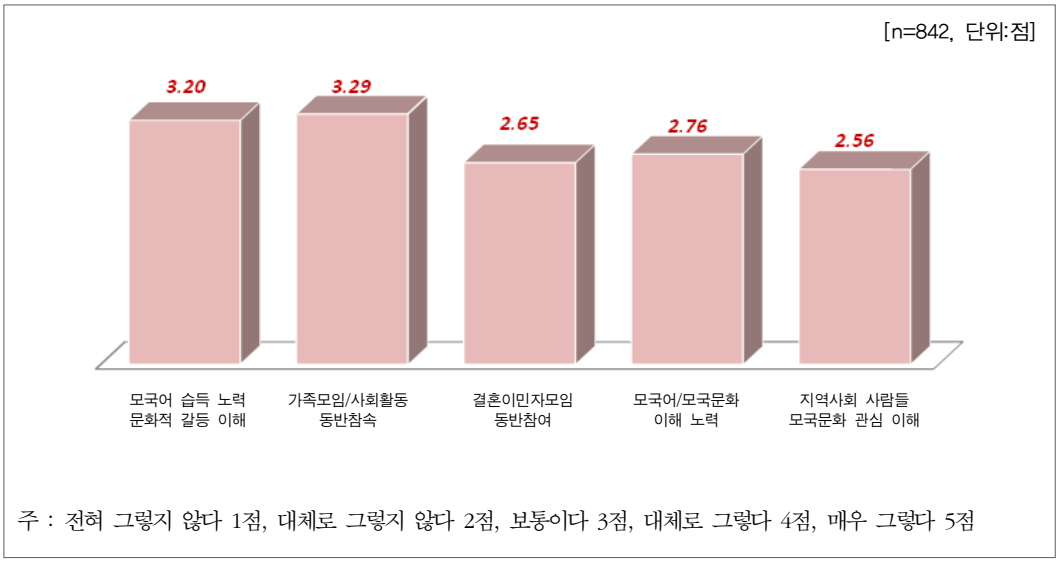
▌표 Ⅳ - 147▐ 취업여부별 성폭력 또는 성희롱 경험

| 구분 | 사례수 | 성폭력 또는 성희롱 경험(%) | | |
|---|---|---|---|---|
| | | 있다 | 없다 | 모르겠다 |
| 합계 | 842 | 4.2 | 66.9 | 29.0 |
| 취업 | 156 | 9.6 | 72.4 | 17.9 |
| 미취업 | 684 | 2.9 | 65.6 | 31.4 |
| 무응답 | 2 | 0.0 | 50.0 | 50.0 |
| $x$ 2-검정 | $x$ 2=23.004, p-value=.000 | | | |

## 4. 사회통합을 위한 주변인의 노력과 역할

외국인 배우자의 배우자 및 시댁가족,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문화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의 외국어(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 습득 노력과 문화적 차이 이해'는 5점 척도에서 3.20점으로 보통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가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 동반참석'하는 노력은 항목별 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3.29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자 모임에의 동반참석'이나, 시댁가족들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어 습득 노력 및 모국문화 이해', 지역사회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문화 관심과 이해' 등의 노력에서는 각각 2.65점, 2.76점, 2.56점으로 모두 보통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26〉 주변인의 노력과 역할 정도

### 1) 한국인 배우자의 노력과 역할 정도

#### (1) 배우자의 외국어 습득 노력 및 문화적 차이 이해

배우자의 외국어(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 습득 노력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에게 "나의 배우자는 나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며,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생길 때 나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43.1%('매우 그렇다' 12.9% + '대체로 그렇다' 30.2%)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0%('전혀 그렇지 않다' 13.2% +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8%)로 긍정하는 비율이 부정하는 비율보다 19.1%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나는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며,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생길 때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54.2%('매우 그렇다' 12.4% + '대체로 그렇다' 41.8%)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0.2%('전혀 그렇지 않다' 6.2% + '대체로 그렇지 않다' 4.0%)로 긍정하는 응답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습득하고자 노력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이러한 배우자의 생각에 공감하는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에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배우자의 외국어 습득 노력 및 문화적 차이 이해' 노력을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외국인 배우자는 평균 3.20점, 한국인 배우자는 평균 3.52점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48▐ 배우자의 외국어 습득 노력 및 문화적 차이 이해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그렇지 않다 | 111 | 13.2 | 11 | 6.2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91 | 10.8 | 7 | 4.0 |
| 보통이다 | 216 | 25.7 | 56 | 31.6 |
| 대체로 그렇다 | 254 | 30.2 | 74 | 41.8 |
| 매우 그렇다 | 109 | 12.9 | 22 | 12.4 |
| 무응답 | 61 | 7.2 | 7 | 4.0 |
| 5점 척도 평균 | 3.20점 | | 3.52점 | |

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중국 한족(3.50점) 출신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본(3.44점), 중국 조선족(3.18점) 출신 순으로 나타났다. 척도치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은 베트남 출신으로 평균 3.03점이었으며, 중국 한족과 일본 출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3.20점)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통수준(3점) 이상을 보여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어 습득과 문화적 차이 이해 노력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Ⅳ - 149▐ 출신국적별 배우자의 외국어 습득 노력 및 문화적 차이 이해

| 구분 | 사례수 | 배우자의 외국어 습득 노력 및 문화적 차이 이해(%)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13.2 | 10.8 | 24.0 | 25.7 | 30.2 | 12.9 | 43.1 | 7.2 | 3.20 |
| 중국조선족 | 72 | 12.5 | 5.6 | 18.1 | 38.9 | 25.0 | 11.1 | 36.1 | 6.9 | 3.18 |
| 중국한족 | 190 | 6.3 | 7.4 | 13.7 | 32.1 | 22.6 | 21.1 | 43.7 | 10.5 | 3.50 |
| 일본 | 82 | 7.3 | 13.4 | 20.7 | 30.5 | 23.2 | 24.4 | 47.6 | 1.2 | 3.44 |
| 베트남 | 252 | 20.6 | 9.5 | 30.1 | 15.5 | 40.9 | 6.3 | 47.2 | 7.1 | 3.03 |
| 필리핀 | 119 | 13.4 | 17.6 | 31.0 | 24.4 | 26.1 | 10.9 | 37.0 | 7.6 | 3.04 |
| 캄보디아 | 41 | 14.6 | 19.5 | 34.1 | 17.1 | 41.5 | 7.3 | 48.8 | 0.0 | 3.07 |
| 기타 | 86 | 11.6 | 10.5 | 22.1 | 31.4 | 26.7 | 10.5 | 37.2 | 9.3 | 3.15 |
| $x$ 2-검정 | $x$ 2=110.618, p-value=.000 | | | | | | | | |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로 '배우자의 외국어 습득 노력 및 문화적 차이 이해' 항목을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년 미만에서 3.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3~5년에서 3.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결혼기간이 길수록 한국인 배우자의 노력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 - 150▐ 결혼기간별 배우자의 외국어 습득 노력 및 문화적 차이 이해

| 구분 | 사례수 | 배우자의 외국어 습득 노력 및 문화적 차이 이해(%) | | | | | | | | 5점 만점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13.2 | 10.8 | 24.0 | 25.7 | 30.2 | 12.9 | 43.1 | 7.2 | 3.20 |
| 1년 미만 | 190 | 7.9 | 7.4 | 15.3 | 24.7 | 33.7 | 17.9 | 51.6 | 8.4 | 3.51 |
| 1년~3년 | 343 | 14.3 | 10.8 | 25.1 | 23.9 | 32.1 | 11.7 | 43.8 | 7.3 | 3.17 |
| 3년~5년 | 121 | 19.8 | 12.4 | 32.2 | 24.0 | 27.3 | 12.4 | 39.7 | 4.1 | 3.00 |
| 5년 이상 | 180 | 12.8 | 13.9 | 26.7 | 31.7 | 24.4 | 11.1 | 35.5 | 6.1 | 3.08 |
| 무응답 | 8 | 0.0 | 0.0 | 0.0 | 12.5 | 37.5 | 0.0 | 37.5 | 50.0 | 3.75 |
| $x$ 2-검정 | $x$ 2=49.648, p-value=.000 | | | | | | | | | |

### (2)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의 동반참석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생활 및 결혼생활에 정착하는 데 있어 한국인 배우자의 지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나의 배우자는 내가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 나와 함께 참석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44.6%('매우 그렇다' 15.7% + '대체로 그렇다' 28.9%)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2.9%('전혀 그렇지 않다' 10.9% +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0%)로 긍정하는 응답이 부정하는 응답보다 21.7%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나는 배우자가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 함께 참석한다")을 하였는데, 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49.1%('매우 그렇다' 10.7% + '대체로 그렇다' 38.4%)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7.0%('전혀 그렇지 않다' 4.0% + '대체로 그렇지 않다' 13.0%)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보다는 긍정하는 응답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의 동반참석'에 대해 5점 척도치 점수로 환산하여 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평균 3.29점,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평균 3.41점으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가 느끼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 - 151▐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의 동반참석**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그렇지 않다 | 92 | 10.9 | 7 | 4.0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101 | 12.0 | 23 | 13.0 |
| 보통이다 | 203 | 24.1 | 53 | 29.9 |
| 대체로 그렇다 | 243 | 28.9 | 68 | 38.4 |
| 매우 그렇다 | 132 | 15.7 | 19 | 10.7 |
| 무응답 | 71 | 8.4 | 7 | 4.0 |
| 5점 척도 평균 | 3.29점 | | 3.41점 | |

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한족 출신에서 3.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3.48점), 중국 조선족 출신(3.33점) 출신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집단은 필리핀 출신으로 2.81점이었으며, 필리핀과 캄보디아(2.98점) 출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수준(3점)을 넘었다. 전체 평균 점수는 3.29점으로 5개 항목 가운데 배우자의 노력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52▐ 출신국적별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의 동반참석

| 구분 | 사례수 |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의 동반참석(%)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10.9 | 12.0 | 22.9 | 24.1 | 28.9 | 15.7 | 44.6 | 8.4 | 3.29 |
| 중국조선족 | 72 | 9.7 | 9.7 | 19.4 | 30.6 | 23.6 | 18.1 | 41.7 | 8.3 | 3.33 |
| 중국한족 | 190 | 5.8 | 5.3 | 11.1 | 31.1 | 25.3 | 21.1 | 46.4 | 11.6 | 3.57 |
| 일본 | 82 | 8.5 | 20.7 | 29.2 | 30.5 | 25.6 | 13.4 | 39.0 | 1.2 | 3.15 |
| 베트남 | 252 | 11.1 | 6.7 | 17.8 | 16.3 | 39.7 | 16.3 | 56.0 | 9.9 | 3.48 |
| 필리핀 | 119 | 16.0 | 21.8 | 37.8 | 23.5 | 22.7 | 6.7 | 29.4 | 9.2 | 2.81 |
| 캄보디아 | 41 | 17.1 | 24.4 | 41.5 | 17.1 | 26.8 | 14.6 | 41.4 | 0.0 | 2.98 |
| 기타 | 86 | 15.1 | 16.3 | 31.4 | 24.4 | 22.1 | 15.1 | 37.2 | 7.0 | 3.06 |
| $x$ 2-검정 | $x$ 2=96.088, p-value=.000 | | | | | | | | |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로 이를 분석해보면, 1년 미만에서 3.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년~3년(3.33점), 3년~5년(3.10점), 5년 이상(3.00점) 순으로 나타나 결혼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노력 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 - 153▐ 결혼기간별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의 동반참석

| 구분 | 사례수 |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의 동반참석(%)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10.9 | 12.0 | 22.9 | 24.1 | 28.9 | 15.7 | 44.6 | 8.4 | 3.29 |
| 1년 미만 | 190 | 4.7 | 11.1 | 15.8 | 22.6 | 30.0 | 22.1 | 52.1 | 9.5 | 3.59 |
| 1년~3년 | 343 | 12.2 | 9.9 | 22.1 | 19.8 | 32.7 | 16.0 | 48.7 | 9.3 | 3.33 |
| 3년~5년 | 121 | 12.4 | 13.2 | 25.6 | 32.2 | 26.4 | 10.7 | 37.1 | 5.0 | 3.10 |
| 5년 이상 | 180 | 14.4 | 16.7 | 31.1 | 28.9 | 22.2 | 11.7 | 33.9 | 6.1 | 3.00 |
| 무응답 | 8 | 0.0 | 0.0 | 0.0 | 12.5 | 25.0 | 12.5 | 37.5 | 50.0 | 4.00 |
| $x$ 2-검정 | $x$ 2=57.862, p-value=.000 | | | | | | | | | |

### (3) 결혼이민자 모임에의 동반참석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나의 배우자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모임에 나와 함께 참여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21.4%('매우 그렇다' 6.9% + '대체로 그렇다' 14.5%)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8.1%('전혀 그렇지 않다' 21.4% + '대체로 그렇지 않다' 16.7%)로 부정하는 응답이 긍정하는 응답보다 16.7%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모임에 배우자와 함께 참여한다")는 '그렇다'는 응답이 32.2%('매우 그렇다' 6.8% + '대체로 그렇다' 25.4%)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5.6%('전혀 그렇지 않다' 14.7% + '대체로 그렇지 않다' 20.9%)로 나타나 두 응답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혼이민자 모임에의 동반참석' 항목에 대해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평균 2.65점이었고,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평균 2.88점으로 나타났다. 결국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다양한 모임에 한국인 배우자가 함께 참석하는 정도는 보통수준보다 낮은 정도로 그 노력이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의 노력 부재로도 볼 수 있겠으나, 다른 측면으로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Ⅳ - 154▐ 결혼이민자 모임에의 동반참석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그렇지 않다 | 180 | 21.4 | 26 | 14.7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141 | 16.7 | 37 | 20.9 |
| 보통이다 | 245 | 29.1 | 50 | 28.2 |
| 대체로 그렇다 | 122 | 14.5 | 45 | 25.4 |
| 매우 그렇다 | 58 | 6.9 | 12 | 6.8 |
| 무응답 | 96 | 11.4 | 7 | 4.0 |
| 5점 척도 평균 | 2.65점 | | 2.88점 | |

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모임에 동반 참석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노력 정도가 중국 한족 출신에서 2.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 조선족(2.76점), 베트남(2.60점) 출신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출신은 2.3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Ⅳ - 155▐ 출신국적별 결혼이민자 모임에의 동반참석

| 구분 | 사례수 | 결혼이민자 모임에의 동반참석(%)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1.4 | 16.7 | 38.1 | 29.1 | 14.5 | 6.9 | 21.4 | 11.4 | 2.65 |
| 중국조선족 | 72 | 16.7 | 25.0 | 41.7 | 25.0 | 16.7 | 9.7 | 26.4 | 6.9 | 2.76 |
| 중국한족 | 190 | 10.0 | 11.1 | 21.1 | 41.6 | 10.5 | 8.9 | 19.4 | 17.9 | 2.97 |
| 일본 | 82 | 26.8 | 26.8 | 53.6 | 26.8 | 14.6 | 2.4 | 17.0 | 2.4 | 2.38 |
| 베트남 | 252 | 26.6 | 11.9 | 38.5 | 23.8 | 18.7 | 6.0 | 24.7 | 13.1 | 2.60 |
| 필리핀 | 119 | 23.5 | 21.0 | 44.5 | 28.6 | 8.4 | 5.9 | 14.3 | 12.6 | 2.45 |
| 캄보디아 | 41 | 26.8 | 19.5 | 46.3 | 31.7 | 12.2 | 9.8 | 22.0 | 0.0 | 2.59 |
| 기타 | 86 | 24.4 | 19.8 | 44.2 | 22.1 | 18.6 | 7.0 | 25.6 | 8.1 | 2.61 |
| $x$ 2-검정 | $x$ 2=84.740, p-value=.000 | | | | | | | | | |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로 분석해보면, 결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서 2.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년~3년(2.70점), 3년~5년(2.53점), 5년 이상(2.48점) 순으로 나타나 결혼기간이 길수록 한국인 배우자의 참여 노력이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156▐ 결혼기간별 결혼이민자 모임에의 동반참석

| 구분 | 사례수 | 결혼이민자 모임에의 동반참석(%)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1.4 | 16.7 | 38.1 | 29.1 | 14.5 | 6.9 | 21.4 | 11.4 | 2.65 |
| 1년 미만 | 190 | 15.8 | 14.2 | 30.0 | 31.1 | 16.3 | 6.3 | 22.6 | 16.3 | 2.80 |
| 1년~3년 | 343 | 20.4 | 13.7 | 34.1 | 31.2 | 15.7 | 6.4 | 22.1 | 12.5 | 2.70 |
| 3년~5년 | 121 | 28.1 | 22.3 | 50.4 | 23.1 | 11.6 | 10.7 | 22.3 | 4.1 | 2.53 |
| 5년 이상 | 180 | 25.6 | 21.1 | 46.7 | 27.8 | 12.8 | 5.6 | 18.4 | 7.2 | 2.48 |
| 무응답 | 8 | 0.0 | 25.0 | 25.0 | 12.5 | 0.0 | 12.5 | 12.5 | 50.0 | 3.00 |
| $x$ 2-검정 | $x$ 2=48.932, p-value=.000 | | | | | | | | | |

### 2) 시댁가족의 노력과 역할 정도

외국인 배우자의 시댁가족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 습득과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나의 배우자측

가족들은 나의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27.1%('매우 그렇다' 8.6% + '대체로 그렇다' 18.5%)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7.3%('전혀 그렇지 않다' 20.3% + '대체로 그렇지 않다' 17.0%)로 나타나 부정하는 응답이 10.2% 높았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나의 가족들은 배우자의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렇다'는 응답이 54.8%('매우 그렇다' 13.0% + '대체로 그렇다' 41.8%)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4.1%('전혀 그렇지 않다' 5.6% + '대체로 그렇지 않다' 8.5%)로 긍정하는 응답이 오히려 40.7%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지 있으나,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이러한 응답을 통해 시댁가족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매우 미약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인지하는 시댁가족의 노력과 한국인 배우자가 인지하는 노력의 정도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댁가족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어 습득 및 모국문화 이해 노력을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외국인 배우자는 평균 2.76점이었으며, 한국인 배우자는 3.5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로간의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족관계나 부부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표 Ⅳ - 157▐ 시댁가족의 모국어 습득 노력 및 모국문화 이해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그렇지 않다 | 171 | 20.3 | 10 | 5.6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143 | 17.0 | 15 | 8.5 |
| 보통이다 | 229 | 27.2 | 47 | 26.6 |
| 대체로 그렇다 | 156 | 18.5 | 74 | 41.8 |
| 매우 그렇다 | 72 | 8.6 | 23 | 13.0 |
| 무응답 | 71 | 8.4 | 8 | 4.5 |
| 5점 척도 평균 | 2.76점 | | 3.50점 | |

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시댁가족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어 습득 및 문화 이해 노력을 분석해 보면, 일본 출신에서 3.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2.93점), 중국 조선족(2.91점) 출신, 캄보디아(2.90점) 출신 순으로 나타났다. 시댁가족의 노력 정도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 집단은 베트남 출신으로 2.57점이었으며, 일본 출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수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58▐ 출신국적별 시댁가족의 모국어 습득 노력 및 모국문화 이해

| 구분 | 사례수 | 시댁가족의 모국어 습득 노력 및 모국문화 이해(%)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0.3 | 17.0 | 37.3 | 27.2 | 18.5 | 8.6 | 27.1 | 8.4 | 2.76 |
| 중국조선족 | 72 | 15.3 | 18.1 | 33.4 | 34.7 | 18.1 | 11.1 | 29.2 | 2.8 | 2.91 |
| 중국한족 | 190 | 20.5 | 15.3 | 35.8 | 30.5 | 12.1 | 6.3 | 18.4 | 15.3 | 2.63 |
| 일본 | 82 | 8.5 | 15.9 | 24.4 | 37.8 | 26.8 | 8.5 | 35.3 | 2.4 | 3.11 |
| 베트남 | 252 | 28.2 | 15.1 | 43.3 | 21.0 | 19.4 | 6.7 | 26.1 | 9.5 | 2.57 |
| 필리핀 | 119 | 18.5 | 18.5 | 37.0 | 24.4 | 18.5 | 15.1 | 33.6 | 5.0 | 2.93 |
| 캄보디아 | 41 | 17.1 | 22.0 | 39.1 | 24.4 | 26.8 | 9.8 | 36.6 | 0.0 | 2.90 |
| 기타 | 86 | 16.3 | 22.1 | 38.4 | 26.7 | 18.6 | 7.0 | 25.6 | 9.3 | 2.76 |
| $x$ 2-검정 | $x$ 2=68.122, p-value=.000 | | | | | | | | | |

### 3) 지역사회의 노력과 역할 정도

외국인 배우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노력과 역할 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내가 속한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내 모국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18.5%(‘매우 그렇다’ 4.6% + ‘대체로 그렇다’ 13.9%)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1.1%(‘전혀 그렇지 않다’ 22.2% + ‘대체로 그렇지 않다’ 18.9%)로 부정하는 응답이 22.6%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같은 질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2.9%(‘매우 그렇다’ 12.4% + ‘대체로 그렇다’ 30.5%)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7.0%(‘전혀 그렇지 않다’ 5.1% + ‘대체로 그렇지 않다’ 11.9%)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의 응답과는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평균 2.56점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3.36점으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가 느끼는 부분과 큰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Ⅳ - 159▐ 지역사회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문화 관심과 이해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그렇지 않다 | 187 | 22.2 | 9 | 5.1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159 | 18.9 | 21 | 11.9 |
| 보통이다 | 267 | 31.7 | 59 | 33.3 |
| 대체로 그렇다 | 117 | 13.9 | 54 | 30.5 |
| 매우 그렇다 | 39 | 4.6 | 22 | 12.4 |
| 무응답 | 73 | 8.7 | 12 | 6.8 |
| 5점 척도 평균 | 2.56점 | | 3.36점 | |

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지역사회의 노력 정도를 살펴보면, 일본 출신에서 3.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 조선족(2.97점), 캄보디아(2.83점) 출신 순이었다. 베트남 출신이 인지하는 지역사회의 노력 정도는 1.9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일본 출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수준 이하의 점수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노력이 아직까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표 Ⅳ - 160▐ 출신국적별 지역사회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문화 관심과 이해

| 구분 | 사례수 | 지역사회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문화 관심과 이해(%)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2.2 | 18.9 | 41.1 | 31.7 | 13.9 | 4.6 | 18.5 | 8.7 | 2.56 |
| 중국조선족 | 72 | 9.7 | 18.1 | 27.8 | 40.3 | 20.8 | 6.9 | 27.7 | 4.2 | 2.97 |
| 중국한족 | 190 | 12.6 | 17.4 | 30.0 | 36.3 | 10.5 | 6.3 | 16.8 | 16.8 | 2.77 |
| 일본 | 82 | 3.7 | 15.9 | 19.6 | 54.9 | 18.3 | 4.9 | 23.2 | 2.4 | 3.05 |
| 베트남 | 252 | 43.3 | 18.7 | 62.0 | 18.3 | 8.3 | 2.4 | 10.7 | 9.1 | 1.99 |
| 필리핀 | 119 | 20.2 | 25.2 | 45.4 | 27.7 | 13.4 | 7.6 | 21.0 | 5.9 | 2.61 |
| 캄보디아 | 41 | 14.6 | 19.5 | 34.1 | 36.6 | 26.8 | 2.4 | 29.2 | 0.0 | 2.83 |
| 기타 | 86 | 16.3 | 17.4 | 33.7 | 34.9 | 22.1 | 2.3 | 24.4 | 7.0 | 2.75 |
| $x$ 2-검정 | $x$ 2=167.426, p-value=.000 | | | | | | | | | |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 지역(권역)별로 지역사회의 노력 정도를 분석해보면, 동남권에서 2.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북권(2.64점), 서남권(2.51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노력 정도를 보인 지역은 서북권으로 2.29점이었으며, 모든 지역이 보통 수준 이하의 노력 정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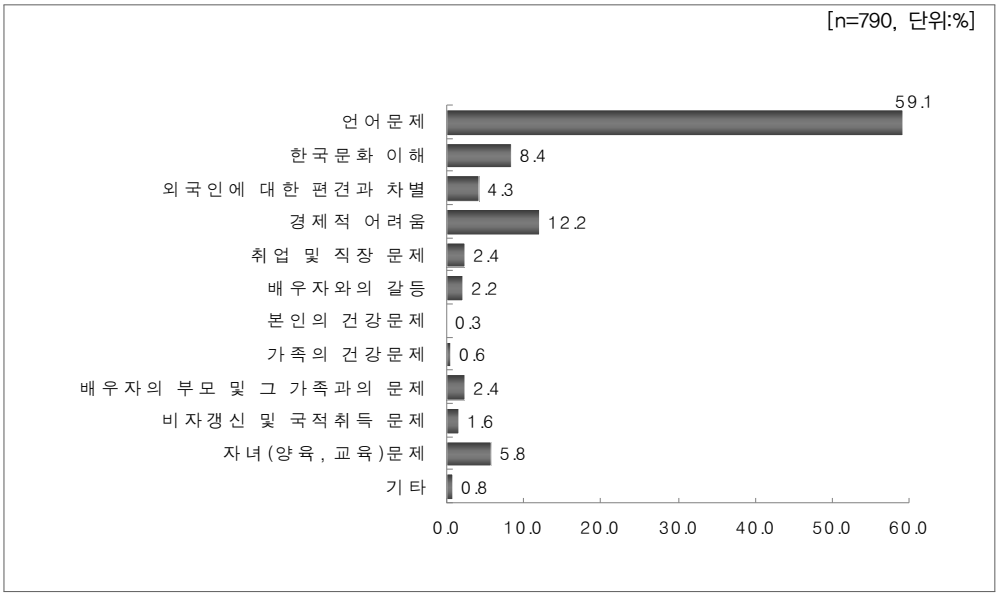
▌표 Ⅳ - 161▐ 거주 지역(권역)별 지역사회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문화 관심과 이해

| 구분 | 사례수 | 지역사회의 외국인 배우자 모국문화 관심과 이해(%)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그렇지 않다 | | | 보통 | 그렇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2.2 | 18.9 | 41.1 | 31.7 | 13.9 | 4.6 | 18.5 | 8.7 | 2.56 |
| 도심권 | 48 | 27.1 | 18.8 | 45.9 | 29.2 | 12.5 | 2.1 | 14.6 | 10.4 | 2.37 |
| 동북권 | 295 | 20.7 | 18.3 | 39.0 | 35.6 | 13.2 | 6.1 | 19.3 | 6.1 | 2.64 |
| 서북권 | 89 | 27.0 | 24.7 | 51.7 | 21.3 | 10.1 | 3.4 | 13.5 | 13.5 | 2.29 |
| 서남권 | 320 | 23.8 | 18.1 | 41.9 | 29.1 | 14.7 | 3.8 | 18.5 | 10.6 | 2.51 |
| 동남권 | 86 | 15.1 | 18.6 | 33.7 | 39.5 | 18.6 | 4.7 | 23.3 | 3.5 | 2.78 |
| 무응답 | 4 | 0.0 | 0.0 | 0.0 | 50.0 | 0.0 | 25.0 | 25.0 | 25.0 | 3.67 |
| $x$ 2-검정 | $x$ 2=34.452, p-value=.099 | | | | | | | | | |

# 제6절 복지 욕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 1.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재 한국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배우자의 대다수(93.8%)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790명을 대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을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1순위로는 '언어문제'가 5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12.2%)', '한국문화 이해(8.4%)', '자녀(양육, 교육)문제(5.8%)',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4.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순위로는 '한국문화 이해'가 1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양육, 교육)문제(13.8%)', '취업 및 직장 문제(12.7%)', '경제적 어려움(8.9%)', '언어문제(8.0%)'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족관계나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가족생활의 직접적인 요소들보다 가족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한국문화 이해 등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Ⅳ - 27〉 한국생활의 어려움(1순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1순위를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캄보디아(80.0%)와 필리핀(69.6%) 출신에서는 '언어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일본 출신은 언어문제 외에 '경제적 어려움(22.1)%'과 '자녀문제(16.9%)'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표 Ⅳ - 162▐ 출신국적별 한국생활의 어려움(1순위)

| 구분 | 사례수 | 한국생활의 어려움(1순위)(%) | | | | | | | | | | | |
|---|---|---|---|---|---|---|---|---|---|---|---|---|---|
| | | 언어문제 | 한국문화이해 | 외국인에대한편견차별 | 경제적어려움 | 취업및직장문제 | 배우자와의갈등 | 본인건강문제 | 가족건강문제 | 배우자의부모및그가족과의문제 | 비자갱신국적취득문제 | 자녀문제 | 기타 |
| 합계 | 790 | 59.1 | 8.4 | 4.3 | 12.2 | 2.4 | 2.2 | 0.3 | 0.6 | 2.4 | 1.6 | 5.8 | 0.8 |
| 중국조선족 | 64 | 35.9 | 10.9 | 9.4 | 21.9 | 4.7 | 4.7 | 1.6 | 1.6 | 1.6 | 1.6 | 6.3 | 0.0 |
| 중국한족 | 186 | 65.6 | 5.4 | 3.2 | 15.1 | 2.2 | 2.2 | 0.0 | 1.1 | 0.0 | 1.1 | 3.2 | 1.1 |
| 일본 | 77 | 32.5 | 9.1 | 3.9 | 22.1 | 0.0 | 3.9 | 1.3 | 2.6 | 7.8 | 0.0 | 16.9 | 0.0 |
| 베트남 | 228 | 64.5 | 9.6 | 3.9 | 7.5 | 3.1 | 0.9 | 0.0 | 0.0 | 3.5 | 1.8 | 4.8 | 0.4 |
| 필리핀 | 115 | 69.6 | 10.4 | 3.5 | 4.3 | 1.7 | 1.7 | 0.0 | 0.0 | 1.7 | 0.0 | 5.2 | 1.7 |
| 캄보디아 | 40 | 80.0 | 7.5 | 2.5 | 2.5 | 0.0 | 0.0 | 0.0 | 0.0 | 2.5 | 2.5 | 0.0 | 2.5 |
| 기타 | 80 | 47.5 | 6.3 | 6.3 | 17.5 | 3.8 | 3.8 | 0.0 | 0.0 | 1.3 | 6.3 | 7.5 | 0.0 |
| $\chi$ 2-검정 | $\chi$ 2=148.505, p-value=.000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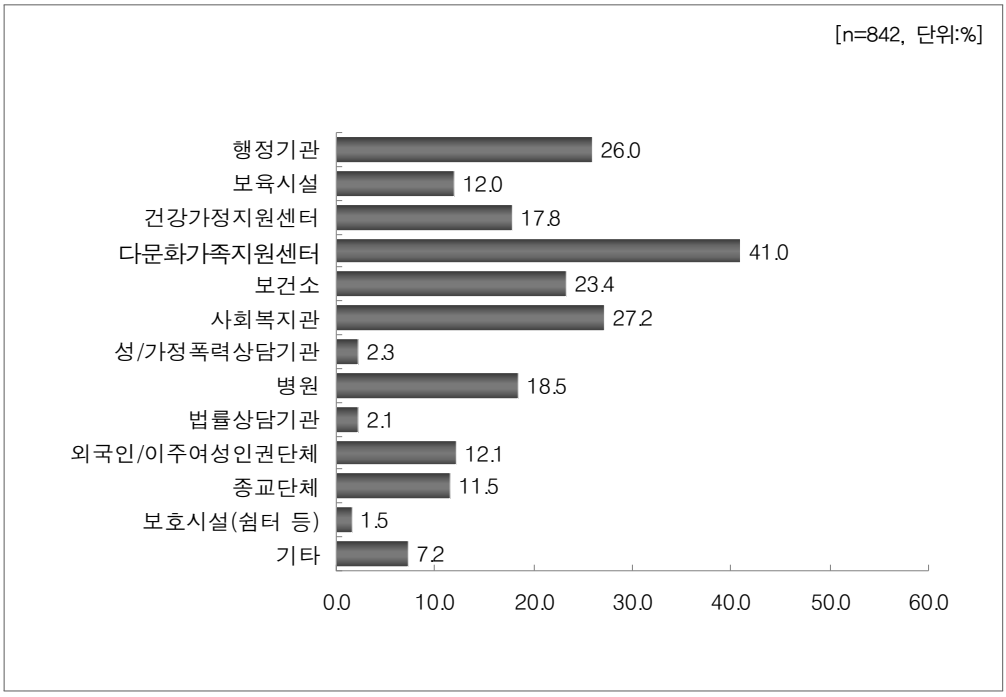
이를 한국에서의 거주기간별로 분석해보면, '언어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응답은 1년 미만에서 76.6%인 반면, 10년 이상에서는 30.4%로 나타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언어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응답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문화 이해'의 경우는 3~5년(12.1%)에서, '자녀(양육, 교육)문제'는 5~10년(17.2%)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낀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Ⅳ - 163▐ 한국 거주기간별 한국생활의 어려움(1순위)

| 구분 | 사례수 | 한국생활의 어려움(1순위)(%) | | | | | | | | | | | |
|---|---|---|---|---|---|---|---|---|---|---|---|---|---|
| | | 언어 문제 | 한국 문화 이해 | 외국인에 대한 편견 차별 | 경제적 어려움 | 취업 및 직장 문제 | 배우자와의 갈등 | 본인 건강 문제 | 가족 건강 문제 | 배우자의 부모 및 그 가족과의 문제 | 비자 갱신 국적취득문제 | 자녀 문제 | 기타 |
| 합계 | 790 | 59.1 | 8.4 | 4.3 | 12.2 | 2.4 | 2.2 | 0.3 | 0.6 | 2.4 | 1.6 | 5.8 | 0.8 |
| 1년 미만 | 248 | 76.6 | 8.9 | 0.8 | 4.4 | 2.8 | 1.6 | 0.0 | 0.4 | 0.8 | 0.8 | 1.2 | 1.6 |
| 1년~3년 | 277 | 60.6 | 7.2 | 5.8 | 11.6 | 2.9 | 1.1 | 0.4 | 0.7 | 3.2 | 2.5 | 3.6 | 0.4 |
| 3년~5년 | 99 | 45.5 | 12.1 | 8.1 | 17.2 | 1.0 | 3.0 | 0.0 | 0.0 | 4.0 | 2.0 | 7.1 | 0.0 |
| 5년~10년 | 116 | 40.5 | 7.8 | 4.3 | 19.0 | 1.7 | 2.6 | 0.0 | 1.7 | 2.6 | 1.7 | 17.2 | 0.9 |
| 10년 이상 | 46 | 30.4 | 6.5 | 4.3 | 30.4 | 2.2 | 8.7 | 2.2 | 0.0 | 2.2 | 0.0 | 13.0 | 0.0 |
| 무응답 | 4 | 75.0 | 0.0 | 25.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x$ 2-검정 | $x$ 2=158.269, p-value=.000 | | | | | | | | | | | | |

## 2.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이용실태

외국인 배우자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유형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이용빈도를 보인 기관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응답자의 41.0%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관(27.2%)', '구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등 행정기관(26.0%)', '보건소(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난 시설유형에는 '성폭력, 가정폭력상담기관(2.3%)'과 '법률상담기관(2.1%)', '보호시설(쉼터 등)(1.5%)'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이용경험이 낮게 나타난 것은 본 조사의 응답자들 가운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이 178명 중 9.6%인 17명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 Ⅳ - 28〉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집단은 일본 출신으로 나타났으며, 타 국적출신에 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일본 출신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이용률이 5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보건소(54.9%)', '행정기관(50.0%)' 순으로 많았다.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는 '사회복지관(58.5%)'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필리핀 출신의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기관(5.9%)', '법률상담기관(5.0%)', '외국인/이주여성인권단체(22.7%)', '보호시설(3.4%)' 등을 이용한 비율이 타 국적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국제결혼이 많은 일본(41.5%)과 필리핀(31.1%) 출신의 경우는 '종교단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타 국적출신에 비해 월등이 높았다.

▌표 Ⅳ - 164▐ 출신국적별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이용률(%) | | | | | | | | | | | | |
|---|---|---|---|---|---|---|---|---|---|---|---|---|---|---|
| | | 행정기관 | 보육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보건소 | 사회복지관 | 성/가정폭력상담기관 | 병원 | 법률상담기관 | 외국인/이주여성인권단체 | 종교단체 | 보호시설 | 기타 |
| 합계 | 842 | 26.0 | 12.0 | 17.8 | 41.0 | 23.4 | 27.2 | 2.3 | 18.5 | 2.1 | 12.1 | 11.5 | 1.5 | 7.2 |
| 중국조선족 | 72 | 27.8 | 8.3 | 11.1 | 34.7 | 37.5 | 27.8 | 2.8 | 19.4 | 0.0 | 8.3 | 4.2 | 1.4 | 2.8 |
| 중국한족 | 190 | 14.7 | 4.2 | 19.5 | 41.1 | 15.8 | 28.4 | 0.5 | 8.4 | 1.6 | 5.3 | 3.7 | 1.1 | 8.9 |
| 일본 | 82 | 50.0 | 31.7 | 24.4 | 56.1 | 54.9 | 24.4 | 0.0 | 45.1 | 0.0 | 17.1 | 41.5 | 0.0 | 0.0 |
| 베트남 | 252 | 22.2 | 13.9 | 13.1 | 49.2 | 10.7 | 21.8 | 3.2 | 9.5 | 2.8 | 15.1 | 3.6 | 2.0 | 5.2 |
| 필리핀 | 119 | 31.9 | 16.8 | 30.3 | 32.8 | 27.7 | 28.6 | 5.9 | 17.6 | 5.0 | 22.7 | 31.1 | 3.4 | 13.4 |
| 캄보디아 | 41 | 34.1 | 0.0 | 17.1 | 22.0 | 22.0 | 58.5 | 0.0 | 31.7 | 0.0 | 4.9 | 2.4 | 2.4 | 4.9 |
| 기타 | 86 | 25.6 | 7.0 | 10.5 | 27.9 | 30.2 | 25.6 | 1.2 | 36.0 | 2.3 | 5.8 | 7.0 | 0.0 | 12.8 |

거주기간별로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이용률을 분석해보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39.5%)'와 '사회복지관(27.5%)'의 이용률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행정기관과 보건소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165▐ 한국 거주기간별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이용률(%) | | | | | | | | | | | | |
|---|---|---|---|---|---|---|---|---|---|---|---|---|---|---|
| | | 행정기관 | 보육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보건소 | 사회복지관 | 성/가정폭력상담기관 | 병원 | 법률상담기관 | 외국인/이주여성인권단체 | 종교단체 | 보호시설 | 기타 |
| 합계 | 842 | 26.0 | 12.0 | 17.8 | 41.0 | 23.4 | 27.2 | 2.3 | 18.5 | 2.1 | 12.1 | 11.5 | 1.5 | 7.2 |
| 1년 미만 | 258 | 19.0 | 4.7 | 19.4 | 39.5 | 11.6 | 27.5 | 2.3 | 14.7 | 1.9 | 8.9 | 5.4 | 2.3 | 8.9 |
| 1년~3년 | 297 | 24.2 | 8.8 | 14.1 | 41.4 | 23.6 | 28.3 | 0.7 | 16.8 | 2.0 | 10.8 | 6.7 | 1.3 | 5.7 |
| 3년~5년 | 109 | 28.4 | 16.5 | 15.6 | 39.4 | 27.5 | 33.9 | 5.5 | 23.9 | 2.8 | 11.9 | 11.9 | 0.9 | 4.6 |
| 5년~10년 | 124 | 37.1 | 26.6 | 25.0 | 45.2 | 36.3 | 22.6 | 2.4 | 23.4 | 3.2 | 15.3 | 26.6 | 0.8 | 8.9 |
| 10년 이상 | 49 | 38.8 | 22.4 | 16.3 | 42.9 | 42.9 | 18.4 | 4.1 | 26.5 | 0.0 | 30.6 | 32.7 | 2.0 | 10.2 |
| 무응답 | 5 | 40.0 | 20.0 | 40.0 | 0.0 | 20.0 | 0.0 | 0.0 | 0.0 | 0.0 | 0.0 | 20.0 | 0.0 | 0.0 |

##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외국인 배우자 842명을 대상으로 10가지의 사회복지제도 및 지원서비스에 대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교실'의 이용률이 9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1순위가 '언어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77.2%)'이 77.2%로 높게 나타났는데, 1, 2순위를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이 차지한 것은 본 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다수가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실이나 문화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 시민단체, 구청 등으로부터 모집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인 사회복지서비스는 '성폭력, 가정폭력상담(32.9%)'이었으나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을 당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그 이용률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도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38.1%), '법률상담 및 지원(39.7%)' 등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의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의 높은 취업욕구를 감안할 때 이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표 Ⅳ - 166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복수응답)

| 구분 (n=842) | 사례수 | 비율(%) |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 442 | 52.5 |
| 한국어교실 | 773 | 91.8 |
|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 | 650 | 77.2 |
|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399 | 47.4 |
| 법률상담 및 지원 | 334 | 39.7 |
| 의료상담 및 지원(임신 및 출산 지원 포함) | 421 | 50.0 |
| 성폭력, 가족폭력상담 | 277 | 32.9 |
|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 | 321 | 38.1 |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 418 | 49.6 |
|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 390 | 46.3 |

출신국적별로 제시된 10가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리핀 출신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교실'과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의 경우 각각 98.3%와 89.1%로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

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의 이용률에서도 일본(69.5%) 출신과 더불어 69.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상담 및 지원 서비스(69.7%')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중국 한족과 캄보디아 출신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 - 167▐ 출신국적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 | | | | | | | | |
|---|---|---|---|---|---|---|---|---|---|---|---|
| | | 사회보험 | 한국어교실 | 한국문화체험/교육 | 부부/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 법률상담/지원 | 의료상담/지원 | 성/가정폭력상담 | 취업상담/직업알선 | 자녀양육/교육지원 | 국적취득관련정보제공/지원 |
| 합계 | 842 | 52.5 | 91.8 | 77.2 | 47.4 | 39.7 | 50.0 | 32.9 | 38.1 | 49.6 | 46.3 |
| 중국조선족 | 72 | 59.7 | 73.6 | 69.4 | 51.4 | 45.8 | 58.3 | 41.7 | 50.0 | 55.6 | 56.9 |
| 중국한족 | 190 | 44.7 | 94.2 | 76.3 | 44.2 | 32.6 | 45.3 | 29.5 | 34.7 | 38.4 | 38.4 |
| 일본 | 82 | 69.5 | 86.6 | 73.2 | 32.9 | 19.5 | 40.2 | 14.6 | 14.6 | 47.6 | 23.2 |
| 베트남 | 252 | 44.8 | 96.8 | 75.0 | 49.6 | 41.7 | 47.2 | 37.3 | 39.3 | 54.4 | 50.8 |
| 필리핀 | 119 | 69.7 | 98.3 | 89.1 | 69.7 | 60.5 | 69.7 | 42.9 | 53.8 | 65.5 | 66.4 |
| 캄보디아 | 41 | 43.9 | 90.2 | 82.9 | 22.0 | 24.4 | 43.9 | 12.2 | 19.5 | 22.0 | 39.0 |
| 기타 | 86 | 50.0 | 83.7 | 76.7 | 39.5 | 41.9 | 46.5 | 33.7 | 41.9 | 48.8 | 39.5 |

이를 거주기간별로 분석해보면, '한국어교실'의 이용률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회보험'의 이용률은 거주기간이 5년~10년(72.6%), 3년~5년(61.5%), 10년 이상(6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거주기간이 3~5년인 경우는 '부부/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과 '의료상담/지원', '성폭력/가정폭력상담', '취업상담/직업알선', '국적취득관련 정보제공' 등에서 타 국적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는데, 이는 결혼기간이 3~5년인 경우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 '한국어교실'과 '사회보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표 Ⅳ - 168▐ 한국 거주기간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 | | | | | | | | |
|---|---|---|---|---|---|---|---|---|---|---|---|
| | | 사회보험 | 한국어 교실 | 한국 문화 체험/교육 | 부부/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 법률 상담/지원 | 의료 상담/지원 | 성/가정 폭력 상담 | 취업 상담/직업 알선 | 자녀 양육/교육 지원 | 국적 취득 관련 정보 제공/지원 |
| 합계 | 842 | 52.5 | 91.8 | 77.2 | 47.4 | 39.7 | 50.0 | 32.9 | 38.1 | 49.6 | 46.3 |
| 1년 미만 | 258 | 38.4 | 93.0 | 73.3 | 39.1 | 33.3 | 43.0 | 28.7 | 30.2 | 35.3 | 36.4 |
| 1년~3년 | 297 | 51.2 | 94.9 | 78.1 | 48.8 | 39.4 | 50.8 | 35.0 | 41.4 | 48.1 | 48.5 |
| 3년~5년 | 109 | 61.5 | 91.7 | 81.7 | 55.0 | 45.0 | 57.8 | 36.7 | 45.9 | 64.2 | 63.3 |
| 5년~10년 | 124 | 72.6 | 87.9 | 83.1 | 51.6 | 46.0 | 55.6 | 33.1 | 39.5 | 66.9 | 45.2 |
| 10년 이상 | 49 | 61.2 | 75.5 | 69.4 | 51.0 | 44.9 | 49.0 | 30.6 | 36.7 | 57.1 | 49.0 |
| 무응답 | 5 | 80.0 | 100.0 | 60.0 | 80.0 | 60.0 | 60.0 | 60.0 | 60.0 | 60.0 | 60.0 |

▌표 Ⅳ - 169▐ 결혼기간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 | | | | | | | | |
|---|---|---|---|---|---|---|---|---|---|---|---|
| | | 사회보험 | 한국어 교실 | 한국 문화 체험/교육 | 부부/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 법률 상담/지원 | 의료 상담/지원 | 성/가정 폭력 상담 | 취업 상담/직업 알선 | 자녀 양육/교육 지원 | 국적 취득 관련 정보 제공/지원 |
| 합계 | 842 | 52.5 | 91.8 | 77.2 | 47.4 | 39.7 | 50.0 | 32.9 | 38.1 | 49.6 | 46.3 |
| 1년 미만 | 190 | 40.5 | 95.3 | 75.3 | 38.9 | 33.7 | 43.2 | 29.5 | 31.6 | 34.2 | 35.8 |
| 1년~3년 | 343 | 46.1 | 93.6 | 75.8 | 46.4 | 36.7 | 48.7 | 32.1 | 37.6 | 45.8 | 45.8 |
| 3년~5년 | 121 | 66.9 | 90.1 | 81.8 | 58.7 | 51.2 | 57.0 | 39.7 | 45.5 | 62.8 | 62.0 |
| 5년 이상 | 180 | 67.8 | 85.6 | 79.4 | 50.0 | 43.3 | 55.0 | 32.8 | 41.1 | 64.4 | 47.8 |
| 무응답 | 8 | 50.0 | 100.0 | 62.5 | 62.5 | 50.0 | 50.0 | 50.0 | 37.5 | 50.0 | 50.0 |

### 2) 사회복지서비스 도움 정도

#### (1) 사회보험의 도움 정도

사회복지제도 및 지원서비스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의 도움 정도를 사회보험 이용 경험이 있는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5.3%('매우 도움이 된다' 19.5% + '대체로 도움이 된다' 25.8%)인 반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9.7%('전혀 도움이 안된다' 3.8% + '별로 도움이 안된다' 5.9%)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35.6%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도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하면, 평균 3.66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의 도움 정도를 나타났다.

출신국적별로 '사회보험'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이 70.2%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 출신에서 18.7%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도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분석해보면, 캄보디아(4.13점)와 일본(3.98점) 출신에서 가장 높은 도움 점수가 나왔고, 상대적으로 중국 조선족과 베트남 출신에서 가장 낮은 점수(3.49점)가 나왔다.

▌표 Ⅳ - 170▐ 출신국적별 사회보험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사회보험 도움의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442 | 3.8 | 5.9 | 9.7 | 22.9 | 25.8 | 19.5 | 45.3 | 22.2 | 3.66 |
| 중국조선족 | 43 | 4.7 | 14.0 | 18.7 | 23.3 | 30.2 | 18.6 | 48.8 | 9.3 | 3.49 |
| 중국한족 | 85 | 2.4 | 4.7 | 7.1 | 22.4 | 20.0 | 11.8 | 31.8 | 38.8 | 3.56 |
| 일본 | 57 | 1.8 | 1.8 | 3.6 | 21.1 | 42.1 | 28.1 | 70.2 | 5.3 | 3.98 |
| 베트남 | 113 | 6.2 | 5.3 | 11.5 | 27.4 | 17.7 | 18.6 | 36.3 | 24.8 | 3.49 |
| 필리핀 | 83 | 3.6 | 2.4 | 6.0 | 24.1 | 33.7 | 18.1 | 51.8 | 18.1 | 3.74 |
| 캄보디아 | 18 | 0.0 | 11.1 | 11.1 | 11.1 | 22.2 | 44.4 | 66.6 | 11.1 | 4.13 |
| 기타 | 43 | 4.7 | 11.6 | 16.3 | 16.3 | 18.6 | 18.6 | 37.2 | 30.2 | 3.50 |
| $x$ 2-검정 | $x$ 2=66.603, p-value=.000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결혼기간별로 '사회보험'의 도움 정도를 분석해 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결혼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도움 점수는 결혼기간이 5년 이상에서 3.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년~3년(3.62점), 3년~5년(3.51점), 1년 미만(3.5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71▐ 결혼기간별 사회보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사회보험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442 | 3.8 | 5.9 | 9.7 | 22.9 | 25.8 | 19.5 | 45.3 | 22.2 | 3.66 |
| 1년 미만 | 77 | 3.9 | 6.5 | 10.4 | 23.4 | 13.0 | 16.9 | 29.9 | 36.4 | 3.51 |
| 1년~3년 | 158 | 3.2 | 5.7 | 8.9 | 24.7 | 21.5 | 17.7 | 39.2 | 27.2 | 3.62 |
| 3년~5년 | 81 | 6.2 | 8.6 | 14.8 | 27.2 | 25.9 | 19.8 | 45.7 | 12.3 | 3.51 |
| 5년 이상 | 122 | 3.3 | 4.1 | 7.4 | 17.2 | 39.3 | 23.0 | 62.3 | 13.1 | 3.86 |
| 무응답 | 4 | 0.0 | 0.0 | 0.0 | 25.0 | 25.0 | 25.0 | 50.0 | 25.0 | 4.00 |
| $x$ 2-검정 | $x$ 2=39.099, p-value=.006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 (2) 한국어교실 도움 정도

'한국어교실'의 도움 정도를 한국어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7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3.8%('매우 도움이 된다" 55.2% + '대체로 도움이 된다' 28.6%)인 반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2.7%('전혀 도움이 안된다' 0.6% + '별로 도움이 안된다' 2.1%)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교실'의 도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평균 4.45점으로 응답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출신국적별로 '한국어교실'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이 97.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일본 출신에서 7.0%로 많았다. '한국어교실'의 도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분석해보면, 역시 캄보디아(4.58점) 출신에서 가장 높은 도움 점수가 나왔고, 상대적으로 중국 조선족 출신에서 가장 낮은 점수(4.22점)가 나왔다.

▌표 Ⅳ - 172▐ 출신국적별 한국어교실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한국어교실의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773 | 0.6 | 2.1 | 2.7 | 6.9 | 28.6 | 55.2 | 83.8 | 6.6 | 4.45 |
| 중국조선족 | 53 | 0.0 | 1.9 | 1.9 | 15.1 | 37.7 | 39.6 | 77.3 | 5.7 | 4.22 |
| 중국한족 | 179 | 0.6 | 0.6 | 1.2 | 6.1 | 31.3 | 52.5 | 83.8 | 8.9 | 4.48 |
| 일본 | 71 | 0.0 | 7.0 | 7.0 | 5.6 | 28.2 | 54.9 | 83.1 | 4.2 | 4.37 |
| 베트남 | 244 | 1.2 | 1.6 | 2.8 | 5.7 | 24.6 | 59.0 | 83.6 | 7.8 | 4.50 |
| 필리핀 | 117 | 0.9 | 0.9 | 1.8 | 7.7 | 28.2 | 59.8 | 88.0 | 2.6 | 4.49 |
| 캄보디아 | 37 | 0.0 | 0.0 | 0.0 | 0.0 | 40.5 | 56.8 | 97.3 | 2.7 | 4.58 |
| 기타 | 72 | 0.0 | 5.6 | 5.6 | 9.7 | 23.6 | 52.8 | 76.4 | 8.3 | 4.35 |
| $x$ 2-검정 | $x$ 2=45.251, p-value=.037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 (3)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의 도움 정도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의 도움 정도를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 이용 경험이 있는 6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6.8%('매우 도움이 된다' 24.8% + '대체로 도움이 된다' 42.0%)인 반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3.2%('전혀 도움이 안된다' 1.2% + '별로 도움이 안된다' 2.0%)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63.6% 높게 나타났다.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의 도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평균 4.01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로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이 88.2%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의 도움 점수는 캄보디아 출신에서 4.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 출신(4.06점), 베트남 출신(4.04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73▐ 출신국적별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의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650 | 1.2 | 2.0 | 3.2 | 16.3 | 42.0 | 24.8 | 66.8 | 13.7 | 4.01 |
| 중국조선족 | 50 | 4.0 | 2.0 | 6.0 | 24.0 | 46.0 | 16.0 | 62.0 | 8.0 | 3.74 |
| 중국한족 | 145 | 0.7 | 1.4 | 2.1 | 18.6 | 38.6 | 22.8 | 61.4 | 17.9 | 3.99 |
| 일본 | 60 | 0.0 | 3.3 | 3.3 | 15.0 | 53.3 | 20.0 | 73.3 | 8.3 | 3.98 |
| 베트남 | 189 | 1.6 | 1.6 | 3.2 | 12.2 | 42.3 | 23.3 | 65.6 | 19.0 | 4.04 |
| 필리핀 | 106 | 0.9 | 3.8 | 4.7 | 18.9 | 35.8 | 34.9 | 70.7 | 5.7 | 4.06 |
| 캄보디아 | 34 | 0.0 | 0.0 | 0.0 | 8.8 | 50.0 | 38.2 | 88.2 | 2.9 | 4.30 |
| 기타 | 66 | 1.5 | 1.5 | 3.0 | 18.2 | 40.9 | 21.2 | 62.1 | 16.7 | 3.95 |
| $x$ 2-검정 | $x$ 2=44.642, p-value=.042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 (4)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를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3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8.4%('매우 도움이 된다' 16.3% + '대체로 도움이 된다' 22.1%)인 반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7.6%('전혀 도움이 안된다' 2.3% + '별로 도움이 안된다' 4.3%)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30.8% 높게 나타났다.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하면, 평균 3.63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높은 도움 정도를 나타냈다.

출신국적별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를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필리핀 출신이 49.4%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도움 점수는 역시 베트남 출신에서 3.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 출신(3.74점), 일본 출신(3.57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74▐ 출신국적별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399 | 2.3 | 4.3 | 6.6 | 27.8 | 22.1 | 16.3 | 38.4 | 27.3 | 3.63 |
| 중국조선족 | 37 | 2.7 | 8.1 | 10.8 | 35.1 | 18.9 | 18.9 | 37.8 | 16.2 | 3.52 |
| 중국한족 | 84 | 3.6 | 1.2 | 4.8 | 32.1 | 17.9 | 10.7 | 28.6 | 34.5 | 3.47 |
| 일본 | 27 | 0.0 | 3.7 | 3.7 | 37.0 | 25.9 | 11.1 | 37.0 | 22.2 | 3.57 |
| 베트남 | 125 | 1.6 | 2.4 | 4.0 | 24.8 | 17.6 | 22.4 | 40.0 | 31.2 | 3.83 |
| 필리핀 | 83 | 2.4 | 2.4 | 4.8 | 28.9 | 30.1 | 19.3 | 49.4 | 16.9 | 3.74 |
| 캄보디아 | 9 | 0.0 | 11.1 | 11.1 | 11.1 | 44.4 | 0.0 | 44.4 | 33.3 | 3.50 |
| 기타 | 34 | 2.9 | 17.6 | 20.5 | 14.7 | 23.5 | 5.9 | 29.4 | 35.3 | 3.18 |
| $x$ 2-검정 | $x$ 2=51.860, p-value=.008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결혼기간별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결혼기간이 5년 이상에서 42.2%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년 미만에서 41.9%로 많아 결혼초기와 결혼기간이 긴 외국인 배우자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3~5년에서는 '도움이 안된다(9.8%)'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고 도움 점수에서 가장 낮은 3.52점으로 조사되어 이 기간에 있는 응답자들이 느낀 도움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표 Ⅳ - 175▐ 결혼기간별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399 | 2.3 | 4.3 | 6.6 | 27.8 | 22.1 | 16.3 | 38.4 | 27.3 | 3.63 |
| 1년 미만 | 74 | 2.7 | 0.0 | 2.7 | 20.3 | 20.3 | 21.6 | 41.9 | 35.1 | 3.90 |
| 1년~3년 | 159 | 1.9 | 5.0 | 6.9 | 25.2 | 20.1 | 15.1 | 35.2 | 32.7 | 3.62 |
| 3년~5년 | 71 | 4.2 | 5.6 | 9.8 | 36.6 | 18.3 | 19.7 | 38.0 | 15.5 | 3.52 |
| 5년 이상 | 90 | 1.1 | 5.6 | 6.7 | 31.1 | 30.0 | 12.2 | 42.2 | 20.0 | 3.58 |
| 무응답 | 5 | 0.0 | 0.0 | 0.0 | 40.0 | 20.0 | 0.0 | 20.0 | 40.0 | 3.33 |
| $x$ 2-검정 | $x$ 2=26.909, p-value=.138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 (5) 법률상담 및 지원 도움 정도

'법률상담 및 지원'의 도움 정도를 법률상담 및 지원 이용 경험이 있는 3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2.3%('매우 도움이 된다' 13.5% + '대체로 도움이 된다' 19.8%)인 반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11.4%('전혀 도움이 안된다' 3.0% + '별로 도움이 안된다' 8.4%)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도움이 안된다는 비율보다 20.9% 높게 나타났다. '법률상담 및 지원'의 도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3.48점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로 '법률상담 및 지원의 도움 정도'를 분석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이 43.9%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 출신에서 21.2%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 및 지원'의 도움 점수는 역시 베트남 출신에서 3.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도움 점수가 나타난 집단은 캄보디아(3.00점) 출신이었다.

▌표 Ⅳ - 176▐ 출신국적별 법률상담 및 지원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법률상담 및 지원의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334 | 3.0 | 8.4 | 11.4 | 23.4 | 19.8 | 13.5 | 33.3 | 32.0 | 3.48 |
| 중국조선족 | 33 | 3.0 | 18.2 | 21.2 | 30.3 | 18.2 | 12.1 | 30.3 | 18.2 | 3.22 |
| 중국한족 | 62 | 1.6 | 1.6 | 3.2 | 19.4 | 12.9 | 9.7 | 22.6 | 54.8 | 3.61 |
| 일본 | 16 | 0.0 | 6.3 | 6.3 | 31.3 | 18.8 | 6.3 | 25.1 | 37.5 | 3.40 |
| 베트남 | 105 | 2.9 | 4.8 | 7.7 | 15.2 | 22.9 | 21.0 | 43.9 | 33.3 | 3.81 |
| 필리핀 | 72 | 2.8 | 9.7 | 12.5 | 36.1 | 22.2 | 13.9 | 36.1 | 15.3 | 3.41 |
| 캄보디아 | 10 | 0.0 | 20.0 | 20.0 | 40.0 | 20.0 | 0.0 | 20.0 | 20.0 | 3.00 |
| 기타 | 36 | 8.3 | 16.7 | 25.0 | 13.9 | 19.4 | 5.6 | 25.0 | 36.1 | 2.96 |
| $x$ 2-검정 | $x$ 2=60.480, p-value=.001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 (6) 의료상담 및 지원 도움 정도

사회복지제도 및 지원서비스 중 '의료상담 및 지원(임신 및 출산 지원 포함)'의 도움 정도를 의료상담 및 지원 이용 경험이 있는 4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3.2%('매우 도움이 된다' 19.7% + '대체로 도움이 된다' 23.5%)인 반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9.2%('전혀 도움이 안된다' 2.1% + '별로 도움이 안된다' 7.1%)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도움이 안된다는 비율보다 34.0% 높게 나타났다. '의료상담 및 지원'의 도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평균 3.67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의 도움 정도를 나타냈다.

출신국적별로 '의료상담 및 지원'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이 63.7%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상담 및 지원'의 도움 점수는 일본 출신에서 3.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3.78점) 출신, 캄보디아(3.75점) 출신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77▐ 출신국적별 의료상담 및 지원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의료상담 및 지원의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421 | 2.1 | 7.1 | 9.2 | 24.7 | 23.5 | 19.7 | 43.2 | 22.8 | 3.67 |
| 중국조선족 | 42 | 2.4 | 9.5 | 11.9 | 31.0 | 31.0 | 16.7 | 47.7 | 9.5 | 3.55 |
| 중국한족 | 86 | 2.3 | 2.3 | 4.6 | 25.6 | 17.4 | 16.3 | 33.7 | 36.0 | 3.67 |
| 일본 | 33 | 0.0 | 3.0 | 3.0 | 15.2 | 45.5 | 18.2 | 63.7 | 18.2 | 3.96 |
| 베트남 | 119 | 1.7 | 6.7 | 8.4 | 21.8 | 21.0 | 23.5 | 44.5 | 25.2 | 3.78 |
| 필리핀 | 83 | 2.4 | 8.4 | 10.8 | 32.5 | 19.3 | 21.7 | 41.0 | 15.7 | 3.59 |
| 캄보디아 | 18 | 0.0 | 11.1 | 11.1 | 27.8 | 22.2 | 27.8 | 50.0 | 11.1 | 3.75 |
| 기타 | 40 | 5.0 | 15.0 | 20.0 | 15.0 | 27.5 | 12.5 | 40.0 | 25.0 | 3.37 |
| $x$ 2-검정 | $x$ 2=44.016, p-value=.048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 (7)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의 도움 정도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의 도움 정도를 관련 경험이 있는 2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7.8%('매우 도움이 된다' 14.1% + '대체로 도움이 된다' 13.7%)인 반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9.1%('전혀 도움이 안된다' 2.2% + '별로 도움이 안된다' 6.9%)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도움이 안된다는 비율보다 18.7%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의 도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3.50점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로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의 도움 정도를 분석해 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이 35.1%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의

도움 점수는 역시 베트남 출신에서 3.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캄보디아 출신에서는 2.6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Ⅳ - 178▐ 출신국적별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의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277 | 2.2 | 6.9 | 9.1 | 24.5 | 13.7 | 14.1 | 27.8 | 38.6 | 3.50 |
| 중국조선족 | 30 | 0.0 | 13.3 | 13.3 | 40.0 | 13.3 | 13.3 | 26.6 | 20.0 | 3.33 |
| 중국한족 | 56 | 3.6 | 1.8 | 5.4 | 14.3 | 12.5 | 10.7 | 23.2 | 57.1 | 3.58 |
| 일본 | 12 | 0.0 | 8.3 | 8.3 | 25.0 | 8.3 | 0.0 | 8.3 | 58.3 | 3.00 |
| 베트남 | 94 | 3.2 | 6.4 | 9.6 | 21.3 | 16.0 | 19.1 | 35.1 | 34.0 | 3.63 |
| 필리핀 | 51 | 0.0 | 9.8 | 9.8 | 29.4 | 15.7 | 17.6 | 33.3 | 27.5 | 3.57 |
| 캄보디아 | 5 | 0.0 | 20.0 | 20.0 | 40.0 | 0.0 | 0.0 | 0.0 | 40.0 | 2.67 |
| 기타 | 29 | 3.4 | 3.4 | 6.8 | 27.6 | 10.3 | 6.9 | 17.2 | 48.3 | 3.27 |
| $x$ 2-검정 | $x$ 2=36.087, p-value=.205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 (8)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 도움 정도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의 도움 정도를 관련 경험이 있는 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5.8%('매우 도움이 된다' 17.1% + '대체로 도움이 된다' 18.7%)인 반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10.0%('전혀 도움이 안된다' 2.5% + '별로 도움이 안된다' 7.5%)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도움이 안된다는 비율보다 25.8%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의 도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3.60점이었다.

출신국적별로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필리핀 출신(43.8%)과 베트남 출신(43.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25.0%)에서 많았다.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의 도움 점수는 베트남 출신에서 3.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캄보디아 출신에서 2.6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 - 179▐ 출신국적별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의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321 | 2.5 | 7.5 | 10.0 | 21.2 | 18.7 | 17.1 | 35.8 | 33.0 | 3.60 |
| 중국조선족 | 36 | 2.8 | 16.7 | 19.5 | 27.8 | 22.2 | 13.9 | 36.1 | 16.7 | 3.33 |
| 중국한족 | 66 | 3.0 | 1.5 | 4.5 | 15.2 | 12.1 | 18.2 | 30.3 | 50.0 | 3.82 |
| 일본 | 12 | 0.0 | 16.7 | 16.7 | 8.3 | 16.7 | 0.0 | 16.7 | 58.3 | 3.00 |
| 베트남 | 99 | 1.0 | 5.1 | 6.1 | 19.2 | 17.2 | 26.3 | 43.5 | 31.3 | 3.91 |
| 필리핀 | 64 | 3.1 | 4.7 | 7.8 | 25.0 | 29.7 | 14.1 | 43.8 | 23.4 | 3.61 |
| 캄보디아 | 8 | 0.0 | 25.0 | 25.0 | 50.0 | 0.0 | 0.0 | 0.0 | 25.0 | 2.67 |
| 기타 | 36 | 5.6 | 13.9 | 19.5 | 22.2 | 16.7 | 8.3 | 25.0 | 33.3 | 3.13 |
| $x$ 2-검정 | $x$ 2=55.918, p-value=.003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이를 외국인의 거주기간별로 분석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거주기간이 3년~5년에서 43.8%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의 도움 점수는 1년 미만에서 3.9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그 도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80▐ 한국 거주기간별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의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321 | 2.5 | 7.5 | 10.0 | 21.2 | 18.7 | 17.1 | 35.8 | 33.0 | 3.60 |
| 1년 미만 | 79 | 0.0 | 5.1 | 5.1 | 12.7 | 12.7 | 19.0 | 31.7 | 50.6 | 3.92 |
| 1년~3년 | 117 | 2.6 | 9.4 | 12.0 | 18.8 | 17.1 | 20.5 | 37.6 | 31.6 | 3.64 |
| 3년~5년 | 48 | 2.1 | 8.3 | 10.4 | 31.3 | 27.1 | 16.7 | 43.8 | 14.6 | 3.56 |
| 5년~10년 | 45 | 4.4 | 6.7 | 11.1 | 28.9 | 22.2 | 8.9 | 31.1 | 28.9 | 3.34 |
| 10년 이상 | 19 | 10.5 | 0.0 | 10.5 | 21.1 | 26.3 | 10.5 | 36.8 | 31.6 | 3.38 |
| 무응답 | 13 | 0.0 | 15.4 | 15.4 | 30.8 | 15.4 | 15.4 | 30.8 | 23.1 | 3.40 |
| $x$ 2-검정 | $x$ 2=42.132, p-value=.017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 (9)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도움 정도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418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의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2.0%('매우 도움이 된다' 24.2% + '대체로 도움이 된다' 27.8%)인 반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6.7%('전혀 도움이 안된다' 1.9% + '별로 도움이 안된다' 4.8%)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45.3% 높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평균 3.89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출신국적별로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의 도움 정도를 분석해 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71.8%)에서 월등히 많았고, 반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 출신(15.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의 도움 점수는 일본 출신에서 4.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캄보디아 출신에서 3.29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Ⅳ - 181▐ 출신국적별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의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418 | 1.9 | 4.8 | 6.7 | 17.2 | 27.8 | 24.2 | 52.0 | 24.2 | 3.89 |
| 중국조선족 | 40 | 2.5 | 12.5 | 15.0 | 25.0 | 35.0 | 12.5 | 47.5 | 12.5 | 3.49 |
| 중국한족 | 73 | 1.4 | 0.0 | 1.4 | 19.2 | 16.4 | 15.1 | 31.5 | 47.9 | 3.84 |
| 일본 | 39 | 0.0 | 2.6 | 2.6 | 12.8 | 43.6 | 28.2 | 71.8 | 12.8 | 4.12 |
| 베트남 | 137 | 2.9 | 3.6 | 6.5 | 15.3 | 24.8 | 29.9 | 54.7 | 23.4 | 3.98 |
| 필리핀 | 78 | 1.3 | 5.1 | 6.4 | 17.9 | 28.2 | 30.8 | 59.0 | 16.7 | 3.98 |
| 캄보디아 | 9 | 0.0 | 11.1 | 11.1 | 33.3 | 33.3 | 0.0 | 33.3 | 22.2 | 3.29 |
| 기타 | 42 | 2.4 | 9.5 | 11.9 | 11.9 | 33.3 | 21.4 | 54.7 | 21.4 | 3.79 |
| $x$ 2-검정 | $x$ 2=61.057, p-value=.001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이를 거주기간별로 분석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주로 학령기 자녀를 둔 5년~10년(65.0%)과 10년 이상(64.3%)에서 가장 많았으며,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3년~5년(12.9%)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의 도움 점수는 10년 이상과 5~10년에서 각각 4.04점, 4.01점으로 높았으며, 역시 3~5년(3.71점)에서 그 도움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표 Ⅳ - 182▐ 한국 거주기간별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418 | 1.9 | 4.8 | 6.7 | 17.2 | 27.8 | 24.2 | 52.0 | 24.2 | 3.89 |
| 1년 미만 | 91 | 1.1 | 3.3 | 4.4 | 13.2 | 20.9 | 20.9 | 41.8 | 40.7 | 3.96 |
| 1년~3년 | 143 | 2.1 | 4.9 | 7.0 | 18.9 | 23.8 | 23.1 | 46.9 | 27.3 | 3.84 |
| 3년~5년 | 70 | 2.9 | 10.0 | 12.9 | 21.4 | 31.4 | 24.3 | 55.7 | 10.0 | 3.71 |
| 5년~10년 | 83 | 2.4 | 3.6 | 6.0 | 14.5 | 34.9 | 30.1 | 65.0 | 14.5 | 4.01 |
| 10년 이상 | 28 | 0.0 | 0.0 | 0.0 | 21.4 | 39.3 | 25.0 | 64.3 | 14.3 | 4.04 |
| 무응답 | 3 | 0.0 | 0.0 | 0.0 | 0.0 | 33.3 | 0.0 | 33.3 | 66.7 | 4.00 |
| $x$ 2-검정 | $x$ 2=41.767, p-value=.019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 (10)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도움 정도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의 도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국적취득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3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1.0%('매우 도움이 된다' 20.0% + '대체로 도움이 된다' 21.0%)인 반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7.5%('전혀 도움이 안된다' 2.6% + '별로 도움이 안된다' 4.9%)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33.5% 높게 나타났다.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의 도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보면, 평균 3.69점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경우 베트남 출신(51.6%)과 캄보디아(50.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의 도움 점수는 역시 베트남 출신에서 4.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캄보디아 출신에서 3.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 - 183▐ 출신국적별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의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390 | 2.6 | 4.9 | 7.5 | 25.4 | 21.0 | 20.0 | 41.0 | 26.2 | 3.69 |
| 중국조선족 | 41 | 0.0 | 7.3 | 7.3 | 43.9 | 22.0 | 14.6 | 36.6 | 12.2 | 3.50 |
| 중국한족 | 73 | 1.4 | 0.0 | 1.4 | 23.3 | 15.1 | 16.4 | 31.5 | 43.8 | 3.80 |
| 일본 | 19 | 0.0 | 0.0 | 0.0 | 26.3 | 31.6 | 0.0 | 31.6 | 42.1 | 3.55 |
| 베트남 | 128 | 2.3 | 4.7 | 7.0 | 17.2 | 18.0 | 33.6 | 51.6 | 24.2 | 4.00 |
| 필리핀 | 79 | 5.1 | 6.3 | 11.4 | 32.9 | 21.5 | 16.5 | 38.0 | 17.7 | 3.46 |
| 캄보디아 | 16 | 0.0 | 12.5 | 12.5 | 25.0 | 50.0 | 0.0 | 50.0 | 12.5 | 3.43 |
| 기타 | 34 | 5.9 | 8.8 | 14.7 | 20.6 | 23.5 | 11.8 | 35.3 | 29.4 | 3.38 |
| $x$ 2-검정 | $x$ 2=73.326, p-value=.000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이를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국적취득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인 3년~5년(46.4%)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 시기는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14.5%)에서도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의 도움 점수는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높아 한국 거주 초기에 외국인 배우자들의 국적취득 욕구와 관련 지원서비스의 필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184▐ 한국 거주기간별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의 도움 정도

| 구분 | 사례수 |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의 도움 정도(%)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도움이 안된다 | | | 그저 그렇다 | 도움이 된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별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390 | 2.6 | 4.9 | 7.5 | 25.4 | 21.0 | 20.0 | 41.0 | 26.2 | 3.69 |
| 1년 미만 | 94 | 1.1 | 2.1 | 3.2 | 16.0 | 18.1 | 22.3 | 40.4 | 40.4 | 3.98 |
| 1년~3년 | 144 | 2.1 | 5.6 | 7.7 | 24.3 | 20.1 | 22.2 | 42.3 | 25.7 | 3.74 |
| 3년~5년 | 69 | 5.8 | 8.7 | 14.5 | 29.0 | 23.2 | 23.2 | 46.4 | 10.1 | 3.55 |
| 5년~10년 | 56 | 3.6 | 5.4 | 9.0 | 32.1 | 25.0 | 12.5 | 37.5 | 21.4 | 3.48 |
| 10년 이상 | 24 | 0.0 | 0.0 | 0.0 | 45.8 | 20.8 | 8.3 | 29.1 | 25.0 | 3.50 |
| 무응답 | 3 | 0.0 | 0.0 | 0.0 | 0.0 | 33.3 | 0.0 | 33.3 | 66.7 | 4.00 |
| $x$ 2-검정 | $x$ 2=41.588, p-value=.020 | | | | | | | | | |

주 : 전혀 도움이 안된다 1점, 별로 도움이 안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 (11) 사회복지서비스 미 이용 사유

제시된 10가지의 사회복지서비스 중 한 가지라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26.2%)',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25.4%)'라는 이유 순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종류, 그것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와 집안일을 맡길 곳이 없어서'라는 이유도 13.1%를 차지했는데, 외국인 배우자의 대다수가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상황을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기관의 직원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서'가 9.7%로 나타났는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히 안 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통역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Ⅳ - 185 ▌ 사회복지서비스 미 이용 이유(복수응답)

| 구분 (n=842) | 사례수 | 비율(%) |
|---|---|---|
|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 505 | 60.0 |
|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 22 | 2.6 |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 221 | 26.2 |
|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 67 | 8.0 |
|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 214 | 25.4 |
|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 35 | 4.2 |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 | 57 | 6.8 |
| 기관의 직원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 82 | 9.7 |
| 가족이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반대해서 | 8 | 1.0 |
| 자녀와 집안일을 맡길 곳이 없어서 | 110 | 13.1 |
| 기타 | 20 | 2.4 |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 살펴보면,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라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82.9%)과 일본 출신(78.0%)에서 많았으며,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은 중국 한족 출신(35.8%)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라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39.0%)과 중국 한족 출신(37.4%)에게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86▐ 출신국적별 사회복지서비스 미 이용 이유(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사회복지서비스 미 이용 이유(%) | | | | | | | | | | |
|---|---|---|---|---|---|---|---|---|---|---|---|---|
| | | 서비스와 제도를 몰라서 |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 제공 기관을 몰라서 | 필요 하지 않아서 |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 비용이 부족 해서 | 시간이 부족 해서 | 기관 직원과 의사 소통이 어려워서 | 가족이 반대 해서 | 자녀와 집안 일을 맡길 곳이 없어서 | 기타 |
| 합계 | 842 | 60.0 | 2.6 | 26.2 | 8.0 | 25.4 | 4.2 | 6.8 | 9.7 | 1.0 | 13.1 | 2.4 |
| 중국조선족 | 72 | 48.6 | 2.8 | 15.3 | 4.2 | 20.8 | 4.2 | 4.2 | 4.2 | 0.0 | 8.3 | 2.8 |
| 중국한족 | 190 | 64.7 | 3.2 | 35.8 | 3.2 | 37.4 | 5.8 | 3.7 | 9.5 | 0.5 | 8.4 | 4.7 |
| 일본 | 82 | 78.0 | 1.2 | 28.0 | 15.9 | 25.6 | 1.2 | 11.0 | 6.1 | 0.0 | 32.9 | 0.0 |
| 베트남 | 252 | 52.4 | 2.8 | 31.3 | 4.0 | 21.4 | 4.8 | 3.2 | 11.5 | 1.2 | 11.9 | 2.4 |
| 필리핀 | 119 | 60.5 | 1.7 | 6.7 | 15.1 | 14.3 | 0.8 | 5.9 | 5.9 | 0.8 | 8.4 | 1.7 |
| 캄보디아 | 41 | 82.9 | 2.4 | 31.7 | 12.2 | 39.0 | 2.4 | 12.2 | 19.5 | 4.9 | 9.8 | 0.0 |
| 기타 | 86 | 52.3 | 3.5 | 22.1 | 14.0 | 23.3 | 7.0 | 20.9 | 14.0 | 1.2 | 19.8 | 1.2 |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기간별로 사회복지서비스 미 이용 이유를 분석해보면,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오히려 10년 이상에서 73.5%로 가장 많이 나타나 한국에서의 거주기간과는 무관하게 관련 정보의 무지와 접근성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향은 서비스 이용방법과 절차, 제공기관을 모른다는 응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 - 187▐ 한국 거주기간별 사회복지서비스 미 이용 이유(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사회복지서비스 미 이용 이유(%) | | | | | | | | | | |
|---|---|---|---|---|---|---|---|---|---|---|---|---|
| | | 제도를 몰라서 | 원하는서비스가 없어서 | 제공기관을몰라서 | 서비스 불필요 |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 이용 비용 부족 | 이용 시간 부족 | 기관 직원과의 의사 소통 부족 | 가족이 반대 해서 | 자녀 집안일을 맡길 곳이 없음 | 기타 |
| 합계 | 842 | 60.0 | 2.6 | 26.2 | 8.0 | 25.4 | 4.2 | 6.8 | 9.7 | 1.0 | 13.1 | 2.4 |
| 1년 미만 | 258 | 65.1 | 3.9 | 30.2 | 6.2 | 27.9 | 4.3 | 4.3 | 10.1 | 1.2 | 2.7 | 3.5 |
| 1년~3년 | 297 | 58.9 | 1.7 | 24.9 | 8.8 | 25.6 | 4.7 | 6.4 | 13.1 | 1.0 | 12.8 | 2.7 |
| 3년~5년 | 109 | 50.5 | 0.0 | 26.6 | 3.7 | 22.9 | 5.5 | 5.5 | 4.6 | 0.9 | 17.4 | 0.0 |
| 5년~10년 | 124 | 55.6 | 5.6 | 19.4 | 10.5 | 19.4 | 2.4 | 12.9 | 8.1 | 0.0 | 25.8 | 2.4 |
| 10년 이상 | 49 | 73.5 | 0.0 | 30.6 | 16.3 | 32.7 | 2.0 | 8.2 | 4.1 | 2.0 | 26.5 | 0.0 |
| 무응답 | 5 | 40.0 | 0.0 | 20.0 | 0.0 | 20.0 | 0.0 | 20.0 | 0.0 | 0.0 | 20.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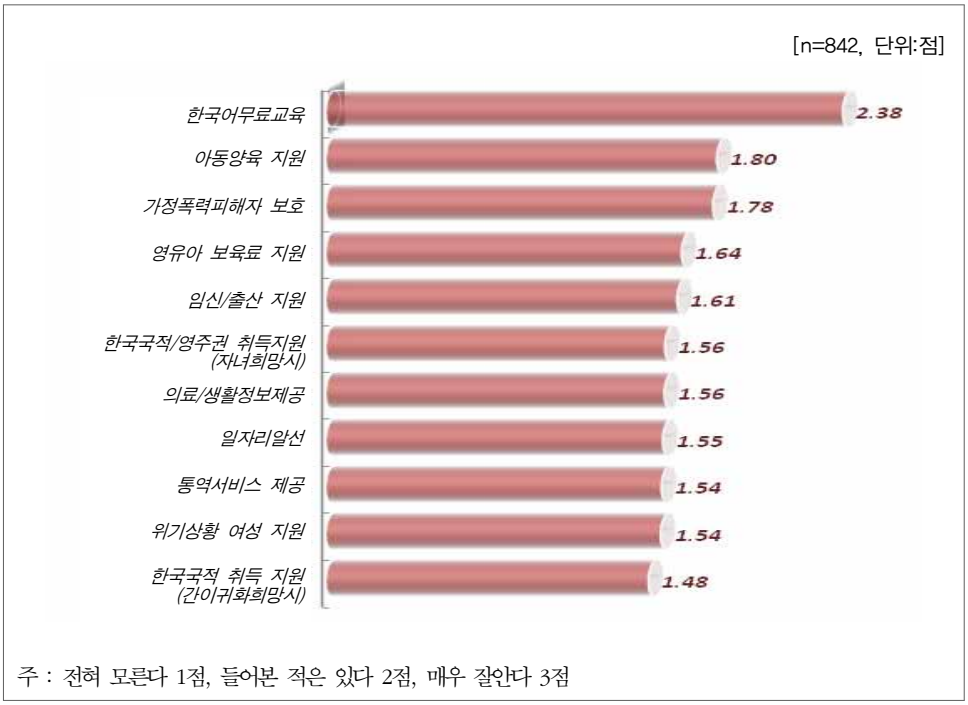
## 4. 국가기관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외국인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국적취득,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도(11가지)를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 3점 척도로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항목에서만 인지도가 2.38점으로 나타나 다른 서비스 제도보다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그 외의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대다수가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한국인 배우자들은 전화 통역서비스와 방문교육지도사업, 한국국적 취득에 관한 제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회복지 지원서비스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정보매체로서 한국인 배우자들의 도움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제시된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들 가운데는 한국인 배우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즉 전화 통역서비스와 방문교육지도사업, 한국국적 취득에 관한 제도는 외국인 배우자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직결된 서비스와 제도인 만큼 광범위하고 접근성 높은 홍보활동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는 필리핀과 일본 출신이 제시된 서비스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반면,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의 경우는 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혼으로 인한 이주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필리핀 출신이 생계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여성긴급전화 서비스, 전화통역서비스, 국적취득 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그리고 캄보디아 출신은 이러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교육지도사업과 보육료 지원 등에서도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본 조사의 응답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안에서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지도를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서비스 제도권 밖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의 무지와 정보 부족, 그로인한 인권의 사각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Ⅳ - 29〉 국가기관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1) 일자리 알선 제도에 대한 인지도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한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48.2%로 나타나 이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41.5%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는 응답자의 20.3%가 이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외국인 배우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88▐ 일자리 알선 제도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매우 잘 안다 | 56 | 6.7 | 36 | 20.3 |
| 들어본 적은 있다 | 312 | 37.1 | 92 | 52.0 |
| 전혀 모른다 | 406 | 48.2 | 44 | 24.9 |
| 무응답 | 68 | 8.1 | 5 | 2.8 |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일자리 알선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해 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17.1%)과 중국 조선족 출신(16.7%)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60.3%)과 일본 출신(45.1%)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3~5년(11%)에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년 미만에서 6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189▐ 출신국적별 일자리 알선 인지도

| 구분 | 사례수 | 일자리 알선 인지도(%) | | | |
|---|---|---|---|---|---|
| | | 매우 잘 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6.7 | 37.1 | 48.2 | 8.1 |
| 중국조선족 | 72 | 16.7 | 50.0 | 29.2 | 4.2 |
| 중국한족 | 190 | 2.6 | 34.7 | 52.1 | 10.5 |
| 일본 | 82 | 3.7 | 48.8 | 45.1 | 2.4 |
| 베트남 | 252 | 4.4 | 25.8 | 60.3 | 9.5 |
| 필리핀 | 119 | 9.2 | 45.4 | 35.3 | 10.1 |
| 캄보디아 | 41 | 17.1 | 39.0 | 43.9 | 0.0 |
| 기타 | 86 | 8.1 | 40.7 | 43.0 | 8.1 |
| $x$ 2-검정 | $x$ 2=73.671, p-value=.000 | | | | |

### 2) 한국어 무료 교육에 대한 인지도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한국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46.6%인 반면, '전혀 모른다'는 11.3%에 불과하여 이 제도에 대한 외국인 배우자의 인지도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는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이 48.6%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의 인지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 - 190▐ 한국어 무료 교육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매우 잘 안다 | 392 | 46.6 | 86 | 48.6 |
| 들어본 적은 있다 | 303 | 36.0 | 75 | 42.4 |
| 전혀 모른다 | 95 | 11.3 | 12 | 6.8 |
| 무응답 | 52 | 6.2 | 4 | 2.3 |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한국어 무료 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에서 6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캄보디아와 필리핀 출신에서 각각 61.0%, 52.9%로 다른 출신국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거주기간별로는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의 경우 3년~5년에서 53.2%로 가장 많았다.

▌표 Ⅳ - 191▐ 출신국적별 한국어 무료 교육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사례수 | 한국어 무료 교육에 대한 인지도(%) | | | |
|---|---|---|---|---|---|
| | | 매우 잘 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46.6 | 36.0 | 11.3 | 6.2 |
| 중국조선족 | 72 | 36.1 | 40.3 | 19.4 | 4.2 |
| 중국한족 | 190 | 45.8 | 37.4 | 7.9 | 8.9 |
| 일본 | 82 | 62.2 | 25.6 | 11.0 | 1.2 |
| 베트남 | 252 | 42.5 | 39.7 | 11.1 | 6.7 |
| 필리핀 | 119 | 52.9 | 31.9 | 8.4 | 6.7 |
| 캄보디아 | 41 | 61.0 | 31.7 | 7.3 | 0.0 |
| 기타 | 86 | 38.4 | 36.0 | 18.6 | 7.0 |
| $x$ 2-검정 | $x$ 2=36.306, p-value=.006 | | | | |

### 3) 생계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에 대한 인지도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생계, 의료지원 및 생활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이 10.5%에 불과한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51.0%로 나타나 10명 중 1명만이 이러한 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7.5%로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다소 그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0.1%인 것을 감안한다면 대다수의 한국인 배우자들 역시 이 서비스를 잘 알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Ⅳ - 192▐ 생계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매우 잘 안다 | 88 | 10.5 | 31 | 17.5 |
| 들어본 적은 있다 | 251 | 29.8 | 71 | 40.1 |
| 전혀 모른다 | 429 | 51.0 | 70 | 39.5 |
| 무응답 | 74 | 8.8 | 5 | 2.8 |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생계, 의료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필리핀 출신에서 25.2%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러한 서비스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에서 70.7%로 타 국적출신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거주기간별로 생계, 의료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3년~5년 거주한 경우에서 17.4%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년 미만에서 62.0%로 매우 많았다.

▌표 Ⅳ - 193▌ 출신국적별 생계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사례수 | 생계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에 대한 인지도(%) | | | |
|---|---|---|---|---|---|
| | | 매우 잘 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10.5 | 29.8 | 51.0 | 8.8 |
| 중국조선족 | 72 | 6.9 | 41.7 | 44.4 | 6.9 |
| 중국한족 | 190 | 5.8 | 23.7 | 58.4 | 12.1 |
| 일본 | 82 | 11.0 | 40.2 | 46.3 | 2.4 |
| 베트남 | 252 | 8.3 | 24.6 | 57.9 | 9.1 |
| 필리핀 | 119 | 25.2 | 38.7 | 25.2 | 10.9 |
| 캄보디아 | 41 | 4.9 | 22.0 | 70.7 | 2.4 |
| 기타 | 86 | 11.6 | 30.2 | 50.0 | 8.1 |
| $x$ 2-검정 | $x$ 2=80.152, p-value=.000 | | | | |

###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4.4%에 불과한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34.7%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는 응답자의 28.8%가 '매우 잘 안다'고 응답했고, 51.4%가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하여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19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매우 잘 안다 | 121 | 14.4 | 51 | 28.8 |
| 들어본 적은 있다 | 360 | 42.8 | 91 | 51.4 |
| 전혀 모른다 | 292 | 34.7 | 31 | 17.5 |
| 무응답 | 69 | 8.2 | 4 | 2.3 |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필리핀 출신에서 32.8%로 타 국적출신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에서 각각 44.4%, 41.5%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기간별로 인지도를 살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많았던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195▐ 출신국적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사례수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 | | |
|---|---|---|---|---|---|
| | | 매우 잘 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14.4 | 42.8 | 34.7 | 8.2 |
| 중국조선족 | 72 | 19.4 | 50.0 | 25.0 | 5.6 |
| 중국한족 | 190 | 7.9 | 48.4 | 32.6 | 11.1 |
| 일본 | 82 | 13.4 | 45.1 | 39.0 | 2.4 |
| 베트남 | 252 | 10.7 | 36.1 | 44.4 | 8.7 |
| 필리핀 | 119 | 32.8 | 37.0 | 21.0 | 9.2 |
| 캄보디아 | 41 | 4.9 | 53.7 | 41.5 | 0.0 |
| 기타 | 86 | 15.1 | 44.2 | 30.2 | 10.5 |
| $x$ 2-검정 | $x$ 2=73.977, p-value=.000 | | | | |

### 5) 여성긴급전화(1366)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을 지원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한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51.5%로 나타나 이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이 18.1%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2배 가량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32.2%로 나타나 '매우 잘 안다'는 응답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196▐ 여성긴급전화에서 위기상황 여성 지원 인지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매우 잘 안다 | 79 | 9.4 | 32 | 18.1 |
| 들어본 적은 있다 | 256 | 30.4 | 80 | 45.2 |
| 전혀 모른다 | 434 | 51.5 | 57 | 32.2 |
| 무응답 | 73 | 8.7 | 8 | 4.5 |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여성긴급전화(1366)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해 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필리핀 출신에서 20.2%로 타 국적출신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에서 62.2%로 많았다.

▌표 Ⅳ - 197▐ 출신국적별 여성긴급전화(1366)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사례수 | 여성긴급전화(1366)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 | |
|---|---|---|---|---|---|
| | | 매우 잘 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9.4 | 30.4 | 51.5 | 8.7 |
| 중국조선족 | 72 | 12.5 | 31.9 | 50.0 | 5.6 |
| 중국한족 | 190 | 4.7 | 28.4 | 55.3 | 11.6 |
| 일본 | 82 | 4.9 | 30.5 | 62.2 | 2.4 |
| 베트남 | 252 | 8.3 | 30.2 | 52.4 | 9.1 |
| 필리핀 | 119 | 20.2 | 33.6 | 35.3 | 10.9 |
| 캄보디아 | 41 | 4.9 | 36.6 | 58.5 | 0.0 |
| 기타 | 86 | 11.6 | 26.7 | 51.2 | 10.5 |
| $x$ 2-검정 | $x$ 2=44.727, p-value=.000 | | | | |

### 6) 보건소의 임신·출산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보건소에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도우미 파견사업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한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47.3%로 나타나 모른다는 응답이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이 외국인 배우자의 그것보다 2배 이상(24.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것으로로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들어본 적은 있다'는 응답도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32.2%인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38.4%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간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198▐ 보건소의 임신·출산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매우 잘 안다 | 101 | 12.0 | 43 | 24.3 |
| 들어본 적은 있다 | 271 | 32.2 | 68 | 38.4 |
| 전혀 모른다 | 398 | 47.3 | 60 | 33.9 |
| 무응답 | 72 | 8.6 | 6 | 3.4 |

이를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필리핀(26.1%)과 일본(22.0%) 출신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에서 6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199▐ 출신국적별 보건소의 임신·출산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사례수 | 보건소의 임신·출산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 | |
|---|---|---|---|---|---|
| | | 매우 잘 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12.0 | 32.2 | 47.3 | 8.6 |
| 중국조선족 | 72 | 13.9 | 38.9 | 40.3 | 6.9 |
| 중국한족 | 190 | 4.2 | 28.9 | 55.8 | 11.1 |
| 일본 | 82 | 22.0 | 43.9 | 31.7 | 2.4 |
| 베트남 | 252 | 9.5 | 29.0 | 51.6 | 9.9 |
| 필리핀 | 119 | 26.1 | 31.9 | 32.8 | 9.2 |
| 캄보디아 | 41 | 4.9 | 29.3 | 63.4 | 2.4 |
| 기타 | 86 | 9.3 | 33.7 | 48.8 | 8.1 |
| $x$ 2-검정 | $x$ 2=69.901, p-value=.000 | | | | |

### 7)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46.7%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여 모른다는 응답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200▐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매우 잘 안다 | 114 | 13.5 | 48 | 27.1 |
| 들어본 적은 있다 | 258 | 30.6 | 63 | 35.6 |
| 전혀 모른다 | 393 | 46.7 | 60 | 33.9 |
| 무응답 | 77 | 9.1 | 6 | 3.4 |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에서 3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 출신에서 31.9%로 많았다.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에서 73.2%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한족과 베트남 출신에서도 각각 58.9%와 54.4%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를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201▐ 출신국적별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사례수 |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 | | |
|---|---|---|---|---|---|
| | | 매우 잘 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13.5 | 30.6 | 46.7 | 9.1 |
| 중국조선족 | 72 | 15.3 | 34.7 | 41.7 | 8.3 |
| 중국한족 | 190 | 3.2 | 25.3 | 58.9 | 12.6 |
| 일본 | 82 | 37.8 | 35.4 | 24.4 | 2.4 |
| 베트남 | 252 | 5.6 | 29.8 | 54.4 | 10.3 |
| 필리핀 | 119 | 31.9 | 40.3 | 19.3 | 8.4 |
| 캄보디아 | 41 | 4.9 | 22.0 | 73.2 | 0.0 |
| 기타 | 86 | 14.0 | 27.9 | 47.7 | 10.5 |
| $x$ 2-검정 | $x$ 2=157.207, p-value=.000 | | | | |

### 8) 전화 통역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전화를 이용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한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50.4%로 매우 많아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이 지원서비스에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즉 '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0.2%인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52.5%로 매우 많아 이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202▐ 전화 통역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매우 잘 안다 | 75 | 8.9 | 18 | 10.2 |
| 들어본 적은 있다 | 264 | 31.4 | 57 | 32.2 |
| 전혀 모른다 | 424 | 50.4 | 93 | 52.5 |
| 무응답 | 79 | 9.4 | 9 | 5.1 |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전화 통역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필리핀 출신에서 1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캄보디아(56.1%)와 중국 한족(55.3%), 베트남(54.8%) 출신의 순으로 많았다. 거주기간별로는 전화 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3년~5년에서 1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203▐ 출신국적별 전화 통역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사례수 | 전화 통역비스에 대한 인지도(%) | | | |
|---|---|---|---|---|---|
| | | 매우 잘 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8.9 | 31.4 | 50.4 | 9.4 |
| 중국조선족 | 72 | 11.1 | 36.1 | 45.8 | 6.9 |
| 중국한족 | 190 | 2.1 | 30.5 | 55.3 | 12.1 |
| 일본 | 82 | 6.1 | 46.3 | 45.1 | 2.4 |
| 베트남 | 252 | 9.5 | 25.0 | 54.8 | 10.7 |
| 필리핀 | 119 | 16.8 | 35.3 | 37.0 | 10.9 |
| 캄보디아 | 41 | 14.6 | 29.3 | 56.1 | 0.0 |
| 기타 | 86 | 9.3 | 29.1 | 51.2 | 10.5 |
| $x$ 2-검정 | $x$ 2=49.460, p-value=.000 | | | | |

### 9) 방문교육지도사업에 대한 인지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아동양육을 지원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8.3%인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그 2배에 해당하는 36.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인 배우자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즉 '매우 잘 안다' 31.6%, '들어본 적은 있다' 35.6%, '전혀 모른다' 30.5%로 나타나 3명 중 1명은 이 지원사업에 대해 아는 것을 조사되었다.

▌표 Ⅳ - 204▐ 방문교육지도사업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매우 잘 안다 | 154 | 18.3 | 56 | 31.6 |
| 들어본 적은 있다 | 305 | 36.2 | 63 | 35.6 |
| 전혀 모른다 | 310 | 36.8 | 54 | 30.5 |
| 무응답 | 73 | 8.7 | 4 | 2.3 |

이를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에서 45.1%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출신에서도 36.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에서 56.1%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한족과 중국 조선족 출신에서도 각각 47.9%와 44.4%로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기간별로 인지도를 살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205▐ 출신국적별 방문교육지도사업에 대한 인지도

| 구분 | 사례수 | 방문교육지도사업에 대한 인지도(%) | | | |
|---|---|---|---|---|---|
| | | 매우 잘 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18.3 | 36.2 | 36.8 | 8.7 |
| 중국조선족 | 72 | 12.5 | 36.1 | 44.4 | 6.9 |
| 중국한족 | 190 | 6.8 | 34.2 | 47.9 | 11.1 |
| 일본 | 82 | 45.1 | 32.9 | 19.5 | 2.4 |
| 베트남 | 252 | 11.5 | 42.1 | 36.1 | 10.3 |
| 필리핀 | 119 | 36.1 | 37.0 | 17.6 | 9.2 |
| 캄보디아 | 41 | 14.6 | 29.3 | 56.1 | 0.0 |
| 기타 | 86 | 19.8 | 29.1 | 41.9 | 9.3 |
| $x$ 2-검정 | $x$ 2=119.661, p-value=.000 | | | | |

### 10) 국적취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1)

불가피한 사유로 이혼한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를 원할 경우, 그 입증요건을 충족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6.8%인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53.9%로 나타나 이러한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한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55.9%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의 응답율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206▐ 국적취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1)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매우 잘 안다 | 57 | 6.8 | 20 | 11.3 |
| 들어본 적은 있다 | 256 | 30.4 | 53 | 29.9 |
| 전혀 모른다 | 454 | 53.9 | 99 | 55.9 |
| 무응답 | 75 | 8.9 | 5 | 2.8 |

이혼한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를 원할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필리핀 출신에서 16.8%로 월등히 많았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캄보디아(75.6%) 출신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표 Ⅳ - 207▐ 출신국적별 국적취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1)

| 구분 | 사례수 | 국적취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 | | | |
|---|---|---|---|---|---|
| | | 매우 잘 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6.8 | 30.4 | 53.9 | 8.9 |
| 중국조선족 | 72 | 4.2 | 43.1 | 44.4 | 8.3 |
| 중국한족 | 190 | 2.6 | 31.6 | 54.7 | 11.1 |
| 일본 | 82 | 2.4 | 37.8 | 57.3 | 2.4 |
| 베트남 | 252 | 8.3 | 25.0 | 56.3 | 10.3 |
| 필리핀 | 119 | 16.8 | 32.8 | 41.2 | 9.2 |
| 캄보디아 | 41 | 2.4 | 22.0 | 75.6 | 0.0 |
| 기타 | 86 | 5.8 | 26.7 | 57.0 | 10.5 |
| $x$ 2-검정 | $x$ 2=55.314, p-value=.000 | | | | |

### 11) 국적취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2)

한국인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한 외국인은 그 자녀가 원할 경우,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받는다는 법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한 반면, '전혀 모른다'는 49.6%로 나타나 이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지도는 한국인 배우자의 응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즉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3.6%인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48.0%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208▐ 국적취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2)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매우 잘 안다 | 79 | 9.4 | 24 | 13.6 |
| 들어본 적은 있다 | 270 | 32.1 | 63 | 35.6 |
| 전혀 모른다 | 418 | 49.6 | 85 | 48.0 |
| 무응답 | 75 | 8.9 | 5 | 2.8 |

이를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필리핀 출신에서 21.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에서 68.3%로 타 국적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이를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0년 이상 거주에서 20.4%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년 미만 거주에서 57.4%로 상대적으로 많아 결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209▐ 출신국적별 국적취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2)

| 구분 | 사례수 | 국적취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 | | | |
|---|---|---|---|---|---|
| | | 매우 잘 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9.4 | 32.1 | 49.6 | 8.9 |
| 중국조선족 | 72 | 6.9 | 40.3 | 45.8 | 6.9 |
| 중국한족 | 190 | 2.1 | 27.9 | 57.9 | 12.1 |
| 일본 | 82 | 13.4 | 45.1 | 39.0 | 2.4 |
| 베트남 | 252 | 8.7 | 26.6 | 54.4 | 10.3 |
| 필리핀 | 119 | 21.0 | 40.3 | 29.4 | 9.2 |
| 캄보디아 | 41 | 7.3 | 24.4 | 68.3 | 0.0 |
| 기타 | 86 | 10.5 | 30.2 | 50.0 | 9.3 |
| $x$ 2-검정 | $x$ 2=71.883, p-value=.000 | | | | |

▌표 Ⅳ - 210▐ 한국 거주기간별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 인지도

| 구분 | 사례수 |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 인지도(%) | | | |
|---|---|---|---|---|---|
| | | 매우 잘 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9.4 | 32.1 | 49.6 | 8.9 |
| 1년 미만 | 258 | 7.8 | 25.6 | 57.4 | 9.3 |
| 1년~3년 | 297 | 6.7 | 31.0 | 51.9 | 10.4 |
| 3년~5년 | 109 | 11.0 | 38.5 | 45.0 | 5.5 |
| 5년~10년 | 124 | 13.7 | 41.1 | 37.9 | 7.3 |
| 10년 이상 | 49 | 20.4 | 32.7 | 38.8 | 8.2 |
| 무응답 | 5 | 0.0 | 60.0 | 20.0 | 20.0 |
| $x$ 2-검정 | $x$ 2=34.573, p-value=.003 | | | | |

## 5.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

### 1)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

부부동반 교육, 상담서비스 등 생활 전반에 관한 통합적인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70.1%는 참여 의사를 밝힌 반면, 한국인 배우자 65.0%가 참여 의사를 밝혀, 한국인 배우자보다는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필리핀 출신에서 80.7%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캄보디아(39.0%) 출신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 Ⅳ - 211▐ 출신국적별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참여 의사

| 구분 | 사례수 |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참여 의사(%) | | |
|---|---|---|---|---|
| | | 있다 | 없다 | 무응답 |
| 합계 | 842 | 70.1 | 27.8 | 2.1 |
| 중국조선족 | 72 | 65.3 | 34.7 | 0.0 |
| 중국한족 | 190 | 68.9 | 26.8 | 4.2 |
| 일본 | 82 | 74.4 | 25.6 | 0.0 |
| 베트남 | 252 | 69.8 | 28.2 | 2.0 |
| 필리핀 | 119 | 80.7 | 16.8 | 2.5 |
| 캄보디아 | 41 | 61.0 | 39.0 | 0.0 |
| 기타 | 86 | 62.8 | 34.9 | 2.3 |
| $x$ 2-검정 | $x$ 2=21.689, p-value=.041 | | | |

###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미 참여 이유

통합적인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외국인 배우자 234명과 한국인 배우자 59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34.6%, 7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성을 못 느껴서(18.4%)', '가까운 곳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서(15.0%)'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가까운 곳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서(16.9%)', '신뢰할만한 전문기관이 없어서(13.6%)' 순으로 조사되어,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 미 참여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21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미 참여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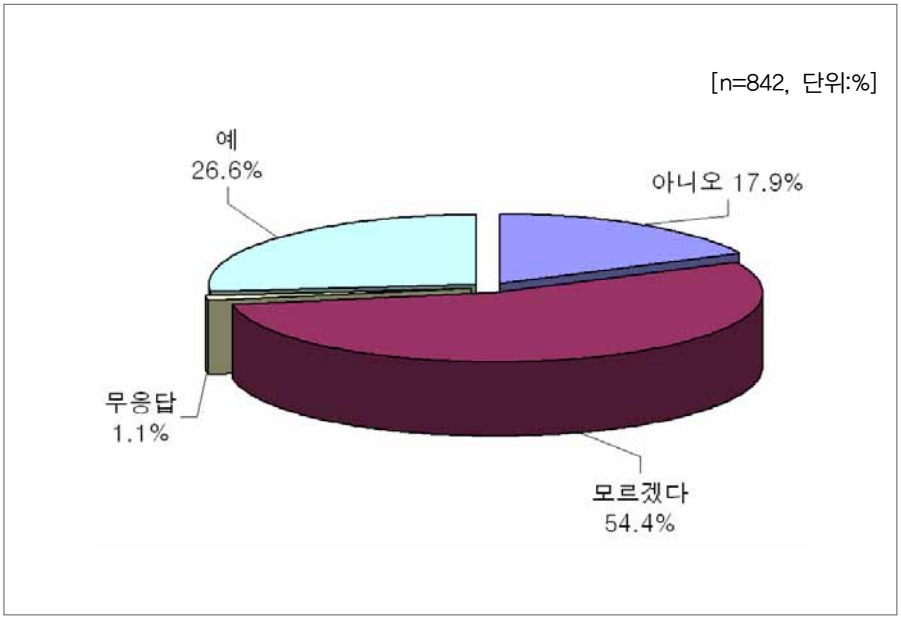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n=234) | | 한국인 배우자 (n=59)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신뢰할만한 전문기관이 없어서 | 16 | 6.8 | 8 | 13.6 |
|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 81 | 34.6 | 46 | 78.0 |
|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22 | 9.4 | 5 | 8.5 |
| 가까운 곳에 서비스제공기관이 없어서 | 35 | 15.0 | 10 | 16.9 |
|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21 | 9.0 | 5 | 8.5 |
| 필요성을 못 느껴서 | 43 | 18.4 | 5 | 8.5 |
| 기타 | 31 | 13.2 | 2 | 1.1 |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필리핀 출신에서 60.0%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은 일본 출신(42.9%)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편, '가까운 곳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28.2%)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213▐ 출신국적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미 참여 이유(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미 참여 이유(%) | | | | | | |
|---|---|---|---|---|---|---|---|---|
| | | 신뢰할만한 전문 기관이 없어서 | 시간적여 유가 없어서 |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가까운 곳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서 |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필요성을 못느껴서 | 기타 |
| 합계 | 234 | 6.8 | 34.6 | 9.4 | 15.0 | 9.0 | 18.4 | 13.2 |
| 중국조선족 | 25 | 4.0 | 24.0 | 8.0 | 4.0 | 12.0 | 16.0 | 16.0 |
| 중국한족 | 51 | 3.9 | 35.3 | 5.9 | 19.6 | 2.0 | 7.8 | 25.5 |
| 일본 | 21 | 14.3 | 38.1 | 14.3 | 4.8 | 4.8 | 42.9 | 4.8 |
| 베트남 | 71 | 11.3 | 16.9 | 8.5 | 28.2 | 12.7 | 21.1 | 12.7 |
| 필리핀 | 20 | 5.0 | 60.0 | 20.0 | 5.0 | 0.0 | 5.0 | 10.0 |
| 캄보디아 | 16 | 0.0 | 37.5 | 6.3 | 0.0 | 18.8 | 18.8 | 0.0 |
| 기타 | 30 | 3.3 | 63.3 | 10.0 | 6.7 | 13.3 | 23.3 | 6.7 |

### 3) 한국인 배우자의 참여 가능성




〈그림 Ⅳ - 30〉 한국인 배우자의 참여 가능성

부부동반 교육, 상담서비스 등 생활 전반에 관한 통합적인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에 한국인 배우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라는 응답은 26.6%

로 나타난 반면, '아니오'라는 응답은 17.9%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모르겠다'는 판단유보적인 응답이 54.4%로 매우 높게 나타나 한국인 배우자의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에 대해 외국인 배우자는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6.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본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척도 점수로 나타난 것은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와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으로 5점 척도에서 각각 4.16점과 4.10점으로 나타나 그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의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일상적인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욕구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문화체험교육(음식, 의복, 예절 등) 지원' 욕구도 4점에 가까운 점수(3.99점)로 3번째 순위에 올라있는데, 이 역시 한국의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두 번째로 높은 필요도를 보인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의 경우는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가족의 생계유지 및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를 보충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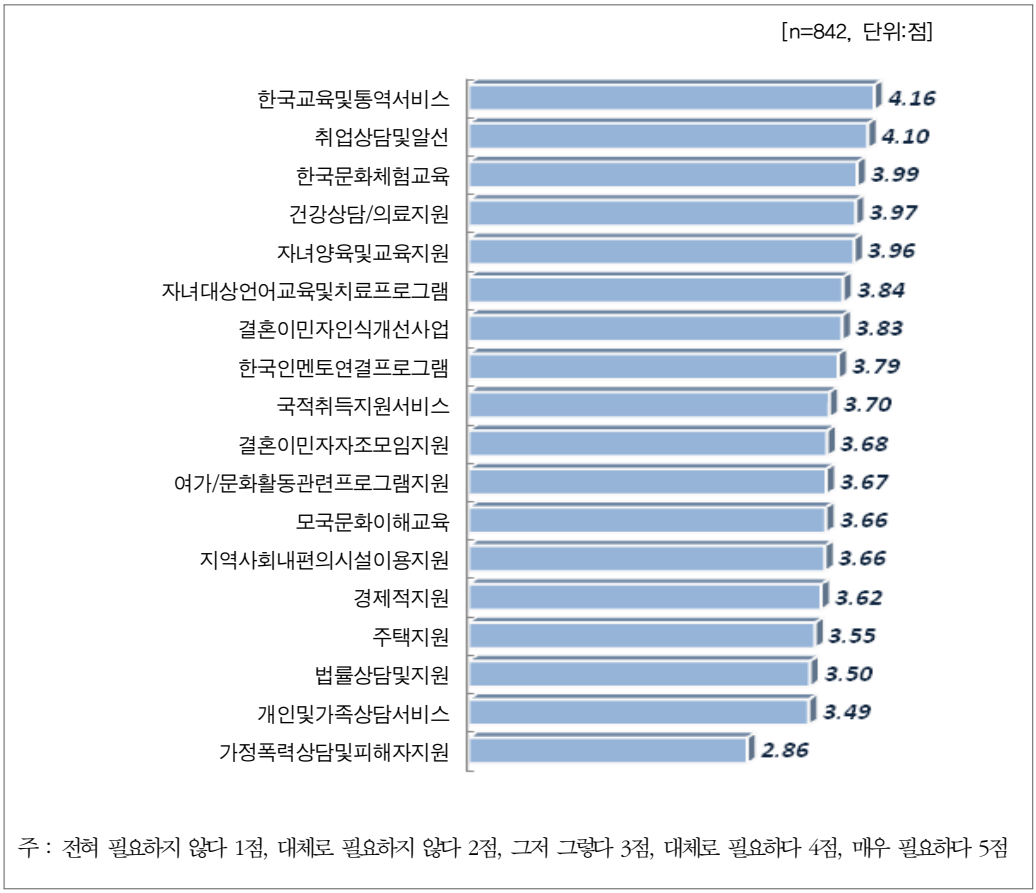
다음으로 높은 필요도를 나타낸 서비스 영역은 '건강상담 및 의료지원(임신, 출산 지원 포함)'으로 평균 3.9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출산에 한정된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질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습지도 서비스를 포함한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욕구 역시 평균 3.96점으로 높았으며, 다음 순위에 올라있는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욕구도 3.84점으로 높게 나타나 자녀양육과 언어발달에 대한 외국인 배우자의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과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은 5점 척도에서 각각 3.83점과 3.79점으로 나타나 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기존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시각을 개선하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적취득에 관한 정보와 절차 등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3.7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간의 교제와 사회적 지지를 위한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외국인 배

우자의 욕구 역시 강해서 3.68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 3.67점,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 3.66점,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관공서, 은행, 시장, 도서관 등) 이용지원' 3.66점,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주택지원'이 각각 3.62점과 3.5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도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 3.50점, 가족구성원간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원 포함)' 3.49점,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2.86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관공서, 은행, 시장, 도서관 등)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외국인 배우자의 지역사회 내 문화 및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욕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의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문화와 가치관을 한국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국적취득 문제는 물론, 한국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자문과 도움을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 이들을 위한 법률기관이나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2.86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낮은 욕구를 보이며 제시된 서비스 제도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본 조사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이 낮은 것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외국인 배우자의 사회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72점으로 그 필요도가 보통수준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이러한 복지욕구가 다문화가족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Ⅳ - 31〉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 1)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 (1)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필요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가운데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해 그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5.0%('매우 필요하다' 24.8% + '대체로 필요하다' 30.2%)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5.6%('전혀 필요하지 않다' 6.4%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9.1%)보다 39.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3.62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3.1%('매우 필요하다' 20.3% + '대체로 필요하다' 32.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2.6%('전혀 필요하지 않다' 9.6%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3.0%)보다 3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의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3.43점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느끼는 필요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214▐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4 | 6.4 | 17 | 9.6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77 | 9.1 | 23 | 13.0 |
| 그저 그렇다 | 196 | 23.3 | 37 | 20.9 |
| 대체로 필요하다 | 254 | 30.2 | 58 | 32.8 |
| 매우 필요하다 | 209 | 24.8 | 36 | 20.3 |
| 무응답 | 52 | 6.2 | 6 | 3.4 |
| 5점 척도 평균 | 3.62점 | | 3.43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경제적 지원'의 필요도에 대해 분석해 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에서 68.3%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조선족 출신에서도 66.7%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의 필요도 점수는 중국 조선족 출신(3.81점)과 캄보디아 출신(3.65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항목 평균 점수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Ⅳ - 215▐ 출신국적별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경제적 지원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6.4 | 9.1 | 15.6 | 23.3 | 30.2 | 24.8 | 55.0 | 6.2 | 3.62 |
| 중국조선족 | 72 | 5.6 | 5.6 | 11.1 | 19.4 | 37.5 | 29.2 | 66.7 | 2.8 | 3.81 |
| 중국한족 | 190 | 6.8 | 9.5 | 16.3 | 24.2 | 19.5 | 29.5 | 48.9 | 10.5 | 3.62 |
| 일본 | 82 | 6.1 | 7.3 | 13.4 | 28.0 | 36.6 | 19.5 | 56.1 | 2.4 | 3.58 |
| 베트남 | 252 | 6.0 | 9.9 | 15.9 | 23.4 | 28.6 | 25.4 | 54.0 | 6.7 | 3.62 |
| 필리핀 | 119 | 5.9 | 8.4 | 14.3 | 28.6 | 37.0 | 16.8 | 53.8 | 3.4 | 3.52 |
| 캄보디아 | 41 | 9.8 | 12.2 | 22.0 | 7.3 | 41.5 | 26.8 | 68.3 | 2.4 | 3.65 |
| 기타 | 86 | 7.0 | 10.5 | 17.4 | 19.8 | 31.4 | 24.4 | 55.8 | 7.0 | 3.60 |
| $x$ 2-검정 | $x$ 2=42.344, p-value=.067 | | | | | | | | | |

한국 거주기간별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10년 이상에서 63.3%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10년 이상(3.81점), 5년~10년(3.72점), 3년~5년(3.70점), 1년~3년(3.66점) 등으로 나타나 거주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기간별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로 이를 분석해보면, 3년~5년인 경우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도 점수에서도 동일하게 3.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216▐ 한국 거주기간별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6.4 | 9.1 | 15.6 | 23.3 | 30.2 | 24.8 | 55.0 | 6.2 | 3.62 |
| 1년 미만 | 258 | 9.3 | 10.5 | 19.8 | 24.4 | 26.7 | 22.5 | 49.2 | 6.6 | 3.46 |
| 1년~3년 | 297 | 6.1 | 9.1 | 15.2 | 21.2 | 30.0 | 26.3 | 56.2 | 7.4 | 3.66 |
| 3년~5년 | 109 | 6.4 | 9.2 | 15.6 | 21.1 | 30.3 | 29.4 | 59.6 | 3.7 | 3.70 |
| 5년~10년 | 124 | 2.4 | 8.1 | 10.5 | 26.6 | 34.7 | 23.4 | 58.1 | 4.8 | 3.72 |
| 10년 이상 | 49 | 2.0 | 6.1 | 8.2 | 24.5 | 38.8 | 24.5 | 63.3 | 4.1 | 3.81 |
| 무응답 | 5 | 20.0 | 0.0 | 20.0 | 40.0 | 20.0 | 0.0 | 20.0 | 20.0 | 2.75 |
| $x$ 2-검정 | $x$ 2=23.581, p-value=.544 | | | | | | | | | |

▌표 Ⅳ - 217▐ 결혼기간별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6.4 | 9.1 | 15.6 | 23.3 | 30.2 | 24.8 | 55.0 | 6.2 | 3.62 |
| 1년 미만 | 190 | 8.9 | 10.5 | 19.5 | 24.2 | 25.3 | 21.6 | 46.8 | 9.5 | 3.44 |
| 1년~3년 | 343 | 5.2 | 10.8 | 16.0 | 20.4 | 31.5 | 25.7 | 57.1 | 6.4 | 3.66 |
| 3년~5년 | 121 | 7.4 | 8.3 | 15.7 | 22.3 | 27.3 | 32.2 | 59.5 | 2.5 | 3.70 |
| 5년 이상 | 180 | 5.0 | 5.6 | 10.6 | 28.3 | 35.0 | 21.7 | 56.7 | 4.4 | 3.66 |
| 무응답 | 8 | 12.5 | 0.0 | 12.5 | 25.0 | 25.0 | 25.0 | 50.0 | 12.5 | 3.57 |
| $x$ 2-검정 | $x$ 2=27.206, p-value=.130 | | | | | | | | | |

### (2)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1.8%('매우 필요하다' 28.4% + '대체로 필요하다' 23.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0.3%('전혀 필요하지 않다' 8.7%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1.6%)보다 3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3.55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9.3%('매우 필요하다' 33.9% + '대체로 필요하다' 25.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3.1%('전혀 필요하지 않다' 14.1%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9.0%)보다 36.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의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3.58점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비슷한 수준의 필요도를 보였다.

▌표 Ⅳ - 218▐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73 | 8.7 | 25 | 14.1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98 | 11.6 | 16 | 9.0 |
| 그저 그렇다 | 171 | 20.3 | 24 | 13.6 |
| 대체로 필요하다 | 197 | 23.4 | 45 | 25.4 |
| 매우 필요하다 | 239 | 28.4 | 60 | 33.9 |
| 무응답 | 64 | 7.6 | 7 | 4.0 |
| 5점 척도 평균 | 3.55점 | | 3.58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 출신에서 73.6%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출신에서도 68.3%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중국 조선족 출신에서 4.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그 욕구가 타 국적출신에 비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본(3.78점)과 필리핀 출신(3.65점)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필요도가 나타났다.

▌표 Ⅳ - 219▐ 출신국적별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8.7 | 11.6 | 20.3 | 20.3 | 23.4 | 28.4 | 51.8 | 7.6 | 3.55 |
| 중국조선족 | 72 | 5.6 | 2.8 | 8.3 | 13.9 | 27.8 | 45.8 | 73.6 | 4.2 | 4.10 |
| 중국한족 | 190 | 10.0 | 11.6 | 21.6 | 22.1 | 12.6 | 32.6 | 45.3 | 11.1 | 3.52 |
| 일본 | 82 | 9.8 | 8.5 | 18.3 | 11.0 | 32.9 | 35.4 | 68.3 | 2.4 | 3.78 |
| 베트남 | 252 | 9.1 | 15.5 | 24.6 | 26.2 | 20.6 | 19.0 | 39.7 | 9.5 | 3.28 |
| 필리핀 | 119 | 5.9 | 10.1 | 16.0 | 22.7 | 29.4 | 26.9 | 56.3 | 5.0 | 3.65 |
| 캄보디아 | 41 | 9.8 | 12.2 | 22.0 | 19.5 | 31.7 | 24.4 | 56.1 | 2.4 | 3.50 |
| 기타 | 86 | 9.3 | 12.8 | 22.1 | 10.5 | 30.2 | 29.1 | 59.3 | 8.1 | 3.62 |
| $x$ 2-검정 | $x$ 2=73.510, p-value=.000 | | | | | | | | | |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기간별로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해보면, 거주기간별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거주기간이 길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즉 결혼기간이 길수록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Ⅳ - 220▐ 한국 거주기간별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8.7 | 11.6 | 20.3 | 20.3 | 23.4 | 28.4 | 51.8 | 7.6 | 3.55 |
| 1년 미만 | 258 | 12.4 | 13.2 | 25.6 | 24.4 | 20.9 | 20.9 | 41.9 | 8.1 | 3.27 |
| 1년~3년 | 297 | 9.4 | 11.8 | 21.2 | 19.5 | 22.9 | 27.3 | 50.2 | 9.1 | 3.51 |
| 3년~5년 | 109 | 4.6 | 12.8 | 17.4 | 20.2 | 19.3 | 40.4 | 59.6 | 2.8 | 3.80 |
| 5년~10년 | 124 | 3.2 | 7.3 | 10.5 | 18.5 | 33.1 | 31.5 | 64.5 | 6.5 | 3.88 |
| 10년 이상 | 49 | 6.1 | 10.2 | 16.3 | 8.2 | 24.5 | 42.9 | 67.3 | 8.2 | 3.96 |
| 무응답 | 5 | 20.0 | 20.0 | 40.0 | 20.0 | 20.0 | 0.0 | 20.0 | 20.0 | 2.50 |
| $x$ 2-검정 | $x$ 2=49.093, p-value=.003 | | | | | | | | | |

▌표 Ⅳ - 221▐ 결혼기간별 주택지원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주택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 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8.7 | 11.6 | 20.3 | 20.3 | 23.4 | 28.4 | 51.8 | 7.6 | 3.55 |
| 1년 미만 | 190 | 13.2 | 11.6 | 24.7 | 24.7 | 19.5 | 20.0 | 39.5 | 11.1 | 3.24 |
| 1년~3년 | 343 | 8.2 | 12.8 | 21.0 | 20.7 | 23.6 | 26.5 | 50.1 | 8.2 | 3.52 |
| 3년~5년 | 121 | 8.3 | 14.0 | 22.3 | 18.2 | 19.8 | 35.5 | 55.4 | 4.1 | 3.63 |
| 5년 이상 | 180 | 5.0 | 7.8 | 12.8 | 16.7 | 29.4 | 36.1 | 65.6 | 5.0 | 3.88 |
| 무응답 | 8 | 12.5 | 12.5 | 25.0 | 12.5 | 25.0 | 25.0 | 50.0 | 12.5 | 3.43 |
| $x$ 2-검정 | $x$ 2=37.095, p-value=.011 | | | | | | | | | |

### (3)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에 대한 필요도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에 대한 그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8.4%('매우 필요하다' 33.6% + '대체로 필요하다' 34.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8.3%('전혀 필요하지 않다' 2.6%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5.7%)보다 6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3.97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5.1%('매우 필요하다' 38.4% + '대체로 필요하다' 36.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9.6%('전혀 필요하지 않다' 4.0%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5.6%)보다 65.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4.03점으로 외국인 배우자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222▐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2 | 2.6 | 7 | 4.0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48 | 5.7 | 10 | 5.6 |
| 그저 그렇다 | 144 | 17.1 | 22 | 12.4 |
| 대체로 필요하다 | 293 | 34.8 | 65 | 36.7 |
| 매우 필요하다 | 283 | 33.6 | 68 | 38.4 |
| 무응답 | 52 | 6.2 | 5 | 2.8 |
| 5점 척도 평균 | 3.97점 | | 4.03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에서 85.4%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조선족 출신에서도 75.0%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일본 출신에서 4.1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 조선족 (4.10점)과 베트남 출신(4.05점)에서도 4점을 넘어 이들 집단의 의료서비스 관련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223▌ 출신국적별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6 | 5.7 | 8.3 | 17.1 | 34.8 | 33.6 | 68.4 | 6.2 | 3.97 |
| 중국조선족 | 72 | 2.8 | 0.0 | 2.8 | 16.7 | 40.3 | 34.7 | 75.0 | 5.6 | 4.10 |
| 중국한족 | 190 | 2.1 | 6.8 | 8.9 | 18.4 | 25.3 | 36.8 | 62.1 | 10.5 | 3.98 |
| 일본 | 82 | 1.2 | 3.7 | 4.9 | 8.5 | 47.6 | 37.8 | 85.4 | 1.2 | 4.19 |
| 베트남 | 252 | 0.8 | 6.0 | 6.7 | 17.1 | 33.7 | 36.1 | 69.8 | 6.3 | 4.05 |
| 필리핀 | 119 | 4.2 | 5.9 | 10.1 | 25.2 | 40.3 | 21.0 | 61.3 | 3.4 | 3.70 |
| 캄보디아 | 41 | 0.0 | 7.3 | 7.3 | 26.8 | 24.4 | 39.0 | 63.4 | 2.4 | 3.98 |
| 기타 | 86 | 9.3 | 8.1 | 17.4 | 7.0 | 39.5 | 29.1 | 68.6 | 7.0 | 3.76 |
| $x$ 2-검정 | $x$ 2=75.015, p-value=.000 | | | | | | | | | |

### (4)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해 필요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2.3%('매우 필요하다' 40.7% + '대체로 필요하다' 31.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7.6%('전혀 필요하지 않다' 3.3%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3%)보다 64.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4.10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매우 필요하다' 27.1% + '대체로 필요하다' 35.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3.5%('전혀 필요하지 않다' 9.0%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5%)보다 49.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의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3.70점으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현재 취업상태에 따른 필요도 차이로 외국인 배우자의 대다수가 전업주부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취업

욕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224▐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8 | 3.3 | 16 | 9.0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36 | 4.3 | 8 | 4.5 |
| 그저 그렇다 | 112 | 13.3 | 34 | 19.2 |
| 대체로 필요하다 | 266 | 31.6 | 63 | 35.6 |
| 매우 필요하다 | 343 | 40.7 | 48 | 27.1 |
| 무응답 | 57 | 6.8 | 8 | 4.5 |
| 5점 척도 평균 | 4.10점 | | 3.70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 출신에서 8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74.6%), 중국 한족(73.7%) 출신 순으로 많았다.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중국 한족 출신에서 4.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 조선족 출신(4.28점)과 베트남 출신(4.15점)에서도 4점을 넘어 이들 집단의 취업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225▐ 출신국적별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3.3 | 4.3 | 7.6 | 13.3 | 31.6 | 40.7 | 72.3 | 6.8 | 4.10 |
| 중국조선족 | 72 | 2.8 | 1.4 | 4.2 | 9.7 | 34.7 | 47.2 | 81.9 | 4.2 | 4.28 |
| 중국한족 | 190 | 2.1 | 3.7 | 5.8 | 12.1 | 20.5 | 53.2 | 73.7 | 8.4 | 4.30 |
| 일본 | 82 | 2.4 | 1.2 | 3.7 | 25.6 | 37.8 | 31.7 | 69.5 | 1.2 | 3.96 |
| 베트남 | 252 | 3.2 | 5.2 | 8.3 | 9.1 | 32.1 | 42.5 | 74.6 | 7.9 | 4.15 |
| 필리핀 | 119 | 4.2 | 5.0 | 9.2 | 17.6 | 42.0 | 25.2 | 67.2 | 5.9 | 3.84 |
| 캄보디아 | 41 | 2.4 | 14.6 | 17.1 | 14.6 | 29.3 | 34.1 | 63.4 | 4.9 | 3.82 |
| 기타 | 86 | 7.0 | 2.3 | 9.3 | 12.8 | 32.6 | 36.0 | 68.6 | 9.3 | 3.97 |
| $\chi$ 2-검정 | $\chi$ 2=72.678, p-value=.000 | | | | | | | | | |

이를 결혼기간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3년~5년에서 80.2%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점수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3년~5년에서 4.13점으로 가장 높았고, 1년~3년에서도 4.12점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결혼기간이 1년~5년 사이에 있는 집단에서 취업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226▐ 결혼기간별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3.3 | 4.3 | 7.6 | 13.3 | 31.6 | 40.7 | 72.3 | 6.8 | 4.10 |
| 1년 미만 | 190 | 2.6 | 5.3 | 7.9 | 14.7 | 28.4 | 41.6 | 70.0 | 7.4 | 4.09 |
| 1년~3년 | 343 | 3.2 | 5.5 | 8.7 | 10.2 | 30.6 | 42.0 | 72.6 | 8.5 | 4.12 |
| 3년~5년 | 121 | 4.1 | 3.3 | 7.4 | 9.9 | 38.8 | 41.3 | 80.2 | 2.5 | 4.13 |
| 5년 이상 | 180 | 3.3 | 1.7 | 5.0 | 20.0 | 32.2 | 37.2 | 69.4 | 5.6 | 4.04 |
| 무응답 | 8 | 12.5 | 0.0 | 12.5 | 12.5 | 25.0 | 37.5 | 62.5 | 12.5 | 3.86 |
| $x$ 2-검정 | $x$ 2=26.831, p-value=.140 | | | | | | | | | |

### (5)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해 그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5.7%('매우 필요하다' 31.9% + '대체로 필요하다' 23.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5.0%('전혀 필요하지 않다' 8.2%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6.8%)보다 4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지원서비스' 필요도 점수는 3.70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5.5%('매우 필요하다' 33.9% + '대체로 필요하다' 31.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5.8%('전혀 필요하지 않다' 11.3%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5%)보다 49.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지원서비스 '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3.76점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필요도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227▐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9 | 8.2 | 20 | 11.3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57 | 6.8 | 8 | 4.5 |
| 그저 그렇다 | 179 | 21.3 | 25 | 14.1 |
| 대체로 필요하다 | 200 | 23.8 | 56 | 31.6 |
| 매우 필요하다 | 269 | 31.9 | 60 | 33.9 |
| 무응답 | 68 | 8.1 | 8 | 4.5 |
| 5점 척도 평균 | 3.70점 | | 3.76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에서 72.2%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일본(26.8%)과 필리핀(23.5%), 중국 조선족(20.8%) 출신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베트남에서 4.18점으로 가장 높았고, 캄보디아 출신에서도 4.08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228▐ 출신국적별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8.2 | 6.8 | 15.0 | 21.3 | 23.8 | 31.9 | 55.7 | 8.1 | 3.70 |
| 중국조선족 | 72 | 15.3 | 5.6 | 20.8 | 12.5 | 22.2 | 34.7 | 56.9 | 9.7 | 3.62 |
| 중국한족 | 190 | 8.4 | 6.3 | 14.7 | 23.7 | 18.4 | 33.7 | 52.1 | 9.5 | 3.69 |
| 일본 | 82 | 17.1 | 9.8 | 26.8 | 41.5 | 13.4 | 17.1 | 30.5 | 1.2 | 3.04 |
| 베트남 | 252 | 2.4 | 3.2 | 5.6 | 13.1 | 29.0 | 43.3 | 72.2 | 9.1 | 4.18 |
| 필리핀 | 119 | 11.8 | 11.8 | 23.5 | 29.4 | 26.1 | 12.6 | 38.7 | 8.4 | 3.17 |
| 캄보디아 | 41 | 0.0 | 7.3 | 7.3 | 22.0 | 24.4 | 43.9 | 68.3 | 2.4 | 4.08 |
| 기타 | 86 | 9.3 | 9.3 | 18.6 | 16.3 | 27.9 | 27.9 | 55.8 | 9.3 | 3.62 |
| $x$ 2-검정 | $x$ 2=120.618, p-value=.000 | | | | | | | | | |

이를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1년~3년에서 63.0%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년~10년(26.6%)과 10년 이상(24.5%)에

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1년~3년에서 3.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1년 미만에서도 3.90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는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229▐ 한국 거주기간별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8.2 | 6.8 | 15.0 | 21.3 | 23.8 | 31.9 | 55.7 | 8.1 | 3.70 |
| 1년 미만 | 258 | 4.7 | 6.6 | 11.2 | 18.6 | 24.8 | 36.4 | 61.2 | 8.9 | 3.90 |
| 1년~3년 | 297 | 4.4 | 5.7 | 10.1 | 19.5 | 24.2 | 38.7 | 63.0 | 7.4 | 3.94 |
| 3년~5년 | 109 | 13.8 | 5.5 | 19.3 | 20.2 | 25.7 | 28.4 | 54.1 | 6.4 | 3.53 |
| 5년~10년 | 124 | 18.5 | 8.1 | 26.6 | 30.6 | 22.6 | 12.9 | 35.5 | 7.3 | 3.03 |
| 10년 이상 | 49 | 10.2 | 14.3 | 24.5 | 24.5 | 14.3 | 24.5 | 38.8 | 12.2 | 3.33 |
| 무응답 | 5 | 20.0 | 0.0 | 20.0 | 20.0 | 20.0 | 20.0 | 40.0 | 20.0 | 3.25 |
| $x$ 2-검정 | $x$ 2=69.402, p-value=.000 | | | | | | | | | |

▌표 Ⅳ - 230▐ 결혼기간별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국적취득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8.2 | 6.8 | 15.0 | 21.3 | 23.8 | 31.9 | 55.7 | 8.1 | 3.70 |
| 1년 미만 | 190 | 4.2 | 5.3 | 9.5 | 19.5 | 26.3 | 35.3 | 61.6 | 9.5 | 3.92 |
| 1년~3년 | 343 | 3.8 | 5.5 | 9.3 | 18.4 | 25.1 | 39.4 | 64.4 | 7.9 | 3.98 |
| 3년~5년 | 121 | 12.4 | 5.8 | 18.2 | 19.0 | 24.8 | 32.2 | 57.0 | 5.8 | 3.62 |
| 5년 이상 | 180 | 17.8 | 11.7 | 29.4 | 30.6 | 17.2 | 14.4 | 31.7 | 8.3 | 2.99 |
| 무응답 | 8 | 12.5 | 0.0 | 12.5 | 12.5 | 37.5 | 25.0 | 62.5 | 12.5 | 3.71 |
| $x$ 2-검정 | $x$ 2=82.893, p-value=.000 | | | | | | | | | |

### (6)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6.6%('매우 필요하다' 23.6% + '대체로 필요하다' 23.0%)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6.6%('전혀 필요하지 않다' 7.7%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8.9%)보다

3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3.50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9.9%('매우 필요하다' 28.8% + '대체로 필요하다' 31.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6.9%('전혀 필요하지 않다' 12.4%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5%)보다 4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의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3.61점으로 외국인 배우자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231▐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5 | 7.7 | 22 | 12.4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75 | 8.9 | 8 | 4.5 |
| 그저 그렇다 | 237 | 28.1 | 35 | 19.8 |
| 대체로 필요하다 | 194 | 23.0 | 55 | 31.1 |
| 매우 필요하다 | 199 | 23.6 | 51 | 28.8 |
| 무응답 | 72 | 8.6 | 6 | 3.4 |
| 5점 척도 평균 | 3.50점 | | 3.61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해 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국(50.0%)과 베트남(49.2%) 출신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베트남 출신에서 3.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조선족(3.57점)과 캄보디아(3.56점) 출신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표 Ⅳ - 232▐ 출신국적별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7.7 | 8.9 | 16.6 | 28.1 | 23.0 | 23.6 | 46.7 | 8.6 | 3.50 |
| 중국조선족 | 72 | 8.3 | 11.1 | 19.4 | 23.6 | 19.4 | 30.6 | 50.0 | 6.9 | 3.57 |
| 중국한족 | 190 | 8.9 | 6.8 | 15.8 | 30.5 | 17.9 | 24.7 | 42.6 | 11.1 | 3.48 |
| 일본 | 82 | 6.1 | 17.1 | 23.2 | 34.1 | 22.0 | 18.3 | 40.2 | 2.4 | 3.30 |
| 베트남 | 252 | 7.1 | 7.9 | 15.1 | 23.8 | 25.4 | 23.8 | 49.2 | 11.9 | 3.58 |
| 필리핀 | 119 | 7.6 | 7.6 | 15.1 | 33.6 | 26.1 | 21.0 | 47.1 | 4.2 | 3.47 |
| 캄보디아 | 41 | 2.4 | 12.2 | 14.6 | 34.1 | 22.0 | 24.4 | 46.3 | 4.9 | 3.56 |
| 기타 | 86 | 10.5 | 7.0 | 17.4 | 23.3 | 27.9 | 23.3 | 51.2 | 8.1 | 3.51 |
| $x$ 2-검정 | $x$ 2=37.409, p-value=.166 | | | | | | | | | |

### (7)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8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중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8.4%('매우 필요하다' 20.7% + '대체로 필요하다' 27.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6.7%('전혀 필요하지 않다' 7.0%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9.7%)보다 3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0.3%('매우 필요하다' 20.9% + '대체로 필요하다' 29.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8.1%('전혀 필요하지 않다' 8.5%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9.6%)보다 32.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해보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각각 3.49점과 3.46점으로 나타나 그 필요도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233▐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9 | 7.0 | 15 | 8.5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82 | 9.7 | 17 | 9.6 |
| 그저 그렇다 | 230 | 27.3 | 50 | 28.2 |
| 대체로 필요하다 | 233 | 27.7 | 52 | 29.4 |
| 매우 필요하다 | 174 | 20.7 | 37 | 20.9 |
| 무응답 | 64 | 7.6 | 6 | 3.4 |
| 5점 척도 평균 | 3.49점 | | 3.46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에서 60.7%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캄보디아(29.3%)와 중국 한족(27.9%) 출신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해보면, 역시 베트남 출신에서 3.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리핀 출신도 3.57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234▐ 출신국적별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7.0 | 9.7 | 16.7 | 27.3 | 27.7 | 20.7 | 48.3 | 7.6 | 3.49 |
| 중국조선족 | 72 | 13.9 | 8.3 | 22.2 | 19.4 | 23.6 | 27.8 | 51.4 | 6.9 | 3.46 |
| 중국한족 | 190 | 11.1 | 16.8 | 27.9 | 27.9 | 17.4 | 16.3 | 33.7 | 10.5 | 3.12 |
| 일본 | 82 | 3.7 | 8.5 | 12.2 | 35.4 | 39.0 | 11.0 | 50.0 | 2.4 | 3.46 |
| 베트남 | 252 | 4.0 | 4.0 | 7.9 | 23.0 | 32.5 | 28.2 | 60.7 | 8.3 | 3.84 |
| 필리핀 | 119 | 3.4 | 9.2 | 12.6 | 31.1 | 30.3 | 19.3 | 49.6 | 6.7 | 3.57 |
| 캄보디아 | 41 | 7.3 | 22.0 | 29.3 | 34.1 | 19.5 | 14.6 | 34.1 | 2.4 | 3.13 |
| 기타 | 86 | 9.3 | 8.1 | 17.4 | 29.1 | 29.1 | 16.3 | 45.3 | 8.1 | 3.38 |
| $x$ 2-검정 | $x$ 2=86.417, p-value=.000 | | | | | | | | | |

이를 결혼기간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3년~5년에서 57.0%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년 미만에서 20.5%로 가장 많았다.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역시 3년~5년에서 3.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1년 미만은 3.34점으로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이 항목 평균 점수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1년 미만의 이러한 결과는 이 항목의 서비스 필요가 다른 시급한 서비스, 즉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체험교육과 같은 한국생활 적응에 시급히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보다 우선순위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결혼기간별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표 Ⅳ - 235▐ 결혼기간별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7.0 | 9.7 | 16.7 | 27.3 | 27.7 | 20.7 | 48.3 | 7.6 | 3.49 |
| 1년 미만 | 190 | 7.9 | 12.6 | 20.5 | 28.4 | 22.1 | 18.4 | 40.5 | 10.5 | 3.34 |
| 1년~3년 | 343 | 7.3 | 9.9 | 17.2 | 24.2 | 29.7 | 20.7 | 50.4 | 8.2 | 3.51 |
| 3년~5년 | 121 | 8.3 | 6.6 | 14.9 | 24.8 | 30.6 | 26.4 | 57.0 | 3.3 | 3.62 |
| 5년 이상 | 180 | 4.4 | 8.9 | 13.3 | 34.4 | 27.2 | 18.9 | 46.1 | 6.1 | 3.50 |
| 무응답 | 8 | 12.5 | 0.0 | 12.5 | 12.5 | 37.5 | 25.0 | 62.5 | 12.5 | 3.71 |
| $x$ 2-검정 | $x$ 2=23.990, p-value=.243 | | | | | | | | | |

### (8)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제시된 서비스 제도들 가운데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인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1.8%('매우 필요하다' 17.0% + '대체로 필요하다' 14.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8.3%('전혀 필요하지 않다' 23.6%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4.7%)보다 6.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42.3%('매우 필요하다' 20.3% + '대체로 필요하다' 22.0%)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1.1%('전혀 필요하지 않다' 22.6%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8.5%)보다 1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의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외국인 배우자는 평균 2.86점인 반면, 한국인 배우자의 필요도 점수는 3.09점으로 나타나 한국인 배우자의 필요도가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236▐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99 | 23.6 | 40 | 22.6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124 | 14.7 | 15 | 8.5 |
| 그저 그렇다 | 183 | 21.7 | 42 | 23.7 |
| 대체로 필요하다 | 125 | 14.8 | 39 | 22.0 |
| 매우 필요하다 | 143 | 17.0 | 36 | 20.3 |
| 무응답 | 68 | 8.1 | 5 | 2.8 |
| 5점 척도 평균 | 2.86점 | | 3.09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베트남(45.2%)과 중국 조선족(44.4%) 출신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에서 3.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조선족 출신이 3.03점으로 이 항목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 - 237▐ 출신국적별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3.6 | 14.7 | 38.4 | 21.7 | 14.8 | 17.0 | 31.8 | 8.1 | 2.86 |
| 중국조선족 | 72 | 29.2 | 6.9 | 36.1 | 11.1 | 20.8 | 23.6 | 44.4 | 8.3 | 3.03 |
| 중국한족 | 190 | 32.1 | 18.4 | 50.5 | 20.5 | 5.3 | 12.1 | 17.4 | 11.6 | 2.40 |
| 일본 | 82 | 35.4 | 13.4 | 48.8 | 28.0 | 13.4 | 8.5 | 22.0 | 1.2 | 2.46 |
| 베트남 | 252 | 9.9 | 12.3 | 22.2 | 23.8 | 21.0 | 24.2 | 45.2 | 8.7 | 3.41 |
| 필리핀 | 119 | 30.3 | 12.6 | 42.9 | 25.2 | 16.0 | 7.6 | 23.5 | 8.4 | 2.54 |
| 캄보디아 | 41 | 24.4 | 26.8 | 51.2 | 17.1 | 12.2 | 17.1 | 29.3 | 2.4 | 2.70 |
| 기타 | 86 | 19.8 | 18.6 | 38.4 | 18.6 | 14.0 | 22.1 | 36.0 | 7.0 | 3.00 |
| $x$ 2-검정 | $x$ 2=106.009, p-value=.000 | | | | | | | | | |

### (9)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가운데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보육, 학습지도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7.1%('매우 필요하다' 39.8% + '대체로 필요하다' 27.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1.9%('전혀 필요하지 않다' 6.7%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5.2%)보다 5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4.6%('매우 필요하다' 45.8% + '대체로 필요하다' 28.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7.9%('전혀 필요하지 않다' 5.1%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8%)보다 6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필요도를 5점 척도치 점수로 환산해보면, 외국인 배우자는 3.96점인 반면, 한국인 배우자의 필요도 점수는 4.12점으로 나타나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보육, 학습지도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238▐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6 | 6.7 | 9 | 5.1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44 | 5.2 | 5 | 2.8 |
| 그저 그렇다 | 114 | 13.5 | 24 | 13.6 |
| 대체로 필요하다 | 230 | 27.3 | 51 | 28.8 |
| 매우 필요하다 | 335 | 39.8 | 81 | 45.8 |
| 무응답 | 63 | 7.5 | 7 | 4.0 |
| 5점 척도 평균 | 3.96점 | | 4.12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본 출신에서 7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베트남(78.6%)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베트남 출신이 4.2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본 출신(4.20점)과 중국 조선족 출신(4.02점)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239▐ 출신국적별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6.7 | 5.2 | 11.9 | 13.5 | 27.3 | 39.8 | 67.1 | 7.5 | 3.96 |
| 중국조선족 | 72 | 9.7 | 2.8 | 12.5 | 11.1 | 19.4 | 47.2 | 66.7 | 9.7 | 4.02 |
| 중국한족 | 190 | 10.0 | 7.9 | 17.9 | 17.4 | 20.5 | 32.1 | 52.6 | 12.1 | 3.65 |
| 일본 | 82 | 6.1 | 2.4 | 8.5 | 9.8 | 26.8 | 52.4 | 79.3 | 2.4 | 4.20 |
| 베트남 | 252 | 2.4 | 4.4 | 6.7 | 8.7 | 32.9 | 45.6 | 78.6 | 6.0 | 4.22 |
| 필리핀 | 119 | 5.0 | 6.7 | 11.8 | 21.8 | 31.9 | 27.7 | 59.7 | 6.7 | 3.76 |
| 캄보디아 | 41 | 14.6 | 2.4 | 17.1 | 17.1 | 29.3 | 34.1 | 63.4 | 2.4 | 3.68 |
| 기타 | 86 | 8.1 | 5.8 | 14.0 | 11.6 | 25.6 | 40.7 | 66.3 | 8.1 | 3.92 |
| $x$ 2-검정 | $x$ 2=70.079, p-value=.000 | | | | | | | | | |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기간별로 분석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자녀의 학령기를 전후로 하여 3년~5년(80.7%)과 10년 이상(79.6%)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역시 3년~5년에서 4.25점으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4.27점)과 5년~10년(4.17점)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 필요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거주기간별, 결혼기간별 필요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표 Ⅳ – 240▐ 한국 거주기간별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6.7 | 5.2 | 11.9 | 13.5 | 27.3 | 39.8 | 67.1 | 7.5 | 3.96 |
| 1년 미만 | 258 | 8.9 | 7.4 | 16.3 | 15.1 | 27.5 | 31.8 | 59.3 | 9.3 | 3.73 |
| 1년~3년 | 297 | 8.1 | 4.7 | 12.8 | 15.8 | 24.9 | 39.4 | 64.3 | 7.1 | 3.89 |
| 3년~5년 | 109 | 4.6 | 3.7 | 8.3 | 7.3 | 28.4 | 52.3 | 80.7 | 3.7 | 4.25 |
| 5년~10년 | 124 | 2.4 | 4.0 | 6.5 | 12.9 | 29.0 | 44.4 | 73.4 | 7.3 | 4.17 |
| 10년 이상 | 49 | 2.0 | 4.1 | 6.1 | 6.1 | 34.7 | 44.9 | 79.6 | 8.2 | 4.27 |
| 무응답 | 5 | 0.0 | 0.0 | 0.0 | 20.0 | 20.0 | 40.0 | 60.0 | 20.0 | 4.25 |
| $x$ 2–검정 | $x$ 2=35.091, p–value=.087 | | | | | | | | | |

▌표 Ⅳ – 241▐ 결혼기간별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6.7 | 5.2 | 11.9 | 13.5 | 27.3 | 39.8 | 67.1 | 7.5 | 3.96 |
| 1년 미만 | 190 | 10.0 | 6.3 | 16.3 | 17.4 | 27.4 | 28.9 | 56.3 | 10.0 | 3.65 |
| 1년~3년 | 343 | 6.7 | 5.8 | 12.5 | 12.8 | 27.7 | 39.9 | 67.6 | 7.0 | 3.95 |
| 3년~5년 | 121 | 6.6 | 4.1 | 10.7 | 8.3 | 28.1 | 47.9 | 76.0 | 5.0 | 4.12 |
| 5년 이상 | 180 | 2.8 | 3.9 | 6.7 | 13.9 | 26.1 | 46.1 | 72.2 | 7.2 | 4.17 |
| 무응답 | 8 | 12.5 | 0.0 | 12.5 | 25.0 | 25.0 | 25.0 | 50.0 | 12.5 | 3.57 |
| $x$ 2–검정 | $x$ 2=28.196, p–value=.105 | | | | | | | | | |

### (10)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알아본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2.5%(‘매우 필요하다’ 33.5% + ‘대체로 필요하다’

29.0%)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2.8%('전혀 필요하지 않다' 5.9%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6.9%)보다 49.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8.4%('매우 필요하다' 42.4% + '대체로 필요하다' 26.0%)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9.1%('전혀 필요하지 않다' 5.1%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0%)보다 59.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의 필요도를 척도치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필요도 점수는 3.84점인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4.02점으로 나타나 한국인 배우자의 필요도가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242▐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0 | 5.9 | 9 | 5.1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58 | 6.9 | 7 | 4.0 |
| 그저 그렇다 | 139 | 16.5 | 31 | 17.5 |
| 대체로 필요하다 | 244 | 29.0 | 46 | 26.0 |
| 매우 필요하다 | 282 | 33.5 | 75 | 42.4 |
| 무응답 | 69 | 8.2 | 9 | 5.1 |
| 5점 만점 | 3.84 | | 4.02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에서 71.4%로 가장 많았고, 일본 출신에서도 70.7%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항목의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역시 베트남 출신에서 4.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일본 출신에서 3.90점으로 나타나 이 항목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243▐ 출신국적별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5.9 | 6.9 | 12.8 | 16.5 | 29.0 | 33.5 | 62.5 | 8.2 | 3.84 |
| 중국조선족 | 72 | 9.7 | 5.6 | 15.3 | 12.5 | 27.8 | 37.5 | 65.3 | 6.9 | 3.84 |
| 중국한족 | 190 | 6.8 | 7.9 | 14.7 | 17.9 | 20.0 | 35.3 | 55.3 | 12.1 | 3.78 |
| 일본 | 82 | 6.1 | 3.7 | 9.8 | 17.1 | 37.8 | 32.9 | 70.7 | 2.4 | 3.90 |
| 베트남 | 252 | 2.4 | 6.7 | 9.1 | 11.5 | 32.1 | 39.3 | 71.4 | 7.9 | 4.08 |
| 필리핀 | 119 | 5.0 | 10.1 | 15.1 | 27.7 | 26.9 | 20.2 | 47.1 | 10.1 | 3.52 |
| 캄보디아 | 41 | 14.6 | 4.9 | 19.5 | 12.2 | 39.0 | 26.8 | 65.9 | 2.4 | 3.60 |
| 기타 | 86 | 8.1 | 5.8 | 14.0 | 17.4 | 30.2 | 31.4 | 61.6 | 7.0 | 3.76 |
| $x$ 2-검정 | $x$ 2=61.080, p-value=.001 | | | | | | | | | |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로 분석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3년~5년에서 72.7%로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필요도 점수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기간이 3년~5년인 경우 필요도 점수가 4.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집단의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 - 244▐ 결혼기간별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보통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5.9 | 6.9 | 12.8 | 16.5 | 29.0 | 33.5 | 62.5 | 8.2 | 3.84 |
| 1년 미만 | 190 | 6.8 | 8.4 | 15.3 | 18.9 | 25.3 | 27.9 | 53.2 | 12.6 | 3.67 |
| 1년~3년 | 343 | 6.1 | 8.5 | 14.6 | 12.2 | 31.2 | 34.7 | 65.9 | 7.3 | 3.86 |
| 3년~5년 | 121 | 5.0 | 5.8 | 10.7 | 11.6 | 28.9 | 43.8 | 72.7 | 5.0 | 4.06 |
| 5년 이상 | 180 | 5.0 | 3.3 | 8.3 | 24.4 | 29.4 | 30.6 | 60.0 | 7.2 | 3.83 |
| 무응답 | 8 | 12.5 | 0.0 | 12.5 | 37.5 | 12.5 | 25.0 | 37.5 | 12.5 | 3.43 |
| $x$ 2-검정 | $x$ 2=38.006, p-value=.009 | | | | | | | | | |

### (11)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필요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가운데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에 대해 그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5.6%('매우 필요하다' 25.4%

+ '대체로 필요하다' 30.2%)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4.7%('전혀 필요하지 않다' 5.1%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9.6%)보다 40.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매우 필요하다' 31.1% + '대체로 필요하다' 35.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0.2%('전혀 필요하지 않다' 6.2%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0%)보다 56.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 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필요도 점수는 3.66점인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3.84점으로 나타나 오히려 한국인 배우자가 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 - 245▐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3 | 5.1 | 11 | 6.2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81 | 9.6 | 7 | 4.0 |
| 그저 그렇다 | 184 | 21.9 | 35 | 19.8 |
| 대체로 필요하다 | 254 | 30.2 | 63 | 35.6 |
| 매우 필요하다 | 214 | 25.4 | 55 | 31.1 |
| 무응답 | 66 | 7.8 | 6 | 3.4 |
| 5점 척도 평균 | 3.66점 | | 3.84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에서 69.0%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필요도 점수에 있어서도 베트남 출신이 4.00점으로 가장 높아 이 집단이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캄보디아 출신에서도 필요도 점수가 3.68점으로 나타나 이 항목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246▐ 출신국적별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5.1 | 9.6 | 14.7 | 21.9 | 30.2 | 25.4 | 55.6 | 7.8 | 3.66 |
| 중국조선족 | 72 | 8.3 | 8.3 | 16.7 | 20.8 | 29.2 | 26.4 | 55.6 | 6.9 | 3.61 |
| 중국한족 | 190 | 6.3 | 15.3 | 21.6 | 23.7 | 22.6 | 19.5 | 42.1 | 12.6 | 3.39 |
| 일본 | 82 | 3.7 | 9.8 | 13.4 | 30.5 | 32.9 | 19.5 | 52.4 | 3.7 | 3.57 |
| 베트남 | 252 | 3.2 | 5.6 | 8.7 | 14.7 | 33.7 | 35.3 | 69.0 | 7.5 | 4.00 |
| 필리핀 | 119 | 4.2 | 12.6 | 16.8 | 26.1 | 31.9 | 19.3 | 51.3 | 5.9 | 3.53 |
| 캄보디아 | 41 | 2.4 | 12.2 | 14.6 | 26.8 | 29.3 | 26.8 | 56.1 | 2.4 | 3.68 |
| 기타 | 86 | 9.3 | 4.7 | 14.0 | 23.3 | 32.6 | 22.1 | 54.7 | 8.1 | 3.58 |
| $x$ 2-검정 | $x$ 2=63.238, p-value=.000 | | | | | | | | | |

### (12)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 필요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에게서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인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3.8%('매우 필요하다' 44.9% + '대체로 필요하다' 28.9%)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6.7%('전혀 필요하지 않다' 2.9%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3.8%)보다 67.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2%('매우 필요하다' 38.4% + '대체로 필요하다' 32.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0.2%('전혀 필요하지 않다' 6.2%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0%)보다 6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의 서비스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해 분석해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필요도 점수는 4.16점인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3.96점으로 나타나 이 항목의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배우자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247▐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4 | 2.9 | 11 | 6.2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32 | 3.8 | 7 | 4.0 |
| 그저 그렇다 | 115 | 13.7 | 28 | 15.8 |
| 대체로 필요하다 | 243 | 28.9 | 58 | 32.8 |
| 매우 필요하다 | 378 | 44.9 | 68 | 38.4 |
| 무응답 | 50 | 5.9 | 5 | 2.8 |
| 5점 척도 평균 | 4.16점 | | 3.96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에서 84.9%에서 가장 많았으며, 캄보디아 출신에서도 82.9%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역시 베트남 출신이 4.4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캄보디아 출신이 4.25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이 항목 서비스에 대한 이들 집단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248▐ 출신국적별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9 | 3.8 | 6.7 | 13.7 | 28.9 | 44.9 | 73.8 | 5.9 | 4.16 |
| 중국조선족 | 72 | 11.1 | 4.2 | 15.3 | 15.3 | 33.3 | 29.2 | 62.5 | 6.9 | 3.70 |
| 중국한족 | 190 | 1.6 | 6.3 | 7.9 | 23.2 | 18.4 | 43.2 | 61.6 | 7.4 | 4.03 |
| 일본 | 82 | 3.7 | 11.0 | 14.6 | 14.6 | 23.2 | 46.3 | 69.5 | 1.2 | 3.99 |
| 베트남 | 252 | 1.2 | 1.2 | 2.4 | 6.3 | 27.4 | 57.5 | 84.9 | 6.3 | 4.48 |
| 필리핀 | 119 | 3.4 | 0.8 | 4.2 | 15.1 | 42.9 | 31.9 | 74.8 | 5.9 | 4.05 |
| 캄보디아 | 41 | 2.4 | 2.4 | 4.9 | 9.8 | 36.6 | 46.3 | 82.9 | 2.4 | 4.25 |
| 기타 | 86 | 2.3 | 3.5 | 5.8 | 11.6 | 34.9 | 40.7 | 75.6 | 7.0 | 4.16 |
| $x$ 2-검정 | $x$ 2=108.081, p-value=.000 | | | | | | | | | |

이를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3년~5년에서 82.6%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년 이상에서 20.4%로 상대적으로 많았다.'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1년 미만에서 4.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년~5년에서도 4.28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즉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경우는 3년~5년(84.3%)이었으며, 필요도 점수는 1년 미만과 3년~5년에서 모두 4.29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1년~3년의 필요도 점수도 4.18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거주기간과 결혼기간이 모두 5년 미만인 경우에서 이 항목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249▐ 한국 거주기간별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9 | 3.8 | 6.7 | 13.7 | 28.9 | 44.9 | 73.8 | 5.9 | 4.16 |
| 1년 미만 | 258 | 1.9 | 3.5 | 5.4 | 10.5 | 26.0 | 51.6 | 77.5 | 6.6 | 4.30 |
| 1년~3년 | 297 | 3.7 | 2.4 | 6.1 | 16.5 | 24.2 | 46.8 | 71.0 | 6.4 | 4.15 |
| 3년~5년 | 109 | 1.8 | 2.8 | 4.6 | 9.2 | 35.8 | 46.8 | 82.6 | 3.7 | 4.28 |
| 5년~10년 | 124 | 1.6 | 5.6 | 7.3 | 13.7 | 39.5 | 34.7 | 74.2 | 4.8 | 4.05 |
| 10년 이상 | 49 | 8.2 | 12.2 | 20.4 | 22.4 | 30.6 | 20.4 | 51.0 | 6.1 | 3.46 |
| 무응답 | 5 | 0.0 | 0.0 | 0.0 | 20.0 | 20.0 | 40.0 | 60.0 | 20.0 | 4.25 |
| $x$ 2-검정 | $x$ 2=53.575, p-value=.001 | | | | | | | | | |

▌표 Ⅳ - 250▐ 결혼기간별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9 | 3.8 | 6.7 | 13.7 | 28.9 | 44.9 | 73.8 | 5.9 | 4.16 |
| 1년 미만 | 190 | 0.5 | 5.3 | 5.8 | 12.1 | 23.7 | 51.1 | 74.7 | 7.4 | 4.29 |
| 1년~3년 | 343 | 3.8 | 2.3 | 6.1 | 14.3 | 26.2 | 46.9 | 73.2 | 6.4 | 4.18 |
| 3년~5년 | 121 | 2.5 | 0.8 | 3.3 | 9.1 | 38.0 | 46.3 | 84.3 | 3.3 | 4.29 |
| 5년 이상 | 180 | 3.9 | 7.2 | 11.1 | 17.2 | 33.9 | 32.8 | 66.7 | 5.0 | 3.89 |
| 무응답 | 8 | 0.0 | 0.0 | 0.0 | 12.5 | 12.5 | 62.5 | 75.0 | 12.5 | 4.57 |
| $x$ 2-검정 | $x$ 2=41.149, p-value=.004 | | | | | | | | | |

### (13) 한국문화체험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제시된 서비스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필요도를 보인 '한국문화체험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8.7%('매우 필요하다' 34.6% + '대체로 필요하다' 34.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8.3%('전혀 필요하지 않다' 2.7%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5.6%)보다 6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문화체험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3.99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6.2%('매우 필요하다' 36.7% + '대체로 필요하다' 39.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4%('전혀 필요하지 않다' 1.7%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1.7%)보다 7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의 '한국문화체험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4.12점으로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251▌ 한국문화체험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3 | 2.7 | 3 | 1.7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47 | 5.6 | 3 | 1.7 |
| 그저 그렇다 | 138 | 16.4 | 29 | 16.4 |
| 대체로 필요하다 | 287 | 34.1 | 70 | 39.5 |
| 매우 필요하다 | 291 | 34.6 | 65 | 36.7 |
| 무응답 | 56 | 6.7 | 7 | 4.0 |
| 5점  척도 평균 | 3.99점 | | 4.12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베트남 (73.4%)과 일본(73.2%) 출신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항목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해보면, 역시 베트남 출신이 4.12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한족(4.02점)과 중국 조선족(4.01점) 출신이 이 항목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항목 서비스에 대한 이들 집단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252▐ 출신국적별 한국문화체험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한국문화체험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2.7 | 5.6 | 8.3 | 16.4 | 34.1 | 34.6 | 68.6 | 6.7 | 3.99 |
| 중국조선족 | 72 | 5.6 | 2.8 | 8.3 | 15.3 | 30.6 | 38.9 | 69.4 | 6.9 | 4.01 |
| 중국한족 | 190 | 1.6 | 6.3 | 7.9 | 16.3 | 31.1 | 35.3 | 66.3 | 9.5 | 4.02 |
| 일본 | 82 | 1.2 | 6.1 | 7.3 | 18.3 | 42.7 | 30.5 | 73.2 | 1.2 | 3.96 |
| 베트남 | 252 | 3.2 | 6.0 | 9.1 | 9.5 | 31.7 | 41.7 | 73.4 | 7.9 | 4.12 |
| 필리핀 | 119 | 4.2 | 6.7 | 10.9 | 24.4 | 34.5 | 25.2 | 59.7 | 5.0 | 3.73 |
| 캄보디아 | 41 | 0.0 | 4.9 | 4.9 | 26.8 | 39.0 | 26.8 | 65.9 | 2.4 | 3.90 |
| 기타 | 86 | 2.3 | 3.5 | 5.8 | 19.8 | 39.5 | 29.1 | 68.6 | 5.8 | 3.95 |
| $x$ 2-검정 | $x$ 2=44.893, p-value=.039 | | | | | | | | | |

## (14)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가운데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에게 물어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9.4%('매우 필요하다' 27.7% + '대체로 필요하다' 31.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9.5%('전혀 필요하지 않다' 4.0%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5.5%)보다 49.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4.3%('매우 필요하다' 24.9% + '대체로 필요하다' 29.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3.0%('전혀 필요하지 않다' 5.1%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7.9%)보다 41.3% 높았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3.79점인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3.65점으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253▐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34 | 4.0 | 9 | 5.1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46 | 5.5 | 14 | 7.9 |
| 그저 그렇다 | 200 | 23.8 | 48 | 27.1 |
| 대체로 필요하다 | 267 | 31.7 | 52 | 29.4 |
| 매우 필요하다 | 233 | 27.7 | 44 | 24.9 |
| 무응답 | 62 | 7.4 | 10 | 5.6 |
| 5점 척도 평균 | 3.79점 | | 3.65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베트남 출신에서 6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한족(63.2%), 중국 조선족(62.5%) 출신 순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중국 한족이 4.00점으로 그 필요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베트남(3.93점) 출신, 중국 조선족(3.82점)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254▐ 출신국적별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4.0 | 5.5 | 9.5 | 23.8 | 31.7 | 27.7 | 59.4 | 7.4 | 3.79 |
| 중국조선족 | 72 | 8.3 | 2.8 | 11.1 | 18.1 | 30.6 | 31.9 | 62.5 | 8.3 | 3.82 |
| 중국한족 | 190 | 1.6 | 5.3 | 6.8 | 20.5 | 27.4 | 35.8 | 63.2 | 9.5 | 4.00 |
| 일본 | 82 | 2.4 | 8.5 | 11.0 | 36.6 | 35.4 | 14.6 | 50.0 | 2.4 | 3.53 |
| 베트남 | 252 | 4.0 | 4.0 | 7.9 | 18.7 | 33.3 | 32.1 | 65.5 | 7.9 | 3.93 |
| 필리핀 | 119 | 5.9 | 5.9 | 11.8 | 27.7 | 36.1 | 16.8 | 52.9 | 7.6 | 3.56 |
| 캄보디아 | 41 | 2.4 | 9.8 | 12.2 | 26.8 | 26.8 | 31.7 | 58.5 | 2.4 | 3.78 |
| 기타 | 86 | 5.8 | 7.0 | 12.8 | 31.4 | 30.2 | 18.6 | 48.8 | 7.0 | 3.53 |
| $x$ 2-검정 | $x$ 2=55.094, p-value=.003 | | | | | | | | |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3년~5년에서 67.8%로 가장 많았으며, 이 항목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점수 역시 3년~5년에서 3.94점으로 가장 높아 이 기간에 속한 외국인 배우자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기간별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표 Ⅳ - 255▐ 결혼기간별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4.0 | 5.5 | 9.5 | 23.8 | 31.7 | 27.7 | 59.4 | 7.4 | 3.79 |
| 1년 미만 | 190 | 2.1 | 5.3 | 7.4 | 22.6 | 34.2 | 25.3 | 59.5 | 10.5 | 3.84 |
| 1년~3년 | 343 | 3.5 | 5.8 | 9.3 | 23.3 | 28.9 | 30.9 | 59.8 | 7.6 | 3.84 |
| 3년~5년 | 121 | 3.3 | 4.1 | 7.4 | 20.7 | 34.7 | 33.1 | 67.8 | 4.1 | 3.94 |
| 5년 이상 | 180 | 7.2 | 6.1 | 13.3 | 28.9 | 32.2 | 20.0 | 52.2 | 5.6 | 3.55 |
| 무응답 | 8 | 12.5 | 0.0 | 12.5 | 0.0 | 37.5 | 37.5 | 75.0 | 12.5 | 4.00 |
| $x$ 2-검정 | $x$ 2=27.852, p-value=.113 | | | | | | | | | |

### (15)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필요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가운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4.3%('매우 필요하다' 24.0% + '대체로 필요하다' 30.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12.1%, '전혀 필요하지 않다' 4.4%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7.7%)보다 42.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3.68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1.0%('매우 필요하다' 27.7% + '대체로 필요하다' 33.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6.8%, '전혀 필요하지 않다' 2.8%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0%)보다 5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3.82점으로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다소 높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256▐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37 | 4.4 | 5 | 2.8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65 | 7.7 | 7 | 4.0 |
| 그저 그렇다 | 208 | 24.7 | 50 | 28.2 |
| 대체로 필요하다 | 255 | 30.3 | 59 | 33.3 |
| 매우 필요하다 | 202 | 24.0 | 49 | 27.7 |
| 무응답 | 75 | 8.9 | 7 | 4.0 |
| 5점 척도 평균 | 3.68점 | | 3.82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에서 65.9%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조선족 출신(62.5%)과 일본 출신(62.2%)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도 캄보디아 출신에서 3.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조선족(3.88점), 일본(3.80점), 중국 한족 (3.6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이들 집단의 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257▐ 출신국적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4.4 | 7.7 | 12.1 | 24.7 | 30.3 | 24.0 | 54.3 | 8.9 | 3.68 |
| 중국조선족 | 72 | 6.9 | 1.4 | 8.3 | 18.1 | 31.9 | 30.6 | 62.5 | 11.1 | 3.88 |
| 중국한족 | 190 | 2.6 | 11.6 | 14.2 | 23.7 | 22.1 | 27.4 | 49.5 | 12.6 | 3.69 |
| 일본 | 82 | 2.4 | 4.9 | 7.3 | 29.3 | 35.4 | 26.8 | 62.2 | 1.2 | 3.80 |
| 베트남 | 252 | 6.7 | 6.7 | 13.5 | 23.8 | 29.8 | 22.6 | 52.4 | 10.3 | 3.61 |
| 필리핀 | 119 | 2.5 | 10.9 | 13.4 | 28.6 | 35.3 | 16.0 | 51.3 | 6.7 | 3.55 |
| 캄보디아 | 41 | 0.0 | 4.9 | 4.9 | 26.8 | 39.0 | 26.8 | 65.9 | 2.4 | 3.90 |
| 기타 | 86 | 5.8 | 7.0 | 12.8 | 24.4 | 32.6 | 22.1 | 54.7 | 8.1 | 3.63 |
| $x$ 2-검정 | $x$ 2=48.282, p-value=.019 | | | | | | | | | |

## (16)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필요도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3.1%('매우 필요하다' 22.3% + '대체로 필요하다' 30.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11.3%, '전혀 필요하지 않다' 3.1%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8.2%)보다 41.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이 항목 서비스 필요도 점수는 3.67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4.4%('매우 필요하다' 27.1% + '대체로 필요하다' 37.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7.9%, '전혀 필요하지 않다' 3.4%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5%)보다 5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의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3.83점으로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258▐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6 | 3.1 | 6 | 3.4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69 | 8.2 | 8 | 4.5 |
| 그저 그렇다 | 227 | 27.0 | 43 | 24.3 |
| 대체로 필요하다 | 259 | 30.8 | 66 | 37.3 |
| 매우 필요하다 | 188 | 22.3 | 48 | 27.1 |
| 무응답 | 73 | 8.7 | 6 | 3.4 |
| 5점 척도 평균 | 3.67점 | | 3.83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해 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 출신에서 70.8%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68.3%)과 캄보디아(61.0%) 출신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중국 조선족 출신에서 3.9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본 출신(3.87점), 캄보디아 출신(3.80점), 중국 한족 출신(3.68점) 등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Ⅳ - 259▐ 출신국적별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3.1 | 8.2 | 11.3 | 27.0 | 30.8 | 22.3 | 53.1 | 8.7 | 3.67 |
| 중국조선족 | 72 | 4.2 | 2.8 | 6.9 | 18.1 | 38.9 | 31.9 | 70.8 | 4.2 | 3.96 |
| 중국한족 | 190 | 2.1 | 10.5 | 12.6 | 26.8 | 21.1 | 26.3 | 47.4 | 13.2 | 3.68 |
| 일본 | 82 | 0.0 | 3.7 | 3.7 | 24.4 | 48.8 | 19.5 | 68.3 | 3.7 | 3.87 |
| 베트남 | 252 | 4.4 | 9.5 | 13.9 | 31.3 | 24.2 | 19.8 | 44.0 | 10.7 | 3.51 |
| 필리핀 | 119 | 4.2 | 9.2 | 13.4 | 25.2 | 42.0 | 13.4 | 55.5 | 5.9 | 3.54 |
| 캄보디아 | 41 | 0.0 | 9.8 | 9.8 | 26.8 | 34.1 | 26.8 | 61.0 | 2.4 | 3.80 |
| 기타 | 86 | 3.5 | 5.8 | 9.3 | 26.7 | 30.2 | 25.6 | 55.8 | 8.1 | 3.75 |
| $x$ 2-검정 | $x$ 2=65.626, p-value=.000 | | | | | | | | | |

## (17)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3.6%('매우 필요하다' 22.1% + '대체로 필요하다' 31.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11.8%, '전혀 필요하지 않다' 3.7%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8.1%)보다 41.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3.66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4.4%('매우 필요하다' 29.4% + '대체로 필요하다' 35.0%)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10.7%, '전혀 필요하지 않다' 7.3%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3.4%)보다 53.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의 필요도 점수는 3.79점으로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 - 260▐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31 | 3.7 | 13 | 7.3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68 | 8.1 | 6 | 3.4 |
| 그저 그렇다 | 224 | 26.6 | 37 | 20.9 |
| 대체로 필요하다 | 265 | 31.5 | 62 | 35.0 |
| 매우 필요하다 | 186 | 22.1 | 52 | 29.4 |
| 무응답 | 68 | 8.1 | 7 | 4.0 |
| 5점 척도 평균 | 3.66점 | | 3.79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이를 외국인 배우자 출신국적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 출신에서 63.9%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출신(61.0%)과 캄보디아 출신(61.0%)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일본 출신에서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캄보디아 출신(3.73점)과 중국 조선족 출신(3.71점)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Ⅳ - 261▐ 출신국적별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3.7 | 8.1 | 11.8 | 26.6 | 31.5 | 22.1 | 53.6 | 8.1 | 3.66 |
| 중국조선족 | 72 | 8.3 | 5.6 | 13.9 | 18.1 | 37.5 | 26.4 | 63.9 | 4.2 | 3.71 |
| 중국한족 | 190 | 3.2 | 7.4 | 10.5 | 33.7 | 20.0 | 23.7 | 43.7 | 12.1 | 3.61 |
| 일본 | 82 | 0.0 | 2.4 | 2.4 | 29.3 | 39.0 | 22.0 | 61.0 | 7.3 | 3.87 |
| 베트남 | 252 | 5.2 | 8.3 | 13.5 | 23.0 | 34.1 | 20.2 | 54.4 | 9.1 | 3.62 |
| 필리핀 | 119 | 2.5 | 12.6 | 15.1 | 29.4 | 34.5 | 16.0 | 50.4 | 5.0 | 3.51 |
| 캄보디아 | 41 | 2.4 | 12.2 | 14.6 | 22.0 | 34.1 | 26.8 | 61.0 | 2.4 | 3.73 |
| 기타 | 86 | 2.3 | 8.1 | 10.5 | 24.4 | 31.4 | 26.7 | 58.1 | 7.0 | 3.78 |
| $x$ 2-검정 | $x$ 2=50.008, p-value=.012 | | | | | | | | | |

거주기간별로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3년~5년에서 62.5%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도 점수에서도 3년~5년인 경우가

3.8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기간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이 기간에 속한 외국인 배우자의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기간별, 결혼기간별 필요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표 Ⅳ - 262▐ 한국 거주기간별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3.7 | 8.1 | 11.8 | 26.6 | 31.5 | 22.1 | 53.6 | 8.1 | 3.66 |
| 1년 미만 | 266 | 3.4 | 7.9 | 11.3 | 26.7 | 30.8 | 21.8 | 52.6 | 9.4 | 3.66 |
| 1년~3년 | 290 | 5.5 | 7.9 | 13.4 | 28.6 | 29.3 | 21.4 | 50.7 | 7.2 | 3.57 |
| 3년~5년 | 112 | 0.9 | 6.3 | 7.1 | 25.0 | 34.8 | 27.7 | 62.5 | 5.4 | 3.87 |
| 5년~10년 | 107 | 3.7 | 10.3 | 14.0 | 24.3 | 36.4 | 19.6 | 56.1 | 5.6 | 3.61 |
| 10년 이상 | 41 | 2.4 | 7.3 | 9.8 | 26.8 | 26.8 | 19.5 | 46.3 | 17.1 | 3.65 |
| 무응답 | 26 | 0.0 | 11.5 | 11.5 | 19.2 | 34.6 | 23.1 | 57.7 | 11.5 | 3.78 |
| $x$ 2-검정 | $x$ 2=23.284, p-value=.561 | | | | | | | | | |

▌표 Ⅳ - 263▐ 결혼기간별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3.7 | 8.1 | 11.8 | 26.6 | 31.5 | 22.1 | 53.6 | 8.1 | 3.66 |
| 1년 미만 | 190 | 2.1 | 10.0 | 12.1 | 27.9 | 26.3 | 22.1 | 48.4 | 11.6 | 3.64 |
| 1년~3년 | 343 | 5.2 | 7.6 | 12.8 | 28.0 | 31.5 | 19.8 | 51.3 | 7.9 | 3.58 |
| 3년~5년 | 121 | 1.7 | 6.6 | 8.3 | 24.0 | 33.1 | 29.8 | 62.8 | 5.0 | 3.87 |
| 5년 이상 | 180 | 3.3 | 7.8 | 11.1 | 25.6 | 35.0 | 21.7 | 56.7 | 6.7 | 3.68 |
| 무응답 | 8 | 12.5 | 12.5 | 25.0 | 0.0 | 50.0 | 12.5 | 62.5 | 12.5 | 3.43 |
| $x$ 2-검정 | $x$ 2=23.708, p-value=.255 | | | | | | | | | |

### (18)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필요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가운데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0.2%('매우 필요하다' 29.7% + '대체로 필요하다' 30.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9.2%, '전혀 필요하지 않다' 3.9% + '대체로 필

요하지 않다' 5.3%)보다 5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 점수는 3.83점이었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2.3%('매우 필요하다' 39.0% + '대체로 필요하다' 33.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6.3%, '전혀 필요하지 않다' 2.3%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0%)보다 66.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 점수는 4.06점으로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결혼이민자의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 - 264▐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33 | 3.9 | 4 | 2.3 |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45 | 5.3 | 7 | 4.0 |
| 그저 그렇다 | 192 | 22.8 | 33 | 18.6 |
| 대체로 필요하다 | 257 | 30.5 | 59 | 33.3 |
| 매우 필요하다 | 250 | 29.7 | 69 | 39.0 |
| 무응답 | 65 | 7.7 | 5 | 2.8 |
| 5점 척도 평균 | 3.83점 | | 4.06점 | |

주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 출신에서 69.4%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점수로 환산한 결과에서도 중국 조선족 출신은 4.0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출신이 3.84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265▐ 출신국적별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3.9 | 5.3 | 9.3 | 22.8 | 30.5 | 29.7 | 60.2 | 7.7 | 3.83 |
| 중국조선족 | 72 | 4.2 | 0.0 | 4.2 | 19.4 | 33.3 | 36.1 | 69.4 | 6.9 | 4.04 |
| 중국한족 | 190 | 4.2 | 6.3 | 10.5 | 30.5 | 16.8 | 28.9 | 45.8 | 13.2 | 3.69 |
| 일본 | 82 | 1.2 | 3.7 | 4.9 | 30.5 | 39.0 | 24.4 | 63.4 | 1.2 | 3.83 |
| 베트남 | 252 | 6.0 | 6.0 | 11.9 | 17.5 | 30.6 | 32.1 | 62.7 | 7.9 | 3.84 |
| 필리핀 | 119 | 2.5 | 8.4 | 10.9 | 16.8 | 43.7 | 22.7 | 66.4 | 5.9 | 3.80 |
| 캄보디아 | 41 | 2.4 | 4.9 | 7.3 | 34.1 | 26.8 | 29.3 | 56.1 | 2.4 | 3.78 |
| 기타 | 86 | 2.3 | 3.5 | 5.8 | 19.8 | 33.7 | 33.7 | 67.4 | 7.0 | 4.00 |
| $x$ 2-검정 | $x$ 2=67.883, p-value=.000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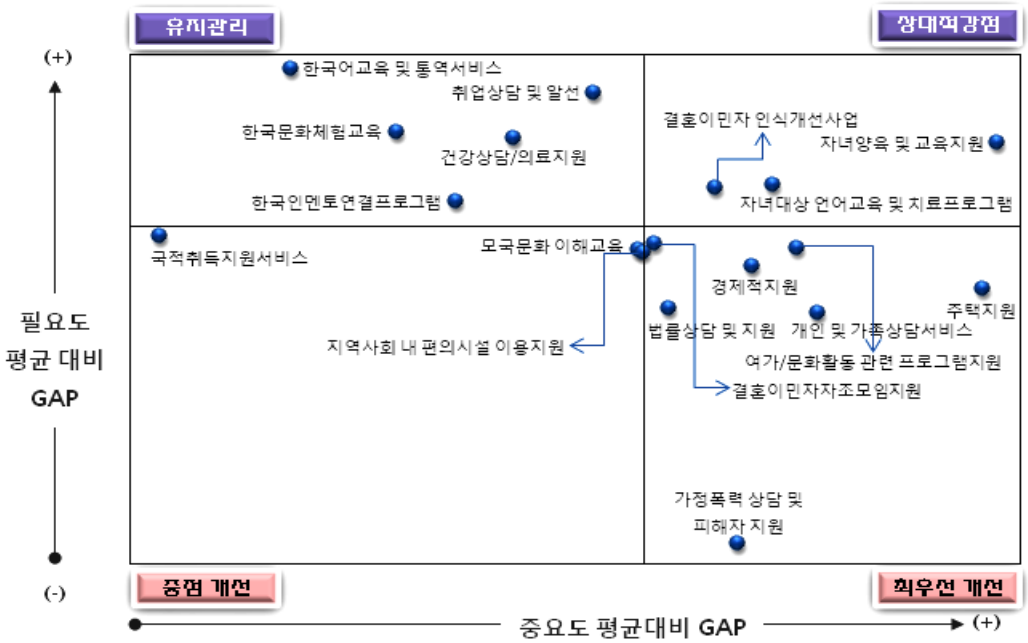
이를 거주기간별로 분석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3년~5년에서 69.7%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 점수도 3년~5년에서 3.97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10년 이상에서 3.96점, 5년~10년에서도 3.93으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거주 초기보다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기간별 필요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표 Ⅳ - 266▐ 한국 거주기간별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

| 구분 | 사례수 |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필요하지 않다 | | | 그저 그렇다 | 필요하다 | | | 무응답 | |
| | | 전혀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3.9 | 5.3 | 9.3 | 22.8 | 30.5 | 29.7 | 60.2 | 7.7 | 3.83 |
| 1년 미만 | 258 | 5.0 | 5.0 | 10.1 | 23.6 | 27.9 | 28.3 | 56.2 | 10.1 | 3.77 |
| 1년~3년 | 297 | 5.7 | 5.7 | 11.4 | 24.2 | 25.9 | 31.0 | 56.9 | 7.4 | 3.76 |
| 3년~5년 | 109 | 0.9 | 6.4 | 7.3 | 19.3 | 37.6 | 32.1 | 69.7 | 3.7 | 3.97 |
| 5년~10년 | 124 | 0.0 | 5.6 | 5.6 | 21.8 | 39.5 | 26.6 | 66.1 | 6.5 | 3.93 |
| 10년 이상 | 49 | 4.1 | 2.0 | 6.1 | 20.4 | 32.7 | 32.7 | 65.3 | 8.2 | 3.96 |
| 무응답 | 5 | 0.0 | 0.0 | 0.0 | 20.0 | 40.0 | 20.0 | 60.0 | 20.0 | 4.00 |
| $x$ 2-검정 | $x$ 2=28.298, p-value=.294 | | | | | | | | | |

(19) 사회복지서비스 portfolio 분석

사회복지서비스 항목의 필요도와 거주기간의 상관분석 결과의 상관계수를 중요도로 한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자녀대상 언어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지원'은 그 필요도와 중요도 모두에서 높아 상대적 강점의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지원'과 '주택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등은 그 중요도는 높으나 필요도 면에서는 낮아 최우선 개선 서비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 - 32〉 사회복지서비스 포트폴리오분석

## 7. 삶의 만족도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를 대상으로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1.9%('매우 만족한다' 11.8% + '대체로 만족한다' 40.1%)로 '불만족한다'는 응답(7.1%, '매우 불만족한다' 1.3% + '대체로 불만족한다' 5.8%)보다 44.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2.2%('매우 만족한다' 19.8% + '대체로 만족한다' 42.4%)로 '불만

족한다'는 응답(3.4%, '매우 불만족한다' 0.6% + '대체로 불만족한다' 2.80%)보다 58.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척도치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해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만족도는 3.56점인 반면, 한국인 배우자의 삶의 만족도는 3.78점으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의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 - 267▐ 삶의 만족도

| 구분 | 외국인 배우자 | | 한국인 배우자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비율(%) |
| 합계 | 842 | 100.0 | 177 | 100.0 |
| 매우 만족한다 | 99 | 11.8 | 35 | 19.8 |
| 대체로 만족한다 | 338 | 40.1 | 75 | 42.4 |
| 그저 그렇다 | 336 | 39.9 | 60 | 33.9 |
| 대체로 불만족한다 | 49 | 5.8 | 5 | 2.8 |
| 매우 불만족한다 | 11 | 1.3 | 1 | 0.6 |
| 무응답 | 9 | 1.1 | 1 | 0.6 |
| 5점 척도 평균 | 3.56점 | | 3.78점 | |

주 : 매우 불만족한다 1점, 대체로 불만족한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 5점

이를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에서 6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한족(58.4%), 베트남(52.0%), 중국 조선족(51.4%) 출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캄보디아 출신이 3.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한족 출신에서는 3.64점, 베트남 출신에서는 3.62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 - 268▐ 출신국적별 삶의 만족도

| 구분 | 사례수 | 삶의 만족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만족한다 | | | 그저 그렇다 | 불만족한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11.8 | 40.1 | 51.9 | 39.9 | 5.8 | 1.3 | 7.1 | 1.1 | 3.56 |
| 중국조선족 | 72 | 4.2 | 47.2 | 51.4 | 44.4 | 2.8 | 1.4 | 4.2 | 0.0 | 3.50 |
| 중국한족 | 190 | 12.6 | 45.8 | 58.4 | 35.8 | 4.7 | 1.1 | 5.8 | 0.0 | 3.64 |
| 일본 | 82 | 8.5 | 34.1 | 42.7 | 42.7 | 11.0 | 2.4 | 13.4 | 1.2 | 3.36 |
| 베트남 | 252 | 13.5 | 38.5 | 52.0 | 42.9 | 2.4 | 1.2 | 3.6 | 1.6 | 3.62 |
| 필리핀 | 119 | 13.4 | 32.8 | 46.2 | 41.2 | 10.1 | 0.8 | 10.9 | 1.7 | 3.49 |
| 캄보디아 | 41 | 14.6 | 48.8 | 63.4 | 26.8 | 7.3 | 2.4 | 9.8 | 0.0 | 3.66 |
| 기타 | 86 | 10.5 | 38.4 | 48.8 | 38.4 | 9.3 | 1.2 | 10.5 | 2.3 | 3.49 |
| $x$ 2-검정 | $x$ 2=38.394, p-value=.140 | | | | | | | | | |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기간별로 삶의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0년 이상에서 18.4%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삶의 만족도 점수는 1년 미만에서 3.7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결혼기간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만족한다'는 응답은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많았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결혼기간이 길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점수는 역시 1년 미만에서 3.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 - 269▐ 한국 거주기간별 삶의 만족도

| 구분 | 사례수 | 삶의 만족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만족한다 | | | 그저 그렇다 | 불만족한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11.8 | 40.1 | 51.9 | 39.9 | 5.8 | 1.3 | 7.1 | 1.1 | 3.56 |
| 1년 미만 | 258 | 15.9 | 45.3 | 61.2 | 36.0 | 2.3 | 0.4 | 2.7 | 0.0 | 3.74 |
| 1년~3년 | 297 | 11.4 | 39.4 | 50.8 | 39.4 | 6.7 | 1.7 | 8.4 | 1.3 | 3.53 |
| 3년~5년 | 109 | 11.0 | 35.8 | 46.8 | 41.3 | 9.2 | 2.8 | 11.9 | 0.0 | 3.43 |
| 5년~10년 | 124 | 5.6 | 37.1 | 42.7 | 50.8 | 4.8 | 0.0 | 4.8 | 1.6 | 3.44 |
| 10년 이상 | 49 | 6.1 | 34.7 | 40.8 | 34.7 | 14.3 | 4.1 | 18.4 | 6.1 | 3.26 |
| 무응답 | 5 | 40.0 | 40.0 | 80.0 | 20.0 | 0.0 | 0.0 | 0.0 | 0.0 | 4.20 |
| $x$ 2-검정 | $x$ 2=60.016, p-value=.000 | | | | | | | | | |

▌표 Ⅳ - 270▐ 결혼기간별 삶의 만족도

| 구분 | 사례수 | 삶의 만족도(%) | | | | | | | | 5점 척도평균 |
|---|---|---|---|---|---|---|---|---|---|---|
| | | 만족한다 | | | 그저 그렇다 | 불만족한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대체로 | 소계 | | 대체로 | 매우 | 소계 | | |
| 합계 | 842 | 11.8 | 40.1 | 51.9 | 39.9 | 5.8 | 1.3 | 7.1 | 1.1 | 3.56 |
| 1년 미만 | 190 | 16.8 | 45.3 | 62.1 | 36.3 | 1.6 | 0.0 | 1.6 | 0.0 | 3.77 |
| 1년~3년 | 343 | 10.8 | 42.3 | 53.1 | 37.9 | 6.7 | 1.2 | 7.9 | 1.2 | 3.55 |
| 3년~5년 | 121 | 11.6 | 34.7 | 46.3 | 43.8 | 7.4 | 2.5 | 9.9 | 0.0 | 3.45 |
| 5년 이상 | 180 | 8.9 | 34.4 | 43.3 | 44.4 | 7.8 | 2.2 | 10.0 | 2.2 | 3.41 |
| 무응답 | 8 | 0.0 | 37.5 | 37.5 | 50.0 | 0.0 | 0.0 | 0.0 | 12.5 | 3.43 |
| $x$ 2-검정 | $x$ 2=42.171, p-value=.003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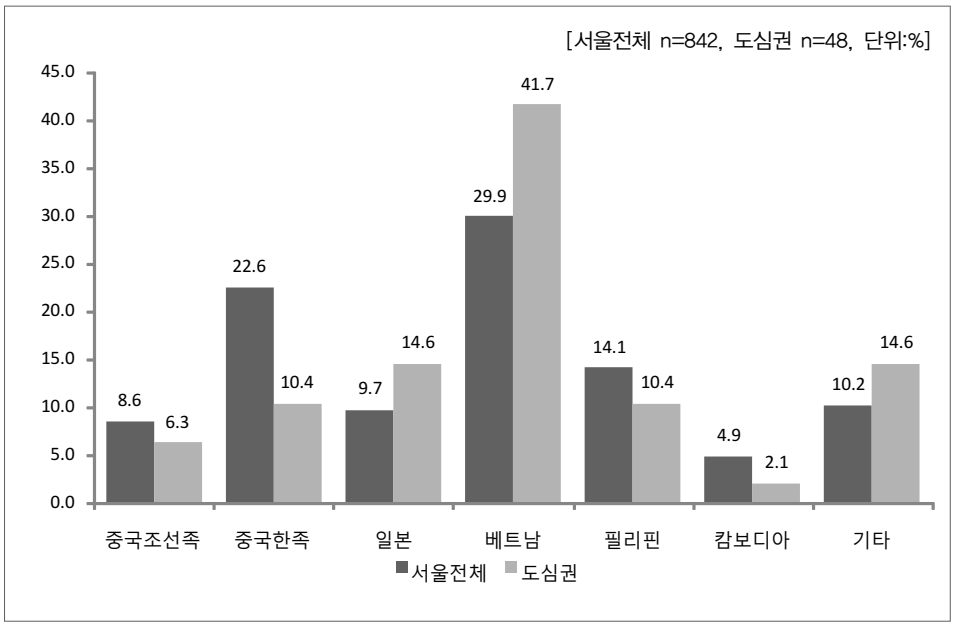
# 제7절 권역별 조사분석

## 1. 도심권 조사분석

### 1) 일반적 특성

#### (1) 출신국적 분포 비교

도심권에 거주하는 48명의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이 41.7%로 서울전체의 베트남 출신 외국인 배우자 비율(29.9%)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족, 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출신 배우자들은 전체 분포도보다 적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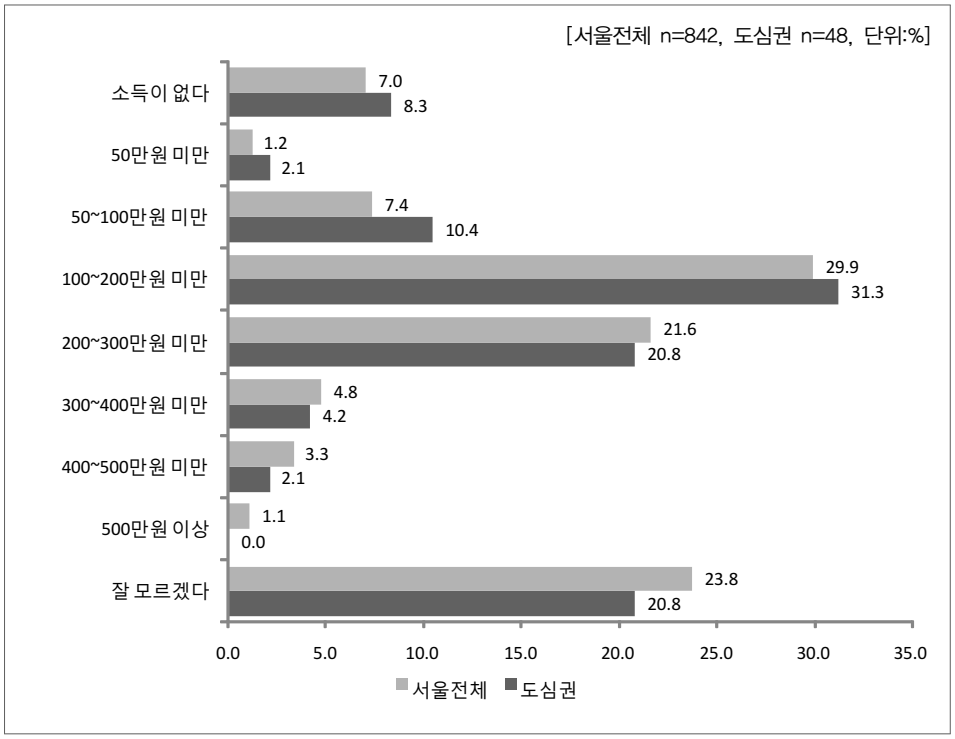



〈그림 Ⅳ - 33〉 출신국적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2) 가구소득 분포 비교

도심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이 없다는 경우는 8.3%(서울전체 7.0%), 50만원 미만은 2.1%(서울전체 1.2%), 50~100만원 미만은 10.4%(서울전

체 7.4%), 100~200만원 미만은 31.3%(서울전체 29.9%)로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서 서울전체에 비해 도심권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도심권에 비해 서울전체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34〉 가구소득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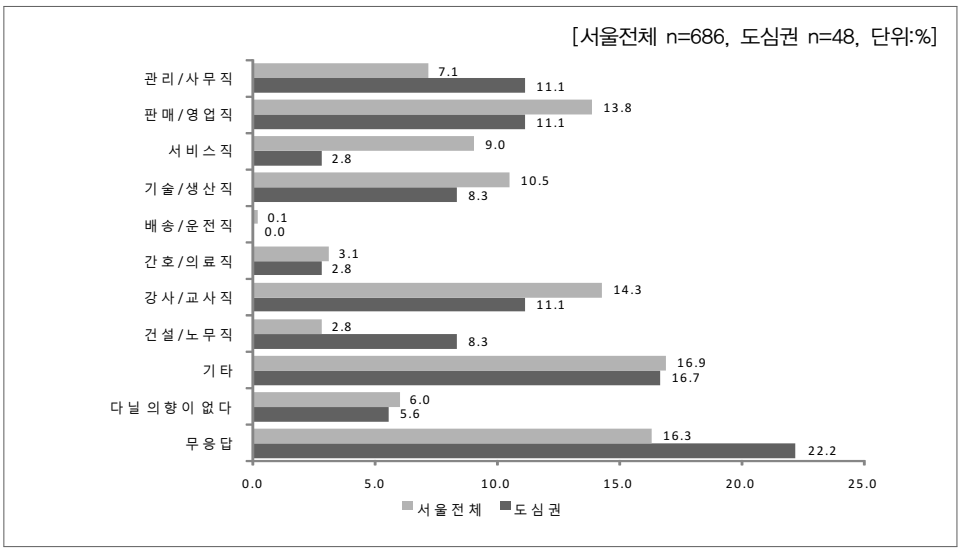
결혼형태는 초혼인 경우는 도심권에서 75%로 서울전체에 비에 다소 적고 재혼인 경우는 16.7%로 서울전체(10.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2) 취업 의사 및 미취업 사유

#### (1) 취업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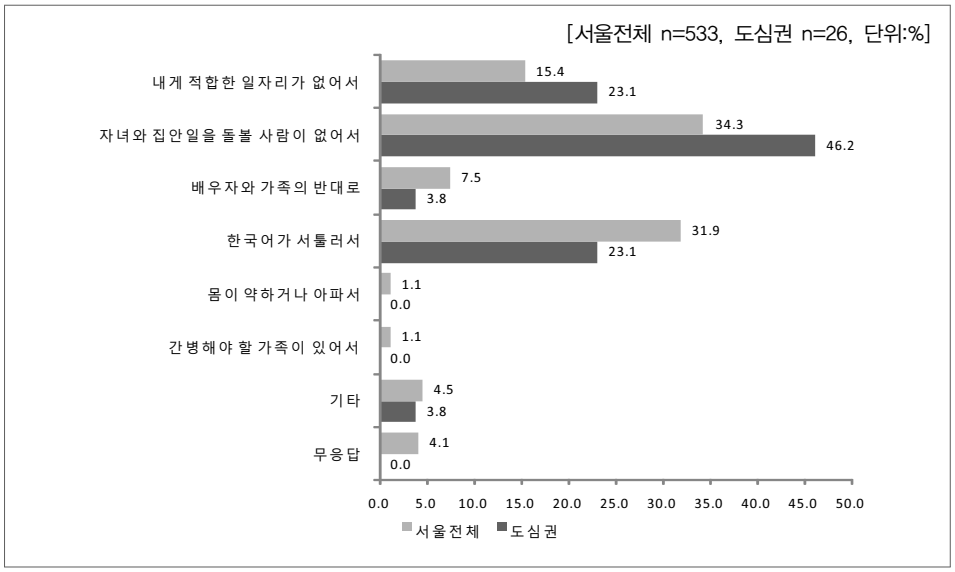
결혼이민자 중 취업의사가 있는 686명 중 도심권에 거주하는 48명의 외국인 배우자 중 미취업자 36명의 취업 의사를 살펴보면, 관리/사무직에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는 11.1%로 서울전체(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건설/노무직에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도

8.3%로 서울전체(2.8%)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사/교사직은 11.1%로 서울전체(14.3%)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35〉 취업 의사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2) 취업을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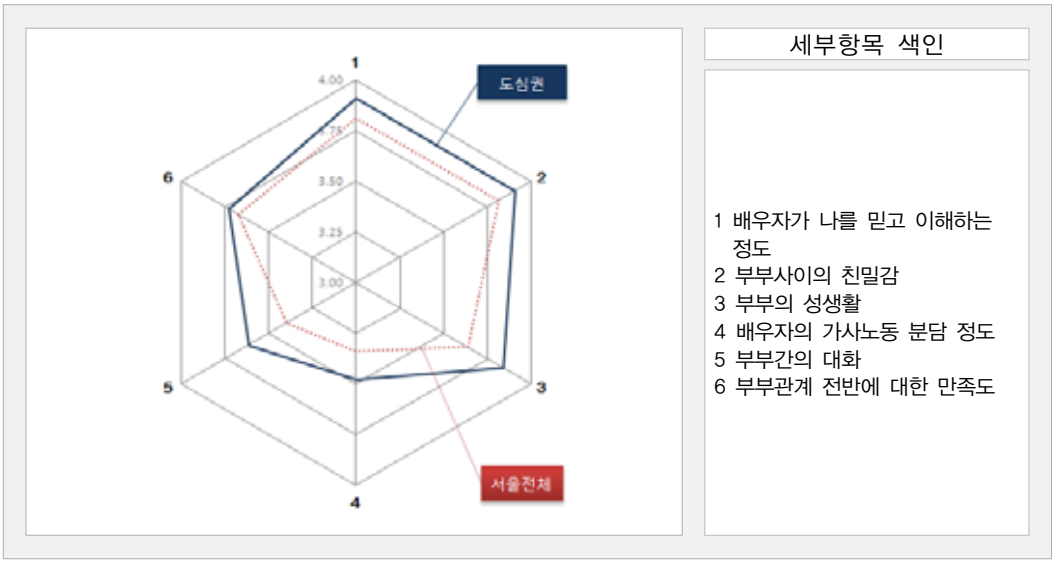



〈그림 Ⅳ - 36〉 취업을 못하는 이유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도심권거주자 중 미취업중이나 취업의사가 있는 26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자녀와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6.2%로 서울 미취업자 중 취업의사가 있는 533명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서울전체(3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내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23.1%로 서울전체(15.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가 서툴러서”라는 응답은 23.1%로 서울전체(31.9%)에 비해 적었으며, “배우자와 가족의 반대로”라는 응답도 3.8%로 서울전체(7.5%)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도심권에서는 자녀양육이나 보육을 위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결혼이민여성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고 본다.

### 3) 부부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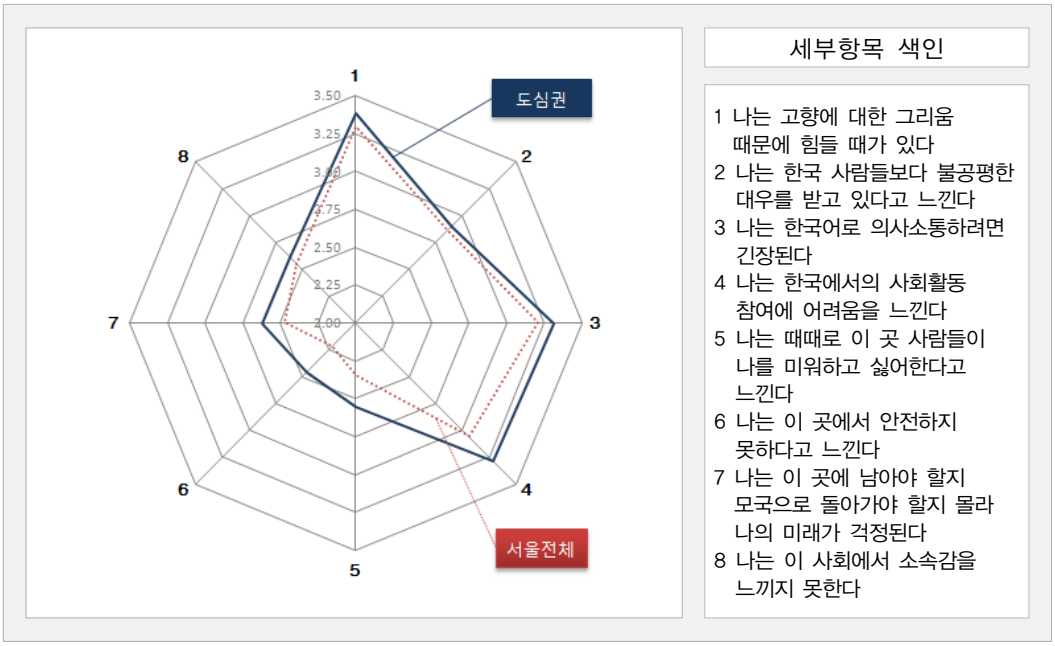
6가지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해 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도심권과 서울전체를 비교한 결과, 도심권의 만족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간의 대화 만족도는 서울전체(3.40점)에 비해 0.21점 높은 3.61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도 서울전체(3.64점)에 비해 0.20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부관계 전반적 만족도는 3.73점으로 서울전체(3.67점)보다 0.06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생활에서 원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Ⅳ - 37〉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4)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를 8가지로 나누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스트레스 점수로 환산하여 서울전체와 도심권을 비교한 결과, 도심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스트레스가 서울전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는 이 곳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불안감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가 서울전체(2.21점)에 비해 0.25점 높은 2.46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나는 한국에서의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도 서울전체(3.06점)보다 0.23점 높은 3.29점으로 나타나, 도심권 거주 외국인 배우자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보다 도심권에서는 도심생활의 안전도를 고려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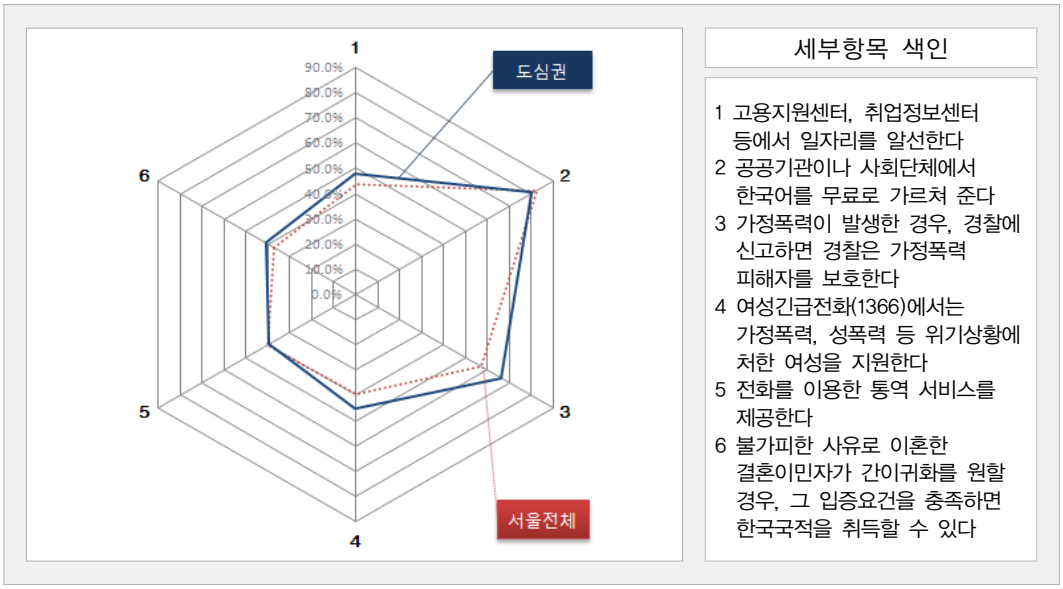



〈그림 Ⅳ - 38〉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5)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주요 사회서비스 및 제도의 인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도심권의 인지도가 서울전체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66.3%로 서울전체(57.1%)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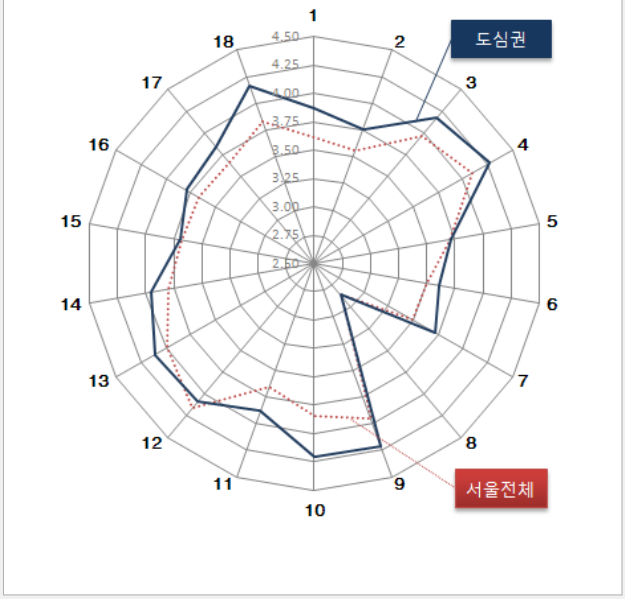
9.2%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80.2%로 서울전체(82.5%)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다른 지역보다 한국어의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도 한국어교육에 대한 홍보는 강화될 필요는 있다. 이 지역내 글로벌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번역서비스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여 서울전체 인지도 보다 낮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림 Ⅳ – 39〉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6)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18가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도심권과 서울전체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도심권의 필요도 점수가 서울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도 점수는 서울전체(3.84점)에 비해 0.37점 높은 4.21점으로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도 점수도 서울전체(3.86점)보다 0.33점 높은 4.16점으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교육 및 통역 서비스의 필요도 점수는 4.09점으로 서울전체(4.16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항목 색인

1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2 주택지원
3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
4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
5 국적취득지원서비스
6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
7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
8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9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10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11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
12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
13 한국문화체험교육
14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
15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16 여가생활/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
17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18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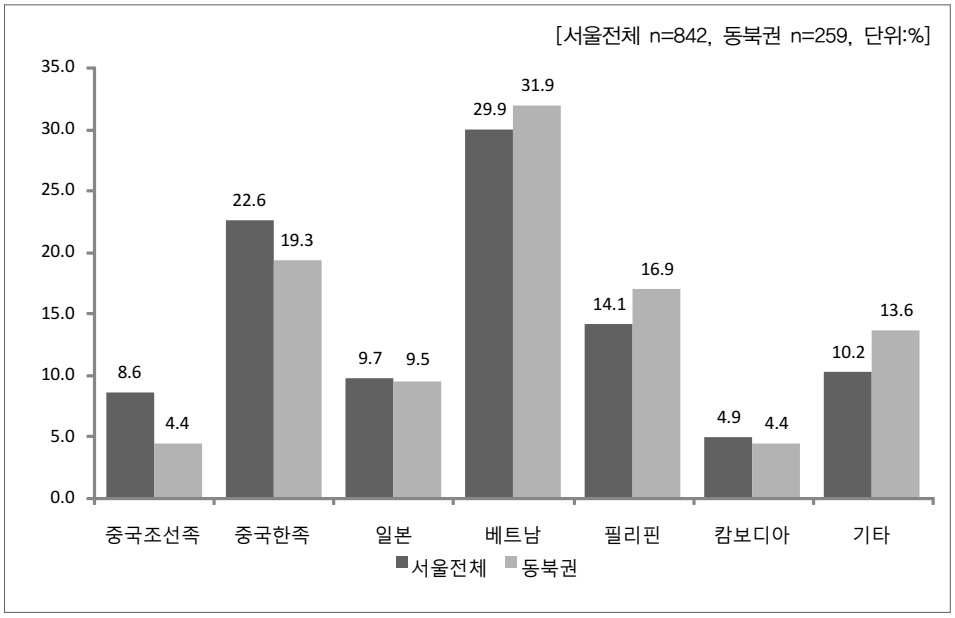
〈그림 Ⅳ - 40〉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비교(서울전체와 도심권)

## 2. 동북권 조사분석

### 1) 일반적 특성

#### (1) 출신국적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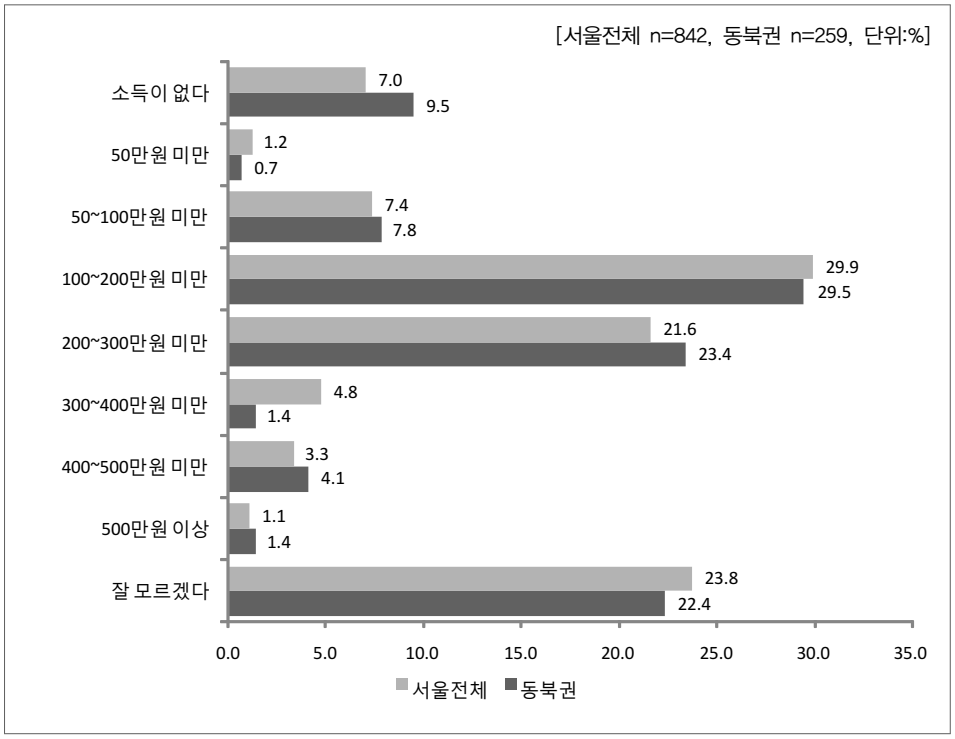
동북권에 거주하는 259명의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이 31.9%로 서울전체 베트남 출신 외국인 배우자 비율(29.9%)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필리핀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동북권에 거주하는 중국 한족 출신 외국인 배우자는 19.3%로 서울전체(22.6%)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조선족 출신도 4.4%로 서울전체(8.6%)의 절반수준이며, 일본이나 캄보디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41〉 출신국적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2) 가구소득 분포 비교

동북권에 거주하는 259명의 외국인 배우자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이 없다는 경우는 9.5%로 서울전체(7.0%)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도 23.4%로 서울전체(21.6%)에 비해 다소 많으며, 이 이외의 항목에서는 동북권원이 서울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거의 서울 전체의 가구소득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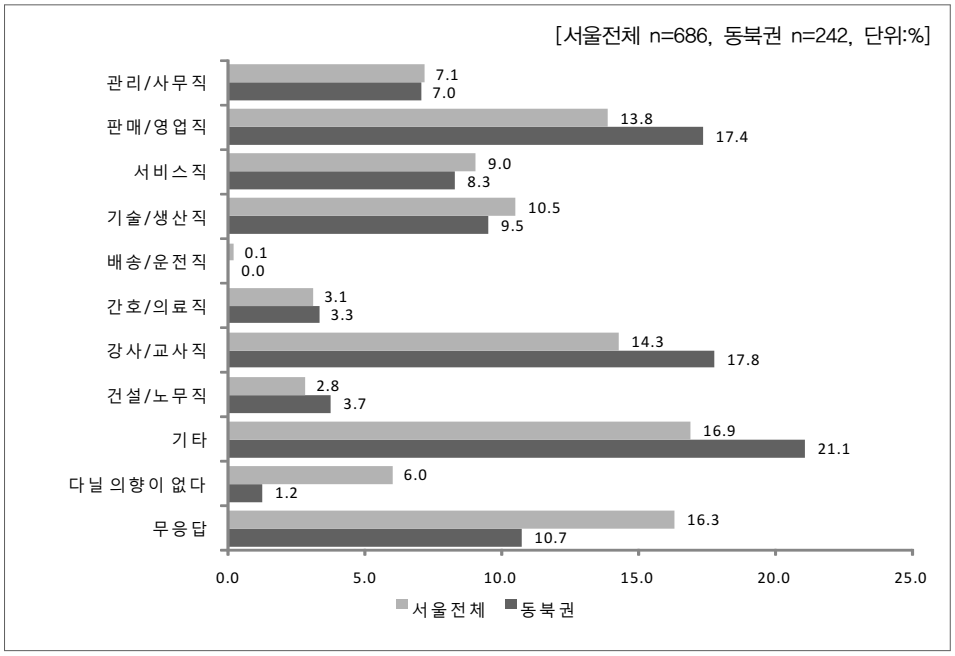



〈그림 Ⅳ - 42〉 가구소득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2) 취업 의사 및 미취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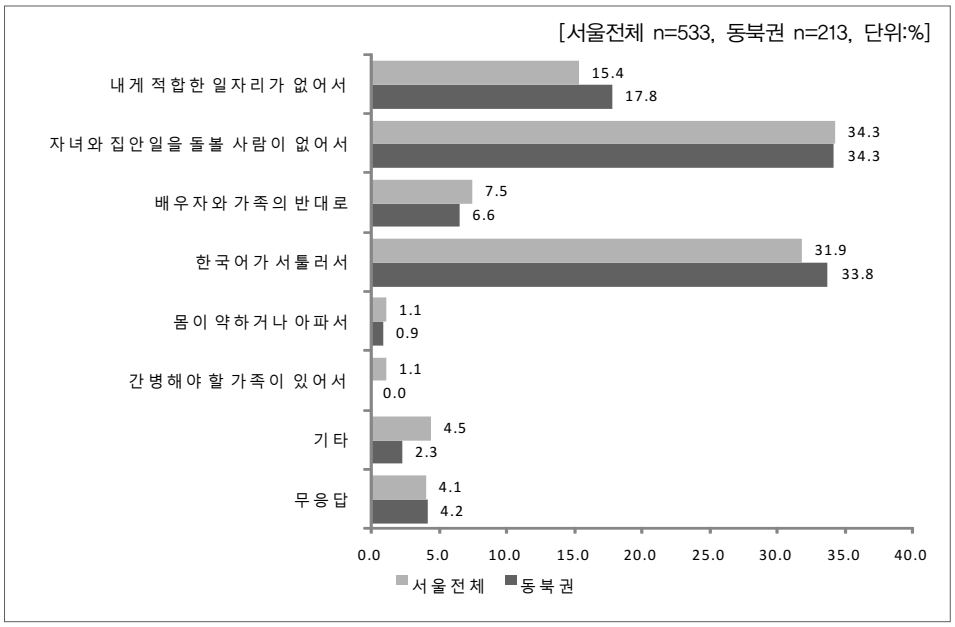
#### (1) 취업 의사

동북권에 거주하는 259명의 외국인 배우자 중 미취업자 242명의 취업 의사를 살펴보면, 다닐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1.2%로 서울전체(6.0%)에 비해 낮아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판매/영업직에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는 17.4%로 서울전체(13.8%)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강사/교사직에 취업 의사가 있다는 경우도 17.8%로 서울전체(14.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43〉 취업 의사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2) 취업을 못하는 이유




〈그림 Ⅳ - 44〉 취업을 못하는 이유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취업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내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17.8%로 서울전체(15.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가 서툴러서”라는 응답도 33.8%로 서울전체(31.9%)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동북권역은 다문화가족이 많기도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성북구와 동대문구 2곳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다문화가족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에 대한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내고 결혼이민자의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분석된다.

### 3) 부부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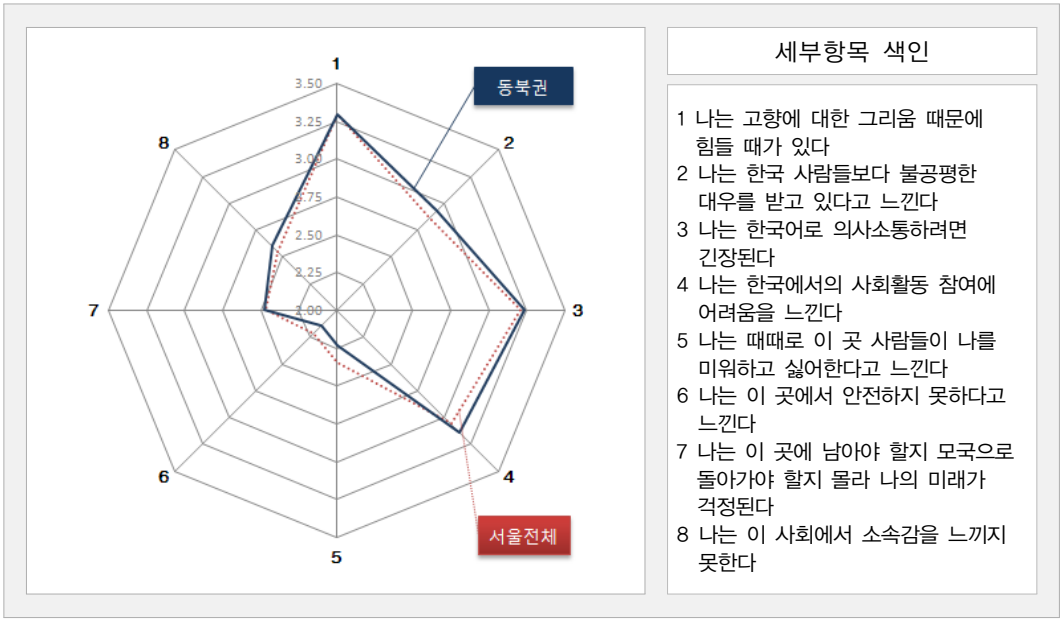
6가지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해 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동북권과 서울전체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사이의 친밀감 만족도는 3.76점으로 서울전체(3.81점)에 비해 0.05점 낮았으며,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도 서울전체(3.64점)에 비해 0.02점 낮은 3.62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부관계 전반적 만족도는 3.66점으로 서울전체(3.67점)보다 0.0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부상담 및 부부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의 사업이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그림 Ⅳ - 45〉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4)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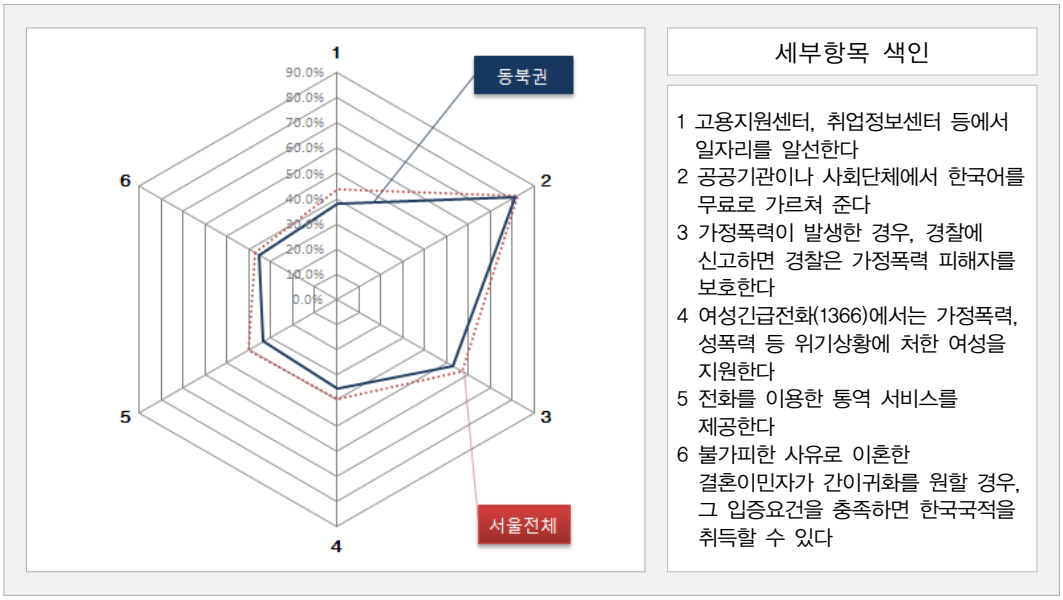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를 8가지로 나누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스트레스 점수로 환산하여 서울전체와 동북권을 비교한 결과, 동북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스트레스가 서울전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이 곳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느낀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가 2.23점으로 서울전체(2.35점)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이 곳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불안감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도 서울전체(2.21점)에 비해 0.06점 낮은 2.15점으로 나타나, 동북권 거주 외국인 배우자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도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에 속하므로 다문화가족서비스 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그림 Ⅳ - 46〉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5)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동북권의 거주자들은 스트레스는 서울시 전체보다 적은 편에 속하나 주요 사회서비스 및 제도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서울전체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우선 고용지원센터나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와 가정폭력발생시 대처방법,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화를 이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33.6%로 서울전체(40.3%)에 비해 6.7%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37.6%로 서울전체(43.7%)에 비해 다소 낮았다. 따라서 정보제공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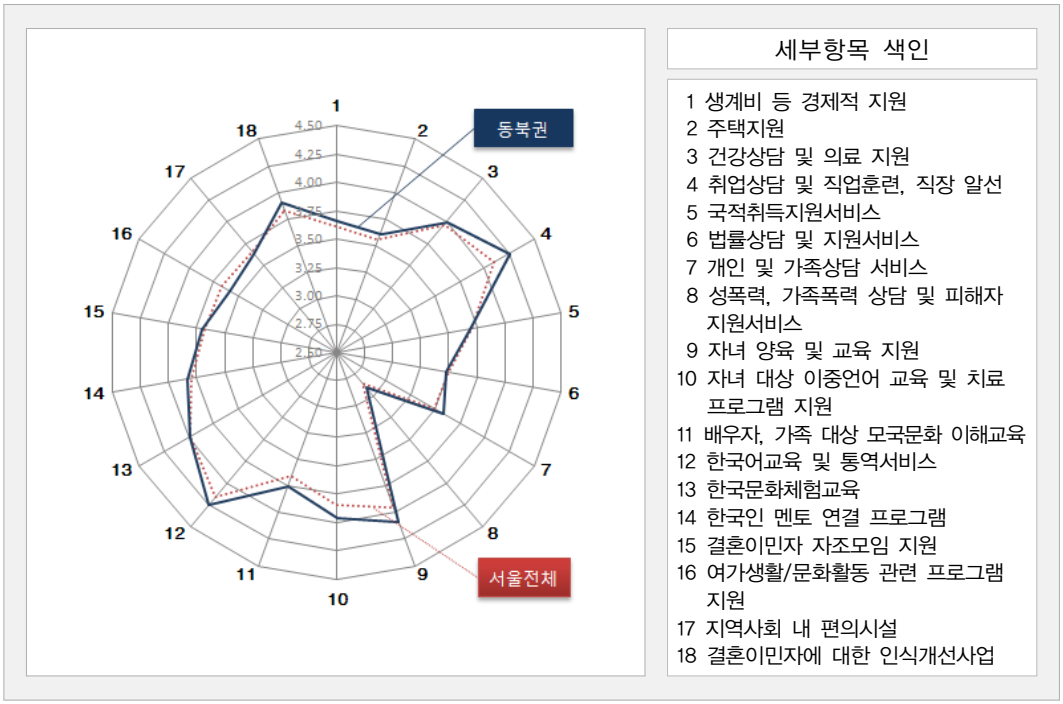



〈그림 Ⅳ - 47〉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 6)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18가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동북권과 서울전체를 비교한 결과,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 필요도 점수가 4.25점으로 서울전체(4.10점)보다 0.16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자녀의 이중언어교육 및 프로그램지원, 모국문화이해 교육,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가생활 및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 지원 필요도 점수는 3.58점으로 서울전체(3.67점)에 비해 0.09점 낮아 이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 - 48〉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비교(서울전체와 동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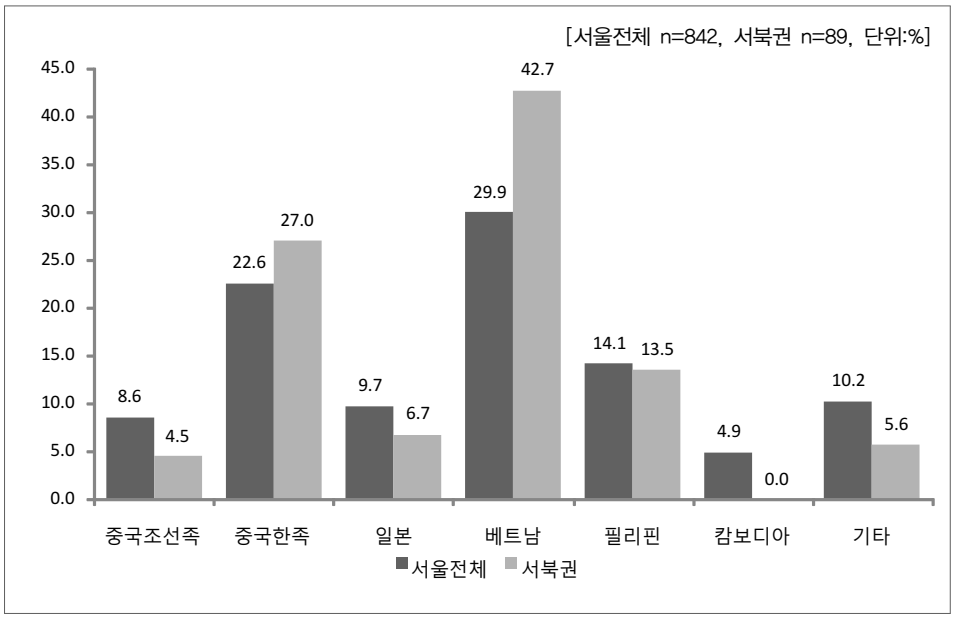
## 3. 서북권 조사결과

### 1) 일반적 특성

#### (1) 출신국적 분포 비교

서북권에 거주하는 89명의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이 42.7%로 서울전체 베트남 출신 외국인 배우자 비율(29.9%)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북권에 거주하는 중국 한족 출신 외국인 배우자는 27.0%로 서울전체(22.6%)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중국 조선족 출신은 4.5%로 서울전체(8.6%)의 절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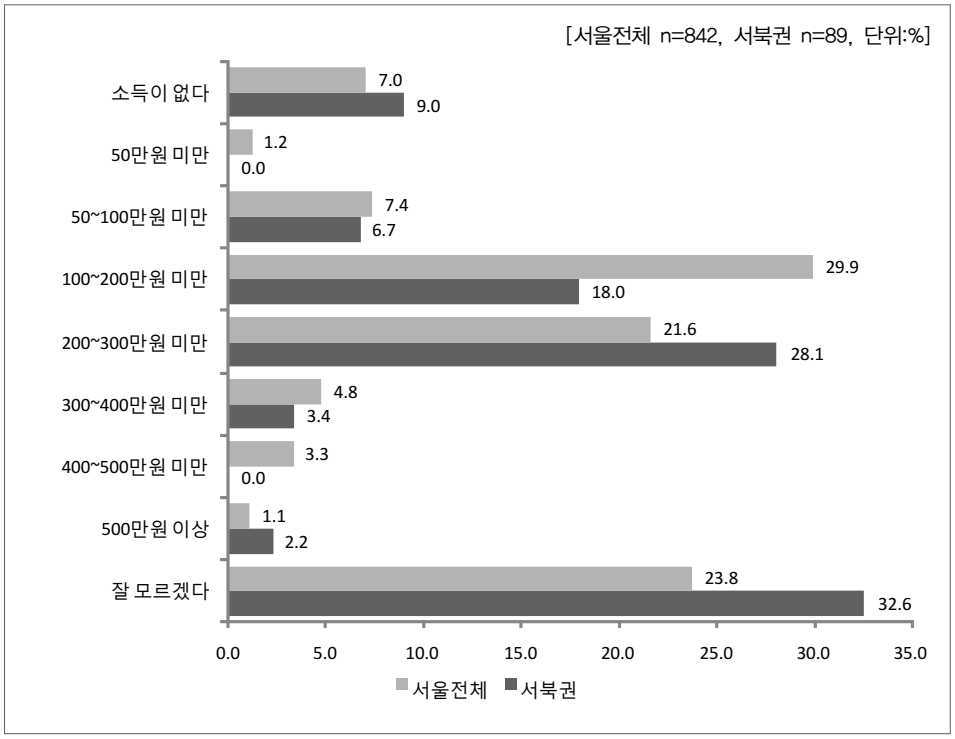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49〉 출신국적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2) 가구소득 분포 비교

서북권에 거주하는 89명의 외국인 배우자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8.0%에 불과해 서울전체(29.9%)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200~300만원 미만의 경우도 28.1%로 서울전체(21.6%)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전체의 가구소득 분포와 다른 양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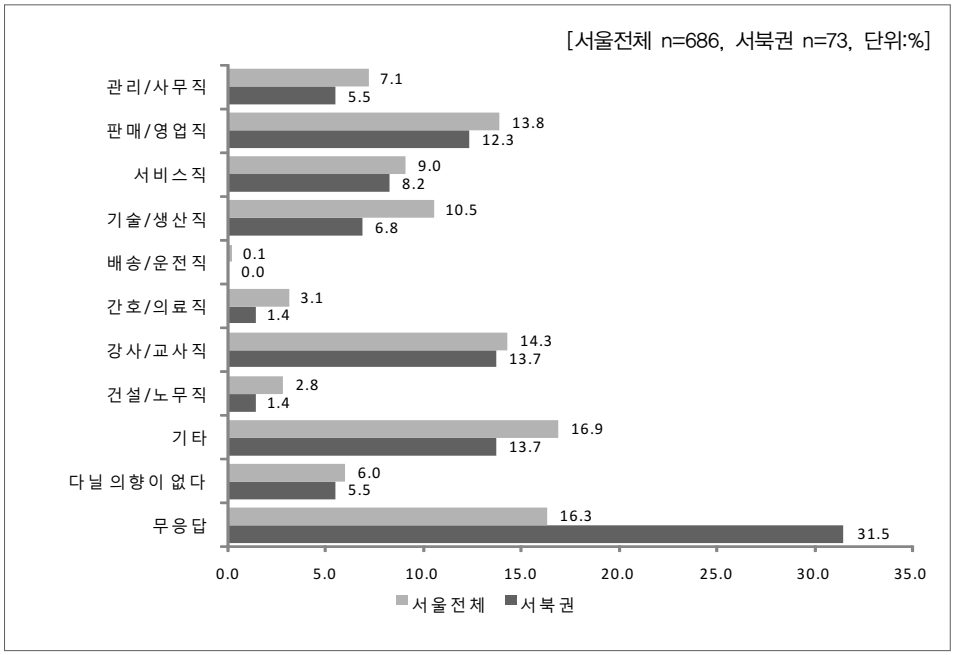



〈그림 Ⅳ - 50〉 가구소득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2) 취업 의사 및 미취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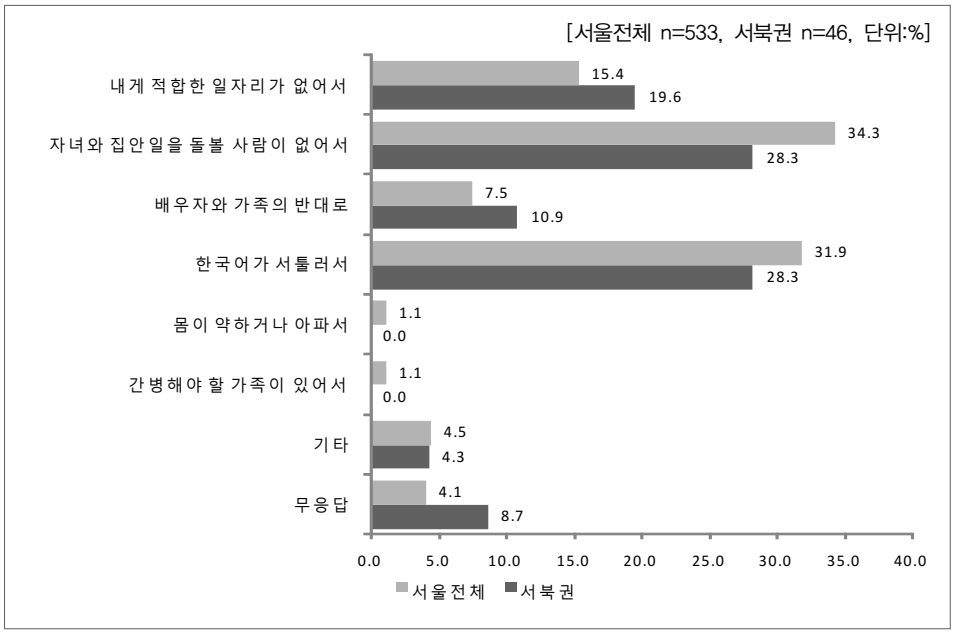
#### (1) 취업 의사

서북권에 거주하는 89명의 외국인 배우자 중 미취업자 73명의 취업 의사를 살펴보면, "다닐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5.5%로 서울전체(6.0%)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판매 영업직 12.3%, 서비스직 8.2%, 기술/생산직 6.8% 강사교사직 13.7%로 나타나 서울전체 취업의사에 비해 낮게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Ⅳ - 51〉 취업 의사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2) 취업을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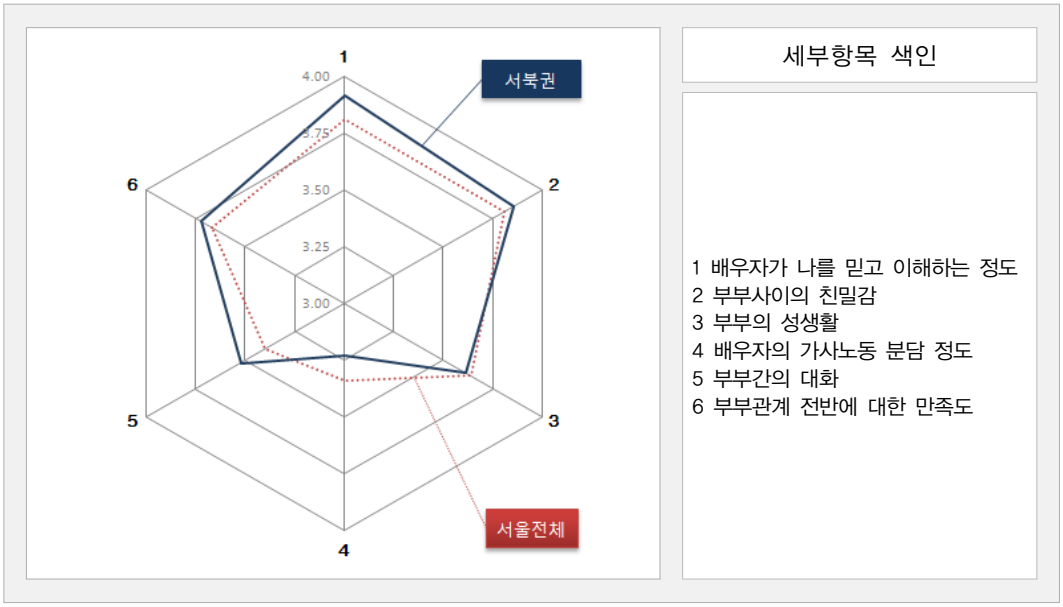



〈그림 Ⅳ - 52〉 취업을 못하는 이유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서북권에 거주하는 89명의 외국인 배우자 중 현재 미취업하고 있으나, 취업의사가 있는 46명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내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19.6%로 서울전체(15.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28.3%로 서울전체(34.3%)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서북권에서는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프로그램 개설이나 서비스지원이 요망된다.

### 3) 부부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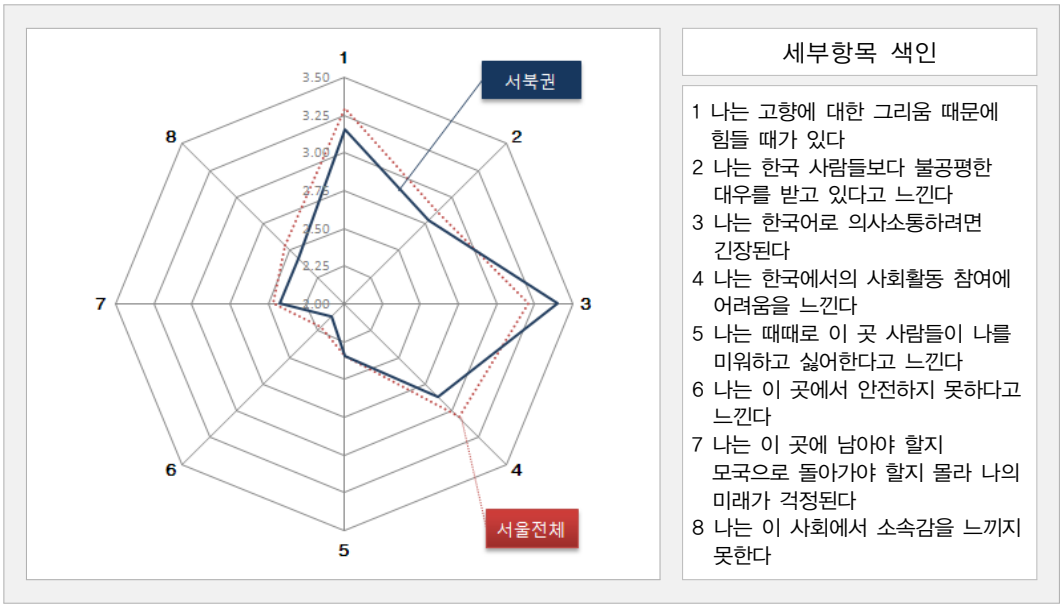
6가지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해 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서북권은 3.73으로 서울전체 3.64에 비해 0.06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간의 대화 만족도는 서울전체(3.40점)에 비해 0.12점 높은 3.52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배우자가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도 서울전체(3.81점)에 비해 0.11점 높은 3.92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3.23점으로 서울전체(3.34점)에 비해 0.1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도 서울전체(3.64점)에 비해 0.03점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상담서비스나 인식개선 등을 위한 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Ⅳ - 53〉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4)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8가지에 대해서는 서북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스트레스가 서울전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가 서울전체(3.21점)에 비해 0.19점 높은 3.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지역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는 상태이므로 다문화관련 기관들이 한국어교육서비스를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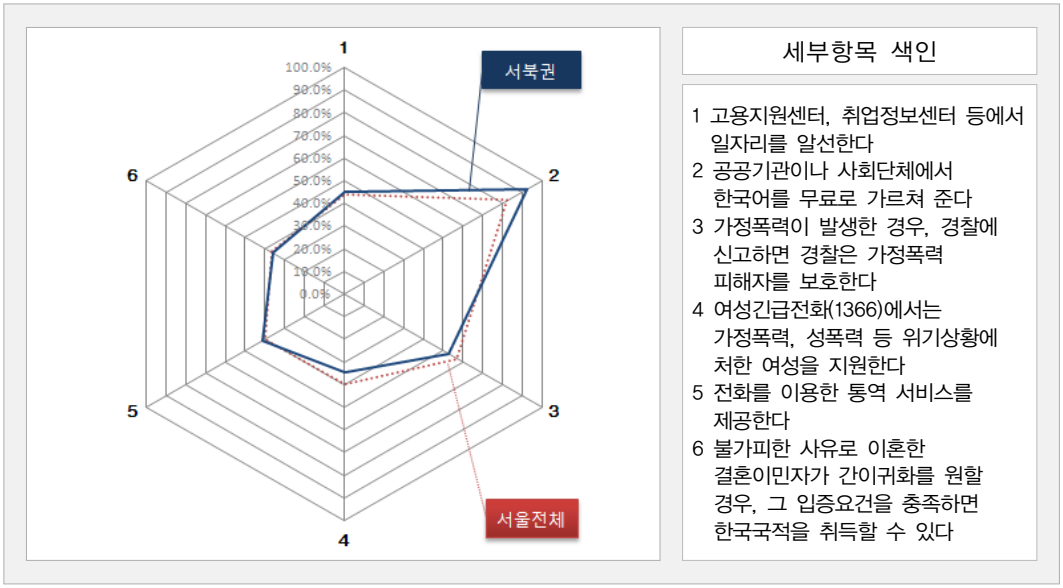



〈그림 Ⅳ - 54〉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5)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주요 사회서비스 및 제도의 인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서북권의 인지도는 서울전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92.1%로 서울전체(82.5%)에 비해 9.6%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가장 컸다. 그러나 특히,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52.8%로 서울전체(57.1%)에 비해 4.3% 낮은 것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34.8%로 서울전체(39.5%)에 비해 5.0%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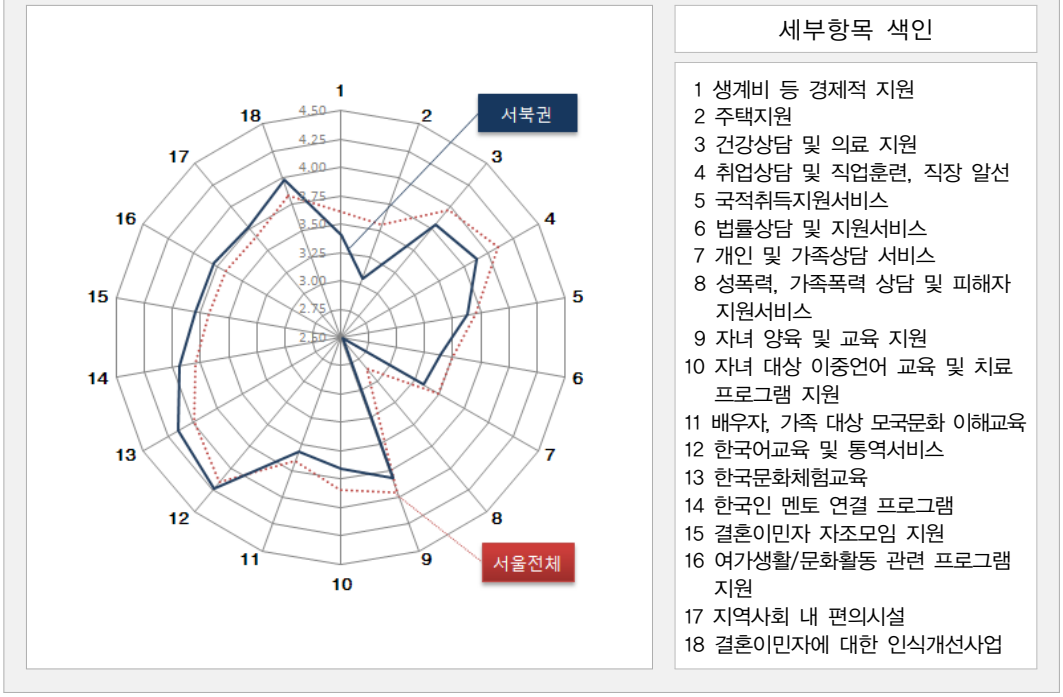
한 적극적인 홍보개선이 요구된다.




〈그림 Ⅳ - 55〉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6)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18가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서북권과 서울전체를 비교한 결과,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적지원, 의료지원,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지원서비스, 자녀양육 등에 대한 서비스 등은 욕구조사가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교육, 멘토프로그램 자조모임지원, 여가생활지원 지역사회내 편의시설 제공 등은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문화체험교육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서북권에서 4.16점으로 서울전체(3.99점)에 비해 0.1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의 필요도 점수도 서울전체(3.79점)보다 0.15점 높은 3.94점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2.51점으로 서울전체(2.86점)보다 0.34점이 낮아 이에 대한 욕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욕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서비스지원이나 사업전개가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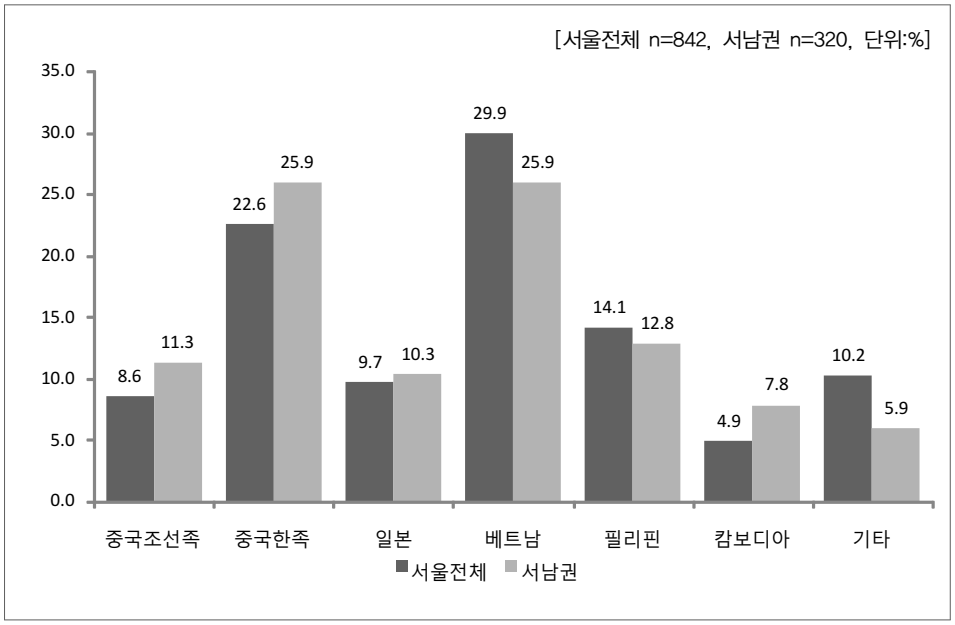

〈그림 Ⅳ - 56〉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비교(서울전체와 서북권)

## 4. 서남권 조사분석

### 1) 일반적 특성

#### (1) 출신국적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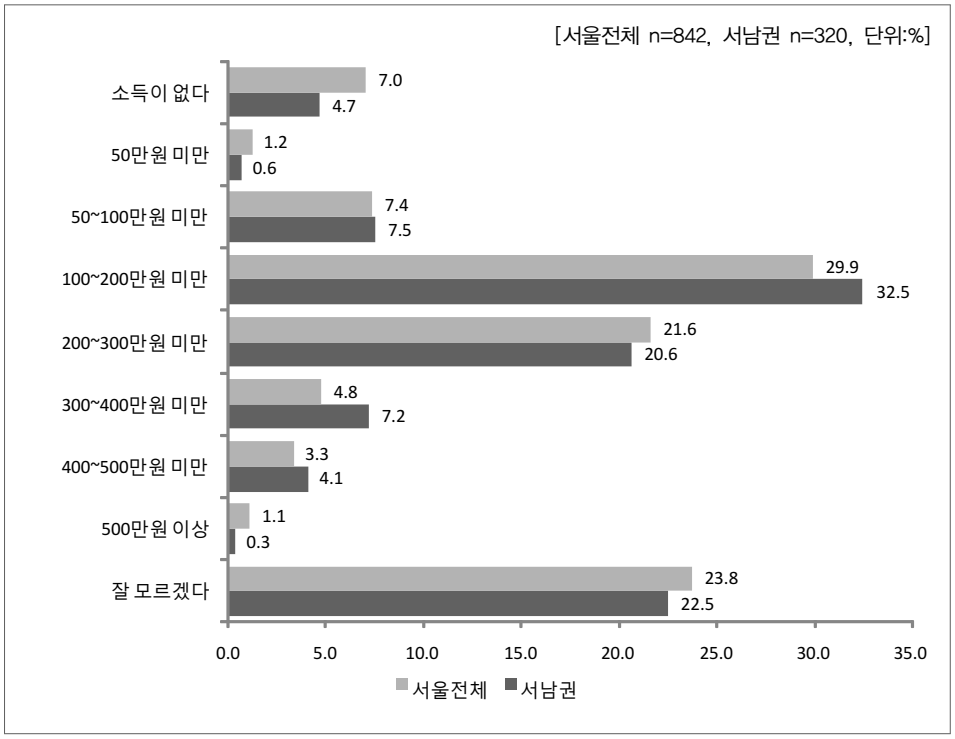
서남권에 거주하는 320명의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이 25.9%로 서울전체 베트남 출신 외국인 배우자 비율(29.9%)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한족 출신, 조선족, 일본 출신 외국인 배우자는 서울전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57〉 출신국적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2) 가구소득 분포 비교

서남권에 거주하는 320명의 외국인 배우자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2.5%로 서울전체(29.9%)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400만원의 소득가구수도 서울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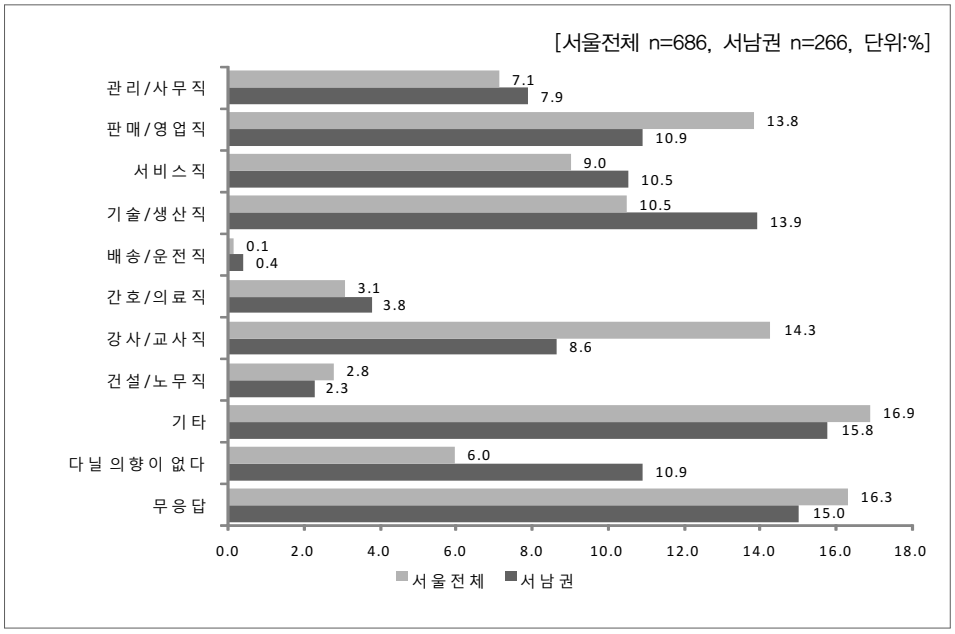



〈그림 Ⅳ - 58〉 가구소득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2) 취업 의사 및 미취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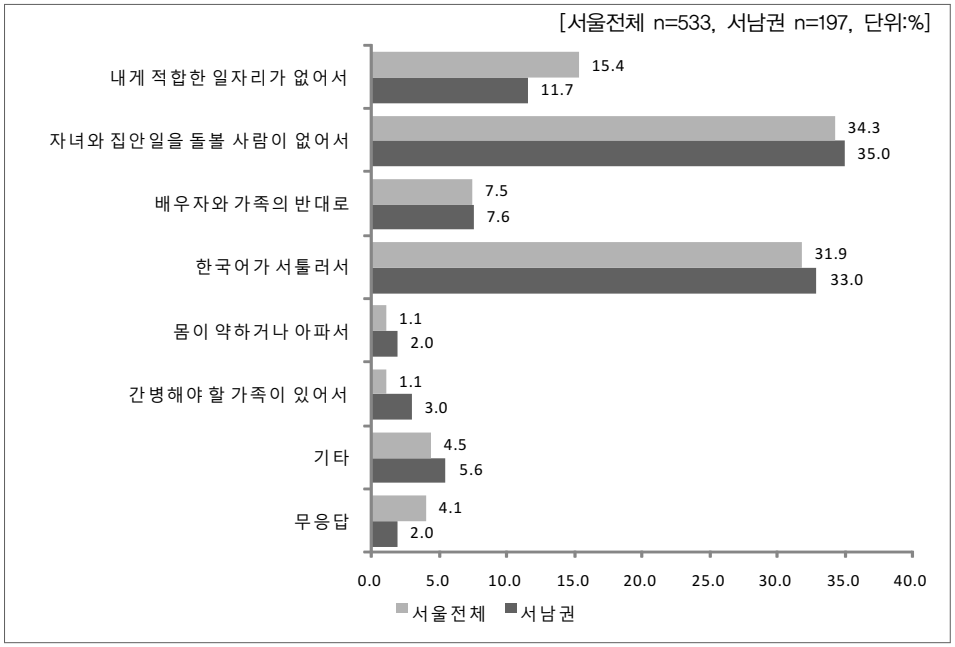
#### (1) 취업 의사

서남권에 거주하는 320명의 외국인 배우자 중 미취업자 266명의 취업 의사를 살펴보면, 다닐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10.9%로 서울전체(6.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 이에 대한 원인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생산직에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도 13.9%로 서울전체(10.5%)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직 10.5%, 관리사무직 7.9%, 간호의료직 3.8%로 서울시 전체보다는 높게 나타났다.다. 반면, 판매/영업직에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는 10.9%로 서울전체(13.8%)에 비해 다소 적었으며, 강사/교사직에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도 8.6%로 서울전체(14.3%)의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59〉 취업 의사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2) 취업을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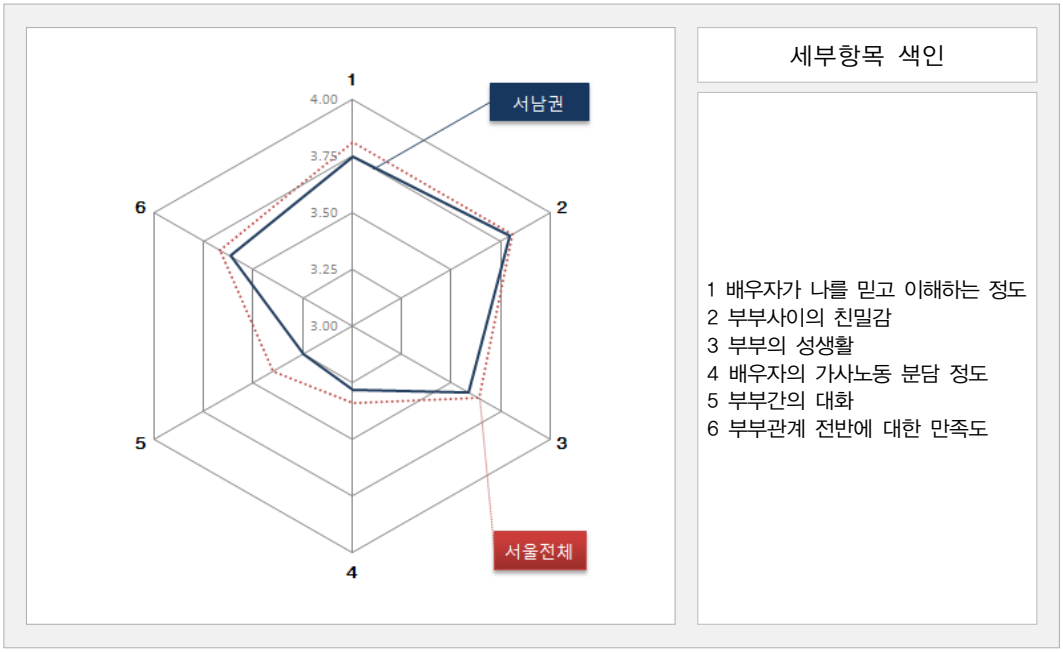



〈그림 Ⅳ - 60〉 취업을 못하는 이유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서남권에 거주하는 320명의 외국인 배우자 중 현재 미취업하고 있으나, 취업의사가 있는 197명을 대상으로 취업 의사는 있으나 취업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자녀와 집안 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한국어가 서툴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11.7%로 서울전체(15.4%)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서울전체의 양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나 자녀보육시설 확충 등의 서비스 지원이나 사업이 필요하다.

### 3) 부부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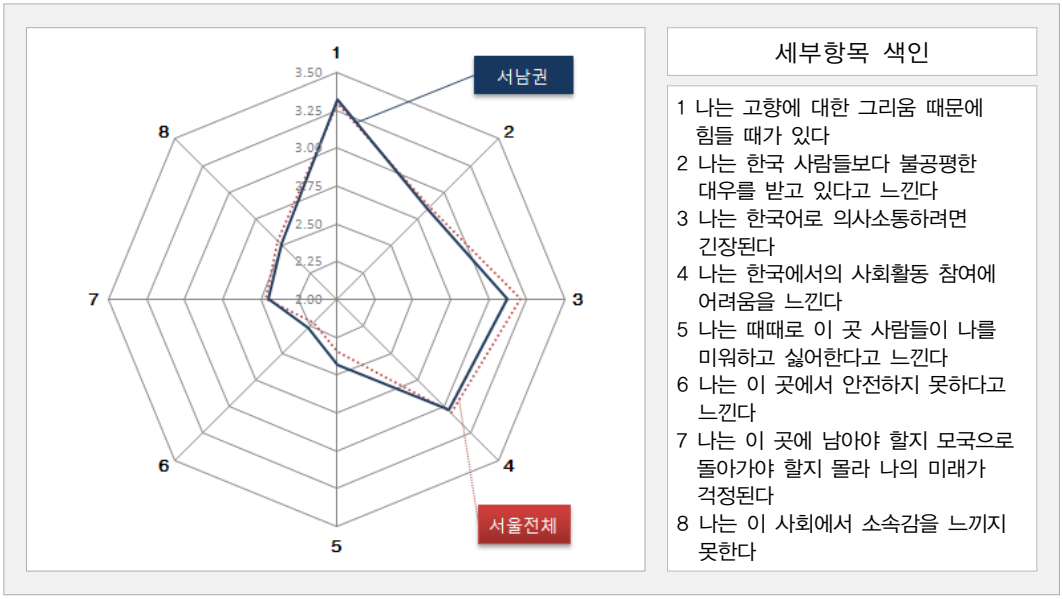
6가지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해 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서남권과 서울전체를 비교한 결과, 서남권의 만족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간의 대화 만족도는 서울전체(3.40점)에 비해 0.15점 낮은 3.25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부부관계 전반적 만족도는 3.62점으로 서울전체(3.67점)보다 0.05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부생활 상담서비스나 부부대화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나 서비스지원이 요청된다.




〈그림 Ⅳ - 61〉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4)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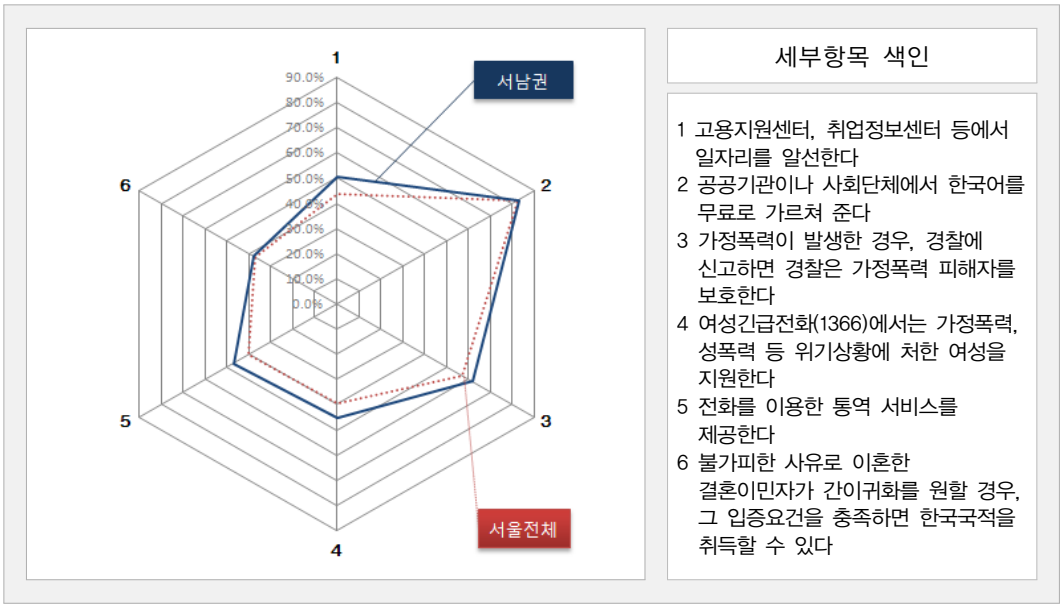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를 8가지로 나누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스트레스 점수로 환산하여 서울전체와 서남권을 비교한 결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향수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가 3.32점으로 서울전체(3.30점)보다 0.02점 높았으며, "나는 때때로 이 곳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느낀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가 2.43점으로 서울전체(2.35점)보다 0.0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는 이 곳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불안감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가 서울전체(2.21점)에 비해 0.07점 높은 2.28점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 - 62〉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5)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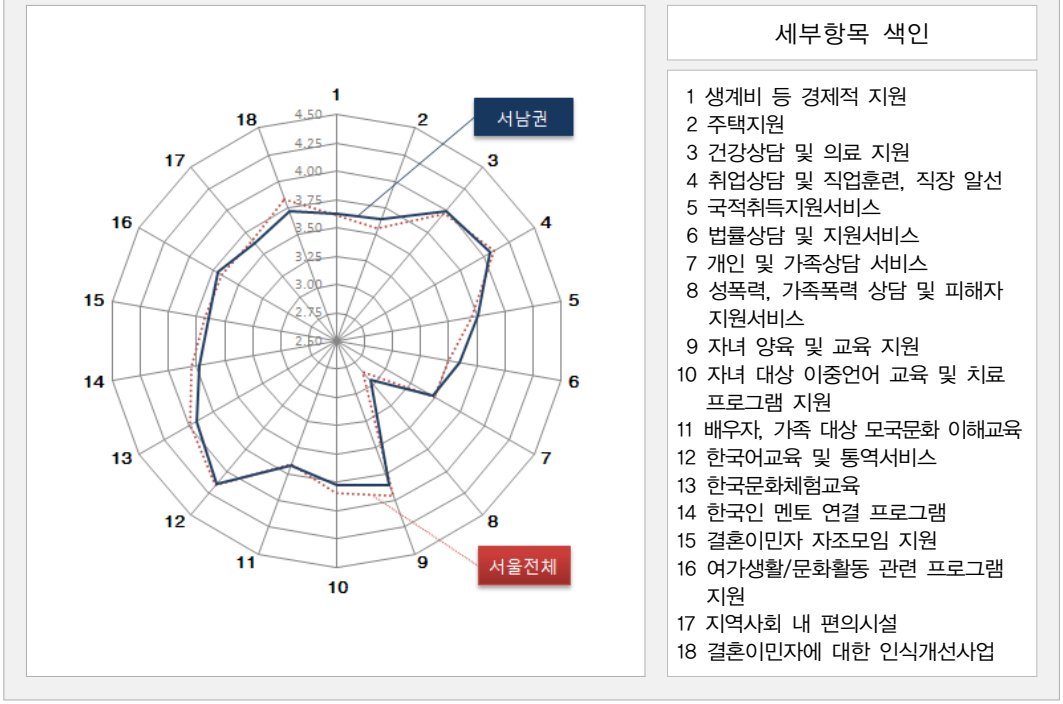
주요 사회서비스 및 제도의 인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서남권의 인지도는 서울전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50.6%로 서울전체(43.7%)에 비해 6.9%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화를 이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도 47.2%로 서울전체(40.3%)에 비해 6.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63〉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6)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18가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서남권과 서울전체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서남권의 필요도 점수가 서울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지원의 필요도 점수는 서울전체(3.55점)에 비해 0.09점 높은 3.64점으로 나타났고,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필요도 점수도 서울전체(3.50점)보다 0.10점 높은 3.60점으로,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필요도 점수는 2.95점으로 서울전체(2.86점)에 비해 0.0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욕구가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욕구도에 따른 사업이나 지원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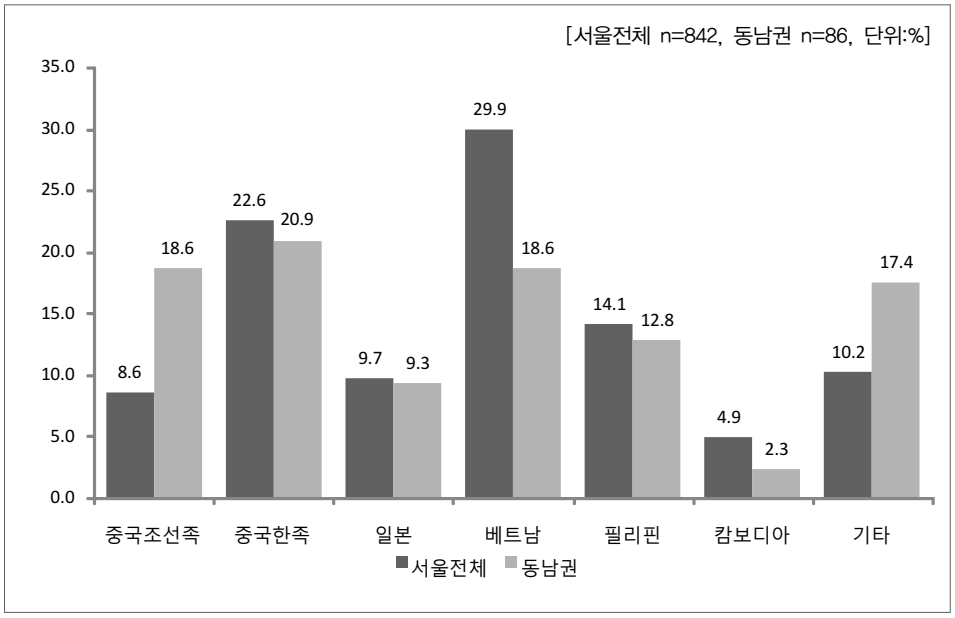

〈그림 Ⅳ - 64〉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비교(서울전체와 서남권)

## 5. 동남권 조사결과

### 1) 일반적 특성

#### (1) 출신국적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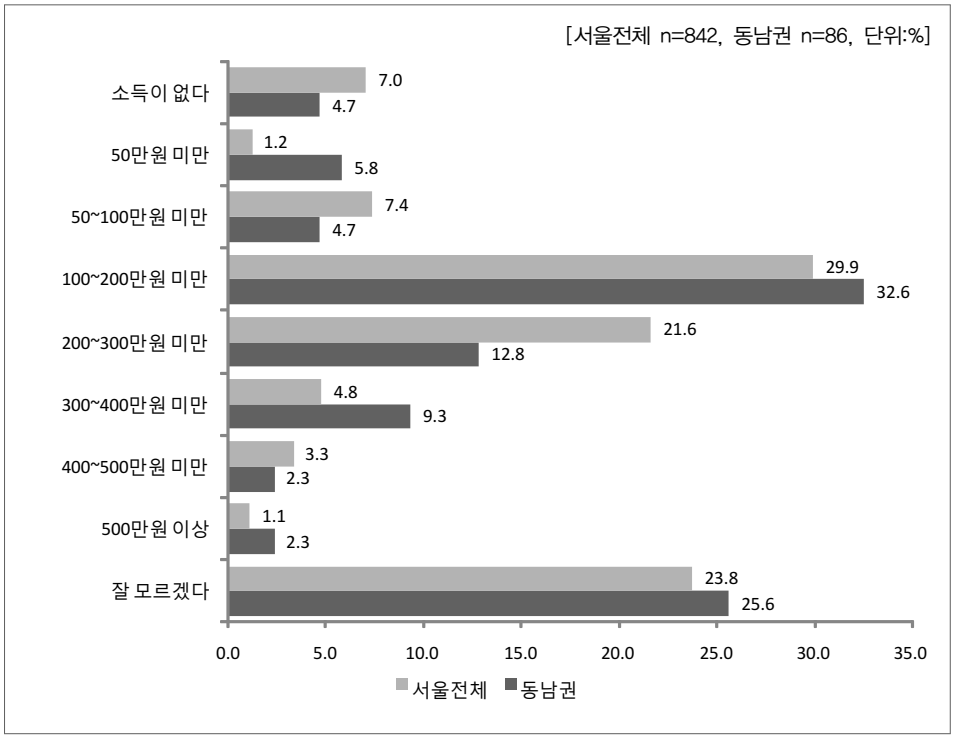
동남권에 거주하는 86명의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이 18.6%로 서울전체 베트남 출신 외국인 배우자 비율(29.9%)에 비해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족내지 한족출신의 외국인 배우자가 많으며 일본출신 외국인 배우자는 서울 전체 분포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Ⅳ – 65〉 출신국적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2) 가구소득 분포 비교

동남권에 거주하는 86명의 외국인 배우자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5.8%로 서울전체(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도 32.6%로 서울전체(29.9%)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8%로 서울전체(21.6%)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400만원은 9.3%로 서울전체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로 나타나 서울전체의 가구소득 분포와 다른 양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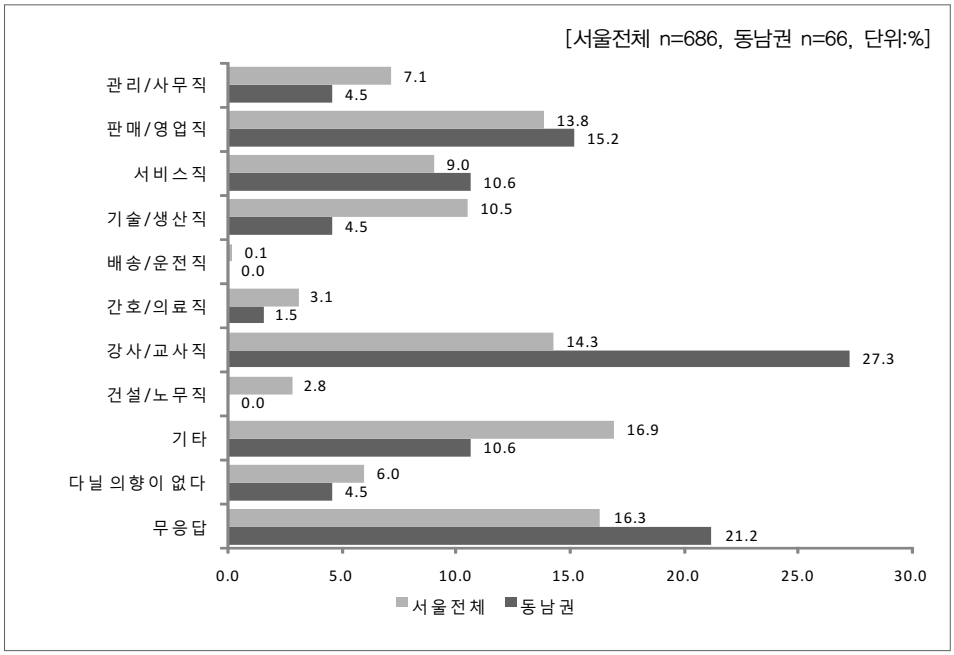



〈그림 Ⅳ - 66〉 가구소득 분포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2) 취업 의사 및 미취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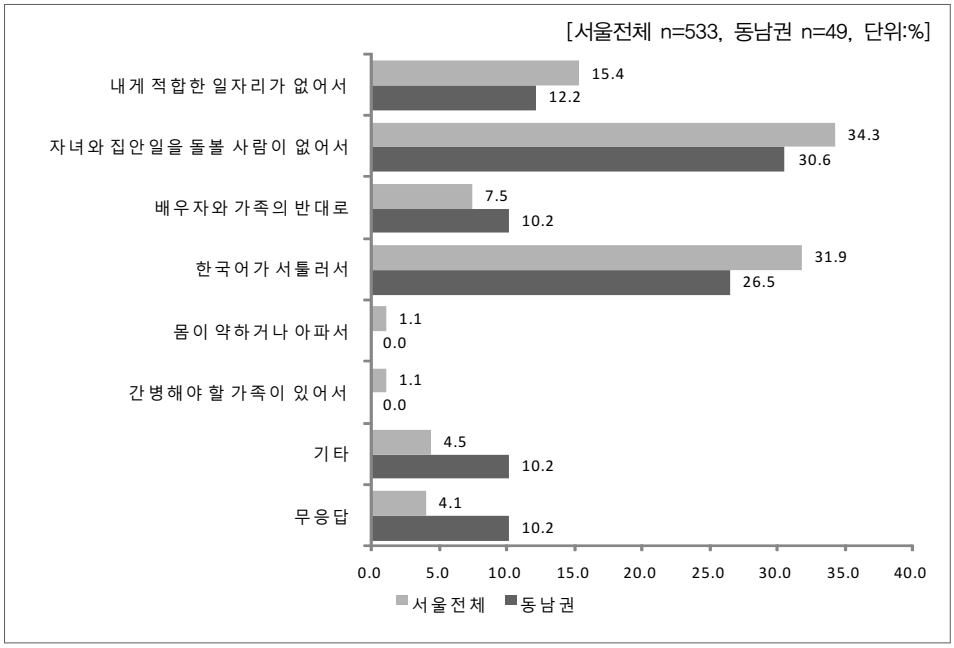
#### (1) 취업 의사

동남권에 거주하는 86명의 외국인 배우자 중 미취업자 66명의 취업 의사를 살펴보면, 다닐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4.5%로 서울전체(6.0%)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사/교사직에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는 27.3%로 서울전체(14.3%)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영업직 15.2%. 서비스직 10.6%, 등으로 서울 전체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기술/생산직에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는 4.5%로 서울전체(10.5%)의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전체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보였다.




〈그림 Ⅳ - 67〉 취업 의사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2) 취업을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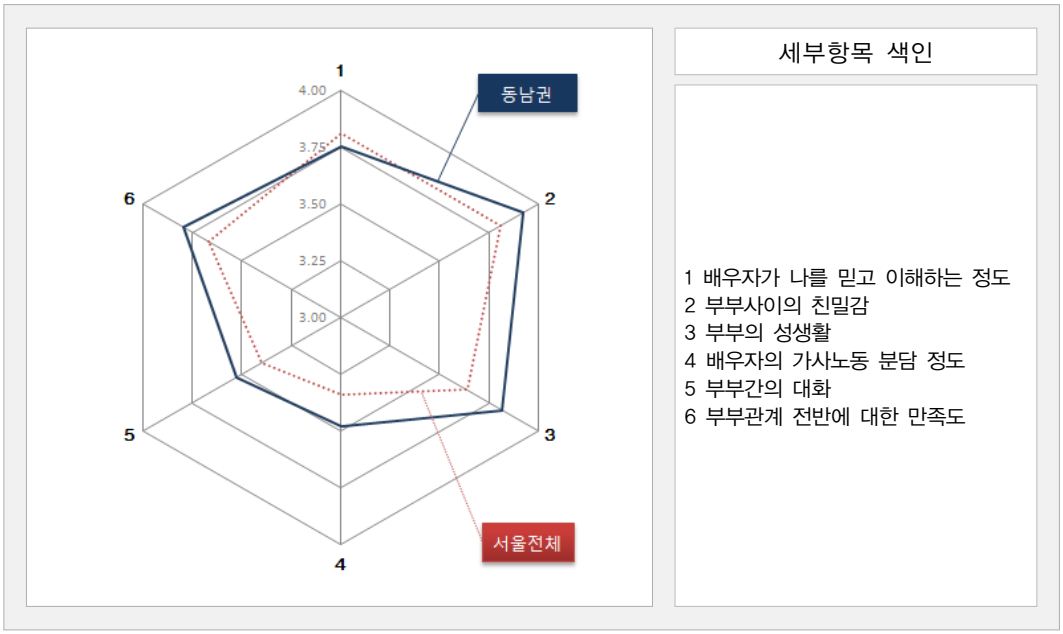



〈그림 Ⅳ - 68〉 취업을 못하는 이유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동남권에 거주하는 86명의 외국인 배우자 중 현재 미취업하고 있으나, 취업의사가 있는 49명을 대상으로 취업 의사는 있으나 취업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울전체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한국어가 서툴러”, “자녀와 집안 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이나 자녀보육시설 내지 서비스지원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결혼이민자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도 요구된다.

### 3) 부부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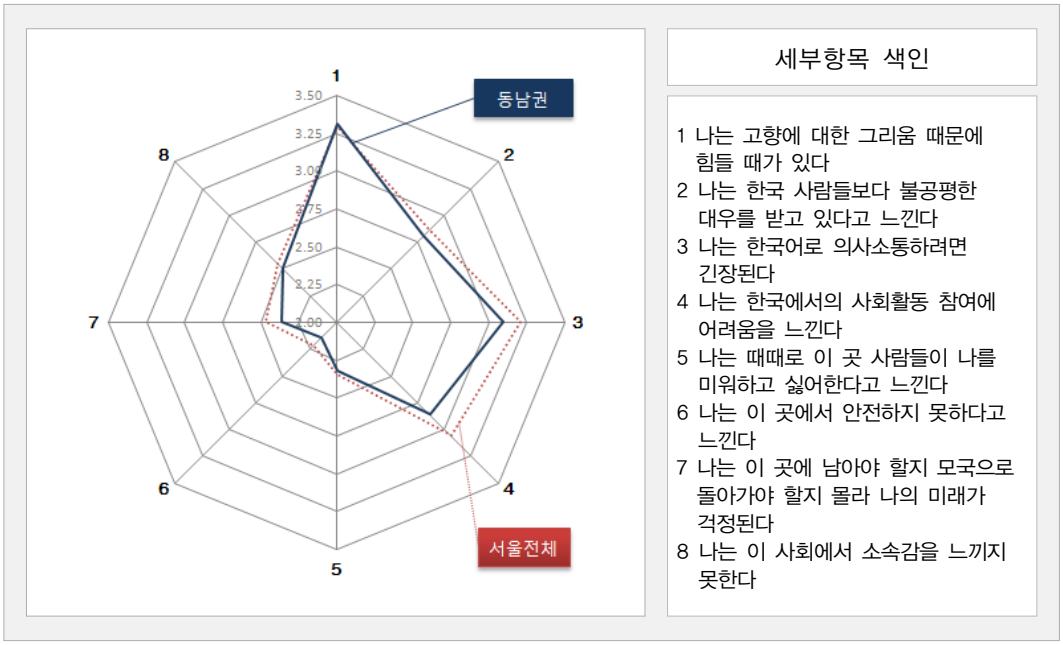
6가지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해 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동남권과 서울전체를 비교한 결과, 동남권의 만족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도 서울전체(3.64점)에 비해 0.18점 높은 3.82점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한 만족도도 서울전체(3.34점)에 비해 0.14점 높은 3.48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배우자가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3.75점으로 서울전체(3.81점)보다 0.06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관계 전반적 만족도는 3.80점으로 서울전체(3.67점)보다 0.1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69〉 부부관계 만족도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4)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를 8가지로 나누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스트레스 점수로 환산하여 서울전체와 동남권을 비교한 결과, 동남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스트레스가 서울전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는 한국에서의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도 서울전체(3.06점)보다 0.19점 낮은 2.87점으로 나타났고, "나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도 3.10점으로 서울전체(3.21점)보다 0.10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동남권 거주 외국인 배우자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향수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는 서울전체(3.30점)과 비슷한 3.32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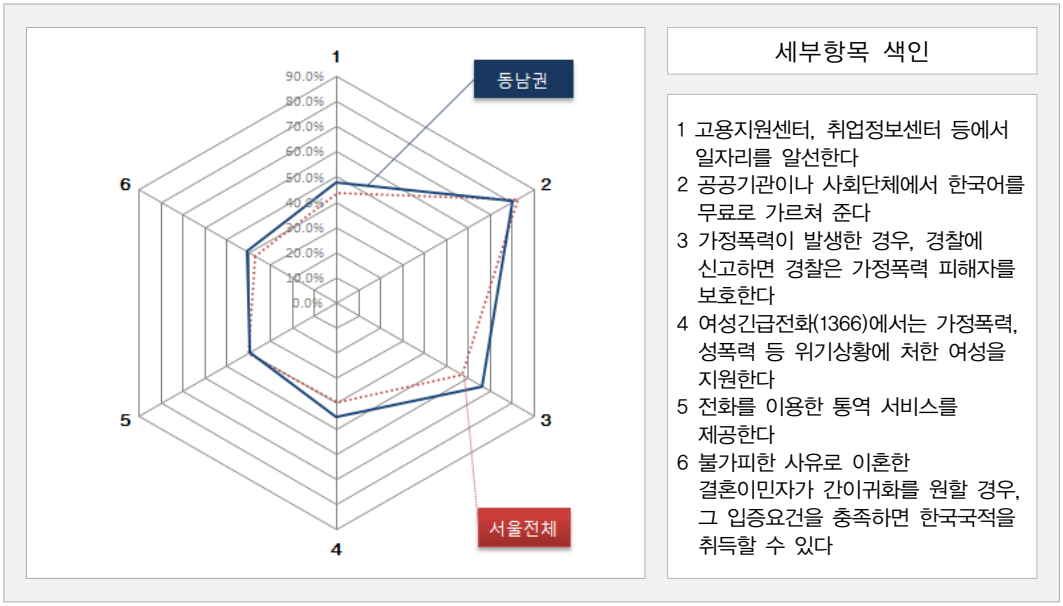



〈그림 Ⅳ - 70〉 한국문화 적응 시 겪는 스트레스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5)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주요 사회서비스 및 제도의 인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서남권의 인지도는 서울전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66.3%로 서울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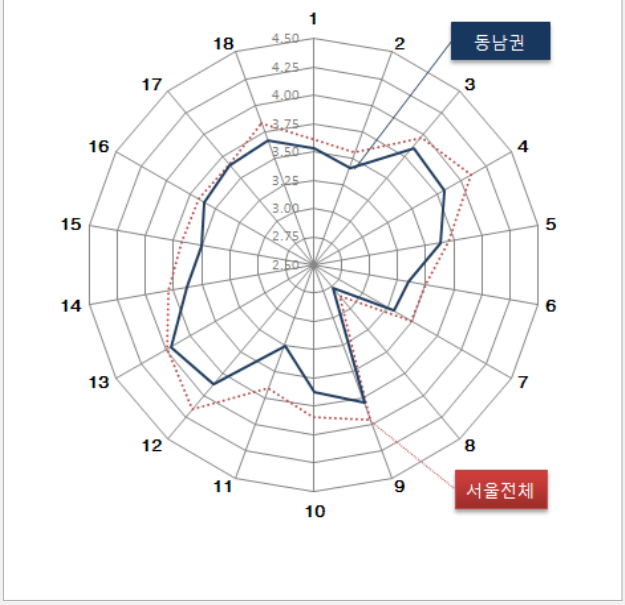
(57.1%)에 비해 9.2%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80.2%로 서울전체(82.5%)에 비해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 - 71〉 서비스 및 제도 인지도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6)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18가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여 동남권과 서울전체를 비교한 결과, 모든 사안에서 동남권의 필요도 점수가 서울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 지원의 필요도 점수는 서울전체(3.66점)에 비해 0.40점 낮은 3.26점으로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또한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의 필요도 점수도 서울전체(4.10점)보다 0.28점 낮은 3.82점, 한국어교육 및 통역 서비스의 필요도 점수도 3.88점으로 서울전체(4.16점)에 비해 0.28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서비스 욕구도에 따른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가 개설될 필요가 있는데 서비스욕구도가 낮은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부항목 색인

1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2 주택지원
3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
4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
5 국적취득지원서비스
6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
7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
8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9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10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11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
12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
13 한국문화체험교육
14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
15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16 여가생활/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
17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18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그림 Ⅳ - 72〉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비교(서울전체와 동남권)

# V

#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식

# Ⅴ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식

## 제1절 조사개요

### 1. 조사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지역별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Ⅴ- 1▌ 조사개요

| 구 분 | 내 용 |
|---|---|
| 조사대상 |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시민 |
| 조사규모 | - 1,000명 |
| 조사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 조사일자 | - 2008년 11월 |
| 표본추출 | - 임의할당 [성별, 연령별, 지역별을 고려] |
| 표본오차 | - 95% ± 3.1%p |
| 응 답 률 | - 23.8% |
| 분석도구 | - SPSS 12.0K |

### 2. 주요 조사내용

#### 1) 주요 조사내용

주요 조사내용은 국제결혼이민자 수요와 느낌, 국제결혼이민자 수용도,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이미지와 정책수요, 다문화가족 증가로 인한 향후 문제점 등이다.

응답자 특성인 성별, 연령, 지역, 학력, 개인소득, 직업, 주거형태, 결혼상태 등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도는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직장동료나 상사가 되는 것,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하였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수용도는 국제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와 요리 배움, 한국인배우

자의 외국배우자의 모국어 배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 정책 수립시 결혼이민자들의 의견 반영,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 개입,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투입과 지원, 위장결혼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 강화, 다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등을 조사하였다.

이 외에도 결혼이민자가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 2) 조사의 한계

이 조사는 서울 시민을 무작위로 선택한 전화설문이므로 문항에 대한 더 깊은 대답을 요구하지 못하고 현상을 나타내는 데 그치고 있다. 다만 다문화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을 표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이에 대한 심층연구는 향후로 미룬다.

▌표 Ⅴ- 2▌ 주요 조사내용

| 구 분 | 내 용 |
|---|---|
| 응답자 특성 | • 성별, 연령별, 거주 권역별(지역별) 등<br>• 학력별, 개인소득별, 직업별, 주거형태별, 결혼 상태별 등<br>• 주변에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유무 |
| 다문화 가족에 대한 느낌 | • 결혼이민자 수 증가<br>• 결혼이민자에 대한 느낌 |
| 다문화가족 수용도 | •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br>• 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나 상사가 되는 것<br>• 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
|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수용도 | • 결혼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요리 배워야 함<br>•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워야 함<br>•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br>• 정책 수립시 결혼이민자 의견 반영<br>•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 개입<br>•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투입과 지원<br>• 위장결혼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 강화<br>• 다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br>•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
| 정책/프로그램/다문화가족 증가로 인한 향후 문제점 | • 결혼이민자가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br>•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br>• 다문화가족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 제2절 응답자의 특성

## 1. 모집단 특성과 표본 특성

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시민의 모집단 특성과 본 조사에서 응답된 유효표본의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표 Ⅴ- 3▌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 비교

| 구분 | | 모집단 구성비(%) | 표본 구성비(%) |
|---|---|---|---|
| 합계 | | 100.0 | 100.0 |
| 성별 | 남자 | 49.9 | 49.9 |
| | 여자 | 50.1 | 50.1 |
| 연령별 | 15~19세 | 8.0 | 8.0 |
| | 20대 | 21.3 | 21.3 |
| | 30대 | 23.8 | 23.8 |
| | 40대 | 21.1 | 21.1 |
| | 50대 | 16.0 | 16.0 |
| | 60대 | 9.8 | 9.8 |

## 2. 성별

설문조사의 응답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499명(49.9%), 여성은 501명(50.1%)이다.

▌표 Ⅴ- 4▌ 성별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남성 | 499 | 49.9 |
| 여성 | 501 | 50.1 |

## 3. 연령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15-19세)는 80명(8.0%), 20대는 213명(21.3%), 30대는 238명

(23.8%), 40대는 211명(21.1%), 50대는 160명(16.0%), 60대는 98명(9.8%)이 응답하였다.

▌표 Ⅴ- 5▐ 연령별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15-19세 | 80 | 8.0 |
| 20대 | 213 | 21.3 |
| 30대 | 238 | 23.8 |
| 40대 | 211 | 21.1 |
| 50대 | 160 | 16.0 |
| 60대 | 98 | 9.8 |

## 4. 거주 권역별

거주 권역별로 살펴보면, 도심권 52명(5.2%), 동북권 324명(32.4%), 서북권 118명(11.8%), 서남권 303명(30.3%), 동남권 203명(20.3%)이 응답하였다.

▌표 Ⅴ- 6▐ 거주 권역별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도심권 | 52 | 5.2 |
| 동북권 | 324 | 32.4 |
| 서북권 | 118 | 11.8 |
| 서남권 | 303 | 30.3 |
| 동남권 | 203 | 20.3 |

## 5. 학력별

학력별로 살펴보면, 초졸 이하 41명(4.1%), 중졸 97명(9.7%), 고졸 337명(33.7%), 대졸 483명(48.3%), 대학원졸 이상 41명(4.1%)이 응답하였다.

▌표 Ⅴ- 7▌ 학력별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초졸 이하 | 41 | 4.1 |
| 중 졸 | 97 | 9.7 |
| 고 졸 | 337 | 33.7 |
| 대 졸 | 483 | 48.3 |
| 대학원졸 이상 | 41 | 4.1 |
| 거절/무응답 | 1 | 0.1 |

## 6. 개인소득별

개인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미만 543명(54.3%), 100-200만원미만 156명(15.6%), 200-300만원미만 148명(14.8%), 300-400만원 74명(7.4%), 400-500만원 27명(2.7%), 500만원 이상 31명(3.1%)이 응답하였다. 이는 응답자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데 전문직과 관공직은 매우 적고 전업주부와 학생의 비율이 높아서 개인소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Ⅴ- 8▌ 개인소득별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100만원미만 | 543 | 54.3 |
| 100~200만원미만 | 156 | 15.6 |
| 200~300만원미만 | 148 | 14.8 |
| 300~400만원미만 | 74 | 7.4 |
| 400~500만원미만 | 27 | 2.7 |
| 500만원이상 | 31 | 3.1 |
| 거절/무응답 | 21 | 2.1 |

## 7. 직업별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업주부는 251명(25.1%), 사무직은 217명(21.7%), 서비스직은 115명(11.5%), 관공직은 7명(0.7%), 전문직은 25명(2.5%), 기술/생산직은 44명(4.4%), 판매/영업직은 58명(5.8%), 학생 190명(19.0%), 무직 61명(6.1%), 기타 32명(3.2%)이 응답하였다.

▌표 Ⅴ- 9▐ 직업별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전업주부 | 251 | 25.1 |
| 사무직 | 217 | 21.7 |
| 서비스직 | 115 | 11.5 |
| 관공직 | 7 | 0.7 |
| 전문직 | 25 | 2.5 |
| 기술, 생산직 | 44 | 4.4 |
| 판매, 영업직 | 58 | 5.8 |
| 학생 | 190 | 19.0 |
| 무직 | 61 | 6.1 |
| 기타 | 32 | 3.2 |

## 8. 주거형태별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자택은 740명(74.0%), 전세는 207명(20.7%), 월세는 26명(2.6%), 기타 7명(0.7%)이 응답하였다.

▌표 Ⅴ- 10▐ 주거형태별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자택 | 740 | 74.0 |
| 전세 | 207 | 20.7 |
| 월세 | 26 | 2.6 |
| 기타 | 7 | 0.7 |
| 거절/무응답 | 20 | 2.0 |

## 9. 결혼 상태와 가족구성원

결혼 상태별로 살펴보면, 기혼 유자녀 601명(60.1%), 기혼 무자녀 41명(4.1%), 미혼 유자녀 3명(0.3%), 미혼 무자녀 354명(35.4%)이 응답하였다.

▌표 Ⅴ- 11▐ 결혼 상태와 가족구성원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기혼 유자녀 | 601 | 60.1 |
| 기혼 무자녀 | 41 | 4.1 |
| 미혼 유자녀 | 3 | 0.3 |
| 미혼 무자녀 | 354 | 35.4 |
| 거절/무응답 | 1 | 0.1 |

# 제3절 다문화가족에 대한 느낌

## 1. 국제결혼이민자 수요

'국제결혼이민자의 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요가 증가한다는 응답은 83.8%(크게 증가할 것이다 23.5% + 다소 증가할 것이다 60.3%)로 감소한다는 응답(2.8%, 크게 감소할 것이다 0.3% + 다소 감사할 것이다 2.5%)보다 8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가 '다문화'라는 점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서울시민들이 다문화 특히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분석가능하다. 또한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통계에서 보듯 계속 증가하던 국제결혼이민자수가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소 증가한다'가 60.3%에 달하는 것은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해 대부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Ⅴ- 12▐ 국제결혼이민자 수요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크게 증가할 것이다 | 235 | 23.5 |
| 다소 증가할 것이다 | 603 | 60.3 |
|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97 | 9.7 |
| 다소 감소할 것이다 | 25 | 2.5 |
| 크게 감소할 것이다 | 3 | 0.3 |
| 모름/무응답 | 37 | 3.7 |

거주 권역별로 살펴보면, 향후 국제결혼이민자가 증가할 것이다(83.8%)라는 응답은 동남권 거주자가 90.6%, 서북권 88.1%, 도심권 86.5%, 동북권 81.2%, 서남권 79.9%로 대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향후 국제결혼이민자가 증가할 것이다(83.8%)라는 응답은, 500만원 이상은 90.3%가 증가한다고 보았으며, 300~400만원 미만(86.5%), 200~300만원 미만(85.1%)의 순으로 전체보다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이 200만원 이상일수록 결혼이민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표 Ⅴ- 13▐ 소득수준별 국제결혼이민자 수요

| 구분 | 사례수 | 증가할 것이다 | | | 유지 | 감소할 것이다 | | | 무응답 |
|---|---|---|---|---|---|---|---|---|---|
| | | 크게 | 다소 | 소계 | | 다소 | 크게 | 소계 | |
| 합계 | 1,000 | 23.5 | 60.3 | 83.8 | 9.7 | 2.5 | 0.3 | 2.8 | 3.7 |
| 100만원미만 | 543 | 23.2 | 59.9 | 83.1 | 10.5 | 2.4 | 0.6 | 2.9 | 3.5 |
| 100~200미만 | 156 | 22.4 | 58.3 | 80.8 | 9.6 | 3.8 | 0.0 | 3.8 | 5.8 |
| 200~300미만 | 148 | 25.7 | 59.5 | 85.1 | 8.8 | 4.1 | 0.0 | 4.1 | 2.0 |
| 300~400미만 | 74 | 17.6 | 68.9 | 86.5 | 9.5 | 0.0 | 0.0 | 0.0 | 4.1 |
| 400~500미만 | 27 | 22.2 | 66.7 | 88.9 | 3.7 | 0.0 | 0.0 | 0.0 | 7.4 |
| 500이상 | 31 | 38.7 | 51.6 | 90.3 | 6.5 | 0.0 | 0.0 | 0.0 | 3.2 |
| 거절/무응답 | 21 | 23.8 | 66.7 | 90.5 | 9.5 | 0.0 | 0.0 | 0.0 | 0.0 |

직업별로 살펴보면, 향후 국제결혼이민자가 증가할 것이다(83.8%)라는 응답은 판매, 영업직에서 93.1%, 기술 생산직이 88.6% 등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민자가족이 진출한 직업군이 기술생산직이나 판매영업직이 많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인다.

▌표 Ⅴ- 14▐ 직업별 국제결혼이민자의 수요

| 구분 | 사례수 | 증가할 것이다 | | | 유지 | 감소할 것이다 | | | 무응답 |
|---|---|---|---|---|---|---|---|---|---|
| | | 크게 | 다소 | 소계 | | 다소 | 크게 | 소계 | |
| 합계 | 1,000 | 23.5 | 60.3 | 83.8 | 9.7 | 2.5 | 0.3 | 2.8 | 3.7 |
| 전업주부 | 251 | 22.7 | 61.8 | 84.5 | 10.4 | 0.8 | 0.4 | 1.2 | 4.0 |
| 사무직 | 217 | 22.6 | 59.4 | 82.0 | 11.1 | 4.1 | 0.0 | 4.1 | 2.8 |
| 서비스직 | 115 | 27.0 | 55.7 | 82.6 | 7.8 | 3.5 | 0.0 | 3.5 | 6.1 |
| 관공직 | 7 | 57.1 | 42.9 | 100.0 | 0.0 | 0.0 | 0.0 | 0.0 | 0.0 |
| 전문직 | 25 | 16.0 | 72.0 | 88.0 | 8.0 | 0.0 | 0.0 | 0.0 | 4.0 |
| 기술, 생산직 | 44 | 25.0 | 63.6 | 88.6 | 9.1 | 0.0 | 0.0 | 0.0 | 2.3 |
| 판매, 영업직 | 58 | 22.4 | 70.7 | 93.1 | 3.4 | 0.0 | 0.0 | 0.0 | 3.4 |
| 학생 | 190 | 24.2 | 59.5 | 83.7 | 10.0 | 4.2 | 0.5 | 4.7 | 1.6 |
| 무직 | 61 | 24.6 | 55.7 | 80.3 | 9.8 | 1.6 | 1.6 | 3.3 | 6.6 |
| 기타 | 32 | 15.6 | 56.3 | 71.9 | 15.6 | 3.1 | 0.0 | 3.1 | 9.4 |

## 2.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느낌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좋다는 응답은 25.1%(매우 좋다 1.6% + 좋은 편이다 23.5%)로 싫다는 응답(13.2%, 매우 싫다 1.1% + 싫은 편이다 12.1%)보다 11.9%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60.5%로 높게 나타나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해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긴 했으나 이들의 역량이나 지위가 한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상태여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리에게 다문화가 화두일지라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실정이므로, 지금 보통으로 나타난 수치들이 다음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하는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서울시민들에 다문화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Ⅴ- 15▐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느낌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좋다 | 16 | 1.6 |
| 좋은 편이다 | 235 | 23.5 |
| 보통이다 | 605 | 60.5 |
| 싫은 편이다 | 121 | 12.1 |
| 매우 싫다 | 11 | 1.1 |
| 모름/무응답 | 12 | 1.2 |

연령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해 ‘좋다’라는 긍정적 느낌은(25.1%) 60대에서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싫다’라는 부정적 느낌(13.2%)도 60대에서 25.5%로 높게 나타나, 60대에서는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느낌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대, 30대 보다 10대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10대들은 서구문화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경향이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하지 않다. 서구중심적인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다문화 의식을 균형잡힌 국제적 감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Ⅴ- 16▐ 연령별 국제결혼이민자 인상

| 구분 | 사례수 | 좋다 | | | 보통 | 싫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다소 | 소계 | | 다소 | 매우 | 소계 | |
| 합계 | 1,000 | 1.6 | 23.5 | 25.1 | 60.5 | 12.1 | 1.1 | 13.2 | 1.2 |
| 15-19세 | 80 | 2.5 | 18.8 | 21.3 | 58.8 | 15.0 | 1.3 | 16.3 | 3.8 |
| 20대 | 213 | 0.5 | 21.1 | 21.6 | 68.1 | 8.5 | 0.5 | 8.9 | 1.4 |
| 30대 | 238 | 2.1 | 24.4 | 26.5 | 64.7 | 8.4 | 0.0 | 8.4 | 0.4 |
| 40대 | 211 | 1.9 | 27.0 | 28.9 | 58.8 | 9.5 | 0.9 | 10.4 | 1.9 |
| 50대 | 160 | 1.9 | 18.1 | 20.0 | 58.8 | 16.9 | 3.8 | 20.6 | 0.6 |
| 60대 | 98 | 1.0 | 31.6 | 32.7 | 41.8 | 24.5 | 1.0 | 25.5 | 0.0 |

거주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해 '싫다'(13.2%)라는 느낌은 도심권에서 19.2%로 평균보다 6%나 높게 나타나, 도심권이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 17▐ 거주권역별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상

| 구분 | 사례수 | 좋다 | | | 보통 | 싫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다소 | 소계 | | 다소 | 매우 | 소계 | |
| 합계 | 1,000 | 1.6 | 23.5 | 25.1 | 60.5 | 12.1 | 1.1 | 13.2 | 1.2 |
| 도심권 | 52 | 1.9 | 19.2 | 21.2 | 57.7 | 17.3 | 1.9 | 19.2 | 1.9 |
| 동북권 | 324 | 1.5 | 22.8 | 24.4 | 61.4 | 11.7 | 1.2 | 12.9 | 1.3 |
| 서북권 | 118 | 1.7 | 25.4 | 27.1 | 61.0 | 11.9 | 0.0 | 11.9 | 0.0 |
| 서남권 | 303 | 1.7 | 23.8 | 25.4 | 57.4 | 13.9 | 1.0 | 14.9 | 2.3 |
| 동남권 | 203 | 1.5 | 24.1 | 25.6 | 64.0 | 8.9 | 1.5 | 10.4 | 0.0 |

학력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해 '좋다'라는 느낌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싫다'(13.2%)라는 느낌은 초졸 이하(24.4%), 중졸(21.6%), 고졸(15.1%)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18▐ 학력별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상

| 구분 | 사례수 | 좋다 | | | 보통 | 싫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다소 | 소계 | | 다소 | 매우 | 소계 | |
| 합계 | 1,000 | 1.6 | 23.5 | 25.1 | 60.5 | 12.1 | 1.1 | 13.2 | 1.2 |
| 초졸 이하 | 41 | 0.0 | 17.1 | 17.1 | 53.7 | 22.0 | 2.4 | 24.4 | 4.9 |
| 중졸 | 97 | 3.1 | 21.6 | 24.7 | 51.5 | 20.6 | 1.0 | 21.6 | 2.1 |
| 고졸 | 337 | 1.2 | 24.0 | 25.2 | 59.1 | 13.6 | 1.5 | 15.1 | 0.6 |
| 대졸 | 483 | 1.7 | 24.0 | 25.7 | 63.6 | 8.9 | 0.8 | 9.7 | 1.0 |
| 대학원졸 이상 | 41 | 2.4 | 24.4 | 26.8 | 63.4 | 7.3 | 0.0 | 7.3 | 2.4 |
| 거절/무응답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직업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해 '좋다'(25.1%)는 긍정적 느낌은 무직 37.7%, 기술 생산직이 29.5%로 나타났으며, '싫다'(13.2%)라는 부정적 느낌은 기술, 생산직(25.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택하고 있는 기술 생산직에서 '좋다'라는 느낌과 '싫다'라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직업군에서 이들에 대한 느낌은 다른 직업군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Ⅴ- 19▐ 국제결혼이민자에대한인상

| 구분 | 사례수 | 좋다 | | | 보통 | 싫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다소 | 소계 | | 다소 | 매우 | 소계 | |
| 합계 | 1,000 | 1.6 | 23.5 | 25.1 | 60.5 | 12.1 | 1.1 | 13.2 | 1.2 |
| 전업주부 | 251 | 0.4 | 21.1 | 21.5 | 59.0 | 17.1 | 1.2 | 18.3 | 1.2 |
| 사무직 | 217 | 1.8 | 22.6 | 24.4 | 67.7 | 5.5 | 1.4 | 6.9 | 0.9 |
| 서비스직 | 115 | 3.5 | 27.8 | 31.3 | 52.2 | 13.9 | 0.0 | 13.9 | 2.6 |
| 관공직 | 7 | 0.0 | 14.3 | 14.3 | 71.4 | 14.3 | 0.0 | 14.3 | 0.0 |
| 전문직 | 25 | 0.0 | 16.0 | 16.0 | 76.0 | 8.0 | 0.0 | 8.0 | 0.0 |
| 기술, 생산직 | 44 | 0.0 | 29.5 | 29.5 | 45.5 | 22.7 | 2.3 | 25.0 | 0.0 |
| 판매, 영업직 | 58 | 0.0 | 20.7 | 20.7 | 63.8 | 13.8 | 1.7 | 15.5 | 0.0 |
| 학생 | 190 | 1.6 | 23.7 | 25.3 | 62.1 | 10.5 | 0.5 | 11.0 | 1.6 |
| 무직 | 61 | 3.3 | 34.4 | 37.7 | 47.5 | 13.2 | 1.6 | 14.7 | 0.0 |
| 기타 | 32 | 6.3 | 15.6 | 21.9 | 68.8 | 3.1 | 3.1 | 6.2 | 3.1 |

# 제4절 다문화가족 수용도

## 1.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79.6%(매우 찬성 16.3% + 다소 찬성 63.3%)로 ‘반대한다’는 응답(16.4%, 매우 반대 2.1% + 다소 반대 14.3%)보다 63.2%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서울시민 과반수 이상이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매우 긍정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Ⅴ- 20▐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찬성 | 163 | 16.3 |
| 다소 찬성 | 633 | 63.3 |
| 다소 반대 | 143 | 14.3 |
| 매우 반대 | 21 | 2.1 |
| 무응답 | 40 | 4.0 |
| 평 균 | 0.81 | |

연령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0대에서 86.7%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한다’(16.4%)는 부정적 응답은 10대에서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대에서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배타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으나 시민 개개인들은 다문화사회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회전반적인 수준과 개인 수준간의 인식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표 Ⅴ- 21▐ 연령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찬성 | | | 반대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16.3 | 63.3 | 79.6 | 14.3 | 2.1 | 16.4 | 4.0 |
| 15-19세 | 80 | 10.0 | 62.5 | 72.5 | 20.0 | 6.3 | 26.3 | 1.3 |
| 20대 | 213 | 9.9 | 70.0 | 79.9 | 15.5 | 0.5 | 16.0 | 4.1 |
| 30대 | 238 | 18.9 | 63.9 | 82.8 | 11.8 | 1.3 | 13.1 | 4.2 |
| 40대 | 211 | 19.0 | 67.8 | 86.8 | 9.0 | 1.9 | 10.9 | 2.3 |
| 50대 | 160 | 16.9 | 53.8 | 70.7 | 18.1 | 3.8 | 21.9 | 7.4 |
| 60대 | 98 | 22.4 | 54.1 | 76.5 | 18.4 | 2.0 | 20.4 | 3.1 |

학력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대졸에서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한다(16.4%)는 부정적 응답은 초졸 이하에서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22▐ 학력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찬성 | | | 반대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16.3 | 63.3 | 79.6 | 14.3 | 2.1 | 16.4 | 4.0 |
| 초졸 이하 | 41 | 12.2 | 43.9 | 56.1 | 36.6 | 0.0 | 36.6 | 7.3 |
| 중졸 | 97 | 12.4 | 66.0 | 78.4 | 11.3 | 6.2 | 17.5 | 4.1 |
| 고졸 | 337 | 14.2 | 62.9 | 77.1 | 17.5 | 1.5 | 19.0 | 3.9 |
| 대졸 | 483 | 19.3 | 64.6 | 83.9 | 10.8 | 2.1 | 12.9 | 3.3 |
| 대학원졸 이상 | 41 | 12.2 | 65.9 | 78.1 | 14.6 | 0.0 | 14.6 | 7.3 |
| 거절/무응답 | 1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직업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사무직에서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한다(16.4%)는 부정적 응답은 판매, 영업직에서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아마도 국제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직군에서 반대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서 결혼이민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직업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이민가족들의 수가 증가하여 사회에서 경쟁상대로 되는 경우에는 더욱 심해질 것이므로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표 Ⅴ- 23▐ 직업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찬성 | | | 반대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16.3 | 63.3 | 79.6 | 14.3 | 2.1 | 16.4 | 4.0 |
| 전업주부 | 251 | 17.1 | 63.3 | 80.4 | 12.0 | 2.4 | 14.3 | 5.3 |
| 사무직 | 217 | 16.1 | 66.4 | 82.5 | 11.5 | 1.8 | 13.4 | 4.1 |
| 서비스직 | 115 | 20.9 | 60.9 | 81.8 | 15.7 | 0.9 | 16.6 | 1.6 |
| 관공직 | 7 | 0.0 | 71.4 | 71.4 | 28.6 | 0.0 | 28.6 | 0.0 |
| 전문직 | 25 | 12.0 | 60.0 | 72.0 | 20.0 | 4.0 | 24.0 | 4.0 |
| 기술, 생산직 | 44 | 15.9 | 56.8 | 72.7 | 13.6 | 4.5 | 18.1 | 9.2 |
| 판매, 영업직 | 58 | 19.0 | 53.4 | 72.4 | 20.7 | 1.7 | 22.4 | 5.2 |
| 학생 | 190 | 11.1 | 66.3 | 77.4 | 17.4 | 3.2 | 20.6 | 2.0 |
| 무직 | 61 | 21.3 | 63.9 | 85.2 | 13.1 | 0.0 | 13.1 | 1.7 |
| 기타 | 32 | 18.8 | 59.4 | 78.2 | 12.5 | 0.0 | 12.5 | 9.3 |

## 2.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68.9%(매우 찬성 10.5% + 다소 찬성 58.4%)로 반대한다는 응답(26.9%, 매우 반대 3.2% + 다소 반대 22.7%)보다 4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이민자가 국민이 되는 것보다 낮긴 하나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24▐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찬성 | 105 | 10.5 |
| 다소 찬성 | 584 | 58.4 |
| 다소 반대 | 227 | 22.7 |
| 매우 반대 | 32 | 3.2 |
| 무응답 | 52 | 5.2 |

연령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25.9%)는 부정적 응답은 60대에서 40.8%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은 계층에서 결혼이민자가 직장

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0대는 20대, 30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 25▐ 연령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찬성 | | | 반대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10.5 | 58.4 | 68.9 | 22.7 | 3.2 | 25.9 | 5.2 |
| 15-19세 | 80 | 10.0 | 57.5 | 67.5 | 25.0 | 3.8 | 28.8 | 3.7 |
| 20대 | 213 | 8.0 | 66.2 | 74.2 | 17.8 | 2.3 | 20.2 | 5.7 |
| 30대 | 238 | 13.0 | 60.5 | 73.5 | 21.0 | 1.7 | 22.7 | 3.8 |
| 40대 | 211 | 8.5 | 62.1 | 70.6 | 19.9 | 4.3 | 24.2 | 5.2 |
| 50대 | 160 | 10.6 | 55.0 | 65.6 | 25.0 | 5.0 | 30.0 | 4.4 |
| 60대 | 98 | 14.3 | 34.7 | 49.0 | 37.8 | 3.1 | 40.7 | 10.1 |

거주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동남권에서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부정적 응답은 도심권에서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나 권역별로 차이를 드러냈다.

▌표 Ⅴ- 26▐ 거주 권역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찬성 | | | 반대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10.5 | 58.4 | 68.9 | 22.7 | 3.2 | 25.9 | 5.2 |
| 도심권 | 52 | 7.7 | 53.8 | 61.5 | 26.9 | 7.7 | 34.6 | 3.9 |
| 동북권 | 324 | 9.6 | 58.0 | 67.6 | 24.4 | 4.3 | 28.7 | 3.7 |
| 서북권 | 118 | 8.5 | 62.7 | 71.2 | 21.2 | 0.8 | 22.0 | 6.8 |
| 서남권 | 303 | 8.3 | 60.1 | 68.4 | 22.8 | 3.0 | 25.8 | 5.8 |
| 동남권 | 203 | 17.2 | 55.2 | 72.4 | 19.7 | 2.0 | 21.7 | 5.9 |

학력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68.9%)는 대학원졸 이상(82.9%), 대졸(73.7%), 고졸(65.3%), 중졸(59.8%), 초졸 이하(36.6%)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면, 반대한다(25.9%)는 응답은 초졸 이하(41.5%), 중졸(35.1%), 고졸(29.7%), 대졸(21.3%), 대학원졸 이상(9.8%)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부정적 견해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27▐ 학력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찬성 | | | 반대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10.5 | 58.4 | 68.9 | 22.7 | 3.2 | 25.9 | 5.2 |
| 초졸 이하 | 41 | 14.6 | 36.6 | 51.2 | 41.5 | 0.0 | 41.5 | 7.3 |
| 중졸 | 97 | 10.3 | 49.5 | 59.8 | 29.9 | 5.2 | 35.1 | 5.1 |
| 고졸 | 337 | 8.0 | 57.3 | 65.3 | 26.1 | 3.6 | 29.7 | 5.0 |
| 대졸 | 483 | 11.8 | 61.9 | 73.7 | 18.2 | 3.1 | 21.3 | 5.0 |
| 대학원졸 이상 | 41 | 12.2 | 70.7 | 82.9 | 9.8 | 0.0 | 9.8 | 7.3 |
| 거절/무응답 | 1 | 0.0 | 0.0 | 0.0 | 100.0 | 0.0 | 100.0 | 0.0 |

소득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68.9%)는 400~500만원 미만(81.5%), 500만원 이상(77.4%)의 순으로 나타나,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00-300미만에서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문화가족들의 평균소득층에서는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Ⅴ- 28▐ 소득수준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찬성 | | | 반대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10.5 | 58.4 | 68.9 | 22.7 | 3.2 | 25.9 | 5.2 |
| 100만원미만 | 543 | 11.6 | 56.5 | 68.1 | 24.1 | 2.6 | 26.7 | 5.2 |
| 100~200미만 | 156 | 7.1 | 64.1 | 71.2 | 17.9 | 5.1 | 23.1 | 5.7 |
| 200~300미만 | 148 | 8.1 | 56.8 | 64.9 | 27.0 | 3.4 | 30.4 | 4.7 |
| 300~400미만 | 74 | 6.8 | 60.8 | 67.6 | 24.3 | 4.1 | 28.4 | 4.0 |
| 400~500미만 | 27 | 14.8 | 66.7 | 81.5 | 11.1 | 3.7 | 14.8 | 3.7 |
| 500이상 | 31 | 16.1 | 61.3 | 77.4 | 16.1 | 0.0 | 16.1 | 6.5 |
| 거절/무응답 | 21 | 23.8 | 52.4 | 76.2 | 9.5 | 4.8 | 14.3 | 9.5 |

직업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사무직에서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한다(25.9%)는 부정적 응답은 판매, 영업직에서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층에서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Ⅴ- 29▐ 직업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

| 구분 | 사례수 | 찬성 | | | 반대 | | | 무응답 | 평균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 합계 | 1,000 | 10.5 | 58.4 | 68.9 | 22.7 | 3.2 | 25.9 | 5.2 | 0.53 |
| 전업주부 | 251 | 11.2 | 55.4 | 66.6 | 23.5 | 2.8 | 26.3 | 7.1 | 0.52 |
| 사무직 | 217 | 11.5 | 61.3 | 72.8 | 18.9 | 3.7 | 22.6 | 4.6 | 0.61 |
| 서비스직 | 115 | 11.3 | 59.1 | 70.4 | 24.3 | 2.6 | 27.0 | 2.6 | 0.54 |
| 관공직 | 7 | 0.0 | 85.7 | 85.7 | 14.3 | 0.0 | 14.3 | 0.0 | 0.71 |
| 전문직 | 25 | 12.0 | 60.0 | 72.0 | 20.0 | 0.0 | 20.0 | 8.0 | 0.70 |
| 기술, 생산직 | 44 | 4.5 | 63.6 | 68.2 | 20.5 | 9.1 | 29.6 | 2.2 | 0.35 |
| 판매, 영업직 | 58 | 5.2 | 44.8 | 50.0 | 34.5 | 6.9 | 41.4 | 8.6 | 0.08 |
| 학생 | 190 | 10.0 | 61.6 | 71.6 | 23.2 | 2.1 | 25.3 | 3.1 | 0.56 |
| 무직 | 61 | 14.8 | 50.8 | 65.6 | 23.0 | 3.3 | 26.2 | 8.2 | 0.55 |
| 기타 | 32 | 9.4 | 65.6 | 75.0 | 18.8 | 0.0 | 18.8 | 6.2 | 0.70 |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68.9%)는 긍정적 응답은 기혼 무자녀 85.4%, 미혼 무자녀 71.4%로 유자녀인 66.2%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 30▐ 결혼상태별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찬성 | | | 반대 | | | 무응답 | 평균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 합계 | 1,000 | 10.5 | 58.4 | 68.9 | 22.7 | 3.2 | 25.9 | 5.2 | 0.53 |
| 기혼 유자녀 | 601 | 11.3 | 54.9 | 66.2 | 25.1 | 3.5 | 28.6 | 5.2 | 0.48 |
| 기혼 무자녀 | 41 | 9.8 | 75.6 | 85.4 | 12.2 | 0.0 | 12.2 | 2.4 | 0.85 |
| 미혼 유자녀 | 3 | 0.0 | 100.0 | 100.0 | 0.0 | 0.0 | 0.0 | 0.0 | 1.00 |
| 미혼 무자녀 | 354 | 9.3 | 62.1 | 71.4 | 19.8 | 3.1 | 22.9 | 5.7 | 0.58 |
| 거절/무응답 | 1 | 0.0 | 0.0 | 0.0 | 100.0 | 0.0 | 100.0 | 0.0 | -1.00 |

## 3. 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2.7%(매우 찬성 8.5% + 다소 찬성 44.2%)로 반대한다는 응답(42.6%, 매우 반대 26.0% + 다소 반대 16.6%)보다 10.1%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는 국민이 되는 것, 직장동료가 되는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56.5%가 반대한 것에 비해 호의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질문방법과 조사방법의 차이에 따른 해석이 요망되기는 한다.

▌표 Ⅴ- 31▐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찬성 | 85 | 8.5 |
| 다소 찬성 | 442 | 44.2 |
| 다소 반대 | 260 | 26.0 |
| 매우 반대 | 166 | 16.6 |
| 무응답 | 47 | 4.7 |

연령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20대에서 58.7%, 30대에서 57.1%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부정적 응답이 50대에서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에서도 48.8%로 20대와 30대, 40대 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할 자녀를 둔 50대와 60대는 평균 찬성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 32▐ 연령별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찬성 | | | 반대 | | | 무응답 | 평균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 합계 | 1,000 | 8.5 | 44.2 | 52.7 | 26.0 | 16.6 | 42.6 | 4.7 | 0.02 |
| 15-19세 | 80 | 6.3 | 43.8 | 50.0 | 27.5 | 21.3 | 48.8 | 1.1 | -0.14 |
| 20대 | 213 | 7.5 | 51.2 | 58.7 | 27.7 | 9.4 | 37.1 | 4.2 | 0.21 |
| 30대 | 238 | 11.3 | 45.8 | 57.1 | 26.1 | 11.3 | 37.4 | 5.5 | 0.21 |
| 40대 | 211 | 8.1 | 42.2 | 50.3 | 25.6 | 15.6 | 41.2 | 8.5 | 0.02 |
| 50대 | 160 | 5.6 | 38.1 | 43.7 | 26.9 | 27.5 | 54.4 | 1.9 | -0.33 |
| 60대 | 98 | 11.2 | 39.8 | 51.0 | 20.4 | 25.5 | 45.9 | 3.1 | -0.09 |

학력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대졸에서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부정적 응답은 초졸 이하에

서 5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Ⅴ- 33▐ 학력별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찬성 | | | 반대 | | | 무응답 | 평균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 합계 | 1,000 | 8.5 | 44.2 | 52.7 | 26.0 | 16.6 | 42.6 | 4.7 | 0.02 |
| 초졸 이하 | 41 | 9.8 | 34.1 | 43.9 | 19.5 | 34.1 | 53.6 | 2.5 | -0.35 |
| 중졸 | 97 | 5.2 | 48.5 | 53.7 | 23.7 | 19.6 | 43.3 | 3.1 | -0.04 |
| 고졸 | 337 | 6.2 | 44.5 | 50.7 | 27.9 | 18.7 | 46.6 | 2.7 | -0.09 |
| 대졸 | 483 | 10.8 | 44.1 | 54.9 | 25.3 | 13.9 | 39.2 | 5.9 | 0.13 |
| 대학원졸 이상 | 41 | 7.3 | 43.9 | 51.2 | 31.7 | 4.9 | 36.6 | 12.2 | 0.19 |
| 거절/무응답 | 1 | 0.0 | 0.0 | 0.0 | 0.0 | 100.0 | 100.0 | 0.0 | -2.00 |

직업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무직에서 68.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판매, 영업직에서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직업군에서 역시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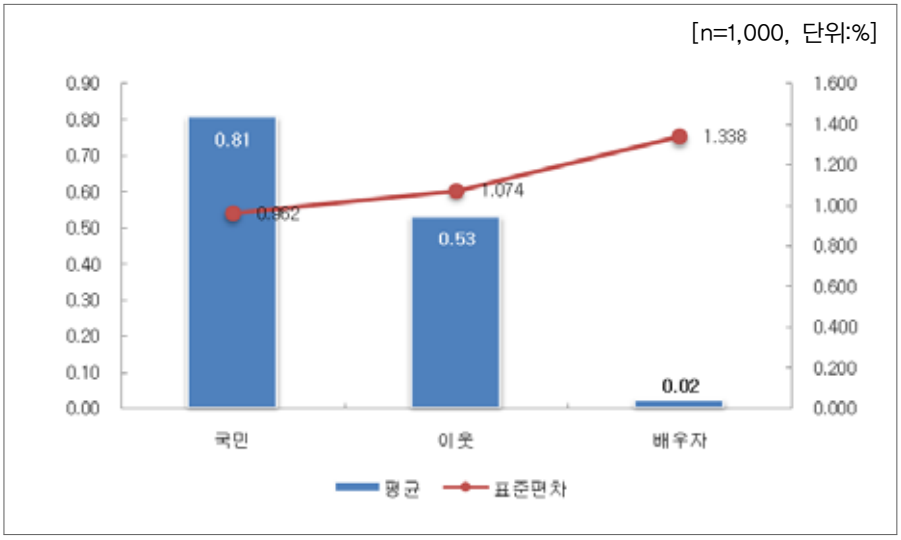
▌표 Ⅴ- 34▐ 직업별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찬성 | | | 반대 | | | 무응답 | 평균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 합계 | 1,000 | 8.5 | 44.2 | 52.7 | 26.0 | 16.6 | 42.6 | 4.7 | 0.02 |
| 전업주부 | 251 | 6.8 | 39.8 | 46.6 | 26.7 | 21.5 | 48.2 | 5.2 | -0.17 |
| 사무직 | 217 | 10.1 | 43.3 | 53.5 | 29.5 | 12.0 | 41.5 | 5.0 | 0.11 |
| 서비스직 | 115 | 9.6 | 44.3 | 53.9 | 26.1 | 16.5 | 42.6 | 3.5 | 0.05 |
| 관공직 | 7 | 0.0 | 57.1 | 57.1 | 28.6 | 14.3 | 42.9 | 0.0 | 0.00 |
| 전문직 | 25 | 12.0 | 32.0 | 44.0 | 20.0 | 16.0 | 36.0 | 20.0 | 0.05 |
| 기술, 생산직 | 44 | 0.0 | 52.3 | 52.3 | 20.5 | 25.0 | 45.5 | 2.3 | -0.19 |
| 판매, 영업직 | 58 | 6.9 | 39.7 | 46.6 | 25.9 | 24.1 | 50.0 | 3.4 | -0.21 |
| 학생 | 190 | 8.4 | 48.4 | 56.8 | 26.3 | 14.7 | 41.1 | 2.1 | 0.10 |
| 무직 | 61 | 16.4 | 52.5 | 68.9 | 16.4 | 11.5 | 27.9 | 3.2 | 0.47 |
| 기타 | 32 | 6.3 | 46.9 | 53.2 | 25.0 | 6.3 | 31.3 | 15.5 | 0.26 |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52.7%)는 긍정적 응답은 기혼 무자녀 응답자가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유자녀는 49.1%로 낮게 나타냈다.

▌표 Ⅴ- 35▐ 결혼상태별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찬성 | | | 반대 | | | 무응답 | 평균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 합계 | 1,000 | 8.5 | 44.2 | 52.7 | 26.0 | 16.6 | 42.6 | 4.7 | 0.02 |
| 기혼 유자녀 | 601 | 8.2 | 40.9 | 49.1 | 26.0 | 19.8 | 45.8 | 5.1 | -0.09 |
| 기혼 무자녀 | 41 | 12.2 | 58.5 | 70.7 | 14.6 | 7.3 | 22.0 | 7.3 | 0.58 |
| 미혼 유자녀 | 3 | 0.0 | 66.7 | 66.7 | 33.3 | 0.0 | 33.3 | 0.0 | 0.33 |
| 미혼 무자녀 | 354 | 8.8 | 48.0 | 56.8 | 27.1 | 12.4 | 39.5 | 3.7 | 0.14 |
| 거절/무응답 | 1 | 0.0 | 0.0 | 0.0 | 100.0 | 0.0 | 100.0 | 0.0 | -1.00 |




〈그림 Ⅴ- 1〉 수용도 종합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수용도는 국민이 되는 것, 직장 동료가 되는 것, 본인이나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비율이 점차 낮아졌으나 서울시민들은 결혼이민자들이 국민이나 직업적 동료, 이웃 나아가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반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결혼이민자 증대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판

매직과 기술생산직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며,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긍정적이고, 유자녀보다는 무자녀일 경우, 기혼보다는 미혼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아직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의 초기단계로서 시민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명백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아직 사회 전체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경험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해당 항목들에 대한 편차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일관된 신념이나 가치정립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는 다문화로 빠르게 변화되고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관련 법이나 제도는 수용을 하여도 이에 발맞추어 문화의식이나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현 시점이 바로 그 시기라고 분석된다.

# 제5절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지원 수용도

## 1.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라면 한국말과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말과 요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82.7%(매우 그렇다 24.7% + 다소 그렇다 58.0%)로 부정 응답(16.3%, 매우 아니다 1.1% + 다소 아니다 15.2%)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을 보면 매우 높은 동화주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한 문항만으로 동화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항목들과의 관계속에서 이 문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Ⅴ- 36▐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그렇다 | 247 | 24.7 |
| 다소 그렇다 | 580 | 58.0 |
| 다소 아니다 | 152 | 15.2 |
| 매우 아니다 | 11 | 1.1 |
| 무응답 | 10 | 1.0 |

연령별로 살펴보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한국말과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응답은 60대가 88.8%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 응답은 30대가 21.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결혼적령기인 20대와 30대는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 37▐ 연령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24.7 | 58.0 | 82.7 | 15.2 | 1.1 | 16.3 | 1.0 |
| 15-19세 | 80 | 28.8 | 55.0 | 83.8 | 13.8 | 1.3 | 15.1 | 1.2 |
| 20대 | 213 | 19.2 | 62.9 | 82.1 | 16.9 | 0.9 | 17.8 | 0.1 |
| 30대 | 238 | 20.2 | 57.1 | 77.3 | 20.2 | 1.3 | 21.5 | 1.2 |
| 40대 | 211 | 26.1 | 59.7 | 85.8 | 13.3 | 0.5 | 13.8 | 0.5 |
| 50대 | 160 | 30.0 | 53.1 | 83.1 | 13.1 | 1.3 | 14.4 | 2.4 |
| 60대 | 98 | 32.7 | 56.1 | 88.8 | 8.2 | 2.0 | 10.2 | 1.0 |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한국말과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응답은 기혼유자녀가 83.7%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아니다라는 응답도 기혼 무자녀가 26.8%로 높게 나타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보다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Ⅴ- 38▐ 결혼상태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24.7 | 58.0 | 82.7 | 15.2 | 1.1 | 16.3 | 1.0 |
| 기혼 유자녀 | 601 | 27.6 | 56.1 | 83.7 | 14.1 | 1.0 | 15.1 | 1.2 |
| 기혼 무자녀 | 41 | 7.3 | 65.9 | 73.2 | 22.0 | 4.8 | 26.8 | 0.0 |
| 미혼 유자녀 | 3 | 0.0 | 100.0 | 100.0 | 0.0 | 0.0 | 0.0 | 0.0 |
| 미혼 무자녀 | 354 | 22.0 | 59.9 | 81.9 | 16.4 | 0.8 | 17.2 | 0.9 |
| 거절/무응답 | 1 | 0.0 | 100.0 | 100.0 | 0.0 | 0.0 | 0.0 | 0.0 |

## 2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배우자 모국어 언어능력 습득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라면 아내의 모국어는 배워야 한다'에 대해 조사한 결

과, 아내의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응답은 90.4%(매우 그렇다 29.3% + 다소 그렇다 61.1%)로 부정 응답(8.6%, 매우 아니다 0.6% + 다소 아니다 8.0%)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혼한 외국여성들이 한국어와 한국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응답한 82.6%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통합적인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Ⅴ- 39▐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언어 능력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그렇다 | 293 | 29.3 |
| 다소 그렇다 | 611 | 61.1 |
| 다소 아니다 | 80 | 8.0 |
| 매우 아니다 | 6 | 0.6 |
| 무응답 | 10 | 1.0 |

연령별로 살펴보면,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라면 아내의 모국어는 배워야 한다는 응답은 60대가 95.9%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 응답은 10대가 1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점수화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아내의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표 Ⅴ- 40▐ 연령별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언어 능력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29.3 | 61.1 | 90.4 | 8.0 | 0.6 | 8.6 | 1.0 |
| 15-19세 | 80 | 28.8 | 58.8 | 87.6 | 10.0 | 2.4 | 12.4 | 0.0 |
| 20대 | 213 | 27.2 | 59.2 | 86.4 | 11.3 | 0.0 | 11.3 | 2.3 |
| 30대 | 238 | 26.1 | 62.2 | 88.3 | 9.7 | 0.8 | 10.5 | 1.2 |
| 40대 | 211 | 27.5 | 64.5 | 92.0 | 7.6 | 0.0 | 7.6 | 0.4 |
| 50대 | 160 | 36.3 | 58.8 | 95.1 | 4.4 | 0.6 | 5.0 | 0.0 |
| 60대 | 98 | 34.7 | 61.2 | 95.9 | 2.0 | 1.0 | 3.0 | 1.1 |

학력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대답은 중졸에서 93.8%로 가장 높고 대학원졸 이상이 92.7%, 대졸 90.3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응답은 초졸 이하에서 1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은 6.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Ⅴ- 41▐ 학력별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언어 능력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29.3 | 61.1 | 90.4 | 8.0 | 0.6 | 8.6 | 1.0 |
| 초졸 이하 | 41 | 24.4 | 61.0 | 85.4 | 12.2 | 2.4 | 14.6 | 0.0 |
| 중졸 | 97 | 28.9 | 64.9 | 93.8 | 5.2 | 1.0 | 6.2 | 0.0 |
| 고졸 | 337 | 30.0 | 60.2 | 90.2 | 7.7 | 0.3 | 8.0 | 1.8 |
| 대졸 | 483 | 29.8 | 60.5 | 90.3 | 8.5 | 0.4 | 8.9 | 0.8 |
| 대학원졸 이상 | 41 | 24.4 | 68.3 | 92.7 | 7.3 | 0.0 | 7.3 | 0.0 |
| 거절/무응답 | 1 | 0.0 | 0.0 | 0.0 | 0.0 | 100.0 | 100.0 | 0.0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라면 아내의 모국어는 배워야 한다는 응답은 500만원 이상이 9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0~500만원미만에서 96.3%로 높게 나타나,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다문화 가족에서는 아내의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견해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42▐ 소득수준별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언어 능력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29.3 | 61.1 | 90.4 | 8.0 | 0.6 | 8.6 | 1.0 |
| 100만원미만 | 543 | 33.5 | 58.4 | 91.9 | 6.8 | 0.7 | 7.6 | 0.6 |
| 100~200미만 | 156 | 20.5 | 67.3 | 87.8 | 9.6 | 0.0 | 9.6 | 2.6 |
| 200~300미만 | 148 | 25.7 | 62.1 | 87.8 | 9.5 | 1.4 | 10.8 | 1.4 |
| 300~400미만 | 74 | 17.6 | 70.2 | 87.8 | 12.2 | 0.0 | 12.2 | 0.0 |
| 400~500미만 | 27 | 25.9 | 70.4 | 96.3 | 3.7 | 0.0 | 3.7 | 0.0 |
| 500이상 | 31 | 41.9 | 54.7 | 96.8 | 3.2 | 0.0 | 3.2 | 0.0 |
| 거절/무응답 | 21 | 38.1 | 42.9 | 81.0 | 14.3 | 0.0 | 14.3 | 4.7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라면 아내의 모국어는 배워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전업주부 95.2%, 무직 93.4%, 판매영업직 93.1%, 사무직 90.8%로 나타났으며, 아니다는 응답은 기술, 생산직에서 15.9%, 서비스직 13%, 학생 12.1%로 나타났다.

▌표 Ⅴ- 43▐ 직업별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언어 능력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평균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 합계 | 1,000 | 29.3 | 61.1 | 90.4 | 8.0 | 0.6 | 8.6 | 1.0 | 1.12 |
| 전업주부 | 251 | 35.1 | 60.1 | 95.1 | 4.0 | 0.4 | 4.4 | 0.4 | 1.26 |
| 사무직 | 217 | 24.4 | 66.4 | 90.8 | 8.8 | 0.5 | 9.2 | 0.0 | 1.06 |
| 서비스직 | 115 | 16.5 | 67.8 | 84.3 | 13.0 | 0.0 | 13.0 | 2.7 | 0.90 |
| 관공직 | 7 | 14.3 | 71.4 | 85.7 | 14.3 | 0.0 | 14.3 | 0.0 | 0.86 |
| 전문직 | 25 | 48.0 | 48.0 | 96.0 | 4.0 | 0.0 | 4.0 | 0.0 | 1.40 |
| 기술, 생산직 | 44 | 31.8 | 50.0 | 81.8 | 13.6 | 2.3 | 15.9 | 2.3 | 0.98 |
| 판매, 영업직 | 58 | 34.5 | 58.6 | 93.1 | 5.2 | 1.7 | 6.9 | 0.0 | 1.19 |
| 학생 | 190 | 31.1 | 56.3 | 87.4 | 11.1 | 1.1 | 12.1 | 0.5 | 1.06 |
| 무직 | 61 | 34.4 | 59.0 | 93.4 | 3.3 | 0.0 | 3.3 | 3.3 | 1.29 |
| 기타 | 32 | 18.8 | 68.7 | 87.5 | 6.3 | 0.0 | 6.3 | 6.2 | 1.07 |

## 3.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라면 한국어와 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를 함께 배워야 한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응답은 90.0%(매우 그렇다 36.7% + 다소 그렇다 53.3%)로 부정 응답(9.1%, 매우 아니다 0.6% + 다소 아니다 8.5%)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이중언어 능력을 습득하여 글로벌한 인재로서 양성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표 Ⅴ- 44▐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그렇다 | 367 | 36.7 |
| 다소 그렇다 | 533 | 53.3 |
| 다소 아니다 | 85 | 8.5 |
| 매우 아니다 | 6 | 0.6 |
| 무응답 | 9 | 0.9 |

연령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라면 한국어와 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를 함께 배워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40대, 50대가 60대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

는 8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Ⅴ- 45▐ 연령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에 대한 반응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36.7 | 53.3 | 90.0 | 8.5 | 0.6 | 9.1 | 0.9 |
| 15-19세 | 80 | 35.0 | 45.0 | 80.0 | 18.8 | 1.3 | 20.0 | 0.0 |
| 20대 | 213 | 28.2 | 55.9 | 84.1 | 12.2 | 1.4 | 13.6 | 2.3 |
| 30대 | 238 | 31.5 | 61.3 | 92.8 | 5.5 | 0.8 | 6.3 | 0.9 |
| 40대 | 211 | 37.5 | 54.0 | 91.5 | 8.5 | 0.0 | 8.5 | 0.0 |
| 50대 | 160 | 51.9 | 41.9 | 93.8 | 5.0 | 0.0 | 5.0 | 1.2 |
| 60대 | 98 | 42.9 | 52.0 | 94.9 | 5.1 | 0.0 | 5.1 | 0.0 |

학력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라면 한국어와 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를 함께 배워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 아니다(9.1%)는 부정적인 응답은 초졸 이하에서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Ⅴ- 46▐ 학력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36.7 | 53.3 | 90.0 | 8.5 | 0.6 | 9.1 | 0.9 |
| 초졸 이하 | 41 | 34.1 | 43.9 | 78.0 | 19.5 | 2.4 | 22.0 | 0.0 |
| 중졸 | 97 | 44.3 | 44.4 | 88.7 | 11.3 | 0.0 | 11.3 | 0.0 |
| 고졸 | 337 | 35.0 | 56.1 | 91.1 | 7.4 | 0.3 | 7.7 | 1.2 |
| 대졸 | 483 | 36.6 | 53.7 | 90.3 | 7.9 | 0.8 | 8.7 | 1.0 |
| 대학원졸 이상 | 41 | 36.6 | 56.1 | 92.7 | 7.3 | 0.0 | 7.3 | 0.0 |
| 거절/무응답 | 1 | 0.0 | 100.0 | 100.0 | 0.0 | 0.0 | 0.0 | 0.0 |

## 4. 정책수립시 의견 반영

'정부와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91.4%(매우 그렇다 35.3% + 다소 그렇다 56.1%)로 부정 응답(6.7%, 매우 아니다 0.9% + 다소 아니다 5.8%)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수용도에 있어서 서울시민의 매우 개방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점을 제고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수용성을 넘어 그들을 사회의 한 일원으로 정책수립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공생'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의깊은 고려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Ⅴ- 47▌ 정책수립시 의견 반영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그렇다 | 353 | 35.3 |
| 다소 그렇다 | 561 | 56.1 |
| 다소 아니다 | 58 | 5.8 |
| 매우 아니다 | 9 | 0.9 |
| 무응답 | 19 | 1.9 |
| 평 균 | 1.21 | |

연령별로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20대가 93.4%, 30대, 40대는 92.9%로 높게 나타났으나 10대는 8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정 응답은 60대가 14.3%, 10대가 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 부분도 제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표 Ⅴ- 48▌ 연령별 정책수립시 의견 반영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35.3 | 56.1 | 91.4 | 5.8 | 0.9 | 6.7 | 1.9 |
| 15-19세 | 80 | 40.0 | 47.5 | 87.5 | 7.5 | 2.5 | 10.0 | 2.5 |
| 20대 | 213 | 33.3 | 60.1 | 93.4 | 3.3 | 0.0 | 3.3 | 3.3 |
| 30대 | 238 | 34.9 | 58.0 | 92.9 | 4.6 | 0.4 | 5.0 | 2.1 |
| 40대 | 211 | 41.7 | 51.2 | 92.9 | 5.2 | 1.4 | 6.6 | 0.5 |
| 50대 | 160 | 31.9 | 59.4 | 91.3 | 6.9 | 0.6 | 7.5 | 1.2 |
| 60대 | 98 | 28.6 | 55.1 | 83.7 | 12.2 | 2.0 | 14.3 | 2.0 |

학력별로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학원졸 이상에서 95.1%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 응답은 초졸 이하

(14.6%), 중졸(10.3%), 고졸(6.8%), 대졸(5.6%), 대학원졸 이상(2.4%)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문항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49▐ 학력별 정책수립시 의견 반영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35.3 | 56.1 | 91.4 | 5.8 | 0.9 | 6.7 | 1.9 |
| 초졸 이하 | 41 | 34.1 | 48.8 | 82.9 | 14.6 | 0.0 | 14.6 | 2.4 |
| 중졸 | 97 | 38.1 | 47.4 | 85.5 | 8.2 | 2.1 | 10.3 | 4.2 |
| 고졸 | 337 | 31.2 | 59.3 | 90.5 | 5.9 | 0.9 | 6.8 | 2.7 |
| 대졸 | 483 | 37.1 | 56.5 | 93.6 | 4.8 | 0.8 | 5.6 | 0.8 |
| 대학원졸 이상 | 41 | 43.9 | 51.2 | 95.1 | 2.4 | 0.0 | 2.4 | 2.5 |
| 거절/무응답 | 1 | 0.0 | 100.0 | 100.0 | 0.0 | 0.0 | 0.0 | 0.0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다른 문항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Ⅴ- 50▐ 소득수준별 정책수립시 의견 반영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35.3 | 56.1 | 91.4 | 5.8 | 0.9 | 6.7 | 1.9 |
| 100만원미만 | 543 | 38.7 | 51.4 | 90.1 | 7.0 | 1.1 | 8.1 | 1.8 |
| 100~200미만 | 156 | 23.1 | 69.9 | 92.9 | 3.8 | 0.0 | 3.8 | 3.2 |
| 200~300미만 | 148 | 34.5 | 57.4 | 91.9 | 4.7 | 1.4 | 6.1 | 2.0 |
| 300~400미만 | 74 | 28.4 | 64.9 | 93.2 | 5.4 | 0.0 | 5.4 | 1.4 |
| 400~500미만 | 27 | 51.9 | 48.1 | 100.0 | 0.0 | 0.0 | 0.0 | 0.0 |
| 500이상 | 31 | 45.2 | 51.6 | 96.8 | 3.2 | 0.0 | 3.2 | 0.0 |
| 거절/무응답 | 21 | 33.3 | 52.4 | 85.7 | 9.5 | 4.8 | 14.3 | 0.0 |

직업별로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긍정적 응답은 사무직에서 94.9%, 판매영업직에서 94.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부정적 응답은 기술, 생산직(11.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 51▐ 직업별 정책수립시 의견 반영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평균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 합계 | 1,000 | 35.3 | 56.1 | 91.4 | 5.8 | 0.9 | 6.7 | 1.9 | 1.21 |
| 전업주부 | 251 | 39.0 | 51.8 | 90.8 | 7.2 | 0.4 | 7.6 | 1.6 | 1.24 |
| 사무직 | 217 | 35.0 | 59.9 | 94.9 | 2.8 | 0.9 | 3.7 | 1.4 | 1.27 |
| 서비스직 | 115 | 26.1 | 60.0 | 86.1 | 9.6 | 0.0 | 9.6 | 4.3 | 1.07 |
| 관공직 | 7 | 14.3 | 71.4 | 85.7 | 0.0 | 14.3 | 14.3 | 0.0 | 0.71 |
| 전문직 | 25 | 44.0 | 52.0 | 96.0 | 4.0 | 0.0 | 4.0 | 0.0 | 1.36 |
| 기술, 생산직 | 44 | 31.8 | 56.8 | 88.6 | 9.1 | 2.3 | 11.4 | 0.0 | 1.07 |
| 판매, 영업직 | 58 | 32.8 | 62.1 | 94.9 | 1.7 | 3.4 | 5.1 | 0.0 | 1.19 |
| 학생 | 190 | 40.5 | 50.5 | 91.1 | 5.8 | 1.1 | 6.8 | 2.1 | 1.26 |
| 무직 | 61 | 32.8 | 57.4 | 90.2 | 9.8 | 0.0 | 9.8 | 0.0 | 1.13 |
| 기타 | 32 | 21.9 | 68.8 | 90.6 | 0.0 | 0.0 | 0.0 | 9.4 | 1.24 |

## 5.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 개입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하게 개입해야한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부와 서울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4.0%(매우 그렇다 31.8% + 다소 그렇다 52.2%)로 부정 응답(13.6%, 매우 아니다 1.9% + 다소 아니다 11.7%)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 52▐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 개입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그렇다 | 318 | 31.8 |
| 다소 그렇다 | 522 | 52.2 |
| 다소 아니다 | 117 | 11.7 |
| 매우 아니다 | 19 | 1.9 |
| 무응답 | 24 | 2.4 |
| 평 균 | 1.03 | |

연령별로 살펴보면,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는 긍정적 응답은 사회참여도가 높은 40대 90.0%로 가장 높았으며, 아니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사회참여도가 낮은 10대가 2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Ⅴ- 53▐ 연령별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 개입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31.8 | 52.2 | 84.0 | 11.7 | 1.9 | 13.6 | 2.4 |
| 15–19세 | 80 | 30.0 | 47.5 | 77.5 | 16.3 | 3.8 | 20.0 | 2.5 |
| 20대 | 213 | 24.4 | 57.7 | 82.1 | 12.7 | 1.9 | 14.6 | 3.3 |
| 30대 | 238 | 29.0 | 54.2 | 83.2 | 13.0 | 2.5 | 15.5 | 1.3 |
| 40대 | 211 | 41.7 | 48.3 | 90.0 | 7.6 | 0.5 | 8.1 | 1.9 |
| 50대 | 160 | 35.0 | 47.5 | 82.5 | 11.9 | 2.5 | 14.4 | 3.1 |
| 60대 | 98 | 29.6 | 55.1 | 84.7 | 11.2 | 1.0 | 12.2 | 3.1 |

학력별로 살펴보면,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에 긍정적인 응답은 대학원졸 이상 8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응답은 초졸 이하에서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투입과 지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정부와 서울시가 더 많은 예산 투입과 지원을 해야 한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76.0%(매우 그렇다 25.0% + 다소 그렇다 51.0%)로 부정 응답(20.2%, 매우 아니다 2.8% + 다소 아니다 17.4%)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 54▐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투입과 지원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그렇다 | 250 | 25.0 |
| 다소 그렇다 | 510 | 51.0 |
| 다소 아니다 | 174 | 17.4 |
| 매우 아니다 | 28 | 2.8 |
| 무응답 | 38 | 3.8 |
| 평 균 | 0.81 | |

연령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더 많은 예산투입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사회적 참여가 가장 많은 40대가 84.9%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77.5%, 30대 76.4%로 평균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20대와 10대, 6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 55▐ 연령별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투입과 지원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25.0 | 51.0 | 76.0 | 17.4 | 2.8 | 20.2 | 3.8 |
| 15–19세 | 80 | 22.5 | 51.3 | 73.8 | 20.0 | 3.8 | 23.8 | 2.4 |
| 20대 | 213 | 16.9 | 53.1 | 70.0 | 19.7 | 3.3 | 23.0 | 7.0 |
| 30대 | 238 | 21.8 | 54.6 | 76.4 | 18.1 | 2.1 | 20.2 | 3.4 |
| 40대 | 211 | 37.0 | 47.9 | 84.9 | 11.4 | 2.8 | 14.2 | 0.9 |
| 50대 | 160 | 26.9 | 50.6 | 77.5 | 16.9 | 3.1 | 20.0 | 2.5 |
| 60대 | 98 | 23.5 | 44.9 | 68.4 | 22.4 | 2.0 | 24.5 | 7.1 |

학력별로 살펴보면, 예산투입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대학원졸 이상에서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부정적 응답은 초졸 이하에서 24.4%로 높게 나타나, 비교적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학력별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문항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표 Ⅴ- 56▐ 학력별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투입과 지원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25.0 | 51.0 | 76.0 | 17.4 | 2.8 | 20.2 | 3.8 |
| 초졸 이하 | 41 | 24.4 | 43.9 | 68.3 | 22.0 | 2.4 | 24.4 | 7.3 |
| 중졸 | 97 | 22.7 | 52.6 | 75.3 | 15.5 | 5.2 | 20.6 | 4.1 |
| 고졸 | 337 | 23.4 | 51.6 | 75.1 | 17.5 | 2.1 | 19.6 | 5.3 |
| 대졸 | 483 | 26.9 | 50.1 | 77.0 | 17.6 | 2.9 | 20.5 | 2.5 |
| 대학원졸 이상 | 41 | 22.0 | 58.5 | 80.5 | 14.6 | 2.4 | 17.1 | 2.4 |
| 거절/무응답 | 1 | 0.0 | 100.0 | 100.0 | 0.0 | 0.0 | 0.0 | 0.0 |

## 7. 위장결혼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 강화

‘인신매매나 성매매성 결혼, 위장 국제결혼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전예방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6.9%(매우 그렇다 75.9% + 다소 그렇다 21.0%)로 부정 응답(2.7%, 매우 아니다 0.4% + 다소 아니다 2.3%)

보다 94%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 57▐ 위장결혼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 강화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그렇다 | 759 | 75.9 |
| 다소 그렇다 | 210 | 21.0 |
| 다소 아니다 | 23 | 2.3 |
| 매우 아니다 | 4 | 0.4 |
| 무응답 | 4 | 0.4 |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위장결혼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기혼 유자녀인 경우 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자녀인 경우 유자녀보다는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여  위장결혼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표 Ⅴ- 58▐ 결혼상태별 위장결혼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 강화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75.9 | 21.0 | 96.9 | 2.3 | 0.4 | 2.7 | 0.4 |
| 기혼 유자녀 | 601 | 83.0 | 15.0 | 98.0 | 1.5 | 0.2 | 1.7 | 0.3 |
| 기혼 무자녀 | 41 | 68.3 | 24.4 | 92.7 | 7.3 | 0.0 | 7.3 | 0.0 |
| 미혼 유자녀 | 3 | 66.7 | 33.3 | 100.0 | 0.0 | 0.0 | 0.0 | 0.0 |
| 미혼 무자녀 | 354 | 64.7 | 30.8 | 95.5 | 3.1 | 0.8 | 3.9 | 0.6 |
| 거절/무응답 | 1 | 10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 8. 다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7.6%(매우 그렇다 28.6% + 다소 그렇다 49.0%)로 부정 응답(17.6%, 매우 아니다 2.3% + 다소 아니다 15.3%)보다 60.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 사회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견해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59▐ 다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그렇다 | 286 | 28.6 |
| 다소 그렇다 | 490 | 49.0 |
| 다소 아니다 | 153 | 15.3 |
| 매우 아니다 | 23 | 2.3 |
| 무응답 | 48 | 4.8 |
| 평 균 | 0.91 | |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문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견해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은 30대에서 83.2%로 가장 높았으며, 아니다는 부정적 응답은 50대에서 23.8%, 60대에서 23.5%로 50대이상에서 다문화가 국가경쟁력에 주는 기여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60▐ 연령별 다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28.6 | 49.0 | 77.6 | 15.3 | 2.3 | 17.6 | 4.8 |
| 15–19세 | 80 | 31.3 | 47.5 | 78.8 | 15.0 | 5.0 | 20.0 | 1.2 |
| 20대 | 213 | 29.6 | 52.6 | 82.2 | 15.0 | 0.5 | 15.5 | 2.3 |
| 30대 | 238 | 29.4 | 53.8 | 83.2 | 10.9 | 2.1 | 13.0 | 3.8 |
| 40대 | 211 | 29.9 | 48.3 | 78.2 | 14.2 | 2.4 | 16.6 | 5.2 |
| 50대 | 160 | 26.9 | 40.0 | 66.9 | 21.3 | 2.5 | 23.8 | 9.3 |
| 60대 | 98 | 22.5 | 46.9 | 69.4 | 19.4 | 4.1 | 23.5 | 7.1 |

특히 이 문항에 대해서 거주 권역별로 특징을 보면, 다문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견해는 도심권에서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동남권 81.3%, 서북권 78%로 나타났다.

서울의 도심권은 다른 권역과는 달리 글로벌센터가 있어서 지역 특성상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Ⅴ- 61▐ 거주 권역별 다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평균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 합계 | 1,000 | 28.6 | 49.0 | 77.6 | 15.3 | 2.3 | 17.6 | 4.8 | 0.91 |
| 도심권 | 52 | 23.1 | 61.5 | 84.6 | 13.5 | 0.0 | 13.5 | 1.9 | 0.96 |
| 동북권 | 324 | 24.1 | 51.2 | 75.3 | 17.9 | 1.5 | 19.4 | 5.3 | 0.83 |
| 서북권 | 118 | 29.7 | 48.3 | 78.0 | 15.3 | 2.5 | 17.8 | 4.2 | 0.91 |
| 서남권 | 303 | 32.0 | 44.2 | 76.2 | 14.9 | 2.3 | 17.2 | 6.6 | 0.95 |
| 동남권 | 203 | 31.5 | 49.8 | 81.3 | 12.3 | 3.9 | 16.3 | 2.4 | 0.95 |

학력별로 살펴보면, 다문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견해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은 대학원졸 이상에서 85.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아니다는 부정적 응답은 초졸 이하에서 36.6%로 높게 나타나, 다문화의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나 학력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62▐ 학력별 다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평균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 합계 | 1,000 | 28.6 | 49.0 | 77.6 | 15.3 | 2.3 | 17.6 | 4.8 | 0.91 |
| 초졸 이하 | 41 | 19.5 | 41.5 | 61.0 | 31.7 | 4.9 | 36.6 | 2.4 | 0.40 |
| 중졸 | 97 | 30.9 | 46.4 | 77.3 | 14.4 | 3.1 | 17.5 | 5.2 | 0.92 |
| 고졸 | 337 | 25.2 | 51.4 | 76.6 | 16.9 | 1.8 | 18.7 | 4.7 | 0.85 |
| 대졸 | 483 | 31.5 | 47.8 | 79.3 | 13.7 | 2.3 | 15.9 | 4.8 | 0.97 |
| 대학원졸 이상 | 41 | 26.8 | 58.6 | 85.4 | 7.3 | 0.0 | 7.3 | 7.3 | 1.13 |
| 거절/무응답 | 1 | 0.0 | 0.0 | 0.0 | 0.0 | 100.0 | 100.0 | 0.0 | -2.00 |

## 9.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정부와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예산투입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원을 위해 세금인상 해야 한다는 응답은 33.2%(매우 그렇다 4.1% + 다소 그렇다 29.1%)로 부정 응답(62.6%, 매우 아니다 26.1% + 다소 아니다 36.5%)보다 29.4%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는 것은 찬성하나 이에 대한 경비를 국민이 부담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아마도 아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지원이 사회책임이라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 가는 데 드는 비용은 당연히 사회적 비용이므로 이는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 것이므로 교육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Ⅴ- 6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그렇다 | 41 | 4.1 |
| 다소 그렇다 | 291 | 29.1 |
| 다소 아니다 | 365 | 36.5 |
| 매우 아니다 | 261 | 26.1 |
| 무응답 | 42 | 4.2 |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적 견해는 40대에서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아니다는 부정적 견해는 20대에서 66.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점수화 한 결과 다른 항목들에 비해 세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 전반에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6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4.1 | 29.1 | 33.2 | 36.5 | 26.1 | 62.6 | 4.2 |
| 15-19세 | 80 | 1.3 | 30.0 | 31.3 | 40.0 | 25.0 | 65.0 | 3.7 |
| 20대 | 213 | 3.8 | 21.6 | 25.4 | 40.8 | 25.8 | 66.6 | 8.0 |
| 30대 | 238 | 2.1 | 33.6 | 35.7 | 37.4 | 22.7 | 60.1 | 4.2 |
| 40대 | 211 | 6.2 | 35.5 | 41.7 | 36.0 | 21.8 | 57.8 | 0.5 |
| 50대 | 160 | 6.3 | 24.3 | 30.6 | 34.4 | 30.6 | 65.0 | 4.4 |
| 60대 | 98 | 4.1 | 27.6 | 31.7 | 26.5 | 37.8 | 64.3 | 4.0 |

거주 권역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인상에 대한 견해에서 도심권에서 42.3%로 가장 높았으며, 아니다는 부정적 응답은 동남권에서 70.0%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 65▐ 주 권역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4.1 | 29.1 | 33.2 | 36.5 | 26.1 | 62.6 | 4.2 |
| 도심권 | 52 | 7.7 | 34.6 | 42.3 | 26.9 | 19.2 | 46.2 | 11.5 |
| 동북권 | 324 | 3.4 | 29.0 | 32.4 | 39.8 | 23.5 | 63.3 | 4.3 |
| 서북권 | 118 | 5.9 | 33.9 | 39.8 | 37.3 | 20.3 | 57.6 | 2.6 |
| 서남권 | 303 | 3.0 | 32.0 | 35.0 | 40.3 | 21.5 | 61.7 | 3.3 |
| 동남권 | 203 | 4.9 | 20.7 | 25.6 | 27.6 | 42.4 | 70.0 | 4.4 |

학력별로 살펴보면, 세금인상에 대해 대졸 37.7%, 대학원졸 이상 3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응답은 초졸 이하에서 70.7%로 높게 나타나 학력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Ⅴ- 66▐ 학력별 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4.1 | 29.1 | 33.2 | 36.5 | 26.1 | 62.6 | 4.2 |
| 초졸 이하 | 41 | 2.4 | 22.0 | 24.4 | 39.0 | 31.7 | 70.7 | 4.9 |
| 중졸 | 97 | 5.2 | 29.9 | 35.1 | 28.9 | 29.9 | 58.8 | 6.1 |
| 고졸 | 337 | 3.6 | 23.4 | 27.0 | 41.2 | 28.2 | 69.4 | 3.6 |
| 대졸 | 483 | 4.6 | 33.1 | 37.7 | 34.0 | 23.8 | 57.8 | 4.5 |
| 대학원졸 이상 | 41 | 2.4 | 34.2 | 36.5 | 41.5 | 22.0 | 63.4 | 0.0 |
| 거절/무응답 | 1 | 0.0 | 0.0 | 0.0 | 100.0 | 0.0 | 100.0 | 0.0 |

직업별로 살펴보면, 그렇다 라는 긍정적 응답은 의외로 기술, 생산직에서 50.0%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아니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판매, 영업직에서 72.5%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 67▌ 직업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 구분 | 사례수 | 그렇다 | | | 아니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약간 | 소계 | 약간 | 전혀 | 소계 | |
| 합계 | 1,000 | 4.1 | 29.1 | 33.2 | 36.5 | 26.1 | 62.6 | 4.2 |
| 전업주부 | 251 | 5.2 | 24.3 | 29.5 | 35.9 | 32.3 | 68.1 | 2.4 |
| 사무직 | 217 | 2.3 | 36.9 | 39.2 | 37.8 | 18.4 | 56.2 | 4.6 |
| 서비스직 | 115 | 5.2 | 27.8 | 33.0 | 42.6 | 21.7 | 64.3 | 2.7 |
| 관공직 | 7 | 0.0 | 71.4 | 71.4 | 14.3 | 14.3 | 28.6 | 0.0 |
| 전문직 | 25 | 4.0 | 28.0 | 32.0 | 28.0 | 32.0 | 60.0 | 8.0 |
| 기술, 생산직 | 44 | 4.5 | 45.5 | 50.0 | 25.0 | 25.0 | 50.0 | 0.0 |
| 판매, 영업직 | 58 | 3.4 | 22.4 | 25.9 | 32.8 | 39.7 | 72.5 | 1.6 |
| 학생 | 190 | 3.7 | 25.2 | 28.9 | 37.4 | 27.4 | 64.8 | 6.4 |
| 무직 | 61 | 6.6 | 32.8 | 39.4 | 37.7 | 21.3 | 59.0 | 1.6 |
| 기타 | 32 | 3.1 | 15.6 | 18.8 | 37.5 | 21.9 | 59.4 | 21.9 |

# 제6절 다문화 가족증가로 인한 향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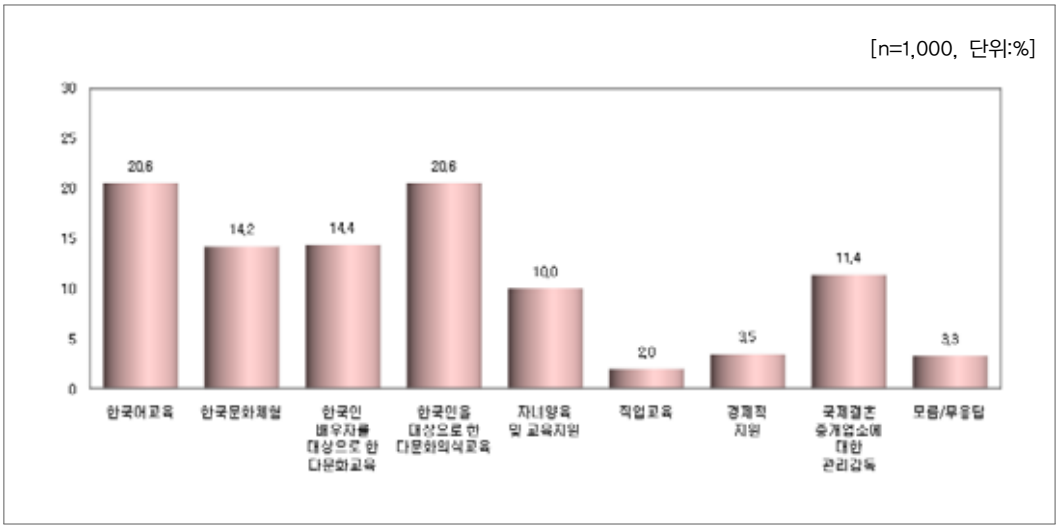
## 1. 결혼이민자 가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십니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어교육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의식교육이 각각 20.6%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한국문화체험,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결혼이민여성들의 욕구도에서 높게 나타난 직업교육은 2%로 매우 낮게 나타나 결혼이민자와 그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정책욕구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의식교육이 한국어교육과 함께 제일 시급한 과제로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사회 전반적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사회통합주의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표 Ⅴ- 68▐ 결혼이민자 가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한국어교육 | 206 | 20.6 |
| 한국문화체험 | 142 | 14.2 |
|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 144 | 14.4 |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의식교육 | 206 | 20.6 |
|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 100 | 10.0 |
| 직업교육 | 20 | 2.0 |
| 경제적 지원 | 35 | 3.5 |
|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 114 | 11.4 |
| 모름/무응답 | 33 | 3.3 |

▌표 Ⅴ- 69▐ 결혼이민자 가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연령별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높게 나타난 한국어교육은 60대 30.6%, 50대 23.8%, 40대 23.2%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의식 교육은 30대에서 27.3%, 20대 24.9%, 40대 20.4%, 10대 20%로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은 10대에서 17.5%, 한국문화체험은 10대에서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50대에서 16.3%,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은 40대에서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Ⅴ- 70▐ 연령별 결혼이민자 가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 구분 | 사례수 |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 | | | | | | | 무응답 |
|---|---|---|---|---|---|---|---|---|---|---|
| | | 한국어 교육 | 한국문화 체험 |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의식 교육 |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 직업교육 | 경제적 지원 |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 |
| 합계 | 1,000 | 20.6 | 14.2 | 14.4 | 20.6 | 10.0 | 2.0 | 3.5 | 11.4 | 3.3 |
| 15–19세 | 80 | 22.5 | 17.5 | 17.5 | 20.0 | 6.3 | 2.5 | 5.0 | 7.5 | 1.2 |
| 20대 | 213 | 16.0 | 15.0 | 15.0 | 24.9 | 10.8 | 3.3 | 3.3 | 9.9 | 1.8 |
| 30대 | 238 | 15.5 | 13.0 | 12.6 | 27.3 | 12.2 | 2.1 | 3.8 | 11.8 | 1.7 |
| 40대 | 211 | 23.2 | 12.8 | 15.6 | 20.4 | 12.3 | 1.9 | 2.4 | 10.4 | 1.0 |
| 50대 | 160 | 23.8 | 15.6 | 15.0 | 11.9 | 6.3 | 1.3 | 3.1 | 16.3 | 6.7 |
| 60대 | 98 | 30.6 | 13.3 | 11.2 | 10.2 | 7.1 | 0.0 | 5.1 | 11.2 | 11.3 |

학력별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높게 나타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의식 교육(20.6%)은 대학원졸 이상(26.8%), 대졸(23.2%), 고졸(19.0%), 중졸(15.5%), 초졸 이하(9.8%)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어교육(20.6%)은 초졸 이하(26.8%), 중졸(24.7%), 고졸(20.2%), 대졸(20.1%), 대학원졸 이상(14.6%)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학력에 따라 시급이 요구되는 정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Ⅴ- 71▐ 학력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

| 구분 | 사례수 |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 | | | | | | | 무응답 |
|---|---|---|---|---|---|---|---|---|---|---|
| | | 한국어 교육 | 한국문화 체험 |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의식 교육 |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 직업교육 | 경제적 지원 |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 |
| 합계 | 1,000 | 20.6 | 14.2 | 14.4 | 20.6 | 10.0 | 2.0 | 3.5 | 11.4 | 3.3 |
| 초졸 이하 | 41 | 26.8 | 14.6 | 14.6 | 9.8 | 4.9 | 0.0 | 2.4 | 4.9 | 22.0 |
| 중졸 | 97 | 24.7 | 14.4 | 11.3 | 15.5 | 11.3 | 2.1 | 6.2 | 10.3 | 4.2 |
| 고졸 | 337 | 20.2 | 15.1 | 11.3 | 19.0 | 8.6 | 3.6 | 3.6 | 16.0 | 2.6 |
| 대졸 | 483 | 20.1 | 13.5 | 17.4 | 23.2 | 10.6 | 0.8 | 2.9 | 9.5 | 2.0 |
| 대학원졸 이상 | 41 | 14.6 | 14.6 | 12.2 | 26.8 | 17.1 | 4.9 | 4.9 | 4.9 | 0.0 |
| 거절/무응답 | 1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직업별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의식 교육은 사무직에서 24.9%, 한국어교육은 전업주부 30.3%, 한국인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은 기술생산직 1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 72▐ 직업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

| 구분 | 사례수 |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 | | | | | | | 무응답 |
|---|---|---|---|---|---|---|---|---|---|---|
| | | 한국어 교육 | 한국문화 체험 |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의식교육 |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 직업교육 | 경제적 지원 |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 |
| 합계 | 1,000 | 20.6 | 14.2 | 14.4 | 20.6 | 10.0 | 2.0 | 3.5 | 11.4 | 3.3 |
| 전업주부 | 251 | 30.3 | 10.0 | 13.9 | 17.9 | 10.8 | 0.0 | 2.4 | 10.8 | 3.9 |
| 사무직 | 217 | 17.1 | 9.7 | 17.5 | 24.9 | 12.4 | 2.8 | 4.1 | 9.2 | 2.3 |
| 서비스직 | 115 | 17.4 | 16.5 | 12.2 | 16.5 | 10.4 | 1.7 | 4.3 | 16.5 | 4.5 |
| 관공직 | 7 | 14.3 | 14.3 | 28.6 | 28.6 | 0.0 | 14.2 | 0.0 | 0.0 | 0.0 |
| 전문직 | 25 | 8.0 | 4.0 | 16.0 | 48.0 | 4.0 | 0.0 | 0.0 | 12.0 | 8.0 |
| 기술, 생산직 | 44 | 6.8 | 27.3 | 18.2 | 20.5 | 9.1 | 2.3 | 2.3 | 11.4 | 2.1 |
| 판매, 영업직 | 58 | 29.3 | 15.5 | 15.5 | 15.5 | 5.2 | 1.7 | 3.4 | 13.8 | 0.1 |
| 학생 | 190 | 18.4 | 18.4 | 14.2 | 23.2 | 8.9 | 3.2 | 4.7 | 7.9 | 1.1 |
| 무직 | 61 | 21.3 | 19.7 | 8.2 | 8.2 | 9.8 | 0.0 | 3.3 | 23.0 | 6.5 |
| 기타 | 32 | 6.3 | 21.9 | 6.3 | 21.9 | 9.4 | 9.4 | 3.1 | 9.4 | 12.3 |

##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 시 참여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할 것이다는 응답은 44.3%(꼭 참여할 것이다 3.2% + 가급적 참여할 것이다 41.1%)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52.6%,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2.0% +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40.6%)보다 8.3%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욕구도 조사에서는 사회통합주의를 나타내고 있는 듯하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의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어느 면에서 지금이야말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다문화정책의 지향점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아가야 할 지점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Ⅴ- 73▐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꼭 참여할 것이다 | 32 | 3.2 |
| 가급적 참여할 것이다 | 411 | 41.1 |
|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 406 | 40.6 |
|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다 | 120 | 12.0 |
| 무응답 | 31 | 3.1 |

연령별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참여할 것이라는 적극적 성향의 응답은 40대에서 52.6%, 30대 46.6%, 10대 46.3%로 나타난 반면,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소극적 성향의 응답은 20대에서 59.2%, 50대 57.5%, 60대 55.1%로 나타나 대체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대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두드러져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Ⅴ- 74▐ 연령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

| 구분 | 사례수 | 참여할 것이다 | | | 참여하고 싶지 않다 | | | 무응답 |
|---|---|---|---|---|---|---|---|---|
| | | 꼭 | 가급적 | 소계 | 별로 | 절대 | 소계 | |
| 합계 | 1,000 | 3.2 | 41.1 | 44.3 | 40.6 | 12.0 | 52.6 | 3.1 |
| 15-19세 | 80 | 1.3 | 45.0 | 46.3 | 40.0 | 12.5 | 52.5 | 1.2 |
| 20대 | 213 | 0.9 | 34.7 | 35.6 | 49.3 | 9.9 | 59.2 | 5.2 |
| 30대 | 238 | 2.5 | 44.1 | 46.6 | 39.5 | 10.5 | 50.0 | 3.4 |
| 40대 | 211 | 2.8 | 49.8 | 52.6 | 34.1 | 10.0 | 44.1 | 3.3 |
| 50대 | 160 | 6.3 | 35.0 | 41.3 | 40.0 | 17.5 | 57.5 | 1.2 |
| 60대 | 98 | 7.1 | 35.7 | 42.8 | 39.8 | 15.3 | 55.1 | 2.1 |

직업별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참여할 것이라는 적극적 성향의 응답은 서비스직에서 49.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극적 성향의 응답은 판매, 영업직에서 58.6%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 75▐ 직업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

| 구분 | 사례수 | 참여할 것이다 | | | 참여하고 싶지 않다 | | | 무응답 |
|---|---|---|---|---|---|---|---|---|
| | | 꼭 | 가급적 | 소계 | 별로 | 절대 | 소계 | |
| 합계 | 1,000 | 3.2 | 41.1 | 44.3 | 40.6 | 12.0 | 52.6 | 3.1 |
| 전업주부 | 251 | 5.2 | 41.4 | 46.6 | 37.8 | 13.5 | 51.3 | 2.1 |
| 사무직 | 217 | 1.8 | 38.7 | 40.5 | 43.8 | 11.1 | 54.9 | 4.6 |
| 서비스직 | 115 | 3.5 | 46.1 | 49.6 | 36.5 | 9.6 | 46.1 | 4.3 |
| 관공직 | 7 | 0.0 | 57.1 | 57.1 | 0.0 | 42.9 | 42.9 | 0.0 |
| 전문직 | 25 | 4.0 | 52.0 | 56.0 | 28.0 | 12.0 | 40.0 | 4.0 |
| 기술, 생산직 | 44 | 2.3 | 45.5 | 47.8 | 43.2 | 6.8 | 50.0 | 2.2 |
| 판매, 영업직 | 58 | 0.0 | 41.4 | 41.4 | 43.1 | 15.5 | 58.6 | 0.0 |
| 학생 | 190 | 1.1 | 40.0 | 41.1 | 44.2 | 11.6 | 55.8 | 3.1 |
| 무직 | 61 | 8.2 | 37.7 | 45.9 | 41.0 | 11.5 | 52.5 | 1.6 |
| 기타 | 32 | 6.3 | 31.3 | 37.6 | 43.8 | 12.5 | 56.3 | 6.1 |

다문화가족 유무별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참여할 것이라는 적극적 성향의 응답은 주위에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가 55.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주위에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 가족이 없는 경우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6.3%로 높게 나타나, 다문화 가족 유무가 참여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76▐ 다문화가족 유무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

| 구분 | 사례수 | 참여할 것이다 | | | 참여하고 싶지 않다 | | | 무응답 |
|---|---|---|---|---|---|---|---|---|
| | | 꼭 | 가급적 | 소계 | 별로 | 절대 | 소계 | |
| 합계 | 1,000 | 3.2 | 41.1 | 44.3 | 40.6 | 12.0 | 52.6 | 3.1 |
|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 있음 | 258 | 6.2 | 49.6 | 55.8 | 31.8 | 10.1 | 41.9 | 2.3 |
|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 없음 | 742 | 2.2 | 38.1 | 40.3 | 43.7 | 12.7 | 56.3 | 3.4 |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의향과 국제결혼이민자 수용도 간에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의향과 국제결혼이민자 수용도 간에는 정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강할수록, 수용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용도의 수위가 강할수록 상관계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77▐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국제결혼이민자 수용도 연관성

| 구분 | | 국민이 되는 것 | 직장동료가 되는 것 | 본인,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
|---|---|---|---|---|
| 사회통합프로그램참여의향 | Pearson 상관계수 | 0.218 | 0.266 | 0.271 |
| | p-value | 0.000 | 0.000 | 0.000 |
| | N | 937 | 925 | 928 |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의향과 국제결혼이민자 이미지 간에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의향'과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을 제외한 8가지 모두 정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강할수록, 다문화가족 정책지원 수용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78▐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국제결혼이민자 이미지 연관성

| 구분 | |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한국말과 요리 능력 |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언어 능력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 | 정책 수립시 의견 반영 | 인권 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 개입 |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투입과 지원 | 위장 결혼 등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처벌 강화 | 다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세금 인상 |
|---|---|---|---|---|---|---|---|---|---|---|
| 사회통합프로그램참여의향 | Pearson 상관계수 | -0.030 | 0.101 | 0.142 | 0.238 | 0.216 | 0.219 | 0.124 | 0.261 | 0.276 |
| | p-value | 0.355 | 0.002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 N | 961 | 961 | 961 | 954 | 947 | 937 | 965 | 925 | 929 |

## 3. 주변에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주변에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74.2%로 있다는 응답 25.8% 보다 높게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주변에 다문화 가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통계수치와 맞는 수치이다.

▌표 Ⅴ- 79▐ 주변에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있다 | 258 | 25.8 |
| 없다 | 742 | 74.2 |

연령별로 주변에 다문화가족 존재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없다는 응답은 10대는 다문화가족 접촉이 낮아 90.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 80▐ 연령별 주변에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 구분 | 사례수 | 다문화가족 있음 | 다문화가족 없음 |
|---|---|---|---|
| 합계 | 1,000 | 25.8 | 74.2 |
| 15-19세 | 80 | 10.0 | 90.0 |
| 20대 | 213 | 20.7 | 79.3 |
| 30대 | 238 | 30.7 | 69.3 |
| 40대 | 211 | 26.5 | 73.5 |
| 50대 | 160 | 28.1 | 71.9 |
| 60대 | 98 | 32.7 | 67.3 |

직업별로 주변에 다문화가족 존재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기술, 생산직에서 38.6%, 판매, 영업직에서 3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없다는 응답은 학생층에서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직업군에서는 존재여부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아직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어려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낮아 학생층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의 존재여부가 낮게 나온 결과로 보인다.

▌표 Ⅴ- 81▐ 직업별 주변에 다문화가족 존재 여부

| 구분 | 사례수 | 다문화가족 있음 | 다문화가족 없음 |
|---|---|---|---|
| 합계 | 1,000 | 25.8 | 74.2 |
| 전업주부 | 251 | 26.7 | 73.3 |
| 사무직 | 217 | 22.1 | 77.9 |
| 서비스직 | 115 | 28.7 | 71.3 |
| 관공직 | 7 | 0.0 | 100.0 |
| 전문직 | 25 | 48.0 | 52.0 |
| 기술, 생산직 | 44 | 38.6 | 61.4 |
| 판매, 영업직 | 58 | 37.9 | 62.1 |
| 학생 | 190 | 16.3 | 83.7 |
| 무직 | 61 | 31.1 | 68.9 |
| 기타 | 32 | 28.1 | 71.9 |

## 4.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심각해질 것이다’는 부정적 응답은 49.4%(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10.3% + 조금 심각해질 것이다 39.1%)로 ‘완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 응답(24.7%, 매우 완화될 것이다 1.7% + 조금 완화될 것이다 23.0%)보다 24.7%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심각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을 일정부문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Ⅴ- 82▐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합계 | 1,000 | 100.0 |
|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 103 | 10.3 |
| 조금 심각해질 것이다 | 391 | 39.1 |
|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 230 | 23.0 |
| 조금 완화될 것이다 | 230 | 23.0 |
| 매우 완화될 것이다 | 17 | 1.7 |
| 모름/무응답 | 29 | 2.9 |

연령별로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면, 심각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50대에서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10대에서 33.8%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 83▐ 연령별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구분 | 사례수 | 심각해질 것이다 | | | 유지 | 완화될 것이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조금 | 소계 | | 조금 | 매우 | 소계 | |
| 합계 | 1,000 | 10.3 | 39.1 | 49.4 | 23.0 | 23.0 | 1.7 | 24.7 | 2.9 |
| 15-19세 | 80 | 8.8 | 33.8 | 42.6 | 33.8 | 22.5 | 0.0 | 22.5 | 1.1 |
| 20대 | 213 | 7.0 | 32.9 | 39.9 | 32.9 | 23.5 | 1.9 | 25.4 | 1.8 |
| 30대 | 238 | 9.7 | 41.6 | 51.3 | 24.8 | 21.4 | 0.8 | 22.2 | 1.7 |
| 40대 | 211 | 9.5 | 43.6 | 53.1 | 18.0 | 23.2 | 2.8 | 26.1 | 2.9 |
| 50대 | 160 | 16.9 | 39.4 | 56.3 | 13.8 | 25.6 | 1.3 | 26.9 | 3.0 |
| 60대 | 98 | 11.2 | 40.8 | 52.0 | 14.3 | 21.4 | 3.1 | 24.5 | 9.2 |

학력별로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면, 심각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대학원졸 이상(61.0%), 대졸(49.5%), 고졸(49.0%), 중졸(48.5%), 초졸 이하(41.5%)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 84▐ 학력별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구분 | 사례수 | 심각해질 것이다 | | | 유지 | 완화될 것이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조금 | 소계 | | 조금 | 매우 | 소계 | |
| 합계 | 1,000 | 10.3 | 39.1 | 49.4 | 23.0 | 23.0 | 1.7 | 24.7 | 2.9 |
| 초졸 이하 | 41 | 9.8 | 31.7 | 41.5 | 26.8 | 19.5 | 2.4 | 21.9 | 9.8 |
| 중졸 | 97 | 12.4 | 36.1 | 48.5 | 25.8 | 22.7 | 1.0 | 23.7 | 201 |
| 고졸 | 337 | 9.8 | 39.2 | 49.0 | 23.4 | 21.1 | 3.3 | 24.3 | 3.3 |
| 대졸 | 483 | 9.7 | 39.8 | 49.5 | 22.2 | 25.3 | 0.8 | 26.1 | 2.2 |
| 대학원졸 이상 | 41 | 17.1 | 43.9 | 61.0 | 19.5 | 17.1 | 0.0 | 17.1 | 2.4 |
| 거절/무응답 | 1 | 0.0 | 10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소득수준별로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면,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300~400만원 미만의 소득층에서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Ⅴ- 85▐ 소득수준별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구분 | 사례수 | 심각해질 것이다 | | | 유지 | 완화될 것이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조금 | 소계 | | 조금 | 매우 | 소계 | |
| 합계 | 1,000 | 10.3 | 39.1 | 49.4 | 23.0 | 23.0 | 1.7 | 24.7 | 2.9 |
| 100만원미만 | 543 | 9.9 | 38.1 | 48.0 | 23.6 | 25.2 | 1.1 | 26.3 | 2.1 |
| 100~200미만 | 156 | 9.6 | 42.3 | 51.9 | 19.9 | 15.4 | 3.8 | 19.2 | 9.0 |
| 200~300미만 | 148 | 12.2 | 39.2 | 51.4 | 25.0 | 20.3 | 1.4 | 21.7 | 1.9 |
| 300~400미만 | 74 | 8.1 | 36.5 | 44.6 | 21.6 | 29.7 | 2.7 | 32.4 | 1.4 |
| 400~500미만 | 27 | 22.2 | 40.7 | 62.9 | 14.8 | 22.2 | 0.0 | 22.2 | 0.1 |
| 500이상 | 31 | 6.5 | 41.9 | 48.4 | 25.8 | 22.6 | 3.2 | 25.8 | 0.0 |
| 거절/무응답 | 21 | 9.5 | 42.9 | 52.4 | 28.6 | 19.0 | 0.0 | 19.0 | 0.0 |

직업별로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면, 심각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기술, 생산직에서 56.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무직에서 27.9%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 수준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학생층에서 31.1%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 86▐ 직업별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구분 | 사례수 | 심각해질 것이다 | | | 유지 | 완화될 것이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조금 | 소계 | | 조금 | 매우 | 소계 | |
| 합계 | 1,000 | 10.3 | 39.1 | 49.4 | 23.0 | 23.0 | 1.7 | 24.7 | 2.9 |
| 전업주부 | 251 | 11.2 | 39.8 | 51.0 | 19.5 | 25.5 | 0.8 | 26.3 | 3.2 |
| 사무직 | 217 | 12.9 | 33.6 | 46.5 | 26.3 | 22.6 | 0.5 | 23.1 | 4.1 |
| 서비스직 | 115 | 10.4 | 45.2 | 55.6 | 20.9 | 15.7 | 4.3 | 20.0 | 3.5 |
| 관공직 | 7 | 14.3 | 57.1 | 71.4 | 0.0 | 14.3 | 0.0 | 14.3 | 14.3 |
| 전문직 | 25 | 8.0 | 52.0 | 60.0 | 20.0 | 20.0 | 0.0 | 20.0 | 0.0 |
| 기술, 생산직 | 44 | 6.8 | 50.0 | 56.8 | 15.9 | 18.2 | 6.8 | 25.0 | 2.3 |
| 판매, 영업직 | 58 | 6.9 | 44.8 | 51.7 | 20.7 | 22.4 | 1.7 | 24.1 | 3.5 |
| 학생 | 190 | 7.4 | 32.6 | 40.0 | 31.1 | 26.8 | 1.6 | 28.4 | 0.5 |
| 무직 | 61 | 11.5 | 41.0 | 52.5 | 16.4 | 24.6 | 3.3 | 27.9 | 3.2 |
| 기타 | 32 | 12.5 | 43.8 | 56.3 | 21.9 | 18.8 | 0.0 | 18.8 | 3.0 |

다문화가족 유무별로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면, 심각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 있는 응답자가 5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 87▐ 다문화가족 유무별 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문제점

| 구분 | 사례수 | 심각해질 것이다 | | | 유지 | 완화될 것이다 | | | 무응답 |
|---|---|---|---|---|---|---|---|---|---|
| | | 매우 | 조금 | 소계 | | 조금 | 매우 | 소계 | |
| 합계 | 1,000 | 10.3 | 39.1 | 49.4 | 23.0 | 23.0 | 1.7 | 24.7 | 2.9 |
|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 있음 | 258 | 14.0 | 41.1 | 55.0 | 17.8 | 23.3 | 2.3 | 25.6 | 1.6 |
|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 없음 | 742 | 9.0 | 38.4 | 47.4 | 24.8 | 22.9 | 1.5 | 24.4 | 3.4 |

## 제7절 소 결

서울 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보면 서울시민들이 다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직업종류별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식은 보다 관대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항목별 내용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직 다문화사회에 대한 경험 부족과 너무나 빠른 기간동안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심도깊게 시민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다문화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의 변화에 긍정적이긴 하나 가치관이나 정서적인 차원까지 수반되지는 않아 문화지체현상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야기되기는 하지만 이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서울시민의 의식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별로 차이는 있으나 20대, 30대, 40대가 다문화가족에 대해 개방적인데 비해 10대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10대가 다문화에 대해 폐쇄적이라 할 수 없으며 서구문화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서구중심으로 편향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보다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를 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이 많이 진출해 있는 판매·영업직이나 기술·생산직에서는 상대적으로 부

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가족들이 더 증가하고 그들의 자녀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강화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들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의식개선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대한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학교교육, 사회교육과정에 다문화에 대한 교과과정이 필수적이다. 설문조사에서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긍정적이긴 하나 문화지체현상으로 정서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으므로 향후 갈등을 예방하고 다문화정책이 올바른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유치원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하며, 공적기관과 민간기관, NGO와 시민단체와의 연계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인권교육, 성평등교육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서울시민과 다문화가족들과의 만남기회를 다양화하여 서로를 이해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서울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의식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울 통계조사에 다문화에 대한 의식조사를 지표화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다문화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VI

# 결 론

# VI 결 론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와 다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과 효율적인 지원체계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절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으로의 전환

### 1. 패러다임의 전환: '지원'에서 '공생'을 넘어 '통합'으로

다문화정책은 광의적인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이념이므로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으나 한 사회내의 다양성을 상호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는 이념 및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가리킨다. 다문화정책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치적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나 우리의 다문화정책은 인구학적 특성 변화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시혜적 차원, 문제해결차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각 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명실상부한 다문화주의보다는 부계 부권중심의 가족중심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이를 유지하면서 한국주류사회로 다문화가족을 동화시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행 다문화가족정책이란 장기적인 시각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 중심의 단기적인 대처방안으로 어느 면에서 다문화가족을 문제거리로 보는 전제위에 서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은 동화가 아닌 올바른 정착을 통해 한국인과의 공생통합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고, 한국인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위한 상호교육과 이해 등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바람직한 방향의 모색 등은 일정부분 담론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사회통합의 기조위에 구체적인 법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우리사회가 너무 단기간내에 단일민족에서 다문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에 대한 성찰도 부족해서 오는 현상으로, 사회내에서 다문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협의없이 현장의 요구에 따라 문제해결방식으로 다문화가족을 온정적, 시혜적 대상으로 접근한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는 우리가 직면한 사회이며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이에 대한 실천방안이 연구되고 모색되어야 한다. 이 논의과정은 단기간에 완결되지 않을 것이며 적지 않은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올바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언론, 시민사회 등은 다문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지니는 정치적 함의와 사회통합과정에서 다문화담론이 지니는 의미와 맥락을 한국적 차원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정치적 선언이 아닌 다문화가족이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이념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들을 시혜적 정책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공생'하는 존재로, 더 나아가 평등한 동반자로서 '통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제도와 정책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관주도형 다문화정책만으로, 시민주도형 다문화정책만으로는 안되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방식으로 이행될 때에만 가능하다.

## 2. 가족생애 주기와 가족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필요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 주기에 따라, 가족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가 다를 것이므로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즉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가족해체시 등 가족의 단계와 상황에 따라 가족 전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책이 체계화, 다각화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주기에 따라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과제를 선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주기별 | 정책과제 | 세부 추진과제 | 서울시 세부과제 |
|---|---|---|---|
| 결혼<br>준비기 | 결혼중개 탈법방지<br>및 결혼예정자<br>사전준비 지원 | -국제결혼탈법방지 및 결혼당자사 인권보호<br>-결혼이민예정자 사전정보 제공<br>-한국인 예비배우자 사전교육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및 관리철저<br>-서울시민 중 예비배우자 사전교육체계화 |
| 가족<br>형성기 | 결혼이민자<br>조기적응 및<br>다문화가족의<br>안정적 생활지원 |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br>-다양한 생활정보제공<br>-다문화가족 생활보장<br>-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예방 |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br>-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br>-서울시 결혼이민자 홈페이지 개설<br>-한국어교육 체계화, 단계화 지원<br>-의료기관, 행정기관 등에 통번역 서비스 및 문자서비스 제공<br>-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적용<br>-상담 지원을 위한 One-Stop System 구축 |

| 주기별 | 정책과제 | 세부 추진과제 | 서울시 세부과제 |
|---|---|---|---|
| 자녀 양육기 |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 출산, 양육지원 | -임신·출산 지원<br>-부모의 자녀양육 능력 배양<br>-영유아보육 교육강화<br>-부모자녀건강관리 | -임·출산부 찾아가는 서비스, 문자서비스 제공<br>-자녀양육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제공<br>-영유아보육지원<br>-예방접종 등 건강관리를 위한 문자서비스 제공 |
| 자녀 교육기 | 다문화아동 청소년학습발달 및 역량개발강화 |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역량강화<br>-결혼이민자 사회연계강화 | -이중언어 역량개발<br>-다문화아동청소년 활동프로그램지원<br>-다문화아동청소년 상담지원<br>-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한 학교 상담지원 |
| 가족역량 강화기 |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역량강화 |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역량강화<br>-결혼이민자 사회연계강화 | -결혼이민자 취창업개발능력을 위한 프로그램개발<br>-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br>-직업교육 후 취창업 연계<br>-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멘토·멘티 지원 |
| 가족 해체시 | 해체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 -한부모가족지원<br>-요보호아동지원 | -한부모가족 생활지원<br>-요보호아동지원 |

##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체계화, 다양화

### 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대상의 다양화

현재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대상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이 대상인 경우가 6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33.4%), 결혼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2.0%),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1.0%), 결혼이민자와 자녀대상(0.8%), 기관종사자(0.7%) 기타(1.2%)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결혼이민자 가족 33.3%, 결혼이민자 37.5%, 자녀 8.3%,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8.3%, 결혼이민자와 자녀 8.3%로 다양하게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은 결혼이민자 가족 41.7%, 결혼이민자 55.6%, 결혼이민자 배우자 2.8% 등으로 나타나 사업대상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사실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만이 아닌 배우자, 자녀, 시집식구들 등 다문화가족 모두를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나 교육도 필요하므로, 다문화가족과 서울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통합 지향적인 사업도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대상은 다문화가족만이 아니라

기관종사자, 서울시민 등을 포함한 사업대상의 다양성, 포괄성 등이 확보될 때만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원사업대상을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하되 배우자, 자녀, 시집식구들, 기관종사자 더 나아가 서울시민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용의 다양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혼이민자 사회적응지원 51.4%, 가족지원 4.2%,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5.45%, 의료보건 4.6%, 상담 2%, 서비스종사자역량강화 1.7%, 사회통합지원 5.8%, 기타 24.8%로 나타났다. 16개 시도 중 가장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충남은 사회적응지원 33.3%, 가족지원 4.2%, 취업지원 4.2%, 의료보건 8.3%, 상담 4.2%, 서비스종사자역량강화 4.2%, 사회통합지원 4.2% 등으로 지원사업 내용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은 사회적응지원 66.7%,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2.8%, 의료보건 8.3%, 상담 5.6%, 서비스종사자역량강화 1.7%, 사회통합지원 2.8%, 기타 13.9%로 나타나 대체로 지원내용이 다양하나 사회적응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가족지원이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등의 사업내용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등의 사회적응 지원사업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에 따라 가족의 현 상황에 따라 서비스욕구가 다르므로 사업내용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결혼이민자들의 취·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등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사업내용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4. 다문화가족정책의 충분한 예산확보

서울의 결혼이민자 거주율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 비해 예산은 매우 적게 확보되어 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예산이 경기도가 1,614,496천원인데 반해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2008년 예산은 933,165천원으로 경기도의 2/3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결혼이민자 수 대비 예산을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 1인당 107.07천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6개 광역시도별로 분석해 보면, 결혼이민자 1인당 예산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으로 734.50천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충북(408.95천원), 경북(255.44천원), 전남(228.03천원), 강원(212.79천원) 등에서 결혼이민자 1인

당 20만원 이상의 지원 사업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은 결혼이민자 1인당 25.54천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수치의 1/4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충남의 결혼이민자 1인당 예산 734.50천원에 비하며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또한 서울시 다문화가족사업 예산은 시비가 16%, 구비 83.7%, 기타 0.3%로 나타나 시비의 비율이 너무 적은 반면 구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비가 클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의 지원정책이 달라지는 불균형이 생기므로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비의 비율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 확보가 급선무이며 글로벌 서울의 기치아래 시비의 비율을 높여 서울에 사는 모든 결혼이민자들이 대체로 균등하게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서울시 다문화관련 조례 제·개정

### ○ 여성발전기본조례 등 개정

다문화가족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서울시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다. 서울시나 각 자치구는 다문화가족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다문화가족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법적 근거마련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조례에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는 없는 실정이므로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조례내용의 규정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내용”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요정책에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지원’을 넣어야 하며. 제15조 “복지증진” 조항내용에도 ‘시장은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 다문화가족 관련법에 대한 조례 제정

다문화가족 관련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 즉 재한외국인처우기본조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결혼중개업소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거주외국인지원조례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 6. 다문화교육 실시

### 1) 학교 교과과정에 다문화교육 포함

서울시민의 다문화의식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서울 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는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드러냈으나 전반적으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다만 10대들의 수용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들의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서구사회에 편중되어 있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오는 탓이므로,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에게 균형잡힌 국제감각과 다문화가족과의 공생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공교육 교과과정에 우리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야 한다. 또한 이 교육을 인권교육이나 성평등 교육과 연계해서 실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 2) 시민교육으로 다문화교육 실시

다문화교육은 학교교과과정만이 아니라 시민교육에서도 필요하므로 다양한 수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정도가 연령별, 계층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촉기회를 증가시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다문화정책의 지향점을 구축하는데 일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다문화정책이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맞물릴 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므로 각종 시민사회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다문화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문화지체현상을 제거하고 이문화에 대한 균형잡힌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7. 다문화가족정책을 위한 기반구축

### 1) 서울시 다문화가족  통계 구축 및 DB화 작업

현재 서울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및 자료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이 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구축을 정례화하고 관계기관의 협조하

에 이를 DB화한다. 즉 정기적으로 서울시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에서 발간하는 서울통계를 비롯한 모든 통계에 다문화가족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하며 이를 각 자치구에 배포하도록 한다.

### 2) 다문화사회 지수 개발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의 어느 단계에 있으며 어느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알기 위해서는 다문화지수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항목에 다문화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 전환단계, 정착단계에 따라 사회문제 관리의 장애요인을 지수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정책을 펴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수개발은 성평등지수와 연계하여 개발하면 더욱 시너지효과를 낳을 수 있다.

## 8.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정비율 다문화가족 사업에 할당

서울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행프로젝트의 일정비율을 다문화가족사업에 할당하도록 하면 다문화가족정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으며 향후 준비해야 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필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는 중앙보다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따라 전개될 때만 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사업의 접근은 가족차원이 강조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여행프로젝트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을 성인지적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사업이 활성화된 자치구는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 동인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 제2절 주요 다문화가족 정책 제언

### 1. 한국어교육

#### 1) 한국어교육의 다각화, 전문화, 체계화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이다. 이러한 한국어교육의 효율적 지원서비스를 위해서 선결해야 할 점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 전문화, 체계화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 형태는 집합교육,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한 방문교육, 한국디지털 대학에서 행하는 온라인교육, EBS의 방송교육 등이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비롯한 다문화관련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홍보가 잘 안되어 있으며 단계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 대두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 (1)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결혼이민자들에게 서비스지원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이용율이 저조하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교육방법을 택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각 자치구가 주체가 되어 이민자들을 위한 생활정보지를 발간하고, 결혼이민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배포방식에 있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즉 서울시 각 자치구가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생활정보지를 발간하고 이를 주민자치센터에 보내고 주민자치센터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정보지를 우편발송하든, 각 지역의 통장으로 하여금 직접 전달하게 하든지 간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교육 등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실시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교육의 대부분은 초급과정으로 중급과정도 드문 실정이며 고급과정은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결혼이민자들이 초급과정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기는 하나 중급이나 고급과정의 교육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도 있으므로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이나 학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중급 내지 고급과정의 교육은 매우 필요하고

이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당연하다. 초급 과정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혼이민자여성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각화,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급 과정은 대학의 한국어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개설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한국어교육 교사의 전문성 확보

한국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과 보수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보수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자원봉사자 내지 일부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교사들이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합교육이든 방문교육이든 결혼이민여성들은 학력내지 환경 등이 각각 다르고 문화적응의 부담감도 다르므로 한국어 교육 교사는 보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단순히 한국어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보다 높은 한국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로 근무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근무환경과 보수가 주어져야 하며 교사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내지 보수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적자원이 풍부한 편이므로 명예퇴직한 교사나 다문화관련자들을 일정기간 연수나 보수교육을 통해 재무장시키고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명예강사증을 발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심어주어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교사 인력풀을 만들어 어느 지역에서나 원활한 교사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맞춤형 한국어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재 한국어 첫걸음, 한국어초급, 한국어 중급 등의 교재가 발간되었으나 이 교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결혼이민자들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교재개발만이 아니라 수업보조교재, 부교재, 수업보조기구의 개발 등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방법도 다양화하여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강의, 전화강의 등을 이용하여 자율적인 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강의실에서 만나 강의를 받고 자신의 학습정도를 점검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도입도 필요하다.

### 4) 교육환경개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실시를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자녀들을 맡아 줄 보육시설, 수유실 등을 함께 갖추어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온 배우자나 시댁식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결혼이민자 외에 동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 등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가능한 인력이나 건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 2. One- Stop Service 지원 체계 구축

교육과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생활 전반에 걸친 상담서비스이다. 결혼이민자들은 가족생활, 자녀양육, 교육, 건강, 부부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 예방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상담가의 확보가 시급한 일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일부 다문화관련기관 등이 상담을 하고 있으나 모든 기관들이 원활하게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One-Stop Service 시스템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결혼이민자를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이주여성쉼터 등이 있으나 이용자가 많아 연결되기 어렵고 지역마다 상담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울시의 독자적인 상담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거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혹은 글로벌센터내에 독립적인 One-Stop Service 상담지원체계를 갖추어 다문화에 대한 상담분야를 구조화하고 전문상담가가 상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서울시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병원, 법원, 교육기관, 보건소, 행정기관 등과 신속한 연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상담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센터 실무자나 자원봉사자들을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훈련지원과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교육 및 훈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3. 결혼이민자 모니터링단, 자원봉사단 구성 및  지원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과 혹은 모국 결혼이민자들과의 멘토멘티를 지원하고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배우자 자조모임, 시부모 자조모임 등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가까운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의 멘토·멘티를 형성하고, 자조모임의 운영이나 활성화를 위한 지도를 원할 경우 이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일정기간 관련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실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다문화정책 모니터링단 내지 자치구 다문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문화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 4. 생활정보 제공 및 보급 방안 개선

정부는 결혼이민자들이 서울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매거진을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도를 몰라서, 제공기관을 몰라서,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등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제공에는 결혼이민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등이 수록되어야 하며 이는 다중언어로 발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5개 자치구의 정보를 다 담을 수는 없으므로 공통정보 외에는 자치구가 발간주체가 되어 그 지역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정보지가 발간됨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들에게 보급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므로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급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 그러므로 거주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에 제공하거나 혹은 전입신고를 한 후 우편으로 정보지를 보내어 결혼이민자가 반드시 정보책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문화가정으로 정보지를 배송하거나 통장이나 멘토들이 정보지를 받아 전달하는 방법 등 배포방식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에 다문화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 5. 의료·건강 지원

### 1) 임·출산 지원 서비스

결혼이민자들은 임·출산시, 건강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임신 중 건강관리, 출산준비, 양육방법 등을 교육지원하는 임신출산 지원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산모를 위해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언어소통이나 정착에 있어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를 중산층 가정까지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통역요원을 배치시켜 결혼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든지 의료진과의 소통을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출산동안 산모나 신생아가 필요로 하는 예방주사접종 등의 포괄적인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도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여성의 출신지역에 따라 출산시 먹는 음식이나 문화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보들을 발굴하고 이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공유하게 함으로써 가족간의 소통을 도와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모국출신 멘토를 임신출산 멘티에게 연결해 주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 2) 통·번역서비스 요원 선발, 양성, 파견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언어소통이므로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교육과정, 상담, 학교, 병원, 보건소, 행정기관, 법원 등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거주 결혼이민자 출신중에서 언어별로 통·번역서비스요원을 선발, 양성하고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 즉 의료기관이나 행정기관에 파견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인력풀을 만들고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 6.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서비스

결혼이민자들의 자녀양육을 위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은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1) 다문화영유아 보육교사 교육 실시

영유아보육교사는 처음으로 다문화자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우선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가정과는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색에 따른 영유아보육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육교사는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보수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2) 아이돌보미 사업 일정비율 다문화가족에게 할당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보육시설 이용율은 17%인데 이는 일반가정 57%에 비하면 1/3 해당하는 수치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보육료가 부담이 되고 아직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돌봄의 부담이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파견 가정을 정할 때 일정비율을 다문화가족에게 할당하는 등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아이돌보미로 선발하여 이들을 결혼이민자 가정에 파견하면 멘토 멘티로서의 역할로 수행가능하므로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 3) 다국어로 된 보육자료 개발 및 보급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절반이상이 핵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보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상태이다. 그러므로 다국어로 번역된 보육정보제공, 보육교재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의 보육정보센터내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나의 기능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보 및 교재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다문화가정으로 보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7. 결혼이민자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결혼이민자들이 언어소통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들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안정이나 모국가정의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국제결혼을 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욕구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들의 모국에서의 경력, 학력, 특성, 욕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적자원 특성을 고려한 직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시키며, 교육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즉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원어민 강사, 방문교육지도사, 상담사, 단체활동가 등 적합한 직종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취·창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교육 후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취·창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단계마다 지속적인 관찰, 모니터링 실시, 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사업은 서울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원 등과 같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이나 학교,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취업과 연계시키며, 바람직한 결혼이민자 취창업모델케이스를 발굴하여 결혼이민자들에게 역할모델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 제3절 다문화 관련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 1. 중앙-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간, 부서간 및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결혼이민자지원서비스는 중앙부처간, 지자체의 부처간 산발적, 파편적, 중복적으로 시행됨으로서 예산낭비와 효율성 저하 등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중앙부처간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이나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지원서비스들은 실질적으로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중앙-서울시, 서울시-자치구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내의 부처간의 협력과 연계가 강화되어야 다문화지원정책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관조직만으로는 다문화관련 교육이나 서비스를 포괄할 수 없으므로 민간기관이나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정책화하며 이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가 강구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다문화관련연구를 지속해온 대학 즉 이화여대, 서울대, 한양대, 고려대, 한성대, 숙명여대 등과의 연계하고 다문화관련 시민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정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2. 다문화담당관 등 전문인력 배치 및 다문화위원회, 다문화협의회 설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전형적인 휴먼서비스이므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요구하며, 부처간 이해관계를 넘어 통합적인 시각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에 다문화담당관을 설치하여 다문화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서울 부시장 산하에 다문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정책을 다문화적 시각에서 스크린 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정책, 저출산, 청소년, 문화, 노동관련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에 대한 조정기능을 하도록 한다. 또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각 자치구도 다문화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구청장 산하에 다문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문화와 관련하여 모든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다문화담당자로 구성된 다문화협의회를 만들어 다문화관련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자치구에서의 사업내용 등 정보공유 등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한다.

## 3. 맞춤형 서비스 내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원서비스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성격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로 초기단계부터 통합단계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단계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기관에서 이러한 통합적인 서비스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관간의 연계가 요구된다.

특히 서울시 각 자치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에 따른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다문화정책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

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구나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원에 따라 인근 자치구와 통합하여 특정분야의 맞춤형서비스 내지 전문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자치구와 각 기관간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정 등은 서울시가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강승호(20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강휘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제20권 2호, 중앙대학교국가정책연구소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8),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서비스추진체계 효율적 연계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고숙희(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서울행정학회

곽원섭(2007),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구견서(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90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국가인권위원회(2007a), “사회권포럼자료집 1”, 국가인권위원회

_____(2007b),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위회

국회여성가족위원실(2008),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 : 제17대 국회(2004.5.30.-2008.5.29.)“, 국회여성가족위원실

국회의원 고경화 의원실(2006), 『‘이주민가정과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의 이주노동자 정책 방향 모색』, 이주민가정, 새터민가정의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 자료집(2006. 6. 7), 국회의원 고경화의원실

국회인권정책연구회(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인권정책연구회

국회입법조사서(2008), “현행 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2008.2. : 사회 · 문화”, 국회입법조사처

금명자 외(2006), “한국의 다문화가정청소년실태”, 『다문화가정청소년 사회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

김광억 외(2005),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 아카넷

김남국(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한국정치논총』 제45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김두섭(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1호, 한국인구학회

김문진(2007), “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문진위원실
김민정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문화인류학』제39권 1호, 소화
김민정(2007), “결혼이주여성 체류권과 사회권”,『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한국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민중(2001),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 사이의 생활동반자 관계”,『가족법연구』제15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김범수(2007), “다문화사회복지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양서원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자료집, 이주여성인권센터
김승권 외(2004),『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애령(1998),『충남거주 조선족 여성의 결혼과정 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도청
김양희 외(2008), “결혼이민자가족 관련기관의 프로그램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김연수(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김영임(2007),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다문화 가족 2세의 다문화 교육”,『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한국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영주(2006),『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_____(2007), “한국의 다문화현황과 사회적 과제”, 사회복지 통권 175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영혜(2007),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현황”,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김오남 외(2008), “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김오남(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가족과 문화』제18집 제3호, 한국가족학회
_____(2008),『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집문당
김용훈 외(2002),『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김유은, 이인영(2008), “결혼이민자의 실태와 지원방안”, 진리논단 제15호, 백석대학교
김은숙 외(2006),『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적응 지원 실태조사 연구』, 강원발전연

구원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김은실(2004), “차이가 만들어내는 여성 이주의 정치학”, 『국가횡단 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면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이선(2007), “제자리를 찾아야 할 여성결혼이민자 정책”, 『젠더리뷰』 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을 통해 본 문화간 소통의 현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Ⅰ) :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재련(2007),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가족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김정선(2004), “이주 노동자 남성과 한국 여성의 ‘가족 만들기’를 통해 본 지역가부장제의 변형 및 재구성”, 『국가횡당 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정원 외(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정태(2005), “농촌지역 결혼연령 성비 분석과 국제결혼의 의의.” 『한국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춘진의원실(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의원 김춘진의원실
김학실, 송수진(2008), “충청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제70호, 한울
_____(2007), “국가와 이주여성: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 만들기의 갈라지는 희망들”, 『지구지역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한국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현미 외(2008), “안전한 결혼이주?”, 『한국여성학』 제24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김현선(2006), “국민, 반국민, 비국민-한국 국민형성의 원리와 과정”, 『사회연구』통권 12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김현숙(200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모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현재(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제52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김혜순(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본전제들”,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동북아시대위원회, 한국사회학회
_____(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_____(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제42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김희정(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응”,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사)국경없는 마을 학술토론회 자료집, (사)국경없는 마을
농림부(200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연구”, 농림부 여성정책과
니콜라 파이퍼(2007), “젠더 관점에서 이주-발전 연계 재고하기: 아시아로부터의 통찰”, 『지구지역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한국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마르코 마르티니엘로(2002)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아카데미
문순영(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통권 제72호, 한국여성개발원
문영석(2005),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14권 1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2008a), “다문화포럼”,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_____(2008b),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민가영(2004), “글로벌자본과 로컬가부장의 충돌과 공모 : 조선족 여성 이주를 둘러싼 조선족 사회의 ‘여성유실’ 담론을 중심으로”, 국가횡단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민경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박경태·장수현(2003), 『한국화교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박명선(2007),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1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박병섭(2006), “다문화적 소수자 문제에서 한국의 특수성”, 『사회와 철학』제12호, 사회와

철학연구회
_____(2008),『이주민과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다문화주의 철학』, 실크로드
박선영(2007),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저스티스』통권 제96호, 한국법학원
박승범(2008), “다문화사회 정착실현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후원사업”, 교육연구정보 통권 제54호,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
박재규(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한국사회의 지구화와 근대성: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박지혜(2007),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정책의 과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법무부(2008 a), “출입국 · 외국인정책통계연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_____(2008 b),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설명회 자료집
보건복지가족부(2008),『2008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기본계획』,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2005),『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일본의 국제결혼중개회사 관리체계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정책연구
_____(2006),『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서경식(2006),『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2007),『국제결혼 이주여성, 쟁점과 전망』,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석현호·이혜경(2003),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과 이주과정”,『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설동훈 외(2002),『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_____(2005),『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_____(2006),『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설동훈(1998),『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2005), “이민과 다문화 사회의 도래”,『한국사회론』, 전북대학교출판부
_____(2005),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우리시대의 소수자 운동』, 이학사
_____(2005),『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_____(2006a),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태”, 국제이해교육포럼 자료집,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 교육원
_____(2006b),『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_____(2007), “한국 사회의 현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 걸림돌”, 다문화사회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설종훈, 윤홍식(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2호 통권45집, 한국사회보장학회

소라미 외(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도 검토: 지정토론 요지”, 『저스티스』통권 제96호, 한국법학원

소라미(2007a),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wmigrant.org, 검색일: 2007. 9. 2)

_____(2007b), “유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제도적 문제점”, 『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한국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손병돈(외)(2008), “사회복지와 인권”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편, 양서원

송수진 외(2007),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2005년 ‘프랑스 도시 외곽지역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제41권 제3호, 한국사회학회

송수진 외(2007), 『충북 가족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신기동 외(2006), 『외국인근로자 정주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경기개발연구원

신승연(외)(2007),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 : 결혼이민자생활안내”, 지세와 외 번역, 보건복지부,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보건복지부

심인선(2008),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아시아이주여성국제포럼준비위원회(2005),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인권”, 『아시아이주노동자 포럼』, 외국인이주노동자대  협의회

안경식 외(2008),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양순미(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적응지원 정책 개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양애경(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옥경 외(2006),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_____(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12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도시연구』제8권 제12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양옥경(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지원방안”, 『서울정책포커스』 제27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양혜우(2005),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

참여정부 2년, 사회통합정책 평가와 과제 — 종합 자료집』.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엄한진(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한국사회학회
여성가족부(2007),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_____(2007),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정책기획평가팀
여의도 연구소(2008), “재한외국인정책현황과 개선과제”, 여의도 연구소
염미경, 김규리(2008), “제주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 : 선택과 딜레마, 그리고 적응”, 선인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 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사)국경없는 마을 학술토론회 자료집, (사)국경없는 마을
오계택 외(2007),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제32권 3호, 한국교육개발원
오윤자(2007),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통합지원 패러다임 모색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제11권 제4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왕한석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 실태연구』, 국립국어원
유길상 외(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_____(2007),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유네스코 아시아(2008),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제42집 2호, 한국사회학회
윤정숙·임유경(2004), “성별화된 이주방식으로서 국제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 : 필리핀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윤태순(2007), “중-한 국제결혼증가에 따른 가족법의 문제”, 『가족법연구』 제22권 제1호
윤형숙(2005), “지구화, 여성이주, 한국사회의 성적·인종적 위계 만들기”, 『지구화 시대의 한국 여성주의』, 한국여성학회
_____(2005), “지구화, 여성이주, 한국사회의 성적·인종적 위계 만들기”, 『지구화 시대의 한국 여성주의』, 한국여성학회

이강숙(2008),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실태조사 및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연구”, 강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규용 외(2007),『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언을 이한 원탁토론회,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이병기(2008), “한 · 일 국제결혼부부의 문화적응과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순천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기(2008), “미디어에 비춰지는 다문화 가정 : 익숙해졌을 뿐 여전히 우리 밖의 남”,『신문과 방송』제447호 (2008년 3월), 한국언론재단
이선진(2008), “결혼이민자 정책 변해야 한다 : 한국화 강요보다 배우자문화도 배워야”, 공공정책21 : 공공혁신과 지방자치경영을 위한 뉴매거진 통권 제30호,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이소영(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의 분석과 과제”,『우리말 교육현장연구』제2집 제1호
이수자(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한국사회학』, 제38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이순형(2006), “국제결혼 농촌 이주여성 가족의 정착지원 방안”, 농촌국제결혼 정착방안세미나 자료집,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이영주(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이용승(2007), “호주의 다문화주의의 역진”,『국제정치논총』제48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용일(2007), “이민과 다문화 사회로의 도전-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한국적 함의”,『서양사론』제92호, 한국서양사학회
이윤애(2004),『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 필리핀 여성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이정민(2008),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이주민 가족재원법률안에 대한 검토”, 익산법조 제25호(2008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주여성활동단체(2008), “법무부의 사회통합이수제를 다시 묻다”, 자료집
이진숙(2005),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제57권 2호, 한국사회복지학회
이태주(2007),『다민족 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혜경(1994),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연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28집, 한국사회학회
_____(2004), “한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제27권 2호, 한국인구학회
_____(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제28권 1호, 한국인구학회
_____(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 한국사회학회
_____(2007), 『결혼이민여성과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조성』, 차기정부 여성가족정책 10대 과제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_____(2008),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제42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임한진(2008), 『한국이민담론의 분절성과 그 이데올로기적 배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명선(2007),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과제”, 일한 연속심포지움 자료집
장미영(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정체성 형성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방안”, 한국언어문학 제64집, 한국언어문학회
장미혜(2008)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경옥(2007), “젠더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아시아여성연구』제46권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전광희(2006), “외국인 관련 공공정책의 구조와 향후 전망”,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동북아시대위원회, 한국사회학회
전수현(2002), “필리핀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정애, 표갑수(2007),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지원대책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1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정기선 외(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미영, 이수라, 고은미(2008), “다문화사회바로서기 :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교육프로그램연구”, 글솟대
정상우(2007),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34호
정일선 외(2004),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의 적응을 위한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일선(2006), “길찾기: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다문화사회 아

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혜실(2007), “파키스탄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들 : 파키스탄 커플모임을 중심으로”, 여성이론, 통권 제16호, 여이연
조상균, 이승우, 전관희(2008), “다문화가정지원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1호(2008년),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조석주(2007),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강화방안 :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2호 통권 70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성원(2000),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과 재생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영달(2006),『다문화과정의 자녀교육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조혜영(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20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결과보고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방행정국(2008),『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채미화(2007), “재한 중국조선족 이주노동여성의 자녀조사연구”,『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 연구의 도전』, 한국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채옥희, 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사례연구”,『한국생활과학회지』제16권 제1호, 한국생활과학회
최무혁(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제42권 제3호
최순애(2008), “전남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 현황”, 교육전남 제111호, 전라남도 교육과학연구원
최승희(2008),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실천 및 정책제언”, 복지동향 통권 제117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운선(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최현(2008),『다문화적 권리와 한국사회에서의 그 증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출립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통계청(2005).『2004년 혼인·이혼통계 결과(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_____(2006).『2005 인구주택총조사(가구, 주택)』
_____(2008),『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하영호(2007)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건수(2003),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비교문화연구』9권 제2호
_____(2005), "다민족·다문화 사히의 도래와 한국 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교육혁신위원회 심포지움 자료집
_____(2006), "농촌 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한국문화인류 학회』제39권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건수, 설동훈(2006),『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_____ (2007),『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 학습 지원방안 탐색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다문화학회(2008),『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학술대회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 출산 행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2008),『다문화사회와 사회복지교육의 역할』,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7), "다문화가족, 선택 아닌 필수 : 다문화사회, 발상의 전환필요하다", 사회복지 통권 제17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학회(2006),『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
한국여성연구원(2007), "아시아 여성 이주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한국여성학 30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태도: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포럼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_____(2008),『다문화사회를 위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자료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_____(2007),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밀성 재구성을 위한 과제", 국회도서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6), 매매혼적 국제결혼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시아 이주여성전략회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7),『이주여성 정책과 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자료집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8), 21세기 다문화시대를 향한 바람직한 내향적 국제화 발전전략 워크샵 자료집
한도현(2003), "민족주의와 이중국적의 불안한 동거",『정신문화연구』제26권 제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유럽연대(2007),『한국과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운동』, 미래을 향한 연대,자료집
한승준(2008),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_____(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제42권 제3호
한영현(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보고회 자료집, 전라남도
홍달아기, 채옥희(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
홍석기(2008),『외국인100만시대를 위한 서울시의 다문화사회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홍성필(2007), "국제인권과 결혼이주",『저스티스』통권 제96호, 한국법학원
황정미 외(2007),『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외국문헌〉

Anne Phillips(2007), "Multiculturalism without Cul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l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68
Castle, S. & Miller, M. j.(2003), "The Age of Migration"(Third Edition), New York & London: The Guilford Press
Chatani, K.(2001), "Creating comfort: Social support communication and Cross-cultural adaptation of Sojourner women", The Ohio State University
Choe, Hyun(2003), "National Identity and Citizenship in China and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Chrysochoou, Xenia(2004), "Cultural Diversity: Its Soci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European Migration Network(2006), "Policy Analysis Report on Asylum and Migration: Belgium", European Migration Network, Brussels(March)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Germany)(2007), Immigration Law and Policy, www.bmi.bund.de

Gwyn Kirk, Margo Okazawa-Rey(2001), "Women's lives : multicultural perspectives", Mayfield Pub. Co.

Hsia, Hsiao-Chuan(2006), "Globalization and resistance: The case of empowering 'foreign brides' in Taiwan", 『다문화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 한국, 대만, 베트남, 일본에서의 경험』,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최 2006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Hong-zen Wang, Shu-ming Chang(2002), "The 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Cross-border Marriage Business in Taiwan And Viet Na", International Migration, Vol. 40(6)

Joshua Cohen, Matthew Howard, and Martha C. Nussbaum(1999),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ymlicka, Will(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04), "Multicultural States and Intercultural Citizens",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1(2)

Monique Daveaux(2006), "Gender and Justice in multicultural liberal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Nakamatsu, T.(2005), "Faces of "Asian Brides"; Cender, Race and Class in the Representations of Immigrant Women in Japa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8

N. Diez Guardia & K. Pichelman(2007), "Labour Migration Patterns in Europe: Recent Trends, Future Challenges", European Economy,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papers(September, No. 256)

OECD(2000), Globalization, Migration and Development

Pedace, R.(2006), "Immigration, Labor Market, Mobility, and the Earnings of Native-Born Workers. An Occupational Segmentation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ume 65 Issue 2

Ramirez, Carlota, Mar Garcia Dominguez and Julia Miguez Morais.(2005), "Grossing

Borders: remittances, Gender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 Instraw

Robert Holzmann & Rainer Munz(2004),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for the EU, Its Member States, Neighoring Countries and Regions: A Policy Note",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Swedish Futures Studies(June, 12)

SaSarah Song(2007), "Justice, Gender,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rgio Carrera & Marco Formisano(2005), "An EU Approach to Labour Migration What is the the Added Value and the Way Ahead?", Thinking ahead for Europe, CEPS Working Document(October, No. 232)

Sergio Carrera(2006), "Legal migration law and policy trends in a selection of EU member states", Directorate-General Internal Policies, Policy Department C,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July)

_____(2006), "A Comparison of Integration Programmes in the EU Trends and Weaknesses", The Changing Landscape of European Libertty and Security, Challenge Papers(March, No.1)

_____(2007), "Building a Common Policy on Labour Immigration Towards a Comprehensive and Global Approach in the EU?", Thinking ahead for Europe, CEPS Working Document(February, No. 256)

Smolicz, Jerzy J.(2001), "Globalization and Cultural Dynamics in a Multicultural State: Australian Multiculturalism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ialogue and Universalism 11-12

Uma Narayan & Sandra Harding(2000), "Decentering the Center : philosophy for a multicultural, postcolonial, and feminist world", Indiana University Press

# 부 록

1.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지(외국인 배우자용)
2.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지(한국인 배우자용)
3. 다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식조사 설문지

## 부록1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지(외국인 배우자용)

[외국인 배우자용]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실태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성실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며, 통계자료 등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나 설문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 연구자 | 장명선, 이옥경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행팀) |
|---|---|
| 연락처 | Tel : 02-810-5012, 5017 Fax : 02-810-5003<br>E-mail : freedom1109@seoulwomen.or.kr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5-1 |


**[기초정보 기재사항]**

| 응답자 | 성 명 | ( 남 / 여 ) | 연 령 | 세 |
|---|---|---|---|---|
| | 주 소 | | 연 락 처 | |

| 조사원 | 성 명 | | 소속기관 | |
|---|---|---|---|---|
| | 설문일시 | 년 월 일 시 | 연 락 처 | |

## [일반적 특성]

**Ⅰ.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1. 어느 나라출신입니까?

① 중국조선족 ② 중국한족 ③ 일본 ④ 베트남 ⑤ 필리핀
⑥ 몽골 ⑦ 태국 ⑧ 캄보디아 ⑨ 기타( )

2. 처음 한국에 온 것은 언제였습니까? (입국 년 월)

3. 처음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국제결혼 ② 취업 ③ 유학 ④ 직장업무
⑤ 개인사업 ⑥ 관광 ⑦ 친척방문 ⑧ 기타( )

4. 한국과 서울시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번호 | 질 문 내 용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4-1 | 실제 한국에 거주한 기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 4-2 | 현재의 가족과 함께 서울시에서 거주한 기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5. 입국 당시와 현재의 한국말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번호 | 질 문 내 용 | 매우 잘한다 | 잘하는 편이다 | 보통이다 | 못하는 편이다 | 전혀 못한다 |
|---|---|---|---|---|---|---|
| 5-1 | 입국 당시의 한국말 실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 5-2 | 현재의 한국말 실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6. 공교육은 몇 년 정도 받으셨습니까?

① 없다 ② 6년 이하 ③ 7~9년 ④ 10~12년 ⑤ 13년 이상

7.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까?

① 취득했다 **(☞ 8번으로 이동)** ② 취득하지 못했다

7-1. 한국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귀화허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② 국적취득 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③ 서류준비와 절차가 복잡해서 ④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⑤ 배우자와 가족의 도움이 없어서 ⑥ 국적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⑦ 기타( )

8.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내 집(나 또는 가족 소유)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숙사 ⑤ 친척집 ⑥ 공공임대아파트
⑦ 복지시설 ⑧ 기타( )

9.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혼자 산다 ② 배우자 ③ 배우자의 부모
④ 나의 부모 ⑤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나의 형제자매
⑦ 배우자의 친척 ⑧ 배우자와 나 사이의 자녀 ⑨ 배우자의 이전 결혼 자녀
⑩ 나의 이전 결혼 자녀 ⑪ 기타( )

10. 현재 귀댁의 평균 월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소득이 없다 ② 50만원 미만 ③ 50만원~100만원 미만
④ 100만원~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400만원 미만
⑦ 400만원~500만원 미만 ⑧ 500만원 이상 ⑨ 잘 모르겠다

11.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떤 편이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12.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계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Ⅱ. 다음은 귀하의 국제결혼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1.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개월)

2. 현재의 배우자와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① 부모, 형제, 친척의 소개 ② 친구, 아는 사람의 소개 ③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④ 종교단체의 소개로 ⑤ 행정기관을 통해 ⑥ 소개 없이 직접 만났다
⑦ 기타( )

2-1. 현재의 배우자를 소개받기 위해 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① 어느 누구도 지불하지 않았다 ② 나만 지불했다 ③ 배우자만 지불했다
④ 나와 배우자 모두 지불했다 ⑤ 모르겠다

3. 귀하가 국제결혼 할 당시 경험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가족의 반대 ③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④ 언어소통의 문제 ⑤ 국제결혼비용 ⑥ 제한된 배우자선택의 자유
⑦ 짧은 결혼결정기간 ⑧ 배우자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
⑨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절차 ⑩ 기타( )

4.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배우자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② 모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③ 경제적 안정을 위해 ④ 한국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
⑤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⑥ 기타( )

5. 현재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초혼 ② 재혼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⑥ 기타( )

## Ⅲ. 다음은 귀하의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1. 배우자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 )

2. 배우자는 귀하와의 결혼이 몇 번째 입니까?

① 초혼 ② 재혼 ③ 잘 모르겠다

3. 배우자의 최종 학력(공교육 수준)은 무엇입니까?

① 없다 ② 초등학교 졸업(6년 이하) ③ 중학교 졸업(7~9년)
④ 고등학교 졸업(10~12년) ⑤ 대학교 졸업 이상(13년 이상)

4.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사무직 ② 판매/영업직 ③ 서비스직 ④ 기술/생산직
⑤ 배송/운전직 ⑥ 간호/의료직 ⑦ 강사/교사직 ⑧ 건설/노무직
⑨ 학생 ⑩ 전업주부 ⑪ 무직 ⑫ 기타( )

5. 현재 귀하의 배우자는 귀하의 모국어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하는 편이다 ⑤ 전혀 못한다

## Ⅳ. 다음은 귀하의 경제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1. 현재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사무직 ② 판매/영업직 ③ 서비스직 ④ 기술/생산직
⑤ 배송/운전직 ⑥ 간호/의료직 ⑦ 강사/교사직 ⑧ 건설/노무직
⑨ 학생 ⑩ 전업주부 ⑪ 무직 ⑫ 기타( )

**(☞ ⑨,⑩,⑪번을 선택한 응답자는 6페이지 9번으로 이동)**

2. 현재의 직장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① 한국인 친구 이웃의 소개로 ② 모국인 친구 이웃의 소개로
③ 가족 및 친척의 소개로 ④ 외국인 상담소를 통해
⑤ 공공 행정기관의 소개를 통해 ⑥ 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⑦ 인터넷, 신문, 지역 정보지 등을 통해 ⑧ 기타( )

3. 직장에서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① 1~17시간 ② 18~35시간 ③ 36~44시간 ④ 45~53시간 ⑤ 54시간 이상

4. 귀하의 월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소득이 없다 ② 50만원 미만 ③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④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⑤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⑥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⑦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⑧ 300만원 이상

4-1. 귀하의 월수입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① 내가 관리한다 ② 배우자가 관리한다 ③ 나와 배우자가 함께 관리한다
④ 배우자의 부모님이 관리한다 ⑤ 기타( )

5. 현재의 직장과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한 편이다 ⑤ 매우 불만족하다

6. 직장에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의 양육비 충당 ② 가족의 생계유지 ③ 장래 노후 대비
④ 생활비 보충 ⑤ 자기발전을 위해 ⑥ 모국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⑦ 여가시간 활용 ⑧ 기타( )

7. 직장에 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래 예시 중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써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①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② 일하면서 자녀 돌보기 ③ 가사일과 병행하기
④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⑤ 낮은 임금 ⑥ 직장 사람들과의 갈등
⑦ 오랜 노동시간 ⑧ 언어소통의 어려움 ⑨ 힘들고 어려운 작업
⑩ 적은 일거리(일자리 부족) ⑪ 기타( )

8. 귀하가 직장에 다니는 것에 대해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찬성도 반대도 안한다
④ 대체로 반대한다 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1번 질문으로 이동)**

9. 현재 다니시는 직장이 없다면, 향후에는 직장에 다니실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직종을 희망하십니까?
① 관리/사무직 ② 판매/영업직 ③ 서비스직 ④기술/생산직
⑤ 배송/운전직 ⑥ 간호/의료직 ⑦ 강사/교사직 ⑧ 건설/노무직
⑨ 기타( ) ⑩ 다닐 의향이 없다 **(☞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1번 질문으로 이동)**

9-1. 직장에 다니실 의향이 있으면서도 현재 다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② 자녀와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③ 배우자와 가족의 반대로 ④ 한국어가 서툴러서
⑤ 몸이 약하거나 아파서 ⑥ 간병해야 할 가족이 있어서
⑦ 기타( )

##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 Ⅰ. 다음은 부부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1. 귀하는 배우자와 여가시간 또는 휴가를 함께 보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번으로 이동)**

1-1. 귀하는 배우자와의 여가시간이나 휴가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해당란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배우자의 친척이나 친구집 방문 ② 나의 모국친척이나 친구집 방문
③ TV시청 ④ 극장, 미술관, 전시회장 등 문화예술 관람
⑤ 여행이나 관광 ⑥ 외식
⑦ 산책이나 운동 ⑧ 기타( )

2. 귀댁에서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각 문항별로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주로 배우자가 | 주로 내가 | 부부가 함께 | 배우자의 부모 | 기타(해당없음) |
|---|---|---|---|---|---|---|
| 1 | 자녀교육 관련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재산관리, 생활비 지출 등 경제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본인의 취업이나 직장 이전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배우자의 취업이나 직장 이전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여가시간 활용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3. 귀하가 한국인 배우자와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화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거의 느끼지 않는다 ② 식습관 ③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
④ 부모부양 방식 ⑤ 자녀양육 방식 ⑥ 가사분담 방식
⑦ 종교생활에 대한 이해 ⑧ 기타( )

4. 다음은 부부관계에 대한 귀하의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매우 만족 | 대체로 만족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
| 1 | 배우자가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부부사이의 친밀감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부부의 성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부부간의 대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5.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와 실제 사실이 달라서 부부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하는 것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배우자의 결혼경력 ③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 ④ 배우자의 직업
⑤ 배우자의 학력 ⑥ 배우자의 건강상태 ⑦ 배우자의 나이 ⑧ 배우자의 가족
⑨ 기타( )

6. 배우자가 귀하에게 한 적이 있는 행동들을 모두 √ 해주십시오.

① 생활비 또는 용돈을 거의 주지 않는다 ②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하게 한다
③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보인다 ④ 모국에 송금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⑤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는다 ⑥ 폭언,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한다
⑦ 신체적인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한다 ⑧ 기타( )
⑨ 위의 경험을 전혀 한 적이 없다

7. 귀하 부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싸운 적이 없다 **(☞ 8번으로 이동)** ② 성격차이 ③ 문화 또는 가치관 차이
④ 언어소통상의 어려움과 오해 ⑤ 경제(돈)문제 ⑥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
⑦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⑧ 배우자의 음주 ⑨ 배우자의 외도
⑩ 모국가족으로 인한 문제 ⑪ 의처증/의부증 ⑫ 종교문제
⑬ 무관심 ⑭ 기타( )

7-1. 귀하는 지난 한 달간 부부싸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① 없다 ② 1~2회 ③ 3~5회 ④ 5~10회 ⑤ 10회 이상

8. 귀하는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한 적이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자녀 때문에
③ 부모와 가족의 반대로 ④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어서
⑤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상실할 것 같아서 ⑥ 모국의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서
⑦ 이혼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⑧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리할 것 같아서
⑨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⑩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서
⑪ 기타( )

9. 모국의 가족이나 친구가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② 대체로 권장하는 편이다 ③ 권장도, 만류도 안 한다
④ 대체로 만류하는 편이다 ⑤ 적극적으로 만류한다

## Ⅱ. 다음은 가족 중 특히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1. 귀하는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명) ② 아니오 **(☞ 2번으로 이동)**

1-1. 출산경험이 있으시다면, 당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② 임신, 출산비용의 부담 ③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
④ 신생아 돌보기 ⑤ 출산관련 정보 및 상담부족 ⑥ 산후조리
⑦ 기타( )

2. 현재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 단,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만 해주십시오.

| 무 자 녀 | **(☞ 8번으로 이동)** | 미취학생 | 명 |
|---|---|---|---|
| 초등학생 | 명 | 중 학 생 | 명 |
| 고등학생 | 명 | 성 인 | 명 |

3. 귀하는 자녀와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① 한국어 ② 모국어 ③ 한국어+모국어
④ 한국어+모국어+제3외국어 ⑤ 기타( )

4. 귀댁에서는 (가장 어린) 미취학자녀를 낮에 주로 누가 돌봅니까?

① 아이 혼자 지낸다 ② 나, 배우자 또는 가족
③ 개인 탁아모(아이돌보미 등) ④ 이웃 또는 아는 모국인
⑤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등) ⑥ 유치원
⑦ 사설학원 ⑧ 기타( )

4-1.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사설학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 가족 또는 친구가 더 잘 봐줄 것 같아서 ② 가까운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서
③ 우리 아이에게 맞는 보육시설을 못 찾아서 ④ 입학거부나 차별, 놀림을 받을 것 같아서
⑤ 비용부담 때문에 ⑥ 나이가 어려서
⑦ 기타( )

5. 자녀가 학교나 학원, 또래집단 등에서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 ②,③번을 선택한 응답자는 6번으로 이동)**

5-1.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면, 따돌림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외모가 달라서 ②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③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④ 부모가 외국출신이어서 ⑤ 특별한 이유 없이 ⑥ 기타( )

6. 자녀양육과 교육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② 자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③ 배우자와 양육방식이 다르다 ④ 자녀가 나를 부모로서 존중하지 않는다
⑤ 자녀양육과 교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⑥ 사교육비나 양육비가 부담된다
⑦ 자녀와 사고방식 및 가치관이 다르다 ⑧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
⑨ 자녀를 맡길 적합한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⑩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⑪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 ⑫ 기타( )

7. 외국인 부모로서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①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한국어교육 ② 내 모국어로 된 보육자료
③ 내 양육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배우자대상 교육 ④ 자녀양육 관련 정보 제공
⑤ 자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 ⑥ 기타( )

8. 귀하는 앞으로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명) **(☞ 다음 페이지 9번으로 이동)** ② 없다

8-1. 만약 출산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현재의 자녀수로 만족해서 ②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③ 보육시설이 미비해서 ④ 직장을 다니기 어려워져서
⑤ 건강상의 이유로 ⑥ 나이가 많아서
⑦ 내가 원하지 않아서 ⑧ 배우자 또는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⑨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때문에 ⑩ 기타( )

9. 귀하는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② 나에 대한 인격적 무시와 비난
③ 의사소통의 어려움 ④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⑤ 생활습관과 방식의 차이 ⑥ 자녀양육방식의 차이
⑦ 배우자 부모님의 부양과 수발 ⑧ 기타( )

10. 현재 함께 사는 가족 중 귀하와 가장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없다 ② 배우자 ③ 배우자의 부모 ④ 자녀
⑤ 배우자의 형제, 자매 ⑥ 배우자의 친척 ⑦ 기타( )

## Ⅲ. 다음은 모국가족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1.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모국출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습니까?

① 아무도 없다 ② 부모 ③ 형제, 자매 ④ 전 배우자와의 자녀
⑤ 친척 ⑥ 친구 또는 이웃 ⑦ 기타( )

2. 모국에 있는 가족들과 얼마나 자주 전화나 편지 혹은 E-Mail 교환을 하십니까?

①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 ② 거의 매일 ③ 일주일에 1~2회
④ 한달에 1~2회 ⑤ 6개월에 3~4회 ⑥ 일년에 3~4회

3. 결혼 후 현재까지 귀하가 모국의 가족을 방문하거나, 혹은 모국의 가족이 한국의 가족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① 내가 모국의 가족을 방문함 ( 회) ② 모국가족이 한국의 가족을 방문함 ( 회)
③ 서로 방문한 적이 없다

4. 귀하는 모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까? 보내고 계신다면, 얼마나 자주 보내십니까?

① 보낸 적이 없다 ② 한달에 1~2회 ③ 6개월에 3~4회 ④ 일년에 3~4회

4-1. 귀하가 모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에 대해 배우자와 그 가족들은 협조적입니까?

① 매우 협조적이다 ② 대체로 협조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협조적이지 않다 ⑤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

## [한국문화 적응 및 사회통합]

■ 다음은 귀하의 한국문화 적응과 사회통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1. 귀하의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사람(매체)은 누구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배우자의 가족 ③ 한국인 친구
④ 모국인 친구 ⑤ 지역주민 ⑥ 상담소 및 사회복지기관
⑦ 사회, 종교단체 ⑧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⑨ TV, 라디오
⑩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⑪ 건강가정지원센터 ⑫ 신문, 지역정보지
⑬ 인터넷 ⑭ 기타( )

2. 다음은 귀하가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보통 (반반)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는 한국 사람들보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는 한국에서의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나는 때때로 이 곳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나는 이 곳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나는 이 곳에 남아야 할지 모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몰라 나의 미래가 걱정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나는 이 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은 귀하의 성별의식과 한국에서의 성차별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있다/ 그렇다 | 없다/ 아니다 | 모르겠다 |
|---|---|---|---|---|
| 1 | 가정에서의 남편역할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의 역할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 2 | 집안의 큰일은 남자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 3 | 가정에서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 4 | 나는 가정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으며,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르친다 | ① | ② | ③ |
| 5 | 나는 외국인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못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 6 | 나는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이나 모임에서 불이익한 대우(임금, 승급, 교육기회, 퇴직 등)를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 7 | 나는 가정이나 직장, 모임에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4. 다음은 귀하가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 배우자 및 주변사람들의 노력과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보통 (반반)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의 배우자는 나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며,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생길 때 나를 이해하려고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의 배우자는 내가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 나와 함께 참석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의 배우자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모임에 나와 함께 참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의 배우자측 가족들은 나의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내가 속한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내 모국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복지욕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 다음은 귀하의 복지욕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1. 현재 귀하가 한국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래 예시 중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써주십시오.

▶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①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② 언어문제
③ 한국문화 이해
④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⑤ 경제적 어려움
⑥ 취업 및 직장 문제
⑦ 배우자와의 갈등
⑧ 본인의 건강문제
⑨ 가족의 건강문제
⑩ 배우자의 부모 및 그 가족과의 문제
⑪ 비자갱신 및 국적취득 문제
⑫ 자녀(양육, 교육)문제
⑬ 기타( )

2. 귀하가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설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구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② 보육시설
③ 건강가정지원센터
④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⑤ 보건소
⑥ 사회복지관
⑦ 성폭력, 가정폭력상담기관
⑧ 병원
⑨ 법률상담기관
⑩ 외국인 또는 이주여성인권단체
⑪ 종교단체
⑫ 보호시설(쉼터 등)
⑬ 기타(　　)

3. 귀하는 다음의 사회복지제도나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문항별로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이용한 적이 없다 | 전혀 도움이 안된다 | 별로 도움이 안된다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도움이 된다 | 매우 도움이 된다 |
|---|---|---|---|---|---|---|---|
| 1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 | 한국어교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4 |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5 | 법률상담 및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6 | 의료상담 및 지원(임신 및 출산 지원 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7 | 성폭력, 가족폭력상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8 |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9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10 |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위의 제도나 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는 응답자는 다음 페이지 4번으로 이동)**

3-1. 귀하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②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③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④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⑥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⑦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
⑧ 기관의 직원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⑨ 가족이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반대해서
⑩ 자녀와 집안일을 맡길 곳이 없어서
⑪ 기타(　　)

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또는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각 문항별로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매우 잘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
| 1 |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일자리를 알선한다 | ① | ② | ③ |
| 2 |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 | ① | ② | ③ |
| 3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는 생계, 의료지원 및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 ① | ② | ③ |
| 4 |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 | ① | ② | ③ |
| 5 | 여성긴급전화(1366)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을 지원한다 | ① | ② | ③ |
| 6 |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도우미 파견사업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한다 | ① | ② | ③ |
| 7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 ① | ② | ③ |
| 8 | 전화를 이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 ② | ③ |
| 9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아동양육을 지원한다 | ① | ② | ③ |
| 10 | 불가피한 사유로 이혼한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를 원할 경우, 그 입증요건을 충족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 11 | 한국인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한 외국인은 그 자녀가 원할 경우,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받는다 | ① | ② | ③ |

5. 귀하는 부부동반 교육, 상담서비스 등 생활 전반에 관한 통합적인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 5-2번으로 이동)** ② 없다

5-1.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신뢰할만한 전문기관이 없어서 ②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③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④ 가까운 곳에 서비스제공기관이 없어서
⑤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⑥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⑦ 기타( )

5-2. 귀하의 배우자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것 같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6. 아래의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필요는 어느 정도인지 각 문항별로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
| 1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주택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임신, 출산 지원 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국적취득지원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원 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보육, 학습지도 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한국문화체험교육(음식, 의복, 예절 등)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관공서, 은행, 시장, 도서관 등) 이용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7.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불만족하다 ⑤ 매우 불만족하다

♣ 긴 시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2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지(한국인 배우자용)

[한국인 배우자용]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실태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성실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며, 통계자료 등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나 설문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 연구자 | 장명선, 이옥경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행팀) |
|---|---|
| 연락처 | Tel : 02-810-5012, 5017 Fax : 02-810-5003<br>E-mail : freedom1109@seoulwomen.or.kr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5-1 |


**[기초정보 기재사항]**

| 응답자 | 성 명 | ( 남 / 여 ) | 연 령 | 세 |
|---|---|---|---|---|
| | 주 소 | | 연 락 처 | |

| 조사원 | 성 명 | | 소속기관 | |
|---|---|---|---|---|
| | 설문일시 | 년 월 일 시 | 연 락 처 | |

[일반적 특성]

■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1. 현재의 가족과 함께 서울시에서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③ 3~5년 ④ 5년~10년 ⑤ 10년 이상

2.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내 집(나 또는 가족 소유)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숙사 ⑤ 친척집 ⑥ 공공임대아파트
⑦ 복지시설 ⑧ 기타( )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이상

4. 현재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사무직 ② 판매/영업직 ③ 서비스직 ④ 기술/생산직
⑤ 배송/운전직 ⑥ 간호/의료직 ⑦ 강사/교사직 ⑧ 건설/노무직
⑨ 학생 ⑩ 전업주부 ⑪ 무직 ⑫ 기타( )

**(☞ ⑨,⑩,⑪번을 선택한 응답자는 7번으로 이동)**

5. 귀하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① 1~17시간 ② 18~35시간 ③ 36~44시간 ④ 45~53시간 ⑤ 54시간 이상

6. 귀하의 월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소득이 없다 ② 50만원 미만
③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④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⑤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⑥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⑦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⑧ 300만원 이상

7. 현재 귀댁의 평균 월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소득이 없다 ② 50만원 미만 ③ 50만원~100만원 미만
④ 100만원~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400만원 미만
⑦ 400만원~500만원 미만 ⑧ 500만원 이상 ⑨ 잘 모르겠다

8.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떤 편이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9.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계비 지원 등을 받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결혼과정 및 가족생활]

**Ⅰ. 다음은 귀하의 국제결혼과정 및 부부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1. 현재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개월)

2. 귀하는 배우자와의 결혼이 몇 번째 입니까?
① 초혼 ② 재혼

3. 귀하가 외국출신 배우자와 결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②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③ 배우자 출신국가 사람들의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해서
④ 배우자의 출신국가 사람들이 순종적이고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
⑤ 배우자 출신국가의 국제결혼절차가 수월해서
⑥ 배우자 출신국가의 국제결혼비용이 적게 들어서
⑦ 결혼중개업체의 권유로
⑧ 배우자 출신국가의 사람과 결혼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권유로
⑨ 종교적인 이유로
⑩ 기타( )

4. 귀하가 국제결혼 할 당시 경험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가족의 반대
③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한 불안감 ④ 언어소통의 문제
⑤ 국제결혼비용 ⑥ 제한된 배우자선택의 자유
⑦ 짧은 결혼결정기간 ⑧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절차
⑨ 배우자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 ⑩ 기타( )

5. 귀댁에서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각 문항별로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주로 배우자가 | 주로 내가 | 부부가 함께 | 배우자의 부모 | 기타(해당없음) |
|---|---|---|---|---|---|---|
| 1 | 자녀교육 관련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재산관리, 생활비 지출 등 경제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본인의 취업이나 직장 이전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배우자의 취업이나 직장 이전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여가시간 활용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6. 귀하가 외국인 배우자와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화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거의 느끼지 않는다 ② 식습관 ③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
④ 부모부양 방식 ⑤ 자녀양육 방식 ⑥ 가사분담 방식
⑦ 종교생활에 대한 이해 ⑧ 기타( )

7. 다음은 부부관계에 대한 귀하의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매우 만족 | 대체로 만족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
| 1 | 배우자가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부부사이의 친밀감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부부의 성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부부간의 대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다음은 귀하의 성별의식 및 성차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있다/ 그렇다 | 없다/ 아니다 | 모르겠다 |
|---|---|---|---|---|
| 1 | 가정에서의 남편역할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의 역할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 2 | 집안의 큰일은 남자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 ① | ② | ③ |
| 3 | 가정에서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 4 | 나는 가정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으며,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르친다 | ① | ② | ③ |
| 5 | 누구든 외국인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① | ② | ③ |

9.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와 실제 사실이 달라서 부부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하는 것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배우자의 결혼경력 ③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 ④ 배우자의 직업
⑤ 배우자의 학력 ⑥ 배우자의 건강상태 ⑦ 배우자의 나이 ⑧ 배우자의 가족
⑨ 기타( )

10. 귀하 부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싸운 적이 없다 **(☞ 11번으로 이동)** ② 성격차이 ③ 문화 또는 가치관 차이
④ 언어소통상의 어려움과 오해 ⑤ 경제(돈)문제 ⑥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
⑦ 배우자와 내 가족과의 갈등 ⑧ 음주 ⑨ 외도
⑩ 배우자의 모국가족으로 인한 문제 ⑪ 의처증/의부증 ⑫ 종교문제
⑬ 무관심 ⑭ 기타( )

10-1. 귀하는 지난 한 달간 부부싸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① 없다 ② 1~2회 ③ 3~5회 ④ 5~10회 ⑤ 10회 이상

11. 귀하는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한 적이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자녀 때문에
③ 부모와 가족의 반대로 ④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⑥ 재혼이 어려울까봐
⑦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서 ⑧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리할 것 같아서
⑨ 이혼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⑩ 기타( )

12. 귀하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배우자가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② 배우자에 대한 인격적 무시와 비난
③ 의사소통의 어려움 ④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⑤ 생활습관과 방식의 차이 ⑥ 자녀양육방식의 차이
⑦ 배우자 부모님의 부양과 수발 ⑧ 기타( )

13. 현재 함께 사는 가족 중 배우자와 가장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없다 ② 나 ③ 나의 부모 ④ 자녀
⑤ 나의 형제·자매 ⑥ 나의 친척 ⑦ 기타( )

14. 귀하는 배우자의 모국어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① 매우 잘 한다 ② 잘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하는 편이다 ⑤ 전혀 못 한다

14-1. 귀하는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울 의향이 있습니까?

①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② (더) 배울 의향이 있다 ③ 배울 의향이 없다

15. 귀하는 배우자의 모국가족들과 얼마나 자주 전화나 편지 혹은 E-Mail 교환을 하십니까?
①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 ② 거의 매일 ③ 일주일에 1~2회
④ 한달에 1~2회 ⑤ 6개월에 3~4회 ⑥ 일년에 3~4회

16. 귀하는 배우자의 모국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찬성도, 반대도 안한다
④ 대체로 반대한다 ⑤ 전적으로 반대한다

17. 귀하는 배우자가 모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아한다 ② 좋아하는 편이다 ③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④ 싫어하는 편이다 ⑤ 매우 싫어한다

18. 귀하는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찬성도, 반대도 안한다
④ 대체로 반대한다 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19. 다음은 귀하의 배우자가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 귀하와 주변사람들의 노력과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보통 (반반)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며,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생길 때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는 배우자가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모임과 사회활동에 함께 참석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모임에 배우자와 함께 참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의 가족들은 배우자의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내가 속한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배우자의 모국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귀하의 가족이나 친구가 국제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② 대체로 권장하는 편이다 ③ 권장도, 만류도 안 한다
④ 대체로 만류하는 편이다 ⑤ 적극적으로 만류한다

21.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Ⅱ. 다음은 귀하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단, 해당 자녀가 없을 경우 6번 질문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자녀와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① 한국어 ② 배우자의 모국어
③ 한국어＋배우자의 모국어 ④ 한국어＋배우자의 모국어＋제3외국어
⑤ 기타( )

2. 귀하는 자녀가 한국어를 제대로 못할까봐 어느 정도 걱정하십니까?
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② 약간 걱정된다 ③ 매우 걱정한다

3. 귀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모국어를 잘 하길 원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귀하의 자녀는 보육시설 및 학교, 학원 등에서 귀하의 배우자가 외국출신이라서, 혹은 자녀의 외모나 피부색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5. 자녀양육과 교육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② 자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③ 배우자와 양육방식이 다르다 ④ 자녀가 배우자를 부모로서 존중하지 않는다
⑤ 자녀양육과 교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⑥ 사교육비나 양육비가 부담된다
⑦ 자녀와 사고방식 및 가치관이 다르다 ⑧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
⑨ 자녀를 맡길 적합한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⑩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⑪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 ⑫ 기타( )

6. 귀하는 앞으로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명) (☞ 다음 페이지 1번으로 이동) ② 없다

6-1. 만약 출산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현재의 자녀수로 만족해서 ②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③ 보육시설이 미비해서 ④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⑤ 건강상의 이유로 ⑥ 나이가 많아서
⑦ 내가 원하지 않아서 ⑧ 배우자 또는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⑨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때문에 ⑪ 기타( )

**[복지욕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다음은 귀하의 복지욕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1. 현재 귀하가 외국인과 결혼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② 배우자와의 언어소통 문제
③ 배우자와의 갈등
④ 배우자의 한국적응을 도와야하는 부담
⑤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⑥ 배우자의 비자갱신 및 국적취득 문제
⑦ 배우자와 내 가족간의 갈등
⑧ 배우자의 취업 및 직장생활 문제
⑨ 나와 배우자 모국가족간의 관계
⑩ 가정경제의 어려움
⑪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⑫ 기타(　　)

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또는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각 문항별로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매우 잘 안다 | 들어본 적은 있다 | 전혀 모른다 |
|---|---|---|---|---|
| 1 |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일자리를 알선한다 | ① | ② | ③ |
| 2 |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 | ① | ② | ③ |
| 3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는 생계·의료지원 및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 ① | ② | ③ |
| 4 |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 | ① | ② | ③ |
| 5 | 여성긴급전화(1366)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을 지원한다 | ① | ② | ③ |
| 6 |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도우미 파견사업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한다 | ① | ② | ③ |
| 7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 ① | ② | ③ |
| 8 | 전화를 이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 ② | ③ |
| 9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아동양육을 지원한다 | ① | ② | ③ |
| 10 | 불가피한 사유로 이혼한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를 원할 경우, 그 입증요건을 충족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 11 | 한국인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한 외국인은 그 자녀가 원할 경우,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받는다 | ① | ② | ③ |

3. 귀하는 부부동반 교육, 상담서비스 등 생활 전반에 관한 통합적인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 4번으로 이동)　　② 없다

3-1.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 해주십시오.

① 신뢰할만한 전문기관이 없어서　　②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③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④ 가까운 곳에 서비스제공기관이 없어서
⑤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⑥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⑦ 부부관계는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⑧ 기타(　　)

4. 아래의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 번호 | 질 문 내 용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
| 1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주택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임신·출산 지원 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국적취득지원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원 포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성폭력, 가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보육·학습지도 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배우자, 가족 대상 모국문화 이해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한국문화체험교육(음식, 의복, 예절 등)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한국인 멘토 연결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관공서, 은행, 시장, 도서관 등) 이용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긴 시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3 다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식조사 설문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식조사

| 면접원 ID | 응답자 ID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며, 통계자료 등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내용은 정책 참고 자료로만 사용될 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1

| 면접원 이름 | | 전화번호 | |
|---|---|---|---|
| SQ1.성 별 | 남 / 여 | SQ2연 령 | ①15-19세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69세 |
| SQ3.지 역 | ① 도심권 ⑪ 종로구 ⑫ 중구 ⑬ 용산구 | | |
| | ② 동북권 ㉑ 성동구 ㉒ 광진구 ㉓ 동대문구 ㉔ 중랑구 ㉕ 성북구 ㉖ 강북구 ㉗ 도봉구 ㉘ 노원구 | | |
| | ③ 서북권 ㉛ 은평구 ㉜ 서대문구 ㉝ 마포구 | | |
| | ④ 서남권 ㊶ 양천구 ㊷ 강서구 ㊸ 구로구 ㊹ 금천구 ㊺ 영등포구 ㊻ 동작구 ㊼ 관악구 | | |
| | ⑤ 동남권 ㊱ 서초구 ㊲ 강남구 ㊳ 송파구 ㊴ 강동구 | | |
| SQ4.학 력 | ①초졸 이하 ②중졸 ③고졸 ④대졸 ⑤대학원졸 이상 | SQ5.개인소득 | ①100만원미만 ②100~200미만 ③200~300미만 ④300~400미만 ⑤400~500미만 ⑥500이상 |
| SQ6.직 업 | ① 전업주부 ② 사무직 ③ 서비스직 ④ 관공직 ⑤ 전문직 ⑥ 기술, 생산직 ⑦ 판매, 영업직 ⑧ 학생 ⑨ 무직 ⑩ 기타 | SQ7.주거형태 | ① 자택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
| | | SQ8.결혼상태 | ① 기혼 유자녀 ② 기혼 무자녀 ③ 미혼 유자녀 ④ 미혼 무자녀 |

문1) 00님께서는 국제결혼이민자의 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크게 증가할 것이다 ② 다소 증가할 것이다
③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④ 다소 감소할 것이다 ⑤ 크게 감소할 것이다
⑨ 모름/무응답

문2) 00님께서는 평소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좋지도 싫지도 않다(보통이다)
④ 싫은 편이다 ⑤ 매우 싫다
⑨ 모름/무응답

문3) 다음의 사항에 대해 00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내용 | 찬성(좋다) | | 반대(싫다) | | 모름/무응답 |
|---|---|---|---|---|---|
| | 매우 | 다소 | 다소 | 매우 | |
| 문3.1. 국제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⑨ |
| 문3.2. 국제결혼이민자가 직장동료나 상사가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⑨ |
| 문3.3. 국제결혼이민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⑨ |

문4) 다음의 사항에 대해 00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내용 | 그렇다 | | 아니다 | | 모름/무응답 |
|---|---|---|---|---|---|
| | 매우 | 다소 | 다소 | 매우 | |
| 문4.1.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이라면 한국말과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⑨ |
| 문4.2.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이라면 아내의 모국어는 배워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⑨ |
| 문4.3.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라면 한국어와 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를 함께 배워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⑨ |
| 문4.4. 정부와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⑨ |
| 문4.5.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⑨ |
| 문4.6.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정부와 서울시가 더 많은 예산 투입과 지원을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⑨ |
| 문4.7. 인신매매나 성매매성 결혼, 위장 국제결혼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⑨ |
| 문4.8.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⑨ |
| 문4.9. 정부와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예산투입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⑨ |

문5) 00님께서는 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① 한국어교육
② 한국문화체험
③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④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의식교육
⑤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⑥ 직업교육
⑦ 경제적 지원
⑧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⑨ 모름/무응답

문6) 00님께서는 현재 살고 계신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사회 또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꼭 참여할 것이다 ② 가급적 참여할 것이다
③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④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다
⑤ 모름/무응답

문7) 00님께서는 현재와 비교했을 때, 앞으로 10년 후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으로 인한 갈등이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② 조금 심각해질 것이다
③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④ 조금 완화될 것이다
⑤ 매우 완화될 것이다
⑨ 모름/무응답

문8) 00님 주변에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⑨ 모름/무응답

♣ 오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8–정책개발–016

#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장명선 · 이옥경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 810. 5101(代)
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 786 2999